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74-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20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10)

2012. 9.

- 목 차 -

1. 선조실록 기사자료집	1
2. 광해군일기 기사자료집	137
3. 인조실록 기사자료집	203
4. 효종실록 기사모음집	299

1. 선조실록 기사자료집

선조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p>1. 선조 2권, 1년 (1568 무진 / 명 융경 (隆慶) 2년) 2월 10일 (경인) 1번째기사 중국 사신이 떠날 때 대강이 33대나 되다</p>	<p>묘시에 대가가 모화관에 이르렀고 사신 장조가 이르러 모화관에 들어 갔으며, 백관은 먼저 영조문 서쪽에 이르렀다. 사신은 술 5잔을 받고 일어나 영조문 가까이 가서 수레에서 내려 우리 조정의 백관과 서로 읍하고 이별하였다. 물건을 실은 대강(擡扛)이 33대나 되고 이날 전별로 준 물건은 그냥 두고 가버렸으니, 비록 탐람(貪婪)하다고는 하겠으나 무오년(59)의 왕본(王本)이나 조분(趙賁)에 비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었다.</p>	<p>庚寅/卯時，大駕至慕華館。天使張朝至而入館，百官先至于迎詔門之西，天使受五酌而起。近迎詔門下輿，與我朝百官，相揖而別。凡擡扛之物，至三十有三。是日餞驢之物，留置而去。雖云貪婪，然比之戊午王本、趙賁，則差有間矣。</p>
<p>2. 선조 2권, 1년 (1568 무진 / 명 융경 (隆慶) 2년) 2월 28일 (무신) 1번째기사 중국의 책봉 사신에게 익일연을 거행하다</p>	<p>익일연(翌日宴)을 거행하였는데, 상이 사신에게 술 5잔을 돌리고 마친 후에 궁으로 돌아왔다.</p>	<p>戊申/行翌日宴。上行酒於天使，五爵而畢後還宮。</p>
<p>3. 선조 2권, 1년 (1568 무진 / 명 융경 (隆慶) 2년) 3월 25일 (을해) 1번째기사 조강에 《논어》를 강</p>	<p>상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연 조강에 나아가 《논어》 위정편(爲政篇)을 강론하였다. 기대승이 나아가 아뢰기를, “소신이 별영위사(別迎慰使)로서 의주(義州)에 다녀왔는데 전년도 중국 사신이 왔다 갔고 금년에는 두 번이나 사신이 다녀가 역로(驛路)의 각 고을이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전년도 소신이 종사관으로 다녀왔는데 그때 농사가</p>	<p>乙亥/上御朝講于思政殿。講《論語》《爲政篇》。奇大升進啓曰：“小臣以別迎慰使，義州往還，則前年天使往還，今年兩運天使往還，驛路各官，極爲疲弊。前年小臣亦以從事官往還，</p>

하고 기대승이 중국 사신이 왔을 때의 민역에 대해 말하다

흥작인데다 중국 사신이 오지 않은 지 오래 되었으므로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고 관사까지 다 고치느라 폐농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관사를 고치는 일은 없으나 중국 사신 때문에 보리 종자를 지금에야 갈아 심기 시작하였으니 민생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공(支供)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각 고을이 역[站]에 나가 5~6일씩 머물러 기다리며 도로에서 고생하니 매우 불쌍하였습니다. 사신의 행차가 끊이지 않아 역졸이 감당하지 못하고 하루도 집에서 쉴 때가 없었으며 말[馬]도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큰 걱정이니 장차 어떻게 처치하여야 되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성이 고생한다는 것을 상계서는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일로에서 본 것으로 말하면 적임자인 수령을 앓힌 뒤에야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 수령을 가려 보내는 것은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욱 간절합니다.

두 차례 중국 사신이 다녀간 소식을 들어보니, 구(歐) 사신이 역을 걸러 치달려 인마(人馬)가 매우 다쳤고 두목(頭目)에게 밥 먹을 사이도 주지 않았으며, 두목에게 양쪽 길가에 서서 가마꾼을 돌아다니며 독촉하게 하였답니다. 또 몸소 채찍을 잡고 독촉하여 계속 '빨리 달려, 빨리 달려.'라고 소리치고, 도중에서 배고프고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헛소리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매우 괴롭게 여겼더니 그 인품은 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사람을 쓸 때 그와 같이 멀리 보내는 사역에 각별히 가려 보내야 마땅합니다. 장조(張朝)는 평양에 있을 때 다음 차례의 사신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일행의 궤짝 15개를 성밖 술이 뿔뿔한 곳에 숨겨두었다가 다음 사신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다음에 가져갔다고 하니, 요구한 것이 많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조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숨긴 것입니다. 또 구 사신은 서책을 남겨두고 장조는 의주(義州)에 돛자리와 어물(魚物)을 남겨두고서 뒷날 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 사신이 부탁한 말이니 실어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

農事凶荒，而天使不來已久，故凡事預措，至於館舍，亦皆改修，以致廢農。今年則無館舍改修之事，而以天使之故，麥粟今始耕種，民生之事，至爲可慮。支供之事，勢不可易，而各官出站，至於五六日留待，道路奔走，至爲殘忍。使命絡繹，驛卒不能堪支，無一日在家之時。馬亦疲困已極，此國家之大憂也。未知，何以處之，而可以蘇復也。生民困苦之意，自上常常留念可也。且以一路所見言之，守令得人，然後凡事可以善措。擇遣守令，在常時，亦爲關重，而今則尤爲緊關。兩運天使往還之奇聞之，則歐天使越站驅馳，人馬極傷，頭目亦無暇飲食。令頭目立兩邊巡打擔轎之人。且親自執鞭以督之，每呼曰：‘急走急走。’見中路飢困之人，以爲虛語云。人極悶之，其爲人品，非善類也。我國用人，如彼遠送之使，則各別擇送宜當。張朝在平壤間，後運天使之來，其一行櫃子十五，隱匿於城外松林鬱密之地，待後運天使過去後乃行云。雖多爲求索，而亦有畏憚朝廷之心，故隱矣。且歐天使留置書冊，張朝留席子魚物於義

	<p>다. 그러나 중국에 돌아가더라도 그 집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반드시 주사(主司)에게 고하고 바쳐야 하는데 주사가 알면 반드시 예부(禮部)에 고할 것입니다. 선물 꾸러미를 실어 보내는 것은 부당한 듯하고 또 예부가 혹시 따져 물을까 염려됩니다. 만약 후일에 다른 사신이 끝없이 요구하고 다 실어다 주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오늘을 예로 삼게 되어 뒤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니 좋은 말로 답변하여 실어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를 조정에 내리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대신들에게 수의하도록 명하였는데, 영상 이준경이 우선 실어 보내 그들의 처치를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상이 그 말을 따랐다.</p>	<p>州，以後日輸來爲言。此皆天使所言，輸給似當。然竊聞之，雖歸中原而不能盡傳其家，必告主司而推給。主司知之，則必告禮部矣。苞苴輸給，似爲不當。且恐禮部或有問之之理也。若後日求索無限，皆欲其輸給，則必以今日爲例，後弊無窮。善辭益言，而勿爲輸送，何如？幸下議于朝廷，而處之。上命收大臣議。領相李浚慶以爲：“姑先輸送，以試彼之處置，如何？”上從之。</p>
<p>4. 선조 2권, 1년 (1568 무진 / 명 융경 (隆慶) 2년) 4월 24일 (계묘) 1번째기사 영천위 신의를 귀양보내는 전교</p>	<p>정원에 전교하였다.</p> <p>“영천위(靈川尉) 신의(申儀)는 성질이 본래 패려한데 나이가 들었어도 조금도 허물을 고치지 않아 공주(公主)를 박대하여 의복과 음식을 넉넉하게 대주지 않을 뿐 아니라, 공주를 봉양하는 사람이면 며느리라도 분리하여 쫓아내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문정 왕후(文定王后)와 선왕(先王)이 승하한 후에 스스로 기뻐하며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으니 매우 무상하다. 지난번 자전(慈殿)이 을사년 사람들의 원한을 씻어주는 일에 대하여도 일을 그르친다고 논박하여 자전의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으니 그 죄악이 더욱 심하다. 이 죄상을 본다면 사형에 처하더라도 남은 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책망할 만한 사람이 못 되므로 귀양만 보낸다.”</p>	<p>癸卯/傳于政院曰：“靈川尉申儀，性本悖戾，至於年高，少不改過。非徒薄待公主，衣服飲食，使不得足。奉養公主之人，則雖子婦，亦分出之。不特此也，文定王后、先王昇遐之後，自以爲喜，多發怨言，極爲無狀。頃日慈殿乙巳之人伸雪之事，論以誤事，慈意極爲不安，其罪惡尤極。觀此罪狀，雖置死地，尙有餘罪。但不足責之人，故竄黜。”</p>

<p>5. 선조 2권, 1년 (1568 무진 / 명 융경 (隆慶) 2년) 7월 2일 (기유) 1번째기사 중국 사신 성헌과 왕새가 모화관을 통해 근정전에 오다</p>	<p>중국 사신 성헌(成憲)과 왕새(王璽)가 묘시(卯時)에 모화관에 이르러 사시(巳時) 초에 근정전에 들어왔다. 상이 먼저 이르러 백관을 거느리고서 조복 차림으로 조칙을 지영하였다. 전에 올라가 사배(四拜)·무도(舞蹈)·고두(叩頭)·산호(山呼)를 세 차례 하였다. 예가 끝나자 백관들은 물러갔다. 미시(未時)에 상이 태평관에 나아가 하마연(下馬宴)을 하였는데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상견례(相見禮)하고 일곱 순배를 한 뒤에 파하였다. 저녁에 환궁하였다.</p>	<p>己酉/天使成憲、王璽，卯時到慕華館，巳初入勤政殿。上先至，率百官以朝服，祇迎詔勅上殿，三行四拜，舞蹈叩頭山號。禮畢，百官退。未時，上以下馬宴，詣太平館。以黑團領，相見成禮，七酌而罷。夕還宮。</p>
<p>6. 선조 2권, 1년 (1568 무진 / 명 융경 (隆慶) 2년) 7월 6일 (계축) 1번째기사 상이 모화관에서 물품과 함께 중국 사신을 보내다</p>	<p>묘시에 상이 모화관에 나아갔는데 진시에 중국 사신 성헌·왕새가 이르렀다. 상이 두 차례 술잔을 돌리니 답례하고 나가 교자(轎子)를 타고 떠났다. 사신이 받은 물품은 자문지(咨文紙) 60장, 표지(表紙) 각 40장, 유목지(柳目紙) 각 5권, 붓·벼루·먹뿐이었다. 오시(午時)에 상이 환궁하였다.</p>	<p>癸丑/卯時，上詣慕華館。辰時，天使成憲、王璽至。上再行酒，天使答禮而出，乘轎而行。天使所受之物，咨文紙六十張，表紙各四十張，柳目紙各五卷，并筆硯墨而已。午時，上還宮。</p>
<p>7. 선조 2권, 1년 (1568 무진 / 명 융경 (隆慶) 2년) 12월 19일(계사) 1번째기사 주장에서 《논어》를 강하고 유경심 등이 곡식 관리 등에 대해 건의하다</p>	<p>(전략) 또 아뢰기를, “1년 경비는 매우 많은데도 지난해의 세입(稅入)은 7만 석뿐이니 옛일을 고찰하여 경비를 일체 감축시키고 수입에 따라서 지출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3년 농사에 1년 먹을 양식이 남아야 하고 30년에 10년의 양식이 남아야 된다. 국가에 3년 먹을 양식의 저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 꼴이 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국초 이래로 저축한 것이 28만 석이었는데 먹을 만한 것이 10만 석에 불과하다면 가령 내년 세입이 10만 석이 된다 하더라도 4만 석을 끌어 써야 하고 후년에 또 그와 같이 하여 3년이 되면 비축하였던 양곡이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황정옥(黃廷彥)은 아뢰기를,</p>	<p>(전략)又啓曰: “一年經費，甚爲浩繁，而前年稅入，只七萬石。經費必考古事，一切減省，量入爲出可也。古人曰: ‘三年耕，餘一年之食; 三十年，則餘十年之食。國無三年之蓄，則國非其國。’ 國初以來，所儲二十八萬餘石，而可食者，不過十萬石，則假說來年稅入，可至十萬石，而引用者四萬石。後年又如此，至於三年，則所儲</p>

	<p>“소신이 전에 경연에서 고자(庫子)들이 양곡을 훔쳐가는 데 대해서 아뢰면서 서원(書員)을 모두 없애고 고정 인원의 서리(書吏)를 배정시키면 방납(防納)의 길을 막을 수 있고 도적질하는 폐단도 없앨 수 있다고 아뢰자 이조와 호조가 같이 의논할 것으로 전교까지 내렸었는데, 그 뒤에 들으니 이조에서 서리들을 배정하여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신은 이러한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큰 일의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겨집니다.” (후략)</p>	<p>盡無矣。”黃廷彧曰：“小臣前於經席，啓庫子偷食之事。欲盡除下書員，充定定額書吏，則可杜防納之路，亦絕偷盜之弊。吏戶同議事，至於傳教，而其後聞之，則吏曹不爲定送云。小臣以爲：‘此事尙不得成，則措置大事，何以爲之?’” (후략)</p>
<p>8. 선조 3권, 2년 (1569 기사 / 명 융경 (隆慶) 3년) 4월 5일 (무인) 1번째기사 조강에서 《논어》 헌 문편의 강하고 기대승 등이 양인수의 일 등을 논하다</p>	<p>(전략) 세종(世宗) 초년에는 찬품(饌品)에 정수(定數)가 없었으며 기명(器皿)도 점점 사치스러워지고 커지므로 횡간(橫看)의 제물들을 물을 타서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니, 제향(祭享)의 일에도 미안스런 일입니다. 상탁과 기명을 개조하거나 줄이는 등 변통하여 배설(排設)한다면 이는 가중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는 경우 또 어려움이 있다면 앞 뒤로 물려서 통용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반으로 나누어 칸을 막자는 논의는 전전(前殿)에 미안할 뿐 아니라 또 후세에도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신에게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면 선처할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후략)</p>	<p>(전략) 世宗初年，饌品無定數，器皿漸就侈大，故橫看內容入之物，必至和水而用之，祭享之事，亦極未安。若改損床卓器皿，推移排設，則猶可容措。如是而又有難焉，則前後退，亦可通排處之也。分半作隔之議，不但未安於前殿，抑且大妨於後世。若令大臣更議，則或有善處之道矣。(후략)</p>
<p>9. 선조 3권, 2년 (1569 기사 / 명 융경 (隆慶) 3년) 윤6월 16일(무오) 3번째기사 대신이 자전에게 대상이 지났으니 육식을 하라고 청하다</p>	<p>대신이 자전에게 이미 대상(大祥)이 지났고 몸이 수척해졌으니 육식을 시작할 것을 두 번 세 번 아뢰었으나, 자전이 따르지 않았다.</p>	<p>大臣以慈殿已過大祥羸瘠，請開素，至再至三，慈殿不從。</p>
<p>10. 선조 3권, 2년 (1569 기사 / 명 융경 (隆慶) 3년) 윤6월 18일(경신) 1번째기사</p>	<p>왕대비전에 육식 개시를 청하는 일로 동서반 2품 이상과 양사(兩司) 전원이 대궐(大闕)로 나아갔다.</p>	<p>庚申/以王大妃殿開素事，東西班二品以上，兩司全數詣闕。</p>

<p>동서반 2품이상 관원이 왕대비전에 육식을 청하다</p>		
<p>11. 선조 4권, 3년 (1570 경오 / 명 융경 (隆慶) 4년) 4월 27일 (갑자) 2번째기사 병조 참판 백인걸이 잘못된 정치의 혁신, 을사·기묘년 적몰 재산의 환수를 청하다</p>	<p>병조 참판 백인걸(白仁傑)이 상소를 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하께서는 폐습을 통렬히 개혁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큰 지혜를 지닌 선비를 찾아내어 서로 정치에 필요한 것을 강구하여 잘못된 정사를 모두 고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상하는 공물(貢物)은 헤아려 감하고 제색(諸色)의 졸레(卒隸)들의 고통을 고르게 하며 일족(一族)과 겨린[切隣]에 지우는 폐단을 없애고 여러 고을의 명목 없는 세금을 금하며 기타 실시할 만한 방책 중 진실로 국가에 편리하고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를 기필한다면 지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후략)</p>	<p>兵曹參判白仁傑上疏, 略曰: 殿下痛革弊習, 使大臣悉心推訪(訶) [訶] 謨之士, 相與講求治具, 盡改疵政。進上貢物, 量宜減損, 諸色卒隸, 或均苦歇, 除一族切隣之弊, 禁列邑無名之稅, 其他可施之策, 苟可以便國利民者, 深究其方, 期於必行, 則及今猶可爲也。 (후략)</p>
<p>12. 선조 5권, 4년 (1571 신미 / 명 융경 (隆慶) 5년) 9월 12일 (신미) 2번째기사 전라 감사가 영암·강진·해남의 공부(貢賦)를 덜어 줄 것을 청하다</p>	<p>전라 감사가 치계(馳啓)하였다. “영암(靈巖)·강진(康津)·해남(海南) 세 고을은 양영(兩營) 사이에 끼여 있는 데다가 제주가 곧장 갈 수 있는 길목의 요충지여서 공부(貢賦)가 다른 고을보다 갑절이나 많습니다. 특히 을묘 왜변(乙卯倭變)을 겪은 뒤로는 방비에 대한 제반 일이 매우 많아 백성들이 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세 고을에는 녹미(鹿尾)·녹설(鹿舌)·쾌포(快脯)가 생산되지 않으니 장록(獐鹿)이 많이 생산되는 제주에 옮겨 정하게 하소서. 교서관의 책지(冊紙)와 장흥고(長興庫)의 견양지(見樣紙)는 정공 도감(正供都監)155) 으로 하여금 일이 덜한 내륙 지방으로 옮겨 마련하게 하소서.”</p>	<p>全羅監司馳啓: “靈巖、康津、海南三邑, 介在兩營之間, 又當濟州直路要衝之地, 貢賦十倍於他官。自乙卯經變以後, 防備諸事極多, 民甚困苦。三邑不產鹿尾、鹿舌、快脯, 請移於濟州獐鹿興產之地。校書館冊紙長、興庫見樣紙, 請令正供都監, 磨鍊移於內地事歇之地。”</p>
<p>13. 선조 5권, 4년 (1571 신미 / 명 융경 (隆慶) 5년) 10월 19일(무신) 3번째기사 간원이 고성 군수 김적(金適)이 사특하다고 탄핵</p>	<p>간원이 아뢰기를, “고성 군수(高城郡守) 김적(金適)은 성품이 사특하여 권간(權姦)에게 빌붙었습니다. 전에 유신 현감(維新縣監)으로 있을 때에 권문(權門)에 곡식을 배로 실어보냈고 또 백성들에게 못을 메우고 논을 만들게 하여 권문에게 주었기 때문에 충주(忠州) 백성들은 아직도 원망이 뼈에 사무쳐 있고 사론(士論)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한 지 오래입니다. 이조는 이러한 인물을 수령에 의망(擬望)</p>	<p>院啓: “高城郡守金適, 性本邪媚, 諂付權奸, 前爲維新縣監時, 船輸木穀於權門, 爲民填澤, 爲之作畝而與之。忠州之民, 至今怨入骨髓, 士論唾鄙久矣。吏曹, 以如此等人, 擬之守令, 亦爲非矣。請罷職不敘。” 答曰: “如</p>

<p>하다</p>	<p>하였으니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啓.”</p>
<p>14. 선조 5권, 4년 (1571 신미 / 명 융경 (隆慶) 5년) 11월 29 일(정해) 2번째기사 유희춘이 주장에서 전라도 수군들의 조운(漕運) 폐단을 아뢰다</p>	<p>(전략) 각포의 수군이 수영(水營)에 바치는 방물(方物)로서 홍소록비(紅小鹿皮)와 결궁장피(結弓獐皮) 등은 큰 병폐입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제주에는 강돈(江豚)이 사슴으로 변하여 그 생산이 끝이 없고 그 지방에는 호표(虎豹)나 시랑(豺狼)이 없어 사슴과 노루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또 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어서 소금을 굽기가 어려워 토착민들이 소금을 귀하게 여기니 지금에 각포에서 겨울에 입번하는 수군 1~2명을 뽑아 소금 1석이나 10두를 받아들여 관(官)에서 제주로 보내어 장록비(獐鹿皮)와 바꾸게 하면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중략) 또 아뢰기를, “앞서 각포의 영선(領船)에 수군을 차정(差定)하였는데 만호(萬戶)의 지공(支供)과 포중(浦中)에서 쓰는 물건으로 백문석(白紋席)·구피(狗皮)·진국(眞麩)·진유(眞油)·우력각(牛力角)·어교(魚膠)·궁현(弓絃)·인정목(人情木), 감사·수사·병사가 공장(公狀)으로 쓰는 지가(紙價) 등을 모두 바쳐야 하므로 이루 감당하기 어려워 도피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병조의 사목(事目)에서 이방(吏房)·병방(兵房)·진무(鎭撫)가 징수하게 할 것으로 하였는데, 감사와 수사에게 하유함이 어땡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금년 농사는 약간 풍작이므로 각 고을에서 연분 등제(年分等第)160) 를 알려 왔는데 하지하(下之下)만 있고 하지중(下之中)은 없었기 때문에 신이 다시 조사하여 만약 하지중에 해당되는 곳이 있으면 다시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세(田稅)로 내는 콩을 호조에서 대황두(大黃豆)로 비납하라고 한 바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니 순색(純色)인 상태(常太)로 대납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섬사에서 받아들이는 노비 신공(奴婢身貢)의 작미(作米)161) 는 매 1필마다 정미(正米) 8두로 환산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후략)</p>	<p>(전략) 各浦水軍, 以方物納于水營者, 紅小鹿皮、結弓獐皮等是病。 臣竊觀, 濟州江豚化鹿, 其產不窮, 地無虎豹、豺狼、鹿羣蕃盛, 其島在大海之中, 而水不中煮鹽, 土人貴鹽。 今若各浦冬月入番水軍一二名除出, 捧鹽石或十斗, 官送濟州, 俾易獐、鹿皮, 則庶乎兩便。” (중략) 希春又曰: “在前各浦領船, 以水軍差定。 凡萬戶支供, 浦中用度, 如白紋席、狗皮、眞麩、眞油、牛力角、魚膠、弓絃、人情木、監、兵、水使公狀紙價, 莫不捧上, 不勝支當, 逃避。 頃年兵曹事目, 吏、兵房鎭撫當徵事, 監司、水使處, 下諭何如?” 又曰: “今年農事稍稔, 故各官報年分等第, 只有下之下, 而無下之中處。 臣令更覈, 若有下之中處, 更定田稅太。 戶曹令大方黃豆備納, 甚艱苦, 以純色常太代納, 便當。 又司贍寺納奴婢身貢作(米) [木], 每一匹, 正米八斗, 則適中矣。”</p>

15. 선조 6권, 5년 (1572 임신 / 명 융경 (隆慶) 6년) 5월 1일 (을유) 1번째기사 조강에서 《서전》을 강하고 기대승 등이 문소전 제기(祭器) 문 제 등을 아뢰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으로 조강에 나아가 《서전(書傳)》의 순전(舜典)을 강하였다. 기대승(奇大升)이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의 일을 여러 날 논계하였으나 유음(兪音)이 없으니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초에 정한 뜻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물(祭物)의 횡간(橫看)은 조종조에서 정한 것인데 뒤에 오면서 제기(祭器)를 점점 크게 개주(改鑄)하여 그릇만 커지고 제수(祭需)는 그대로이다보니 심지어는 물을 타기도 하는 등 너무나 불경스러워 모두가 미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84) 기사년(185) 에 이르러 전전(前殿)의 탁자가 좁아 배설하기가 어렵게 되자 물의(物義)가 ‘그릇만 커서 이런 불경한 일이 있고 또 배설하기도 어려우니 재량하여 제기를 조금 줄여서 제수를 알맞게 담아 탁자 위에 모두 배설할 수 있게 하여 제수가 적은 것과 배설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침(後寢)의 면(麪)186) ·증(蒸)187) ·편적(片炙)은 조금씩 남는데 하나의 제기에서 남는 것은 비록 적지만 모두 합하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뢰어 감(減)하고자 한 것인데 유사가 잘 모르고 모든 제수를 감하였으니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전날의 규정대로 하라는 상의 하교는 지당하십니다. 다만 구기(舊器)로서 제수와 서로 알맞은 것은 그대로 두고 맞지 않는 것은 변통하여 맞게 함이 정례(情禮)에 더욱 합당합니다. ‘증(蒸)과 면(麪)이 남기는 하지만 실지로 살펴보면 적다.’고 하는데, 적더라도 중도에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수를 감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여긴다면 상의해보면 처리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주발의 용량이 전에 비하여 적은 듯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1푼(分)만 더 크게 한다면 둘레가 더 커질 것이니 다시 헤아려서 처리한다면 곡진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는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하는데 제수를 재량하여 감하는 것이 미안하다 하여 지금에 와서 전날의 규정대로 한다면, 후침(後寢)과 전전(前殿)의 상제(常祭) 때는 그래도 되지만 친제(親祭)

乙酉/上御朝講于宣政殿，講《書傳》《舜典》。奇大升啓曰：“文昭殿之事，累日論啓，而兪音尙闕，不勝鬱焉。當初政定之意，其有由矣。祭物橫看，則祖宗朝所定，而祭器之隨後改鑄者，漸以侈大。仍致器大而膳小，人皆知和水不敬之未安。至于己巳，前殿桌面狹窄，難於排設，物議以爲器大，而致有此褻瀆。且難排設，不如小加裁削，適盛其膳品，容設於桌面之兩得其宜也。第其後寢，麪蒸片炙，有少贏餘。一器之所餘雖少，而合而計之，則爲不少，故欲啓達減改，而有司不察，一應祭膳，莫不裁減，何未安如之？今復舊規，上教至當。但舊器之與膳相稱者，則仍之可也。其不稱者，變而通之，尤合於情禮矣。烝麪，雖有所餘，而對驗則小云。雖小，使之適中可也。若以裁損祭膳爲未安，使之商議，則必有處之之道矣。臣聞碗之容入，比前似少，而不甚相遠，加之一分，則圓經所周，分數必多，若更商量，則曲盡矣。祭致其誠敬，裁減未安。今若仍舊，則後寢及前殿之常祭，則猶之可也。至於視祭時，器之

	<p>때에는 제수가 8~9가지나 더 많아지게 되니, 배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략) 유희춘(柳希春)·권철(權轍)·윤현(尹鉉)이 각각 조선(漕船)의 계획을 말하자, 기대승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조운의 폐단이 생기니 지금은 우선 그 근본을 다스려 백성을 소복(蘇復)시킬 계획을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였다. 윤현이 또 군자 삼감(軍資三監)의 조미(糙米)189) 와 사섬시(司贍寺)의 면포가 부패하고 고갈된 폐단에 대하여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섬시와 군자감이 함께 고갈되었으니 귀신이 실어다 준다고 하더라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도적을 맞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별로 소비한 것도 없는데 이와 같으니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후략)</p>	<p>加者，多至八九，排設難矣。” (중략) 柳希春、權轍、尹鉉，各陳漕船之策。大升啓曰：“民之流離，而漕運之弊生。今當先治其本，講求蘇復爲便。” 尹鉉又陳軍資三監糙米、司贍綿布陳腐匱乏之弊。上曰：“司贍軍資，同然匱竭。雖神運鬼輸，亦無可奈何。不爲偷盜之資，則不可知也。別無用煩而如此，必有其故矣。” (후략)</p>
<p>16. 선조 6권, 5년 (1572 임신 / 명 융경 (隆慶) 6년) 9월 13일 (병신) 1번째기사 객인(客人) 연향례를 실시하다</p>	<p>객인 연향례(客人宴享禮)를 행하였다. 진시(辰時) 정각에 상이 인정전에 나와 앉고 입시하는 여러 신하들이 전정(殿庭)에 들어와 사배(四拜)한 뒤에 종실들은 전(殿)에 올라가 동당(東堂)에 앉고 재상은 서벽(西壁)에 앉았다. 칠미 구작(七味九爵)에 또 선운주(宣醞酒)가 있었다. 신시(申時)에 파하였다.</p>	<p>丙申/爲客人宴享禮。辰正，上坐于仁政殿，入侍諸臣，入庭四拜，然後宗室升殿坐于東堂，宰相坐于西壁。凡七味九爵，又有宣醞，至申時乃罷。</p>
<p>17. 선조 6권, 5년 (1572 임신 / 명 융경 (隆慶) 6년) 11월 2일 (갑신) 1번째기사 태평관에서 중국 사신</p>	<p>이른 아침에 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평관에 나가서 익일연(翌日宴)을 베풀었다. 아홉 순배를 돌린 뒤 상이 다시 잔을 돌리고 끝내었다. 저물녘에 눈이 그치어 환궁하였다. 사신은 어제 감찰 유의(甘察襦衣)를 받았고, 오늘은 붓·먹·종이·벼루를 받았는데, 또 울두(熨斗)218) ·향로(香爐)·화화(畫花)를 요구했다. 사신은 동지인 7일에 망궐례(望闕禮)를 행한 뒤에 떠난다고 했다. 사신은</p>	<p>甲申/早朝，上乃出，率百官，詣太平館，設翌日宴。行九爵，上再行酒而止。日暮雪止，還宮。天使昨受甘察襦衣，今受筆墨紙硯，又索熨斗、香爐、畫花。天使以初七日冬至，行望</p>

<p>에게 익일연을 베풀다</p>	<p>내일 알성(謁聖)219) 할 예정이다.</p>	<p>闕禮後，發行云。 天使，明日將謁聖。</p>
<p>18. 선조 6권, 5년 (1572 임신 / 명 융경(隆慶) 6년) 11월 3일 (을유) 1번째기사 중국 사신이 성균관에 서 알성하고 재상들과 의식을 거행하다</p>	<p>사신이 성균관에 도착하니 동지성균관(同知成均館) 유희춘(柳希春)과 가관관(假館官) 원혼(元混)·강섬(姜暹)·김귀영(金貴榮), 대사성 홍천민(洪天民) 등과 관반(館伴) 노수신(盧守愼), 원접사 정유길(鄭惟吉)이 사신을 정중히 맞이하여 성전(聖殿) 뜰에 들어가서 알성하고 향을 올렸다. 사배(四拜)한 뒤에 전에 올라서 궤(櫃)를 열고 공경스레 보았다. 명륜당에 좌정하자 원혼 등 여덟 재상이 두 사신 앞에 나아가 각각 재배한 뒤 물러나고, 관의 당하 관원들이 잇따라 재배하고 물러나고, 유생들은 두 번에 걸쳐 뜰아래에서 재배례를 행하였다. 사신은 재상들에게는 답음(答揖)하고 당하관에게는 손만 가지런히 모으고 유생들에게는 역시 답음하였다. 재상들은 서벽(西壁)에 설치된 의자에 앉았다가 사신이 말을 하면 서로 존경하는 뜻으로 손을 위로 가지런히 올렸다. 다례(茶禮)를 행할 때는 손으로 흰 잔을 받쳐 들고 서로 권한 뒤에 마셨다. 정유길은 상의 패초(牌招)로 행례에는 참석을 못한 채 먼저 예궐했다. 오후에 도승지 목첨(睦詹)이 궁온(宮醞)220) 을 가지고 왔다. 사신이 재상들에게 묻기를, “이 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 재상들이 답하기를, “대인(大人)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사신이 음주하는 의식을 의논하니 목첨이 술동이 앞으로 가서 금대(金臺)의 잔에 술을 담아 받쳐 들고 사신에게 나아가 공경히 읍하니, 사신이 답음하고 나서 받았다. 승지는 그대로 잔대를 두 손으로 받쳐 든 채 사신이 잔을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잔을 받아 서로 읍하고 또 술동이 앞으로 가서 잔에 술을 채워 앞서와 같이 두 사신에게 각각 두 잔씩 권하였다. 예가 끝난 뒤 상사(上使)는 재상 9인이 서벽에 좁게 앉은 것을 보고 4인은 동벽으로 읍</p>	<p>乙酉/天使到成均館。 同知成均館柳希春，假館官元混、姜暹、金貴榮、大司成洪天民等及館伴盧守愼、遠接使鄭惟吉祇迎天使，入聖殿庭，謁聖上香，前後四拜，遂升殿開櫃敬視，遂坐明倫堂。 元混等八宰相，進於兩使前，各行再拜而退。 館堂下員等，又就行再拜而退。 群儒生，於庭下行再拜禮者再。 天使於宰樞之拜，答揖。 於堂下館員之拜，只立而肅手。 於儒生之拜，亦答揖。 坐時，宰樞坐交倚于西壁。 凡天使有所言，相敬，必俱上手，乃行茶禮。 只以手捧白鍾，相告而飲。 鄭惟吉，以上牌招未入行禮，而先詣闕。 午後都承旨睦詹，持宮醞來。 天使問于諸宰相曰：“此酒，何以爲之？” 宰樞等答曰：“在大人區處耳。” 天使乃議飲酒之儀，睦詹詣尊所，奉宮醞于金臺之盞，詣天使所，揖而敬之，天使答揖而受之。 承旨，仍以兩手持盞臺，天使飲畢，承旨受其盃而相揖。 又詣尊所，盛酒于盃，如前儀。 兩使前，各呈二盃。 禮畢，上</p>

	겨 앉고 5인은 그대로 서벽에 있게 하였다. 9인의 재상이 일제히 나와 한 잔을 올린 다음 사신과 9인의 재상이 일제히 술잔을 들고 서로 읊한 뒤에 마시고 사신이 다시 답으로 잔을 돌려 앞서와 같은 의식으로 마셨다. (후략)	使，以宰樞九人，窄坐西壁，令四人移坐于東壁，五人仍在西壁。令九人齊出，行一盃天使。乃九宰相一時持盃，而相揖遂飲。天使復答行巡盃，如前儀。
19. 선조 6권, 5년 (1572 임신 / 명 융경 (隆慶) 6년) 11월 5일 (정해) 1번째기사 사신이 한강을 유람하다	사신이 한강에서 유람하였는데, 시연(侍宴)하는 재상으로 영상과 좌상 등 7인과 원접사 및 관반을 합해서 9인이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	丁亥/天使遊觀漢江。侍宴宰相，領、左相等七員，并遠接使館伴九員，入侍行酒。
20. 선조 6권, 5년 (1572 임신 / 명 융경 (隆慶) 6년) 11월 6일 (무자) 2번째기사 중국 사신과 대작할 재상들이 와서 예를 행하다	오후에 오늘 낮 사신과 대작할 재상인 병조 판서 김귀영(金貴榮)과 대사헌 이양원(李陽元), 원접사 정유길, 관반 노수신 등 5인이 모였다. 사신이 대청으로 나오자 다섯 재상이 앞으로 나아가 읊하였다. 사신이 북벽(北壁)의 의자에 앉고 다섯 재상은 서벽의 의자에 앉아서 각자 탁자를 마주하여 차례로 두 사신에게 술을 권하였다. 한 번 권할 때마다 두 잔씩을 주고 네 잔씩을 받았는데, 이쪽은 중배(中盃)만을 권하였다. 예가 끝난 뒤 물러갔다.	午後，天使前，今日晝奉杯宰相，兵判金貴榮、大司憲李陽元、遠接使鄭惟吉、館伴盧守愼，合五人同坐，天使出大廳，五宰相趨進而(揖) [揖]。天使坐交倚于北壁，五宰相坐交倚于西壁，各對桌子床，次次行酒于兩使。每遭進二盃，輒受四盃，於此邊只行中盃，禮畢而退。
21. 선조 6권, 5년 (1572 임신 / 명 융경 (隆慶) 6년) 11월 7일 (기축) 3번째기사 태평관에서 잔치를 하다	사시에 상이 태평관에 나아가 잔치에 참석했다. 8재신(宰臣)이 술을 돌렸는데 일곱 순배까지 돌리고 상이 다시 술을 돌린 뒤 끝냈다.	巳時，上至太平館赴宴。八宰臣行酒，至七爵。上再行酒而罷。
22. 선조 6권, 5년	이른 아침에 상이 태평관에 나아가 상마연(上馬宴)을 베풀었다. 술을 여덟 순	庚寅/早朝，上詣太平館，上行上馬宴，

<p>(1572 임신 / 명 융경 (隆慶) 6년) 11월 8일 (경인) 1번째기사 태평관에서 상마연을 베풀다</p>	<p>배까지 돌린 뒤 상이 다시 술을 돌리고 끝냈다.</p>	<p>八爵再行酒而罷行。</p>
<p>23. 선조 6권, 5년 (1572 임신 / 명 융경 (隆慶) 6년) 11월 9일 (신묘) 1번째기사 사신을 모화관에서 전 송하다</p>	<p>사신이 돌아갔다. 상이 모화관에 나아가니 사신 한(韓)·진(陳) 두 사람이 사시가 되어서 도착했다. 상이 관내(館內)에서 전송연(餞送宴)을 베풀었다. 세 순배를 돌린 뒤 다시 술을 돌리니 사신은 회경례(回敬禮)를 행하였다. 사신이 예단(禮單)을 받았는데 끝으로 적호피(赤狐皮) 10벌씩을 각각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증물(贈物)은 사은사(謝恩使)를 보낼 때 들여보내기로 약속하고 상이 또 전별주 한 잔을 권하고 관문(館門) 밖의 뜰아래까지 나가 전송하였다. 이때 종실(宗室)들은 영조문(迎詔門) 안에서 도열하여 있고 문무 백관은 문밖 남쪽에서 도열하여 서 있었다. 사신이 가마에서 내리자 종실과 백관이 모두 재배했다. 사신이 답음(答揖)한 뒤 감사하다는 말과 위로의 말로 치사하고 떠났다. 신시에 백관이 어가(御駕)를 따라 돌아왔다.</p>	<p>辛卯/天使回程。 上詣慕華館， 天使韓、陳二員， 巳時始至。 上設餞宴于館內， 三爵再行酒， 天使行回敬禮。 天使受禮單， 末付赤狐皮各十領， 又約別贈物， 可付謝恩使入送。 上又行餞盃， 送于館門外階下。 宗室列立於迎詔門之內， 文武百官列立門外之南邊。 天使下轎， 宗室及百官皆再拜， 天使答以揖， 致詞多謝慰勞而去。 申時， 百官隨駕還。</p>
<p>24.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1월 12일 (계사) 1번째기사 경연에서 《서경》을 강하고, 불교·향약·교서관의 교정 등을 논의하다</p>	<p>(전략) 강독이 끝나고서, 도승지 박승임(朴承任)이 수찬 우성전(禹性傳)과 함께 탐전(榻前)에 나아가 아뢰기를, “요즈음 날씨가 춥습니다. 내일 문소전(文昭殿)·연은전(延恩殿)에서 시선(視膳)하신다고 들었는데 하지 마소서. 성체(聖體)가 쾌하지 않으시니, 손상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이 때 위에서 유행하고 있는 감기를 앓은 끝이므로 신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새해에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려는 것이다.” (후략)</p>	<p>(전략) 講畢， 與都承旨朴承任、修撰禹性傳， 進 榻前陳曰：“近來日候寒凜， 伏聞明日文昭殿、延恩殿視膳， 請勿爲聖體不快， 恐有傷也。” 上， 是時， 感冒時令之餘， 故臣等云然。 上曰：“新歲未行， 故欲爲。 (후략)</p>
<p>25.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1월 12일</p>	<p>승정원(承政院)이 날씨가 추우므로 시선(視膳)하지 말 것을 다시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p>	<p>承政院復請， 日寒勿爲視膳。 上從之。</p>

(계사) 2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추우니 시 선하지 말기를 청하다		
26.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1월 19일 (경자) 1번째기사 흰무지개가 해를 꺾자, 반찬을 줄이라고 명하 는 전교	백홍(白虹)이 관일(貫日)하였다. 상이 전교하였다. “근래 재변(災變)이 끊이지 않는데 이제 또 이러하므로 아주 미안하니, 피전 감선(避殿減膳)251) 하겠다.”	庚子/白虹貫日。 上傳曰：“近來災變 不絕，今又如此，至爲未安。 避殿減 膳。”
27.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1월 21일 (임인) 1번째기사 경연에서 《서경》을 강하고, 유희춘이 구주 도를 바치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듣건대, 아침 찬선(饌膳)을 아직 드시지 않고 오고(午鼓)에 이르렀다 하니, 놀랍고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이 저녁밥은 혹 거를 수 있 으나 아침·점심은 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흰죽을 들면 위기(胃氣)가 부드러워져서 진액(津液)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양생(養生)하는 경험방(經驗 方)이니, 상께서 시행하소서.”	希春啓曰：“伏聞，朝膳未進，至於午 鼓，不勝驚悶。 大抵人夕食，猶或可 闕，而朝晝不可闕，侵晨進白粥，暢胃 氣生津液。 此乃養生經驗之方也。 伏願施行焉。”
28.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1월 24일 (을사) 1번째기사 독제를 지내다	이날 독제(蠱祭)를 지낸 뒤에 백관(百官)이 음복(飲福)하였다.	乙巳/是日蠱祭後。 百官飲福。
29.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4월 27일 (병자) 1번째기사	해운 판관(海運判官) 황윤길(黃允吉)이 조군(漕軍)을 구제할 계책을 강구하여, 충청도의 병선(兵船)에 실을 세미(稅米)를 호남(湖南)의 창고에서 차차로 옮기 고, 또 염세포(鹽稅布)·재상 수속(災傷收贖)·노비 공포(奴婢貢布)를 쌀로 바꾼 것 따위는 사선(私船)을 샅내어 날라서 모자라는 것을 채우자고 하였다. 그	丙子/海運判官黃允吉講求漕軍之策， 欲以忠淸兵船載稅米，湖南之倉次次推 移。 又鹽稅布、災傷收贖、奴婢身 貢、作米之類，賃私船以運，以補不足

<p>해운 관관 황윤길이 조군을 구제할 방책을 마련하자 삼공 등에게 알리다</p>	<p>계책이 매우 좋으므로 삼공(三公)과 판부사(判府事) 이공(李公)308) 에게 두루 알리니, 다들 좋겠다고 하였다. 황윤길이 글로 답하여 알리기를 ‘조정(朝廷)의 첨의(僉議)를 얻어 조졸(漕卒)이 소생할 길을 얻는다면, 어찌 비직(卑職)이 터럭만한 책무를 조금 잘한 것일 뿐이겠는가. 실로 국가 백년의 이익이다.’ 하였다.</p>	<p>云。其爲策甚良，遍白于三公及判府事李公皆以爲可。黃允吉以書答報云：“若蒙 朝廷僉議，漕卒得蘇息之路，則豈但卑職，少效絲毫之責，國家百年之利。”云。</p>
<p>30.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5월 10일 (기축) 1번째기사 공의전이 담천이 일다</p>	<p>공의전(恭懿殿)이 엿저녁에 담천(痰喘)이 다시 일어나서 편안히 누워 있을 수 없으므로 계자황(鷄子黃)·죽력(竹瀝)·강즙(薑汁)을 먹고 곧 잤으나 깰 듯 자는 듯하였다. 대개 중병(重病)은 조금 덜하여졌으나 아직도 왕래(往來)가 무상(無常)하였다.</p>	<p>己丑/恭懿殿，昨夕痰喘復作，未得安臥。服雞子黃、竹瀝薑汁，仍次臥枕，似覺似寢。蓋重病雖已少減，而尙往來無常也。</p>
<p>31.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5월 24일 (계묘) 1번째기사 정원이 의성전 탄일 하례를 멈추라고 청하다</p>	<p>정원이 아뢰기를, “오는 25일 의성전(懿聖殿) 탄일(誕日)의 진하(陳賀)를 권정례(權停禮)로 거행 하라고 전교하신 것은 오로지 공의전(恭懿殿)께서 미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중(明中)께서 인종을 아버지처럼 여기셨으므로 의성전(懿聖殿)께서 공의전(恭懿殿)께 대하여서도 그 의리가 같은데 공의전(恭懿殿)께서 이제 겨우 차도가 있어 찬선(饌膳)을 드시나 평상을 회복하지 못하셨으므로 하례받기가 미안하실 것이니, 하례를 멈추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공의전이 옥후(玉候)가 청화(淸和)하니 내일은 시약청(侍藥廳)이 물러가 있으라고 전교하였으나, 상이 시약청은 아직 물러가지 말라고 명하였다.</p>	<p>癸卯/政院啓曰：“來二十五日，懿聖殿誕日，陳賀權停禮行之事 下教者，專爲恭懿殿未寧故耳。明廟父視 仁廟，懿聖之於恭懿，其義同焉。恭懿殿今纔向差，而進膳尙未復常，受賀未安。請命停賀札禮。” 上從之。恭懿殿傳教：“玉候淸和，明日侍藥廳退在事。” 上命侍藥廳姑勿退。</p>
<p>32.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7월 24일 (임인) 4번째기사 선부가 어사를 파견할 일, 상가의 개정, 환</p>	<p>헌부(憲府)가 아뢴 것은 ‘올해에는 곳곳에 수재(水災)가 있고 북도(北道)는 또 한재(旱災)로 식량이 모자라니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을 보내어 두루 답험(踏驗)하지 말고, 다만 어사(御使)를 보내어 간략하게 적간(摘奸)하기를 청한다.’는 일과 상가(賞加)를 개정(改正)하는 일 및 환미(換米)하는 일과 문소전(文昭殿)의 설리(薛里)와 입번(入番)한 종친(宗親)이 수박이 크다고 받지 않아서 찬선(饌膳)에서 빠지게 한 일과 북병사(北兵使) 장필무(張弼武)를 파직하는</p>	<p>府啓：“今年處處水災，北道又以旱災乏食，不宜遣災傷敬差官，遍歷踏驗。請只遣御使，從簡摘姦事，賞加改正事，換米事。文昭殿薛里及入番宗親，西瓜體大而不納，以致闕膳事，北兵使張弼武罷職事。” 上答曰：“盡喻，故</p>

<p>미, 북병사 장필무의 파직 등을 논하다</p>	<p>일이었는데, 상이 답하였다. “다 유사한 바이므로 윤택하지 않는다. 장필무는 갈아 차출하라. 파직은 윤택하지 않는다. 경차관을 보내지 않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p>	<p>不允。張弼武遞差，罷職則不允。勿遣敬差事，依啓。”</p>
<p>33.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7월 25일 (계묘) 1번째기사 《서경》을 강하고 유희춘이 풍저창의 쌀과 공미를 교환하는 문제 등을 논하다</p>	<p>좌상(左相) 박순(朴淳), 동지경연(同知經筵) 박근원(朴謹元), 특진관(特進官) 임열(任說)·김계휘(金繼輝), 승지(承旨) 윤복(尹復), 교리(校理) 송응개(宋應漑), 수찬(修撰) 이성중(李誠中)이 함께 경석(經席)에 들어갔다. 《서경(書經)》 감서편(甘誓篇)을 강독(講讀)하였다. 끝나고서, 신(臣) 유희춘(柳希春)이榻前(榻前)에 나아가 아뢰기를, “함경도의 내수사 공미(內需司貢米)를 풍저창(豐儲倉)의 쌀과 서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풍저창의 쌀과 공미를 서로 바꿀 필요가 없다. 본디 옳길 곳이 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에 입번(入番)한 종친(宗親)과 환관(宦官)이 감히 쓸 만한 수박을 인정(人情)이 부족하다 하여 고의로 퇴짜를 놓아 찬선(饌膳)에서 빠지게 까지 하였으니, 종친 및 동참(同參)한 관원은 파직하고 환관과 아랫사람은 조옥(詔獄)에서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그렇지 않다. 찬선에서 빠지게 한 것을 논하여 공상(供上)이 부족하다고 천천히 아뢴다면 오히려 괜찮겠으나, 이제 이렇게 아뢰니, 이것은 결코 따를 수 없다.” 하였다. (후략)</p>	<p>癸卯/左相朴淳、同知經筵朴謹元、特進官任悅、金繼輝、承旨尹復、校理宋應漑、修撰李誠中，同入經席，講《書》之《甘誓》。既畢，臣希春詣榻前陳：“咸鏡內需司貢米，不可與豐儲倉之米相換。”上曰：“不必與豐儲倉貢米相換。自有推移之處。”又陳“文昭殿入番宗親及宦官，敢將可用西瓜，以人情不足，故退之，而至闕膳，請宗親及同參官員罷職。官員及下人，詔獄推考。”上曰：“此事不然。若論其闕膳，而以爲可以徐啓，供上之不足，則猶之可也。今啓如此，此決不可從也。”</p>
<p>34.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9월 26일</p>	<p>헌부가 아뢰기를, “공판(公辦)에 관한 일은, 그 폐해를 논한다면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인데 고루한 소견에 견제되고 있습니다. 신들이 사옹원(司饗院)·예빈시(禮賓寺)·풍저</p>	<p>府啓：“公辦一事，論其害，則在所必革，而掣肘於固陋之見。臣等取見司饗院、禮賓寺、豐儲倉闕內外供饋式</p>

<p>(계묘) 2번째기사 헌부가 공판 피해는 백성 목숨, 창름 고갈, 염치의 도에 관계된다 며 파기를 청하다</p>	<p>창(豐儲倉)이 궐내(闕內)·궐외(闕外)에서 공궐하는 식례(式例)와 횡간(橫看)364) 및 《대전(大典)》 365) 의 본의를 살펴보니, 사옹원 옹인(饗人)의 일은 궐내의 공궐을 맡는 것이고 예빈시의 직무는 빈객(賓客)의 연향(宴享)에 대한 공궐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이밖에 크게는 육조(六曹)부터 작게는 소각사(小各司)의 당상(堂上)과 참상(參上)·참하(參下)에게 지공(支供)하는 미태(米太)·염장(鹽醬)·어염(魚鹽) 따위는 나누어 주는 데 정수가 있고 차등이 있으나 본아문(本衙門)이 익혀 장만하여 공궐한다는 글이 따로 없으니, 법을 세운 당초에는 필시 중국에서 월봉(月俸)으로 주는 것을 본떠서 각각 스스로 공궐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공판의 창설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백성을 해롭게 하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후략)</p>	<p>例橫看及大典本意，則司饗院饗人之役，掌闕內供饋也。禮賓寺之爲司，主賓客宴享供饋也。外此而大而六曹，至小各司堂上及參上參下之供，若米太鹽醬魚鹽之屬，其俵發有數有差，而別無本衙門熟辦供餉文字，則當立法初，必倣中朝月俸之給，使各自爲供，而公辦之設，不知起於何時，毒生民、毀風俗，一至於此也。(후략)</p>
<p>35.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10월 10 일(정사) 3번째기사 유희춘이 공판은 알맞 게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아뢰다</p>	<p>유희춘이 의논드렸다. “공판의 폐단은 참으로 바로잡아야 마땅한 것입니다마는, 일체 가공할 경우 먼데에서 밥을 지어 싸가지고 공청(公廳)과 성 밖의 종사하는 곳으로 가자면 겨울철에는 얼고 여름철에는 쉬어서 먹는 자가 비위를 손상하고 늙고 병든 신하는 더욱 병이 나기 쉬울 것입니다. 또 녹(祿)도 없고 구사(丘史)도 없는 관원과 녹사(錄事)·서리(書吏)의 무리가 배를 곯는 걱정을 면하지 못할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공판은 횡간에 실려 있고 나무 값까지 주도록 조종조 이래로 구규(舊規)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는 알맞게 하는 것이 귀하다고 여깁니다. 이제 다시 재량하여 음식의 그릇 수를 줄여 간략하도록 힘쓰고, 사원(司員)이 친지를 영전하는 등 주식(酒食)이 소용되는 일체의 모임은 엄금하도록 신명(申明)하여 예전 처럼 범람하지 못하게 한다면, 위에서 신하들을 아끼고 전복(典僕)을 소생시키는 도리에 있어 둘 다 안전하여 해로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재결하소서.”</p>	<p>柳希春議：“公辦之弊，誠所當救。但一切家供，則自遠炊食，寒來公廳及城外從事之處，冬月則凍沍，夏日則失味，食之者傷損脾胃，老病之臣，尤易生疾病。又無祿無丘之員，錄事書吏之徒，恐不免枵腹之患，亦不可不慮。臣愚以爲：‘公辦載在橫看，至給木價，自祖宗朝以來，舊規已成，救弊之道，得中爲貴。’今若更爲裁減，饌品器數，務從簡約。凡司員朋舊迎餞，一應酒食之會，申明嚴禁，使不得如前濫觴，則其於仁聖體群臣蘇典僕之道，庶幾兩全而無害。伏惟上裁。”</p>

<p>36.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11월 11 일(정해) 1번째기사 대전의 탄일이라 하례 를 행하다</p>	<p>대전(大殿)의 탄일(誕日)이므로 하례(賀禮)를 거행하였다. 중사(中使)가 대객(對客)으로서 술을 내렸는데, 유희춘(柳希春)·김귀영(金貴榮)과 예조(禮曹)·사재감(司宰監)·사포서(司圃署)·장원서(掌苑署)·내자시(內資寺) 등의 관원이 받아 마시고 물러갔다.</p>	<p>丁亥/以大殿誕日, 行賀禮。 中使以對客賜酒。 柳希春、金貴榮, 禮曹、司宰、司圃、掌院 [掌苑]、內資等官。 受飲而退。</p>
<p>37. 선조 7권, 6년 (1573 계유 / 명 만력 (萬曆) 1년) 11월 21 일(정유) 4번째기사 《서경》을 강하고 김 우옹이 천리인 인의예 지 등을 강론하다</p>	<p>(전략) 계사(啓事)가 끝나고서 각각 자리로 물러가니, 안주 한 소반과 큰 잔에 술을 내려 세 차례 잔을 돌렸다. 최후의 한 차례는 매우 취하여 마실 수 없으므로 신과 이증이 못하겠다고 사양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마시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시신(侍臣)이 다들 매우 취하여 소반의 안주를 소매 안에 넣고 나왔다.</p>	<p>(전략) 啓畢, 各退就位。 賜肴一盤, 賜酒一大爵, 巡杯三次。 最後一次, 醉甚不能飲。 臣與李增出, 辭以不能, 上曰: “然則勿爲可也。” 侍臣皆醉甚, 納盤肴袖中而出。”</p>
<p>38. 선조 8권, 7년 (1574 갑술 / 명 만력 (萬曆) 2년) 1월 15일 (신묘) 1번째기사 유희춘이 앞서 올린 식료 단자를 보완하여 올리겠다고 아뢰다</p>	<p>유희춘이 아뢰기를, “신이 앞서 올린 비위 조리에 관한 해설이 미진한 데가 있으니 신에게 내리셔서 보완하여 다시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알았다고 답하고, 즉시 전날 서계한 단자를 내주었다. 유희춘이 물러나와 다시 마련하기를 의논하니, 유진(柳瑱)이 말하기를, “의원 유지번(柳枝蕃)을 불러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유희춘이 그가 온 것을 보고서 물으니, 답하기를, “전일 열람할 적에 참으로 남김없이 했습니다.” 하였다. 유희춘이 말하기를, “담채(淡菜)도 첨입(添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유지번이 매우 좋다고 말하였다. 유희춘이 드디어 신시·유시 이전의 식</p>	<p>辛卯/柳希春啓曰: “臣頃者所獻調理脾胃之說, 有未盡者。 請命下臣, 得修補更進。” 上答曰: “知道。 卽出前日書啓單子以付之。” 希春退議更修。 柳瑱曰: “宜招柳醫枝蕃商確。” 希春見其來, 問之則曰: “前日之覽, 固無餘蘊。” 希春曰: “淡菜添入, 何如?” 枝蕃曰: “甚善。” 希春遂添入申酉前飯及甘瓜過而傷脾及西瓜無害, 而不可過多, 霜後尤不可食。 石花雖云無害, 而性實冷滑, 雖煮亦不可多食。 蜜安</p>

	<p>사와, 감과(甘瓜)449) 는 과식하면 비장을 손상한다는 것과, 서과(西瓜)450) 는 해롭지는 않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서리가 내린 뒤에는 더욱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석화(石花)는 해롭지 않다고는 하지만 실지는 성질이 차갑고 미끄러워 삶은 것이라도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꿀은 오장을 편하게 한다는 것 등의 조목을 첨입하여 다시 올릴 단자를 정서한 다음 입계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p>	<p>五臟等條正書，更呈單子入啓。”傳曰：“知道。”</p>
<p>39. 선조 8권, 7년 (1574 갑술 / 명 만력 (萬曆) 2년) 1월 29일 (을사) 1번째기사 조강을 하고 유희춘이 고집을 버리는 일이 중요함을 진언하다</p>	<p>(전략) 재삼 칭탄하자, 유희춘이 즉시 일어나 사은하였다. 제신(諸臣)의 진언이 끝나자 물러가서 빈청에 내린 음식을 먹었다.</p>	<p>稱歎再三。臣卽起謝，諸臣進言畢，退食宣飯于賓廳。</p>
<p>40. 선조 8권, 7년 (1574 갑술 / 명 만력 (萬曆) 2년) 2월 23일 (무진) 1번째기사 유희춘이 진강하고 서경덕의 학문 등을 아뢰다</p>	<p>(전략) 유희춘이 아뢰기를, “경덕의 학술은 수리에 주력하여 마치 소강절(邵康節)·채원정(蔡元定)과 정자(程子)·주자(朱子)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이황(李滉)이 적실하지 못함을 논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실천은 있었습니다.” 하였다. 끝나고 선반(宣飯)를 먹었다.</p>	<p>(전략) 希春曰：“敬德，學術主數，若邵康節、蔡元定之於程、朱，故李滉論其不的。然道德踐履，則有之矣。” 食宣飯。</p>
<p>41. 선조 8권, 7년 (1574 갑술 / 명 만력 (萬曆) 2년) 4월 10일 (갑인) 1번째기사 종 곤이가 제물에 쓸 잣을 훔친 죄를 계복</p>	<p>아침에 계복(啓覆)이 있었다. 봉상시(奉常寺)의 13세의 종 곤이(昆伊)가 제물(祭物)로 쓸 잣을 도둑질한 것인데, 상이 사형을 감하여 조율(照律)하도록 명하였다.</p>	<p>甲寅/朝啓覆，奉常寺十三歲之奴昆伊偷取祭栢子者。上命減死照律。</p>

하자 사형은 감하다		
42. 선조 8권, 7년 (1574 갑술 / 명 만력 (萬曆) 2년) 5월 2일 (을해) 1번째기사 정시에 들어온 유생에 게 시제를 내려 시험 하다	(전략) 미시(未時)에 상이 환궁(還宮)하면서 입시한 제신(諸臣)에게 음식을 먹 이도록 명했고, 이어 도로 나왔다. 신시(申時)가 되자 바람이 매우 쌀쌀하므 로 승지가,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이 미안하다고 아뢰니, 상이 곧 환궁했다. 유 시(酉時)가 되어 등급 매기기를 끝내고 시권과 함께 입계(入啓)하니, 상이 개 봉(開封)하였다가 내려 보내며 사관이 다시 단자(單子)를 써서 들어왔다.	(전략) 未時, 上還宮, 命饋入侍諸臣。 尋還出, 至申時, 風甚冷緊, 承旨啓久 坐未安, 上乃還宮。 至酉時, 畢等第, 并試(卷) [券] 入。 上開封, 而出降, 試官復書單子以入。
43. 선조 8권, 7년 (1574 갑술 / 명 만력 (萬曆) 2년) 5월 25일 (무술) 1번째기사 의성전의 탄일이라 2 품 이상이 문안하다	의성전(懿聖殿)526) 의 탄일(誕日)이므로 2품 이상이 문안하니, 의성전이 승 전색(承傳色)을 시켜 나와서 대접하게 하며 술을 내리고, 각각에게 주머니를 내렸다.	戊戌/以懿聖殿誕日, 二品以上問安。 懿殿令承傳色, 出接賜酒, 各賜囊子。
44. 선조 8권, 7년 (1574 갑술 / 명 만력 (萬曆) 2년) 7월 2일 (갑술) 1번째기사 봉상시가 동과가 아직 익지 않았다고 하자 예조 낭관에게 조사하 도록 하다	봉상시(奉常寺)가 아뢰기를, “동과(冬瓜)545) 가 오랜 가뭄으로 말라가다가 늦게야 비를 만났기 때문에 아직 익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곧 예조 낭관에게 가서 적간(摘奸)하도록 명하였다.	甲戌/奉常寺啓曰: “冬瓜久旱(進) [盡] 枯, 晚乃得雨, 未及成熟。” 云。 上乃命禮郎往摘奸。
45. 선조 8권, 7년 (1574 갑술 / 명 만력 (萬曆) 2년) 10월 13 일(갑인) 1번째기사	(전략) 또 아뢰기를, “중들이 내수사(內需司)와 상통하여 비밀히 자전(慈殿)의 분부를 받고 있으니 궁중이 엄숙하지 못함이 이보다 클 수 없습니다. 신은 그욕이 생각하건대, 전 하께서 지성을 쌓고 몸을 바루는 도리가 혹 지극하지 못함이 있어서 그런 것	(전략) 又啓: “僧人交通內司, 密奉慈 旨, 宮闈不肅, 莫此爲大。 臣竊恐殿 下積誠正己之道, 容有未至而然也。 伏願加念。” (후략)

<p>조강에서 김우용이 양주 서원의 사액, 중이 내수사와 통하는 일 등을 아뢰다</p>	<p>인가 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더욱 생각해 보소서.” (후략)</p>	
<p>46.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1월 2일 (임인) 1번째기사 인순 왕후가 승하하다</p>	<p>성의전(聖懿殿)께서 4경(更) 4점(點)에 통명전(通明殿)에서 승하(昇遐)하니, 상이 상사(喪事)를 치를 것을 명하였다. 삼공(三公)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호곡(號哭)을 하고, 미시(未時)에 습전(襲奠)625) 할 때에도 곡을 하고 사배(四拜)하고 물러났다. 신시(申時)에도 통명전 뜰로 들어가서 석곡(夕哭)을 하고 곡이 끝난 뒤에 백관이 경복궁으로 나아가서 공의전을 위로하고, 백관은 초경(初更) 2점에 나오고 삼공은 남아 아뢰기를, “주상께서 오랫동안 시약(侍藥)을 하셨는데 지금 또 집상(執喪)을 하시니, 죽드시기를 권하소서.” 하니, 공의전이 그리하겠다고 하였다.</p>	<p>壬寅/聖懿殿, 四更四點, 昇遐于通明殿。 下命治喪事。 三公率百僚, 舉號哭。 未時, 襲奠, 亦哭四拜而退。 申時, 又入庭, 爲夕哭, 哭畢, 百官詣景福宮, 恭懿殿奉慰。 百官初更二點先出, 三公留在, 啓曰: “主上久爲侍藥, 今又執喪, 請勸粥飲。” 恭懿從之。</p>
<p>47.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1월 3일 (계묘) 1번째기사 백관이 조곡하고, 상께 죽을 드시라 권하다</p>	<p>과루(罷漏) 때 백관이 창경궁에 나아가 묘시(卯時)에 조곡(朝哭)을 하고, 오시(午時)에 삼공(三公)이 육경(六卿)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상께서 오랫동안 시약(侍藥)하시느라 우로(憂勞)가 이미 심하셨는데 갑자기 대변(大變)을 당하시어 좌절과 애통이 망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옥체로서 거적자리 위에 노처(露處)629) 하시고 죽도 드시지 않으므로 신들은 근심과 걱정이 절박하오니 죽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두 번째 아뢰니 ‘삼일(三日) 안에 어찌 감히 죽을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답하였다. 세 번째 아뢰기를, “조종조의 전례를 상고하니, 다음날 죽을 드셨고, 삼일 뒤에는 밥과 찬을 드셨습니다. 또 세종(世宗)의 유교(遺教)에 ‘임금은 깊은 궁중에서 생장(生長)하여 보통 사람들과 다르니 삼일이 지나면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조종(祖宗)의 열성(列聖)께서도 삼일 안에 죽을 드셨으니, 종묘</p>	<p>癸卯/○百官罷漏, 詣昌慶宮。 卯時朝哭, 午, 三公率六卿啓曰: “自上久爲侍藥, 憂勞已甚, 奄遭大變, 摧痛罔極。 況以玉體露處苦次。’ 不御饋粥, 臣等憂惶悶迫之至。 乞進粥飲。” 再啓, 答曰: “三日內, 何敢爲之?” 三啓曰: “考之祖宗朝舊例, 翌日進粥, 三日進膳。 且世宗遺教曰: ‘人君生長深宮, 異於常人, 過三日食食。’ 以此觀之, 祖宗列聖, 三日內進粥, 其宗社情重之意, 可想。 臣等昨日啓請恭懿殿, 恭懿殿答臣等之教, 有勸進粥飲之懇。</p>

	<p>사직을 중히 여기신 뜻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p> <p>신들이 어제 공의전께 계청(啓請)하였더니, 공의전께서 신들에게 답한 전료에 죽을 드시도록 권하겠다는 간절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위로 조종의 유의(遺意)를 생각하시고 또 공의전의 지극한 정을 헤아리시어 더욱 스스로保重(保重)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경들의 계사(啓辭)가 이와 같고, 공의전의 전교를 이끌어서까지 말하니 명을 어기기 어렵다. 마땅히 힘써 따라야겠으나 더욱 망극하다.”</p> <p>하였다.</p>	<p>伏望上念祖宗之遺意，深體恭懿殿之至情，勉食饗粥，益自寶重。” 答曰：“卿等啓辭如此，至引恭懿殿傳教爲言，難於違命。當勉從之，尤爲罔極。”</p>
<p>48.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萬曆) 3년) 1월 5일 (을사) 2번째기사 홍문관이 죽을 들라고 청하다</p>	<p>석곡한 뒤에 홍문관이 아뢰기를,</p> <p>“군주의 생장(生長)과 배양(培養)633) 은 보통 사람과 다른데, 전하께서는 계를 지키심이 너무 지나치시어 지금 삼일(三日)634) 이 이미 지났는데도 죽을 드시지 않으시니, 그 감정을 억제하시어 중도(中道)에 알맞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힘써 따르겠다고 답하였다.</p>	<p>夕哭後，弘文館啓曰：“人君長培養，異於常人，而殿下執禮太過。今日已過，猶不粥飲，請俯就中道。” 上答曰：“當勉從。”</p>
<p>49.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萬曆) 3년) 1월 5일 (을사) 3번째기사 대신들이 죽을 들기를 청하자 따르다</p>	<p>이날 낮에 대신(大臣) 권철(權轍)·박순(朴淳)·노수신(盧守愼)이 육조의 참판 이상과 삼사의 장관들을 거느리고 대궐문 안으로 들어가서 죽 들기를 계청(啓請)하니, 상이 처음에는 따르지 않다가 재차 아뢰자 따랐다. 상이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애훼(哀毀)가 남보다 지나쳤다.</p>	<p>是日午，大臣權轍、朴淳、盧守愼，率六曹參判以上、三司長官，入門內啓，請勉進粥飲。上初不許，再啓乃從之。上性至孝，哀毀過人。</p>
<p>50.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萬曆) 3년) 1월 6일 (병오) 1번째기사 대렴이 있어서 백관이</p>	<p>묘시에 대렴(大斂)이 있기 때문에 인정(寅正) 2각에 백관이 조곡을 하고 그대로 반열(班列)에 머물렀다. 묘시에 대렴을 하였는데 시작할 때부터 곡을 하였고 끝난 뒤에 또 곡을 하였다. 염을 마치고 전(奠)드릴 때 축문을 읽고 곡을 하였다. 봉상시(奉常寺)가 대렴상(大斂床)을 갖추어 사시와 오시의 사이 병시(丙時)635) 에 빈전(殯殿)에 모실 적에 두 차례 곡을 하고 전드릴 때 또 곡을</p>	<p>丙午/大斂在卯時，故進朝哭於寅正二刻。百官朝哭，仍留班。卯時大斂，自初哭已斂又哭，斂而奠，又哭。奉常寺辦大斂床，巳午間丙時爲殯，亦再運哭，奠而又哭，忽聞上哭大斂時，咳</p>

<p>조곡을 하다. 상이 핏덩이를 토하다</p>	<p>하였다. 상이 대렴할 때 곡하던 중 갑자기 기침을 많이 하셨는데 콩알만한 핏덩이 다섯 개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민망하여 예가 끝난 뒤, 백관이 공의전을 위로하고 모두 경복궁으로 나아갔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애훼가 지나치시어 기침하실 때 피를 토하기까지 하셨으니, 이는 실로 중도를 지나치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지나친 감정을 낮추어 중도에 알맞게 하소서. 지금 이미 빈(殯)도 끝났으니 음식을 드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성복(成服) 전인데 어찌 차마 음식물을 들겠는가.” 하였다.</p>	<p>嗽多發時，血五點，如大豆，大驚悶罔。已禮畢，百官以奉慰恭懿殿，皆詣景福宮。弘文館啓曰：“京毀之過，至咳嗽吐血，此實過中。願殿下俯就中道。今既殯後，請自進膳。”上答曰：“成服前，何忍進膳?”</p>
<p>51.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萬曆) 3년) 1월 7일 (정미) 1번째기사 백관이 성복하다. 홍문관이 음식을 들라고 청하다</p>	<p>백관이 성복(成服)을 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창경궁으로 가서 사시에 모두 상모(喪帽)와 상복(喪服)을 입고서 여러 2품(二品) 재상(宰相)들과 함께 외위(外位)에 모여 있다가 사시 말에 명정전(明政殿) 뜰로 들어가서 병시(丙時)에 향(香)을 올리고 전후(前後) 사배(四拜)하였는데, 모두 곡을 먼저 하고 절을 뒤에 하고서 파하였다. 삼공이 백관을 거느리고 공의전에 나아가 위로하고, 의시(議諡)을 우선 정지하고서 2품 이하는 먼저 물러나왔다. 홍문관이 정원에 나아가 아뢰기를, “주상께서는 효성이 지극하고 예를 지킴이 너무 지나치시어 빈(殯)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죽 드시는 것을 폐하셨으므로 이미 옥체의 허손이 극도에 이르러, 여전의 거적자리에서 거처하시므로 손상이 또한 많으시니, 지금 곧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오랜 손상 끝에 기력이 점점 쇠약해져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복도 이미 끝났으니 음식을 드셔서 성궁(聖躬)을 보전하시고 의려(倚廬)도 십분 완전하게 하여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잠자리를 편안케 하시어 위로는 공의전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신민(臣民)의 바람을 따르소서.</p>	<p>丁未/百官，早朝以成服詣昌慶宮。已時共着衰帽衰服，與諸二品宰相會于外位。已末，入明政殿庭，以丙時，行上香。前後四拜，皆先哭後拜而罷。三公率百官，詣恭懿殿奉慰。姑停議諡，二品以下先退。弘文館詣政院，啓曰：“主上孝思極至，執禮太過。自在未殯之前，久廢粥飲，虛損已極，露處苦次，受傷亦多。今若不卽進膳，積傷之餘，氣力轉憊，勢難扶持。成服已過，乞卽進膳，以保聖躬。倚廬之所，亦十分完密，勿令風冷透人，以安寢處，上慰《恭懿殿》之心，下副臣民之望。且自上獨御一室，只有宦寺侍側，氣候興居，外臣無得知，其爲悶</p>

	<p>또 상께서 빈 방안에 홀로 계시며 환관만이 옆에서 모실 뿐이므로 상의 안부를 외신(外臣)들은 알 수 없으니 민망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대신과 시종(侍從)을 부르시어 문후(問候)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모두 아뢰는 대로 하겠다고 답하였다.</p>	<p>迫，何可勝言？請時召大臣侍從，使得承候。”上答曰：“盡依啓辭。”</p>
<p>52.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萬曆) 3년) 1월 7일 (정미) 3번째기사 대신들이 공의전에 나가 위로하다</p>	<p>대신들이 공의전에 나아가 위로한 뒤에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하건대, 자진(慈殿)께서는 성상 불훼(成喪不毀)의 나이(638)이시니, 모든 진膳(進膳)·의대(衣襟)·기거를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하되 화려한 채색만을 피할 뿐입니다. 더구나 옥체가 취약(脆弱)하시어 본래부터 병이 많으신 터에 연전에 또 큰 병을 치르셨으니, 지극히 민망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이미 성복도 지났으니 모든 수라(水刺) 등의 일을 전처럼 진어(進御) 하소서.”</p> <p>하니, 언서(諺書)로 답하기를, “이미 성복이 지났으니 더욱 망극하다. 평소 서로의 정이가 지극하였으나 마침 다른 처소에 있어 친히 영결(永訣)을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유한(遺恨)이 되어 더욱 애통한데, 게다가 예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이처럼 민망스럽고 망극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p> <p>하였다. 대신이 두세 번 계청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p>	<p>大臣等詣恭懿殿奉慰後，啓曰：“臣等伏念，慈殿成喪不毀之年，凡進膳衣襟起居，固當盡如常時，而唯去華采耳。況玉體脆弱，素多疾恙，年前又經大病，極爲悶慮。今成服已過，請從凡水刺等事，依舊進御。”諺書答曰：“成服已過，尤爲罔極。平時相厚至極，而適在異處，未得親見永訣，平生遺恨，尤所痛悼之至。如不從禮，豈有如是悶極之事乎？”大臣再三啓請，卒不從。</p>
<p>53.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萬曆) 3년) 1월 7일 (정미) 4번째기사 상이 저녁에 밥을 들었다</p>	<p>이날 저녁에 상이 비로소 밥을 드셨다.</p>	<p>是夕，上始食飯。</p>
<p>54. 선조 9권, 8년</p>	<p>이날 상이 삼공을 인견(引見)하니 삼공이 들어가 뵈고, 상께서 하루에 다섯</p>	<p>是日上引見三公。三公入見，具陳上</p>

<p>(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1월 12일 (임자) 2번째기사 삼공이 곡하는 횟수를 줄이고 음식을 들기를 청하다</p>	<p>번씩 곡을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갖추 진달(陳達)하고 아침 저녁으로만 곡하기를 청하였다. 또 억지로라도 음식을 드시어 기체(氣體)를 보전하기를 청하니, 상이 눈물로 답하였다.</p>	<p>一日五時之哭太過， 請只爲朝夕哭。 又請勉強進膳， 以保氣體。 上以泣答之。</p>
<p>55.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1월 16일 (병진) 5번째기사 삼공이 공의전에 문안하다</p>	<p>삼공이 공의전께 나아가 문안하니, 답하기를, “나는 평안하지만 주상이 지나치게 상례를 지키기 때문에 근심이 된다.” 하였다. 삼공이 이어 아뢰기를, “자전(慈殿)의 춘추 이미 높으신데 두번씩이나 증병을 치르셨으니, 비록 친상(親喪)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예를 따르시기 어려울 것인데, 항차 기년 복제(基年服制)이겠읍니까. 이미 반 달이 경과하였는데, 몸의 상패(傷敗)는 생각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소찬(素饌)을 드시니, 온 나라의 신민이 황황(惶惶)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속히 종권(從權)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망극한 가운데 다시 할 만한 일이 없어 다만 소찬을 들 뿐이다. 반 달 동안 소찬을 든 것이 무슨 관계이겠는가.” 하였다. 두 번 아뢰니, 답하기를, “여러번 간청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매우 미안하나, 나는 다만 예를 따르코자 하는 것뿐이다.” 하였다.</p>	<p>三公啓曰：“臣等昨伏見聖教， 必欲依禮文， 夕四哭， 臣尤爲悶慮。 哀之發於聲音， 爲毀最重， 自上初喪傷損已極， 豈可膠守小節， 而不顧宗社之重乎？ 臣等昨日問安于恭懿殿， 年高有疾， 方在行素之中， 又以主上哀傷過禮， 軫念不已， 竊恐馴致憂傷之疾。 伏願聖上勉抑孝思， 朝夕哭臨， 日止一二， 以上副恭懿殿之至情， 下慰一國臣民之望。”</p>
<p>56.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1월 18일 (무오) 1번째기사</p>	<p>2품 이상이 이른 아침에 경복궁 공의전께 나아가서, 삼공이 처음에 승전색(承傳色)이 문안드리기를 청하고 다음에 개소(開素)646) 하기를 청하였는데, 대개 춘추가 이미 높은 데다가 두 번씩이나 큰 병을 치렀으므로 종권(從權)하여 개소할 것을 청한 것이다. 언문(諺文)으로 답하기를,</p>	<p>戊午/二品以上早朝， 詣景福宮、恭懿殿。 三公初請承傳色問安， 次請開素。 大概以爲春秋既高， 而再經大病， 乞從權開素。 答以諺文曰：“只有素食</p>

<p>2품이 이상이 공의전에 에게 육식을 청했으나 공의전은 주상</p>	<p>“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소식(素食)하는 한 가지 일뿐인데, 대신이 그렇게 말하니 지극히 미안하다.” 하였다. 두 번째 아뢰기를, “무릇 질병이 있는 사람은 비록 부모의 상사(喪事)라 할지라도 마땅히 종권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기년복(基年服)이겠습니까. 이미 15일이 경과하였으니 속히 개소(開素)하시어 윗전[上殿]에서부터 힘껏 종권하소서.” 하니, 또 이르기를, “주상은 본래 비위가 상하였고 몸도 또한 쇠약한데 집상(執喪)의 노고(勞苦)가 지나치므로 내가 절감(節減)하기를 청하였으나 굳게 지키고 따르지 않으니 지극히 민망하다.” 하였다. 대신이 다시 아뢰어, 공의전께서 주상을 이 전(殿)으로 이어(移御)하도록 하라고 청하였다. 문정 왕후(文定王后)의 초상(初喪) 때 명묘(明廟)가 병이 있어 이어를 청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예(例)를 원용(援用)하여 청한 것이다. 공의전이 나도 깊이 염려하고 있다고 답하였다.</p>	<p>一事，極爲未安。”再啓曰：“凡疾病，人雖父母喪，亦當從權。況此期年之服已經十五日，請速開素上殿勉從。”且曰：“主上素傷脾胃，體又羸弱，執喪過苦，予雖請減，堅執不從，悶極。”云云。大臣更啓請自殿，請主上移御此殿。文定王后之初喪，明廟有疾，請移御，故援以爲請。答曰：“予亦深念。”</p>
<p>57.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1월 20일 (경신) 1번째기사 삼공이 상중에도 절제 하여 조리할 것을 청 하다</p>	<p>(전략) 상께서는 원기가 쇠약하시고 본래부터 비위가 상하셨는데, 초상 때 5 일이라는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수장(水醬)648) 도 드시지 않았으며, 또 곡을 멈추지 않았으므로 성후(聖候)가 이미 매우 상하셨으니, 이와 같이 계속하시어 시일이 경과하면 미칠 수 없는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밤낮으로 우려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바입니다. 과거 명종 대왕께서 문정 왕후의 상을 당하였을 때 원기가 허약하시므로 부득이 종권하셨고, 또 여차에서 이 궐(闕)로 이어하셨으니, 이는 실로 종사를 위한 큰 사려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도 송 효종(宋孝宗)의 일을 본받으시고 선왕의 뜻을 체득(體得)하시어 소절(小節)에 구애되지 마시고 빨리 이어하시고 때때로 여차에 왕래하소서. 그리고 또 진선(進膳)하시는 사이에도 낙죽(駱粥)649) 같은 음식물을 때때로 자주 드셔야 마땅합니다.”</p>	<p>(전략) 自上元氣清瘦，脾胃素傷，其在初喪，不進水醬，至於五日之久。又不輟哭臨，聖候已爲重傷，若此不已，積日逾時，則悔無及矣。臣等晝夜慮憂，罔知所爲。前者明宗大王遭文定王后之喪，元氣虛弱，不得已從權。又自廬次，移御于此闕。此實爲宗社大慮也。伏願聖明，法孝宗之事，體先王之意，毋拘小節，亟爲移御。有時往來進膳之間，如駱粥等物，時時頻進，至爲宜當。”上答曰：“卿等勤勞</p>

	<p>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들이 이미 왕가(王家)에 근로(勤勞)하였고, 근일 또 변변치 못한 이 몸 때문에 염려하여 와서 문안할 적마다 나의 마음이 미안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계사(啓辭)를 보니, 나도 모르게 놀랍고 애통스러움이 지극해진다. 결단코 이런 이치는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 내가 감히 옛사람의 일로써 자처(自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 대한 마음은 현불초의 차이가 없는 것이니, 그렇다면 내가 자진(自盡)650) 하고자 하는 뜻은 필설(筆舌)로써 다 말하기 어렵다. 또 낙죽은 바로 우유이다. 초상 때 진배(進拜)한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했더니, 지금 계사를 보고 하인에게 물어보고서야 비로소 그 진배한 이유를 알았다. 더욱 놀랍고 괴이하니 해사로 하여금 올리지 말게 하라.” (후략)</p>	<p>王家, 近日又以寡昧微身爲慮, 每來問安, 孤心已爲未安。 不幸今乃見此啓辭, 不覺驚慟之至矣。 決無是理, 願勿更言。 且予固不敢以古人之事自處, 然子之於親, 無賢不肖之殊, 則予之欲爲自盡之意, 難以筆舌盡諭矣。 且駱粥是牛乳, 初喪進排之事, 全不省料。 今見啓辭, 問諸下人, 始知仍進排之由, 尤爲驚怪。 當令該司, 勿進矣。”</p>
<p>58.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萬曆) 3년) 1월 20일 (경신) 4번째기사 옥당 관원이 입시를 청하여 육즙을 들기를 청하다</p>	<p>(전략) 또 우리 명묘(明廟)께서도 문정 왕후의 상을 당했을 때 다음달에 이어(移御)하시고 음식도 권제(權制)를 따르셨습니다. 지금 전하의 한 몸이 위로는 조종(祖宗)의 중책(重責)을 걸머지시고 아래로는 억만 신민을 다스리시니 어찌 스스로 몸을 아끼지 않아 후회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신하들의 생각은 27일 뒤에는 감정을 억제하고 권제를 따르시어 육즙(肉汁)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또 약방에서 의원으로 하여금 입진(入診)하기를 청한 말은 매우 사정이 맞습니다.” 하니, 상이 아무 대답도 없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p>	<p>(전략)我明廟當文定王后之喪, 翌月移御, 飲食亦從權制。 今殿下一身, 上荷祖宗之重, 下臨億萬臣民, 豈可不自愛惜, 以貽後悔乎? 今群臣之情, 咸願二十七日後, 俯從權制, 進御肉汁。 又藥房請令醫入診之言, 深合事情。 上不答。 以手遮面, 流涕而已。</p>
<p>59.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萬曆) 3년) 1월 21일 (신유) 1번째기사 삼공이 좋은 음식을 들기를 청하다</p>	<p>상이 삼공이 두 번째 아뢰는 것에 답하기를, “계사가 이에 이르렀고 선왕의 예도 있으니, 내가 어찌 감히 달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건대 실로 미안한 바가 있으니, 이를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이날 삼공이 두 번째 아뢰어 명묘의 예에 따라 이어하고 또 맛난 음식 드시기를 청하였기 때문이다.</p>	<p>辛酉/上答三公再啓曰: “辭至此, 先王有例, 予何敢異? 雖然。 反覆自思, 實有所未安者, 茲未從矣。” 是日三公再啓, 請依明廟例移御, 又進滋味故也。</p>
<p>60. 선조 9권, 8년</p>	<p>삼공과 영사(領事)가 아뢰기를,</p>	<p>三公、領事啓曰: “初喪有疾, 滋以薑</p>

<p>(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1월 22일 (임술) 2번째기사 삼공이 술과 고기로 몸을 보하라고 청하다</p>	<p>“초상 때 병이 있으면 생강과 육계(肉桂)로 수기(水氣)를 돕고 술과 고기로 몸을 보하며, 임금의 상사에 환관을 시켜 대신 곡하게 하는 것은 임금의 피곤을 염려해서입니다. 상께서는 오랜 손상 끝에 성후(聖候)가 실화(失和)되었는데도 맛있는 음식을 들지 않으시고 곡도 초종(初終) 때와 같이 하시며, 또 이 전각(殿閣)은 산아래에 있어 음산하고 추워 겨울과 봄의 환절기에는 감기가 들기 쉽기 때문에 신들은 우려와 민망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상께서는 예경(禮經)의 본 뜻을 본받으시어 효성을 억제하시고, 음식을 드실 때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것이며, 곡도 하루에 한두 번만 하시고, 서둘러 이어하시고 때때로 빈전(殯殿)에 나아가서 성정(聖情)을 펴시어 대효(大孝)를 온전히 하기를 힘쓰소서.”</p> <p>하니, 답하기를, “경들은 나의 작은 정성을 헤아려 나로 하여금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p> <p>하였다.</p>	<p>桂，補以酒肉。君喪，以宦官代哭，爲其疲倦也。自上積傷之餘，聖候失和，而滋味不進，哭臨復初。且此殿閣，依山陰爽，冬春之交，易爲感傷，臣等不勝憂慮悶迫之至。伏願聖上，法禮經本意，強抑孝思，進膳之際，勉強滋味；哭臨之舉，日止一二；亟爲移御，時詣殯殿，以伸聖情，力全大孝。” 答曰：“願卿等諒微忱，使得自盡。”</p>
<p>61.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1월 22일 (임술) 4번째기사 삼공의 청에 따를 수 없다고 답하다</p>	<p>삼공과 영부사가 두 번째 아뢰어 간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계사가 이에 이르렀으니 경들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숭문당(崇文堂)으로 이어하여 빈소(殯所)를 왕래하며 곡하다가 3월이 지난 뒤에 다시 여차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여 한편으로는 경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정을 펴겠다. 곡에 대해서는 전일에 이미 청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였거니와, 음식에 대해서는 항규(恒規)658)가 있는 것인데 또 어찌 맛있는 음식을 들겠는가. 이 조항은 결코 따르기 어렵다.”</p>	<p>三公、領府事再啓懇請。上答曰：“啓辭至此，卿等之意，不可孤也。然則自明日當移御于崇文堂。往來哭臨，過三月後，還居廬次，一以副卿等之望，一以申寡味之情。哭臨，則前日已依所請，飲食則自有恒規，又何復有滋味耶？此條則決難依副。”</p>
<p>62.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1월 24일 (갑자) 2번째기사</p>	<p>(전략) “더구나 편찮은 증후(症候)가 있어 우리가 매우 큰데 어찌 부탁 받은 중책과 종사의 대계를 생각지 않으시고 절목(節目)만을 변통성 없이 지킬 뿐 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 열성(列聖)께서 이미 행하셨던 규례(規例)를 전하께서도 반드시 살펴보아 아실 것인데, 어찌하여 스스로 가벼이 여기심이</p>	<p>(전략) “況小有違豫之候，憂虞極大，豈可不念付托之重、宗社之計，膠守節目而已哉？我朝列聖已行之規，上亦必省闕而知之，何自輕若是之甚歟？緣臣</p>

삼공이 조호와 음식을 잘하도록 청하다	이처럼 심하십니까. 신들의 계청(啓請)으로 인하여 전하께서 왕래하는 노고만 더하게 되었으니, 더욱 황공합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다시 세 번 생각하시어 전에 계달(啓達)한 바에 따라 초하루 보름 사이에 한두 번만 왕래하시고, 조호(調護)와 음선(飮膳)을 평일보다 더하셔서 큰 효도를 온전히 하소서.” 하니, 상이 아뢴 대로 따랐다.	等啓請，益增聖體往來之勞，尤爲惶恐。伏乞聖上，更加三思，依前啓達，朔望之間，一再往來，調護飲膳，勉加於平日，以全大孝。” 上答曰：“依啓。”
63.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1월 29일 (기사) 2번째기사 삼공이 공의전을 문안 하면서 상에게 육즙들을 권하라고 청하다	삼공이 대전께 문안한 뒤에 공의전에 나아가 문안하였으니, 대개 대전께 육즙(肉汁)드시기를 부지런히 권할 것을 청한 것이다.	三公大殿問安後，詣恭懿殿問安。蓋請勤勸大殿進肉汁事也。
64. 선조 9권, 8년 (1575 4해 / 명 만력 (萬曆) 3년) 2월 1일 (경오) 2번째기사 유희춘이 종권하여 국가 대계를 생각하기를 청하다	(전략)유희춘이 좌전(座前)으로 나아가서 아뢰기를, “신들이 비록 옥당을 왕래하고 있으나 생각을 상달(上達)할 수 없는데, 지금 다행히 인견(引見)을 받았으므로 감히 번민하고 있는 여론을 진달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천성이 효성스러우시어 예절을 지킴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시질(侍疾)할 때부터 이미 우로(憂勞)가 많으셨는데 초상(初喪) 때에는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시고 피를 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원래부터 비위가 좋지 않으신데 지금까지 소식(素食)하시니 반드시 상패(傷敗)에 이를 것이므로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는 신하가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대신들에게 가서 물어보았더니, 대신들도 모두 종권(從權)하여 고기국 드시기를 계청하고자 하나 27일 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그 시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계청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중략)유희춘이 아뢰기를, “지금 대신이 먼저 아뢰어 고기국 드실 것을 권하면 모든 신하들이 대신의 뒤를 따라 아뢴 것이고, 백관들도 모두 뜰에 서서 반드시 전하의 윤행가	(전략)希春進座前啓曰：“臣等雖來往玉堂，情志不能上達。今幸蒙引見，敢陳輿情之悶。殿下孝誠出天，執禮過高，自侍疾時，已多憂勞。初喪累日，勺飲不入口，至於血出於口。且素傷脾胃，至今素食，傷敗必至，臣下莫不惶悶。臣嘗詣大臣問之，大臣等咸以從權肉汁啓請，而二十七日之前，難於發言，姑待其期。今日亦欲啓請，人君之孝，異於匹夫。(중략)希春曰：“今大臣首啓肉汁之勸，則群臣隨之，至於百官立庭，必得後已。殿下他事，則皆當盡禮，只此一事，不可不抑情從

	<p>내린 뒤에야 그만 둘 것이니, 전하께서 다른 일은 모두 예절을 극진히 하셔야 마땅하오나, 이 한 가지 일만은 감정을 억제하시어 종권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후략)</p>	<p>權。”(후략)</p>
<p>65.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2월 4일 (계유) 1번째기사 삼공이 문안하고 상의 상함이 심하니 권제를 따르라고 청하다</p>	<p>삼공과 영부사(領府事) 홍섬(洪暹)이 궐내에 들어가 문안하고서 이어 아뢰었다. “상께서는 비위가 허약하십니다. 예문에는 상을 당한 처음 5일 동안 수장(水醬)을 들지 않고, 또 소금이나 우유도 먹지 않으며 곡립을 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한 달이 넘어 상훼(傷毀)가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매양 편안하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이는 성효(聖孝)가 지극하시어 스스로 지나치게 상훼하신 줄을 모르시기 때문이나, 수척함이 오래되면 그 종국(終局)의 후회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인의 예에도 권제(權制)가 있고 우리 나라 열성(列聖)께서도 종권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부하(負荷)하신 중책과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시고 성묘(成廟)와 명묘(明廟)의 효도를 본받아 억지로라도 고기국을 드시어 성체를 보양하여 신민의 여망에 부응하소서.”</p>	<p>癸酉/三公及領府事洪暹， 詣闕內問安。 仍啓曰：“自上脾胃虛弱， 禮喪五日， 不進水醬， 又不御鹽酪， 不輟哭臨， 今已踰月， 傷毀極矣。 而每以平安下教， 此雖聖孝純至， 不自知其過毀。 清漸日久， 則厥終之悔， 可勝言乎？ 一國臣民， 所以憂惶罔措者也。 聖人之禮， 亦有權制， 我朝列聖， 不無從權。 伏願聖上， 思負荷之重， 念宗社大計， 仰法成、明兩廟之孝， 勉進肉汁， 保養聖體， 以副臣民之望。”</p>
<p>66.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2월 4일 (계유) 3번째기사 삼공이 다시 종사의 대업이 매어 있으니 권제를 따르기를 청하다</p>	<p>(전략) 신들도 성효(聖孝)가 지극하심을 아는데 어찌 감히 무단히 말씀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신들이 보기에 상께서는 평소부터 비위가 허약하시어 평상시에도 조섭하지 못하실까 걱정인데, 애통한 상중에는 정신과 기력이 훼손되기 쉬우니, 이 때에 미처 권제의 예에 따라 고기국·단술·우유 등 맛있는 음식을 드시어 원기를 보양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루아침에 병의 증세가 나타날 것이니 장차 어떻게 몸을 조섭하고 보호하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대소 신하들이 밤낮으로 우려하여 마지 않는 이유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다시 세 번 더 생각하시어 힘써 권제(權制)를 따르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p>	<p>(전략) 臣等亦知聖孝純至， 何敢無端仰讀？ 第見自上脾胃素弱， 其在平時， 常患不調， 當此哀疚之中， 精神氣力， 易爲漸毀， 不若及此時， 依禮權制， 勉進肉汁醴酪滋味， 以養元氣， 則一朝形證乍見， 將何以調護？ 此大小臣等所以日夜憂慮， 不知自止者也。 伏願， 聖上更加三思， 勉從權制。” 上答曰：“古今天下， 安〔有〕是理？ 三年之喪，</p>

	<p>“고금 친하 어디에 이런 이치가 있는가? 삼년상은 친하의 공통된 상례인데, 경들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그 예절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가. 경들이 평소 에 나를 보필할 때에는 걸핏하면 고례(古禮)를 인용하였으니, 어찌 오늘날 차마 이런 말을 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또 본래 무식한 내가 지금 대변(大變)672) 을 만났으므로 실례(失禮)할까 매우 두려워하였다. 때문에 큰 슬픔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지난번에 근신(近臣)을 인견하여 고사(古事) 듣기를 바랐더니, 생각 밖에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놀랍고 애통함이 그지없어 이때부터 접견한 것이 후회되어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 또 경들의 계사를 보니, 나의 병이 장차 이 때문에 생길 것이다. 다시 말하지 말라.”</p> <p>하므로, 삼공들이 물러났다.</p>	<p>天下之通喪，使不可從，卿等平日，輔弼寡昧，動引古禮，豈料今日，忍爲此說乎？且予本無知識，今遭大變，深恐失禮。是以雖在創鉅之中，強爲舉頭，頃日引見近臣，冀聞古事，而不意遽發違理之說，驚慟罔極，自是以來，追悔接見，心魂不寧。今日又見卿之啓，予之病將自此而生矣。宜勿更言。”三公等乃退。</p>
<p>67.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萬曆) 3년) 2월 5일 (갑술) 2번째기사 공경이 전거를 들며 종권을 청하다</p>	<p>(전략) 또 아뢰기를, “상께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해 하는 때이어서 병이 이미 생겼는데도 알지 못하시거니와, 만약 병세가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병이 이미 깊어질 것이니, 그때에 가서 술과 고기를 먹는다 해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병이 깊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만하겠습니까. 만약 질병이 있다면 비록 초상(初喪) 때에도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세종(世宗)의 성효(誠孝)는 삼대(三代) 이후로는 없었던 바인데도 그 후사(後嗣)에게 전한 훈계가 이와 같았으니, 이 어찌 군주 한 사람이 아닌 종사의 주인으로 여기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유교(遺教)의 뜻을 본받고 행하시어 온 나라 신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소서.” (후략)</p>	<p>(전략)又啓曰：“上方哭擗哀痛之時，病已入己，而不自知。若待證候發外，則病已深矣。雖飲酒食肉，亦無及焉。曷若迨病未深，而預防乎？如有疾病，雖初喪，亦須食肉。世宗誠孝，三代以後之所無，而其垂訓後嗣乃如此。豈不以人主一人，爲宗社教乎？”伏願，聖上體遺教之意，行遺教之言，以副一國臣民之望。” (후략)</p>
<p>68.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萬曆) 3년) 2월 12일 (신사) 3번째기사</p>	<p>옥당이 아뢰기를, “친상(親喪)은 진실로 자진(自盡)683) 하는 바이나, 자진의 실상은 효도를 잘 마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는데도 돌보지 않아 생명을 손상하는 데 이르러 불효를 하게 된다면 어찌 자진할 수 있겠습니까. 주상</p>	<p>玉堂啓曰：“親喪固所自盡，而自盡之實，莫貴於終孝。有病不卹，至于傷生，而爲不孝之歸，則豈得爲自盡乎？主上自初喪一從禮文，獨御外殿，志哀</p>

<p>옥당이 종권하여 효도를 잘 마치기를 청하다</p>	<p>께서는 초상 때부터 한결같이 예문을 따르시어 홀로 외전(外殿)에 기거하시면서 뜻은 슬퍼하셨고 거처는 검약하셨으니, 자신의 도리가 이미 극진하셨습니다.</p> <p>그러나 한결같이 휘착해 가는데도 효도를 잘 마칠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음선(飲膳)684) 과 침수(寢睡)를 모두 줄이시며, 병의 증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종전의 청을 굳게 거절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작은 필부의 일을 효도로 여기고 종사를 맡은 중임을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서 도리어 자신의 실상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시는 선후(先后)의 혼령인들 어찌 편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권제를 따르시어 대효를 온전히 하소서.” (후략)</p>	<p>居約，自盡之道，既已盡矣。而一向毀瘠，不思終孝之道，飲膳寢睡，亦皆減損，形證已著，而猶不覺悟，牢拒從權之請，是殿下以區區匹夫之節爲孝，宗廟付托之重爲輕，而及害於自盡之實，先后在天之靈，亦豈能安乎？伏望勉從權制，以全大孝。”</p>
<p>69.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2월 15일 (갑신) 2번째기사 공의전이 고기를 권하니 상이 물리치고 받지 않다</p>	<p>공의전(恭懿殿)이 중사(中使)와 두 궁인(宮人)을 보내어 대전(大殿)688) 께 고기를 권하니, 상이 준엄히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공의전이 언서(諺書)를 대신에게 내렸는데, 그 대략에, “주상은 원기가 본래부터 허약한데 날로 더욱 손상되니 매우 민망하다. 내가 친히 가서 고기를 권하고 싶으나, 항상 다리의 힘이 쇠약하여 쾌차(快差)하지 못하는데다가 근래에는 심기마저 편치 못하여 기동할 수 없으므로 친히 가서 권할 수 없다. 바라건대 대신들은 나의 뜻을 주상께 계달하고 친히 들어가서 간청하라.” 하였다. (후략)</p>	<p>恭懿殿遣中使及二宮人，勸肉于大殿，上峻却不納。恭懿殿以諺書，下于大臣。其略曰：“主上元氣素弱，日以益傷，極爲憫望。欲親往勸肉，而常時脚力萎爾不快，近來心氣不安，尤不得起動，未能親爲勸肉。願大臣啓達予意，親入懇請。”</p>
<p>70.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2월 16일 (을유) 2번째기사 옥당이 대계를 생각하여 종권하기를 청하고</p>	<p>(전략)다시 아뢰기를, “공의전께서 종권을 권하시겠다는 생각은 오늘에 비로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상 때부터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본래부터 비위가 손상되었는데도 집상(執喪)하심이 너무 지나치시어 끝내는 반드시 구(救)하기 어려운 질환(疾患)이 될 것을 깊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종권을 권하고자 하셨으나, 다만 증세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종권을 권하지 못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p>	<p>再啓：“恭懿殿從權之意，非始發於今日，自在初喪，深念殿下脾胃素傷，執喪太過，終必有難救之患，故切欲勸進，而特以證未著見，不敢耳。今則胃氣虛弱，飲饌減小，煩熱上攻，喜進冷物，此敗徵已著，誠有大可憂者。</p>

<p>공의전이 거동하겠다는 뜻을 아뢰다</p>	<p>지금은 위기(胃氣)가 허약하시어 수라도 줄이셨고 번열(煩熱)이 올라 찬 음식만을 즐겨 드시니, 이는 패증(敗症)이 이미 드러나서 진실로 근심할 만한 것입니다. 의관(醫官)들도 입진(入診)하고서 모두 두려운 기색을 가졌고 대신들도 진현하고서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으므로 공의전께서 이를 들으시고 근심과 염려가 전보다 더욱 심하시니, 반드시 신병(身病)도 생각하지 않고 오시어 종권을 강력히 청하여 기어이 전하께서 종권하신 뒤에야 그만두실 것인데, 어찌 중지하실 이치가 있겠습니까.</p> <p>전하께서 아무리 정성을 다해 공의전께 거동하시지 말기를 빈다 할지라도 이는 실로 종사에 관계된 일이므로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공의전의 간절한 바라심이 전하의 정성을 다한 호소보다 반드시 갑절이나 될 것이니, 신들은 공의전의 거동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병이 깊으신데 수고롭게 움직여 거동하신다면 전하의 훼손한 모습을 보시고 심히 걱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대행 대비(大行大妃)께서 빈소에 계시므로 반드시 애통해 하심이 심할 것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환우(患虞)가 더해진다면 전하께서 대행 대비께 효성을 다하려 하시다가 도리어 윗전을 상하게 하시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들이 반복해 생각하건대 반드시 권제를 따르신 뒤에야 윗전의 거동을 멈추게 할 수 있어 윗전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하의 효성도 온전히 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바라건대 다시 세 번 생각하시어 서둘러 권제를 따르소서.” (후략)</p>	<p>醫官入診，咸有懼色，大臣進見，莫不驚惶。恭懿殿聞之，憂虞悶迫，益甚於前，必將不顧身病，親臨力請，期至從權而後已。豈有中止之理乎？殿下雖竭誠前懇，而此事實關宗社，不可少緩。恭懿殿所以祈懇者，必倍於殿下之籲號，臣等決知其不可遏也。年高病深之餘，勞動行幸，則非但以殿下毀瘠，爲煎悶，大行在殯，傷痛必甚。若因此小得患豫之虞，殿下欲盡孝於大行者，反有傷於上殿，殿下何不熟思而深慮乎？臣等乃反覆思之，必須勉從權制，然後可以止上殿之行，慰上殿之心，而殿下之誠孝全矣。伏願更加三思，亟從權制。”</p>
<p>71.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萬曆) 3년) 2월 18일 (정해) 1번째기사 옥당이 권제를 따라서 대효를 이루라고 청하</p>	<p>(전략) 다시 아뢰기를, “전하의 생각에는 지금 억지로 종권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할 것이니, 이미 마음이 불안하다면 반드시 도움이 없을 것으로 여기시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상중에 있으면서 병이 있어 종권하는 사람치고 누가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비위의 병은 온갖 약으로도 구료(救療)할 수 없고 반드시 육즙(肉汁)으로 원기를 도운 뒤에야 혈기를 보양(補養)하여 생명을</p>	<p>(전략) 再啓曰：“殿下之意以爲：‘今雖勉從，心實未安。’心既不安，則必無所益耶？是則不然。凡居父母之喪，有疾從權者，誰無不忍之心？但以脾胃之病，百藥難救，必須以肉汁助之，然後可以補養血氣，支持性命，故心雖有</p>

<p>다</p>	<p>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힘써 종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거상을 잘한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갓 차마 할 수 없는 마음만을 따라 상도를 지켜 예절을 다하고자 한다면 끝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지극한 정을 억제하시고 힘써 권제를 따르소서.”</p> <p>하니, 이미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신하들이 이어 오랫동안 입시하지 못했으므로 입대하기를 계청하니, 상은 후일에 하라고 답하였다.</p>	<p>所不忍，不得不黽勉從權。古之善居喪者，莫不皆然。徒徇不忍之心，必欲守經盡節，則終至於滅性，而反爲不孝之歸矣。伏願殿下，強抑至情，勉從權制。”答曰：“已諭。”臣等仍啓，久不入待，請對。上答曰：“後日爲之。”</p>
<p>72.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2월 25일 (갑오) 1번째기사 윗전에서 육즙과 나물국을 보내다</p>	<p>윗전께서 중사(中使)를 시켜 육즙(肉汁)과 나물국을 보내어 드시기를 권하니, 상은 윗전께서 친히 거동하실까 염려되어 저녁 수라를 조금 드셨다. 윗전께서는 상궁(尙宮) 7인을 보내시어 많이 드시기를 간청하였다 한다.</p>	<p>甲午/上殿以肉計菜羹，遣中使勸進。上迫於上殿將臨，少許勉進夕水刺，上殿遣尙宮七人，懇請進御云。</p>
<p>73.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2월 25일 (갑오) 2번째기사 약방의 의관이 입진하고 조섭을 주의할 것을 청하다</p>	<p>약방(藥房)의 의관이 입진하고서 아뢰기를, “성후(聖候)의 맥도(脈度)에 폐맥(肺脈)의 허삭(虛數)과 비위맥(脾胃脈)의 허약이 전보다 심하고, 신맥(腎脈)마저 미약하여 천안(天顏)이 수척하고 누르며 혈기가 점점 줄어들어 수라마저 조금 드시니, 이는 비위가 허약하여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며 자양(滋養)은 부족한데 노동은 지나치시어 허열(虛熱)이 위로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계속 드시어 서둘러 원기를 도와 원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노동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여 번열을 막아야 합니다.</p> <p>만약 지금 잠시라도 조섭(調攝)을 소홀히 하신다면 뒷 근심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삼선고(三仙糕)와 꿀물을 함께 드시고 번열이 오르거나 피곤하실 때는 생맥산(生脈散)에 사탕(砂糖)을 가미(加味)하여 차(茶)처럼 마시고, 또 우유</p>	<p>藥房醫官入診言：“聖候脈度，肺脈虛數，脾胃脈虛弱，比前尤甚。腎脈微弱，天顏瘦黃，血氣漸少，水刺亦減。此是脾胃虛弱，上熱下冷，滋養之氣不足，而勞動之氣過多，虛火上攻而然矣。須以滋味，連綿進御，急扶眞元，無使少乏，勿爲勞動，務求安靜，以止煩熱。若於此時，暫忽調攝，則後虞漸深。兼以三仙糕密水調進，煩熱困倦之時，加生脈散砂糖如茶呷進。且酪粥滋補榮衛，除熱止渴，生薯蕷粥，</p>

	<p>는 기혈을 보양하여 열과 갈증을 없애며 생마죽[生薯蕷粥]은 원기를 돕는 것이니 이를 모두 자주 드소서.”</p> <p>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補益元氣。 竝宜頻進。” 答曰：“如啓。”</p>
<p>74.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2월 30일 (기해) 1번째기사</p> <p>약방 제조가 공의전을 문안하다</p>	<p>약방 제조 등이 문안하니, 공의전이 언서(諺書)로 답하였다.</p> <p>“겨울부터 담증(痰證)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입이 말라 숙랭(熟冷)692) 을 많이 마셨더니 이로 인해 가래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p>	<p>己亥/藥房提調等問安, 恭懿殿答以諺書:</p> <p>自冬有痰證, 近間口渴, 多飲熟冷。 因此痰氣, 似爲加發。 云云。</p>
<p>75.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5월 ??일 (□□) 5번째기사</p> <p>대신·시종·대간을 인견하였는데, 모두 종권하기를 청하다</p>	<p>(전략) “근일 상께서 집상(執喪)하시는 데 예절을 다하시어 효성의 진실이 중외(中外)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신민(臣民)들이 한편으로는 기뻐하여 복종하고 한편으로는 걱정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예로부터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없었던 군주는 근본의 덕이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 상께서는 효성의 덕이 이와 같으시니 이 마음을 미루어 몸을 닦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장차 어느 곳이고 지선(至善)이 아님이 없을 것이다. 이야말로 우리 나라가 만세의 태평(太平)을 누릴 수 있는 기초(基礎)이다.’고 여긴 때문이고, 걱정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상께서는 원기(元氣)가 완전하지 못하시고 비위(脾胃)가 허약하신데, 졸곡(卒哭)이 이미 지났는데도 상선(常膳)을 폐하시어 장차 병환(病患)이 생기게 되었다. 성공(聖躬)에 근심이 없는 뒤에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성공이 화평치 못하면 무슨 일인들 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여긴 때문입니다. (후략)</p>	<p>(전략) “近日自上執喪盡禮, 孝思之實, 感動中外臣民。 一則悅服, 一則憂懼。 悅服者以爲, 自古人君不能爲治者, 以無根本之德故也。 今上孝德如此, 推此而修身治國, 將無往而不用其極, 此是東方萬世太平之基址也。 憂懼者以爲: ‘自上元氣未完, 脾胃虛弱, 卒哭已過, 尙廢常膳, 將致生疾, 聖躬無憂, 然後百事可做。 聖躬失和, 則何事可爲?’ (후략)</p>
<p>76. 선조 9권, 8년 (1575 을해 / 명 만력 (萬曆) 3년) 6월 24일 (신묘) 1번째기사</p> <p>소대하여 김우옹과 이</p>	<p>소대(召對)하였다. 김우옹이 부제학 이이(李珥), 승지 정언지(鄭彦智) 등과 입시(入侍)하여 《상서(尙書)》 강고편(康誥篇)의 ‘왕이 일렀다. 「아! 봉아, 너는 생각하라. 」 [王曰嗚呼封汝念哉]’에서부터 ‘백성을 진작시켜 새롭게 한다. [作新民]’는 데까지 강론하였다. 강론을 마친 뒤에 김우옹과 이이가 종권(從權)할 것을 계청(啓請)하기를,</p>	<p>(丁) [辛] 卯/召對金宇顛與副提學李珥, 承旨鄭彦智等入侍。 講《尙書》、《康誥》。” 王曰：“嗚呼, 封汝念哉。” “止作新民。” 講訖, 宇顛與珥進, 啓請從權事曰：“自上欲固執</p>

<p>이가 종권을 청하고, 이이의 공부 과정을 묻다</p>	<p>“상께서 소식(赤食) 드시기를 고집하시니, 이렇게 하시고도 안전하여 걱정이 없다면 진실로 좋겠거니와, 성후(聖候)로 보아 안전할 리가 없기 때문에 민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중(喪中)이 병이 있어 고기를 먹은 자는 있었지만, 병이 생길 것을 염려한 나머지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고기를 먹은 자는 없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어찌 헤아리지도 않고 이처럼 시끄럽게 구느냐.” 하였다. (후략)</p>	<p>行素，如是而萬全無虞，則固善矣。但以聖候料之，恐無安全之理，以是爲悶耳。” 上曰：“居喪有疾，食肉則有之矣。慮其生疾，預防而先食者，未之有也。朝廷何不揆，而紛紛若是乎?” (후략)</p>
<p>77. 선조 12권, 11년 (1578 무인 / 명 만력 (萬曆) 6년) 1월 3일 (을묘) 1번째기사 노대신들에게 유교에 따라 고기를 먹도록 전교하다</p>	<p>전교하였다. “노대신(老大臣)에게 고기를 먹도록 권하라는 것은 유교(遺教)이다. 조정에서 이미 유교에 의하여 권도를 따르기를 계청하였고 나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하였으니 대신들도 유교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 명초하여 고기를 먹도록 권하라.”</p>	<p>乙卯/傳曰：“老大臣勸肉事，遺教也。朝廷既據遺教，啓請從權，予已從之，大臣亦當依遺教，今日命招勸肉。”</p>
<p>78. 선조 12권, 11년 (1578 무인 / 명 만력 (萬曆) 6년) 2월 28일 (기유) 2번째기사 좌상과 우상에게 식료를 내리는 전교</p>	<p>전교하였다. “좌상과 우상은 원로(元老)요 기덕(耆德)으로 덕이 적고 우매한 나라를 돕는 나라의 주석(柱石)인데 모두 편모(偏母)가 있어 90여 세가 되기도 하고 80세가 되기도 하였으니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특별히 쌀·콩·술·고기를 넉넉하게 하사하여 내가 대신에게 후대하는 뜻을 보이라.”</p>	<p>傳曰：“左右相以元老耆德，輔予寡昧，爲邦家柱石，俱有偏母，或九十餘歲，或八十歲，予用嘉焉。其特優賜米太酒肉，以示予厚待大臣之意。”</p>
<p>79. 선조 12권, 11년 (1578 무인 / 명 만력 (萬曆) 6년) 7월 22일 (신미) 1번째기사 간원이 내섭시가 기름</p>	<p>사간원이 아뢰기를, “지난해 내섭시가 기름과 꿀을 번고(反庫)할 때에 전혀 잘 살피지 않아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때의 청대 감찰(請臺監察)863)과 호조 낭청을 모두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p>	<p>辛未/司諫院啓曰：“前年內贍寺油清反庫時，專不致察，以無爲有，請其時請臺監察、戶曹郎廳，竝罷職。” 上從之，</p>

<p>과 꼴을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으로 청대 감찰 등을 탄핵하다</p>		
<p>80. 선조 13권, 12년 (1579 기묘 / 명 만력 (萬曆) 7년) 3월 26일 (신미) 1번째기사 조강에서 김우옹이 군신의 의리, 호강의 억제, 부역의 불균 등을 논하다</p>	<p>(전략) 조강이 끝나자 김우옹이 아뢰기를, “신이 영남(嶺南)에 있을 적에 본 바로는 백성들의 기근이 너무 극심하여 미죽(糜粥)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으니, 만약 보리와 밀이 여물지 않더라도 한다면 민생이 매우 염려됩니다. 이것은 대체로 여러 해 동안 풍년이 들지 않아서 수령이 해유(解由)871) 를 걱정한 나머지 구차스럽게 환자(還上)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실속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곡(官穀)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다 빈 이름 뿐이고 백성이 받는 환자란 겨우 용미(春米)로 1두(斗)에 불과하니 이것으로는 끼니를 이어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어사가 내려가서 각 고을의 관곡을 모두 출고(出庫)하여 숫자를 헤아려 보고 도로 입고(入庫)하였습니다만 내고 들일 즈음에 석수(石數)만을 헤아렸을 뿐이어서 속의 곡물이 태반을 누락되었습니다. 이래서 환자가 더욱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관곡은 이미 모두 실속이 없습니다. 민간의 부잣집에 옛날에는 곡물이 많이 있어서 어떤 때는 민간의 사저(私儲)를 봉납하게 하여 백성을 구제하고서 그에 상당하는 상격(賞格)을 주었었는데, 지금은 백성의 힘이 고갈되고 부잣집도 저축된 곡식이 없으니 구황(救荒)할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계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이 극도로 어려운 터이니 마땅히 우물로 들어가는 어린 아이 보듯이 서둘러 구제해야 합니다. (후략)</p>	<p>(전략) 宇顯啓曰: “臣在嶺南, 見民飢困太甚, 糜粥亦不繼。 脫有兩麥不實, 則民生深可慮也。 蓋緣累年不稔, 守令念其解由, 苟捧還上, 皆爲無實, 故官穀皆爲虛名, 民受還上者, 春米不過一斗, 以此難以接食。 且又御史下去, 盡出各邑官穀, 量數還入, 其出入之際, 只計石數, 其中穀物漏落太半, 以此還上, 尤爲不實矣。 當今官穀既皆無實, 而民間富室, 古則多有穀物, 或封私儲以濟民, 而爲賞格矣。 今則民力殫竭, 富室亦無之, 脫有救荒之事。 不知何以爲策。 且今民生極難, 視之當如入井之赤子, 而汲汲救之。 (후략)</p>
<p>81. 선조 14권, 13년 (1580 경진 / 명 만력 (萬曆) 8년) 4월 28일 (정유) 3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해 보건대, 쌀과 콩과 주찬(酒饌)의 하사는 특별한 은명(恩命)인지라 성상께서 때때로 명하여 하사하시면, 구로(舊老)를 우대하시는 성의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녹봉과 같이 일정한 규례를 삼</p>	<p>戶曹啓曰: “臣等竊伏思量, 米太酒饌之賜, 特出於恩命, 自上有時命賜, 足以表優老念舊之誠意。 若立恒規, 如祿俸之爲, 則恐未穩也。” 答曰: “有</p>

<p>호조가 식료 공급을 녹봉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아뢰다</p>	<p>으신다면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때때로 명하여 내려주는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도록 하서하는 일을 해조에 물은 뜻은 녹봉처럼 상례로 제공하려 함이니 다시 회계하도록 하라.” 하였으나, 그 후에 마침내 전례가 없다 하여 그만두었다.</p>	<p>時命賜食物，題給下書之事也。問于該曹之意，如祿俸之欲例爲題給也。更爲回啓。”後，竟以無前例防之。</p>
<p>82. 선조 14권, 13년 (1580 경진 / 명 만력 (萬曆) 8년) 7월 7일 (갑술) 3번째기사 정언 유덕수가 얼음 공급의 태만을 검속하기를 청하다</p>	<p>정언 유덕수(柳德粹)가 와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소장하는 얼음은 1년 용도를 계산하여 고정된 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관(該官)이 마음을 써서 전수(典守)한다면 절대로 부족할 염려가 없을 것인데 지금 서빙고(西氷庫)의 관원이 태만하여 살펴보지도 않고 얼음을 반출할 때 하리(下吏)에게만 맡겼으므로 도둑맞는 폐단까지 불러서 여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서반 및 종실에게 반사해 줄 얼음을 주지 말자고 계청한 것만도 물정이 온당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또 각 고을에 분정(分定)까지 하였으니, 비록 부득이한 사정에서 나왔다고는 하나 전수를 삼가지 못한 죄만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빙고에서 처음에 담당했던 차지 관원(次知官員)을 파직하게 하고, 외읍(外邑)의 빙정(氷丁)이 상납할 때에 해사의 관리들이 반드시 고의로 애를 먹이는 폐단을 만들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충분히 검찰하여 외람된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正言柳德粹來啓曰：“國家藏氷，計一年用度，定其梗數。若該官用心典守，則萬無不足之患，而今者西氷庫官員，慢不省事，頒出之際，委諸下吏，致有偷竊之弊。夏月未過，用之幾盡，四班及宗室例頒之氷，啓請不給，物情猶以爲未便。今又至於分定各官，此雖出於不得已，其不謹典守之罪，不可不懲。西氷庫當初次知官員，請命罷職。外邑氷丁上納之際，該司官吏，必有刁蹬作弊之事，請令吏曹十分檢察，俾無猥濫之弊。”答曰：“依啓。”</p>
<p>83. 선조 15권, 14년 (1581 신사 / 명 만력 (萬曆) 9년) 1월 10일 (을해) 4번째기사 호조가 오래 묵은 기름과 황각(黃角)의 처리를 의논하다</p>	<p>호조가 오래 묵은 기름과 황각(黃角)931)·과일 등 물건을 화매(和賣)하자고 청하니, 전교하였다. “묵은 기름은 쓸 수만 있다면 관학(館學)932)에 지급하고 황각은 경기로 보내 구황에 쓰도록 하라.”</p>	<p>戶曹請和賣久陳油及黃角果實等物。傳曰：“陳油如可用，則給館學。黃角送京畿，救荒。”</p>
<p>84. 선조 17권, 16년</p>	<p>내금위(內禁衛)의 노수심(盧守謙)이 상소하여 방어에 임할 것을 자원하니, 전</p>	<p>內禁衛盧守謙上疏，自願赴防。傳曰：</p>

<p>(1583 계미 / 명 만력 (萬曆) 11년) 2월 10 일(계사) 3번째기사 내금위 노수심이 북방 방어를 자임하다</p>	<p>교하기를, “그 사람이 적진에 나아가 싸울 것을 자원하니 가상할 일이다.” 하고는, 술과 궁시(弓矢)를 내리며 조방장(助防將) 박선에게로 가 그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였다.</p>	<p>“此人至欲赴敵，可嘉。” 命賜酒及弓矢，追赴於助防將朴宣聽節制。</p>
<p>85. 선조 17권, 16년 (1583 계미 / 명 만력 (萬曆) 11년) 2월 14 일(정유) 2번째기사 북변에서 공을 세운 신립·장의현·신상절 등을 가자하라는 전교</p>	<p>전교하였다. “신립은 가자(加資)하는 것이 옳으니 교서를 지어 하유하도록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쌀과 콩을 합하여 20석을 내리라. 부령 부사(富寧府使) 장의현(張義賢)은 따로 건원(乾原)을 지키면서 반적이 와 포위하자 고군으로 혈전 끝에 적을 물리쳤고, 훈융 첨사(訓戎僉使) 신상절(申尙節)은 반적이 와 포위했을 때 힘을 다하여 막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용기를 내어 출병하여 신립과 합세하여 적을 쳐부수고 돌아왔으니, 이 두 사람이 공도 작지 않다. 장의현은 가자할 것이며, 신상절은 4자급을 뛰어넘어 어모(禦侮)로 삼고 준직(準職)을 제수하라.”</p>	<p>傳曰：“申砮可加資，製教書諭之，賜其母米太并二十石。富寧府使張義賢，分守乾原，叛賊來圍，以孤軍血戰却賊，訓戎僉使申尙節，叛賊來圍，竭力拒之，又能奮勇出兵，與申砮合勢，擊賊而還，此二人功亦不細。張義賢可加資，申尙節超四資爲禦侮，仍陞授准職。”</p>
<p>86. 선조 17권, 16년 (1583 계미 / 명 만력 (萬曆) 11년) 4월 7일 (무오) 1번째기사 전 감역 박인적을 군전 판관으로, 충주 판관 최덕순을 채은관으로 함경도에 보내다</p>	<p>전 감역(監役) 박인적(朴麟迹)을 둔전 판관(屯田判官)으로 삼아 함경도(咸鏡道)로 보내 둔전을 만들고 또 소금도 구워 소금으로 곡식을 무역하여 군량을 넉넉하게 하도록 하고, 또 충주 판관(忠州判官) 최덕순(崔德詢)이 교성(巧性)이 있다 하여 그를 체임한 후 경직(京職)으로 경차관(敬差官) 칭호를 붙여 함경도로 보내 은(銀)을 채취하여 취련(吹鍊)한 후 화매(和賣)하도록 하였다.</p>	<p>戊午/以前監役朴麟迹爲屯田判官，遣于咸鏡道爲屯田，且煮鹽質穀，以贍軍食，又以忠州判官崔德詢有巧性，遞付京職，敬差官稱號，送于咸鏡道，使之採銀，吹鍊和賣。</p>
<p>87. 선조 17권, 16년 (1583 계미 / 명 만력 (萬曆) 11년) 5월 13 일(갑오) 1번째기사</p>	<p>북병사와 순찰사의 서장에 ‘이달 5일에 오랑캐 2만여 기가 종성을 포위하여 출신 군관(出身軍官) 권덕례(權德禮)·최호(崔浩)와 그밖의 토병(土兵)들 다수가 피살되고 병사(兵使)도 포위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경기 수사(京畿水使) 이발(李崐)을 가선(嘉善)으로 올려 방어사(防禦使)에 임명하였다.</p>	<p>甲午/北兵使及巡察使書狀： 本月初五日，賊胡二萬餘騎，圍鍾城，出身軍官權德禮、崔浩及土兵等，多數被殺，兵使亦在圍中。’於是，以京畿</p>

<p>비변사가 북방의 병사 파견, 군량과 전마 조달 등에 대해 논의하다</p>	<p>곧 이어 조정에서 논의하기를 ‘이미 병사가 있는데 또 방어사를 보내면 서로 지휘에 계통이 맞설 염려가 있으니 조방장(助防將)으로 호칭을 고쳐 들여보낼 것이며, 공사천(公私賤) 잡류(雜類)로서 활을 잘 쏘는 자 2백 명을 골라 그들에게는 각기 면포(綿布)와 쌀을 주고, 또 활을 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각각 보(保)를 주어 전마(戰馬)를 갖추게 하여 두 운(運)으로 나누어 들여보낼 것이며, 또 북도의 식량이 부족하니 동·서반(東西班)의 당상(堂上)과 종친(宗親) 중 2품 이상은 각기 쌀 1석씩을 내어 안변(安邊)으로 수납(輸納)케 하고, 동·서반 4품 이상과 종친 부정(副正) 이상은 각기 쌀 1석씩을 모두 안변에 수납하도록 하고, 외방의 수령(守令)들은 함경도(咸鏡道)와 평안도(平安道) 박천(博川) 이북의 각 고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곡(耗穀)1029 으로 정미(正米) 2석씩을 안변에 수납하게 하자.’고 하였다. 이에 비변사가 공사(公事)를 만들어 올리니, 계하(啓下)하였다.</p>	<p>水使李삼爲嘉善拜防禦使。尋以朝議：‘既有兵使，又遣助防禦使，恐有頡頑之患。’改稱助防將入送，公私賤雜類人，能射者抄二百名，各給綿布米石，又以不能射市民等，各給保，使備給戰馬，分二運入送，又以北道糧餉不繼，令東西班堂上宗親從二品以上，各出米一石，輸納于安邊。東西班四品以上，宗親副正以上，各出米一石，東西班六品以上，宗親副守以上，受官米一石，並輸納于安邊，外方守令，則咸鏡道及平安道博川以北各官外，耗穀正米二石，輸納于安邊事。備邊司爲公事，啓下。</p>
<p>88. 선조 19권, 18년 (1585 을유 / 명 만력 (萬曆) 13년) 4월 18일(기미) 1번째기사 경기 감사 윤탁연이 구황을 위해 이웃 도의 곡식을 운송하도록 청하다</p>	<p>(전략) “근년 이래 수재와 한재가 매우 심하여 기근(飢饉)이 거듭되었으므로 곡식을 운송하는 일이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본도(本道)의 여유가 있는 고을들도 이제는 똑같이 곡식이 부족합니다. 신이 올해의 농사 상황을 순찰해보니, 겨울이 다 지나도록 눈이 내리지 않았고 봄이 다 가서야 비가 와서 양맥(兩麥)의 성숙은 기일이 아직도 멎습니다. 농량(農糧)과 구황(救荒)의 일이 지금 배나 중요한데, 신의 뜻으로는 본도와 접경한 이웃 도(道) 가운데 창고의 곡식이 여유가 있는 곳에서 구황곡을 넉넉한 정도에 따라 운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啓曰：“比年以來，水旱極備，飢饉重仍，移轉之舉，無歲無之。向來本道有裕之州邑，到今一樣匱乏。臣巡察本年農事，經冬無雪，過春得雨，兩麥成熟，其期尙遠。農糧救荒，此時倍緊，臣意本道連境之隣道倉穀有裕處，救荒穀物，從優移轉何如？”傳曰：“依啓。”</p>
<p>89. 선조 19권, 18년 (1585 을유 / 명 만력</p>	<p>충청도 어사 강신(姜紳)이 치계(馳啓)하기를, “안면곶(安眠串)의 염분(鹽盆)1139 을 금단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나</p>	<p>忠淸道御史姜紳馳啓曰：“安眠串鹽盆禁斷事。我國船材之產，不過海西之</p>

<p>(萬曆) 13년) 4월 29일(경오) 4번째기사 어사 강신이 배 만드는 재목이 남벌되고 있다며 안면곶의 염분을 금단하기를 청하다</p>	<p>라에서 배를 만드는 재목이 나는 곳은 해서(海西)의 장연(長淵), 호서(湖西)의 안면, 호남(湖南)의 변산(邊山) 등 몇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번 권세가(權勢家)가 【심통원(沈通源)·윤원형(尹元衡)·이양(李樑) 등이다.】 이를 자기의 물건처럼 여겨 마구 베어다 집을 지었는데도 막지를 못했는데, 근년에 와서는 엄하게 법금(法禁)의 조목을 세웠으므로 사대부의 집에서 금법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나무를 베러 드나든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이는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안면곶(安眠串)에 사는 백성 중에 염업(鹽業)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곳에다 굴을 파놓고 밤낮으로 나무를 베어서 소금을 굽는다고 합니다. 대저 배를 만드는 재목을 기름에 있어서 1백 년이 되지 않으면 재목이 되지 못하는 것인데, 이제 하찮은 백성들이 옛날 권세가가 하던 짓보다 더 심하게 마구 베어가니 어찌 매우 통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병사(兵使)·수사(水使)에게 하서하여 일체 쫓아내고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만약 남모르게 남벌하여 소금 굽는 곳이 있으면 도사(都事)와 우후(虞候) 등에게 때때로 적간(摘姦)하게 하여 중죄로 다스리게 한다면, 간사한 백성들이 몰래 베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배 만드는 데 쓰이는 나무도 무궁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조(該曹)에 내리고 회계하게 하라.” 하였다.</p>	<p>長淵, 湖西之安眠, 湖南之邊山數處而已。頃者權勢之家, 【指沈通源、尹元衡、李樑等人。】 視爲己物, 爲宮爲室, 斬伐無禁, 近年以來, 嚴立科條, 士大夫之家, 未聞有冒禁私伐出入, 是則幸矣。第聞安眠串居民, 以鹽爲業者, 窟穴其中, 晝夜斫伐, 以煮其鹽。夫船材之養, 非至於百歲, 則不能成材, 而今以么麼小民, 斫取之濫, 有甚於舊日權勢之家, 豈不痛甚? 下書于監、兵、水使, 一切驅出, 使不接蹤。如有隱漏潛作之處, 令都事虞候等, 時時摘姦, 治以重罪, 則姦民庶絕偷斫之路, 而船材之用, 可保其無窮矣。” 傳曰: “下該曹, 回啓。”</p>
<p>90. 선조 20권, 19년 (1586 병술 / 명 만력 (萬曆) 14년) 5월 4일 (무술) 1번째기사 황해 감사가 기근이 심하니 경창의 목은</p>	<p>황해 감사(黃海監司)가 치계하기를, “본도(本道)는 근년 이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창고의 곡식 또한 결손이 많고, 양맥(兩麥) 이 익을 시기를 어렵게 고대했지만 봄 이후로 가뭄이 너무나 심해 보이는 것들이 참혹하고 슬픕니다. 그리하여 많은 백성들이 연명할 길이 없습니다. 도내의 창고에 쌓인 곡식을 죄다 나누어 구휼하였으나 온갖 궁리를 해 봐도 뵈족한 수가 없어 울부짖으며 먹을 것을 기다리는 실상을 참혹해 차마</p>	<p>戊戌/黃海監司馳啓曰: “本道近年以來, 連歲凶荒, 倉穀之數亦多逋欠, 兩麥成熟之期, 艱難苦待, 入春以後, 旱乾太甚, 所見慘惻, 許多民生連命無路。道內倉穀, 盡爲分賑, 百計無策, 嗷嗷待哺之狀, 慘不忍見。 依辛巳年</p>

곡식을 보내달라고 치계하다	볼 수가 없습니다. 신사년1161) 의 준례에 따라 각별히 강구하여 경창(京倉)의 묵은 쌀을 넉넉하게 내려 보내어 빈사의 지경에 놓인 백성을 구제하소서.” 하였는데, 호조(戶曹)에 계하(啓下)하였다.	例, 各別講究, 京倉陳米優數下送, 以濟濱死之民事。” 啓下戶曹。
91. 선조 20권, 19년 (1586 병술 / 명 만력 (萬曆) 14년) 5월 4일 (무술) 2번째기사 개성부 유수가 경창미를 풀어 백성을 구제하도록 청하다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가 치계하기를, “금년은 가뭄이 극심하여 양맥이 부실하고 창고의 곡식도 텅 비어 구활(救活)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신년1162) 의 준례에 의거하여 경창미(京倉米)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제급(題給)하게 해 죽기에 이른 백성의 생명을 구제하소서.” 하였는데, 호조에 내렸다.	開城府留守馳啓曰: “今年旱甚, 兩麥不實, 倉穀罄盡, 救活無計。 依戊申年例, 京倉米, 令該曹磨鍊題給, 以救垂死之民命。” 事下戶曹。
92. 선조 20권, 19년 (1586 병술 / 명 만력 (萬曆) 14년) 6월 1일 (갑자) 1번째기사 전라 감사가 흉년을 구휼하기 위해 구황식량의 조달을 청하다	전라 감사가 치계하기를, “도내의 농사 형편은 양맥(兩麥)이 손상되어 혹 낫을 딸 수조차 없는 곳도 있으며, 농량(農糧)도 바닥이 나 구휼할 대책이 없을 뿐더러 추수하고 보리 심는 것도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올 곡식이 익기 전에 계속 구제할 일이 매우 난감합니다. 따라서 각 고을의 부유한 이들이 사사로이 비축한 곡식과 매년 준비해 놓은 구황용(救荒用) 상수리의 유무를 조사해서 구제할 식량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호조에 내렸다.	朔甲子/全羅監司馳啓曰: “道內農事形止, 兩麥損傷, 或有不得掛鎌之處, 農糧頓乏, 賑救無策, 秋成種麥, 極爲可慮。 早穀成熟前, 繼救極難。 各官富實人私儲穀行移, 各年備上救荒橡實有無訪問, 以補接濟之用。” 事下戶曹。
93. 선조 22권, 21년 (1588 무자 / 명 만력 (萬曆) 16년) 1월 8일 (임진) 1번째기사 《통감강목》을 강하고, 조현의 상소와 구황을 위해 암행 어사 파견 문제를 논의하다	(전략) 이성중은 아뢰기를, “세 도 중에서 평안도가 더욱 심하여 구황곡(救荒穀) 5만 석이 이미 강화(江華)에 수송되었습니다. 보리가 익기 전까지는 암행 어사가 오래 머물 수 없고 또 한 사람의 근력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노직은 아뢰기를, “대개 감사가 주찰(主察)하고 도사(都事)가 요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사만을 특파시킨다면 사소한 폐단밖에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성중은 아뢰기를,	(전략) 誠中曰: “三道之中, 平安尤甚, 救荒移轉穀五萬石, 已到江華矣。 且麥熟前, 暗行不可久留, 一人筋力, 又安能堪耶?” 稷曰: “大概監司主察, 而都事料理。 不然, 特遣御史, 少除一分之弊矣。” 誠中曰: “監司多事, 必不如敬差官之專於賑飢。 但敬差官大有弊, 果如稷之言矣。” 啓訖, 以次

	“감사는 일이 많아서 경차관처럼 구황(救荒)에만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차관에게 수반되는 큰 폐단은 과연 노직의 말과 같습니다.” 하였다. 아뢰기를 마치고 차례로 물러갔다.	退。
94. 선조 22권, 21년 (1588 무자 / 명 만력 (萬曆) 16년) 3월 9일 (임진) 2번째기사 경기 구황 경차관 송 언신의 서장에 진사 김대천 등이 납속한 일을 아뢰자 관작 제 수를 논의하다	경기 구황 경차관(救荒敬差官) 송언신(宋言愼)의 서장(書狀)에, 도내의 진사(進士) 김대천(金大淺)과 유학(幼學) 강담(姜潭)·홍지(洪箴)·홍적(洪籍) 등이 정조(正租) 각 2백 석을 관(官)에 바쳐 조자(租子) 에 보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니 이조가 이를 위에 알려져서 적당한 직을 제수하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조에서는 외방 각읍(各邑)에 이 같은 사례가 많을 것인데 한계가 있는 관작으로 일일이 제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 하여, 그 시행을 잠시 보류하였다.	京畿救荒敬差官宋言愼書狀：道內進士金大淺，幼學姜潭·洪箴·洪籍等，正租各二百石納官，租子補用，令吏曹聞見，相當職除授事。吏曹以外方各邑，此類必多，以有限官爵，一一除授，勢所難能，舉行安徐。
95. 선조 22권, 21년 (1588 무자 / 명 만력 (萬曆) 16년) 윤6월 27일(무신) 1번째기사 권징을 인견하여 위로 하고 북변의 일을 양 곡·둔전 등을 논의하 다	(전략) 권징이 아뢰기를, “양곡을 축적하려면 둔전(屯田)을 설치하는 것만 못한데 둔전을 어찌 꼭 녹둔(鹿屯)1259)에만 설치해야겠습니까. 북도에 혹 1식(息)1260) , 혹 2식 거리에 공한지가 매우 많으니 이런 곳에 둔전을 설치하면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의 양곡을 비축하고 군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도 옳으니 마음을 다하여 실현하라. 또한 작은 일은 편리한 대로 처리하고 이밖의 다른 일은 의당 의논해서 처리하며, 임지에 가서 무슨 소견이 있거든 즉시 계문(啓文)하라.” 하였다. 권징이 물러가려 하자, 상이 잠시 머물러 술을 마시라고 하였다. 술이 끝난 뒤에 물러 갔다.	(전략) 徵曰：“欲爲積穀，莫若屯田，屯田何必鹿屯乎？北道，或一息，或二息，空閑之地甚多，宜於此開屯田也。” 上曰：“卿言積穀養兵等事極是。宜盡心爲之。此外小事，亦宜便宜處之，他餘事當議處。到彼，如有所見，卽爲啓聞。” 徵欲退，上曰：“姑留飲酒。” 飲訖，退。
96. 선조 23권, 22년 (1589 기축 / 명 만력 (萬曆) 17년) 4월 24	팔계군(八溪君) 정종영(鄭宗榮)이 노병(老病)으로 차자를 올려 향리(鄉里)로 들어가기를 청하니, 상이 윤허하고 말[馬]과 아울러 본도(本道)로 하여금 식물(食物)을 제급(題給)하게 하였다. 그가 하직하는 날에는 아다개(阿多	庚子/八溪君鄭宗榮，以老病上劄乞歸鄉里。上許之，給馬，令本道食物題給。拜辭日，賜阿多介一坐，胡椒一

<p>일(경자) 1번째기사 팔계군 정종영이 향리로 돌아가기를 청하니 말과 식물을 제공하게 하다</p>	<p>介)1277) 1좌(坐)와 호초(胡椒) 1두(斗)를 하사하고 아울러 문 밖에 어주(御酒)를 내리고는 이어 전교하였다. “인견(引見)하고 싶으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하다 하므로 그만둔다.”</p>	<p>斗, 門外宣醞, 仍傳曰: “欲引見, 而聞艱步起居, 未果焉。”</p>
<p>97. 선조 23권, 22년 (1589 기축 / 명 만력(萬曆) 17년) 12월 14일(정해) 1번째기사 전라 유생 정암수 등이 이산해·정언신·정인홍·유성룡 등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리다</p>	<p>(전략)내부에는 정언신(鄭彦信)이 있어 오랫동안 병권(兵權)을 장악하고 많은 무사(武士)들과 결탁하는 한편, 정언지·권극례(權克禮)·권극지(權克智) 등과 더불어 친구가 되고 요로를 차지하여 상호 주선하였으며, 안으로는 쓸데없는 역사(役事)를 일으켜 사섬시(司贍寺)의 재화(財貨)를 소비하고 밖으로는 수송해 온 곡식을 풀어 사사로이 은혜를 베푸는가 하면, 북호(北胡)가 변방에 침투하여 도둑질을 일삼는데 그들에게 땅을 떼주는 문권(文券)을 마음대로 만들어 주었고, 이일(李鎰)이 명을 받아 변방으로 나가는데 사사로이 검(劍)을 끌러 주었으니, 이미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녹둔(鹿屯)을 설치하여 한 지방에 해를 끼쳤고 추쇄(推刷)를 거행하여 제도(諸道)의 원성을 일으켰으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동요시킨 바가 일체 오피(伍被)가 회남왕(淮南王)을 위한 계책과 같습니다.(후략)</p>	<p>(전략) 內有鄭彦信, 久握兵權, 多結武士, 與彦智·權克禮·克智等, 表裏親舊, 根據要津, 互相周旋, 內作無益之役, 虛罄司贍之貨, 外散輓輸之穀, 私施煦嚙之恩, 北胡寇邊, 匪茹而割地, 成券以擅與之。李鎰受命出塞, 而脫解劍以私遣之, 則已有無君之心也。鹿屯之設, 貽害一隅, 推刷之舉, 斂怨諸道, 凡所以蠹國搖民者, 無非伍被爲淮南之畫耳。(후략)</p>
<p>98. 선조 25권, 24년 (1591 신묘 / 명 만력(萬曆) 19년) 12월 1일(계사) 5번째기사 공물과 진상을 올릴 때 관청에 바치는 뇌물을 금단하여 민생을 보존하라는 전교</p>	<p>전교하기를, “민생의 휴척(休戚)에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로운 것은 마땅히 불속에서 구하듯 물속에서 건지듯 서둘러 구원해야 한다. 듣건대 지방에서 공물(貢物)과 진상품을 올릴 때와 상급 관청으로 정문(呈文)을 보낼 때에도 인정가물(人情價物)1383) 이라는 것이 있어 각 고을이 공공연하게 백성들로부터 거둔다고 하니, 민생(民生)이 어떻게 보존되겠는가. 감사(監司)로 하여금 신칙하여 일체 금단(禁斷)케 하라. 서울에 있는 각사(各司)가 종전대로 징수하거든 색리(色吏)에게 알려 스스로 헌부에 정문을 올리게 함으로써 엄하게 적발하여 다스릴 것을 헌부에 이르라.”</p>	<p>傳曰: “民生休戚, 係國家安危。苟有害於民, 當如救焚拯溺。今聞外方貢物及進上, 至於上司呈文之際, 皆有人情價物, 而各官公然責辦於民, 民生何以保存? 令監司申勅, 一切禁斷。京中各司, 如前徵責者, 知委色吏, 使自呈于憲府, 嚴加糾治事, 言于憲府可也。” 領相李山海啓于經席也。</p>

	하였는데, 이는 영의정 이산해가 경연에서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99. 선조 26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5월 1일 (경신) 2번째기사 저녁에 개성에 도착하 다	풍덕군수 이 수형이 길에서 배알하고 약간의 어선을 준비했다. 백관들도 얻어 먹었고 아래로 군량과 말먹이까지도 모두 준비해 주었으며 따로 쌀 5석을 바 치니 상이 즉시 호위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녁에 개성부에 도착했다.	豐德郡守李隨亨，謁於道左，稍備御膳。百官亦得食，下至軍糧馬料，亦皆措備，別獻米五石，上卽分賜從行衛卒。夕次開城府。
100. 선조 26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5월 3일 (임술) 6번째기사 도승지 이충원 등을 가자하고 적의 형세, 민심의 동향 등을 묻 다	곽이 아뢰기를, “위망이 눈앞에 닥쳤는데 임금과 신하 사이에 무슨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대저 인심을 수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래 궁인들의 작폐가 심해졌습니다. 내수사 사람들이 거짓 궁물이라 칭탁하여 백성들에게 원망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의 변이 생긴 까닭도 다 왕자궁에 있는 사람들의 작폐에 서 연유된 것으로 인심이 원망하고 배반하여 왜와 한마음이 된 탓입니다. 듣 기로는 ‘우리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다. 너희 임금이 너희들을 학대하므로 이렇게 온 것이다’라고 하였고, 우리 백성들도 ‘왜인도 사람인데 우리들이 하 필 집을 버리고 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고 합니다. 작폐한 내수사의 사람들을 복베고 또 오랫동안 쌓인 평안도의 포함을 면제해주소서.”	(전략) 卒曰: “危亡迫至, 君臣之間, 何可有隱? 大抵收拾人心爲上。近來宮人作弊。內需司人, 假稱宮物, 而積怨於民。今日生變之由, 皆緣王子宮人作弊, 故人心怨叛, 與倭同心矣。聞賊之來也, 言: ‘我不殺汝輩, 汝君虐民, 故如此。’ 云我民亦曰: ‘倭亦人也, 吾等何必棄家而避也?’ 請誅內需司作弊人, 且免平安道積年逋欠。” (후략)
101. 선조 26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5월 8일 (정묘) 7번째기사 어선을 풍족히 하라는 전교	상이 전교하였다. “어선은 생물로 할 것이며 수량도 풍족하게 하라. 동궁 이하도 다 이 예에 따 르도록 하라.”	上敎曰: “御膳, 以生物入之, 品數亦多豐侈。東宮以下, 皆依此爲之。”
102. 선조 26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5월 8일	정빈 홍씨, 정빈 민씨, 숙의 김씨, 숙용 김씨와 신성군·정원군 및 그 부인 두 사람에게는 각자 하루에 세 끼니를, 시녀·수모와 밑에 있는 나인들에게는 하 루에 두 끼니를 이날부터 지급하였다.	貞嬪洪氏, 靜嬪閔氏, 淑儀金氏, 淑容金氏, 信城君、定遠君及其夫人兩人則各一日三時, 侍女、水母下內人等, 各

<p>(정묘) 8번째기사 정빈 흥씨·민씨 등에 게 하루 세 끼니를, 시 녀 이하에게는 두 끼 니를 지급하다</p>		<p>一日兩時，自今日宣飯供饋。</p>
<p>103. 선조 26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5월 12 일(신미) 2번째기사 사용원이 태묘에 천신 할 봉상시 관원이 없 다며 처분을 청하다</p>	<p>사용원인 아뢰기를, “평상시에 태묘에 천신할 적에 봉상시 관원이 들고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개 성부에서 진상한 햇오이를 본원 제조에게 명하여 종묘와 영녕전에 천신하게 하신 것은 성효의 소치입니다만 어느 관원이 봉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봉상시 관원이 없으니 사용원 관원이 권도에 의거 대신하 게 하라.” 하였다.</p>	<p>司饗院啓曰：“常時太廟薦新，奉常寺 官員齋進。而今此開城府進上新菘， 命本院提調，封薦于宗廟、永寧殿，特 是誠孝之舉，未知何官奉進？”傳曰： “無奉常寺官，則以司饗院官員，從權 爲之。”</p>
<p>104. 선조 26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5월 13 일(임신) 2번째기사 옥당이 급제 이산해의 정죄를 청하고 강변에 서 징발한 토병을 임 진장에 보내다</p>	<p>(전략) 막 떠나려는 참인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성임을 지금 보내야 하는데 칭호가 없을 수 없습니다. 순찰부사로 계하하 심이 어떻겠습니까? 토병은 멀리 강변에 살면서 오랫동안 국가의 특별보호를 받았으므로 모두 목숨을 바쳐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경성으로 떠남에 있 어 특별히 술과 고기로 호궐했습니다.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 녹봉록 5백 필 중에서 2백 필을 덜어 내어 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하기에 감히 아닙니다. 또 도순찰사 한 응인이 자망한 군관인 정주 관관 김의일·전인룡과 그밖에 지원한 사람들도 모두 보내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將發，備邊司啓曰：“李聖任，今當入 送，不可無稱號。以巡察副使啓下， 何如？土兵遠居江邊，久蒙國家別護之 恩，皆願死事。今赴京師，已爲別犒 酒肉矣。此處儲在祿俸木五百匹，除 出二百匹俵給，似當，敢稟。且都巡 察使韓應寅，自望軍官，定州判官金毅 一、田仁龍及他自募人等，亦爲入送 矣。”答曰：“依啓。”</p>
<p>105. 선조 26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5월 15 일(갑술) 4번째기사 비변사가 평양의 전세</p>	<p>비변사가 신묘년 분의 평양부의 전세인 쌀과 콩 도합 4백여 석을 탕감하여 구휼에 특별히 힘쓴다는 뜻을 보일 것과, 본부의 출신·사인·향리·관군·공친·사친 등에게 성 밖 연무정에서 활쏘기 시험을 보이고 상격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 다.</p>	<p>備邊司請蠲辛卯年本府田稅米太并四 百餘石，以示各別優恤之意，本府出身 及士人、鄉吏、館軍、公私賤，試射于 城外演武亭，以行賞格。</p>

<p>를 감면하고 활쏘기 시험을 보아 상을 줄 것을 청하다</p>		
<p>106. 선조 26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5월 25일(갑신) 2번째기사 도순찰사 이원익이 징발군이 굶주리고 있으니 호조의 전세나 창고 곡식을 지급해 달라고 청하다</p>	<p>본도 도순찰사 이원익이 치보하기를, “각 고을에서 군대를 징발하여 대기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각 고을로 하여금 계속해서 군량을 지급하게 하고 있으나 도로가 멀기 때문에 굶주리는 자가 많습니다. 비변사에서 강변의 토병은 술고기와 면포를 주어서 구휼한다는 뜻을 보였으나 유독 내지의 군대에게는 남의 나라 사람 보듯 하고 있으니 호조로 하여금 전세나 창고에 저장된 쌀과 콩을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本道都巡察使李元翼馳報云：“各官徵兵，聚待已久。令各其官繼餉，而道路遼遠饑餓者多。備邊司以爲，江邊土兵，則酒肉綿布，以示優恤之意，獨於內地之兵，有同越視，請令戶曹，俵給田稅或倉儲米太。”上從之。</p>
<p>107. 선조 27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6월 4일(임진) 2번째기사 왕자를 호종한 배행관 김귀영 등이 함경도 병사들에게 말을 지급하고 생민을 위로할 것을 청하다</p>	<p>함경도로 왕자를 모시고 간 배행관 상락부원군 김귀영, 청계군 윤탁연이 치계하였다. “왕자들을 나누어 보내어 인심을 진정시키려는 성님의 소재는 실로 보통이 아니시건만 신들이 변변찮아서 부모들을 위유하여 덕의를 선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우러러 절을 하고 기뻐하며 생기가 도는 것이야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건대 천만 마디의 빈말은 조그마한 실제의 혜택만 못한 것입니다. 본도는 근래에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운송함으로 인하여 사람은 집집마다 다 전쟁에 나아갔고 마굿간에는 말 한 필도 없으니, 목장의 말 1백여 필을 혹은 요로의 쇠잔한 역에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재능은 있으면서 말이 없는 병졸에게 지급하소서. 그리고 함경도의 공물 및 문소전·연은전에 진상하는 물신 등을 감면하라는 은명을 내려 백성들이 다시 생기를 찾도록 하소서.”</p>	<p>咸鏡道王子陪行官上洛府院君金貴榮，漆溪君尹卓然馳啓曰：“分遣王子，鎮定人心，聖念所在，實出尋常，而緣臣等無狀，不能慰諭父老，宣布德意。而小民之拭淚瞻拜，欣欣生意，曷有紀極？第念千萬空言，不如一分實惠。本道近因調發軍兵，轉運糧餉，人則舉家赴戰，馬無一匹在厩，請以牧場馬百餘匹，或給要路絕替之驛，或給有才無馬之卒。且蠲革本道貢物，及文昭、延恩殿物膳，使恩命出於上，而民生更得意。”</p>
<p>108. 선조 27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p>	<p>본부에서 음식물을 올리자 상이 여러 배종한 신하들에게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p>	<p>本府物膳，上命賜諸陪臣。</p>

<p>(萬曆) 20년) 6월 13일(신축) 2번째기사 음식을 올리자 배종한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다</p>		
<p>109. 선조 27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6월 15일(계묘) 2번째기사 유성룡을 만나 청천강의 부교 설치, 군량 조달, 대가의 행행 등을 논의하다</p>	<p>(전략) 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명 나라 병사가 정주에 도착하면 당연히 호군하는 일이 있어야 하므로, 안주에서 이미 쌀 20여석을 내어 술을 빚도록 하고 또 소와 돼지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5백 섬은 바로 5천 명의 15일 식량이니, 각주.각부에서 각각 3일 분의 식량을 공급하면 되겠습니다.” 하였다.</p>	<p>(전략) 成龍曰: “若天兵到定州, 則當有犒軍之事, 安州已出米二十餘石, 使之釀酒, 且備牛豕以待矣。 五百石, 乃五千名十五日糧, 各州各府, 各給三日糧則可。” (후략)</p>
<p>110. 선조 27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6월 22일(경술) 1번째기사 의주에 도착하여 목사의 관사에 좌정하다</p>	<p>상이 용천을 떠나 의주에 도착하여 목사의 아사에 좌정하였다. 이때에 고을 사람들이 평양이 포위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흥흥하여 두려워하더니 명 나라 병사들이 강을 건너 성안으로 들어와 약탈하자 인민들이 모두 산골짜기로 피해 들어가 성안이 텅 비었다. 목사 황진과 관관 권탁 등이 관인 및 관아의 여종 두어 명을 직접 거느리고서 임금의 수라를 장만하였으며 호종한 관원들은 성안의 빈집에 분산 거처하였다. 풀과 땔나무가 계속 조달되지 아니하여 비록 행재소라고는 하지만 적막하기가 빈 성과 같았다.</p>	<p>庚戌/上發龍川, 次義州, 御于牧使衙舍。 時, 州人聞平壤被圍, 洶洶危懼, 及天兵渡江, 入城搶掠, 人民皆避入山谷, 城中空虛。 牧使黃璣, 判官權曄, 親率官人及衙婢數人, 以供御廚, 從官散處城內空家。 芻薪不繼, 雖爲行在, 閔然若空城矣。</p>
<p>111. 선조 28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7월 4일 (신유) 9번째기사 유성룡이 창성장의 양곡 비축 상황과 운반</p>	<p>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요사이 종사관 홍종록의 첩보를 보건대, 창성장의 곡식은 백미와 전미를 합하여 1만여 섬이며, 삭주창의 곡식은 전미가 4천 9백여 섬이고, 백조미가 각 7백 5십여 섬에 증미가 1백 2십여 섬이며, 두 고을의 말먹이 큰은 도합 7천여 섬입니다. 이 두 고을의 곡식으로 군사 만 명의 몇 달 양식은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길이 험하고 멀어서 인마가 함께 다니지 못하므로 수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성의 곡식은 뱃길을 따라</p>	<p>柳成龍啓曰: “臣近見從事官洪宗祿牒報, 昌城倉穀白米田米合萬餘石, 朔州倉穀田米四千九百餘石, 白造米各七百五十餘石, 蒸米一百二十餘石, 兩邑馬豆合七千餘石。 以此兩邑之穀, 足以支持萬兵數月之糧。 只是道里窳遠,</p>

<p>방법을 아뢰다</p>	<p>물의 흐름을 타고 내려오면 수일 만에 의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삭주의 것은 반드시 구성으로 수운하고 또 구성으로부터 정주로 실어오면 그 형편이 편할 듯합니다. 다만 구성의 곡식은 그 숫자가 많으니, 지금 우선 삭주의 곡식은 그대로 두고 구성 장고의 곡식만 정주·박천으로 먼저 실어오면 중국 군사를 지대할 수 있습니다. 조도사에게 시기에 맞추어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정주로만 거두어 모을 것이 아니라, 선천·곽산 같은 곳에 나누어 두는 것이 어떠한가? 또 듣건대 백성들이 돌아와 모였다 하니, 각기 그곳의 수령에게 명하여 운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p>	<p>人馬不俱，輸運爲難耳。然昌城之穀，可以從船順流，而下數日，可達義州。朔州則必輸運於龜城，又自龜城輸到定州，其勢似便。但龜城之穀，其數自多，今姑置朔州之穀，先輸龜城倉穀於定州。博川，則可以支持天兵。請令調度使，及時措置。” 答曰：“依啓。不但收聚於定州，如宣川、郭山分置如何。且聞百姓還集云，令各其守令，負持以輸如何。”</p>
<p>112. 선조 28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7월 7일 (갑자) 3번째기사 비변사가 창성과 삭주의 곡식을 실어오자고 청하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의주에 저장해 둔 곡식이 있지만 중국 군사 1천 명이 현재 이곳에 있고, 행재소의 용도도 많습니다. 비용을 이어달 방도를 조금도 늦출 수가 없으므로 이미 창성의 쌀 3백 석을 실어오게 하였으나, 그 숫자 또한 적습니다. 삭주의 백미 2백 석과 창성의 1백 석을 더하여 즉시 실어오라는 뜻으로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備邊司啓曰：“義州雖有儲穀，天兵千名，方在此處，而行在用度亦繁。繼用之策，不可少緩，已令輸運昌城米三百石，而厥數亦少。朔州白米二百石，昌城加一百石，即時輸運之意，行移何如?” 答曰：“依啓。”</p>
<p>113. 선조 28권,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 (萬曆) 20년) 7월 11일(무진) 4번째기사 군량을 조달하는 일에 대비하라고 전교하다</p>	<p>전교하기를, “평양의 왜적을 몰아내면 황해도는 군량이 부족하다. 충청도 아산창에 세미가 많이 쌓였다 하니, 본도의 감사에게 배에 싣고 와서 중국 군사에게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우리 군사가 이르는 곳을 따라 군량을 대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비변사에게 속히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신들은 생각이 멀리 미치지 못하여 매양 평양의 왜적을 몰아낸 뒤 황해도의 군량은 용강에 비축된 곡식이 매우 넉넉하므로 황해도로 옮겨서 쓰려고 했었습니다. 아산창의 세미가 많기는 하나 뱃길에 바람이 심하여 날짜를 정할 수</p>	<p>傳曰：“平壤之賊，若得驅逐，黃海道軍糧不足。聞忠清道牙山倉稅入米多積云，今本道監司，載船分泊於天兵，或我兵隨所到處，繼餉之意，令備邊司速爲議處。” 備邊司回啓曰：“臣等意不及遠，每以平壤之賊爲驅逐之後，黃海道軍糧，則龍岡儲穀甚優，計欲移用於黃海道矣。牙山倉稅米雖多，海路</p>

	<p>가 없습니다. 용진에 도착할 아산 세미 1천2백석이 만일 장산곶을 지나지 않았거든 황해감사에게 조치하도록 하여 백천에 대기하고 경강에도 대기하여 우리 군사가 이르는 곳에 따라 군량을 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아산 세미는 지금 미치지 못하나 즉시 나누어 싣고서 뱃길의 중간에 있다가 형편을 보아 응용하도록 할 것을 아울러 하소서 하라.” 하였다.</p>	<p>風汎，不可定期。瓮津到泊牙山稅米一千二百石，如未過長山串，則令黃海監司措處，或泊於白川，或泊於京江，隨我兵所到，繼餉何如？”答曰：“依啓。牙山稅米今雖未及，即令分載，而中流海路，觀勢應用事，竝爲下書”</p>
<p>114. 선조 34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월 3일 (무오) 2번째기사 용만관에서 원외랑 유황상을 접대하고 평양 수복에 대해 논의하다</p>	<p>상이 원외랑(員外郎) 유황상(劉黃裳)을 용만관(龍灣館)에서 접대(接待)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의 일 때문에 얼음이 얼고 눈이 덮인 먼 길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삼가 배사(拜謝)합니다.” 하니, 유황상이 말하기를, “황상(皇上)께서 조선이 왜국의 침략을 심하게 당했으므로 경략(經略) 및 본부를 보내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천리가 되는 지역에 출병하여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실로 황상께서 조선의 각근(恪謹)한 정성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황상의 뜻을 체득하십시오.” 하였다. 차(茶)와 술을 돌리며 임금이 말하기를, “소방의 일로 군부(君父)에게 근심을 끼쳐 천하의 군대를 출동하게 하였으니 밤낮으로 감읍(感泣)합니다.” (후략)</p>	<p>上接待劉員外、黃裳于龍灣館。上曰：“以小邦之故，遠路氷雪，跋涉勤勞，請拜謝。”黃裳曰：“皇上，以本國酷被倭患，遣經略及本府，提十萬之兵，出數千里之地以救之，此實皇上念本國恪謹之誠也。願本國體皇上之意也。”行茶酒。上曰：“以小邦之故，貽君父之憂，動天下之兵，日夜感泣。” (후략)</p>
<p>115. 선조 34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월 8일 (계해) 3번째기사 한응인 등이 이 제독의 진격 상황을 보고하다</p>	<p>(전략) “대개 오늘날의 근심은 오직 양식 한 가지에 달려 있는데, 숙천(肅川)에 저축된 쌀과 콩이 넉넉하지 못하다 하므로 신들이 도체찰사 및 조도사(周度使) 윤승훈(尹承勳)과 서로 의논하여, 이웃 고을의 곡식을 차례로 이전(移轉)하여 안정(安定)에 앞서 도착하도록 특별히 감독하고 계료하였습니다.”</p>	<p>(전략) “大概今日之憂，只在糧餉一事，而聞肅川所儲米太，甚爲不敷。臣等與都體察使及調度使尹承勳相議，以次移轉隣邑之穀，前到安定，別加檢勅計料。”</p>
<p>116. 선조 34권, 26년</p>	<p>강원도에서 정조(正朝)의 물선(物膳)을 올리니 상이 본주(本州)에 내려 명나라</p>	<p>江原道進正朝物膳，上下本州，用於唐</p>

<p>(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월 11일(병인) 7번째기사 강원도에서 올린 물산 중 좋은 어물은 이 제독에게 증정하다</p>	<p>관리들을 지대하는 데 쓰도록 하고, 그 중에 드러나게 좋은 어물은 단자를 갖추어 관리를 보내 이 제독에게 증정하였다.</p>	<p>官支待， 其中表表魚物， 具單子遣官， 呈李提督。</p>
<p>117. 선조 34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월 29일(갑신) 3번째기사 영의정 최홍원 등이 다시 아뢰자 왜적이 물러가면 선위하기로 약속하다</p>	<p>(전략) 선위(禪位)한다는 전교가 있고부터 세자가 아침에 대궐에 들어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조석(朝夕) 끼니도 폐하는 데 이르므로, 중전(中殿)이 죽을 권하면 간혹 조금 마시기는 하였지만 여러 날을 이와 같이 하면서 정성이 더욱 간절하였다. 상이 직접 뜰에 내려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세자가 이처럼 굳이 청하는데 억지로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데리고 들어가면서 허락하였다.</p>	<p>(전략) 自有禪位之教， 世子朝入闕， 伏地涕泣， 至廢朝夕膳， 中殿勸以粥糜， 則或時小啜， 如是者累日， 而誠意益懇。 上親自降階， 執手扶起曰：“世子如是固請， 可不勉從？” 牽入， 乃許之。</p>
<p>118. 선조 34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월 29일(갑신) 9번째기사 백성을 구제라고 경각하게 할 방법을 강구하게 하자 호조가 회계하다</p>	<p>(전략) 호조가 회계하기를, “전일 본조에서 양호(兩湖)의 쌀과 콩과 겉벼와 보리를 넉넉하게 배로 운반하여 오도록 계청한 것은 바로 굶주린 사람을 진휼하고 곡식을 파종할 밑천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양호의 곡식으로 기전(畿甸)의 백성들은 구제할 수 있으나, 함경도는 수로나 육로 모두 아주 멀리 떨어져 수송하는 즈음에 백성들이 먼저 피폐하게 되어 형세가 미칠 수 없을 것이니 매우 민망스럽고 염려됩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강계의 미두(米豆) 각 2백 석과 서직피속(黍稷皮粟) 각 2백 석, 희천(熙川)의 미두 각 1백 50석과 서직피속 각 1백 석, 위원(渭原)의 미두 각 50석과 서직피속 각 50석, 이산(理山)의 미두 각 40석과 서직피속 40석, 벽동(碧潼)의 미두 각 50석과 서직피속 각 50석을 사람과 가축을 뽑아내어 함흥(咸興) 지역으로 수송하게 하고, 영변(寧邊)의 미두</p>	<p>(전략) 戶曹回啓曰：“前日本曹， 以兩湖米豆租牟， 啓請優數船運而來者， 乃是欲作賑飢播穀之資也。 但兩湖之穀， 可以救畿甸之民， 而咸鏡道則水陸兩路， 俱爲絕遠， 諭運之際， 生民先瘁， 而勢不可及， 極爲悶慮。 如不得已， 江界米豆各二百石， 黍稷皮粟各二百石， 熙川米豆各一百五十石， 黍稷皮粟各一百石， 渭原米豆各五十石， 黍稷皮粟各五十石， 理山米豆各四十石， 黍稷皮粟各四十石， 碧潼米豆各五十石， 黍</p>

	<p>각 30석과 서직피속 각 50석 및 덕천(德川)·개천(价川)의 미두 각 50석과 서직피속 각 60석을 정평(定平) 지역으로 수송하게 하며, 양덕(陽德)·맹산(孟山)의 미두 각 20석과 서직피속 각 30석, 성천(成川)의 미두 각 50석과 서직피속 각 40석, 삼등(三登)·강동(江東)의 미두 각 20석과 서직피속 각 30석을 덕원(德源)·문천(文川) 지역에 수송하게 하여, 정평과 문천에서 교부(交付)한 곡식을 함흥 이남에 나누어 지급하고, 함흥에서 교부한 곡식은 함흥 이북에다 나누어 지급하며, 전라도의 미두 각 6천 석, 걸벼 6천 석, 보리 4천 석을 경상도의 하동(河東) 등 지역에다 배로 운반하게 하고, 충청도의 미두 각 3백 석과 걸벼와 보리 각 2백 석을 편의에 따라 강원도 지역에 배로 운반하게 하여,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저축된 곡식이 있고 없음에 따라 파종과 진흙 두 가지를 알맞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곡식을 운반하는 즈음에 만약 사목(事目)을 엄격하게 세워서 죄벌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을 간혹 심상히 처리할지도 모르니 각도의 감사에게 아울러 이문(移文)하게 하소서.”</p>	<p>稷皮粟各五十石，抄發人畜，輸運於咸興地界，寧邊米豆各三十石，黍稷皮粟各五十石， 德川、价川米豆各五十石，黍稷皮粟各六十石， 輸運於定平地界，陽德、孟山米豆各二十石，黍稷皮粟各三十石，成川米豆各五十石，黍稷皮粟各四十石， 三登、江東米豆各二十石，黍稷皮粟各三十石，輸運於德源、文川地界，定平、文川交付之穀，散給於咸興以南，咸興交付之穀，散給於咸興以北，全羅道米豆各六千石，租六千石， 船運于慶尙道河東等地界，忠清道米豆各三百石， 租牟各二百石，隨便船運於江原道地界， 令各道監司，隨其儲穀之有無，播賑兩得其宜。 且運粟之際，若不嚴立事目，以示罪罰難道之意， 則事或歸於尋常， 各道監司處，竝移文。”</p>
<p>119. 선조 35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萬曆) 21년) 2월 3일 (무자) 3번째기사 호조가 충청·황해에 각도의 곡식을 운송하여 파종하게 하는 방</p>	<p>호조가 아뢰었다. “전에 경상·강원·함경·경기 등의 도는 분탕되었기 때문에 곡식을 운송하여 진흙하고 파종케 할 것으로 이미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황해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 두 도는 다른 도와는 약간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충주·청주·연풍(延豐)·음성 등지의 고을은 바로 죽령(竹嶺)이나 조령(鳥嶺)과 직접 통하는 길이고, 황주·봉산·서흥·평산(平山)·강음(江陰)·백천(白川) 등 고을 역시 서로(西路)의 요충으로서 다 흉악한 적들에게 분탕질</p>	<p>戶曹啓曰：“前者，以慶尙·江原·咸鏡·京畿等道焚蕩之故，移粟·賑救·播種事，既已啓下。 而忠清·黃海不與焉， 此兩道， 則與他道稍異故也。 更思之， 則忠州·清州·延豐·陰城等官， 乃竹嶺·鳥嶺直路， 黃州·鳳山·瑞興·平山·江陰·白川等官， 亦是西</p>

<p>안을 아뢰다</p>	<p>을 당해 인적이 끊어졌습니다. 충청좌도의 곡식을 충주 등지 고을의 백성에게 옮겨 분급하고, 황해도의 조금 여유 있는 지역의 곡식, 적침을 받은 지역으로 옮겨 분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도의 감사로 하여금 형편에 따라 헤아려서 이쪽 것을 저쪽에 보태주어 때맞추어 파종하여 길에 굶어 죽는 시체가 없도록 하소서. 또 양호(兩湖) 지방의 보리 종자를 기내(畿內) 지방으로 옮겨 분급하는 문제 또한 이미 계하하여 이문(移文)했습니다. 다만 길이 멀어 운송의 지속(遲速)은 예측할 수 없는데 파종철이 이제 늦어지려 합니다. 평안도 초면(初面)의 각 고을에 저축된 봄보리 종자 5백 석을 수로나 육로나 편리한대로 경기에 운송하게 하소서.”</p>	<p>路要衝，皆被兇賊焚蕩，人烟斷絕。不可不以忠清左道之穀，移給于忠州等官之民，黃海稍裕之穀，移給於被賊之地。令兩道監司，隨宜酌量，移此補彼，使之趁時播種，途無餓殍。且以兩湖牟種，移給于畿甸事，亦已啓下移文矣。但道路遙遠，移運遲速，未可預料，而播種之節，今將遲暮。請以平安道初面各官所儲，春牟種五百石，或水或陸，隨便移運于京畿地界。”</p>
<p>120. 선조 36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萬曆) 21년) 3월 1일 (병진) 3번째기사 호조가 수백 석의 쌀을 바친 첨지 이춘란에게 가선을 제수하라고 청하다</p>	<p>호조가 아뢰기를, “개천(价川)에 사는 첨지 이춘란(李春蘭)은 전에 여러 번 쌀을 바쳐서 상직(賞職)으로 당상(堂上)이 되었는데 또 바친 쌀이 수백 석이 넘습니다. 특별히 가선(嘉善)을 제수하여 그의 공을 포장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납속(納粟)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에게 직함으로 상을 주는데 그 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직위의 높고 낮음을 매기어 금옥(金玉) 같이 귀중한 벼슬이 더러 미천한 무리에까지 미쳤다. 이것이 비록 조종의 부득이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명기(名器)의 남잡(濫雜)이 심하다.】</p>	<p>戶曹啓曰：“价川居僉知李春蘭，前累納米，賞職堂上，今者所納又不下數百餘石。特授嘉善，以獎其功。”允之。【募民納粟，賞之以職，隨其石數之多少等，其名位之高低，金玉之貴，或及於賤微之徒。雖出於朝家不得已之計，而名器之濫極矣。】</p>
<p>121. 선조 36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萬曆) 21년) 3월 14일(기사) 4번째기사 종묘에 천신할 물품의 처리를 정원에 하문하다</p>	<p>제주 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금궤(金橋) 등의 물건과 종묘의 천신 단자(薦新單子)를 가지고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종묘에 천신할 물품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하니, 정원이 회계하기를, “신들이 천신 단자를 보고 비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감히 아래에서 함부로 품할 수 없으니, 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p>	<p>以濟州牧使所封金橋等物，宗廟薦新單子，上教政院曰：“宗廟薦新來進。何以爲之?”政院回啓曰：“臣等伏覩薦新單子，不勝悲感。然自下不敢擅舉，自內處置宜當。”</p>
<p>122. 선조 37권, 26년</p>	<p>비변사가 아뢰기를,</p>	<p>備邊司啓曰：“兵興已久，公私俱竭，</p>

<p>(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4월 16 일(경자) 2번째기사 비변사가 유민들을 곡식을 옮겨다가 구제하라고 청하다</p>	<p>“전쟁이 일어난 지 이미 오래여서 공사(公私)의 재물이 모두 고갈되었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대부분 굶어 죽어 시체가 구렁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떠돌던 사족(士族)들도 걸어서 어가(御駕)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고 있으나 전연 생활할 방도가 없어 굶주려 쓰러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보기에다 매우 비참합니다. 인근 고을에도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모두 떨어져 참으로 진흙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 가는 것을 그대로 앉아서 볼 수만은 없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조처하게 하시고, 그중에 극심한 자들을 가려서 조금이나마 진흙을 베풀어 죽게 된 목숨을 살리게 하소서. 그리고 서울과 경기의 유민(流民)이 모두 강화(江華)에 모여 있는데, 식량이 거의 떨어져 수레바퀴 자국에 꺾여 있는 물의 물고기와 다를 것이 없으니 그 불쌍하고 가없는 정상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의 구민(舊民)들이니, 서둘러 구출하는 정사를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곡식을 옮겨다가 진흙하라는 전지를 내리소서.”</p>	<p>哀我赤子，舉將填壑。士族之流離飄轉者，徒步來聚於輦轂之下，而全無生活之路，飢餓顛頓，朝暮將死，所見慘惻。近邑各官，倉儲俱罄，固無賑救之策。然不可坐視其死，令該司，隨便措置，擇其尤甚者，略施賑恤，以活垂死之命。且京城畿甸流離之民，皆聚于江華，缺食就盡，無異涸轍之魚，矜慘之狀，不可忍言。此皆京都舊民，不可不急施惠恤之政。請申行移粟之旨。”上從之。</p>
<p>123. 선조 37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4월 19 일(계묘) 2번째기사 부총병 유정을 접견하고 왜적의 증강, 능침의 변고, 군량 상황을 의논하다</p>	<p>(전략) 심희수(沈喜壽)가 나아가서 아뢰기를, “주례(酒禮)가 이미 마련되었으니 마치 예를 행할 것처럼 하다가 원릉(園陵)의 변고가 있어서 술자리를 베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례(酒禮)를 행하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이미 마련해 놓고서 다른 이유로 핑계댄다면 정성스럽지 못할 듯하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유몽정(柳夢鼎)과 장운익(張雲翼)이 아뢰기를, “먼저 원릉의 변고를 말하면 그가 반드시 마음에 불안해 할 것이니 예를 행한 뒤에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예를 행한 뒤에 말하라.” 하고, 주례를 행할 것을 청하였다. 유정이 말하기를,</p>	<p>(전략) 沈喜壽進曰：“酒禮既設，若將行禮之爲者，而以園陵變之由，告之如何?” 上曰：“酒禮不爲則已，既設而托故，則有似不款。何如?” 柳夢鼎、張雲翼曰：“先言之，則彼必不安於心，行禮後言之，何如?” 上曰：“然則行禮後言之。” 請行酒禮。 綆曰：“不敢飲，爲殿下之誠，少飲耳。” 請宗宰行酒禮，綆辭以醉。 上曰：“陪臣輩，豈不欲獻其誠? 請領一杯。” 俞泓進行酒禮。(후략)</p>

	<p>“감히 마실 수 없으나 전하의 정성이기 때문에 조금 마시겠습니다.” 하였다. 종재(宗宰)들이 주례 행하기를 청하니, 유정이 취했다고 사양하자, 상이 말하기를, “배신(陪臣)들도 어찌 자기의 정성을 바치고 싶지 않겠소. 한 잔 더 받기 바라오.” 하였다. 유홍(兪泓)이 나아가 주례를 행하였다. (후략)</p>	
<p>124. 선조 37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4월 20 일(갑진) 3번째기사</p>	<p>상이 정원에 분부하기를, “유원외가 보낸 건아(말린 거위 고기)는 이국의 물건이고 또 더럽지 않다. 상정으로 말하건대 종묘와 사직이 한집안에 있으니 삶아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겠는가? 정원은 의논해서 아뢰라.” (후략)</p>	<p>上, 教政院曰, “劉員外所送乾鵝 乃異國之物 且不汚穢 以常情言之 廟社在於一家之內 欲熟而薦之 何如? 政院議啓.” (후략)</p>
<p>125. 선조 37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4월 21 일(을사) 7번째기사 안집사 김늑이 경상도의 토적 출몰, 기근과 역병 및 기민 구제 등의 일을 치계하다</p>	<p>안집사(安集使) 김늑(金玊)이 치계하기를, “경상도에서 토적(土賊)들이 일어나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대낮에도 재물을 빼앗고 인명을 살상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는데 처음 일어났을 적에 소탕하지 않으면 뒤에 도모할 대책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본도의 기근(飢饉)이 날로 심해지고 질병(疾疫)이 끊이지 않아 쓰러져 있는 시체들이 즐비하여, 그 참혹한 정상을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의 종자 역시 전부 떨어져 전라도에서 수송해 올 곡식만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전라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이문(移文)하여 그들로 하여금 본도(本道)의 관곡(官穀)을 급히 운반하여 경상도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소서.”</p>	<p>安集使金玊馳啓曰: “慶尙一道, 土賊興行, 百十爲群, 當晝攘奪, 傷人殺人, 無所紀極, 炎炎不撲, 後無善圖。且本道飢荒日甚, 疾疫相仍, 僵屍相枕, 慘不忍言。凡百種子, 亦皆缺之, 日望全羅轉運之穀, 而尙無聲響。朝廷請移文于全羅監、兵使, 使之督運本道官穀, 接濟慶尙飢民。” 上從之。</p>
<p>126. 선조 38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5월 25 일(무인) 3번째기사 이시언 등이 언로·기강·상벌·검약·내치·수</p>	<p>(전략) 1. 인심을 수습하여 나라의 근본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돌봐 주면 임금으로 받들고 학대하면 원수로 여기는 것이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서 그 나라를 보존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인심을 잃는 일이 많았습니다. 왕자(王子)의 저택을 짓는 공사가 해를 거듭하고 있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으며, 궁방(宮房)의 제언(堤堰)이 온 나라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으며, 내수사(內需司)의 상공물(常貢物)을</p>	<p>(전략) 其一, 收人心, 以固邦本。撫我則后, 虐我則讎, 未有不得乎丘民, 而能保其國者也。數年以來, 所以失人心者多矣。自王子第宅, 工役連年而民怨, 宮房堤堰, 布滿國中而民怨, 內需常貢, 易以人參而民怨, 悲愁鬱</p>

<p>령 임명 등을 아뢴 차 자</p>	<p>인삼(人蔘)으로 바꾸어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근심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난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던 자들이 많았었는데, 변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창을 뒤로 돌려 옷을 바꿔입고 적의 향도(嚮導)가 되기도 하고 아군의 장수를 죽여 적에게 아첨하기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왕자(王子)를 잡아서 적에게 넘겨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중략) 1. 검약(儉約)을 숭상해서 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래에 집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담장을 사치스럽게 꾸며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어기고 백성들을 사역한 것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았는데, 끝내는 그 높고 큰 집들이 모두 적의 소굴이 되었으며 금벽 단청(金碧丹青)으로 장식하였던 담장들은 햇불 하나에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하께서는 화란을 겪으신 뒤로 크게 마음을 돌리고 뉘우쳐서 ‘뜨락의 눈을 쓸지 말라.’ 하시고 ‘창문을 바꾸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한마디 말씀에 누구인들 감동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선(減膳)1756)의 교지가 여러 차례 내려졌는데도 외정(外庭)의 상에는 좋은 음식들이 높이 쌓여 있고, 와신 상담(臥薪嘗膽)하면서 복수의 생각이 한창 절실해야 할 때에 신하들은 비단옷으로 몸을 따듯이 하고 있습니다. (후략)</p>	<p>悒，思亂者多，聞一變起，翻成倒戈，或易衣將導，或殺帥媚賊，甚則執王子以與敵。(중략) 其一，崇儉約，以彰共德。近來，木妖有說，雕墻駭俗。凡所以躡制，而役民者，非止一二，卒使高宮大廈，爲賊巢穴，金碧丹青，一炬灰燼。殿下自經禍亂，翻然改悟：“庭雪勿掃。”“窓塗勿易。”興邦一言，孰不感喜？減膳之旨屢下，而外庭之珍羞堆盤，臥薪之念方切，而臣僚之緋錦縠體。(후략)</p>
<p>127. 선조 38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萬曆) 21년) 5월 27일(경진) 6번째기사 호조가 내종친에게 요미를 지급하는 일을 아뢰다</p>	<p>호조가 아뢰기를, “양경(兩京)을 수복한 뒤에 들어온 조정 관원들에 대하여 그 사정을 조사하고 죄과(罪科)를 정하되, 혹 부모로 인하여 정리가 절박하였던 자들은 마땅히 용서해주어야 할 것이니, 똑같이 일률적으로 논죄하지 말고 참작하여 시행하라는 성교(聖敎)를 지난번에 받들었었습니다. 이에 조정 관원들은 벌써 적발하여 태거(汰去)하였고 종친(宗親)들은 자세히 조사하여 요미(料米)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종친(內宗親)에 대해서는 미안한 일인 듯하니,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요미를 지급하라고 하였다.</p>	<p>戶曹啓曰：“兩京收復後，入來朝官，原情科罪，或因父母情理切迫者，在所當恕，未可一概論，參酌施行之事，前承聖教。朝官則已爲摘發汰去，宗親則詳覈，勿爲給料矣。但內宗親，則似爲未安，何以爲之？”上曰：“給之。”</p>

<p>128. 선조 39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6월 5일 (무자) 3번째기사 경락을 접견하고 부산 분할론의 실정, 중국군 의 철수 등을 논의하 다</p>	<p>(전략) 경락이 말하기를, “이미 사배를 하여 황은에 사례하시었으니 따로 배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경락이 다례(茶禮) 행할 것을 청하여 차를 내었다. 경락이 상과 함께 자리에 나아가 찻잔을 교환하고 좌석에 나아가 차를 마시었다. 다 마시고 상 이 말하기를, “대인의 은덕이 망극하니, 먼저 뜰에서 절을 하여 그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사례하고, 배신들도 망극한 은혜를 사례하기 위하여 절을 올리려 하는데, 바 라건대 뜰 안에 들어가서 배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후략)</p>	<p>(전략) 經略曰：“既爲四拜，以謝皇恩， 不須別拜。” 經略請行茶禮。 進茶， 經略與上就筵中，換茶鍾就坐飲。 飲 訖，上曰：“大人恩德罔極，請先拜於 庭，以謝萬一。 陪臣亦欲獻拜，以謝 罔極之恩，請於庭內，入拜如何?” (후 략)</p>
<p>129. 선조 40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7월 27 일(기묘) 5번째기사 진상한 햅쌀을 묘사에 천신하는 일을 묻다</p>	<p>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진상(進上)한 햅쌀이 들어왔다. 전에 묘사(廟社)가 대내(大內)에 있을 때에는 편의에 따라 천신(薦新)하였지만 지금은 묘사가 다른 곳에 봉안(奉安)되어 있 으니 천신을 어찌하면 좋겠는가?”</p>	<p>上教于政院曰：“新稻米進上， 初入 來。 廟社前，在大內時，則可隨便薦 新，而今則廟社，別處奉安，薦新何以 爲之?”</p>
<p>130. 선조 41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8월 9일 (경인) 6번째기사 해주 이동에 앞서 도 성 주변의 백성을 속 히 진휼하라 전교하다</p>	<p>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날의 일로는 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진구(賑救) 하는 정책은 지술(智術)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곡식으로써 구제해 야 하는 것이다. 대가(大駕)가 해주(海州)로 이주한다면 해주는 서울과 가까우 니, 도민(都民)들이 대가가 가까이에 주필(駐蹕)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나서는 먹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찌 범연하겠는가. 나의 생각에는 해주나 재령(載 寧) 중 서울과 가까운 곳에 주필하는 즉시 가까운 고을의 곡식을 징발하여 배에 싣고 경강(京江)으로 가서 주린 백성을 구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의 진 구하는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속히 조치하라. 만약 미칠 수 없다 면 즉시 승지(承旨)를 보내 경창(京倉)의 곡식을 풀어 진구하고, 특별히 근신 (近臣)을 보내어 진구하는 나의 뜻을 효유(曉諭)하게 하라. 도성 가까이 주필</p>	<p>上教政院曰：“今日之事，賑救飢民爲 急。 賑救之策，不可以智術求之，惟 以粟賑之。 大駕移駐海州，海州近於 王京，都民間大駕近駐，其望哺之心， 豈偶然哉? 予意，載寧、海州中，近駐 即時，發近邑之粟，載船達于京江，以 賑飢民，俾知予賑救之意，斯速措置， 若未及焉，則卽遣承旨，發京倉以賑 之， 曉諭以特遣近臣來賑之意可矣。 近駐都城，先賑飢民，於理爲得，其間 曲折，斟酌爲之。”</p>

	하면 먼저 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도리에 합당하니, 그간의 곡절은 짐작(斟酌)하여 하라.”	
131. 선조 41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8월 9일 (경인) 7번째기사 전세 수십 석을 배로 운반하여 진휼에 보태다	호조가 복계(覆啓)하여 전세(田稅)로 받은 쌀과 콩 수십 석을 선운(船運)하여 진제(賑濟)에 보태어 쓰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戶曹覆啓，請以船運田稅米太數十石，添用於〔賑〕濟，上從之。
132. 선조 41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8월 10일(신묘) 9번째기사 형조 판서 이덕형이 왕자가 적진에서 나왔음을 보고하다	(전략) 왕자가 떠온 선문(先文)1983) 은 끝내 오지 않았고 대구(大丘)에서부터는 전혀 전통(傳通)한 일도 없었으며 서울에 들어오고 나서도 지공(支供)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판교(板橋)에서 유숙할 적에는 용인 현령(龍仁縣令)은 간 곳이 없고 도차사원(都差使員)이 어렵게 쌀 4말[斗]을 구하여 바쳤을 뿐 지공은 전무(全無)하였다고 하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사신까지도 ‘성을 지키고 있는 재신(宰臣)들이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어 검칙(檢飭)하고 영호(迎護)하지 않는가?’라고까지 했다 합니다. 공문(公文)의 연락이 끊어져 모든 일을 제때에 거행하지 못해 나라의 체면을 이처럼 손상시켰으니, 신도 미처 주선(周旋)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려워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대개 중국 사신들은 적의 수중에서 왕자를 모시고 나온 것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하여 불세(不世)의 공적을 세운 것으로 여겨 후한 대우를 기대하였으나, 일로(一路)의 접대가 매우 형편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크게 실망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소·양·닭고기와 술을 준비하여 하정례(下程禮)를 행하고 종사관(從事官)을 보내어 문안하였더니, 꽤 기뻐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전략) 王子行先文，終始不來，而大丘以西，則了無傳通之事，自入京城以後，支供草草。至宿板橋，龍仁縣令無去處，都差使員艱覓米四斗以呈，而支供則全闕云，極爲痛愕。天使至曰：‘守城諸宰臣，何故不送人檢飭、迎護?’云云。文移斷絕，凡事稽緩。使國體埋沒如此，其未及周旋之罪，臣亦難免，不勝惶恐隕越矣。大概天使等，卽得王子出來，自以爲於我國不世之功，希望甚厚，而一路接待，甚爲草簿，其心大爲落莫，而臣待其來，卽備牛、羊、鷄、酒，行下程之禮，遣從事官問安，則頗有喜悅之色矣。”
133. 선조 41권, 26년	중화(中和) 사람 김언진(金彦珍) 등 8인이 길에서 산 붕어[鮪魚] 17마리를 올	中和人金彦珍等八名，路進生鮪魚十七

<p>(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8월 12 일(기사) 9번째기사 중화 사람이 바치는 산 봉어를 받고, 어공을 간소히 하라 전교하다</p>	<p>리니, 전교하기를, “이 물건을 받는다면 사체(事體)에 손상됨이 있겠고 받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다면 그들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자, 심희수(沈喜壽)가 아뢰기를,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물건을 주어 상을 내리라.” 하였다. 즉시 베[布] 4필(匹)을 주니, 모두 꿰어앉아 사양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곳에 와서 보니 지대(支待)하는 사람이 많고 어선(御膳)도 지나치게 풍부하다. 황해 감사(黃海監司)에게 일러 지대하는 사람들을 겨우 공역(供役)할 만큼만 남겨두고 그 밖에는 모두 돌려 보내며, 앞으로의 어공물(御供物)도 간소하게 할 것을 각 고을 수령들에게 알리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오는 길에 상언(上言)하는 자를 보았는데 팔이 없는 사람이었다. 보기에 매우 참혹하고 불쌍하니 복호(復戶)하여 역(役)에서 면제해 줄 것을 황해도 감사에게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p>	<p>尾。傳曰：“此物，若捧之，則有傷事體；若空過，則似不領其精誠，何以爲之？”沈喜壽曰：“豈可不受？”傳曰：“給某物賞之。”卽以布四疋給之，則皆跪辭。傳曰：“渠等(情) [精] 誠至極，故給之。”傳曰：“到此見之，支待之人多來，御膳亦爲過豐。言于黃海監司，支待之人，僅可供役，其餘還送，前頭御供之物，亦從簡約之事，使之知委。”傳曰：“來路見呈上言者，無臂之人也。所見極爲慘惻，復戶免役事，言于黃海監司。”</p>
<p>134. 선조 41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8월 12 일(기사) 10번째기사 평안 감사 이원익을 인견하고 공을 치하하</p>	<p>(전략) 원익이 대답하기를, “옛부터 살륙을 일삼는 도적은 반드시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적이 타국을 침범하여 해를 보내며 살륙을 일삼고 있으니 천주(天誅)가 있을 것인데 어찌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술과 퇴선(退膳)·약봉(藥封)을 하사하였다.</p>	<p>(전략) 對曰：“自古以殺戮爲事之盜，必自底於滅亡。此賊經年他國，屠殺是尙，應有天誅，何能久也？”上命賜酒、退膳及藥封。</p>

<p>다</p> <p>135. 선조 41권,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 (萬曆) 21년) 8월 13 일(갑오) 11번째기사 승지들과 제독의 접대 문제를 논의하다</p>	<p>(전략) 상이 이르기를, “황주(黃州)의 경우,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이 모두 대가의 지대를 위해 나오는 등 영접하는 인물(人物)이 매우 많았다.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어찌 이와 같아서야 되겠는가. 옛날 임금들이 매년 순수(巡狩)할 적에도 어찌 이와 같았겠는가. 풍부하고 사치스런 음식으로 말하면 임금이 평상시 궐내(闕內)에서 받는 공궤(供饋)라 하더라도 어찌 이처럼 괴이(怪異)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나라는 장차 음식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인데, 평안도에서도 이런 폐단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면 나도 죽을 먹어야 하는데 어찌 7~8그릇이나 되는 많은 음식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물산(物産)도 본도(本道)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어서 임금인 나로서도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이니 이는 반드시 호풍(胡風)일 것이다. 보통의 중국 장수로서 왕래하는 자들에게도 힘껏 지대(支待)해야 하거늘 이제독이 어떤 분인데 그 분이 회정(回程)할 때에 후대(厚待)하지 않는단 말인가. 일로(一路)의 수령들을 출참(出站)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써도 되는 것인가. 전엔 다만 봉산(鳳山) 한 고을뿐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승지의 말을 들으니 극히 해괴하다.” 하였다. 장운익(張雲翼)이 아뢰기를, “이곽(李杻)의 말을 들으니, 제독이 자리[茵席]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역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바쳤다고 합니다.” 하고, 심희수(沈喜壽)가 아뢰기를, “지극히 경악스럽습니다. 이 제독의 마음으로는 자기가 돌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대우가 이렇게 태만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관(本官)은 어디로 갔는가?”</p>	<p>(전략) 上曰: “如黃州, 牧、判官, 皆出於大駕支待, 人物瀰漫。 雖平時, 豈可如是? 古之人君, 每年巡狩之時, 亦豈如此乎? 飲食之豐侈, 雖人君, 平時闕內所供, 豈可如此之怪異乎? 我國, 以飲食將誤, 而平安道亦有此弊。 凡人渴, 則可以飲粥, 而豈至於七八器之多乎? 物產亦非本道之所出, 而雖人君, 有。 嘗見者, 此必胡風。 尋常天將之往來者, 猶當力於支待, 李提督是何如人, 而於其回程時, 不爲厚待乎? 一路守令, 亦豈可不爲出站, 而用於他處乎? 予之所聞, 只謂鳳山, 今聞承旨之言, 極爲可駭。” 張雲翼曰: “聞李杻之言, 則提督欲得茵席, 而亦不潔云。” 沈喜壽曰: “至爲駭愕。 天將之心, 以爲回還時, 故如此怠慢也。” 上曰: “本官何去乎?” 雲翼曰: “不見柳永慶, 故不及聞之矣。” 喜壽曰: “意者, 必來裴章家也。” 洪進曰: “趙仁得亦往而未及到, 李德馨亦病落後云。” 上曰: “李德馨亦病云, 接伴使一員欲代出。” 雲翼曰: “聞李海壽之言, 則提督到龍川, 艱得糊亂飲食以</p>
--	---	--

	<p>하였다. 운익이 아뢰기를, “유영경(柳永慶)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희수가 아뢰기를, “아마도 배장(裴章)의 집에 가서 있을 것입니다.”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조인득(趙仁得)도 갔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이덕형(李德馨)도 병이 나서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덕형도 병이 났다고 하니 접반사(接伴使) 한 사람을 대신 차출(差出)했으면 싶다.” 하였다. 운익이 아뢰기를, “이해수(李海壽)의 말을 들으니, 제독이 용천(龍川)에 당도했을 적에 어렵게 호란(糊亂)1995) 을 구하여 올리었으나 제독은 미후정과(獼猴正果)1996) 한 접시만을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후략)</p>	<p>進，則只飲獼猴正果一器云矣。” (후략)</p>
<p>136. 선조 41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8월 14 일(을미) 2번째기사 제독을 접견하여 남쪽의 적세, 방어책을 논하고 예단을 주다</p>	<p>(전략) 제독이 말하기를, “마필(馬匹)도 미안하여 받을 수 없고 인삼(人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벼루 [硯石] 두 개만 구했으면 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인삼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말도 노둔(駑鈍)하여 쓸 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받아주시면 고맙겠소이다. 벼루는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사람을 시켜 보내 드리겠소이다.” (후략)</p>	<p>(전략) 提督曰：“馬疋未安，人蔘亦不可受。願得硯石二面。”上曰：“人蔘，小邦所產。馬亦駑鈍無用，而願充下廐。硯則當到京伴送。” (후략)</p>
<p>137. 선조 41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8월 25 일(병오) 9번째기사</p>	<p>정원에 전교하기를, “평양이 수복된 뒤에 한준(韓準)이 사은사(謝恩使)로 다녀왔고, 서울이 수복된 뒤에는 정철(鄭澈)이 사은사로 연경(燕京)으로 가는 중이다. 지금은 적이 남방에 머물러 있으니 별로 사은할 일이 없다. 비변사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여 처</p>	<p>傳于政院曰：“平壤收復後，韓準以謝恩使往來；京城收復後，鄭澈以謝恩使，方爲赴京矣。今者賊留南方，別無謝恩之事，令備邊司，廣議處之。”</p>

<p>사은사 파견을 다시 의논하고, 서울에 소금을 실어 보내다</p>	<p>리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서울의 백성들도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 배에 소금을 실어다가 나누어주면 나물을 무쳐 먹을 수 있어 죽지 않을 가망이 있으니 서둘러 조치하라.” 하였다.</p>	<p>仍傳曰：“聞京城之民，亦飢饉而死云。船載鹽石分給，則合於蔬菜而食之，庶或得生。急急爲之。”</p>
<p>138. 선조 41권,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 (萬曆) 21년) 8월 30일(신해) 2번째기사 세자에게 선위하겠다는 뜻을 밝히다</p>	<p>비망기(備忘記)로 전교하였다. “나는 젊어서부터 병이 많아 반생(半生)을 약으로 연명(延命)하고 있는데, 이는 약방(藥房)의 제인(諸人)들도 다 같이 알고 있는 바이다. 전일 옥당(玉堂)에 내린 비답(批答)에 ‘인간 세상에 뜻이 없다.’고 한 말에서 더욱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니 지금 다시 말하지 않겠다. 겨울이면 방안에 틀어박히고, 봄·가을에도 정원(庭苑)을 돌아본 적이 없었다. 난리를 만나고부터는 온갖 고생을 다 하였는데 이런 기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이치 밖의 일이니, 천도(天道)가 무지(無知)하다 하여도 가할 듯하다. 전에도 민박(悶迫)한 뜻을 가지고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호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조의(朝議)에 저지당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원수인 적을 토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리상 병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강서(江西)에 머물면서부터는 몇 달을 먹지 못하였고, 지금은 오직 죽만을 마실 뿐이다. 밤이면 병풍에 기대어 밤을 새우고 낮이면 정신이 혼란(昏亂)하여 명청이가 되는데, 그런 와중에 광병(狂病)·목병(目病)·비병(痺病)·습병(濕病)·풍병(風病)·한병(寒病) 등 온갖 병이 함께 일어나서 이 한 몸을 공격하니, 한 줌의 원기(元氣)로써 어찌 그 병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광병으로 말하면 때때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곡(哭)을 하기도 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고함을 치며 달려가기도 하며, 무언가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놀라 머리털을 곤두세우기도 하니, 예로부터 어디에 광병을 앓은 임금이 있었</p>	<p>備忘記曰：“予自少多病，半生以藥餌爲命，此藥房諸人之所共知。前日玉堂之批，自言無意人世，益可想矣，今不須更言。冬月則閉蟄一室，至於春秋，或未嘗窺苑，自逢亂離，千辛萬艱。將此氣力，至今不死，誠理外之事，而雖謂之天道無知可也。前將悶迫之意，籲祈非一，而非但見逼於朝議，讎賊未討，義不可言病。逮在江西，不食數月，今則唯啜粥飲。夜則倚屏達曙，晝則昏聩無知。其中狂病、目病、痺病、濕病、風病、寒病，萬病俱作，環一身而攻之，以一握元氣，寧有可堪之理？以言其狂病，則有時或歌、或哭，叫呼奔突，水火且不避，見而泫然垂淚者有之，見而愕然豎髮者有之。自古安有狂病之君乎？以言其目病，則兩目翳盲，不能辨物，凡啓辭之字，多不解見。其成瞎人，不</p>

	<p>던가. 목병으로 말하면 두 눈이 어두워 사물을 분별할 수 없어 모든 계사(啓辭)의 글씨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머지않아 소경이 될 것인데, 예로부터 어디에 소경의 임금이 있었던가. 비병으로 말하면 몸의 반쪽이 허약한 데다가 안개와 이슬을 맞은 뒤로는 그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오른쪽 수족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주야(晝夜)로 쭈시고 아픈데, 손으로 만져도 감각이 없어 마치 마른 나무 토막 같으니, 예로부터 어디에 한쪽 수족만 가진 임금이 있었던가.</p> <p>이 밖에 고질이 된 더러운 병들은 일일이 들어 말할 수도 없다. 가을이 아직 깊지 않았는데도 갖옷을 꺼입고 있으니 쇠약하여 숨이 거의 끊어지려는 형세가 하루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이러한데도 체면을 무릅쓰고 그대로 임금 노릇을 한 사람은 일찍이 전고에 없었던 바이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은 흉적이 이미 물러갔고 옛 강토(疆土)도 수복되었으므로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세자(世子)가 장성하여 난리를 평정하고 치적을 이룩할 임금이 되기에 충분하니 선위(禪位)에 관한 여러 일들을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p>	<p>日可待。自古安有瞎目之君乎？以言其痺病，則半身偏虛，衝犯霧露，其證轉甚，右手右腳，全不運用，晝夜刺痛，以手摩之，亦不知之，恰似枯木。自古安有一手一足之君乎？其他痼病陋疾，不可枚舉。秋節未深，重裘已襲，萎爾奄奄之勢，若不瘳終日。如此而冒作君人，曾前古之所未有，萬萬無此理。今兇賊已退，舊疆已復，予志已決，如水必東。世子年長，足以撥亂致治之主，禪位諸事，斯速舉行。”</p>
<p>139. 宣祖 42卷, 26年 (1593 癸巳 / 명 만력 (萬曆) 21年) 9月 2日 (癸丑) 12번째기사 김응남이 도성 주변 상황, 분사 관원 태거, 진상 견감 등을 아뢰다</p>	<p>(전략)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난리를 만난 이후 어선을 모두 줄이시고 흰 쌀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서 백성을 염려하는 한가지 생각을 잠시도 느슨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상하는 물품까지도 내주에 쌓아 두지 않고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유사에게 맡겨서 중국 장수의 비용에 지공하게 하였으니, 스스로 봉양받으려 하시지 않는 것을 조정에 있는 신하는 진실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력이 궁핍해진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한 조각의 어육도 모두 백성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거두어 들일 적에 매를 때리기도 하는가 하면 수송할 적에는 백성의 원고가 더욱 심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사정까지야 성상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성상께 진상하는 물품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진실로 줄여달라고 청할 수가 없</p>	<p>(전략) 竊念聖上, 自遭變以來, 御膳盡減, 玉食未違, 恤民一念, 未嘗頃刻少弛。若此進供之物, 亦不畜於內廚, 或頒賜臣僚; 或付諸有司, 以供天將之用。其不爲自養自奉, 在庭之臣, 固已知之矣, 但財窮力竭, 未有甚於此時。寸魚片肉, 皆出於民, 徵納之時, 鞭扑交加, 轉輸之際, 怨苦益甚。似此少民情事, 聖上何以知之? 自上進供之物, 在下之人, 固不敢請減, 須是特</p>

	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특별히 배려하시고 백성의 괴로움을 곡진히 살피시어 그 중에 줄일 수 있는 것은 반쯤 줄여서 백성을 염려하시는 뜻을 보여주신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후략)	軫聖念，曲察民隱，就其中可減者，從半減之，以示恤民之意，不勝幸甚。 (후략)
140. 宣祖 42卷, 26年 (1593 癸巳 / 명 만력 (萬曆) 21年) 9月 23 日(甲戌) 3번째기사 백성들이 왕 앞에 음식 을 올리다	어가 앞에 평산의 정병 김한중의 처가 해해를 올리고 내수사의 종 김억진이 병반을 올렸는데, 상이 각각 목단을 내리게 하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방 백성이 바친 떡 한 그릇을 내려 주니 정원에 나누어 주라.”	駕前，平山正兵金漢宗妻進蟹醢，內需司奴金億進餅盤。上命各賜木端，傳于政院曰：“今下餅一器，土民所進，政院分賜。”
141. 선조 43권,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0월 1 일(신사) 2번째기사 임금이 벽제역을 출발 하여 정릉동 행궁으로 들어가다	상이 아침에 벽제역(碧蹄驛)을 출발하여 미륵원(彌勒院)에서 주정(晝停)2058)하고 저녁에 정릉동(貞陵洞)의 행궁(行宮)으로 들어갔다.	上朝發碧蹄驛，晝停于彌勒院，夕入貞陵洞行宮。
142. 선조 43권,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0월 3 일(계미) 6번째기사 호조가 진구할 곡식의 양을 아뢰다	호조가 아뢰었다. “내일 진구하기 위해 나누어 줄 곡식은 1인당 쌀과 콩이 아울러 3승씩이고 소금은 5홉씩입니다.”	戶曹啓曰：“明日分賑之穀，每一人米太并三升、鹽五合云。”
143. 선조 43권,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0월 6 일(병술) 7번째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상란(喪亂) 뒤라서 백성의 힘이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온갖 공상물(供上物)을 위에서 되도록 간략하게 하도록 하였는데도 해관이 홀륭하신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서 날마다 공상을 감독하여 받을 적에 아직도 전의 규정대로 하고 있	司憲府啓曰：“喪亂之後，民力已竭。凡百供御之物，自上務從簡約，而該官不體盛意，逐日供上監捧之際，尚循舊規，如生鮮等物，必用尺准，點退之弊，

<p>사헌부가 공상물과 관련하여 사용원 제조와 차지 낭청을 탄핵하다</p>	<p>습니다. 생선같은 것들도 반드시 준척(準尺)을 사용하여 점퇴(點退)하는데,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 및 차지 낭청(次知郎廳)을 모두 추고하게 하소서. 제조는 한 관사(官司)를 도맡아 다스려 가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문성군(文城君) 이건(李健)은 행동이 이미 패망스러운 데다가 가는 데마다 폐단을 부려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온 지 오래인데, 이번에 사용원 제조를 제수하였으므로 듣는 자가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체차시키소서.”</p> <p>하니, 답하기를, “낭청의 추고는 아뢴 대로 하라. 제조는 추고할 것 없다. 문성군은 사용원 제조로서 별로 한 일은 없었으나 감당하지 못하는 데 이르지는 않았다. 윤희하지 않는다.”</p> <p>하였다.</p>	<p>有不可言。請司饗提調及次知郎廳，竝命推考。提調，摠治一(事) [司]，其任至重。文城君健，行已悖妄，到處作弊，爲人所賤久矣。今授司饗院提調，聞者莫不駭怪。請命遞差。”</p> <p>答曰：“郎廳推考，依啓。提調不須推考。文城君司饗提調，別無所爲之事，不至於不堪。不允。”</p>
<p>144. 선조 43권,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10월 6일(병술) 9번째기사 비변사가 군량을 조치할 방법에 대해 아뢰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요즘 군량(軍糧)을 조치할 방법을 갖가지로 획책해 보았지만 다시 세울 방도가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각도(各道)에 있는 내수사(內需司)의 노비(奴婢)가 만으로 헤아릴 정도인데 올해의 추수는 약간 풍년이니 모두에게 곡물(穀物)로 신공(身貢)을 거두되 각기 가까운 고을을 도회소(都會所)로 하여 쌓아놓고 단단히 지키게 하소서. 만일 전쟁이 그치지 않아 군량이 모자라면 군량에 보태어 쓰게 하고 군량이 여유가 있으면 그대로 내수사에서 쓰게 하소서. 비록 다른 데 긴요하게 쓸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봄에는 반드시 곡식이 금처럼 귀할 것이니 곡식 저축을 풍부하게 해 놓는다면 자연 무역(貿易)을 하여 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은 궁·부(宮府) 모두에 편리한 것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할 만한 것이기는 하다. 다만 각도의 부유한 백성들에게는 많이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가져다 쓰지 않는가. 상격(賞格)을 넉넉하게 하라.”</p>	<p>備邊司啓曰：“近日軍餉措置之策，百般籌畫，更無餘策。竊念內需司奴婢在各道者，以萬數。今年秋事稍稔，皆以穀物收貢，各其近官，作都會貯峙堅守。若兵戈不解，軍餉缺乏，則補用於軍糧；若軍糧有裕，則自可爲內需之用。雖有他緊關應用之物，明春則必穀貴如金。儲穀既豐，則自可貿授用之。此策兩便於宮府。”</p> <p>答曰：“此事雖可爲之，但各道富民，必多有之，何不取用？優其賞格。”</p> <p>【史臣曰：“喪敗之餘，糧道匱竭，而自上尙有宮府之私，則其何以爲國乎</p>

	<p>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난리를 겪은 나머지 양식이 이미 고갈되었는데도 위에서는 오히려 궁·부에 사사로움이 있었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p>	<p>?”】</p>
<p>145. 선조 43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0월 9일(기축) 3번째기사 최영경의 아내에게 곡식을 주도록 정원에 전교하다</p>	<p>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일 중사(中使)가 서울을 왕래할 적에 사축(司畜) 최영경(崔永慶)의 아내가 길 옆에서 굶주림을 호소하고 있어 듣기에 매우 참혹했다고 하였다. 그의 아내까지 굶주려 죽게 해서 안 된다. 그의 아내가 아직도 거기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유사(有司)로 하여금 탐문하게 하여 쌀과 소금을 계속 제공하여 굶주려 죽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p>	<p>傳于政院曰：“前日中使之京城往還也，司畜崔永慶之妻，路側呼飢，聞之極慘。不可竝其妻而飢死，未知其妻尚在否也。令有司訪問，米、鹽連續題給，毋致飢死。”</p>
<p>146. 선조 43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0월 9일(기축) 4번째기사 강화 등에 피난한 선왕의 후궁들에게 양식을 주라고 전교하다</p>	<p>정원에 전교하였다. “강화(江華)·광주(廣州)·아산(牙山)에 선왕의 후궁들이 피난하여 가 있으니, 식물(食物)을 제공하라는 것으로 각각 그 도(道)에 하서하라.”</p>	<p>傳于政院曰：“江華、廣州、牙山，先王後宮避亂寓在。食物題給事，各其道下書。”</p>
<p>147. 선조 43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0월 22일(임인) 1번째기사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들과 함께 왜적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다</p>	<p>(전략) “신묘년(2098) 조(條)의 공물(貢物)은 이미 견감했습니다. 임진년 조는 또한 의정(議定)하여 빠짐없이 작미(作米)했는데도 수량이 많지 않으니, 계사년 조도 작미한 다음에야 일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공물을 남김없이 작미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없겠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전세(田稅)와 작미한 수량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계미년 조를 당겨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였다. (후략)</p>	<p>(전략) 忠謙曰：“辛卯條貢物，已爲蠲減，壬辰條亦議定，無遺作米，而其數不多。必須癸巳條，亦爲作米，然後可以接濟矣。” 上曰：“貢物無遺作米，則百姓無乃怨苦乎?” 斗壽曰：“田稅及作米之數，不爲不多。何必引用癸巳條乎?” (후략)</p>

<p>148. 선조 44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萬曆) 21년) 11월 13일(계해) 4번째기사 진휼사가 참봉 김천주와 판관 이제용을 추고할 것을 청하다</p>	<p>진휼사(賑恤使)가 아뢰기를, “신이 이달 15일 남쪽 진제장(賑濟場)에 달려가 보니, 도로의 기민(飢民)들이 잇달아 호소하기를 ‘죽(粥)이 물과 같고 겨와 잡물을 섞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죽을 보니 과연 호소하는 말과 같았고 마당에 있는 미처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도 일시에 원통하다 하기에 즉시 탄 죽을 마련하여 먹였습니다. 그날 내 준 곡식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참봉(參奉) 김천주(金天柱)가 편히 있기만 하고 살펴보지 않다가 모두 도둑맞았습니다. 판관(判官) 이제용(李濟容)은 평소에 부지런히 단속하지 않았으니, 아울러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賑恤使啓曰：“臣於本月十五日，馳往南場，則道路飢民連訴曰：‘粥如水，和以糠粃雜物’云云，見其餘粥，果如所訴。在庭未及受饋者，亦一時稱冤，即打他粥以饋之。其日下穀，不爲不多，而參奉金天柱，任便不見，全被偷竊。判官李濟容，常時不動檢舉，請并推考治罪。”上從之。</p>
<p>149. 선조 44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21년 11월 14일(갑자) 1번째기사 비변사가 군량 준비에 관해 아뢰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격세가 아직도 강성하여 변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중국군이 다시 나온다면 군량 준비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임진년의 공물을 전부 작미했습니다만 지금 듣건대 양호 및 황해도와 평안도는 거의 다 작미하여 연전에 이미 군령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지 기사년 것을 작미하는 한 가지 대책만이 남아 있는데 그 수량이 넉넉하지 않아 만분의 일도 보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각사에서 받는 공물이 매우 번다합니다. 바야흐로 위에서도 의복을 줄이고 음식을 삭감하여 군량이 넉넉해지도록 힘쓰시는 중이어서 향사같은 큰 일도 모두 정지하고 있으니, 각사의 공물을 이처럼 많게 할 것은 없습니다. 본사가 호조와 상의하여 되도록 사리에 합당하게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p>	<p>甲子/備邊司啓曰：“賊勢尙熾，兵革不解。如有天兵更出，則糧餉措備，極爲憫慮。壬辰貢物，專委作米，而今聞兩湖及黃海、平安道，幾盡作米，年前已用於軍餉云。今則只有癸巳條作米一策，而其數不敷，不能補其萬一。諸各司所納貢物，極爲繁夥。自上方面削衣貶食，務裕軍餉，至於祀享大事，亦皆停廢，各司貢獻，不必如此之多。本司與戶曹商議，務要停當。”上從之。</p>
<p>150. 선조 45권, 26년 (1593 기사 / 명 만력 21년) 윤11월 18일 (무술) 4번째기사</p>	<p>상이 중국 사신과 서로 읍하고 자리로 나아가 앉아서 다례를 행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동궁은 언제 남으로 내려갑니까?” (중략) 상이 주례를 행하기를 청하고 3잔을 돌리고서 말하기를,</p>	<p>上與天使，相揖就坐，行茶禮。天使曰：“東宮何時南下乎?” (중략) 上請行酒禮，行三勺。上曰：“日寒如此，請盡爵。大人來此，乃千載之幸。請</p>

<p>임금이 중국 사신을 위한 연회를 열다</p>	<p>“날씨가 이같이 추우니 잔을 다 비우소서. 대인이 여기에 오신 것은 천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행복입니다. 며칠 더 머무르소서.”</p> <p>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복명이 가장 급합니다. 선유한 뒤에는 곧 떠나야 하며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인마를 미리 준비하소서.”</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오늘 뿐이니, 다시 잔을 비우소서.”</p> <p>하였다. 아홉 잔을 돌렸을 때에, 심희수가 아뢰기를, “유총병이 한강에 와서 장막에 들어갔다 합니다.”</p> <p>하니, 상이 알았다고 말하였다. (후략)</p>	<p>加留數日。”天使曰：“復命最急。宣諭後，所當即發，不可久留。人馬預爲措備。”上曰：“得奉大人，只有今日，更請盡爵。”行九勺。沈喜壽啓曰：“劉總兵來漢江，入帳幕云矣。”上曰：“知道。”(후략)</p>
<p>203. 선조 87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4월 9일 (기사) 2번째기사 도사 영국윤을 맞이하고 조선의 둔전 설치 상정 등을 요청하다</p>	<p>(전략) 상이 말하기를, “다례(茶禮)를 거행하겠소이다.”</p> <p>하니, 도사가 명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상이 드디어 도사와 다례를 행하였다. (중략) 상이 드디어 좌상(座上)에서 도사와 술을 들고나서 도사에게 말하기를, “양 포정이 갈린 뒤에 누가 그 임무를 대임하겠으며, 또 남북의 군병은 과연 언제 강을 건너겠소이까?”</p> <p>하니, 도사가 말하기를, “제가 올 적에 포정의 대임(代任)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동 찰원(遼東察院)에서 도어사(都御史)에게 행문(行文)한 것을 도어사가 다시 손 군문에게 ‘양 포정은 왜적의 정세를 익히 알므로 앞으로 기복(起復)시켜야 한다.’고 품고(稟告)하였습니다. 양 포정이 조선을 위하여 온갖 힘을 다 기울인다는 내용으로 귀국에서도 손 군문에게 자문(咨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양 총병(楊總兵)은 4일에 강을 건널 것이고 오 유격(吳遊擊)은 지난달 26일에 산해관을 나왔습니다.”</p>	<p>(전략) 上曰：“請行茶禮。”都司曰：“唯命。”上遂與都司，行茶禮。(중략) 上與都司，遂於座上行酒，上謂都司曰：“楊布政遞後，誰代其任耶？且南北兵，果於何日渡江耶？”都司曰：“俺來時，布政之代不出矣。遼東察院，行文都御史，都御史轉稟孫軍門以爲：‘楊布政熟諳倭情，將宜起復云。’楊爺爲朝鮮，萬分盡力，貴國亦以起復，通咨於軍門，何如？且楊總兵，初四日過江，吳遊擊去月二十六日出關矣。”上與都司更進一酌後，上命左承旨李德悅，進呈禮單，則都司曰：“俺之往來，擾害甚多，又受此物，甚不當。故只領單子耳。”(후략)</p>

	<p>하였다. 상이 도사와 다시 한 잔을 든 뒤에 좌승지 이덕열(李德悅)에게 명하여 예물 단자(禮物單子)를 주니, 도사가 말하기를, “저의 왕래 때문에 폐가 매우 많은데 또 이 물품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러니 단자만 받겠습니다.” 하였다. (후략)</p>	
<p>204. 선조 87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4월 11 일(신미) 1번째기사 도사 호응원을 접견하여 손 경략 등의 일로 대화를 나누다</p>	<p>(전략) 상이 도사와 주례(酒禮)를 행하는데 처음 맛보는 술을 올리니 석 잔을 들고 나서, 도사가 일기도 더운 것 같고 또 일도 있다면서 사양하였다. 상이 예방 승지(禮房承旨)에게 명하여 예물 단자를 올리니, 도사가 말하기를, “단자는 삼가 받겠으나 물품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후략)</p>	<p>(전략) 上與都司行酒禮，進初味，三酌之後，都司以日氣似熱，俺且有事辭之。上命禮房承旨禹俊民，呈禮物單子，則都司曰：“單子則謹領，而物不敢受。” (후략)</p>
<p>205. 선조 88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5월 8일 (무술) 1번째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양 총병을 위로하고 왜적 의 방어를 논의하다</p>	<p>(전략) 상이 양원과 다례(茶禮)를 행하고 마침내 예단(禮單)을 올리자, 양원이 말하기를, “선물이 너무 많으니 지금은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후일 성공한 뒤에는 선물이 많더라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지난번 평양에서 승전한 뒤에는 국왕의 성대한 대접을 받았으나 안심하고 그것들을 받았었습니다.” (후략)</p>	<p>(전략) 上與元，行茶禮，遂呈禮單，元曰：“所贈甚多，今不敢受。後日成(切) [功] 之後，則雖多，亦奚以辭? 前日平壤戰捷之後，則蒙國王厚賚而安心受之矣。” (후략)</p>
<p>206. 선조 88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5월 13 일(계묘) 1번째기사 양 총병을 접견하여 호남의 방비와 수군 등의 문제를 대화하다</p>	<p>(전략) 이어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호령이 엄숙하여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으니, 참으로 감사하외다. 단 우리나라가 잔패(殘敗)되어 대접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못하니 더욱 부끄럽습니다.” 하자, 양원이 말하기를, “인마(人馬)가 귀방(貴邦)을 소요스럽게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p>	<p>(전략) 乃行茶禮。上曰：“大人號令嚴明，略無貽弊，感祝良多。但小邦殘敗，供億之事，不得稱情，益增慙赧。”元曰：“恐人馬擾害貴邦。”且曰：“如此廈屋，王人來接，而國王則居于閭閻，甚爲未安。”上曰：“承命感極。” (후략)</p>

	<p>“저는 이와 같이 큰집에 묵으면서 왕이 보내주신 사신의 접대를 받는데, 국왕께서는 여염에 묵고 계시니, 매우 미안스럽습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 “말씀을 들으니, 매우 감격스럽소이다.”</p> <p>하였다. (후략)</p>	
<p>207. 선조 88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5월 19일(기유) 3번째기사 유 도사를 영접하다</p>	<p>(전략) 이어 다례(茶禮)와 주례(酒禮)를 좌상(座上)에서 행하였다. 순배가 도는데, 도사가 말하기를, “연해(沿海) 지역들을 가볼 수 있습니까?”</p> <p>하자, 통사가 답하기를, “수사(水使)가 군병을 영솔하고 모두 한산도(閑山島)로 가 있어 아마도 잘 대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안스런 점입니다.”</p> <p>하자, 도사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관계인가. 단지 지세의 험이도(險易度)를 알고자 해서일 뿐이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 “연해를 가보는 일은 본도의 지방관들이 미처 알고 있지 못하니, 잘 대접하지 못할까 염려스럽소이다.”</p> <p>하였다. (후략)</p>	<p>(전략) 乃行茶禮及酒禮於座上。 行酒， 都司曰：“沿海地方， 可以往見乎？” 通事答曰：“水使領軍兵， 盡往閑山島， 恐不能供億， 以此爲未安矣。” 都司曰：“是何關哉？ 只要知地勢險易爾。” 上曰：“往見沿海之事， 本道地方官， 未及知之， 恐不能爲支持。” (후략)</p>
<p>208. 선조 88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5월 20일(경술) 1번째기사 총병 양원을 접견하다</p>	<p>(전략) 상이 다례를 행할 것을 청하여, 자리에서 내려 읍을 하고 자리로 되돌아와 앉아 차를 마셨다. 또 행주(行酒)하기를 청하고 상이 배석(拜席)으로 내려가 잔을 잡아 술을 권했는데, 이렇게 하기를 두 차례 하였으며, 양원도 또 잔을 잡아 상께 술을 권하였다. 상이 마침내 자리로 되돌아와 앉았다. 잔치상이 나오자, 양원이 말하기를, “잔패된 지방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를 대접받고, 또 전날에는 술과 쇠고기로 군사들을 호쾌하여 주시니, 미안합니다.”</p>	<p>(전략) 上請行茶禮， 下座而揖， 就座而飲。 又請行酒， 上下就拜席， 執爵以勸， 如是者再。 元又執爵以勸， 上乃就座。 進宴床， 元曰：“殘敗地方， 屢蒙設酌， 且蒙前日， 以牛酒犒軍， 未安。” 上曰：“大人再臨， 小邦恩德罔極， 而小邦殘敗， 凡事不能如意， 不勝</p>

	<p>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우리 나라를 두 차례나 찾아주시니, 은덕이 망극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잔패되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미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p> <p>하였다. (중략) 김명원(金命元)이 양원에게 술을 돌리자, 상은 자리로 나아가 앉았다. 명원이 술 두 잔을 상에게 올리고 물러났다. 양원이 말하기를, “날씨가 매우 덥고 또 유 도사(劉都司)를 만나고 싶으니, 술을 그만했으면 합니다.”</p> <p>하자, 상이 배신들만 좌상(座上)에서 술을 돌리기를 청했다. 순배가 돌아, 양원이 내시가 차고 있는 활과 화살을 보았으면 하니, 상이 풀어서 올리라고 명하였다. (중략) 양원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상이 예단(禮單)을 재촉해 올렸다. 양원이 처음에는 사양하였으나, 상이 다시 정표이니 거두어 주도록 청하자, 양원은 예단을 보고서 말하기를, “저포(紵布)·인삼·화석(花席)만을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양합니다.”</p> <p>하였다. (후략)</p>	<p>未安。” (중략) 金命元行酒於元，上就座。命元獻二爵于上，乃退。元曰：“日甚熱，且欲見劉都司，請止酒。”上請止，陪臣行酒於座上。行酒，元請見寺人所帶弓箭，上命解而進之。(중략) 元始辭謝，上更請領情，元見禮單曰：“請只受紵布、人蔘、花席，而其餘則辭。” (후략)</p>
<p>209. 선조 88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5월 21 일(신해) 1번째기사 남원으로 출발하는 양 총병에게 전위례를 거행하다</p>	<p>총병 양원이 남원으로 출발하는데, 상이 남대문 밖에까지 행행(行幸)하여 전위례(餞慰禮)를 거행하였다. 양원이 말하기를, “더위가 아직 심해지기 전에 길을 나섰으면 하니, 다례(茶禮)만을 행했으면 싶습니다.”</p> <p>하자, 상이 청하기를, “대인이 먼 길을 떠나니, 술을 한 잔 드렸으면 합니다.”</p> <p>하였다. 양원이 고사(固辭)하므로 다례를 행하였다. (후략)</p>	<p>辛亥/楊總兵元，發向南原，上幸南大門外，行餞慰禮。元曰：“趁暑炎未盛，欲行路。請只行茶禮。”上曰：“大人有遠行，請獻一爵。”元固辭，乃行茶禮。(후략)</p>
<p>210. 선조 90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7월 3일</p>	<p>도둑 마귀(麻貴)가 오자 상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영접하였다. 도둑이 도착하자 섬돌로 내려가서 맞아 읍(揖)한 뒤에 서로 사양하면서 올라가 좌정하여 다례(茶禮)를 행하고 이어 주례(酒禮)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p>	<p>都督麻貴來，上幸慕華館迎慰。都督至，上降階迎揖，揖讓而陞，乃就座，行茶禮，又行酒禮。上曰：“寡人，守</p>

<p>(임진) 2번째기사 도독 마귀를 모화관에 서 영접하다</p>	<p>“과인이 번국(藩國)을 지키는 직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졸지에 왜구(倭寇)의 병화를 당하여 두 번씩이나 왕사(王師)를 출동하게 하였으니 황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마귀가 말하기를, “국왕께서 멀리 교외까지 나오셨으니 피로하실 것이고 날씨도 매우 무더우니 들어가셔서 휴식하소서.”</p> <p>하자, 상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굳이 권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순배만 하고 그만둡시다.”</p> <p>하니, 마귀가 말하기를, “명대로 따르겠습니다.”</p> <p>하였다.</p>	<p>藩失職，猝被寇禍，至於再勞王師，不勝惶恐。” 貴曰：“國王出郊遠勞，日氣甚熱，請入休。” 上曰：“如是教之，未能從容。 請行二爵而止。” 貴曰：“唯命。”</p>
<p>211. 선조 90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7월 4일 (계사) 1번째기사 남별궁으로 거둥하여 도독 마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계책을 묻다</p>	<p>(전략) 상이 차를 올리라 하여 다례를 행하였다. 이윽고 귀가 파회를 청하니 상이 우준민(禹俊民)으로 【예방 승지(禮房承旨).】 하여금 예단(禮單)을 올리게 하자, 귀가 말하기를, “저도 답례하기 위하여 물품을 준비해 왔으나 아직 보내드리지 못하였으니 국왕께서도 예단 내리시는 일을 거두소서.”</p> <p>하니, 상이 말하기를, “성의를 표할 길이 없어 변변치 않은 토산품을 증정하려는데 이와 같이 분부하시니 도리어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p> <p>하였다. (후략)</p>	<p>(전략) 上命進茶，乃行茶禮。 貴請罷，上使禹俊民【禮房承旨。】將呈禮單，貴曰：“俺欲爲回禮，備物以來，而不果送矣，國王亦勿爲。” 上曰：“無以表誠，敢呈土產薄物，而如是教之，不勝惶愧。” (후략)</p>
<p>212. 선조 90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7월 9일 (무술) 5번째기사</p>	<p>(전략) 상이 총병과 서로 읍하고 좌정한 후에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전일 제계 상사(喪事)가 있을 때 국왕께서 배신(陪臣)을 보내시어 위문하시고 부의까지 하사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p>	<p>(전략) 上與總兵相揖，坐定行茶禮。 總兵曰：“前有喪患，國王委遣陪臣問遺，多謝。” 上曰：“大人以小邦之事，遠來于此，又遭切迫之喪，不勝驚惶。”</p>

<p>양 총병의 사처에 거등하여 영위례를 행하고 군사기밀을 의논하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나라의 일 때문에 멀리 이곳까지 오신 후 불의에 애절한 상사를 당하셨으니 경악스런 마음 금할 길 없어 하찮은 물품으로 위로하는 예를 드렸는데 도리어 치사를 받으니 매우 황공하외다.” 하였다. (후략)</p>	<p>茲將薄物，用申慰禮，而反蒙稱謝，惶愧惶愧。” (후략)</p>
<p>213. 선조 90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7월 12일(신축) 2번째기사 모화관에 거등하여 소응궁을 영접하고 위로하다</p>	<p>(전략) 다례가 끝나고 주례(酒禮)를 베풀었는데 한 순배가 끝나자 안찰이 말하기를, “파회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환궁하였다.</p>	<p>(전략) 行茶禮訖，行酒禮，酒一行，按察曰：“請罷。”上還宮。</p>
<p>214. 선조 90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7월 20일(기유) 2번째기사 광화문 밖에 거등하여 중국군 장수들을 접견하다</p>	<p>상이 광화문 밖에 거등하여 해 부총(解副摠)·장 중군(張中軍) 【이름은 장유성(張維城)이다.】·양 참장(楊參將)을 【이름은 양등산(楊登山)이다.】 회합하여 접견례를 행하였다. 상이 먼저 중국이 두 번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구원해 주는 호의에 대해 사례하고 다음에 여러 대인의 수고함과 재정이 극도로 피폐하여 충분히 대접하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니, 세 사람 모두 감사하다고 답하였다. 다례를 행한 뒤에 세 사람이 비가 오니 파회하자고 청하였으나 상이 주례를 요청하니 세 사람 모두 이에 따랐다. 여섯 순배를 돌린 뒤에 상이 예물을 증정하니 세 사람 모두 미안하다 하며 사양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물건으로 대접하려는 것이 아니고 작은 정성을 표하는 것뿐이외다.” 하니, 장 중군이 말하기를, “국왕의 성의가 이처럼 간절하시니 삼가 명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읊을 하고 파하였다.</p>	<p>上幸光化門外，請會解副摠、張中軍、【維城。】 楊參將【登山。】行接見禮。上先謝天朝再發兵拯救之意，次及諸大人勤勞之苦，殘破之極，未能支待之事，則三人俱稱多謝。行茶禮，三人以天雨請罷，上請行酒禮，三人從之。行六爵，上呈禮物，三人辭以未安。上曰：“非以物爲，只表卑悰矣。張中軍曰：“國王誠意至此，謹領命。”遂作揖而罷。</p>
<p>215. 선조 90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p>	<p>상이 유 중군(劉中軍)의 【이름은 유천질(劉天秩)인데 소 안찰(蕭按察)의 중군(中軍)이다.】 사처에 가서 접견례를 행하였다. 중군이 말하기를,</p>	<p>上幸劉中軍【名天秩，按察中軍。】下處，行接見禮。中軍曰：“本是官卑，</p>

<p>(萬曆) 25년) 7월 28일(정사) 2번째기사 유천질을 접견하고 그의 형세 판단을 듣다</p>	<p>“저는 본시 관직이 낮은 사람으로서 국왕께서 왕립하실 것을 감히 바라지도 못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국왕께 수고스러움을 끼쳐드리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자리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이르기를, “대인께서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나라가 형편없이 잔파되어 대인을 접대하는 모든 절차를 흡족하게 헤드리지 못해 매우 부끄럽소.” (후략)</p>	<p>無望臨顧。不知身有何功，致勞國王，不勝未安。”上就座行茶，上曰：“大人遠來艱苦，而小邦殘破無形，支供諸事，不能稱情，惶愧。”</p>
<p>216. 선조 91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8월 19일(정축) 4번째기사 유격 파새를 접견하다</p>	<p>(전략) 상이 이르기를, “처음 대인을 보니 주례(酒禮)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 양 대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통분한 마음이 맺혔으므로 예를 행할 수 없기에 더욱 미안하외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예도 아닌데 구태여 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다례를 행하고 상이 예단(禮單)을 증명하니, 유격이 사례하였다.</p>	<p>(전략) 上曰：“初見大人，禮當行酒，而楊大人生死，時未得知，痛結于心，未果行禮，尤增未安。”遊擊曰：“是誠盛意。非必行之禮，何用酒爲？”行茶，上呈禮單，遊擊稱謝。</p>
<p>217. 선조 91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8월 25일(계미) 2번째기사 부총 이방춘의 거처에 거동하여 접견하다</p>	<p>(전략) 상이 주례(酒禮)를 행하려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어찌 다시 서로 만날 기회가 없겠습니까. 지금은 마야(麻爺)가 와 있으므로 바빠서 주례를 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자, 다례(茶禮)만 행하고서 서로 읍하고 헤어졌다.</p>	<p>(전략) 上請行酒禮，副摠曰：“豈無更相會之時？今則麻爺來會，匆忙未得從容耳。”只行茶禮，相揖而罷</p>
<p>218. 선조 92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9월 3일(경인) 4번째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경리 양호를 접견하다</p>	<p>사정(巳正)에 상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동하여 양 경리(楊經理)를 【이름은 양호(楊鎬)이다.】 영접하여 위로하였다. 상이 경리와 더불어 좌석에 나와 서로 읍(揖)하고서 차(茶)를 대접하니, 경리가 차를 다 마시고는 길게 읍하고서 나갔다. 그러자 기고관(旗鼓官)이 좌우에 입시한 사관(史官)의 초책(草冊)을 빼앗았는데, 주서(注書) 박승업(朴承業), 검열(檢閱) 유색(柳穡)이 기고관에 빼앗겼다. 승지에게 전교하였다. (후략)</p>	<p>巳正，上幸慕華館，迎慰楊經理。【名鎬。】上與經理出座，相揖進茶，經理啜茶訖，遂長揖而出。旗鼓官掠奪左右入侍史官草冊，注書朴承業、檢閱柳穡，爲旗鼓所奪。(후략)</p>

<p>219. 선조 92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9월 20일(정미) 2번째기사 한강 상류에서 군대를 사열하고 음식을 상으로 주다</p>	<p>상이 강상(江上)에서 군대를 사열하고 삼군(三軍)에게 호상(犒賞)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국가의 일 때문에 먼 길을 와 여러 날을 노숙(露宿)하면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고생하여 편안히 거처할 겨를이 없기에 위에서 특별히 염려하고 불쌍히 여겨 친히 나와서 위로하니, 너희들도 나의 지극한 뜻을 알아주리라 생각한다. 혹시라도 적변(賊變)이 있게 되면 너희들은 모든 여물을 죽음으로써 지키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제때에 상을 내릴 터이니, 너희들은 노력하라. 내가 임금 노릇을 잘못된 탓으로 구적(寇賊)을 불러들여 너희들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양육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너희들이 항오 사이에 분주하면서 기갈(飢渴)로 고생하는 상황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국가가 다난(多難)하여 창고의 저축도 탕갈(蕩竭)되었으므로 너희들로 하여금 굶주린 탄식이 있게 하였으니, 생각이 이에 미치면 실로 마음이 아프다. 지금 약간의 소금과 간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니, 부디 나의 성의를 양해하라.” 하고, 이어 강을 따라 내려와 두모포(豆毛浦)에 이르러 제군(諸軍)을 위무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하삼도(下三道)에서 올라온 유랑민(流浪民)들을 보고,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하자, 좌우가 말하기를, “구걸해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대부분 굶주린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측은한 모습으로 한참 있다가 이르기를, “몹시 불쌍하다.” 하였다.</p>	<p>上視師江上，犒賞三軍。上曰：“爾等以國事，遠路來赴，累日暴露，飢寒困苦，不遑啓處。自上特念矜恤，親臨慰勞，想爾等知予至意。脫有賊變，爾等死守諸灘。予當賞不後時，爾等其勉力焉。由予不辟，致召寇賊，使爾等，上不得養父母，下不能畜妻子，奔走行間，載糶飢渴，艱辛之狀，予豈不知？國家多難，倉儲蕩竭，致令爾等，有枵腹之嘆，言念及此，痛實在心。今將鹽醬少許，分饋爾等，庶幾諒予之誠。”仍沿江而下，至豆毛浦，慰撫諸軍而還。路見下三道流民，上曰：“此人等何以得食？”左右曰：“丐乞爲生，多有飢色矣。”上惻然良久曰：“可憐，可憐！”</p>
<p>220. 선조 92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p>	<p>상이 부총(副摠) 해생(解生)의 하처(下處)에 거동하여 주례(酒禮)를 행하였다. 두 잔을 든 뒤에 해생이 그만두기를 청하자, 상이 좌상(座上)에서 행주(行酒)</p>	<p>壬子/上幸副摠解生下處，乃行酒禮。二爵後，生請止，上請座。上行酒，</p>

<p>(萬曆) 25년) 9월 25일(임자) 1번째기사 부총 해생의 하처에 거동하여 주례를 행하다</p>	<p>할 것을 청하고 이에 예단(禮單)을 올리며 절을 하여 작별하겠다고 하니, 생이 읍(揖)을 청하고 파하였다.</p>	<p>乃呈禮單，請拜以辭，生請揖而罷。</p>
<p>221. 선조 92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9월 27일(갑인) 3번째기사 지휘 왕내징을 영접하고 선물을 주다</p>	<p>지휘(指揮) 왕내징(汪來徵)이 시어소(時御所)에 오자, 상이 나가서 영접하여 두 번 읍(揖)을 하고 좌석에 나아갔다. 상이 예단(禮單)을 올리도록 하니, 내징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미 후사(厚賜)를 받았고 양 노야가 엄격하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도 거절하였기에 오늘 작은 정성이나마 표하는 것이외다.” 하자, 내징이 말하기를, “이처럼 분부하시니 지극히 감사합니다. 다른 물건은 받을 수 없지만 약삼(藥蔘)만은 내 하처(下處)로 보내주십시오.” 하였다. 상이 배례(拜禮)를 행할 것을 청하니, 내징이 말하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읍을 하고 물러나왔다.</p>	<p>指揮汪來徵來于時御所，上出迎，行兩揖就座。上使呈禮單，來徵曰：“前既蒙厚賜矣。楊老爺嚴急，不敢領。”上曰：“前亦却之，今請表微誠。”來徵曰：“如是教之，至爲感矣。他物不可，惟藥參請送于俺下處。”上請行拜，來徵曰：“不敢當。”乃作揖而退。</p>
<p>222. 선조 93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10월 11일(무진) 4번째기사 동지 진 등의 하처에 나아가 접견하고, 이어 유격 양만금을 접견하다</p>	<p>(전략) 상이 자리에서 내려와 차를 돌린 다음 술을 청하고, 또 자리에서 내려와 술을 권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이 술을 마신 뒤에는 자리에 오르시고 다시 수고하지 마십시오.” 하고, 또 말하기를, “도야(都爺)에게 들으니 이순신이 왜적을 많이 포획했다 하니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가 황제의 위령에 힘입어 조금 포획하기는 하였으나, 한산도에서 패한 후</p>	<p>(전략) 上下座行茶，仍請酒，又下座行酒，同知曰：“請行此爵後，就座，勿更勞。”且曰：“問於都爺，則李舜臣多獲倭級云，甚好甚好。”上曰：“渠憑藉皇威遠暢，稍有所獲，而閑山新破之餘，船隻、機械、士卒、糧餉，尚未完聚。粗得成形，此莫非皇恩，不勝感激之至。”同知曰：“此專由賢王洪福，</p>

	<p>로 선척과 기계 및 사졸과 양식을 모으지 못했었는데, 대강 모양을 이루게 된 것은 황제의 은혜가 아님이 없으니, 매우 감사함을 금할 수 없소이다.”</p> <p>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이는 오로지 현왕(賢王)의 큰 복록과 변장들이 힘쓴 데에서 연유한 것이니, 축하를 드립니다. 한 명의 장수를 벤 것은 천 명을 포획한 것과 같으니 더욱 기쁩니다.”</p> <p>하였다. 상이 도로 자리에 올라가 배신으로 하여금 술을 권하게 하기를 청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 “현왕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수고롭게 움직이시니 매우 미안합니다. 그만 할 수 있으면 그만 하고 싶습니다.”</p> <p>하였는데, 통역관 이해룡(李海龍)이 예모(禮貌)에 대한 곡절을 자세하게 말했으므로 이러한 말이 있었다. 이철(李鐵)이 아뢰기를, “소신이 일찍이 이 사람의 접반관이 되었는데 예모에 대하여 능숙하지 못했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좌상에서 술을 권하겠소이다.”</p> <p>하니, 동지가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 “술은 비록 좋지 못하지만 정성을 표하는 것이며 더구나 날씨도 차가우니 다 마시기를 바라오.”</p> <p>하자, 동지가 말하기를, “현왕께서 기운이 불편하신데다 또 중한 복제(服制)도 있으시며 저도 주량이 적어 이미 만족스럽습니다.” (후략)</p>	<p>邊將用力之致，多賀多賀。斬一將，可適獲千人，尤喜。”上還就座，請以陪臣行酒，同知曰：“依命。”同知曰：“賢王屢以此勞動，頗極未安。如可得以此止，則請免。”譯官李海龍備言其禮貌曲折，故有是言。李鐵啓曰：“小臣曾爲此人接伴官，禮貌間頗爲疎闊未閑矣。”上曰：“然則請於座上行酒。”同知從之。上曰：“酒雖甚薄，微誠在此，況天氣涼冷，敢請盡。”同知曰：“賢王氣不平，又遭重服，俺亦量小，酒已足矣。”(후략)</p>
223. 선조 93권, 30년	상이 마 제독의 사처에 거동하여 접견례를 행하였다. 상이 사처에 이르러 서	丙戌/上幸麻提督下處，行接見禮。上

<p>(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10월 29일(병술) 1번째기사 제독 마귀의 사처에 거둥하여 접견하다</p>	<p>로 읍하고 자리에 나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양 경리가 온다는 기별이 왔으므로 상이 곧 인사하고 나왔다. 길에서 경리를 만나 서로 배례를 하고 지나갔다.</p>	<p>纔到下處，行相揖就座，茶禮未畢，傳告楊經理來到，上卽辭出。道遇經理，拜與舉袖而過。</p>
<p>224. 선조 94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11월 7일(갑오) 5번째기사 명장 접견시 연례상을 왕의 은사상이라 속인 죄로 해당 관리를 문책하다</p>	<p>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중국 장수에게 연례(宴禮)를 베풀 때 진상했다가 물린 상를 차비문(差備門)에서 평안도 군사에게 보내주었다. 내려준 계과(桂果)가 어전에 배설했던 것이 아닌데도 중간에서 상께서 은사한 물품이라고 조작하여 부정한 일을 자행하였으니, 일이 매우 놀랍다. 도감과 색낭청을 추고하고 색리는 수금(囚禁)하여 죄를 다스리라.”</p>	<p>備忘記傳于政院曰： 唐將宴禮時，進上退床，差備門定送平安道軍士處。賜給桂果，非御前排設之果，中間私自假造恩賜之物，恣行姦濫，事甚駭愕。都監、色郎廳推考，色吏囚禁治罪。</p>
<p>225. 선조 94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11월 21일(무신) 1번째기사 양 경리를 접견하여 차와 술을 건네고 파하다</p>	<p>상이 별전에 나아가 양 경리(楊經理)를 접견하였다. 경리가 말하기를, “어제 광림(光臨)을 받아서 무척 감사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진귀한 음식으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술에 취하고 덕에 만족하여 무어라고 사례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고, 이어 차와 술을 건네고 파하였다.</p>	<p>戊申/上御別殿，接見楊經理。經理曰：“昨蒙光臨，迨謝且感。”上曰：“昨日饋以珍羞，賜以盛宴，醉酒飽德，無以爲謝。”仍行茶酒而罷。</p>
<p>226. 선조 95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12월 4일(경신) 4번째기사 고 중군을 접견하고 조선군을 중국군에 딸</p>	<p>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고 중군(高中軍)을 접견하였다. 상이 중군과 읍한 다음 좌석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고 이어 우리 나라의 병마(兵馬)를 중군에게 딸려보낼 일을 논하였다. 중군이 고별을 청하자 상이 예물 단자를 증정하니 중군이 굳이 사양하였다.</p>	<p>上御別殿，接見高中軍。上與中軍作揖，就座行茶，仍論我國兵馬跟隨中軍之事。中軍告辭，上呈禮單，中軍固辭。</p>

<p>려 보낼 일을 논의하다</p>		
<p>227. 선조 95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12월 4일(경신) 5번째기사 조 부총을 만나 다례를 행하고, 예물단자를 주다</p>	<p>상이 별전에 나아가 조 부총(祖副摠)을 접견하였다. 상이 부총과 서로 읍한 다음 좌석에 나아가 다례를 마쳤다. 부총이 고별을 청하자 상이 예물 단자를 증정하니 부총이 사양을 하다가 받고서, 드디어 읍하고 나갔다.</p>	<p>上御別殿，仍接見祖副摠。上與副摠作揖，就座行茶訖，副摠告辭，上呈禮單，副摠辭而受，遂作揖而出。</p>
<p>228. 선조 95권,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 (萬曆) 25년) 12월 18일(갑술) 3번째기사 도사 사용재를 접견, 노고를 치하하고 답소하다</p>	<p>(전략) 차를 내온 뒤에 술을 청하였다. 도사가 아뢰기를, “오늘은 날이 이미 저물었고 군문(軍門)을 가 뵈려 하니, 석잔을 넘기지 마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한 잔에 벌써 성의를 알았으니 그만 하십시오.” 하고, 또 아뢰기를, “왜노(倭奴)가 아직 다 섬멸되지 않아서 밤낮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길을 떠나려고 하므로 행색(行色)이 매우 바빠서 조용히 대화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후략)</p>	<p>(전략) 進茶後請酒，都司曰：“今日已晚，將拜軍門，請毋過三杯。”都司曰：“一杯已見性情，請止之。”且曰：“倭奴未盡就滅，日夜痛心。今日將發行，行色甚忙，不能從容待話矣。” (후략)</p>
<p>229. 선조 96권,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 (萬曆) 26년) 1월 1일(정해) 5번째기사 군문에 나아가 신년을 하례하고, 승전을 축하하다</p>	<p>기고(旗鼓)가 나와서 말하기를, “중조(中朝)에서는 신정(新正) 3일 동안에는 으레 소식(素食)을 합니다. 오늘의 모임에서는 차만 마시고 술이나 다른 음식은 쓰지 마십시오.” 하였다. 상이 먼저 신년(新年)을 축하하고, 다음에 승첩(勝捷)에 대해 사례하기를, “소방(小邦)에서 승첩의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춤추면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소이다. 황제의 은덕이 더할 나위 없고 여러 대인(大</p>	<p>旗鼓出言曰：“中朝新正三日，例爲素食。今日相會只可行茶，杯盤之屬，切須勿爲。”上先賀新年，次謝勝捷曰：“小邦聞捷，黃童白叟，莫不踴躍權喜。皇恩罔極，諸大人恩德亦罔極。”上辭出，軍門送至中門外。</p>

	人)들의 은덕도 망극하오이다.” 하였다. 상이 하직하고 나오니, 군문이 중문 밖에까지 전송하였다.	
230. 선조 96권,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 (萬曆) 26년) 1월 16 일(임인) 4번째기사 중전에게 바치는 생청 어의 진상을 편의에 따라 시행토록 하다	사용원(司饗院)이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중전(中殿)에 별도로 진상하는 생청어(生靑魚)를 배지인(陪持人)을 시켜 가져오게 한다면, 먼 도(道)의 사람들에게 많은 폐단이 있을 것입니 다. 조처하기가 매우 어려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편리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司饗院啓曰：“慶尙道中殿別進上生靑魚，若令陪持人進去，則遠道之人，亦甚有弊。處置實難，敢稟。”傳曰：“隨便爲之。”
231. 선조 97권,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 (萬曆) 26년) 2월 12 일(정묘) 5번째기사 정 주사의 사관에 가 서 접견하다	상이 문 밖에서 정 주사의 사관(舍館)으로 가서 접견하였다. 상이 주사와 함 께 재배례(再拜禮)를 행한 다음 다례(茶禮)를 행했다. 다례를 마치자 양 포정 (梁布政)이 왔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사례를 하고 나왔다.	上自門外，踵至丁主事舍館，接見。 上與主事行再拜禮，行茶禮。纔畢， 聞梁布政來，卽辭而出。
232. 선조 98권,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 (萬曆) 26년) 3월 12 일(정유) 4번째기사 약방 관원이 왕의 병 에 대한 처방을 아뢰 다	(전략) 신들이 의관과 상의해 본 결과, 추울 때 피로가 쌓여 근골이 상했는데 봄기운이 피어오르자 한습(寒濕)한 기운이 간(肝)과 신(腎)의 경락(經絡)에 동 (動)하는 것으로, 독활(獨活)을 제거하고 진봉(秦艽)과 계심(桂心)을 모과(木 瓜)와 속단(續斷)으로 대용하고 황백(黃柏) 3푼을 가입하여 하루 다섯 번 진 어(進御)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탕약을 드시는 것은 폐 와 위를 상할까 염려되니 역시 마땅치 않습니다. 연년익수불로단(延年益壽不 老丹)에 두충(杜仲)·강즙(薑汁)과 붉은 모과(木瓜)와 오미자(五味子)를 첨가하 여 드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약을 조제하여 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오가피주(五加皮酒)는 맛이 맵고 독하기는 하나 숙수(熟水)를 조금 타서 바람 불고 추우며 비오는 날에 드시는 것이 역시 마땅합니다. 침을 놓는 일에 대해서는 성상의 증상을 살펴 의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략) 臣等與之商議，則寒月積勞，致 傷筋骨，逮至春氣升騰，寒濕之氣，動 於肝腎經絡。獨活去，秦艽、桂心代 木瓜、續斷，加黃柏三分，五服進御似 當。而久進湯藥，恐傷肺胃，亦爲未 安。延年益壽不老丹，加杜沖、薑 汁、炒木瓜、五味子，進御爲當。此 藥劑入如何？五加皮酒，味頗辛烈，少 和熟水，風寒陰雨之日，進御亦當。 進針事，則更觀近日聖候，議啓何如？” 答曰：“藥則勿爲。俟日氣和暖後，受

	<p>하니, 답하기를, “약은 짓지 말라. 날씨가 따스해지기를 기다려 침을 맞는 것이 좋겠으며 이 밖에는 달리 할 만한 일이 없다. 불로단은 서툰 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첨가해 넣어서는 안 된다. 오가피주에 대해서는 알았다.” 하고, 서성에게 이르기를, “맥도(脈度)에 대해서는 번거롭게 서계할 것이 없다.” 하였다.</p>	<p>針爲當。 此外無可爲之事。 不老丹， 拙醫不可自己心加入。 五加皮酒， 知道。” 傳于徐湑曰：“脈度則不必煩爲書啓。”</p>
<p>233. 선조 99권,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 (萬曆) 26년) 4월 11 일(을축) 5번째기사 비변사가 항왜들을 잘 대해 주어 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아뢰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왜 침지(倭僉知) 기오질기가 전마(戰馬)와 옷·식량·갓 등의 하사품을 받고 나서서 몹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갓과 신발 등을 더 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은금(銀錦)을 찢어진 갓에다 붙일 수 없고 갓을 쓰고서야 어떻게 맨발로 다니겠는가.’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항왜를 상례(常例)로 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 왜인에게 그러한 복식을 주어 보내면 진중(陣中)의 다른 왜인들도 그것을 보고 영광으로 여겨 저희들끼리 서로 권장하는 수도 있을 것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갖추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일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와 같은 왜인들은 잘 돌보아 주는 것이 좋다.” 하였다.</p>	<p>備邊司啓曰：“倭僉知其吾叱己， 旣蒙戰馬、衣資、糧、笠飾之賜， 不勝感喜， 而欲加得笠靴等物， 至曰銀錦不可貼諸破笠， 有笠飾者豈可跣足云。 降倭不可待以常例， 此倭具此飾服而去， 則陣中他倭， 亦有榮慕激勸之意。 令該曹， 備給爲當。 前者亦有此例， 故敢啓。” 傳曰：“依啓。 如此之倭， 優恤可矣。”</p>
<p>234. 선조 99권, 31년 (1598 무술 / 명 만력 (萬曆) 26년) 4월 29 일(계미) 1번째기사 군량 수송, 중국군의 동태, 이어송 조제 문</p>	<p>(전략)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생각하기는 광주(廣州)의 백성들이 심우정(沈友正)을 유임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쌀을 충주까지 운반하겠다는 뜻으로 비변사에 와 정문을 올렸으나 비변사가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경리 아문에 올렸었는데 아마 그 사실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략)</p>	<p>(전략) 柳成龍曰：“小臣思之， 廣州之民， 願留沈友正， 欲運米於忠州， 以此來呈於備邊司， 備邊司不許， 故呈於經理衙門， 恐指此而言也。” (후략)</p>

<p>제, 도산의 적정 등을 논의하다</p>		
<p>235. 선조 100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5월 17일(신축) 2번째기사 경리가 군량을 바친 정인홍을 승품시키도록 청하다</p>	<p>경리가 백황(白潢)의 품첩(稟帖)에 따라 말하였다. “정인홍(鄭仁弘)은 군량이 떨어졌을 때 의기를 권장하기 위해 쌀을 바쳤으니, 매우 가상하다. 이 품첩을 국왕에게 아뢰고 한편으론 정인홍에게 효유하여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국가의 위급함을 돕게 한 다음 뒷날 크게 승품(陞品)시키는 상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p>	<p>經理因白潢稟帖謂曰：“鄭仁弘當軍餉竭乏之時，勸義納米，極可嘉獎。此稟帖，啓知國王，一面行諭於鄭仁弘，使之終始盡力，以補國家之急，後日大加陞賞，可矣。”</p>
<p>236. 선조 101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6월 1일(갑인) 4번째기사 호조가 유민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우와 종자를 나누어 주자고 아뢰다</p>	<p>(전략) 강원도와 황해도의 초면(初面)인 고을에 메밀[木麥] 종자가 있는 곳은 제급하라고 행문(行文)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받아가게 한 다음, 환자(還子)로 치부(置簿)하게 하여 종자를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이러한 뜻을 경기·강원도·황해도·평안도와 개성 유수(開城留守)에게 각별히 하유하시어 떠도는 백성들의 다소(多少)와 살아가는 형편을 방문케 하시고, 지난해 계하(啓下)한 공사(公事)를 시행했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계문(啓聞)하게 하심이 온당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p>	<p>(전략) 江原、黃海初面官，有木麥種子處，行文題給，使之自受，還上置簿，以爲種子，而當此等事意，各別下諭于京畿、江原、黃海、平安道及開城留守處，訪問流民多少，存接形止，而上年啓下公事舉行與否，竝令啓聞爲當。敢啓。” 傳曰：“知道。”</p>
<p>237. 선조 101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6월 12일(을축) 3번째기사 도독 진인이 접반사를 통해 전달된 물품 일부를 되돌려 준다고 게첩하다</p>	<p>도독(都督) 진인(陳璘)이 게첩을 보냈다. “변변치 못한 제가 이 싸움을 맡아온 지가 지난 겨울부터 여름까지 그동안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는 황명(皇明)이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인자함을 보이시어 귀국 창생(蒼生)들의 고통을 무휼(撫恤)해 주는 일이라고는 하겠으나, 정벌에 나서서 한 번도 전공(戰功)을 세우지 못하였으므로 진실로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후덕하신 현왕(賢王)께서는 접반사(接伴使)를 보내주시고 거듭 향연(饗宴)을 베풀어 주셨으니, 멀리서 온 사람을 위로하고 황명(皇命)을 존중하는 마음이 지극하십니다. 돌이켜 보건대, 불초한 제가 어찌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감히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인삼</p>	<p>不佞是役，自冬(組) [徂] 夏，間關餘七月矣。無非彰皇明字小之仁，恤貴國蒼生之苦。然而逐逐征途，曾無表樹，鄙心誠愧之也。顧辱賢王厚德，接伴之臣併遣，宴享之惠重頒，所以勞遠人、尊皇命者，至矣。顧不佞其曷承之，不敢自外，拜人參、綿綢、綿紙，餘附歸壁，肅此爲謝外。(후략)</p>

	(人蔘)과 면주(綿綱)·면지(綿紙)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후략)	
238. 선조 102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7월 12일(을미) 2번째기사 제독과 더불어 용병과 도주한 왜인에 대해 이야기하다	<p>(전략) 차를 마시고 나서 상이 주례(酒禮)를 청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본래 술을 마시지 않을 뿐더러 더구나 행군하는 날에 취하면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알려 온 글은 없으나 마 대인(麻大人)께서 승리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저는 다만 모 유격(茅遊擊) 등 세 장수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진했다는 소문만 들었고, 마야(麻爺)가 출병(出兵)하였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적을 무찌름에 있어서 오늘 수십 명을 베고 내일 수십 명을 베다 하더라도 승패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일전을 벌여 크게 무찌름으로써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뒤에라야 앞으로 분탕질할 걱정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분부가 이러하시니 곧 왜적을 소탕하는 쾌거를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p> <p>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군문의 행차를 따져보건대, 오늘 출발하면 20일 후라야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20일 후에 출발한다면 8월이 되어야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4명의 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일제히 도착하여 대사를 상의하고 있으나 반드시 공과 죄를 정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저럭 세월만 보내고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되니, 국왕께서는 속히 군문에 자문을 보내어 빨리 오도록 재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명의 대장이 길을 나누어서 혹은 전라도를 맡고 혹은 중로(中路)를 맡게 되면 전력이 분산되니, 형세가 가벼워지</p>	<p>行茶, 上請酒禮, 曰: “素性不飲酒, 況行軍之日不可醉?” 上曰: “小邦文報不來, 似聞麻大人有捷云, 其然乎?” 曰: “俺但聞茅遊擊等三將, 領兵前往, 未聞麻爺出兵之報耳。大概殺賊, 今日得數十級, 明日又如是, 何益於勝敗? 必須一戰大捷, 使賊寒膽, 然後可無前搶之患。” 上曰: “大人分付如是, 會見蕩滅倭賊。” 提督曰: “計軍門之行, 今日發則二十日後當到, 二十日後發, 則八月當到。即今四大將領兵齊到, 商議大事, 又須有定功罪之人, 事克有濟。不可因循緩事, 國王速行咨于軍門, 趣其前來幸甚。蓋四箇大將, 或分受全羅, 或分受中路, 如是則力分, 力分則輕, 合則重。以倭僑言之, 則俺獨當, 他將之救不能及, 此所謂力分也。俺意則必欲合勢。” 上曰: “當依分付” 曰: “軍門須速來, 不然, 事機漸緩。不得戰, 然後方可爲守, 守豈可議於未戰之前? 要及八月舉事。萬都爺有識見, 有膽略, 然等候其行, 則必至凍寒。以是日望軍門之速來。</p>

	<p>고 합치면 장중하게 됩니다. 왜교(倭橋)로 말하면 제가 혼자 말을 경우 다른 장수들의 구원이 미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전력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함세하려고 합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 “마땅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p> <p>하였다. 다시 제독이 말하기를, “군문이 반드시 속히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기(事機)를 점점 잃게 됩니다. 싸울 수 없게 된 뒤에 비로소 방어를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싸움도 하기 전에 방어를 논의한단 말입니까. 요컨대 8월에는 거사를 해야 됩니다. 만도야(萬都爺)는 식견도 있고 담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추운 겨울이 닥칠테니 이 때문에 날마다 군문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군량도 십분 재촉하여 대사를 이룰 수 있게 해야 됩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 “지당한 분부입니다.”</p> <p>하였다. 제독이 떠나겠다고 고하자, 상이 말하기를, “먼 길을 가셔야 하니 조용하게 모시고 싶습니다.”</p> <p>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한 잔만 받겠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왜인이 도주한 일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겠는가?”</p> <p>하니, 승지 등이 모두 말하기를, “바로 이분의 아문에 투항했다고 하는 것 같으니 고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p> <p>하자, 상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제독이 하직을 고하였다. 상이 예단(禮單)을 증정하니, 제독이 말하기를,</p>	<p>糧運亦十分催督，使大事得成。” 上曰：“分付至當。” 提督告行，上曰：“遠路行邁，請從容待坐。” 曰：“多謝。當領一盃。” 上曰：“昨日逃倭事欲告，何如？” 承旨等皆曰：“似聞投入於此大人衙門，恐不必告。” 上曰：“然。” 提督告辭，上呈禮單，曰：“曾無一毫所爲事，何敢當厚賜？只受弓箭。” 上請進藥參，曰：“領命。” 仍請拜，上曰：“大人此行，寡人當拜。”</p>
--	---	--

	<p>“여태껏 한 가지도 한 일이 없는데 어찌 감히 후사(厚賜)를 감당하겠습니까. 활과 화살만 받겠습니다.”</p> <p>하였다. 상이 다시 약삼(藥蔘)을 올리도록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분부대로 받겠습니다.”</p> <p>하고 이어서 절을 하겠다고 청하니, 상이 말하기를, “분부대로 먼 길을 떠나시니 과인이 절을 하겠습니다.”</p> <p>하였다. (후략)</p>	
<p>239. 선조 104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9월 1일(계미) 2번째기사 한 동지가 머무는 관사에 거둥하여 다례와 주례를 행하다</p>	<p>오시(午時)에 상이 한 동지(韓同知)가 【이름은 한초명(韓初命)인데 산동(山東) 사람이다. 위인이 탐욕스러워 그가 폐를 끼치고 요구하는 일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머무는 관사(館舍)에 거둥하여 다례(茶禮)와 주례(酒禮)를 행하였다.</p>	<p>午時，上幸韓同知館，【名初命，山東人也。爲人貪婪，凡作弊求請之事，人不能勝當。】行茶禮、酒禮。</p>
<p>240. 선조 104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9월 22일(갑진) 6번째기사 약방이 온수 목욕을 하지말 것을 다시 아뢰다</p>	<p>(전략) “나의 병은 백약(白藥)이 무효라는 것을 모든 의관들이 다 알고 있다. 이제 그 증세가 갈수록 더 깊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남들이 온천수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평산(平山)에 신효(神效)한 물이 있다 하니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 혼자 갔다 오려고 하는데 열흘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의당 내신(內臣) 한두 명과 함께 양식을 싸가지고 갈 것이니 어떻게 감히 백성에게 폐를 끼치겠는가. 옛날에도 임금이 목욕하여 병을 치료한 일이 있고, 더구나 조종조에는 온양(溫陽)과 예천(醴泉)에 간 일이 있었는데 어찌서 경들은 억지로 막는가. 수일 내에 떠나려 한다.”</p> <p>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약방에 내린 비망기를 민간에 전파하라.”</p> <p>하였다.</p>	<p>(전략) “予痛百藥無效，諸醫之所共知。今其證，日以益深，死亡無日，人言溫水可治。聞平山有神水，欲乘此未深冬之前，匹馬往還，不過旬日間耳。當與一二內臣，裹糧而行，何敢貽弊於民？古者人君，亦沐浴治病。況祖宗朝有溫陽、醴泉之行，何卿等之強爲拒也？欲於數日內發行。”</p> <p>(○)仍傳于政院曰：“今下藥房備忘記，傳播閭閻。”</p>

<p>241. 선조 104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9월 27일(기유) 7번째기사 행 지중추부사 정탁 등이 어사의 행차를 맞이하는 문제로 아뢰다</p>	<p>행 지중추부사 정탁 등이 아뢰기를, “어사의 행차가 내일 서울로 들어오는데 교외에 나가 맞이하는 행사를 지금껏 정원이 헤아려서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기는 하지만 명나라의 대관(大官)이 문에 도착하면 영접하는 예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변도(變道)로써 처리하려 하면 상이 직접 교외에서 영접하되 연례(宴禮)는 베풀지 말고 절과 다례(茶禮)를 행하면서 겸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을 진술하고 파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할 수 없으시거든 교외에 나가 사람을 시켜 치사하기를 ‘국군이 이 죄명(罪名)을 저서 감히 직접 영접하지 못하고 배신(陪臣)을 시켜 공순히 안부를 여쭙다. ……」고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말하였다. 만일 어사를 접대하는 규례(規例)에 정말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미리 강정(講定)하여야 하지 막연히 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이처럼 아뢰니 저 예조의 대신은 무엇 하는 자인가. 어찌 애달픈 일이 아닌가.” 하였다.</p>	<p>行知中樞府事鄭琢等啓曰：“御史之行，明日入京，郊迎之舉，至今政院未得擬議。舉國雖在待勘之中，天朝大官臨門，迎接之禮，似不可闕如。欲以變道處之，自上親迎於郊外，不設宴禮，行拜行茶，兼陳我國情事而罷。此猶不可，則出次郊外，使人致辭云：‘國君負此罪名，不敢親自迎接，敢使陪臣，恭候起居’云云，以此爲辭，似爲得宜。”答曰：“予意已諭。若其接待御史之規，果有所見，則所當前期講定可也。茫無所處，今始如是啓之，彼禮曹大臣何爲者哉？豈不哀哉？”</p>
<p>242. 선조 106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11월 1일(임오) 4번째기사 신시에 급사를 맞아들이고 전송하다</p>	<p>(전략)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은 지금 내려갔다가 경주(慶州)에서 도로 올라올 것이오, 그대로 전라도 지방으로 갈 것이오? 해로(該路)의 지방이 몹시 잔파(殘破)되었으므로 지공(支供)하는 모든 일을 그 지방에 특별히 명하여 배신(陪臣)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려고 삼가 묻는 것이외다.” 하니, 급사가 말하기를, “먼저 경주에 갔다가 그대로 중로(中路)와 서로(西路)를 거쳐 바로 올라오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전략)行茶禮，上曰：“大人今此下去，自慶州還爲上來乎？仍向全羅地方乎？該路地方，殘破已極，凡支供之事，欲另飭地方。陪臣預爲措備，茲敢仰問耳。”給事曰：“前往慶州，仍向中、西兩路，而卽爲上來矣。”上曰：“大人遠行，欲親進一杯，而方在待勘之中，不敢行體。”給事曰：“多謝。”再行茶禮，給事告辭，上呈禮單曰：</p>

	<p>“대인께서 멀리 행차하시니 몸소 술 한 잔을 올리고 싶지만 현재 사감(查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주례를 행하지 못하외다.”</p> <p>하니, 급사가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p> <p>하였다. 다시 다례를 행하고 급사가 작별을 고하자, 상이 예단(禮單)을 내주며 이르기를, “대인께서 멀리 행차하시니, 변변치 못한 이 물건을 가지고 작은 성의를 표하외다.”</p> <p>하니, 급사가 말하기를, “여러 번 좋은 선물을 받았습시다. 지방에 피해를 주는 일이므로 이를 받지 못하겠습니다.”</p> <p>하였다. 상이 다시 청하자, “칼과 붓만 받겠습니다.”</p> <p>하고, 상이 세 번째 청하자, “인삼과 종이를 받겠습니다.”</p> <p>하였다.</p>	<p>“大人遠行，將此薄物，以表微誠。” 給事曰：“屢蒙嘉貺。擾害地方，不敢受此。”上更請，給事曰：“只受刀筆。”上三請，給事曰：“敢領蓼、紙。”</p>
<p>243. 선조 108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1월 5일(병술) 2번째기사 강 유격의 관소로 가서 담소하다</p>	<p>(전략) 통관의 가정(家丁)이 통관의 뜻으로 통관(通官)에게 말하기를, “노야가 주과를 베풀 것이니 귀국의 반배(盤杯)는 들이지 마십시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가 예를 먼저 행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고는, 이어서 청하기를, “춘주(春酒) 한 잔을 드리려 하오.”</p> <p>하니, 통관이 직접 일어나 젓가락을 어상(御床)위에 놓고는 바로 능금과 배 6~7개를 꺼내놓고【새로 딴 것 같았다. .】 이어서 주찬(酒饌)을 베풀니 매우 성대하였다.</p>	<p>(전략) 通判家丁，以通判意，言于通官曰：“老爺當設酒果，貴國盤杯，勿須入之。”上曰：“在我之禮，不可不先行。”仍請曰：“願進一盃春酒。”通判自起，置筯于御床上，卽出林檎及梨子六七顆【若新摘然。】置之，繼設酒饌甚盛。上曰：“多謝仙果之惠。”酒七八巡，上曰：“既飽佳惠，請辭。”通判曰：“新正有慶，願少駐駕。”上</p>

	<p>상이 이르기를, “선과(仙果)를 베풀어 주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술이 7~8순배 돌아, 상이 이르기를, “성대한 접대에 배가 부르니 그만 했으면 하오.” 하니, 통관이 말하기를, “신정(新正)에 경사가 많으니 조금만 더 계십시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술이 과하니 그만 하겠소. 그러나 이미 융숭한 접대를 받았으니 준비해 온 변변찮은 것을 드리겠소.” 하고, 서서 두 잔을 돌리고 나왔다. 날이 저물어서 환궁하였다. 잠시 후 한 동지(韓同知)와 유 중군(兪中軍)이 와서 별전(別殿)에서 회배(回拜)하였는데, 다례만을 행하고 물러갔다.</p>	<p>曰：“不勝盃酌，敢辭。然既領盛禮，請進薄具。”立行二酌而出。日暮還宮。少頃韓同知、兪中軍回拜於別殿，只行茶禮而退。</p>
<p>244. 선조 108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1월 13일(갑오) 1번째기사 서 급사의 관소에 가서 배례하고 답소하다</p>	<p>상이 서 급사(徐給事)의 【서관란(徐觀瀾).】 관소에 행행하여 배례를 행한 뒤에 차를 들자고 청하고 술을 들자고 청하였다. (중략) 상이 예단을 올리니 급사가 인삼(人蔘)과 선첩(扇貼)만을 받았다. 상이 작별인사를 한 뒤에 읊을 하고 나왔다.</p>	<p>甲午/上幸徐給事【觀瀾。】館，行拜禮後，請茶，遂請酒。(중략) 上呈禮單，給事只受人蔘、扇貼。上告辭，作揖而出。</p>
<p>245. 선조 109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2월 26일(병자) 1번째기사 형 군문이 회례하다</p>	<p>형 군문이 회례(回禮)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사례 주본은 이미 압록강을 건너갔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날짜를 헤아려보면 이미 건너갔을 것입니다.” 하고, 상이 주례를 행하기를 청하자, 군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천(泗川)의 군사와 유림(楡林)의 병마를 떠나 보내야 하니 세 잔만 마시고 그만두겠습니다.”</p>	<p>丙子/邢軍門回禮。軍門曰：“謝本已過江不?” 上曰：“以日計之，則已過江矣。” 上請行酒禮，軍門曰：“今日當打發川兵及楡林兵馬，請三杯而止。” (중략) 軍門請辭，上曰：“再請一杯。” 軍門立飲一杯，作揖而出。</p>

	<p>하였다. (중략) 군문이 하직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한 잔을 권하겠습니다.” 하였다. 군문은 서서 한 잔을 마시고 읊을 하고 나갔다.</p>	
<p>246. 선조 110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3월 11일(경인) 3번째기사 호택의 관소에 거동하다</p>	<p>상이 이어 호(胡)의 【호택(胡澤).】 관소에 거동하였다. 【호택은 전일 참장(參將)으로 있을 때 심유경(沈惟敬)과 강화를 강력히 주장한 자이다.】 주례를 행한 뒤에 호택이 말하기를, “제가 성안에 들어온 뒤에 예의상 마땅히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현재 효복(孝服)4244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감히 대궐로 달려가지 못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장차 왕립하려고 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만두시기를 재삼 요청하였는데도 뜻하지 않게 친히 거동하시어 폐관(弊館)을 찾아주시니 매우 황공합니다.” (후략)</p>	<p>上因幸胡。【澤。】館，【澤前爲參將，與沈惟敬力主講和者也。】行酒禮。 澤曰：“俺入城之後，禮當先拜，而方有孝服，故不敢趨詣殿陛。聞大王將欲來臨，再三請止，而不意親舉玉趾，辱于弊館，惶恐惶恐。” (후략)</p>
<p>247. 선조 110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3월 26일(을사) 1번째기사 지휘 황응양이 시어소에 이르자 접견례를 행하다</p>	<p>응양이 말하기를, “술이 만족하니 그만하기를 청합니다.” 하자, 상이 예물을 주니 인삼(人參)만 받아가지고 갔다.</p>	<p>應陽曰：“酒足，請止。”上呈禮物，只領人參而去。</p>
<p>248. 선조 111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4월 17일(병인) 6번째기사 내전의 기후에 관해 정원에 전교하다</p>	<p>정원에 전교하기를, “내전(內殿)의 기후가 어떠한가?” 하니, 회계하기를, “옥후(玉候)가 애초 감기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어 심기(心氣)마저 크게 상(傷)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열기가 오르내리는 증세가 매일 발작하였습니다. 이에 성심산(醒心散)·생계황(生鷄黃)·주사(朱砂)·안신환(安神丸)을 드리고 혹 청심환(淸心丸)을 4분하여 미음(米飮)에 넣어 마시도록 했으며, 가미 영신환(寧神丸)을 날마다 진어하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는 응</p>	<p>傳于政院曰：“內殿氣候何如?” 回啓曰：“玉候初因感冒，不得寢睡，仍而心氣大傷，胸膈怔忡，熱氣升降，逐日發作。進醒心散、生雞黃、朱砂、安神丸，或淸心元半半丸，調米飮呷進，加味寧神丸，逐日常進。胸膈怔忡之證，進凝〔神〕散後漸定。加入柴苓湯煎進，熱氣稍減，三時水刺數匙，連</p>

	<p>어리가 풀린 뒤에 차츰 안정되었고 시령탕(柴苓湯)을 가미해 넣어 가지고 끓여 드리자 열기가 다소 감소되어 삼시(三時)로 수라를 몇 수저씩 11일 동안 진어하였습니다. 대개 심기가 울적하고 막히는 증세는 약물만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p> <p>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p>	<p>進十一日。大概心氣鬱滯，難可專以藥餌調治。”傳曰：“知道。”</p>
<p>249. 선조 111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4월 21일(경오) 4번째기사 도독 진인의 숙소에 거동하다</p>	<p>상이 도독(都督) 진인(陳璘)의 숙소에 거동하여 주례(酒禮)를 행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동쪽 해상에서의 대첩(大捷)은 만세의 큰 공이며 소국(小國)이 망하지 않은 것은 모두 대인의 은덕입니다. 오늘 대인이 서쪽으로 돌아가려 하니 불곡(不穀)은 서운합니다.”</p> <p>하니, 도독 진인이 회례(回禮)하면서 예물(禮物)을 가지고와 올리자, 상이 사양하고 받기를 의식대로 하였다.</p>	<p>上幸陳都督璘館，行酒禮。上曰：“東洋之捷，萬世之大功，小國之不亡，皆大人之賜也。今者大人將爲西還，不穀爲之缺然。”陳都督璘回禮，以禮物來獻，上辭受如儀。</p>
<p>250. 선조 111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4월 26일(을해) 2번째기사 만 경리가 회례하자 주례를 행하다</p>	<p>만 경리가 회례하자 주례를 행하였다. 경리가 말하기를,</p> <p>“동정(東征)의 큰 일을 이미 완료하였기에 문무 대신들은 벌써 환국하였으나 저는 뒷일을 마무리하려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데 피해를 끼침이 많아 미안합니다.”</p> <p>하자, 상이 말하기를,</p> <p>“소국의 신민들이 든든히 믿는 사람은 오직 노야일 뿐입니다.”</p> <p>하였다.</p>	<p>萬經理回禮，行酒禮。經理曰：“東征大事已完，文武大臣已還，俺以善後事留此，多有擾害，未安。”上曰：“小國臣民，所恃以爲固者，唯老爺耳。”</p>
<p>251. 선조 112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윤4월 19일(정유) 1번째기사 수비 강양동이 와서 예물 단자를 바치다</p>	<p>(전략) 다례(茶禮)가 끝나고 주례(酒禮)를 행하였다. 예물 단자를 증정하니, 양동이 말하기를,</p> <p>“전에 여러 번 후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다시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p> <p>하고, 일어날 즈음에 국왕에게 청하기를,</p> <p>“제가 오랫동안 귀국에 머물렀으므로 현왕(賢王)과 한번 회포를 풀고자 합니다. 변변찮으나마 예물도 갖추었으니 며칠 뒤에 왕께서는 폐관(蔽官)에 왕림해 주십시오.”</p>	<p>(전략) 茶訖，行酒禮。呈禮單，良棟曰：“前者屢承盛眷，再不敢領。”將起，請於國王曰：“俺久住貴國，欲與賢王一敘。薄禮已具，數日後願王賜辱于弊館。”上曰：“敢不唯命?”作揖而罷。</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감히 말씀대로 따르지 않겠소이까.” 하였다. 읍하고 파했다.</p>	
<p>252. 선조 112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윤4월 25일(계묘) 2번째기사 중전이 수안에서 환도하다</p>	<p>미시에 중전이 수안(遂安)에서 환도하였다. 대신·정원·동서반 2품이 문안하니 평안하다고 답하고, 어선(御膳)을 내어 하사하였다. 당시 중전이 정유년 변란으로 인하여 산중에 가 있어 곤위(坤位)가 오래 비게 되었다가 이제야 비로소 환도하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p>	<p>未時， 中殿自遂安還都。 大臣、政院、東西班二品問安， 答曰：“平安”， 出御膳以賜之。 時， 中殿因丁酉之亂， 竄在山谷， 翟儀久虛， 至是始還都， 人莫不歡抃。</p>
<p>253. 선조 114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6월 1일(무인) 2번째기사 만 경리의 관소에 행차하여 하마연을 행하다</p>	<p>상이 만 경리(萬經理)의 【만세덕(萬世德).】 관소(館所)에 【남별궁(南別宮)이다.】 행행하여 하마연(下馬宴)을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듣건대 황상(皇上)께서 왜적을 토평(討平)한 일로 대인에게 은전(恩典)을 내리셨다 하니, 우러러 경하(慶賀)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만 경리가 말하기를, “귀국(貴國) 사직(社稷)의 복인 것을 황상께서 저에게까지 의복(衣服)과 은자(銀子)를 많이 내려주셨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다례(茶禮)를 행하고 나서 주례(酒禮)를 행했다. (후략)</p>	<p>上幸萬經理【世德。】所館，【南別宮。】 行下馬宴。 上曰：“聞皇上以平倭事， 降恩典于大人處云， 不勝仰賀。” 萬曰：“以貴國社稷之福， 皇上多賜俺衣件、銀子， 蹈舞無已。” 上行茶禮， 上行酒禮。 (후략)</p>
<p>254. 선조 115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7월 15일(임술) 2번째기사 유격 모국기에게 거동하여 주례를 행하다</p>	<p>상이 모 유격(茅遊擊)에게 【국기(國器).】 거동하여 주례(酒禮)를 행하였다.</p>	<p>上幸茅遊擊【國器。】行酒。</p>
<p>255. 선조 115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7월</p>	<p>상이 제독(提督) 이승훈(李承勛)의 아문에 거동하여 주례(酒禮)를 행하였다.</p>	<p>上幸李提督衙門， 行酒禮。</p>

<p>23일(경오) 3번째기사 제독 이승훈의 아문에 거등하여 주례를 행하 다</p>		
<p>256. 선조 116권, 32 년(1599 기해 / 명 만 력(萬曆) 27년) 8월 27일(계묘) 2번째기사 왜 사신 문제와 중국 군대를 위한 군량 조 달 문제를 제독 이승 훈과 환담하다</p>	<p>(전략) 주례(酒禮)를 행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전일 아홉 명의 왜인에 대한 일로 도야(都爺)에게 의논드렸더니, 도야의 말 이 ‘이 왜자(倭子)는 국왕이 죽이고자 하면 죽여야 하고 놓아 보내고자 하면 놓아 보내야 하며 중원으로 보내고자 하면 제본(題本)을 올려서 시행해야 한 다.’고 하였으니, 이는 국왕의 처치 여하에 달렸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소방의 생각에는, 그들을 죽이면 불화가 생길 것 같고 놓아 보내면 필시 우 리의 허실을 탐지할 것이니, 오직 바라는 바는 천조로 압송하여 처치를 기다 리게 했으면 합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다시 도야에게 분명히 타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청하기를, “제가 주과(酒果)를 좀 준비하였습니다. 이 상을 물리고 박례(薄禮)로 대접하 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감사하다고 하였다. 이에 제독이 가정(家丁)으로 하여금 탁상을 내오게 하고 【탁상에는 감·배·개암·밤·은행 등 온갖 과일과 닭고기·돼지고기 등 진수를 8~9겹으로 진설하고 탁상머리에 진설한 과일 위에는 채색 종이를 오려 꽃을 만들어 꽂았는데, 그중에 용안(龍眼)·여지(荔枝)·황등(黃橙)·녹귤(綠 橘)·금포도(金葡萄) 등의 물건도 있었다.】 또 상에게 객위(客位)로 나아가기 를 청하니, 【대개 접견할 때 주인은 서쪽에 객은 동쪽에 위치하는데, 이때 제 독이 객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상에게 양보하였으니, 이는 존객</p>	<p>(전략) 行酒禮。提督曰：“以前日九倭事，俺議于都爺，都爺曰：‘此倭子國王欲殺之則當殺，欲放則當放，欲送于中原，則當上本爲之。’此在國王處之如何耳。”上曰：“小邦之意，殺之則似開釁端，放還則彼必探我虛實，惟望押送天朝，以待處置矣。”提督曰：“然則當更究覈于都爺。”仍請曰：“俺略備酒果。請撤此饌，欲待薄禮。”上曰：“多謝。”提督令家丁進卓，【床中布列衆果，柿、梨、榛、栗、銀杏、雞、豬肉等物，八九重，床頭所陳果上，則翦彩爲花，皆插之，其中龍眼、荔枝、黃橙、綠橘、金葡萄等物，亦有之。】又請上，就客位，【凡接見，主西客東，時提督在客位，故以其坐讓于上，欲以尊客之禮，待之。】上再三固辭，提督強請，上不得已換坐。提督令家丁，進酒作樂。上請行回盃，從之。(중략) 上曰：“寡人在偏邦，實賴皇恩，大人奉話，今逢盛禮，采增感</p>

	<p>(尊客)의 예로 대접하고자 하는 뜻에서인 것이다.】 상이 재삼 고사하였다. 제독이 굳이 간청하므로 상이 부득이 자리를 바꾸자, 제독이 가정으로 하여금 술을 드리고 풍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상이 회배(回盃)를 청하니 이에 따랐다. (중략) 상이 말하기를, “과인이 편방(偏邦)에 있으면서 황은(皇恩)을 입어 대인을 모시고 대화를 하며 성대한 대접을 받으니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얼굴에 이미 취기가 올랐으니 돌아갈까 합니다.” 하니, 제독이 재삼 만류하였다. 전후 열두 순배를 올리고 또 밥을 올렸다. 【대개 중국 의식에 준비한 찬을 다 들이지 않았는데 손이 먼저 가면 불공하게 여긴다. 이때 제독이 올린 음식이 30여 가지였는데, 상이 다 드신 연후에 과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머물러 있었다.】 상이 또 돌아갈 것을 청하니, 제독이 상을 물리라고 명하였다. 상이 바꾸어 앉기를 청하여 전에 앉았던 자리로 나아간 다음 사배(謝拜)를 청하였다. 제독이 사양하므로 읍례(揖禮)를 행하고 예단(禮單)을 증정했는데, 마필(馬匹)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않았다. 상이 가정(家丁)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뒤 하직하고 나왔다.</p>	<p>激。 顏已醅矣， 請告辭。” 提督再三請留， 前後進十二爵， 又進飯。 【凡唐禮， 以所備菜蔬未盡入， 而客先去則以爲不恭。 時提督所進味數， 至於三十餘品， 欲上盡御然後罷， 故上不得已留之。】 上又請告辭， 提督命撤床。 上請換坐， 仍就前坐， 請行謝拜。 提督辭之， 行揖禮， 呈禮單， 只領馬匹， 餘皆不受。 上命分給其家丁， 辭而出。</p>
<p>257. 선조 117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9월 19일(을축) 1번째기사 중국 장수의 아문과 매매할 인삼을 조달하는 문제를 논하다</p>	<p>비변사가 【전성군(全城君) 이준(李準)과 동지(同知) 조정(趙挺)이다.】 아뢰기를, “저자 거리 백성들이 본사에 와서 호소하기를, ‘중국 장수의 여러 아문에 무납(貿納)하는 물건은 날로 배로 늘어가는데 물력이 고갈되어 거의 저자를 과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고 태감(高太監)의 차관이 요구하는 별조 인삼(別造人蔘)은 【별조 인삼 네 글자는 상께서 줄쳐 정원에 내렸다.】 시중에 품절되어 비록 많은 값을 주어도 사들이기가 극히 어려운 처지라 이로 인해 저자 백성들이 어제부터 가게를 철시하였다.’고 합니다. 신들이 이 말을 들으니 민망스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인삼은 원래 시중에서 생산하여 쓰는 물건이 아니고 행상(行商)이 수시로 사고 파는 것이므로 있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p>	<p>乙丑/備邊司 【全城君李準、同知趙挺。】 啓曰： “市民等來訴於本司曰： ‘天將諸衙門貿納之物， 日漸倍蓰， 物力盡竭， 幾至罷市。 今此高太監差官所求別造人蔘， 【別造人蔘四字， 自上抹下于政院。】 市中絕乏， 雖給重價， 貿得極難。 因此市民等， 昨始撤肆’ 云。 臣等聞之， 不勝悶慮。 人蔘元非市塵興產行用之物， 行商隨得隨買， 故或有或絕， 加以天兵滿城， 公私貿易，</p>

	<p>있는데, 더구나 지금은 중국군이 도성에 차 있어 공사 간에 모두 무역해 들이므로 사소한 물건도 남김없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비록 마련해내기를 독촉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저자 백성의 원망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도감(都監)은 그 마련해내기 어려운 형편을 알고 인삼이 생산되는 지방에 명령하여 형편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는 뜻으로 이미 입계하였으니, 이는 실로 부득이한 계책에서였습니다. 신들이 다시 번거로이 청하는 것이 극히 미안하나, 실로 저자 백성을 보존한 연후에 공가(公家)의 무역을 계속해 마련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긴박한 정상을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줄친 대목은 무엇을 이름인가? 또 이 계사(啓辭)는 외방(外方)에 복정(卜定)하겠다는 뜻인가?”</p> <p>하였다. 정원이 회계하기를, “본사에 물어보니, 별조인삼이란 것은 나무로 묶어서 건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인삼이 시중에 품절되어 저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때문에 평안도에 복정하여 형편대로 무역해 놓았다가 차관이 지나갈 때 부쳐보내려는 뜻에서라고 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평안도에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에도 여러 차례 올려보냈는데, 만약 저축된 것이 없어 차관에게 침해당한다면 어찌 할 것인가? 정원은 의논하여 아뢰라.”</p> <p>하였다. 회계하기를, “외방의 일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시중에 인삼이 품절되었기 때문에 지금 평안도에 복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일 유격(遊擊) 강양동(姜良棟)이 요구한 인삼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어도 또한 올려보내지 못하였으니, 이 인삼을 평안도에 부쳐 보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무역은</p>	<p>些少之物，竭盡無餘。雖督令辦出，勢所難堪，市民怨，號不可勝言。都監知其難辦之狀，欲令產出地方，隨便措備之意，已爲入啓，此實不得已之計也。臣等更爲煩請，極爲未安，而誠以保存市民，然後公家貿易，可以繼辦，故渠等悶迫之情，不敢不達。”傳于政院曰：“此抹下處，何謂耶？且此啓辭，欲爲卜定於外方之意乎？”政院回啓曰：“問于本司，則以爲別造人參云者，乃以木纏束而取乾者也。且此人參，市中絕乏，市民怨故，欲卜定於平安道，使之隨便貿易，差官過去時，順付之意云矣。”傳曰：“平安道有之則然矣，前者累度上送，若無儲，差官處被侵何？政院議啓。”回啓曰：“外方之事，未能詳知矣。以市中人參絕乏之故，今欲卜定於平安道，則前日姜遊擊所求人參，累度催促，亦不能上送。此人參，自平安道順付與否，難可的知。今此貿易，則似當不得從之矣。”傳曰：“予意則似難。”</p>
--	---	---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다.” 하였다.	
258. 선조 118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10월 2일(무인) 4번째기사 유격 모국기의 관소에 서 주례를 행하다. 유격 이천상의 관소에 가다	사시에 상이 유격 모국기(茅國器)의 관소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께서 우리 나라의 일로 바다에서 수고가 많았는데 지방이 잔파되어 지공이 소략하므로 늘 황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당치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주례(酒禮)을 행하였다. (후략)	巳時上幸茅遊擊國器館。上曰：“大人以小邦事，多勞海上，而地方殘破，支供忽略，每爲惶恐。”遊擊曰：“不敢當。”上行酒禮。(후략)
259. 선조 118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10월 12일(무자) 5번째기사 제독 이승훈의 관소에 가서 주례를 행하다	(전략)상이 다례(茶禮)를 청하자, 제독이 주례(酒禮) 행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다만 대인께서 상중(喪中)에 계시어 평상시와는 같지 않으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만 노야(萬老爺)가 여기에 왔을 적에도 또한 이 예(禮)를 베풀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50일이 지난 뒤에는 이와 같은 예를 행합니다. 별달리 준비한 것도 없고 단지 하찮은 채소만 차렸습니다.” 하였다. 상이 굳이 사양하였으나 제독이 굳이 청하므로 상이 어쩔 수 없이 주례(酒禮)를 행하게 하자, 제독이 상(床)을 올렸다. 【육찬(肉饌)이 다분히 놓여 있었으며, 오색주(五色珠)의 전채화(剪彩花)를 그 사이에 진설하였다.】 (후략)	(전략)上請茶禮，提督請行酒禮。上曰：“大人設宴，固知感激。但大人在哀疚中，非如常時，不敢當。”提督曰：“萬老爺來此，亦設此禮。中原則過五十日後，如此禮矣。且別無所備，只設小菜矣。”上固辭，提督固請，上不得已强行酒禮。提督進卓床，【肉饌狼藉，而以五色珠、剪彩花設於其間。】(후략)
260. 선조 122권, 33년(1600 경자 / 명 만	약방 제조(藥房堤調) 홍진(洪進)과 부제조(副堤調) 유희서(柳熙緒)가 아뢰기를, “전일 지어올린 약을 다 진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일에는 옥후(玉候)가	壬寅/藥房提調洪進、副提調柳熙緒啓曰：“前日劑進藥，未知畢進御否？近

<p>력(萬曆) 28년) 2월 28일(임인) 1번째기사 약방 제조 홍진과 부 제조 유희서가 문안하고 인음증에 대한 처방을 아뢰다</p>	<p>어떠하십니까? 신들은 안타까운 마음 가눌 수 없어 감히 와서 문안드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증세가 본디 앓던 증세이어서 발작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약은 이미 복용하였다. 단 인음증(引飲症)4435) 이 있어서 하루에 서너 사발을 마시고 있는데 차(茶)로 바꾸려면 어떤 차가 좋겠는가? 그리고 이 뒤로는 문안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의관(醫官)과 상의한 결과 맥문동(麥門冬) 1전(錢)을 가미하고 원래 처방에 들어있는 상백피(桑白皮)를 밀구(蜜灸)한 매화차(梅花茶)를 첨가하여 목마를 때 진어하시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日玉候何如? 臣等不勝悶慮之至, 敢來問安。” 答曰: “其證, 素患之證, 或作或歇。 藥則已服之。 但引飲日數三碗, 欲作某茶, 代飲如何? 且問安, 後勿爲之。” 再啓曰: “臣等與醫官商議, 則加麥門冬一錢, 元入桑白皮, 密灸梅花茶, 煩渴時進御爲當云, 故敢啓。” 答曰: “依啓。”</p>
<p>261. 선조 123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3월 18일(신유) 2번째기사 진상 문제로 사옹원 관리를 치죄하도록 하다</p>	<p>비망기로 일렀다. “사옹원(司饗院)의 안산(安山) 어전(漁箭) 감착관(監捉官)이 진상한 물고기는 모두 맛이 변했고 또 마릿수로 책임만 떼웠으니, 아예 어전을 설립한 의의가 없다. 처사를 극히 완만하게 했으니 색관원(色官員)을 추고하고 색리(色吏)는 수금(囚禁)하여 치죄(治罪)하라.” 사신은 논한다. 아침 저녁의 진선(進膳)은 절로 일정한 숫자가 있는 것이어서 임금의 신하들이 모두 풍족하게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신 상담할 때를 당하여 미세한 어전의 일이나 생각하고 있으니, 대우(大禹)가 자봉(自奉)을 비박(非薄)하게 한 것과 주 문왕(周文王)이 어진 이를 접견하느라 겨를이 없었던 것과는 영판 다르다 하겠다.</p>	<p>備忘記曰: “司饗院安山魚箭監捉官進上之魚, 皆味變, 且以數尾塞責, 殊無魚箭設立之意, 極爲緩慢。 色官員推考, 色吏囚禁治罪。” 【史臣曰: “朝夕進膳, 自有常數, 王之諸臣, 皆足以供, 而當臥薪嘗膽之日, 念魚箭微瑣之事, 其與大禹之菲惡, 周文之不遑, 異矣。”】</p>
<p>262. 선조 123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3월 29일(임신) 1번째기사</p>	<p>상이 한강에 행행하여 남쪽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이 제독(李提督)을 맞아 위로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大人)이 소방을 위하여 멀리 연해변을 순찰하였으니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p>	<p>壬申/上幸漢江, 迎慰李提督自南還京。 上曰: “大人爲小邦, 遠巡沿海, 不勝感激。” 提督曰: “騷擾地方, 心甚未安。” 乃請茶禮, 上與提督, 俱降</p>

<p>남방 순행을 마친 제독 이승훈을 위문하고 중국군 철수 이후의 방비책을 논의하다</p>	<p>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지방을 소요스럽게 해서 매우 미안합니다.” 하였다. 이어 다례(茶禮)를 청하였다. 상이 제독과 같이 좌석에서 내려와 서서 차를 마셨다. (후략)</p>	<p>席立飲茶。 (후략)</p>
<p>263. 선조 126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6월 30일(신축) 5번째기사 사용원 제조가 상중의 수라에 대해 아뢰다</p>	<p>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가 아뢰기를, “예문(禮文)에 의하면 대왕 대비의 빈궁을 차린 후에는 아침 저녁 상식(上食)만 있고 낮 수라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원(本院) 역시 상고할 만한 등록이 없으나 듣기로는 주다례(晝茶禮)가 있어 국수·떡·탕·부침·과일 등을 차리는 규식이 있다고 합니다. 신들이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어 대신에게 문의하였더니 주다례는 폐지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p>	<p>司饗院提調啓曰：“大行王妃成殯後，禮文只有朝夕上食，而無晝水刺矣。本院亦無膳錄可攷，傳聞有晝茶禮，麪、餅、湯、炙、時果排設之規云。臣等未敢擅便，議于大臣，則晝茶〔禮〕不可廢云，故敢啓。”傳曰：“允。”</p>
<p>264. 선조 127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7월 1일(임인) 3번째기사 예조에서 중국 조문 사신의 접대 절차에 대해 아뢰다</p>	<p>예조가 아뢰었다. “정원(政院)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중국 관원들이 와서 조문할 때 대응할 일을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미리 의논해 정할 것을 윤허(允下)하셨습니다. 중국 장수를 접대함에 있어 지금부터는 곡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밖의 상음례(相揖禮) 등은 평시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복색 등에 있어서는, 전하께서 복을 벗기 전에는 중국 장수가 와서 조문하거나 전하께서 각 아문(衙門)에 왕림할 때 상은 익선관(翼善冠)·참포(黻袍)·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를, 배종신(陪從臣)은 오사모(烏紗帽)·천담복(淺淡服)【백단령(白團領)을 편리한 대로 착용한다.】·오각대(烏角帶)·백피화를 착용하고, 복을 벗은 후에는 상은 익선관·소복(素服)【배자(褙子)를 제거한 무늬가 없는 흑포(黑袍)로 한다.】·오서대·백피화를 착용하며 배종신은 앞서의 복색과 같습니다. 졸곡(卒哭) 전에는 상은 흑칠의자(黑漆椅子)·흑의자(黑倚藉)·흑욕(黑褥)·흑선(黑緘)·백석(白席)으로 하며, 다례(茶禮)에는 과반(果盤)을 쓰지 않고 다(茶)만 쓰며 조례(弔禮) 때에는 다도 쓰지 않습니다. (후략)</p>	<p>禮曹啓曰：“因政院，啓辭，諸唐官來弔時，受弔應行諸事，令禮文官，預爲講定事，允下矣。接待天將，自此不可舉哀，其餘相揖等禮，與常時別無異同。如服色諸事，則殿下服未除之前，天將來弔，或自上往臨各衙門時，自上翼善冠、黻袍、烏犀帶、白皮靴，陪從臣，烏紗帽、淺淡服、【白團領，隨便服之。】烏角帶、白皮靴，服除後，則自上翼善冠、素服、【去褙子，無紋黑袍。】烏犀帶、白皮靴，陪從臣，同前服。卒哭前，則自上并御黑漆椅子、黑倚藉、黑褥、黑緘、白席，茶禮不用果盤，只行茶，弔禮時則否。(후략)</p>
<p>265. 선조 127권, 33</p>	<p>영의정 이항복(李恒福), 좌의정 이헌국(李憲國), 우의정 김명원(金命元)이 아</p>	<p>領議政李恒福、左議政李憲國、右議</p>

<p>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7월 7일(무신) 3번째기사 영의정 이항복 등이 소선을 철회할 것을 진정하다</p>	<p>뢰기름, “신들이 삼가 듣건대 상께서 오랫동안 소선(素膳)을 드신다 하니, 이 무더운 계절을 당하여 하정(下情)이 민망하기 그지없어 감히 아립니다.” 하니, 별다른 질병이 없다고 답하였다.</p>	<p>政金命元啓曰：“臣等伏聞，自上久進素膳，當此暑月，下情不勝悶迫。敢啓。”答曰：“別無疾病矣。”</p>
<p>266. 선조 127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7월 9일(경술) 4번째기사 영의정 이항복 등이 소선을 철회할 것을 거듭 아뢰다</p>	<p>영의정 이항복, 좌의정 이헌국, 우의정 김명원이 아뢰기름, “전일에 삼가 참작해서 하겠다는 전교를 받고 신들은 감격하여 물러나온 지 지금 벌써 며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인(饗人)에게 들으니 아직까지 소선(素膳)을 드신다 하므로 하정(下情)에 있어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왕의 일은 본디 평민과 다른 것이니, 정이 지극하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행하여 군하(群下)의 여망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위로 종사의 막중함을 생각하고 아래로 신민의 기대를 생각하시어, 애절한 감정을 억제하고 힘써 상선(常膳)을 드소서. 누차 번거로이 진달하여 극히 미안한 줄 아나 민망한 심정이라 와서 진달합니다.” 하니, 마땅히 아뢴 대로 하겠다고 답하였다.</p>	<p>領議政李恒福、左議政李憲國、右議政金命元啓曰：“前日伏承斟酌爲之之教，臣等感激而退，今既數日，竊聞饗人，尚進素膳，下情不勝悶迫。帝王之事，自與平人不同，情雖極至，而或有所不得任情直行，以孤群下之望者。伏乞上念宗社之重，下思臣民之望，而節情抑哀，勉進常膳。累次陳瀆，極知未安，而情係悶迫，敢來陳達。”答曰：“當依啓。”</p>
<p>267. 선조 127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7월 9일(경술) 5번째기사 영의정 이항복 등이 동궁의 소선을 철회토록 권고할 것을 주청하다</p>	<p>다시 아뢰기름, “삼가 하교를 받드니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듣건대 동궁(東宮)도 아직 죽을 든다 합니다. 이 무더운 계절을 당하여 원기가 원래 약하데 이와 같이 하여 마지않으면 성상께 유질지우(唯疾之憂)4486) 를 끼칠까 싶어 신들은 몹시 민망합니다. 소사(疏食)를 들도록 권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항상 권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시 권하겠다.” 하였다.</p>	<p>再啓曰：“伏承下教，不勝感激之至。第聞東宮，尚進粥飲。當此暑月，元氣素弱，若此不已，恐貽聖上唯疾之憂，臣等不勝悶迫。似當勸進疏食，敢此仰稟。”答曰：“常勸之，然當更勸之。”</p>
<p>268. 선조 129권, 33</p>	<p>(전략) 다례(茶禮) 행하기를 청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p>	<p>(전략) 請行茶禮。提督曰：“衙門郎</p>

<p>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9월 21일(신유) 1번째기사 제독 이승훈과 중국군에게 지급할 향은과 도성 수비책 등에 대해 논의하다</p>	<p>“아문의 낭중과 소통신(小通事)들을 모두 승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명한 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주례(酒禮) 행하기를 청하였다. (후략)</p>	<p>中及小通事，竝陞職何如?” 上曰：“從命。請行酒禮。” (후략)</p>
<p>269. 선조 130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10월 11일(신사) 3번째기사 호조에서 상공미를 구례대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다</p>	<p>호조가 아뢰기를, “신들이 무술년(4549) 5월 16일에 내린 비망기를 보니 ‘지금 식량이 거의 떨어져 중국 병사들은 배를 굶고 있고 심지어는 백관들까지 산료(散料)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다만 유사들의 죄이겠는가. 실상 내가 낮 두껍게 앉아 있는 데서 생겨난 것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하루에 두 끼니만 먹으면 족하니 세 끼는 필요치 않다. 해사의 공상미(供上米)를 반으로 줄여 진배(進排)하도록 하라. 또 내미(內米)4550) 로 조금 모여진 것 중 50석을 내리니 내일 호조가 받아가라고 하라.’ 하였습시다. 성교가 한번 내리자 누구인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중국군이 이미 모두 철수하여 돌아갔으니 상공미(上供米)를 구례(舊例)대로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p>	<p>戶曹啓曰：“臣等竊見戊戌年五月十六日，有備忘記，‘今糧餉垂絕，天兵有枵腹之憂，至於百官，不得受散料。此豈獨有司之罪乎？實由予冒居之致。不覺淚下。一日再食足矣。不必三時。該司供上米，減半進排，且內米少儲，今下五十石，明日令戶曹受去。’云。聖教一下，孰不感泣？今則天兵已盡撤回。上供之米，請一依舊例，施行何如？” 傳曰：“允。”</p>
<p>270. 선조 131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11월 25일(을축) 5번째기사 예조에서 제향 절차에 대해 아뢰다</p>	<p>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 친향의(親享儀) 소주(小註)에 ‘속절(俗節)4581) 은 정조(正朝)·동지(冬至)·한식(寒食)·단오(端午)·중추(中秋)이다.’ 하였으며, 졸곡(卒哭) 이전에는 특별히 이름을 열거하여 개록(開錄)한 곳도 없고 또 행진 의주(行奠儀註)도 없기 때문에 이번 중추나 동지 때에는 따로 전을 드리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마땅히 거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상(初喪) 때에 이른바 속절은, 정조나 단오나 중추뿐만 아니라</p>	<p>禮曹啓曰：“《五禮儀》親享儀小註，俗節，乃正朝、冬至、寒食、端午、中秋云，而卒哭以前，則別無據名開錄之處，又無行奠儀註，故今此中秋及冬至，皆無別奠之舉矣。萬一當行而不行，則極爲未安。或以爲初喪，所謂俗節，不但正朝、端午、中秋也，如上</p>

	<p>상원(上元)·중원(中元)·칠석(七夕)·중양(重陽)·납일(臘日) 같은 때도 모두 속절인데 차리는 예물은 조전(朝奠) 때보다 조금 성대하게 차리고 배제(陪祭)하는 절차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신들이 다시 참작하여 살펴보니, 속절에 시식(時食)4582) 으으로써 친신(薦新)하는 것이 고례(古禮)이며 선유(先儒)의 말에는 ‘절서(節序)를 만나면 성찬을 갖추는데 그 찬품은 조석전(朝夕奠)보다 조금 많다.’고 하였습니다. 《오례의》에는 비록 거론해 보인 의주(儀註)가 없지만 죽은 자 섬기기를 산 자 섬기듯 하다는 의리를 참작해 보면 후자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예조에서 절충하지 못하겠으니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p>	<p>元、中元、七夕、重陽、臘日之類，皆是。其設奠，只於朝奠時饌品差盛。但未有陪祭節次宜當云。臣等更爲參商，俗節薦以時食，既是古禮。先儒云：‘遇節序，則具盛饌，其品物，比朝夕奠差衆云。《五禮義》雖無揭出之儀註，而參以事亡如事存之義，依或者所言，似爲得宜，而自曹未能折衷，議大臣定奪何如?’傳曰：“允。”</p>
<p>271. 선조 131권, 33년(1600 경자 / 명 만력(萬曆) 28년) 11월 26일(병인) 1번째기사 충호사 이하를 선은하고 공장·서리·역부 등에게 소금과 미역을 하사하다</p>	<p>내관과 사관을 보내 충호사(摠護使) 이하에게 선은(宣醞)하고, 공장(工匠)·서리(書吏)·(役夫) 등에게는 소금과 미역을 차등 있게 내렸다. 【장인·서리 등은 1백 95명이고, 역부는 6천 2백 30명이었다.】</p>	<p>丙寅/遣內官及史官，宣醞于摠護使以下，賜工匠、書吏、役夫等，鹽藿有差。【匠人、書吏等，一百九十五名，役夫六千二百三十名。】</p>
<p>272. 선조 133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월 3일(임인) 11번째기사 판돈녕부사 송찬이 국정 개혁을 건의하다</p>	<p>판돈녕부사(判敦寧府使) 송찬(宋贊)이 상차(上筵)하였다. 그 대략에, “이번에 쌀·콩·소금과 면포(綿布)·연주(聯紬)를 특별히 하사하셨는데, 건저(乾豬)·건어(乾魚) 등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며 음식도 풍족하고 맑은 술도 많으니 은광(恩光)이 거둬 내려진 데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 어찌 결초(結草)라도 하여 성은의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노신(老臣)은 그저 나라 정사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인데 지난 번 병란(兵亂)으로 인하여 조종(祖宗)의 헌장(憲章)이 모두 당시 상황에 편리한 대로 변질되어버렸고 구차</p>	<p>判敦寧府事宋贊上筵。其略曰：“今者，特賜米太兼鹽、綿布、聯紬，而乾豬、乾魚，亦非一種。需雲接地，清醞列壺，恩光稠疊，空垂感淚。其何以結草，期報洪造之萬一哉? 老臣冀聞恢復之政，而祖宗憲章，頃因兵亂，盡變於權宜，苟且因仍之病，隨時亦痼</p>

	<p>하게 답습하는 병폐가 이미 고칠 수 없는 고질이 되었습니다. 신은 민망하게 여깁니다. 당우(唐虞) 시대에도 단주(丹朱)와 상균(商均)의 편파적인 기질과 사욕(私慾)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나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후세에 와서 다른 말들이 없었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엄히 방지하여 백성을 병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성찰하소서.”</p> <p>하였는데, 【당시 순화군(順和君)이 수원(水原)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여러 왕자들이 남의 노비를 빼앗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차자 속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이다.】 답하기를, “차자를 보았다. 경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으니, 매우 가상하다. 개진한 가모(嘉謨)에 대하여는 마땅히 살펴 생각하겠다.”</p> <p>하였다.</p>	<p>矣。 臣竊憫焉。 唐、虞雖不能變化朱、均氣拘私蔽之深，而不使朱、均至於病民，故後世無間焉。 想必防閉嚴密，不得病民也。 伏惟省察。 【時，不獨順和君，貽害於水原之民，諸王子奪人臧獲，作弊多端，故箚中及之。】 答曰：“省箚。 卿壽考體康，良用嘉焉。 所陳嘉謨，當爲省念。”</p>
<p>273. 선조 134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2월 5일(갑술) 4번째기사 봉상시에서 제향 음식의 마련 조치를 허락하도록 건의하다</p>	<p>봉상시(奉常寺)가 아뢰기를, “국가가 동서 적전(東西籍田)을 설치하여 농군(農軍)을 나누어 정하고 본시(本寺)의 관원이 경작을 전담하여 자성(棗盛)4632)에 이바지하여 오다가 난리를 겪은 뒤로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 아까워 백성에게 주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경작하게 하였는데, 수확한 것이 알차지 않아 육곡(六穀)만 천신(薦新)에 쓰고 자성은 오로지 지방의 공물에 의존하니, 일이 매우 구차합니다. 농군을 정하여 경작을 맡기는 일을 이제 갑자기 복구하기는 어려우니, 우선 그 중에서 기름진 땅을 먼저 개간하고 각별히 종자를 골라 주어 지금 그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경작을 하게 하되 그 중 잘 여문 곡식을 취하여 자성으로 쓰게 하소서.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점차 예전 방식대로 돌아간다면 아마 종묘 사직에 제사드리는 나라의 큰일에 풍성하고 정결하게 하는 뜻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감농관(監農官)으로 하여금 종자를 잘 고르고 제때에 경작하도록 하여 제향에 올릴 제물을 중하게 여기도록 하소서.”</p> <p>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p>	<p>奉常寺啓曰：“國家。 設東西籍田，分定農軍，寺官員，專掌耕作，以供棗盛。 亂後惜其荒廢，給民并作，所收不精，只用六穀薦新，而棗盛，則專責外貢，事甚苟簡。 農軍責耕，今難卒復，姑就其中，先墾膏沃之地，別擇種子，仍其并作，取其精鑿者，爲棗盛之奉，因此漸復其舊，庶幾在祀大事，不失豐潔之意。 請自今年爲始，另使監農官，精擇種子，及時耕種，以重祭享之供。” 傳曰：“允。”</p>

<p>274. 선조 135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3월 1일(기해) 2번째기사 비변사에서 거제현 백성들이 전 현령 유경선의 잉임을 청한 내용을 아뢰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거제(巨濟)에 사는 백성 조원전(趙元詮) 등 28인이 본사(本司)에 와서 소청하기를 ‘본현(本縣)은 바다에 있는 섬이라서 왜적의 침략을 제일 먼저 당하여 이미 무인지경이 되었는데, 전 현령 유경선(柳敬善)이 지난해 봄에 부임하여 백성을 자식처럼 여겨 한결같이 보살펴서 안정되게 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잔여 백성들이 약간은 예전의 생업을 회복하였는데, 뜻밖에도 논박을 당하여 파직이 되었으므로 백성들은 원통해 마지않는다. 원컨대 3백 섬의 쌀을 본관(本官)에 바치겠으니, 유경선을 잉임(仍任)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소청으로 인하여 이미 파직한 관원을 잉임하는 것은 사체에 온편치 못하나 지성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섬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와서까지 소청하였으니, 이는 전에 없던 일입니다. 특별히 조치해야 할 것 같아서 감히 아뢰입니다.” (후략)</p>	<p>備邊司啓曰：“巨濟居民趙元詮等二十八人，來訴于本司曰：‘本縣在海島，首被賊鋒，已爲無人之境。前縣令柳敬善，上年春到任，視民如子，一以撫摩安集爲事，孑遺之民，稍復舊業，而不意被論見罷，民等不勝冤痛，願納三百石米于本官，柳敬善仍任。’云。因民所訴，仍存已罷之官，事體未便，而非但出於至誠，絕島之民，至於越海控訴，此前日所未有之事也。似當別有處置。敢稟。” (후략)</p>
<p>275. 선조 135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3월 17일(을묘) 1번째기사 경연을 하고 진헌 물품·국방·곽재우 등에 대하여 논의하다</p>	<p>(전략)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땅이 수천 리나 되는 변방(藩邦)으로서 진헌하는 것까지도 능히 갖추지 못한다면 어찌 말이 되겠는가. 성절(聖節)과 동지(冬至)는 이번 달에 처음 알고 다음 달에 행하는 것이 아니다. 유사(有司)는 기일 안에 극력 조치해야 한다. 방물(方物)은 결코 줄일 수 없다. 어느 물건이 가장 어려운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가장 어려운 것은 인삼과 표피(豹皮)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서의 말은 틀렸다. 시정(市井)의 무지한 무리가 중국의 시장에서 무역하는 인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지경인데, 진헌을 하지 아니하여 중국 사람이 만일 ‘당신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인삼을 어찌 유독 진헌만은 못한다고 하는가?’ 한다면, 이 어찌 너무나 미안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표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어찌 구비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p>	<p>(전략) 上曰：“我國以地方數千里，爲藩邦，至於進獻，亦不能備，寧有是理？聖節、冬至，非今月始知，來月有行也。爲有司者，當前期極力措置，方物決不可減也。何物極難乎？” 金睟曰：“最難者，人參豹皮。” 上曰：“判書之言誤矣。市井無知之輩，貿易人參於上國之市者，不知其幾許，而至於進獻，則不爲。中原人，若以爾國，多產人參，何獨於進獻不爲云乎，則豈非未安之甚乎？豹皮亦我國所產，豈有不能備之理乎？” 金睟曰：“平時一年所貢人參，一千九百餘斤，而甲午半減之</p>

	<p>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평소에는 1년에 진헌하는 인삼이 1천 9백여 근인데, 갑오년에 반으로 줄인 이후로 겨우 5백 근에 이르며, 그 중에 또한 진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치는 것은 2백 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품질이 좋은 것이라도 오래되면 부서져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외방에서 듣자니 인삼 1근에 목(木)이 16필이라고 합니다. 표피는 창이나 칼에 찢린 상처가 있거나 발톱이 조금이라도 상했으면 봉진(封進)하지 못하는데, 호표(虎豹)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양도(兩道)의 감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익히 압니다. 표피의 가격이 작은 것도 70필이 넘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포(價布)를 내어 사들이는 표피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사람들이 모두 성의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p> <p>하자, 이항복이 아뢰기를, “대체로 말하자면 감사나 수령이 한 지역 사람을 다 동원하여 호표를 잡는 대로 모두 관용(官用)으로 쓰고 있는데, 어찌 지금 갑자기 호령을 내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민간에서 잡은 것은 다 쓸 수 있고 관가에서 잡은 것은 다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10에 2~3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민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p> <p>하였다. (후략)</p>	<p>後，僅至於五百斤，其中亦有不合於進獻，故所捧不過二百斤，而雖品好者，歲久則陳碎不堪用。且聞于外方，則人參一斤當，木十六匹矣。豹皮若創刃所傷，或(瓜)[爪]甲少損，則不合封進，虎豹不可手縛。臣爲兩道監司，熟知此弊。豹皮之價，小不下七十匹矣。”上曰：“出價布所買之皮，從何出乎？非從天降從地出，人皆不用誠意，故如此。”恒福曰：“大概言之，則監司守令，盡一境之人，隨其所捉，盡爲官用，豈以此時，號令爲之？非謂民間所捉者皆可用，官家所捉者皆可棄，大概十不中二三，故皆出於民間矣。”(후략)</p>
<p>276. 선조 136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4월 3일(경오) 2번째기사 사신이 섭정국의 행적</p>	<p>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섭정국(葉靖國)이 나갈 때에 참판 성영(成泳)이 먼저 모화관에 도착하여 예단(禮單)을 바치고 주례(酒禮)를 거행하였는데, 1잔을 마신 뒤에 섭정국이 곧바로 나가 자갈을 주어다 팔문(八門)의 형상을 만들고 수탉 2마리를 가져다가 문안에 두고서 적추(賊酋) 누구누구라고 명명한 뒤 쇠못을 두 눈에다</p>	<p>禮曹啓曰：“今葉靖國出去時，參判臣成泳，先到慕華館，呈禮單，行酒禮一盃後，靖國卽出，拾小石，作八門狀形，將雄鷄二首，置于門內，名曰賊酋某某，以鐵釘楛于兩眼，多般發說，有如</p>

<p>을 규탄하다</p>	<p>가 박고 공갈(恐喝)하듯 여러 번 말한 후 다시 그 못을 뽑으니 그 눈이 다시 아무렇지 않아 너무도 괴이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방법(方法)을 시행하면 왜적이 영원히 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합니다. 감히 아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후략)</p>	<p>恐喝而還。拔其釘，則其眼如常，殊爲怪異。渠言之曰：‘如此設方法，則倭賊永不得來云。敢啓。’傳曰：“知道。” (후략)</p>
<p>277. 선조 137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5월 1일(무술) 7번째기사 약방이 의관과 상의하여 상에게 지어 올릴 약에 대해 아뢰다</p>	<p>약방이 아뢰기를, “신들이 입진(入診)한 의관과 상의했더니, 성후(聖候)의 감모증(感冒症)은 이미 풀렸다 합니다. 다만 가슴에 담열(痰熱)이 멎어 있어 그 때문에 해수(咳嗽)가 그치지 않고 있으니, 행인(杏仁)·상백피(桑白皮)·남성포(南星炮)·백개자(白芥子)를 초연(炒研)하여 가미(加味)하고, 지실(枳實)을 빼고 대신 지각(枳殼)을 넣어 반하(半夏)·향부자(香附子)를 배로 해서 이중활담탕(理中豁痰湯)을 지어 하루 세 번씩 연일 드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반과환(半瓜丸)에다 귤홍(橘紅)·백개자·행인을 가미하여 죽력(竹瀝)과 강즙(薑汁)으로 죽을 쑤어 환을 만들어 계속 드시어 담근(痰根)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갈증이 날 때에는 사백산(瀉白散)에다 맥문동(麥門冬) 1전(錢)과 오미자(五味子) 9입(粒)을 가미하여 끓여서 차를 만들어 드셔야 하겠기에 감히 아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조리하면 저절로 차도가 있을 것이니 이후부터는 문안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안심하고 조리할 수 있다.” 하였다.</p>	<p>藥房啓曰：“臣等與入診醫官商議，則聖候感冒之證，已爲和解，但膈間痰熱鬱滯，以此咳嗽不止。宜用加杏仁、桑白皮、南星炮、白芥子炒研、去枳實代枳殼、倍半夏、香附子，理中豁痰湯三服，連日進御之後，半瓜丸，加橘紅、白芥子、杏仁，以竹瀝、薑汁，爲糊作丸，繼爲進御，以祛痰根。且煩渴時，瀉白散，加麥門冬一錢、五味子九粒，煎湯作茶，呷進爲當。敢啓。” 答曰允。調理則自當見差。今後勿爲問安，則將安心調理矣。”</p>
<p>278. 선조 139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7월 7일(임인) 1번째기사 헌부가 봉상시의 제향 담당 차지관의 파직과</p>	<p>헌부가 아뢰기를, “제향(祭享)이야말로 국가 대사인데 난리 이후로는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태만하여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달 4일 영녕전(永寧殿) 및 종묘(宗廟)의 대제(大祭) 때에 술맛이 박하고 신 데다가 익지도 않았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차지관(次知官)을 파직하소서. (후략)</p>	<p>壬寅/憲府啓曰：“祭享，乃國之大事，自亂後，奉常之官，慢不致意。今月初四日，永寧殿及宗廟大祭，酒味薄且酸，加以不熟，極爲駭愕。當該次知官，請命罷職。(후략)</p>

<p>전 울산 판관 최홍재 등의 일을 아뢰다</p>		
<p>279. 선조 142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0월 19일(계미) 2번째기사 상이 경상 등 도 도체찰사 이덕형을 인견하고 남방의 일 등에 대해 논하다</p>	<p>(전략)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은 외적(外賊)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내변(內變)에도 대비하는 것이니, 하삼도에 하유하여 다시 신칙시키소서. 그리하여 착실하게 거행하는 수령은 상을 주고 힘쓰지 않는 수령은 벌을 주어야 합니다. 신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해사(該司)에서 복정(卜定)하는 일이 계속 내려갔는데 소신이 순찰하여 이르른 때에는 곳곳에서 정소(呈訴)하였습니다. 신이 1년간의 징수를 알고자 하여 각 고을로 하여금 매달 기록하여 보고하게 하고, 경상도는 공물(貢物)을 모두 면제하고 진상물(進上物)만 바치게 하였는데도, 쌀과 베가 매우 많았습니다. 더구나 양호(兩湖)는 국가의 경비를 그곳에서 모두 관출하게 하니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p> <p>정유년(1479)은 대적이 침입한 때인데도 그 해의 공물을 추징하고 있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각별히 감면하게 하고 모든 국가의 경비도 모두 재정(裁定)하여 오로지 군비에만 뜻을 두어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한 연후에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도는 인심이 극악(極惡)하니 병영·수영·감사를 검칙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순찰사를 파한 뒤부터는 서로 맞먹기 때문에 매사에 방해가 되니, 반드시 순찰사를 겸임시켜야 호령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의 일은 인심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입도 열기 어렵기 때문에 전라도와 충청도는 분부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이 두 곳은 염려가 많은 곳입니다.”</p> <p>하였다. (후략)</p>	<p>如鍊兵等事，非徒所以禦外侮，亦可以備內變。 必須下諭下三道，更加申飭，守令有着實舉行者賞之，不力者施罰可也。 臣到彼見之，該司卜定之事，連續下去，小臣巡到時，處處呈訴。 臣欲知一年所入之幾何， 令各官逐朔開報，慶尙道則貢物盡除，只有進上，而所入米布甚多。 況兩湖，則國家全取辦於其處者乎？ 丁酉年，則大賊侵軼之時，其歲貢物，亦爲追徵。 令該司，各別減除，凡干經費，亦皆裁定，專意兵備，使民知不可不爲，然後乃可爲也。 忠淸道，人心極惡，兵水營、監司，不可不檢飭，而自罷巡察使，便成敵體，故每事有妨，必須復兼巡察使，可以號令矣。 如鍊兵等事，人心不好處，難以開口，故全羅、忠淸等道，不曾分付矣。 元來此兩處， 事多可慮。”(전략)</p>
<p>280. 선조 143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1월 24일(무오) 6번째기사</p>	<p>비망기(備忘記)로 일렀다.</p> <p>“나의 성품이 중국의 물품을 좋아하는데, 중국 장수가 나를 위해 주연을 베푸는 것을 보니 찬품(饌品)은 간략하면서 조촐하고 기명(器皿)은 정교하면서 적으며, 예절은 번거롭지 않으면서 술의 순배는 무수하여 은근하고 관곡(款曲)</p>	<p>備忘記曰：“予性好唐制， 及見天將，爲予置酒，饌品簡而潔，器皿精而小，禮節不繁， 而酒巡無數， 慇懃款曲。 回顧我國之所爲，足以蹙鼻矣。 愛其</p>

<p>중국 기명의 모양새대로 그 양식을 제조하라고 이르다</p>	<p>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돌아보면 코살이 절로 찌푸려진다. 중국 기명의 모양새가 좋으니 그 양식대로 특별히 제조하여 궁중에서 항상 사용하도록 하라. 이에 그 제도를 내린다. 천사(天使)가 나왔을 때 이 제도에 의하여 만들어 쓴다면 추하고 냄새나는 것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절로 없어질 것이다. 도감(都監)은 제도를 보고서 헤아려 조처하라.”</p>	<p>器皿之制，依樣別作，常用於宮中，令下其制，天使時若依此造作用之，則麤穢臭饑，不期滅，而自滅矣。都監見而量處。”</p>
<p>281. 선조 144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2월 7일(경오) 1번째기사 왕급과 예를 나누다</p>	<p>(전략) 상이 이르기를, “시종 황은(皇恩)에 의지하여 오늘날까지 보유하게 되었으니 황은이 망극하오.” 하고, 이어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상이 교의(交椅)에서 내려와 찻잔을 들고 읊하고 나서 다시 교의에 앉아 차를 마셨다. 다례를 마치고 나자 또 주례(酒禮)를 행하였다. 상이 교의에 앉아 술잔을 들고 읊한 다음 술을 마시고 나서 젓가락을 들어 왕급에게 음식 들기를 권하였는데, 왕급도 똑같이 하였다. 술이 12순배 돌아 왕급이 주량이 작다고 사양하고 그만두기를 여러 차례 청하므로 상이 따랐다. 급이 말하기를, “오늘 국왕을 뵈었으니 내일 꼭 떠나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미흡하니 명일 다시 서로 회합합시다.” 하자, 왕급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마음을 열어 성의를 보이시니 하루 더 머물겠습니다. 군마·전량(錢糧)의 수효를 상세히 적어 주시기를 다시 청합니다.” 하였다. 상을 물린 뒤 우승지 유공신(柳拱辰)이 예단(禮單)을 주니, 왕급이 말하기를, “공무 때문에 왔으므로 감히 중한 예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역관을 시켜 말을 만들어 예물을 받기를 청하였다. 급이 말하기를,</p>	<p>(전략) 上曰：“終始仰仗皇恩，保有今日，皇恩罔極。”仍行茶禮。上下交倚，執茶鍾而揖，復上交倚啜茶。茶禮畢，又行酒禮，上坐交倚，執盃而揖，飲畢，舉箸請勸，汲悉如之。酒行十二巡，汲辭以量淺，屢請止，上從之。汲曰：“今見國王，明日定欲發行。”上曰：“未洽。明日請更爲相會。”汲曰：“國王開心見誠，請少留一日。軍馬、錢糧之數，更請詳細書給。”撤卓後，右承旨柳拱辰呈禮單，汲曰：“爲公而來，不敢受重禮。”上使譯官，措辭請之，汲曰：“長者賜，不敢辭，謹領。”上請送拜，再拜作揖，汲亦答拜。辭出時，上送至中門外，作揖而罷。</p>

	<p>“장자(長者)께서 주는 것은 감히 사양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삼가 받겠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송배(送拜)할 것을 청하여 두 번 절한 다음 읍을 하니, 왕급도 답배(答拜)하고 하직하고 나갔다. 이때 상이 중문(中門) 밖까지 나아가 읍하고서 과하였다.</p>	
<p>282. 선조 144권, 34년(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2월 17일(경진) 1번째기사 헌부가 조사 접대 연향에 대한 물품의 간소화를 간하다</p>	<p>헌부가 아뢰기를, “전에 신들의 계사로 인하여 조사를 지대하는 제반 일을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시행하게 하라는 성상의 비답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신들은 서로 손모아 기뻐하며 민력이 조금 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호조에 내리신 분부를 보건대, 연향(宴享)에 관한 모든 일은 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니, 신들은 답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무릇 조사를 지대하는 일 가운데 연향의 폐단이 특히 심한데, 연향을 감할 수 없다면 감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상배(床排)하는 찬품(饌品) 가운데 채화(綵花)·밀과(蜜果) 따위를 어찌 구규(舊規)대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숙참(宿站)의 연향에 이르러서는 전부터 으레 허례(虛禮)로 베풀었으니 또한 물력(物力)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목(頭目)에게 내리는 연향은 그릇 수가 너무 많아 전일 군문(軍門)·경리(經理) 연향 때의 상배(床排)에 비하여 도리어 증가되었습니다. 상화(床花)에 소용되는 백저포(白苧布)가 1백여 필이나 되어 종이로 대용하더라도 수백 권이나 소용됩니다. 이처럼 곤궁하고 탕갈된 시기를 당하여 이러한 형식적인 것은 마땅히 절감해야 합니다. (후략)</p>	<p>庚辰/憲府啓曰：“前因臣等所啓，詔使支持諸事，令該曹參酌施行，聖批已下。臣等相與拱手稱喜，佇見民力之少紓，伏觀昨日下戶曹之教，有宴享諸事，則不可減。臣等不勝憫鬱焉。夫詔使支持之弊，宴享爲尤甚。宴享不可減，則所減幾何？如床排饌品，綵花、蜜果之類，豈可盡依舊規？至於宿站宴享，自前例爲虛設，亦不須浪費物力。且頭目宴享，器品太多，比之前日軍門經理宴享時床排，反有加焉。床花所用白苧布，至於百餘匹之多，以紙代用，亦不下數百卷。當此困竭之時，此等文具，正宜節減，況異日詔使之行，如有繼此而至者，則必將以今日所磨鍊者，爲之式例。苟不量力詳定，以爲可繼之道，則必爲後日無窮之弊，豈不重可憂哉？抑今日之頭目，卽前日軍門經理之家丁也。 (후략)</p>
<p>283. 선조 146권, 35</p>	<p>(전략) 가례 때에 소용되는 전칠(全漆)은 16두이고 매칠(每漆)은 5~6두이며,</p>	<p>(전략) 嘉禮時所用，全漆十六斗，每漆</p>

<p>년(1602 임인 / 명 만력(萬曆) 30년) 2월 5일(무진) 3번째기사 현부가 국가의 저축이 탕갈되었음을 아뢰다</p>	<p>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 두목(頭目)의 조반상(早飯床)에 놓을 조과(造果)에 반드시 꿀을 쓸 필요가 없는데 청밀(淸蜜) 6석을 마련하였으니, 매우 그롭니다. 그밖에 사용할 크고 작은 물건으로서 해사에 저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체를 시장 백성에게 취해 장만하게 하는데, 이름은 무역한다 하나 대가를 주지 않은 것이 이미 배 수백 동(同)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금·은과 채단(綵段) 등 값이 비싼 물건을 독촉하여 받아들이는 일이 더욱 한이 없으므로 시장 백성들이 거리나 골목에 모여서 곳곳에서 울며 호소하고 있으니, 보고 들은 바를 차마 말하기 어렵습니다.</p> <p>이 대례를 당하여 대소의 신하 중 누구인들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성대한 의식이 흠이 없게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세가 이에 이르렀으니 적절히 변통하여 민력이 피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복어(服御)·여연(輿輦)·의장(儀仗)·기명(器皿) 등 물품을 수량을 줄이거나 혹은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금·은 따위 중한 물건은 전에 감하고 대체한 사례를 따라 다시 헤아리되, 충분히 줄여 간소하게 하고 해사로 하여금 특별히 대가의 물건을 장만하여 무역하는 대로 값을 주어 시장 백성의 원망을 덜어주소서. 가례도감의 전칠과 영접 도감의 조과를 담당하여 마련한 색낭청을 모두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이미 일렀으므로 윤택하지 않는다. 가례에 관한 일은 계사대로 하라. 조과에 관한 일은 불가하다. 낭청에 관한 일도 불가하다.”</p> <p>하였다.</p>	<p>五六斗，天使時，頭目早飯床，排造果，不必用蜜，而以淸蜜六石磨鍊，極爲無謂。其他細大應用之物，該司無儲者，一皆取辦於市民。名爲貿易，而曾未給價者，已至累百同。近日督納金銀、綵段價重之物，尤無紀極，市民等聚首街巷，處處泣訴，耳目所接，有難忍言。當此大禮，大小臣庶，孰不欲竭誠盡力，庶使縛儀無欠，而事勢至此，不可量宜變通，以紓民力。凡干服御、輿輦、儀仗、器皿等物，或減其數，或代他色。如金銀重物，因前已減已代者，而更加商度，十分裁損，務從簡約，而且令該司，另加措辦價物，隨貨隨給，以除市民之怨。嘉禮都監全漆，迎接都監造果次知磨鍊色郎廳，請竝命先罷後推。” 答曰：“已諭不允。嘉禮事，依啓。造果事，則不可。郎廳事不可。”</p>
<p>284. 선조 148권, 35년(1602 임인 / 명 만력(萬曆) 30년) 3월 10일(임신) 1번째기사</p>	<p>조사의 관소에 행행하여 연례(宴禮)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오셨는데 관사(館舍)도 보잘것없고 배신(陪臣)도 태만하며 공역(供億)도 부족하니 매우 미안합니다.”</p> <p>하니, 두 천사가 말하기를,</p>	<p>壬申/幸詔使所館，行宴禮。上曰：“大人之來，館舍涼薄，亦恐陪臣怠慢，供億欠缺。不勝未安。”兩使曰：“多謝。”上請行茶禮，進茶訖，請酒禮。</p>

<p>조사의 관소에 행행하여 연례를 행하다</p>	<p>“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다례를 행할 것을 청하였다. 차를 다 마시자 주례(酒禮)를 청하였다. 상이 어전 통사(御前通事) 신식(申湜)에게 예단(禮單)을 증정케 하면서 말하기를, “보잘것없는 토산품이나마 감히 정성을 표합니다.” 하니, 두 천사가 말하기를, “용승한 예를 거둬 받으니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겠기에 후의를 받겠습니다.” 하였다. 예를 마치고 환궁하였다.</p>	<p>上命御前通事(申是) [申湜] , 呈禮單曰: ‘薄物土產, 敢表下誠。’ 兩使曰: “疊蒙盛禮, 何可當也, 然不敢違命, 敢領厚意。” 禮畢, 還宮。</p>
<p>285. 선조 148권, 35년(1602 임인 / 명 만력(萬曆) 30년) 3월 28일(경인) 1번째기사 천사가 왔을 때 쓰고 남은 물품 처리에 관해 호조에게 이르다</p>	<p>호조가 아뢰기를, “천사(天使)가 왔을 때 쓰고 남은 각종 과자·과실·절육(折肉) 등 잡물이 매우 많은데 전처럼 시장 가격에 준하여 팔아야 할지 어쩔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겠으나 굳이 팔 것까지는 없다. 거관 유생(居館儒生)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훈련도감의 군사와 무용 금군(武勇禁軍)들에게 주되, 해사(該司)로 하여금 따로 술을 빚어 이것으로 안주를 삼아 술을 한 차례 공궤함이 합당할 듯하다. 또 주사 어사(舟師御史)가 군사를 호궤하려고 하는데 그 기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물건을 급히 내려 보내 나눠주어 공궤하게 함으로써 투료(投醪)4900의 뜻을 보이는 것도 해로울 것이 없다. 이 두 조목을 참작하여 시행하라.” 하였다.</p>	<p>庚寅/戶曹啓曰: “天使時, 用餘各色果子、實果、折肉等雜物, 用餘極多。依前市准和賣乎? 何以爲之敢稟。” 傳曰: “多寡難知, 而不須和賣。其中若干器, 賜居館儒生, 其餘, 訓練都監軍士、武勇禁軍等, 令該司別爲釀酒, 以此作酒肴, 一爲饋酒似當。又舟師御史, 方將犒軍。其日期未知在於何時, 而此物汲汲下送, 分賜供饋, 以示投醪之意, 亦不妨。就此兩款, 參酌施行。”</p>
<p>286. 선조 154권, 35년(1602 임인 / 명 만력(萬曆) 30년) 9월 12일(신미) 2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종묘 및 효경전(孝敬殿)의 악기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동향 대제(冬享大祭) 때부터 쓸 것입니다. 장악원(掌樂院)에서 본조에 첩보(牒報)하기를 ‘효경전의 악기는 마땅히 소경전(昭敬殿)의 예에 따라 해야 할 것이나 이번 추향</p>	<p>禮曹啓曰: “宗廟及孝敬殿樂器, 今方造成, 自冬享大祭, 將爲用樂矣。掌樂院牒報于本曹曰: ‘孝敬殿樂器, 當以昭敬殿例爲之, 而今秋享大祭, 祭禮</p>

<p>예조가 종묘와 효경전에 쓸 악기의 규모·제도에 대한 논의결과를 아뢰다</p>	<p>대제(秋享大祭)의 제례(祭禮)에 한결같이 종묘의 예에 따라 이미 거행하였으니, 이번 악기는 어떤 예로 거행할 것인가?’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조사해 아뢰기를, ‘소경전은 바로 공혜 왕후(恭惠王后)4985)의 혼전(魂殿)으로 효경전과 같은 경우입니다. 《악학궤범(樂學軌範)》을 상고하니 소경전의 제례악은 의묘(懿廟)4986)와 같았는데, 의묘의 제례악을 종묘에 비하면 그 풍성함과 간략함이 크게 다릅니다. 종묘악은 영신(迎神)4987)과 전폐(奠幣)4988)에 보태평(保太平)을 연주하고, 진찬(進饌)4989)에 풍안악(豐安樂)을 연주하며, 초헌(初獻)에는 보태평을 연주하고, 아헌(亞獻)에는 정대업(定大業)을 연주하며, 변두(邊豆)4990)를 물릴 때 웅안악(雍安樂)을 연주하고, 송신(送神)4991)에 흥안악(興安樂)을 연주하는데, 의식을 올릴 때마다 문무무(文武舞)가 있으며 악장(樂章)은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습니다. 소경전의 제례악은 참신(參神)4992)에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고, 초헌에 의여곡(猗歟曲)을 연주하고, 아헌에 유상곡(維上曲)을 연주하고, 종헌에 숙성곡(淑聖曲)을 연주하고, 사신(辭神)에 낙양춘을 연주하는데, 악장은 그 덕을 기록하여 별도로 제술(製述)하며 문무무가 없고 또 헌가(軒架)4993)도 없습니다. 이는 대개 종묘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제례(祭禮)가 자연히 같지 않아야 하고 찬품(饌品)과 악기도 강쇄(降殺)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경전의 규례에 따라 악장을 마련할 경우 추향(秋享) 때 제례에 이미 종묘의 예(禮)를 사용하였으며, 종묘의 규례에 따라 악장을 마련할 경우 전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악장의 가사도 매우 걸맞지 않습니다. ‘일이 매우 중대하니 대신들로 하여금 상의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 하셨습니다. (후략)</p>	<p>一依宗廟例，已爲行之，今此樂器，當用何禮?’云。 臣等據此查得，昭敬殿，乃恭惠王后魂殿也。 與今孝敬殿，正同。 考諸《樂學軌範》，則昭敬殿祭樂，與懿廟同，而懿廟之祭樂，比之宗廟，則其豐約，大相懸殊。 宗廟則迎神、奠幣，奏保太平。 進饌，奏豐安之樂。 初獻，奏保大平。 亞終獻，奏定大業。 徹籩豆，奏雍安之樂。 送神，奏興安之樂。 其進，俱有文武之舞。 樂章，載在《五禮儀》。 至於昭敬殿，則參神，奏洛陽春，初獻，奏猗歟曲。 亞獻，奏維上曲。 終獻，奏淑聖曲。 辭神，奏洛陽春。 樂章，當記德撰述，別爲製述，無文武舞，又無軒蓋。 未入廟之前，則其祭禮，自當不同，饌品、樂器，亦當降殺故也。 今欲依昭敬殿例，磨鍊樂章，則秋享時祭禮，已用宗廟之禮，依宗廟例磨鍊樂章，則非但有乖於前規，其樂章之辭，大不相稱。 事係莫重，請令大臣，商議定奪施行何如?’傳曰：‘允事’，傳教矣。 (후략)</p>
<p>287. 선조 157권, 35년(1602 임인 / 명 만</p>	<p>장령 조정견(趙庭堅)이 【음험하였다.】 내계(來啓)하기를, “울진 현령(蔚珍縣令) 변응각(邊應角)은 위인이 용렬하여 하리들이 간교한 것</p>	<p>己酉/掌令趙庭堅 【險訛。】來啓曰：“蔚珍縣令邊應角，爲人庸劣，吏(緣)</p>

<p>력(萬曆) 30년) 12월 22일(기유) 1번째기사 조정건이, 변응각 등과 회계 문서의 누락이 많은 관원의 파직을 건의하다</p>	<p>을 하므로 백성이 그 폐단을 받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강진 현감(康津縣監) 허수겸(許守謙)은 문벌이 한미하고 명망이 가벼워 영진(營鎭)을 통솔하는 일은 본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외람스러워 교묘히 명목을 만들어 징렴(徵斂)에 끝이 없으니 파직시키고 명망 있는 문관을 가려서 보내소서. 평양 판관(平壤判官) 구계(具槩)는 본부의 기생을 간통하여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파직시키소서. 백관이 관의 일을 게을리하는 습관이 근래 더욱 심하여져 대소의 일을 전부 하리(下吏)들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국가의 저축이 날로 허술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조의 공사(公事)를 보건대, 사재감(司宰監)은 회계(會計)에 누락된 건어(乾魚)의 숫자가 3천여 미(尾)나 되고, 사섬시(司贍寺)는 누락된 목면(木綿)이 5백여필이나 됩니다. 적지 않은 회계 문서들이 이토록 소루하여졌으니, 해관(該官)이 직무에 태만하고 있음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관원을 파직시키고 나서 추문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掾] 爲奸，民受其弊。請命罷職。康津縣監許守謙，門微望輕，彈壓營鎭，本非所堪。加以泛濫，巧作名目，徵斂無藝。請命罷職，以有名望文官擇遣。平壤判官具槩，奸府之妓，貽笑一邑。請命罷職。百隸怠官之習，近來益深，大小之事，專委下吏之手，致令國儲，日就虛踈。今見戶曹公事，則司宰監會計，漏落乾魚之數，多至三千餘尾，司贍寺漏落木綿，多至五百餘匹。不少會計文書，踈漏至此，該官之不職，據此可知。請當該官員，先罷後推。” 答曰：“依啓。”</p>
<p>288. 선조 161권, 36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4월 4일(경인) 1번째기사 예조로 하여금 퇴직자와 공신의 친척에게 음식을 보내게 하다</p>	<p>상이 예조에 명하여 《대전(大典)》 혜훈조(惠恤條)에 의하여 당상관으로 치사(致仕)한 사람 및 공신의 부모와 아내 또는 당상관의 아내 중에 나이 70이상인 사람에게 본조와 본읍으로 하여금 매달 술과 고기를 보내게 하였다.</p>	<p>庚寅/上命禮曹，依《大典》惠恤條，堂上官致仕者及功臣父母、妻、堂上妻，年七十以上者，令本曹本邑，月致酒肉。</p>
<p>289. 선조 162권, 36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5월 12일(정묘) 4번째기사 최황·구사맹 등이 술</p>	<p>기로소 당상 최황(崔滉)·구사맹(具思孟)·이제민(李齊閔) 등이 전문(箋文)을 올려 일등(一等)의 술을 내린 것에 대해 사례하였다.</p>	<p>耆老所堂上崔滉、具思孟、李齊閔等上箋謝，賜酒一(等) [瓶]。</p>

<p>하사에 대해 감사드리다</p>		
<p>290. 선조 162권, 36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5월 14일(기사) 6번째기사 화폐 사용에 대해 의논하다</p>	<p>(전략) 성영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렸습니다. 만일 윤휴를 내리신다면 의논해서 정하겠습니다. 또한 인삼을 진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양각삼(羊角蔘)과 같은 것은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워 1근에 배 30여 필을 주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삼은 몸피가 작기는 하지만 결백(潔白)하여 품질이 좋은데 해사에서 마음대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니, 앞으로의 일이 매우 답답하고 군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몸피가 큰 삼이 아니더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니, 성영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부득이하다면 요량해서 하라.” 하였다. 성영이 아뢰기를, “그리고 듣건대, 중국 사람들은 모두가 파삼(把蔘)을 바란다고 하니, 사지역관(事知譯官)으로 하여금 예부에 탐문해 보도록 하여, 파삼으로 진헌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파삼은 찌서 만든다니 약으로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듯하다.” 하였다. 성영이 아뢰기를, “강가의 백성들은 인삼을 캐기가 매우 고통스러우며 양각삼은 더욱 이어댈 길이 없습니다. 파삼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 나라 백성들도 이롭게 되기 때문에 감히 진달하는 것입니다.”</p>	<p>(전략) 泳曰: “在國家作法如何耳。若允下, 則可以議定矣。 且進獻人蔘, 如羊角者極難, 一斤至當三十餘匹, 而亦不得貿。 體雖小, 有潔白品好者, 而該司難於擅捧。 前頭之事, 極爲悶迫。” 上曰: “雖非大蔘, 欲用之耶?” 泳曰: “然。” 上曰: “不得已則量爲。” 泳曰: “且聞中原之人, 皆求把蔘云。 使事知譯官, 探聽於禮部, 以把蔘進獻似當。” 上曰: “把蔘, 烹造云, 似不合藥用矣。” 泳曰: “江邊之民, 採蔘極苦。 羊角蔘, 尤無可繼之路。 若把蔘, 則中原之人好之, 我國之民蒙利, 故敢達。” 上曰: “第議之。” (후략)</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차차 의논하자.” (후략)</p>	
<p>291. 선조 162권, 36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5월 23일(무인) 7번째기사 진헌할 인삼에 대해 의논하다</p>	<p>예조가 아뢰기를, “진헌할 인삼을 파삼(把蔘)으로 대신하는 문제를 대신들에게 의논해 보니, 행관중추부사 이원익(李元翼)과 오성 부원군 이항복(李恒福)은 ‘신들은 인삼을 채취하는 묘리를 알지도 못하고 변방 지역의 물가도 알지 못한다. 다만 억견(臆見)으로 헤아려 보건대, 공상(貢上)하는 인삼을 양각삼(羊角蔘)으로만 하게 되면 10에 1~2도 취할 수 없지만, 파삼은 대소 장단을 모두 취해 다발로 묶으면 가부를 논할 것 없이 캐낸 즉시 적절하게 쓸 수 있으니 만 배는 편리하게 될 것이다.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터득하게 되었으니, 예부(禮部)에 자품(咨稟)할 적에 어찌 변명할 말이 없는 것을 걱정하겠는가. 다만 오늘날 인심이 교묘하게 속이기를 잘 한다. 지난날에는 양각삼 한 가지만 바쳤으므로 하자가 쉽게 발견되어 교묘한 속임수를 쓰기가 어려웠지만, 오늘날은 한데 묶어 다발을 만들므로 줄기와 마디가 모두 가려 쉽게 속일 수가 있다. 만일 유사(유사)가 잘 살피지 못했다가, 썰어서 달이게 될 때에 혹시라도 교묘한 속임수가 드러나게 된다면 국가의 체면을 손상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더욱 엄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p> <p>또 좌의정 윤승훈(尹承勳)은 ‘인삼의 폐단이 오늘날 더욱 심하다. 삼은 토산품으로 1근이 많아봐야 두어 움큼도 되지 못하는데 값은 면포(綿布) 30필을 주고도 살 수가 없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파삼으로 만들기 때문에 폐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신이 전일 의논을 드릴 때에 삼을 사용하지 말자고 청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난해에 진헌해 오던 백삼(白蔘)을 초삼(草蔘)으로 바꾼 것은 예부의 뜻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본국에서 자문을 보내 바꾸어 봉진했었다. 이번에 중국 조정 사람들이 초삼을 요구하지 않고 파삼만 요구하니, 사지역관(事知譯官)를 시켜 자세하게 예부의</p>	<p>禮曹啓曰：“進獻人蔘，代以把蔘，議于大臣，則行判中樞府事李元翼、鰲城府院君李恒福以爲：‘臣不解採蔘妙理，且不解邊地物價。只以臆意料之，貢蔘只取羊角，十不得抽取一二。把蔘俱收，大小長短，團湊爲把，則不論可否，採輒中用，其爲便利，宜萬倍矣。昔之未解，今乃得學，則咨稟禮部，豈患無辭？第今人心巧僞，前日單呈羊角蔘，瑕痕易露，難以施巧，今日團湊成把，脈節俱隱，易以着僞。萬一有司未察，及至煎斫，脫有巧僞，致虧國體，此不可不慮，尤宜嚴察。’左議政尹承勳以爲：‘人蔘之弊，到今日益甚。蔘是土產，一斤之多，未滿數掬，而直至綿布三十匹，亦未得之。此無他，大者小者，皆歸於把蔘，而弊至於此。臣前日獻議時，請勿用蔘者，爲此也。頃年進獻白蔘，易以草蔘者，出於禮部意，故本國移咨換封矣。今者中朝之人，不求草蔘，而最要把蔘。今事知譯官，詳探禮部之意，若禮部許之，則以把蔘充獻，恐無所妨。’右議政柳水</p>

<p>292. 선조 162권, 36</p>	<p>뜻을 탐지하도록 하여, 만일 예부에서 허락하면 파삼으로 진헌하는 것도 무방할 듯싶다.’라고 했습니다.</p> <p>그리고 우의정 유영경(柳永慶)은 ‘초삼은 자연 그대로 온전한 것이고 파삼은 본성을 잃은 것이니, 약에 쓰기로 말한다면 초삼을 취하고 파삼을 버려야 할 듯하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파삼을 귀중히 여겨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취하고 버리는 뜻을 알 수 없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자품(咨稟)하기로 한다면 변명할 말이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중국 조정에서도 어찌 허락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요즈음 삼값이 폭등하여, 진헌에 합당한 양각삼은 비싼 값을 준다 하더라도 쉽게 구할 수가 없다. 모리배들이 때를 틈타 농간하여 값을 십 배나 올려놓았는데, 이 때문에 백성들이 해를 입게 되어 원망과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만일 자문을 보내 허락을 받아 파삼으로 봉진하게 된다면, 백성들이 많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 나라의 인심이 본래 교묘하고 간사한데 난리 뒤에는 더욱 심해졌다. 양각삼은 몸체가 하나이므로 속임수를 쓰기가 어려울 듯한데도 지난해에는 쇠꼬챙이를 속에 넣었다가 발각된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파삼은 다소 장단을 혼합하여 몸체를 이루는 것이겠는가. 이번에 무단히 파삼으로 바꾸어 달라고 자문을 보내 중국 조정에 봉진했다가, 조사받을 적에 만에 하나라도 이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일이 드러난다면 실로 나라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을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다시商量(商量)하여 일의 경중에 따라 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했습니다.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기에 감히 아뢰기를,</p> <p>하니, 전교하기를,</p> <p>“방물(方物)을 경솔하게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p> <p>하였다.</p>	<p>慶以爲：‘草蓼，全其天，把蓼，失其性。以藥用言之，則似當取草蓼，而舍把蓼。然中原之人，方以把蓼爲貴，而切求之。取舍之意，雖未可知，而必有所以然也。欲爲咨稟，則不患無辭，而天朝亦豈有不許之理？目今蓼價踊貴，羊角合於進獻者，雖有重價，未易覓得。謀利之徒，乖時刁蹬，十倍其價。以此民被其害，怨苦日甚。若移咨而得其請，以把蓼封進，則生民之蒙惠必多矣。但我國人心，本來巧詐，亂後尤甚。羊角單體，似難着僞，而頃年，有以鐵尖容於其中，發覺者。況此把蓼，合大小長短，渾湊而成體者乎？今者無端咨請，換以把蓼，封進天庭，驗納之際，萬一有如此巧僞之事，則誠恐大損國體也。臣愚所見，不敢不陳。令該曹，更加商量事〔之〕輕重，善爲之處爲當。’大臣之意如此。敢啓。”傳曰：“方物輕變，爲難。”</p>
	<p>(전략) 약방이 아뢰기를,</p>	<p>(전략) 藥房啓曰：“伏聞內殿玉候平</p>

<p>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5월 24일(기묘) 3번째기사 약방 제조가 중전의 복통 증세에 대해 문안하다</p>	<p>“삼가 듣건대, 내전께서 옥후(玉候)가 평안해지시어 간간이 복통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전에 비하면 횡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옥후가 점점 회복되어 가시니 오늘은 앞서 가미해 드린 궁귀탕(芎歸湯)을 계속 드시고, 다시 옥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 다시 다른 약을 쓰도록 의논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다만 여의(女醫)를 통해 삼가 듣건대, 내전께서 수라를 들기 싫어하신다고 하니, 이는 필시 위장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관들과 상의해 보니 ‘산후에는 약만 써서는 안 되고, 누런 암탉을 꼭 삶아 즙을 내어 죽을 만들거나 붕어를 달여 드시면 위장을 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대로 만들어서 드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安。腹痛間間作痛，而比前則度數，亦漸減歇，玉候漸向平復。今日則前加入芎歸湯，仍爲進用，更觀玉候如何，或更議他藥，或停爲當。但因醫女伏聞，內殿厭進水刺。此必胃氣不和，而與醫官商議，則產後不可專用藥物。黃雌鷄，爛烹取汁，或作粥，或鮒魚煎和進，則可以補胃氣云。依此進用何如?” 答曰：“依啓。”</p>
<p>293. 선조 162권, 36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5월 30일(을유) 1번째기사 제주 목사 김명윤이 굴맛이 좋지 않음을 아뢰다</p>	<p>제주 목사 김명윤(金命胤)이 아뢰었다.</p> <p>“지난 임인년 11월에 큰눈이 내렸는데, 평지에도 깊이가 2자가 넘어 겨울이 지나도록 녹지 않았고 정월이 되어도 겨울처럼 추워 풍뎡 얼어붙었으니 근고에 없던 일입니다. 과일 나무의 가지와 잎은 마른 것 같고 공사(公私) 과수원의 청귤(靑橘)은 모두 동상(凍傷)하여, 2월에 진상하는 청귤을 간신히 봉진했는데, 말라 맛이 좋지 않으므로 공상(供上)에 합당치 못하니 지극히 황송합니다.”</p> <p>사신은 논한다. 제주에 내린 눈이 겨울이 지나도 녹지 않았음은 실로 재변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반성한 사람이 있었는가.</p>	<p>乙酉/濟州牧使金命胤啓曰：“去壬寅年十一月大雪，平地深二尺餘，經冬不消，至於正月，寒冱如冬，近古所無。果樹枝葉如枯，公私果園靑橘，盡爲凍傷。二月進上靑橘，艱難封進，枯乾味惡，不合上供，極爲惶恐。”</p> <p>【史臣曰：“濟州之雪，經冬不消，實是變異 國家其有知懼而警省者乎?”】</p>
<p>294. 선조 164권, 36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7월 20일(갑술) 4번째기사 호조에서 어염세를 거</p>	<p>호조가 아뢰기를,</p> <p>“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므로 어염세(魚鹽稅)를 조종(祖宗) 때부터 받았는데, 이것은 정당한 공납이지 과외로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은 아니니, 탕갈(蕩竭)된 이때를 당하여서는 이를 거두어들여 국용에 보태는 것이 매우 온편합니다. 듣건대, 양남(兩南)5161) 과 함경도에서는 청어(靑魚)가 많이 나므로</p>	<p>戶曹啓曰：“我國，三面濱海，魚鹽之稅，自祖宗朝收納。此乃惟正之供，而非科外橫斂之比也。當此蕩竭之時，所當依收拾，以補國用，甚爲便益。伏聞兩南。咸鏡道，靑魚興產，商船</p>

<p>둘 것을 청하다</p>	<p>장삿배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수없이 잡는다고 하는데 세를 거두어들이는 일을 전폐하고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여기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탓입니다. 양남은 조도사(調度使)가 구관(句管)하여 한결같이 전례에 따라 시행하고 함경도는 감사로 하여금 선안(船案)을 성적(成籍)하여 세를 거두어 상납하도록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p>	<p>雲集，無數捉得云，而收稅一事，專廢不舉。此實偶然放過之所致。兩南則調度使句管，一依舊例施行，咸鏡道則令監司，船案成籍，收稅上納事，行移何如?”傳曰：“允。”</p>
<p>295. 선조 167권, 36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10월 4일(병술) 2번째기사 약방이 임금에게 외전에서 기무를 줄일 것을 건의하다</p>	<p>약방(藥房)5224) 이 아뢰기를, “삼가 성체(聖體)가 편찮으신 증세를 살피건대, 한결같이 차도가 없으시니, 신들은 민망하고 염려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의관(醫官)들과 상의하였더니 ‘표증(表症)5225) 을 풀고 기침을 다스리는 약을 이미 오랫동안 드셨으므로, 이제 더 드시면 위기(胃氣)를 손상할 듯하니 우선 탕약(湯藥)을 멈추고, 반조환(半瓜丸)에 백개자(白芥子)·초행인(炒杏仁)·선복화(旋覆花)를 더하고 생강(生薑)·귤피(橘皮)를 달인 물로 드시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이 약을 지어 들이게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감기·기침의 증세는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래 남게 됩니다. 약을 쓰는 것도 참으로 늦출 수 없습니다만 섭양(攝養)하는 방법을 반드시 훨씬 더 신중히 하여야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듣건대 때때로 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외전(外殿)에 나가 서무(庶務)를 수응(酬應)하신다 하는데, 외전은 황량한 곳이라서 한기(寒氣)가 엄습하기 쉬우니 이는 성궁(聖躬)을 조호(調護)하는 데에 매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며칠 동안 따뜻한 방에 조용히 계시면서 기무(機務)를 조금 줄이고 보양(保養)에 전념하여 화평한 효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신들이 구구한 염려를 견디지 못하여 감히 이렇게 다시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藥房啓曰：“伏審聖體所患之證，一樣不差。臣等不勝悶慮，與醫官等商議，則解表治嗽之劑，進御已久，今若加進，恐傷胃氣。姑停湯藥，宜以半瓜丸，加白芥子炒、杏仁、旋覆花，用生薑、橘皮煎湯，吞進爲當云。此藥劑入何如? 凡感冒咳嗽之證，若趁未調治，必至彌留。用藥固不可緩，而攝養之方，必倍加慎重，乃可見效。竊聞時感，出外殿酬應庶務。外殿虛涼之地，寒氣易襲，此甚有妨於調護聖躬。切宜近間，靜處燠室，少節機務，專心保養，以期和平之効。臣等不堪區區之慮，敢此更啓。” 答曰：“依啓。”</p>
<p>296. 선조 171권, 37년(1604 갑진 / 명 만</p>	<p>함경 감사 서성(徐滄)의 계목(啓目)에, “지금 인삼을 공납(貢納)하는 일은 서북 지방의 첫째 가는 민폐입니다. 근년</p>	<p>咸鏡監司徐滄啓目：“今貢蔘一事，爲西北第一民瘼，頃年天兵滿國，商賈之</p>

<p>력(萬曆) 32년) 2월 28일(기유) 2번째기사 함경 감사 서성이 인삼 방납의 폐단 개혁에 대해 건의하다</p>	<p>에 중국군이 나라에 왔으므로 장사꾼이 인삼을 환매하여 취하는 이득이 평시의 몇 배나 됩니다. 이 때문에 캐기 시작하는 달에는 민간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전 수량을 사가므로 관가에 바치는 인삼은 도리어 장사꾼의 전대를 채우고 남은 물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또 철이 지난 때에 액수(額數) 이외에 더 배정하는데, 봄 여름 사이에 민가에 어찌 한 뿌리의 인삼인들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방납(防納)하는 교활한 무리에게서 사야 하므로 그 값이 점점 뛰어 이토록 극도에 이르게 되었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삼상(蔘商)들을 일체 금단할 수는 없으나 장사꾼들로 하여금 반드시 호조(戶曹)와 개성부(開城府)의 노인(路引)5286) 을 얻어 감영(監營)에서 체문(帖文)으로 바꾼 뒤에야 비로소 통행할 수 있게 하고, 노인이 없는 자는 관진(關津)에 왕래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되 은밀히 숨겨주는 자가 있으면 체서유위율(制書有違律)5287) 로 처단하며, 혹 포고(捕告)하는 자가 있으면 그 물건의 반을 주게 하소서. 그리고 본 고을에서 공납할 인삼을 먼저 고른 뒤에야 장사꾼이 무역하는 것을 허가한다면, 공사(公私)가 다 잘 되고 고향(膏肓)같은 폐단이 점점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공(周公)이 민정(民情)을 서술한 시에 ‘작은 짐승은 개인이 갖고 큰 짐승은 나라에 바친다.’ 하였습니다. 작은 것을 자신이 갖고 큰 것은 바치는 것이 백성의 상정(常情)인데, 지금 삼상들은 큰 것을 골라서 먼저 갖는가 하면 심한 경우엔 작거나 크거나 하나도 남기지 않아서 진공(進貢)이 부족하게 만들기까지 하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도내(道內)는 신이 이문(移文)하여 금지하겠습니다만, 해조(該曹)로 하여금 시전(市廛)에 알려져 무지한 백성이 법망에 걸리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 하였는데, 호조에 계하하였다.</p>	<p>輩，換蔘取利，其獲倍蓰。因此始採之月，持民間所須物貨，沒數換賈納官之蔘，反是商賈囊餘之物，而又當節過之時，額外加定。如春夏之間，則民家那得有一根之蔘哉？不得已須買於防納刁蹬之輩，其價漸踊，至於此極，極爲寒心。蔘商之類，雖不可一切禁斷，令商賈，必得戶曹及開城府路引，翻帖于監營，然後始得通行，其無路引者，關津不許過去，而有容隱者，以制書有違律科斷，或有捕告者，以其資之半，與之，而本官先擇貢蔘，然後始許商賈貿易，則公私俱濟，而膏(盲)〔肓〕之瘼，庶幾漸革。周公陳詩以敘民情，而曰：‘言私其縱，獻豨于公。’私其小而獻其大，民之常情，而今之蔘商，則擇其大而先取之，甚至細大不遺，以致進貢爲闕，極爲痛憤。道內則臣行文禁約，令該曹知委市廛，毋使有罔民之患。” 啓下戶曹。</p>
<p>297. 선조 174권, 37년(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5월 5</p>	<p>이날은 곧 단오절(端午節)인데 임금이 승정원·홍문관·실록청·교정청 등의 관원들에게 특별히 주찬(酒饌)과 부채를 내렸다.</p>	<p>是日，乃端午俗節。上於承政院、弘文館、實錄校正廳等官，特賜酒饌及扇。</p>

<p>일(을묘) 7번째기사 단오절이라 승정원·홍문관·실록청·교정청 등에 주찬과 부채를 내리다</p>		
<p>298. 선조 178권, 37년(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9월 29일(병자) 4번째기사 오시에 별전에서 침을 맞고 약방 제조 이하에게 술을 내리다</p>	<p>오시(午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이어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약방 제조(藥房提調) 이하에게 술을 내렸다.</p>	<p>午時，上御別殿受針，仍賜藥房提調以下酒於差備門外。</p>
<p>299. 선조 180권, 37년(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10월 1일(정미) 5번째기사 평안도 어사 신윤의 서계</p>	<p>(전략) 그리고 강변(江邊)의 산군(山郡)으로 삼(蔘)이 생산되는 고을에서는 본삼(本蔘)을 정선하여 봉진(封進)하여도 으레 해사(該司)에 퇴짜를 받는데, 방납(防納)하는 사람은 이를 곧바로 사서 폐단없이 봉납(捧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령들은 과직될까 두려워하여 그 납가(納價)를 독촉하여 받아내 방납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내지(內地)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이 못되어 텅 비게 될 것이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근래 또 일종의 경차(京差)5414가 자칭 세도가의 하인이라고 하면서 공문(公文)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훈련 도감(訓練都監)에서 삼을 무역하는 공문이었습니. 이 자가 포목(布木) 1필을 지급하고는 10배의 값을 빼앗아가는데,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울부짖고 수령들도 어찌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놀라운 일로 이는 민간에 관계되는 큰 폐단입니다.”</p>	<p>(전략) 且山郡江邊產蔘之邑，雖以本蔘，極擇封進，而例爲見退於該司，防納之人，旋貿退蔘，無弊捧納，茲以守令等，恐爲見罷，督捧厥價，付之防納之人，以此民不堪支，流移內地，不出數年，必爲空虛之地。極爲寒心。近者又有一種京差，自稱勢家下人，而持公文，乃訓練都監貿蔘公文也。給一疋之木，奪十倍之價，小民束手號怨，守令無如之何。誠極可愕。此係民間巨弊。</p>
<p>300. 선조 180권, 37년(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10월</p>	<p>(전략) 먼저 다례(茶禮)를 거행하고 나서 주례(酒禮)를 거행하였다. 음악을 연주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예(禮)가 많으면 수고롭습니다. 예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p>	<p>(전략) 先行茶禮，次行酒禮。樂作，遊擊曰：“禮多則勞。禮不欲煩。”上曰：“多謝。”遊擊曰：“望見龍顏，多</p>

<p>28일(갑술) 3번째기사 오시에 유격 동정의를 접견하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우 감사하오이다.” 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용안(龍顔)을 우러르니 수척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래 앉아 계시면 반드시 손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왕림(枉臨)하시었으니 일찍 환가(還駕)하시고, 관원에게 명하여 주석(酒席)을 베풀게 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술을 권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감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국왕께서는 무슨 증세가 있으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후증(喉症)인데 1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있소이다. 간혹 기가 막히게 되면 소리를 낼 수가 없소이다.” 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저에게 의서(醫書) 1부(部)가 있는데 양 노야(楊老爺)께서 지은 것입니다. 쓸 만한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헌하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하오이다.” 하였다. 드디어 술을 네 순배 돌리고 나자, 유격이 은자(銀子) 1냥을 내어 전주관(典酒官)에게 지급하고 홍초(紅綃) 1단(段)을 악공(樂工)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 상이 일어나서 예방 승지(禮房承旨)로 하여금 예물 단자를 증정하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읊하는 예를 행하고 나아왔다.</p>	<p>有瘦色，久坐則必傷。已爲枉見，請早還駕，命官設酌，則幸甚。”上勸酒，遊擊曰：“領不得。”遊擊曰：“國王患何證耶？”上曰：“喉證經年不愈，氣或窒塞，聲音不出矣。”遊擊曰：“俺有一部醫書，楊老爺所作。未知可用與否，欲進之。”上曰：“多謝。”遂行酒四爵。遊擊出銀子一兩，給典酒官，紅綃一段，分給樂工。上起立，令禮房承旨，呈禮單，遊擊曰：“多謝。”上行揖禮而出。</p>
<p>301. 선조 180권, 37</p>	<p>(전략) 예물 단자를 증정하니, 유격이 말하기를,</p>	<p>(전략) 呈禮單，且曰：“皇上軫念貴邦</p>

<p>년(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10월 28일(갑술) 4번째기사 미시에 유격 동정의가 임금을 비러 시어소에 오다</p>	<p>“황상께서 귀방(貴邦)의 일을 진념(軫念)함에 있어 지극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쪽 변방을 순시한 결과 천병(天兵)을 증원한다면 굳게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있는 곳으로 통고하시면 제가 양원(兩院)에 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원에서도 반드시 고려가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은이 망극하오이다.”</p> <p>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제가 통지한 것도 황상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p> <p>하고, 드디어 다례(茶禮)를 거행하였다. 유격이 손수 의서(醫書)를 증명하면서 말하기를, “지금 존음(尊音)을 들으니 미령한 증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면 증후에 효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일어나서 사례하였는데, 유격이 말하기를,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p> <p>하였다. 상이 예물 단자를 증명하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p> <p>하고, 드디어 읍례(揖禮)를 행하고 나왔다.</p>	<p>之事，靡所不至。 俺今者巡親南邊，若添天兵，可以固守。 此意若通於俺處，則俺當告諸兩院。 兩院亦必顧念矣。” 上曰：“皇恩罔極。” 遊擊曰：“俺所以道達者，亦以皇上之恩，而言之耳。” 遂行茶禮。 遊擊手呈醫書曰：“今聞貴音，似有欠安之候。 此藥若用之，則候證可以見效矣。” 上起立以謝， 遊擊曰：“勿勞。” 上命呈禮單， 遊擊曰：“多謝。” 遂行揖禮而出。</p>
<p>302. 선조 181권, 37년(1604 갑진 / 명 만력(萬曆) 32년) 11월 13일(기축) 4번째기사 임금이 하사한 술을 받고 오성 부원군 이항복 등이 사례하여</p>	<p>오성 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 전양 부원군(全陽府院君) 유영경(柳永慶)이 전문(箋文)을 올렸다.</p> <p>“모년 모월 충훈부(忠勳府)에서 신·구 공신(新舊功臣)의 상회연(相會宴)을 간략하게 행할 때에 법은(法醞)5483 을 내리시는 천은(天恩)을 입어 신들은 지극히 감격스러움을 금할 수 없기에 삼가 전문을 올려 사례를 드립니다. (후략)</p>	<p>鰲城府院君 李恒福、全陽府院君 柳永慶： 於某年月日，略行新舊功臣相會宴于忠勳府。 伏蒙天恩，宣賜法醞，臣等不勝感激之至。</p>

<p>올린 전문</p> <p>303. 선조 187권, 38년(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5월 15일(무자) 3번째기사 상이 변방의 대비에 관해 유영경·기자현·박승중·홍식·성이문 등과 논의하다</p>	<p>(전략) 영경은 아뢰기를, “서방은 인삼(人蔘) 한 가지 일 때문에 민력(民力)이 곤궁해진 것입니다. 해사(該司)에서 늘 걱정은 하고 있으나 좋은 방도가 없습니다. 중원(中原)에서 인삼이 귀해진 뒤로 백성들이 더욱 곤궁해 졌습니다.” (후략)</p>	<p>(전략) 永慶曰：“西方以人蔘一事，民力困矣。該司雖常軫念，而無善策。中原人蔘貴後，民益困矣。” (후략)</p>
<p>304. 선조 188권, 38년(1605 을사 / 명 만력(萬曆) 33년) 6월 1일(갑진) 2번째기사 상이 선 유격을 남별궁의 관소에서 접견하다</p>	<p>(전략) 상이 다례(茶禮) 행하기를 청하자, 유격이 대단히 감사하다고 답하였다. 차 한 잔씩을 마시고 나서 풍악이 울리고 연희(演戲)가 시작되었다. 상이 친히 유격에게 나아가 잔을 들고 마시기를 청하자 유격이 잔을 들어 마셨는데 이렇게 하기를 두 번 하였다. 유격이 또 상에게 나아가 잔을 들고 청하자, 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르니, 유격이 말하기를, “이 예를 행해야만 저의 정성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존명을 어기기 어려워 감히 마시겠소이다.” 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두 번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리에 오르시기를 청하외다.” 하니, 역관(譯官) 이 유격 앞에 무릎을 꿇고 연희 석상에 나아가기를 청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차를 마신데다가 또 술까지 들었는데 다시 연희까지 베풀어주시다니, 상의 옥체가 너무 피로하실까 깊이 우려됩니다. 사양했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작은 정성이나마 다 표현할 길이 없소이다.”</p>	<p>(전략) 上請茶禮，遊擊答曰：“多謝。”進茶一鍾訖，樂作陳戲。上親詣遊擊前，執盃以請，遊擊捧飲。如是者再，遊擊又詣上前，執盃以請，上曰：“不堪。”遊擊曰：“必行此禮，乃表我誠。”上曰：“重違尊命，敢飲。”如是者再訖。上曰：“請上坐。”譯官跪遊擊前，請進宴卓，遊擊曰：“既飲茶，又飲酒，而又進宴，深恐上體多勞，願辭。”上曰：“不如是，無以展盡微誠矣。”遊擊曰：“惟命。”上與遊擊，行一酌訖，遊擊曰：“醉飽既多，情禮且極，願辭。”上曰：“豈有此禮？”又請進杯，遊擊曰：“諾。”又行一酌訖。遊擊又曰：“日朝聞，國王來到，不朝食而久坐。王亦氣體纔平，而多</p>

	<p>하자, 유격이 분부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상이 유격과 함께 한 잔의 술을 마셨다. 유격이 말하기를, “이미 취하도록 많이 먹었고 또 정례(情禮)가 극진하셨으니 하직할까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이런 예가 있겠소이까.”</p> <p>하고, 또 잔 들기를 청하자, 유격이 좋다고 하였다. 이에 또 한 잔씩 마시고 나서 유격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국왕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국왕께서도 기체(氣體)가 조금 평안해지시자마자 수고로이 움직이심이 많이 있게 되니 마음 속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한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으니, 하직할까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 대인을 보고 깊이 나의 정을 다하려 하였는데 이 정도에서 그친다면 어찌 섭섭하지 않겠소이까.”</p> <p>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그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p> <p>하였다. 또 한 잔씩 술을 마시고 나서 유격이 은자(銀子) 2냥을 꺼내어 공인(工人)들에게 주었다. 유격이 말하기를, “이미 많이 마셨으니 하직할까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씀대로 하겠소이다.”</p> <p>하였다. (후략)</p>	<p>有勞動，心裏未安。且飲高酒，了不得願辭。”上曰：“初見大人，深欲盡情，止此便止，於予心寧無缺然乎？”遊擊曰：“惟命。”又行一酌訖，遊擊出銀子二兩，給工人輩。遊擊曰：“既多飲，願辭。”上曰：“唯命。”(후략)</p>
<p>305. 선조 188권, 38년(1605 을사 / 명 만</p>	<p>(전략) 상이 차를 들기를 권하였다. 차를 다 마시자 또 과일을 들기를 청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p>	<p>(전략) 上請進茶。進茶訖，又進果盤。遊擊曰：“俺初來之時，曾無相見</p>

<p>력(萬曆) 33년) 6월 1일(갑진) 3번째기사 선 유격이 회사하니 상이 시어소에서 접견하다</p>	<p>“제가 처음 올 때에는 상견한다는 말이 일찍이 없었는데 이제 국왕의 접대를 받고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초엔 내일 남하(南下)하려고 하였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 4일에 출발할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너무 더우니 여행 길이 무척 고될 것이외다. 대인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하였다. (후략)</p>	<p>之語，而今承國王之接，多謝。初欲明日南下，而天道劇熱，初四日將欲起身矣。”上曰：“天道甚熱，路上行李多艱。願大人，暫留，以發何如？”遊擊曰：“多謝。”(후략)</p>
<p>306. 선조 195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1월 10일(기묘) 2번째기사 유 유격을 시어소에서 맞이하여 다례를 행하고 예물 단자를 증정하다</p>	<p>유 유격(劉遊擊)이 시어소(時御所)에 도착하니, 상이 중문에 나아가 맞아 편전으로 들게 한 다음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다례를 마친 다음 드디어 서로 마주 서서 읍하였다. 예물 단자를 증정하고, 이어 하직하고 나갔다.</p>	<p>劉遊擊來到時御所，上出迎於中門，引至便殿，遂行茶禮。禮畢，遂相向而揖，贈禮單，因辭出。</p>
<p>307. 선조 195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1월 23일(임진) 2번째기사 삼 정승·관반 이호민·원접사 유근 등과 중국 사신 영접, 북로남왜 방어, 진연, 중삭연</p>	<p>(전략) 상이 이르기를, “사람의 식성(食性)이란 같은 나라의 사람일지라도 서로 같을 수 없는 법인데 더구나 우리 나라와 중국이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조사에게 접대하는 음식물은 반드시 먹을 수 있게 해서 접대해야 한다. 우리의 상차림은 가짓수 많은 것만 예의로 여기고 생숙(生熟)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아서 비린내가 풍기게까지 한다. 조사가 반드시 돌아보지도 않을 터인데 더구나 수저를 대겠는가. 내가 중국 장수를 살펴보건대 모두가 우리 나라의 반찬을 먹지 않는데 내가 수저를 들면 마지 못해 수저를 대는 척만 하니, 서로 접대한다는</p>	<p>(전략) 上曰：“人之食性，雖一國之人不能相同。況我國於中國，豈不相異？天使前所進之物，必使可食可也。我國盤排，以多爲禮，其於生熟，專不致意，使腥臭發聞天使，必不顧視，況爲下著？予見，唐將皆不食我國之饌，予舉箸則不得已略爲下箸，而相接之際，反似不敬矣。”李好閔曰：“前天使時，</p>

등 국사를 논의하다

것이 도리어 불경(不敬)인 듯하였다.”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전번 조사 때에도 하교하시어 음식물의 냄새를 가지고 깊이 경계하신 것을 소신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릇에 대한 일은 이미 마련하여 계품하였거니와, 수저 등에 대해서는 전대로 쓰되 사용원의 사기(沙器) 가운데 자기(磁器) 정도라면 중국인이 반드시 아름답게 여길 것이니 중국의 체양(體樣)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릇은 체양이 크면 담기는 물건이 너무 많아 냄새가 나게 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사용원 관원이 내려갈 적에 대내(大內)에서 이미 전교하여 일체 중국 그릇의 체양대로 만들라고 일렀었다.”
하였다. (중략) 이호민이 아뢰기를,
“조사가 고천준·최정건보다 나을는지 아니면 그들보다 심할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 수 없으니, 은자는 형편상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 해사(該司)가 소유하고 있는 은자와 인삼으로는 너무 모자랍니다. 지난번 호조의 공사에 의하면 단천(端川)에서 규정 밖의 은자를 더 바치도록 할 것을 청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반드시 제때 상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가의 수요가 매년 예상 밖에 발생하고 있으니, 사체에 그다지 해롭지 않다면 형편에 따라 미리 준비하였다가 불시의 수요에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각삼(羊角參)은 10여 두(斗)를 캐어야 겨우 한두 냥(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마련할 수 없고, 명삼(明參)은 작기는 하지만 합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련하기가 꽤 쉽습니다. 이것을 중국인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하니 명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2백 근은 이미 준비시켰다.”

亦有下教，深以飲食之臭爲戒，小臣亦聞之矣。今者器皿之事，曾已磨鍊啓稟，而如匙箸等，則依古爲之，司饗院沙器，如磁器則中原之人必以爲美，若依唐制，精造用之則可矣。大概器皿體大，則所盛之物狼藉有臭矣。”(중략) 李好閔曰：“天使之或賢於顧、崔；或甚於顧、崔，未能預知，銀子勢不得不備，而今者該司所儲銀參，尤甚絕乏。頃日戶曹公事，雖請端川規外銀子，而必不能趁期上納。國家需用，每出於意外，如非甚害於事體，則隨便預備，以應不時需索可也。且聞，羊角參採得十餘斗，僅得一二兩，故未能猝辦。至於明參則雖小參，合而造之，故頗爲易辦，而唐人亦甚好之云，明參所當多備矣。”上曰：“二百斤已令措備矣。”李好閔曰：“此則草參，當用於禮單者也。臣有隱慮之事，《鰲山百戲》乃《大明會典》所錄也，而物力蕩竭，不得爲之。顧、崔亦以此爲言，意頗不快，而其志有所大欲，而不在《鰲山》，故終乃許之矣。今聞，朱之蕃乃知禮之人，若引《會典》而爲言，則未知何以處之也。此非猝辦之

	<p>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이것은 초삼(草參)이므로 예단(禮單)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에게 매우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산 백희(鰲山百戲)가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물력이 탕갈되어 해낼 수 없습니다. 고친준·최정건이 왔을 때도 이 사정을 말하자 꺾 불만스러워하였는데 그는 목적이 더 큰 욕심에 있고 이 오산 백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듣건대 주지번(朱之蕃)은 곧 예를 아는 사람인데 만약 《대명회전》을 인용하여 말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갑자기 준비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해서 난처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후략)</p>	<p>事，恐有臨時難處之患矣。” (후략)</p>
<p>308. 선조 196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2월 12일(신해) 1번째기사 《주역》 건괘를 강론하다. 조사·일본에 사절파견·하늘의 이번·북방 방어·문묘 등 국사를 논의하다</p>	<p>(전략) 권희가 아뢰기를, “감생(監生)이 온다면 당연히 사은(謝恩)의 사절이 있어야 합니다. 진헌할 인삼은 반드시 양각삼(羊角參)으로 하여야 되지만 올해는 행차가 연이어지다 보니 민간의 생산이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중삼(中參)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헌할 물품을 미리 중삼으로 정할 수는 없다. 임시하여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파삼(把參)을 금단하여 일체 쓰지 못하게 하고 부경(赴京) 행차에도 파삼을 가지고 가다가 잡힐 경우에는 중률(重律)로 다스리고자 하는데, 어떨겠는가?” 하니, 황진이 아뢰기를, “전일 파삼을 엄금하였으나 고 태감(高太監)·장겸(張謙) 등 때문에 다시 썼습니다.” 하고, 심희수는 아뢰기를,</p>	<p>(전략) 權煥曰：“監生來則當有謝恩之行矣。進獻人參，必以羊角參爲之，而今年行次連疊，民間已竭，以中參代用何如？”上曰：“進獻之物，不可預以中參定之。臨時爲之可也。”上又曰：“予欲禁斷把參，一切不用。赴京行次，如以把參齎去，而見捉者，欲繩以重律如何？”黃璣曰：“前日嚴禁把參，而因高太監、張謙等，復用之矣。”沈喜壽曰：“甲午、乙未年間，臣在中原聞之，名之曰明參，其價極高，而用之於藥材，則失其本性矣。”上曰：“一切禁斷，慮有妨害之事乎？”金信元曰：“南方之人以明參，能勝瘴氣、禦蟲毒，而求之云。” (후략)</p>

	<p>“갑오년과 을미년 사이에 신이 중국에 있으면서 듣건대, 명삼(明參)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 값이 아주 높으나 약재로 쓰면 본 성분을 잃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일체 금단하면 방해될 일이 있을까 염려되는가?”</p> <p>하니, 김신원이 아뢰기를,</p> <p>“남방 사람들이 명삼이 장기(瘴氣)를 이기고 충독(蟲毒)을 막아준다면 구한다고 합니다.”</p> <p>하였다. (후략)</p>	
<p>309. 선조 198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4월 9일(정미) 7번째기사 예조에서 주례에 관해 보고하다</p>	<p>우승지 송준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p> <p>“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어제 대신에게 수의(收議)하라는 전교에 ‘부사(副使)가 한 잔을 마신 뒤에 잔을 돌리지 않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은 듯하다.’고 하셨는데, 그 분부가 지극히 온당하십니다. 신들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건대, 부사가 개정한 주례(酒禮)는 말이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정사(正使)에게 상께서 먼저 1배(盃)를 행하고 난 다음 부사에게 1배를 행한다. 그 뒤에 바로 정사에게 나아가 중배(中盃)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정사에게 종배례(終盃禮)를 행한다. 그런 다음 부사에게 나아가 상께서 중배를 받은 뒤 종배를 행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부사가 개찬(改撰)한 말중에도 ‘국왕이 잔을 잡고 부사에게 나아가 읊을 하고 술을 올리면, 부사가 답례로 읊하고 잔을 다시 국왕에게 올리는데 모두 상기 의례와 같이 한다. 끝나면 조금 물러가 선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사에게 회배(回盃)하는 한 조목이 분명히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두 상기 의례와 같이 한다.’는 말속에 포함된 듯합니다. 신들의 의견은 이러한데 행주(行酒)하는 대례(大禮)에 관계되기 때문에 황공하오나 감히 아뢰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이 곡절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 잔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은 부사가 첫잔을</p>	<p>右承旨宋駿以禮曹言啓曰：“臣等伏見，昨日收議大臣傳教內：‘副使飲一酌之後，不爲回盃，尤似未穩。’之教，極爲允當。 臣等反覆參商，則副使所改酒禮，語意雖或未瑩，而正使前自上先行一盃，又於副使前次行一盃之後，自上旋就正使前，受中盃，仍於正使前行終盃禮， 又就副使前自上受中盃之後，當有終盃節次。 故，副使改撰之辭有曰：‘國王執盞，就副使前揖進酒，副使答揖，執盞還進于國王，俱如上儀。 訖，小退立。’云。 副使前回盃一節，雖不明錄，而似當包在於俱如上儀之中矣。 臣等謬見如此，緣係行酒大禮，惶恐敢稟。” 傳曰：“此曲折，予已解見之矣。 不爲回盃之言，副使初盃後，卽不爲之之語也。”</p>

	<p>마신 뒤에 즉시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였다.</p>	
<p>310. 선조 198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4월 9일(정미) 8번째기사 예조에서 주례에 관한 대신의 의견을 보고하다</p>	<p>우승지 송준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상께서 ‘중대한 의주(儀註)를 개정하는 일에 대해 마감하지도 않고 경솔하게 무단히 부표(付標)했으니, 어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전에 양천사(梁天使)같은 사람이 없어서 이 주례(酒禮)를 고쳐 놓지 않은 것이겠는가. 그리고 처음에는 증배례를 양사가 일시에 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 부사가 한 잔을 마신 뒤에 회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더욱 온당치 못한 듯싶다.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은 벽제(碧蹄)로 나아가 수의할 수가 없었고, 좌의정 기자헌(奇自獻)과 우의정 심희수(沈喜壽)는 모두 ‘예조로 하여금 급속히 고쳐 마감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삼가 상께서 재결하시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른바 고쳐 마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였다.</p>	<p>右承旨宋駿以禮曹言啓曰：“不小儀註改定之事，不爲磨勘，率爾無端付標，豈可如是處之？自前豈無如梁天使者，而未嘗改此酒禮？且初意，中盃禮兩使一時行之，今更見，副使飲一爵之後，不爲回盃，尤似未穩。更議于大臣以啓。”事，傳教矣。議于大臣，則領議政柳永慶，碧蹄進去，未得獻議，左議政奇自獻、右議政沈喜壽皆以爲：“令禮曹，急速改磨勘爲當。伏惟上裁。”大臣之意如此，何以爲之？敢稟。”傳曰：“所謂改磨勘之語，何言乎？”</p>
<p>311. 선조 198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4월 9일(정미) 9번째기사 주례에 관한 문제는 예조 당상과 대신을 불러 수의할 것을 우승지 송준이 건의하다</p>	<p>우승지 송준이 아뢰기를, “주례(酒禮)에 대한 한 조목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 아직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해조로 하여금 대신에게 수의하도록 한 뒤에 결정한다면 필시 지체될 것이고, 문례관(問禮官)이 제때에 회보(回報)하지 않으면 조사(詔使)가 성을 내며 의아해 할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예조 당상 및 대신을 즉각 명초(命招)하여 수의해서 결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예조의 초기(草記) 말단에 고쳐 마감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뜻이나</p>	<p>右承旨宋駿啓曰：“酒禮一款定奪事，尙未結末。今若又令該曹，收議大臣後停當，則必至遲緩，問禮官趁未回報，則詔使不無嗔怪之患。請禮曹堂上及大臣，卽刻命招，收議定奪。”傳曰：“禮曹草記末端，有改磨勘之語，故問之。何如是以不襯着之言，啓之耶？其草記，何以送于禮曹乎？”</p>

	고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처럼 긴요치 않은 말로 아뢰단 말인가. 그 초기는 무엇 때문에 예조에 보냈는가?” 하였다.	
312. 선조 198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4월 10일(무신) 7번째기사 예조에서 하마연의 의주에 관해 보고하다	우승지 송준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하마연 의주에 상과 조사에게 제조(提調)와 제거(提舉)가 모두 무릎을 꿇고 과반(果盤)을 올리는 것으로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사가 개정할 때에 모두 꿇(跪)자를 없앴기 때문에 부사가 고친 대로 써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삼가 살피건대 다례(茶禮)의 경우에는 제거가 각기 무릎을 꿇고 조사에게 과일을 올리며 제조가 무릎을 꿇고 어전(御前)에 과일을 올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때의 꿇자는 부사가 고치지 않았습니다. 주례와 다례는 같은 것인데 고치기도 하고 고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해야 할 듯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연히 똑같이 해야 한다. 모두 무릎을 꿇는 것으로 하라.” 하였다.	右承旨宋駿以禮曹言啓曰：“下馬宴儀註中，自上與詔使前，提調、提舉俱以跪進果盤爲磨鍊，而副使改定時，并無跪字，故依副使所改，書入矣。但伏見，茶禮則提舉各跪進果于詔使；提調跪進果于御前云，而此跪字則副使不改。酒禮、茶禮一樣，而或改，或不改，似當一體，何以爲之？敢稟。”傳曰：“自當一體皆跪。”
313. 선조 198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4월 18일(병진) 3번째기사 남별궁에서 중국 사신에게 다례를 행하다. 작별하고 궁으로 돌아오다. 왕세자가 문안하다	사시에 상이 남별궁으로 거동하여 막차에 들어갔다. 상이 대청(大廳)에 들어가 양사(兩使)와 마주 서서 배례하기를 청하니, 중국 사신이 수고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읊을 하였다. 상이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음악을 연주하였다. 상이 중국 사신에게 말하기를, “황은이 망극한데 이번에 또 조칙을 반포하셨습니다. 조용히 모시고 싶었는데 내일 떠나신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잠두(蠶頭)는 우리나라의 명승지로 예전부터 이곳에 오신 대인들치고 가서 보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하루쯤 더 머무르신다면 우리나라의 인심을 위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강산도 광채를 입게 될 것입니다.” (후략)	巳時，上幸南別宮，入幕次。上入大廳，與兩使對立，請拜，天使曰：“願不勞。”乃作揖。上行茶禮，樂作。上告于天使曰：“皇恩罔極，今又頒詔。願得從容陪奉，發行在明云，不勝缺然。蠶頭乃弊國勝地，自前大人來東者，無不往觀。願留一日，則可以慰東方之人心，而江山亦有光彩矣。”(후략)
314. 선조 199권, 39년(1606 병오 / 명 만	예조의 성모(聖母)에게 존호를 올린 데 대해 진하하는 예물을 마련한 계목으로 좌부승지 최염(崔濂)에게 전교하였다.	以禮曹聖母加上尊號進賀禮物磨鍊啓目，傳于左副承旨崔濂曰：“方物人參，

<p>력(萬曆) 34년) 5월 19일(병술) 2번째기사 성모에게 존호를 올린 후 진하서의 예물에 인삼이 쓰였는지 조사 하라고 전교하다</p>	<p>“방물(方物)에 인삼(人蔘)을 쓰지 않았는데 전례에는 썼는지 상고하여 아뢰라.”</p>	<p>不爲前例爲之乎? 考啓。”</p>
<p>315. 선조 201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7월 19일(병술) 3번째기사 호조에서 동지의 예물 인삼 준비에 관해 아뢰다</p>	<p>호조가 아뢰기를, “동지(冬至)의 예물 중 인삼이 준비 안 된 수량이 무려 40근이나 됩니다. 평안도에서 미납한 공삼(貢蔘)은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납품하라고 독촉하여 저자 백성만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금년에 각 행차마다 가지고 갈 인삼이 몇 백근이나 될지 모르는데 모두 저자 백성한테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목은 인삼이 바닥이 나고 새 인삼이 생산되지 않고 있으므로 아무리 비싼 값을 준다고 할지라도 구해 드릴 길이 없다고 관아 뜰에 가득히 나와 호소하고 있어 차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동지사행의 시기에 임하여 40근이나 되는 많은 인삼을 서울의 저자에만 독촉하고 있으므로 마련해 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원망 또한 심합니다. 개성부는 장사치 수가 많아 서울보다 뒤지지 않는데 인삼 장수는 더욱 많습니다. 힘을 합하여 모집한다면 사들일 길이 있을 것입니다. 물건 값은 서울에서 무역하는 예에 따라 본조(本曹)에서 제급(題給)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잘 아는 산원(算員)을 별도로 정하여 말을 주어 내려 보내 공삼 15근을 기한 안에 사들여 올려 보내라고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p>	<p>戶曹啓曰: “冬至禮物人蔘未準之數, 多至於四十斤。 平安道未納貢蔘, 已無可望, 逐日督納, 只責市民。 今年各行次封進之蔘, 不知其幾百斤, 而皆出於市民。 今則舊蔘絕乏, 新蔘未產, 雖給重價, 覓納無路, 盈庭號訴, 不忍聽聞。 當此背節之日, 許多四十斤之蔘, 獨侵京市, 非徒辦出爲難, 稱冤亦極。 開城府商賈之多, 不下於京城, 而蔘商尤多, 合力募聚, 庶有購得之路。 價物則依京城貿易例, 自本曹可以題給, 別定事知算員, 給馬下送, 貢蔘十五斤, 及期(質) [質] 易上送事, 下諭何如?” 傳曰: “允。”</p>
<p>316. 선조 203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9월 6</p>	<p>예조가 아뢰기를, “진헌(進獻)하는 예물에는 본디 항식(恒式)이 있으나, 난리를 겪은 이래 물력(物力)이 고갈되어 한결같이 횡간(橫看)대로 하지 못하니, 매우 미안합니다.</p>	<p>禮曹啓曰: “進獻禮物, 自有恒式, 而經亂以來, 物力板蕩, 不得一依橫看, 其爲未安極矣。 今次謝恩禮物, 則議</p>

<p>일(임신) 2번째기사 진헌 예물은 횡간 대 로 옛 규례에 따라 거 행하다</p>	<p>이번 사은(謝恩) 때의 예물은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병오년의 전례에 따라 마련하되 그 가운데서 어전 인삼(御前人蔘)은 70근 중 20근을 줄이고 잡색마(雜色馬)는 10필(匹)에서 10필을 더하기로 결정하여 계품(啓稟)해서 윤희받았으므로 본조(本曹)는 부득이 이에 따라 서계(書啓)하였습니다. 사세가 궁박한 데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횡간보다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제 성교(聖敎)를 받으니 황공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이 뒤로 진헌하는 예물은 한결같이 옛 규례에 따르는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어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5. 다만 이제 내려진 서계 단자(書啓單子)에는 계(啓)자를 찍지 않으셨으니, 어찌 해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이것은 판부(判付)이므로 이두(吏讀)를 썼는데, 승지가 살피지 못하여 비망기로 생각하고 예조에 전한 것이다.” 하였다.</p>	<p>大臣定奪，依丙午年例磨鍊，而其中，御前人蔘七十斤內，減二十斤，雜色馬十匹則加十匹，啓稟蒙允，本曹不得已依此書啓。雖出於事勢之窘急，而其於橫看，則欠缺多矣。今承聖敎，不勝惶懼。今後進獻禮物，則一依舊規事，捧承傳舉行爲當。但今下書啓單子，不踏啓字，何以爲之？敢稟。”傳曰：“允。此乃判付，故用吏讀。承旨不察，視爲備忘，傳于禮曹矣。”</p>
<p>317. 선조 203권, 39 년(1606 병오 / 명 만 력(萬曆) 34년) 9월 28일(갑오) 2번째기사 회답사의 원역과 예물 의 수목을 왕래한 자 에게 물어 시행하게 하다</p>	<p>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일본국 회답사(日本國回答使) 일행의 원역(員役)과 예물(禮物) 등에 관한 일은 전례가 있는가? 다녀온 사람에게 물어서 할 것인가, 무엇에 의거하여 할 것인가?’ 하셨습니다. 회답사의 원역과 물건은 의거할 만한 문적(文籍)의 전례가 없으므로 경인년(5703)에 다녀온 사람에게 물었더니, 원역과 물건은 대개 이러하였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목(數目)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한 다음 증감하여 마련해서 아뢰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원역의 수는 알 수 없다마는, 예물은 그 가운데에 아다개(阿多介), 안자(鞍子), 해송자(海松子), 청사피(靑斜皮)가 있었던 듯한데 이것은 기억이 난다. 인삼도 있었을 듯하나 분명하지 못하니, 전에 왕래한 사람에게 다시 물어서 참작하여 시행하라.”</p>	<p>禮曹啓曰：“傳曰：‘日本回答使一行員役及禮物等事，前例乎？問于往還人處爲之乎？何所據而爲之乎？’事，傳敎矣。回答使員役物件，無文籍前例之可據，問于庚寅年往還人處，則員役物件，大概如此云。故，將此數目，大臣處同議增減磨鍊以啓矣。敢啓。”傳曰：“員役數則未能知之，但禮物則其中似有阿多介、鞍子、海松子、靑斜皮，此則記得。人蔘亦疑其有之，而未能分明，更問于曾爲往來人，參酌施行。”</p>

<p>318. 선조 203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9월 29일(을미) 3번째기사 《왜정비람》을 참조하여 마련한 사행의 물목과 내용을 아뢰다</p>	<p>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아다개, 해송자, 안자, 청사피, 인삼이 경인년의 물목(物目) 가운데에 있었는지를 그때의 사신에게 물었더니, 안자·해송자·청사피·인삼은 가져간 듯하나 아다개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변사에 《왜정비람(倭情備覽)》 한 책이 있는데 곧 예전에 사세용(史世用)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 책에 경인년 예물의 수목이 있는데 ‘호마(好馬) 2필(匹), 대응자(大鷹子) 15련(連), 백면주(白綿紬) 50필, 아다개 1갑(匣), 백미(白米) 2백 석(石), 해투자(海套子) 6석, 청밀(淸蜜) 11호(壺), 인삼 1백 근(斤), 청사피 10장(張), 흑마포(黑麻布) 30필, 백저포(白苧布) 50필, 안(鞍) 2면(面), 채화석(彩花席) 10장, 시피심(豺皮心), 아호피변(兒虎皮邊), 전피(狢皮) 25장……’이라 하였습니다. 해투자는 해송자인 듯합니다. 신들이 마련할 때에도 이 책을 가져다 보았는데, 안자는 그때 그들이 말을 바친 일이 있으므로 회례(回禮)에도 말이 있었던 듯하나 안자는 말에 갖추어 있으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해송자는 일본이 으레 청구하는 물건인 줄이나 근래 외방(外方)의 해송자가 나는 곳에서 전혀 열매가 맺지 않았으므로 장만하기 어려울까 염려되어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아다개·청사피와 그 밖에도 그 책에 실려 있는 물목이 많기는 하나, 사체(事體)가 그때와는 다르고 호피(虎皮)·표피(豹皮)·황밀(黃蜜)은 또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에서 뽑고 보태어 대입(代入)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뜻도 그러하므로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또 백미는 필시 그때의 사신 일행이 가져간 것인데 예물 가운데에 섞여 적혔을 것입니다. 위의 아다개, 안자, 해송자, 청사피 따위 물건을 더 넣어 마련할 것인지를 감히 여쭙니다. 사세용의 책자에 적힌 것은 전교하신 것이 아니나 마련할 때의 곡절이 이러하므로 아울러 감히 아뢴니다.”</p>	<p>禮曹啓曰：“阿多介、海松子、鞍子、靑斜皮、人參，庚寅年物目中有無與否，問于其時使臣，則鞍子、海松子、靑斜皮、人參，似爲持去，而阿多介不能省得云矣。備邊司有《倭情備覽》一冊，乃昔年史世用所持來者也。其冊有庚寅年禮物數目，好馬二匹、大鷹子十五連、白綿紬五十四、阿多介一匣、白米二百石、海套子六石、淸蜜十一壺、人參一百斤、靑斜皮十張、黑麻布三十四、白苧布五十四、鞍二面、彩花席十張、豺皮心、兒虎皮邊、狢皮二十五張云云。海套子，似是海松子也。臣等於磨鍊時，亦取見此冊，而鞍子則似是其時，因渠輩有獻馬之事，故回禮亦有馬匹，而鞍子係於馬匹，故不爲磨鍊。海松子則知其例爲日本求請之物，而近來，外方海松子所產之地，全不結實，慮或難備，不爲磨鍊，阿多介、靑斜皮及他餘，其冊所載物目雖夥，事體或與其時有間，而虎皮、豹皮、黃蜜等物，亦是渠輩所求，茲就其中，抽添代入，議于大臣，則大臣之意亦然。故，如是磨鍊矣。且如</p>
--	--	--

	<p>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보낸 것으로 생각나는 물건을 말하였을 뿐이다. 어찌 정규(定規)가 있었겠는가. 이대로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p>	<p>白米則必是其時使臣一行持去之物，而混錄於禮物之中矣。 上項阿多介、鞍子、海松子、靑斜皮等物， 添入磨鍊乎？ 敢稟。 史世用冊子所錄， 非傳教所及， 而磨鍊時曲折如此， 故竝此敢啓。” 傳曰：“只言前時所送憶得之物而已， 何嘗有定規？ 依此磨鍊可矣。”</p>
<p>319. 선조 204권, 39년(1606 병오 / 명 만력(萬曆) 34년) 10월 9일(갑진) 2번째기사 마련한 예물을 용도와 필요성에 따라 줄이다</p>	<p>예조가 아뢰기를, “물건은 모두 전례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나 전례라는 것이 명문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또 사세용이 적은 것에 의거하여 마련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일곱 가지는 이미 마련하였고 일곱 가지 외에 호표피(虎豹皮)·백지(白紙)·황밀(黃蜜) 따위 물건을 더하였습니다. 그밖의 일곱 가지는 백미(白米)·해송자(海松子)·아다개(阿多介)·안자(鞍子)·호마(好馬)·대응자(大鷹子)·시피심(豺皮心)·아호피변(兒虎皮邊)·전피(狝皮)인데, 백미·호마·안자는 주는 것이 형세가 온편하지 않을 듯하고 아다개는 또한 외사(外司)가 보통으로 비축하는 것이 아니고 전피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으며 다만 대응자·해송자가 있을 뿐인데 평소에 저들이 청구하는 것인 듯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응자는 그때 사신이 가져가서 인정(人情)에 쓴 것이므로 예물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해송자는 한 가지 실과(實果)일 뿐인데 예물에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듯하다. 전에 마련한 것 가운데에 더 추가할 물건이 없을 듯하니, 전에 마련한 것대로 조치하여도 무방하다.’ 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p>	<p>禮曹啓曰：“物件所當一依前例磨鍊，而所謂前例者，無明文。 不得已又將就史世用所錄磨鍊，而其中七種，則已爲磨鍊， 七種之外， 添以虎豹皮、白紙、黃(密) [蜜] 等物。 其餘九種則乃白米、海松子、阿多介、鞍子、好馬、大鷹子、豺皮心、兒虎皮邊、狝皮，而白米、好馬、鞍子則贈給勢似非便， 阿多介則亦非外司尋常貯備， 狝皮未詳是何物。 只有大鷹子、海松子，似爲平日渠所求請，而議于大臣，則鷹子， 必是當時使臣持去， 用於人情者，非關於禮物， 海松子則只以一色實果，用於禮物， 亦似不穩。 前磨鍊中， 似無加備之物， 依前磨鍊措置不妨云， 何以爲之？ 敢稟。” 傳曰：“允。”</p>
<p>320. 선조 204권, 39년(1606 병오 / 명 만</p>	<p>좌승지 이형욱(李馨郁)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회답사(回答使) 일행의 일들 중에서 미진한 조항을 뒤미처 마련하여 아될 것</p>	<p>左承旨李馨郁以禮曹言啓曰：“回答使一行諸事未盡條件， 追後磨鍊啓聞事，</p>

<p>력(萬曆) 34년) 10월 20일(을묘) 2번째기사 사행이 쓸 잡물과 예물을 전례대로 하고 원역들에게 군직을 주다</p>	<p>을 윤택하셨습니다. 경인년에 다녀온 사람에게서 다시 듣건대, 대마 도주와 대마도의 수직인(受職人)에게는 주는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평시의 규례가 이미 이러하였으면 이번에도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또 사신이 가져가는 군량과 일로(一路)에서 쓸 잡물과 잣·호두·황률·대추·곶감·꿀 따위 같은 물건은 하삼도(下三道)에서 장만한 다음 차사원을 정하여 포소(浦所)에서 넘겨주었다고 하고 붓·먹·부채·모자·우구(雨具)는 해사와 경상도에서 또한 장만하여 주었다 하는데 이번에도 마땅히 호조로 하여금 이에 따라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일행의 군관(軍官)·자제(子弟)·통사(通事) 이상은 각각 노자(奴子) 한 명을 데려갔고 그 원역(員役)들은 다 군직(軍職)을 주고 무직인(武職人)에게는 요미(料米)를 주고 임시로 사모(紗帽)를 쓰게 하였다 하는데, 이 전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윤택한다. 군관 이하가 노자를 데려가도 괜찮겠다. 그러나 범람하고 간사한 모리배와 증적이 분명하지 않은 무리는 일체 데려가는 것을 허가하지 말고서 간략하게 다녀오게 하라.”</p> <p>하였다.</p>	<p>允下矣。 因庚寅年往來之人， 更爲聞見則對馬島主及對馬島受職人， 有贈給物件。 議于大臣， 則平時之規既如此。 今亦似不可不爲云， 何以爲之？ 且使臣持去軍糧， 一路行用雜物及海松子、胡桃、黃栗、大棗、乾柿子、清蜜等物， 下三道措備， 差使員別定， 浦所交付， 筆、墨、扇、帽、雨具， 該司及慶尙道亦爲措給云， 今亦似當令戶曹， 依此磨鍊矣。 一行軍官、子弟、通事以上， 奴子各一名帶去， 其員役等皆軍職， 無職人則給料， 權着紗帽云， 依此例施行何如？” 傳曰：“允。 軍官以下奴子不管帶去。 泛濫奸細牟利之輩； 蹤迹不明之徒， 一切勿許帶行， 簡約往來。”</p>
<p>321. 선조 208권, 40년(1607 정미 / 명 만력(萬曆) 35년) 2월 19일(임자) 1번째기사 북방의 동태, 일본의 서계에 대한 회답, 사치풍조 등에 대해 논의하다</p>	<p>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주역(周易)》의 해괘(解卦)를 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남쪽과 북쪽에 대적(大敵)을 맞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역사를 크게 일으키고 있으니, 가련한 것은 백성이 아니겠는가. 노을가적(老乙可赤)이 스스로 왕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조짐이 자못 흉악하다. 평안도는 내가 일찍이 보건대, 탄탄대로인데다 천연의 요새가 천연 없었다. 그리고 인삼의 공납 때문에 주민들이 떠나 텅 비었으니, 급한 변이 있게 될 경우 누구와 함께 지키겠는가. 노을가적이 강변(江邊)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필시 우리의</p>	<p>壬子/上御別殿， 講《周易》解卦。 [上曰]：“方今南北有大敵， 域中興大役， 可哀非民乎？ 老乙可赤自稱王號， 其漸頗兇。 平安道則予嘗見之， 坦然大道， 小無天險。 且緣貢參， 而居民一空， 雖有警急， 孰與守之？ 老乙可赤距江邊不遠， 彼必覘我強弱虛實。 若以萬餘兵， 長驅入境， 其鋒不可當。</p>

	<p>강약(強弱)과 허실(虛實)을 엿보고 있을 것이다. 만일 만여 명의 병력으로 경내에 밀어닥친다면 그 기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너무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p> <p>사신은 논한다. 임금이 이처럼 좋은 말을 하는데도 밑에서 깨우쳐 이끌어줄 신하가 없으니 애석하다.</p> <p>하고, 또 이르기를,</p> <p>“인삼을 바치게 하는 폐단이 크기도 하다. 한낱 풀뿌리에 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처럼 백성을 잃는 잘못을 가져왔으니 마음이 아프다.”</p> <p>하였다. (후략)</p>	<p>此非可虞之甚者乎?”</p> <p>【史臣曰：“人君發此善言，下無開導之臣，惜哉!”】</p> <p>又曰：“參之弊，大哉! 不過一草根，而致此失民之患，痛矣!” (후략)</p>
<p>322. 선조 211권, 40년(1607 정미 / 명 만력(萬曆) 35년) 5월 2일(갑자) 4번째기사</p> <p>인삼 방납의 폐해에 관해 호조에서 상소하다</p>	<p>호조가 아뢰기를,</p> <p>“인삼에 관한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납하는 백성들은 이 때문에 흩어지고, 방납(防納)하는 무리들은 이익을 만 배나 얻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헤아려 변통하여 새로 삼을 무역하는 규정을 세워서 거의 전일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방납하는 삼상(蔘商)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큰 이익을 잃게 되자 한없이 원망하고 분노하여 갖가지 계책으로 방해하고 험뜯으니, 그 정상이 매우 밍습니다. 평시서(平市署)의 관원이 삼상 약간 명을 거느리고 와 가포(價布)를 이미 받아갔는데도 오부(五部)의 관원은 삼상들이 모두 도망하였다고 핑계하면서 데리고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부(中部)·서부(西部)는 도리어 만홀(慢忽)한 말을 하니 그지없이 놀랍습니다. 경외(京外)의 삼상들은 모두 세력가에 의지하여 이익을 노리는 부유한 사람들이니 어찌 하루아침에 다 도망하여 흩어졌겠습니까. 중부와 서부의 관원을 우선 추고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p>	<p>戶曹啓曰：“人參一事，貢參之民，因此流散；防納之輩，獲利萬倍。今者朝廷，參量變通，新立貿參之規，庶可除前日之弊，而參商防納之輩，一朝失其重利，群怒衆怨，無所不至，百計欲沮毀，其情極爲痛甚。平市官員率領參商若干人，價布已卽受去，而五部官員，則托以參商盡逃，無意率來。而中部、西部，則反發慢忽之語，尤極駭愕。大概京外參商，皆藉勢牟利富實之人，豈至於一朝盡爲逃散乎？中部、西部官員，爲先推考，以警其餘。何如？”傳曰：“允。”</p>
<p>323. 선조 219권, 40년(1607 정미 / 명 만</p>	<p>전교하였다.</p> <p>“사탕원(砂糖元)을 들이자마자 또 사미다(四味茶)를 청하니 내일은 또 무슨</p>	<p>傳曰：“纔入砂糖元，又請四味茶，明日則又將啓何藥、何茶耶？醫官中，許</p>

<p>력(萬曆) 35년) 12월 3일(신유) 6번째기사 약을 신중히 의논해 들이라 전교하다</p>	<p>약과 무슨 차를 계칭하려고 하는가. 의관(醫官) 중에 허준(許浚)은 실로 의술 에 밝은 양의(良醫)인데 약을 쓰는 것이 경솔해 신중하지 못하다. 이러한 뜻 을 알고서 처방하지 않아선 안 된다.”</p>	<p>浚固善醫術良醫，而用藥輕浮，不爲持 重，此意不可不知而處之。”</p>
--	---	--

2. 광해군 일기 기사 자료집

광해군일기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광해 1권, 즉위년 (1608 무신 / 명 만력 (萬曆) 36년) 2월 1일 (무오) 4번째기사	미시에 찹쌀밥을 진어했는데 상이 갑자기 기(氣)가 막히는 병이 발생하여 위급한 상태가 되었다.	未時, 上, 進糯米飯, 猝患氣窒危急。
광해 1권, 즉위년 (1608 무신 / 명 만력 (萬曆) 36년) 2월 1일 (무오) 8번째기사	약방이 강즙(薑汁)·죽력(竹瀝)·도담탕(導痰湯)·용뇌(龍腦)·소합원(蘇合元)·개관산(開關散)을 올렸다.	藥房進薑汁、竹瀝、導痰湯、龍腦蘇合元、開關散。
광해 4권, 즉위년 (1608 무신 / 명 만력 (萬曆) 36년) 5월 28 일(계축) 3번째기사	〈가뭄이 너무 심하여〉 세 번째 기우제를 지냈다.	旱太甚, 三行祈雨。
광해 5권, 즉위년 (1608 무신 / 명 만력 (萬曆) 36년) 6월 11 일(병인) 2번째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오늘 노제(路祭)를 지내는 곳에서 의정(議政)으로 진향 헌관(進香獻官)을 삼았는데 향실 정자(香室正字)가 지레 잘못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이름으로 써넣었습니다. 그런데 대축(大祝)이 헌관의 이름은 비워두는 규정을 살피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받아들인 바람에 당시에 난처한 상황이 되어 지우고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영악(靈輦)의 행차가 지연되었으니, 저들의 불경	兩司啓曰: “今日路祭所, 議政爲進香獻官, 而香室正字, 誤以領議政李元翼之名, 徑自書填於祝文, 而大祝不察獻官空名之規, 矇然受來, 致令臨時窘迫, 而擦去改書。靈輦之行, 以此留滯, 其不敬之罪極矣。請香室正字拿

	<p>스런 죄가 참으로 큼니다. 향실 정자는 잡아다 국문하고, 대축은 파직시키소서.</p> <p>오늘 노제(路祭)를 지낸 곳에서 제사 음식을 철거할 때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각사(各司)의 하인과 군인 등이 영악에 난입하여 제사 음식을 차지하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니, 내관(內官)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군인들에게 주자 각사의 하인들이 그릇을 밀어서 그리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악은 음식을 나누는 장소가 아닌데 하인들로 하여금 공공연히 소란을 피우게 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차지내관(次知內官)은 잡아다 국문하고, 주동한 하인은 유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내관의 일은 반우(返虞)가 지난 뒤에 잡아다 국문토록 하라.” 하였다.</p>	<p>鞫，大祝罷職。今日路祭所祭饌撤去之時，各司下人及軍人等，攔入靈幄，不知其數，爭攫祭饌，成一戰場。問其所由，則內官以其饌，分饋於軍人，而各司下人，推其器皿。靈幄，非分饌之所，致令下人，公然作挈，極爲駭愕。請次知內官拿鞫，首僕令攸司推考。” 答曰：“依啓。內官事，返虞後拿鞫。”</p>
<p>광해 5권, 즉위년 (1608 무신 / 명 만력 (萬曆) 36년) 6월 15 일(경오) 9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기를, “차관을 접대할 은(銀)과 삼(蔘)이 현재 해사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분호조(分戶曹)에 사둔 은 5천 냥과 삼 3백5십 근이 있고, 이외에 쌀과 베가 있기는 하나 수일 안에 바꾸기는 형세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종친·문무백관·삼의사(三醫司)·방민(坊民)들을 등급으로 나누어 은을 건도록 하여 긴급한 용도로 쓰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2품 이상은 2냥, 4품 이상은 1냥, 6품 이상은 5전(錢), 참하관(參下官)은 3전, 전함관(前銜官)과 사족(士族)은 2전, 민호(民戶)는 각 1전, 감사·병사·수사는 5냥, 주(州)·부(府)는 4냥, 군(郡)은 3냥, 현(縣)은 2냥이다.】</p>	<p>戶曹啓曰：“差官接待銀、蔘，該司則時無遺儲。分戶曹有貿銀五千兩，蔘三百五十斤，此外雖有米布，數日內勢難貿換。宗親、文武百官及士族、三醫司、坊民處，分等取銀，以爲救急之用。” 王，從之。【二品以上二兩，四品以上一兩，六品以上五錢，蔘下三錢，前銜官及士族三錢，民戶各一錢，監兵、水使五兩，州府四兩，郡三兩，縣二兩。】</p>
<p>광해 6권, 즉위년 (1608 무신 / 명 만력</p>	<p>별도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p>	<p>甲午別行祈雨祭。</p>

<p>(萬曆) 36년) 7월 10 일(갑오) 1번째기사</p>		
<p>광해 8권, 즉위년 (1608 무신 / 명 만력 (萬曆) 36년) 9월 13 일(정유) 2번째기사</p>	<p>사간원이 아뢰기를, “불운 비답은 신요(申饒)가 지었으니 곧 성상이 처음 즉위한 때였습니다. 운 음이라고 거짓으로 핑계대고 흥쾌스럽게 쓴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차마 보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신요가 제진한 불운 비답을 빨리 환수하라고 명하 소서. 난리를 치른 이후로 민생의 곤궁함이 평상시보다 10배나 되는데도, 지방의 감영과 병영에서 받아들이는 명목 없는 공물과 정한 액수 이외의 징수가 날 마다 점점 늘어나서 갖가지로 침해하니,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뼈를 깎이고 골수를 맞는 듯하여 앞으로 스스로를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영 (京營)에서 받아들이는 종이·쌀·밀가루 등의 물건으로 말하여 보겠습니다. 1년 에 바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4천여 권이나 되는데, 응당 바쳐야 되는 각 고을은 스스로 바치지 못하고, 서울의 사대부와 시정의 모리배들이 연줄을 대 고 청탁하여 본읍의 진성(陳省)을 기다리지도 않고 사사로이 영문(營門)에 직 접 바칩니다. 권수(卷數)를 따져 각 고을의 전결에서 쌀을 징수하여, 한 권의 값이 많게는 혹 16말에 이르기도 하며 적어도 5, 6말에 밀돌지 않습니다. 평 상시에 있어서 영문의 지공은 단지 검률(檢律)·심약(審藥)·영리(營吏) 등의 요 미(料米)에 있었는데, 난리 뒤에는 반찬값이라고 핑계대고 각 고을의 감사·도 사의 집이 나누어 징수하여, 한 달에 받아들이는 쌀이 여섯 섬에 이르기까지 합 니다. 이 밖에 또 구사(久史)의 급료로 주는 쌀이 있어서 달마다 징수하여 받 아들이니, 이는 정한 액수 이외의 명목없는 지공이어서 지극히 무리한 일입니 다. 지금 이후로는 영중(營中)에 일 년 동안 쓸 공사지(公事紙) 약간 권과 일 년 동안 지급할 급료미(給料米) 약간 섬을 해조에서 참작하여 정하고, 공문을 보내어 시행하게 하소서. 그 나머지 액수 이외에 함부로 거두는 종이와 쌀·밀</p>	<p>司諫院啓曰：“不允批答，申饒所製，乃在聖上即位之初也。假托綸音，措語兇悖，不一而足，有不忍見者。請申饒製進不允批答，亟命還收。亂離以後，民生之困，十倍平時，而外方監、兵營無名之供，數外之徵，日漸濫觴，百般侵害，予遺餘民，浚骨髓髓，將不能自存。姑舉京營所納紙地米麩等物言之，一年所納，多至四千餘卷，而應納各官，不得自納，京中士大夫及市井牟利之徒，夤緣請囑，不待本邑陳省，私自直納于營門。計卷徵米于各官田結，一卷之價多者，或至十六斗，小不下五六斗。在平時營門支供，只有檢律、審藥、營吏等料米，而亂後托稱饌價，分徵于各邑，監、都事家一朔所納之米，至於六石。此外又有丘史價米，逐朔徵納，此莫非數外無名之供，極爲無理。今後計營中一年所用公事紙若干卷，一年所給料米若干石，請令該曹酌定，移文施行。其餘數外濫捧紙地米麩，一切停罷，以除民生一分之弊。”答曰：“竝依啓。”</p>

	가루는 일체 폐지하여 민생의 아주 작은 폐단이나마 제거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광해 15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4월 12일(계해) 6번째기사	가뭄이 심하여 국내 산천·성황 및 기내 산천으로서 사전(祀典)에 기재된 곳에 기우제를 행하였다.	旱甚，行祈雨祭於國內山川、城隍及畿 內山川祀典所載處。
광해 15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4월 16일(정묘) 3번째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연향(宴享) 때 상의 앞에 드리는 대소선(大小膳)을 소선(素膳)으로 대용하자 고 계청한 것은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개 성상께서 상 중에 있는데 사객(使客)을 공경하는 도리에 놀려 부득불 힘써 연례를 열지만 대소선품(大小膳品)은 의당 변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기본 진설의 찬상은 비록 모두 다 소선으로 쓸 수 없으나 오직 이 대소선은 재할 (裁割)하여 드리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으니, 실로 이는 직접 수저를 대는 음식이므로 상례(常例)에 의해 드리는 것이 아마도 미안한 듯했기 때문 이었습니다. 신 등이 일찍이 보건대 선왕조가 중국 관원을 접대할 때 국기(國 忌)를 만났을 경우에는 기본 진설의 큰 상 외의 뒤에 드리는 탕미(湯味) 같은 것은 모두 소찬을 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목격한 것으로 참작하여 소선으로 대용할 것을 마련하여 재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도감의 계사를 보건대 ‘한 상은 고기를 쓰고 한 상은 소찬을 쓰기로 하여 온당치 못한 것 같 습니다. 일이 전의 규례와 다르니 예관으로 하여금 명백히 정탈케 하소서.’ 하였는데 그 말과 뜻이 정직합니다. 어찌 다른 의논이 필요하겠습니까. 면상 (面床)과 대소선은 순전히 육선(肉膳)을 쓰고 탕미(湯味)에 이르러는 소찬을 쓰는 것이 사리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의해 마련하여 거행함이 어떠하 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禮曹啓曰：“宴享時上前進御大小膳， 啓請代用素膳者，非有深意於其間也。 蓋以自上方在憂服中，壓於敬客之道， 不得不勉開宴禮，而大小膳品，似而當 有變改之節。原排饌卓，雖不得盡用 素膳，惟此大小膳有裁割進設之節，實 是親近下筋之物，依例進設，恐涉未 安。臣等嘗見先王朝接待唐官之際， 如遇國忌，則原設大卓外，如後進湯 味，皆用素物。故斟酌意起，參以所 見，以代用素膳磨鍊啓下。今見都監 啓辭，一床用肉，一床用素，恐似未 穩。事異前規，令禮官明白定奪者， 辭直意正，寧容更議？面床與大小膳， 純用肉膳，至如湯味用素，恐合事宜。 依此磨鍊舉行何如？”傳曰：“依啓。”
광해 15권, 1년(1609	묘시 정각에 상이 흰 도포와 흰 익선관으로 시사청(視事廳)에 나아가 고칙(誥	卯正，王以白袍、素翼善冠，出御于視

<p>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4월 20일(신미) 2번째기사</p>	<p>敕을 맞는 예와 다례(茶禮)·하마연(下馬宴)의 습의(習儀)를 행하였다. 상은 북쪽 자리에 남향을 하고, 궐패(闕牌)를 서쪽 벽 밑에 설치하여 동향을 하고, 어막차(御幕次)를 뜰 남쪽에 설치하여 북향을 하고, 천사의 막차(幕次)를 중문 내에 설치하여 남향을 하였다. 도승지 김상용(金尙容), 좌승지 박진원(朴震元), 우승지 유공량(柳公亮), 좌부승지 강침(姜籤), 우부승지 경섬(慶暹), 동부승지 이이첨(李爾瞻), 기사관 허실(許實)·이경직(李景稷)·유희량(柳希亮)·박정길(朴鼎吉), 가주서 윤공(尹珙)이 입시하고, 좌의정 이항복이 전폐에 올라 배례하고 이어 입시하여 모두 어좌의 좌측 동쪽 협문에서 남향 부복하였다. 행주 채신(行酒宰臣) 및 좌·우찬례(左右贊禮)가 차례로 전폐에 올라 배례를 드리고 내려왔다. 상이 김상용에게 이르기를, “내가 처음 왕인을 보는 터라 일의 체모가 지중하니, 나를 어렵게 여겨 멀리 부복하지 말고 반드시 가까이 다가와 행례하여 모든 습의하는 것을 하나하나 재량하여 아뢰기 바란다.” 하였다.</p>	<p>事廳， 行迎誥勅禮、茶禮、下馬宴習儀。 王北座南向， 設闕庭 牌於西壁之下東向， 設御幕次於庭南北向， 設天使幕次於中門之內南向。 都承旨金尙容、左承旨朴震元、右承旨柳公亮、左@副副承旨姜籤、右副承旨慶暹、同副承旨李爾瞻、記事官許實·李景稷·柳希亮·朴鼎吉、天使時假注書尹珙入侍， 左議政李恒福上殿拜， 仍入侍， 皆於御座之左東夾南向伏， 因地形也。 行酒宰臣及左右贊禮以次上殿， 行拜禮而下。 上謂尙容曰：“予初見王人， 事體至重， 勿以爲難而遠伏， 必須近前行禮。 凡可習儀， 卽一一裁稟。”</p>
<p>광해 15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4월 22일(계유) 4번째기사</p>	<p>〈사제·사부의 의식을 행하였다. 상이 좌차로 나아가자 의정 이하가 앞서의 의식과 같이 입시하였다. 김상용이 앞에 나아가 엎드려 청하기를, “지금 사제·사부의 의식을 거행해야 하니 여러 집사를 모두 뜰에서 알현한 후 전폐에 올라 행사하게 하소서.” 하고, 사제·사부를 모두 의식대로 행하였다. 김상용이 아뢰기를, “사제의 습의를 이미 마쳤으니 연향의 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좌차에 나가소서. 또 상께서 중문 밖에서 천사를 배송한 후에 곡소리를 내야 하는데, 나갈 때 성급히 곡소리를 냈으니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일은 찬례가 실제로 임했을 때 자세히 살펴서 하라. 또 대문 밖에서 북향할 것을 지금 동향으로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p>	<p>(行賜祭、賜賻儀。 王出次， 議政以下入侍如前儀。 尙容進前， 伏請曰：“今當行賜賻、賜祭之儀， 諸執事皆令庭謁後， 上殿行事。” 行賜賻、賜祭皆如儀。 尙容曰：“賜祭習儀已畢， 當行宴享習儀， 請就次。 且自上中門外拜送天使之後， 當唱哭， 而出去時經先唱哭， 此則誤矣。” 王曰：“如此事， 贊禮須臨時詳察爲之。 且於大門外當北向者， 此爲東向者何也?” 尙容曰：“當爲北向， 而此爲東向者， 因地形也。”</p>

	<p>하니, 김상용이 아뢰기를, “북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동향으로 한 것은 지형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향 때 술잔을 들고 수저를 드는 것을 자세히 살펴서 하라. 또 천사와 상대하여 행주할 때 천사와 내 앞에 술잔 올리는 것을 모두 1인으로 해야 하는데, 전부터 도제조로 하였다.” 하고, 상이 동편 막차로 나가자 의정 이하가 빠른 걸음으로 나갔다. 해관이 들어와 연향 절차를 설치하였다. 어좌는 서벽 밑에 설치하여 동향하고, 천사의 허위는 북벽에 설치하고, 어좌의 허위는 남벽에 설치하고 행례하였으니, 지형 때문이었다. 상이 좌차에 나아가자 관반(館伴) 및 승지 이하가 어좌의 우측에 입시하고, 기둥 밖에 있던 종재(宗宰)가 차례로 전폐에 올라와 엎드려 알현한 후 뜰에 내려가 시립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좌상이 여기에 입시하였다가 행주(行酒)할 때에는 내려가 행주하고, 행주한 후 다시 입시하라.” 하니, 김상용이 아뢰기를, “이미 행주(行酒)를 배설했고 종재 또한 들어왔으니, 연향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가천사(假天使)·가관반(假館伴)도 모두 들게 하소서. 잔을 올리는 제조에 관해서는 사옹원에 물으니, 상께서 드는 잔은 도제조가 올리고 천사가 드는 잔은 부제조가 올린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부터 들으니 비록 천사에게 올리는 잔이라 하더라도 또한 모두 상에게 올리는 잔이기 때문에 도제조가 한다 하였다. 그러나 전례가 이와 같다면 이대로 하라.”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난리 전의 일은 알 수 없으나 난리 후에는 천사가 간혹 복장의 다름을 보고</p>	<p>王曰：“宴享時舉酒舉箸，須詳察爲之。且與天使相對行酒時，進爵於天使與上前者，皆當以一人爲之，自前皆以都提調爲之也。”王就東夾幕次，議政以下趁出。該官入設宴享節次。設御座於西壁之下東向，設天使虛位於北壁，設御座虛位於南壁以行禮，因地形也。王出次，館伴及承旨以下，入侍于御座之右，楹外宗宰以次上殿伏謁後，下庭侍立。王曰：“左相入侍于此，行酒時下去行酒，行酒後還爲入侍。”尙容曰：“已爲排設行酒，宗宰亦入，當行宴享禮。假天使、假館伴，竝令入之矣。進爵提調事，問于司饗院，則以爲：‘自上所進之爵則都提調進之，進於天使之爵則副提調進之’云矣。”王曰：“自前聞之，雖進於天使之爵，亦皆進於上，故都提調爲之矣。然舊例如此，則依此爲之。”李恒福曰：“亂前未知也，亂後則天使或見章服之異而問曰：‘進爵於國王者，何以官高者爲之？進爵於此者，何以官卑者爲之乎？’以此先王命以一人爲之矣。”王曰：“然則以此例爲之。”</p>
--	--	---

	<p>문기를 ‘국왕에게 잔을 올리는 자는 어찌하여 관직이 높은 자로 하며 나에게 잔을 올리는 자는 어찌하여 관직이 낮은 자로 하는가.’ 하므로 선왕께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이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p>	
<p>광해 15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4월 22일(계유) 5번째기사</p>	<p><다례(茶禮)를 의식대로 행하고 다례가 끝나자 연례를 행하였는데, 상이 행주(行酒)하는 의식을 먼저 행하였다. 김상용이 종재(宗宰)의 행주를 청하니 이 항복·윤근수·이광정·윤희형이 행주하여 종배례(終盃禮)를 행하였다. 연례를 의식대로 행한 다음 철수하여 나왔다.></p>	<p>(行茶禮如儀，茶畢，行宴禮，先行自上 行酒之儀。 尙容曰：“請宗宰行酒。” 李恒福、尹根壽、李光庭、尹洞以此 行酒，行終杯禮。 行宴禮如儀畢，撤 出。)</p>
<p>광해 15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4월 25일(병자) 5번째기사</p>	<p>김상용이 아뢰기를, “이이침(李爾瞻)이 별사주(別賜酒)를 내갔는데, 두목(頭目) 무리들이 시립(侍立)을 핑계로 거절하고 나와 먹지 않았습니다. 역관의 말은 ‘아마 세 군데에서 연향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노여움을 품고 오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연향을 먹으면 절건전(折乾錢)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여 오지 않는 것이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청하여 먹이라. 비록 연향을 먹더라도 절건전과는 관계없다는 뜻으로 개유하라.”하였다. 김상용이 아뢰기를, “글로 말을 잘 만들어 천사에게 청하여 나와 먹도록 명령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 하여, 어전 통사로 하여금 다시 청하게 하니, 천사가 답하기를, “한두 사람만 여기에 남아 대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나아가 먹으라.” 하였다.</p>	<p>金尙容啓曰：“李爾瞻以別賜酒進去， 而頭目輩托以侍立，絕不來食。 譯官 以爲：‘或因三處不設宴享，而含怒不 來，或慮其食此宴享，則不得折乾而不 來。’ 王曰：“更可請而饋之。 雖食宴 享，不計折乾之意開諭之。” 尙容曰： “措辭更請于天使，許令出食何如？” 王 曰：“依爲之。” 使御前通事更請之。 天使答曰：“一兩人在此伺候，餘皆出 食。”</p>
<p>광해 16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p>	<p>묘시(卯時)에 어가가 창덕궁에 납시어 선정전에서 연회를 청했다. 사시(巳時)에 중국 사신이 이르니 왕이 문을 나가 계단을 내려가 맞이하고는 함께 전에</p>	<p>卯時， 駕幸昌德宮， 請宴于宣政殿。 巳時， 天使至， 王出門， 下階， 迎入，</p>

<p>37년) 5월 5일(을유) 4번째기사</p>	<p>올랐다. 다례를 마치고 중배례(中杯禮)를 거행하였으며, 좌의정 이항복 이하 육재(六宰)가 각각 배례(盃禮)를 거행하였다. 이를 마친 후 문 밖까지 전송하고 미시(未時)에 환궁하였다.</p>	<p>同陞殿。茶禮後，行中杯禮，左議政李恒福以下六宰各行盃禮。畢，送至門外。未時，還宮。</p>
<p>광해 16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5월 12일(임진) 9번째기사</p>	<p>비망기로 일렀다. “내가 근래에 여러 날 동안 고생한 탓에 예전 병이 다시 일어나 정신이 흐릿하여 다른 일에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었다. 이에 왜놈들이 바친 것을 미처 조처하지 못하여서 정원에서 이에 대해 아리게 하였으니, 몹시 놀랍다. 생각건대 이미 의리에 입각하여 배척하지 못하고서 분함을 참고서 화친을 하였다면, 그들이 바친 물건을 안에서 쓰건 밖에서 쓰건 크게 구별이 없을 듯하다. 이런 때문에 선조(先朝)에서는 바깥에 내려 주거나 혹은 안에다 머물러 두어 쓰임에 대비하였다. 지금 조총(鳥銃)의 반을 무기(武庫)에 내려 주고, 검(劍) 6자루와 장경(粧鏡) 4자루, 단목(丹木) 5백 근, 호초 2백 근을 예전 규례에 의거해 안에다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해사에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값을 매겨 화매(和賣)하게 해서 상사(賞賜)와 증급(贈給)의 용도로 쓰게 하라. 그리고 객사(客使)가 오랫동안 국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일이 몹시 온당치 못하다. 그러니 그들이 싸가지고 온 물건을 속히 무역해 주고, 회답하는 일은 즉시 결정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속히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해조에 말하라.”</p>	<p>備忘記傳曰：“予近因累日勞動，舊病復作，精神昏暈，未遑他事。倭奴之獻，不及區處，以致政院有啓，深用瞿然。惟念既不能據義斥絕，忍而通和，則其所進物件，內外之用，似無大段之別。以此先朝或外賜，或內留，以待需用。今將鳥銃一半下武庫，劍六把、粧鏡四柄、丹木五百斤、胡椒二百斤依舊例留內，其餘下該司，令折價和賣，以爲賞賜贈給之用。客使久留境上，事甚未妥。其齎來商物，斯速質給，回答之事，趁卽停當，使之遄歸事，言于該曹。”</p>
<p>광해 16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5월 16일(병신) 2번째기사</p>	<p>비망기로 일렀다. “왜인이 진상한 물품을 처리하는 데에는 선조(先朝)의 예전 규례가 있다. 그런데도 지금은 해사에 내려주고 단지 약간의 물품만 안에다가 남겨두었는데, 이 역시 쓸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아무리 어둡하지만 어찌 원수를 잊고 특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길 리가 있겠는가. 헌부가 또 진계하기에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이는 뜻을 보이고 모두 내려준다. 그 가운데 단목(丹木) 1백 근, 호초 40근은 이미 자전과 선조의 여러 후궁들에게 나누어 주어, 지금 도로 거두어 모아 내려줄 수가 없다. 검(劍)에 이르러서는, 해사에 줄 경우 잘</p>	<p>(備忘記)傳曰：“倭人進上之物區處，自有先朝舊例，而今則下于該司，只留若干物于內者，亦有所爲而然。予雖昏庸，豈有忘讎賊、貴異物之理？憲府又爲陳啓，用示嘉納之意而盡下之。其中丹木一百斤、胡椒四十斤，已分呈于慈殿及先朝諸後宮前，今不可收取畢下。至於劍柄，付諸該司，未免慢藏</p>

	<p>보관하지 못하고 함부로 써 막상 쓸 때에는 부족한 걱정을 면치 못하겠기에 궁방(弓房)에 두고 쓰임에 대비한다. 이 뜻을 정원은 잘 알라.”</p>	<p>消耗臨用告乏之患， 茲置弓房以備用需。 此意政院知悉。”</p>
<p>광해 16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5월 29일(기유) 1번째기사</p>	<p>사간원이 아뢰기를, “금년의 가뭄은 전고에 없던 바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기우제를 지내어 비록 비를 조금 얻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개였습니다. 이에 농가에서는 지금까지도 더욱 괴롭게 비를 바라고 있는데, 제관들은 이미 은상(恩賞)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제관에게 논상하는 것을 거행하지 마소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예는 지극히 엄중한 것이니, 정원은 마땅히 미리 해사를 신칙하여 예물을 살펴보고 잘 정돈해 두고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신이 빈청에 앉아서 독촉한 뒤에 이르러서도 느릿느릿 포장하였으며, 쥐가 과먹고 색이 바랜 물품이 섞여진 것을 해관(該官)이 삼가지 않은 탓이라고 핑계대면서 범연히 추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정원이 어찌 잘못된 바 없겠습니까. 색승지를 파직하고 당해 관원을 잡아다 국문하소서. 신들이 삼가 듣건대, 삼 년 동안 농사지어서 일 년 먹을 저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나라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의 경비는 7만여 석인데 세입은 4만여 석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해조가 여기저기서 끌어모으고 있으나, 오히려 부족한 숫자를 채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의 잡다한 차하[上下]를 만약 조선(漕船)이 오기를 기다려서 받아들이는 대로 지급해 줄 경우, 그 군색한 상황이 형언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십분 줄여야만 거의 계속 이어갈 가망이 있습니다. 나인(內人)들이 내외의 창료(倉料)를 받는 것이 비록 태평할 때의 옛 규례라고는 하나, 난후에는 경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단지 한 창고의 요미(料米)만 받았는데, 이것도 50석이나 되어 1년 치를 합계하면 거의 7백 석이나 됩니다. 쓸데없는 경비를 줄이고자 할 경우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나인들에게 단지 한 창고의 요미만 지급하여서 번잡한 비용을 제거하소서.”</p>	<p>己酉五月二十九日己酉司諫院啓曰： “今年亢旱，前古所無之災。 頃者累行祈雨祭，雖小得雨，旋即開霽。 田家望雨，到今愈苦，而祭官已霑恩賞。 請祭官論賞，勿爲舉行。 詔使接待之禮，至嚴且重，爲政院者，所當預飭該司，看品禮物，整齊以待。 而至大臣坐賓廳，催促之後，緩緩結裹，而雜以鼠嚙破色之物，諉以該官之不謹，汎然請推。 政院豈專無所失？ 請色承旨罷職，當該官拿鞫。 臣等伏聞三年耕無一年之蓄，則國非其國矣。 今者國家經費七萬餘石，而稅入則不過四萬餘石。 以此該曹拮据湊合，猶不補所缺之數。 日用雜上下，若待漕船之來，隨捧隨給，其爲艱窘之狀，有難形言。 必須十分裁省，庶有可繼之望矣。 內人受內外倉料，雖曰昇平舊規，而亂後因經費不足，只受一倉之料，多至五十石，通計一年，則幾至七百石。 如欲裁減冗費，則無過於此。 請內人只給一倉之料，以除煩費。” 答曰：“依啓。 內人料倉，非但先朝已定之事，</p>

	<p>하니, 답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나인들이 창고에서 요미를 받는 것은 선조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대궐 안 하인들이 의뢰하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어서 지금 줄이기는 어렵다. 제관에 대해서는, 이미 비가 내렸으니 논상하는 것이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색승지는 이미 추고하였다. 이러한 때 파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이 뒤로도 연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p>	<p>闕內下人所仰賴者，只此而已，今難減削。祭官既已得雨，則論賞何妨？色承旨已爲推考，此時不可罷職。”【此後連啓，不允。】光海君日記卷第十六</p>
<p>광해 18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7월 1일(경진) 1번째기사</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서로(西路)와 경기 지방에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금년의 한재는 더욱 절박합니다. 노추(奴酋)는 날로 치성해지는데 서쪽 백성은 날로 곤궁해지니, 강변(江邊)의 방비 역시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금년에는 조사의 행차로 가난한 집의 저축이 남김없이 탕갈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염려됩니다. 이제 공사간의 비축에 믿을 만한 것이 없게 되었는데, 구황 정책 열한 가지 가운데 첫째가 시사(施舍), 그 다음이 곡식을 옮기는 것이고 별달리 새롭고 기이한 방도가 없으니, 조정에서 비록 심력을 다하고자 하더라도 손을 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으면서 구제하지 않아 죽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니 해조로 하여금 먼저 진휼사(賑恤使)를 차출하여 미리 계획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p>	<p>己酉七月初一日朔庚辰備邊司啓曰：“西路、畿甸連年失稔，今年旱災，尤爲切迫。奴酋日盛，而西民日困，江邊防備亦所難已。仍之以今年詔使之行，部屋儲蓄蕩然無餘，深憂隱慮有難盡言者。今者公私蓋藏無可恃，荒政十一，第一施舍，其次移粟，而無他別樣出奇立新之法，朝廷雖欲盡心力而爲之，無可着手矣。然亦不可坐視不救，任其顛躋也。令該曹先差賑恤使，預先規畫爲當。敢啓。”傳曰：“允。”</p>
<p>광해 20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9월 3일(신사) 3번째기사</p>	<p>함경도 정평(定平) 땅 북쪽에 8월 10일 미시부터 유시까지 바람과 싸락눈이 갑자기 내렸는데, 혹 큰 것은 거위알만하고 작은 것은 비둘기알만하였다. 땅에 반 자나 쌓였는데, 그것을 맞은 닭과 개는 모두 죽었고, 부딪친 기와와 그릇도 역시 깨졌다. <모든 곡식을 남김없이 쓰러뜨렸다. 삼수군(三水郡)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서리가 내려 모든 곡식이 다 말라 죽어 수확을 할 길이 없었다.></p>	<p>咸鏡道定平地北面，八月十九日，自未時至酉時，風霰暴作，或大如鵝卵，小如鳩卵，積地半尺，而所逢鷄犬盡斃，觸瓦器亦破，(百穀盡打無遺。三水郡，八月初九日至十二日，連日逢霜，各穀盡爲焦枯，收穫無路。)</p>
<p>광해 20권, 1년(1609</p>	<p>경기 감사 김신원(金信元)이 치계하였다.</p>	<p>京畿監司金信元馳啓曰：“今年旱風之</p>

<p>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9월 10일(무자) 2번째기사</p>	<p>“올해 가뭄과 바람의 재변이 있는 뒤로 백성들의 희망은 오직 서리가 늦게 내려 늦은 곡식이나마 조금 익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동안 찬 서리가 이미 내려 벼·목화·보리·콩이 대부분 모두 말라 누렇게 되어 다시는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황급한 가운데 죽음을 모면할 계책이 없으니, 그 참혹함을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겨울과 봄에 구휼하는 대책은 필시 조정에서 자세히 강구하여 마련하겠지만, 내년의 종자조차 다 없어졌으니, 이것이 더욱 근심스럽고 염려됩니다. 벼와 콩의 종자 3천여 석을 별도로 조치하여 내년 초봄 해동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해조에 명하여 속히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소서.”</p>	<p>餘, 民之所望, 唯在霜降差遲, 則晚穀稍熟。而數三日內, 寒霜已降, 稻木麥豆太皆已枯黃, 無復更有所恃, 遑遑急急, 救死無計, 慘不忍聞。冬春賑救之策, 朝廷必詳盡講畫, 明年種子亦爲竭乏, 此尤悶慮。稻豆等種三千餘石, 別樣措置, 以及春初解冰。令該曹斯速磨鍊施行。”</p>
<p>광해 21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10월 8일(병진) 5번째기사</p>	<p>지중추부사 이정귀(李廷龜)가 【휴가를 받아 용인(龍仁)에 가서 성묘하고 돌아왔다.】 아뢰기를, “신이 감히 개인적인 사정을 번득스럽게 아뢰었는데 하늘 같은 성운을 내리시어 특별히 많은 휴가를 주시고 역말과 제수(祭需)까지 하사하셨으니, <총영이 백골에 미치고> 감은이 죽은 사람, 산 사람에게 이르렀으므로 <황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와> 무슨 말을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건대, 휴가를 받고 외지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특이한 소문을 아뢰는 것이 전례이므로, 이에 따라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의 기근(饑饉)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말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극심한 경지에 이른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시골에 가서 보니, 처참한 정상이 차마 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하여 곡식을 마당에 들일 때인데 사람들은 모두 푸성귀를 먹고 집들은 텅 비어 있으며 대낮에 살인 강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맹자가 ‘노약자의 시체는 골짜기를 메우고 장년(壯年)들은 흩어져 사망으로 떠나간다.’고 한 것이 진정 오늘날을 두고 한 말인 듯합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은 다른 지방의 곡식을 옮겨다가 나누어주는 일에 불과할 뿐인데, 조정이 이 일에 대해 깊이 강구하여 양호(兩</p>	<p>知中樞府事李廷龜【因賜暇, 省墓龍仁還來。】啓曰: “臣敢將私悃, 仰瀆震嚴, 聖恩如天, 特許寬暇, 竝賜驛傳及祭需, (榮及朽骨,)感徹幽明, (兢惶涕泣,)不知所達。因竊伏念謁告從外來者, 輒白異聞, 古事也。今歲飢荒, 有口者皆言, 而亦不知至於此極。及到村野, 慘不忍見。此正秋獲登場之日, 而民皆草食, 室如懸磬, 白晝殺越之賊, 已發於處處, ‘老弱填于溝壑, 壯者散而之四方’, 正謂今日道也。救之之策, 不過移粟, 朝廷講之已熟, 兩湖牟豆已爲分貸, 甚盛舉也。第移轉之穀, 自前無實。船運之際, 沍爛躑躅, 或腐朽不堪食, 或欠縮非實數, 民多穀少, 所受不敷。而受來之處, 遠或四</p>

湖)의 보리와 콩을 실어다가 이미 나누어 주었으니, 매우 성대한 거조였습니다. 그러나 실어오는 곡식은 이전부터 실속이 없었습니다. 배로 운반해 올 때 물에 젖거나 사람이 짓밟아 때로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가 하면 죽나서 실지 수량에 차지 않을 때가 있는데 사람은 많고 곡식은 적어 받아가는 곡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타오는 곳이 먼 데는 4, 5식(息)의 거리가므로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는데 으레 며칠이 걸립니다. 게다가 간악한 관리들이 수탈을 가하여 잔단 쌀이 비용으로 없어지고, 빈 자루만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절반이나 됩니다. 나라의 곡식인 이상 으레 환자(還上)로 돌려 내년에 수량대로 독촉하여 받아들일 것이므로 백성들은 실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한 조세를 바치는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신이 시골 노인들의 말을 듣건대 ‘이번에 받은 보리와 콩이 이처럼 실속이 없었으니, 앞으로 또 곡식을 옮겨다 주는 일이 있을 경우 모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곡식을 받지 않게 해주기를 도모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곡식을 옮겨 기근을 구제해 주는 것은 왕정(王政)의 우선적인 것인데 그 폐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온갖 부역과 억울한 조세를 모두 면제하여 그들의 힘을 펴주고 도토리나 콩잎일지라도 편안히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백성들을 구제하는 상책입니다. 만일 다시 그들을 소요시키면 구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선혜청(宣惠廳)의 거두어들일 쌀을 지금 백성들에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금년같은 흉년에 마련해 내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고, 가을에 벌써 이러한 상황인데 더구나 내년 봄이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통영(統營)의 벼 수만 석과 여러 가지 명목의 쌀을 진휼사가 현재 배로 운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것인 듯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이 곡식을 우선 백성들에게 분급하지 말고 쌀을 덜어내어 선혜청이 거두어들이는 쌀을 대신함으로써 경기도 백성들의 금년 가을 및 내년

五息程，齎糧往來，動經數日。奸吏又從而漁奪之，屑越花消，卒至空囊而歸者居半。既是國穀，例爲還上，明年將必叩數責納，齊民未蒙實惠，而反有虛賦之害。臣聞野老之言，‘所受牟豆既如是無實，前頭又有移粟，則皆欲賂吏以圖免受’云。移粟賑饑，王政之最先，而其流之弊，乃反至此，誠可歎也。今但盡除雜役橫賦，以寬其力，雖橡實、豆葉，使民得以安坐而食，此爲救民之上策，若擾之，則難救矣。宣惠廳收米，今方督納於民，此雖民情之所便，而以今凶歉，辦出極難，秋既如此，況明春乎？臣曾聞統營屯租數萬石、諸般作米已付賑恤使，今方船運(云)，將以賑民(也)。臣之愚意此穀姑勿分給，除出作米以爲宣惠廳收米之用，而盡減畿民今秋與明春所納收米，則民無往來虛受之弊，且免辦納勞費之苦，民始蒙實惠，而賑恤之策，無過於此。與其納/給之而還納，無寧不給而無納也。若以爲國穀不可棄，則待豐還納，亦似無妨。其已給牟豆，亦令有司另議處置，則饑民庶慰其心矣。(臣目擊耳聞，食不下咽，敢陳出位之

	<p>봄에 바칠 쌀을 모두 감면해주면 백성들이 오가며 실속없이 받아가는 폐단이 없을 것이고 또한 쌀을 마련하여 수고롭게 바치는 괴로움이 없어서 백성들이 실지의 혜택을 입을 것이니, 진휼의 계획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주었다가 도로 바치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주지 않고 바치지 말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라의 곡식인데 그냥 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바치게 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누어 준 보리와 콩도 유사들로 하여금 별도로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면 굶주린 백성들이 마음에 위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직접 보고 듣다 보니 음식이 목에 내려가지 않았으므로 직위에 벗어나는 말을 아뢰었는데 참람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혹 이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일분의 혜택이라도 입게 된다면 신이 비록 죄를 받더라도 다행스러운 일이지 황공하게도 감히 아뢰입니다.>”</p> <p>하였는데, 답하기를, “계사 내용을 모두 보았다. 매우 딱한 일이니,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言，僭越極矣。而倘或因此而民得蒙一分之惠，則臣雖受罪亦幸矣。惶恐敢啓。)” 答曰：“具悉啓辭，深用愍惻，當令該曹議處。”</p>
<p>광해 21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10월 23일(신미) 1번째기사</p>	<p>비변사가 아뢰기를, “금년의 흉작은 근고에 없었던 일이니, 온갖 방법으로 곡식을 구하여 겨울이 다가오기 이전에 많은 수량을 모아둔 뒤에야 수많은 기민(飢民)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휼사가 양호(兩湖) 지방에 종사관을 파견하여 곡식을 구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호칭이 높지 않은데 어떻게 호령이 시행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종조 때 진휼사를 으레 대신이 겸임하게 한 것은 아마도 그 일을 중하게 하기 위한 것인 듯합니다. 현재 서북 4도에 도 체찰사를 두어 본도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고 종사관들도 도별로 내려갔으니, 체찰사 막부(幕府)들에게 각도의 진휼하는 일을 아울러 관장</p>	<p>己酉十月二十三日辛未晴。 (備邊司啓曰：“今年凶荒，近古所無，必須多般得粟，冬前聚集，然後許多飢民庶可救濟矣。賑恤使方分遣從事官于兩湖，以圖得粟之事，而名號不重，何能望其號令之必行乎？祖宗朝，賑恤使例以大 臣兼之者，蓋重其事也。今西北四道既有都體察，使專管本道事務，從事官亦已分道下去，若以體察幕府兼管各道</p>

	<p>하게 하고 호조 판서는 부사의 호칭을 지니게 하며, 곡식을 수송하는 종사관들도 역시 체찰사의 호칭을 띠고 오가며 단속하게 한다면 사리에 합당할 듯 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p> <p>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p>	<p>賑恤之事，而戶曹判書則副使稱號，輸粟從事官亦以體察使之號令往來檢飭，似合事宜。 敢啓。” 傳曰：“允。”)</p>
<p>광해 22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11월 15일(임진) 2번째기사</p>	<p>진휼사 이항복(李恒福), 부사 황신(黃愼)이 아뢰기를,</p> <p>“오늘날 진휼하는 한 가지 일은 가장 긴급한 데 관계되니 의당 십분 강구하여 서둘러서 조치해야 할 바입니다. 이렇게 공사(公私)의 비축이 모두 떨어진 시기를 당하여 다시 곡식을 얻을 계책도 없고, 믿는 것이라고는 오직 앞서 계청(啓請)한 양호(兩湖)의 미조(米租)인데, 그 숫자 또한 넉넉하지 않으니 앞날의 일이 극도로 민망하고 염려스럽습니다.</p> <p>대체로 진휼해야 할 굶주리는 백성엔 세 가지 양상이 있으니, 지방의 농민으로 전결(田結)은 있는데도 공부(貢賦)와 요역(徭役)을 견디지 못하여 앞으로 유산(流散)하는 데 이를 자가 있으며, 도하(都下)의 백성으로 농사를 일삼지 않고 장사를 일삼다가 오늘날 곡식이 귀한 때에 이르러 의뢰하여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있고, 또 본래의 직업도 없고 의뢰할 데도 없는 무리로서 하루아침에 흉년을 만나 기근으로 유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 다른 도의 곡식을 옮겨다 각처의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한다면 그 형세가 반드시 두루 미치게 할 수 없고 한갓 민간에 폐단만 끼치게 되며 또 중간에서 소모될 근심이 있으니, <지난날 이정귀(李廷龜)의 계사에서 진달한 바와 같은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신들의 뜻은, 양호에서 당연히 운송해야 할 미조(米租)를 경강(京江)으로 수송하게 하고, 경기 및 양서(兩西)의 금년에 당연히 상납해야 할 공물미(貢物米)를 적당히 헤아려서 감해주되 이 미조(米租)로 그 값을 대신 갚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결이 있는 백성은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호의 연해(沿海) 원곡(元穀) 미조(元穀米租)를 덜어내어 관가의 힘을 들일 필요없이 배를 임대하여 경강으로</p>	<p>賑恤使李恒福、副使黃愼啓曰：“今日賑恤一事，最係緊急，所宜十分講究，汲汲措置。 而當此公私匱竭之日，更無得粟之策，所恃者，唯有前啓請兩湖米租，而數亦不敷，前頭之事，極爲悶慮。 大抵飢民當賑者，有三樣：外而農民，有田結而不勝貢賦、終/徭役，將至流散者有之；都下之民，不事農作而事末利，到今穀貴，不得資活者有之；又如無本業、無依賴之徒，一朝遇荒歲，飢饉流離者有之。 今若移轉他道之穀，分賑各處飢民，則其勢必不能遍及，而徒貽民弊，且有中間花消之患。 (如前日李廷龜啓辭所陳者，亦不可不慮。 故)臣等之意，欲以兩湖應運米租，輸到京江，就京畿及兩西，今年應上納貢物米，量宜蠲免，而以此米租，代償其價。 如此則有田結之民，可得蒙實惠矣。 又除出兩湖沿海元穀米租，不煩官力，賃舡運到京江，使之貿木，從市直，稍爲加給，則人必樂貿，</p>

	<p>운반하여, 그것으로 무명과 바꾸되 시장의 값을 따라 조금 더 지급한다면, 사람들이 바꾸기를 즐겁게 여길 것이고 시중의 값도 조금 저렴하게 될 터이니, 이렇게 하면 도하의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해서 이 무명을 본고장으로 되돌려보내어 가을 추수를 기다려 곡식과 바꾸어 저장한다면, 원래의 숫자를 모두 채우기에 충분하며 또 원래의 숫자에 손상이 없고 남음이 있어, 백성들의 급박함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온당할 듯합니다.</p> <p>그리고 중앙이나 지방 각처에서 굶주리다 거의 죽게 된 백성에 대해서는 제때에 미처 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도에서 옮겨올 만한 곡식이 없는데 또한 그들의 죽음을 서서 볼 수 만은 없으니, 모름지기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미리 먼저 알도록 해서 재해를 당한 각 고을에는 회계 밖의 곡식을 덜어내거나 또는 별도의 조치를 하여 봄이 되기를 기다린 뒤에 설장(設場)하여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게 하는 것이 또한 적당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p> <p>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而市價又爲之少低，如此則都下之民，可得蒙實惠矣。因以此木還送本處，待秋成質穀還貯，則足以盡償元數，而且有剩餘，無損於元數，而可以濟民之急，似爲便當。至於中外各處飢餓垂死之民，不可不及時賑濟。而既無他道可移之粟，則亦不可立視其死。須令各道監司預先知會，被災各邑，除出會外之穀，或爲別樣措備，以待開春後，設場賑飢，亦爲便當。(敢啓。)”</p> <p>傳曰：“依啓。”</p>
<p>광해 22권, 1년(1609 기유 / 명 만력(萬曆) 37년) 11월 25일(임인) 1번째기사</p>	<p>영의정 이덕형이 【<그의 처부(妻父) 아성 부원군(鵝城府院君) 이산해(李山海)의 장례에 참여하는 일로 예산(禮山)에 갔다가 이날 조정으로 돌아와 숙배(肅拜)한 뒤 이 아뢰미 있었다.>】 아뢰기를,</p> <p>“신이 <정세가 절박하여 멀리 떠날 것을 아뢰고 휴가를 청원하였는데, 성상의 은혜로 후하게 허락을 해주셨으며, 또 추위를 막는 물품까지 내려주셨으므로, 신은 매우 황송하고 감격스러워 이틀 길을 하루 만에 달려 갔다가 하루를 지내고 즉시 돌아왔습니다.> 지나던 평택(平澤)·직산(植山)·아산(牙山)·신창(新昌)·예산(禮山) 등의 길에서 주민들이 길을 막으며 호소하였는데, 흥년에 굶주리는 민망하고 절박한 상황은 기전(畿甸)의 고을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전 고을의 경우는 급재(給災)·급진(給陳)해 주었지만 그</p>	<p>己酉十一月二十五日壬寅領議政李德馨(以其妻父鵝城府院君李山海歸葬事，往禮山，是日還朝肅拜後，有是啓。)還自湖西啓曰：臣(情勢所迫，請告遠出，聖恩優許，且錫以禦寒之資，臣不勝惶悚感激之至，倍道馳往，了一日卽還。)經過平澤、稷山、牙山、新昌、禮山等路，居民遮道號訴，其飢荒悶迫之狀，與畿邑少無異焉。畿邑則給陳災，而彼處依上年收稅，畿邑則鑄</p>

	<p>곳에는 지난 해에 거둬들인 세금에 의거 거두게 하였고, 기전 고을의 경우는 제역(諸役)을 감해 주었는데 그곳에는 쌀을 거두는 일과 일체의 잡역(雜役)이 물려들었으니, 주민들이 원통하다고 부르짖는 것은 진실로 그럴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각 고을에 조금 남아있는 곡식마저도 기전 고을을 진구(賑救)하는 밀거리로 삼으려고 하니, 내년 봄에 이르러 그곳의 주민들이 굶주린다고 호소하며 먹여주기를 바란다면 또 앞으로 어느 곳의 곡식을 옮겨다 구제하겠습니까. 그곳의 곡식을 빼앗아다 이곳에 주는 것은 치우친 처사인 듯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당초 하삼도(下三道)를 총괄하여 논의하면서 경기(京畿)와 연결한 지역의 흉년이 심하게 든 것을 헤아리지 못해 이와 같이 마련하게 된 것이었으니, 지금 고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p> <p>신이 직접 전야(田野)가 황폐해진 상황을 보았고, 또 백성들이 호소하는 글을 접수했는데 모두들 ‘궁궐이 이미 완성되었는데도 은가(銀價)로 포(布)를 거둔다. 포는 억지로라도 내놓을 수 있지만, 쌀로 환산하는 데 이르러서는 운반하여 바치는 즈음에 복정(卜定)한 숫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민간의 곡식이 금(金)과 같은 시기에 강제로 쌀을 거두니, 참으로 큰 염려이다.’ 하고, 또 ‘기인(其人)·조례(皂隸)·조군(漕軍)·수군(水軍)의 폐단은 모두 오늘날 백성을 병들게 하는 고질적인 폐단인데, 수군이 더욱 심하다. 번외(番外)에 한번 경역(京役)을 당하게 되면 으레 월리채(月利債)로 포 30여 필(疋)을 써야 하니,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치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그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으니, 빨리 이런 폐단을 변통하여 친족과 이웃에 징수하는 괴로움을 조금 늦춰주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날마다 와서 부르짖는데 참으로 차마 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p> <p>8, 9년 전에 신이 일찍이 남방(南方)을 순력(巡歷)하였는데, 그때의 민심과 정경은 이와 같이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래에 우려가 되는 갖가지 양상들이 절박하게 조석에 달려 있는 듯한데, 그 까닭을 자세히 캐보면 단지 흉년이 그</p>	<p>減諸役，而彼處收米與一應雜役叢沓，民之號冤，固其所矣。而又括各邑所有些少之穀，將以爲賑救畿邑之資，其到明春，彼處之民呼飢望哺，則又將移何粟以救？奪彼與此，似乎偏矣。此蓋當初摠論以下三道，而不計京畿連境失農之甚，以致磨鍊如此，今宜改矣。臣目見田野窮荒之態，又接百姓訴狀，俱稱：“宮闕已完，而爲銀價收布，布則可勉出矣，至於作米，則輸納之際，不止于卜定之數。而當此民間之穀如金之時，抑勒收米，實爲大悶。”又以爲：“其人、皂隸、漕、水軍之弊，俱是今日病民痼弊，而水軍爲尤劇焉。番外一遭京役，例費月利債布三十餘疋，此豈可支保者乎？流散比益甚，願亟變通此弊，以少紓族、隣之苦。”逐日來號，誠有不忍聽者。八九年前，臣曾巡歷南方，其時民心、景象，不如是之甚矣。比來憂虞萬狀，似迫在朝夕，細究其故，非特凶歉使然。民間弊端，日滋月盛，誅求徵斂，無有紀極。聖政之初，民方拭目，而睨睨胥怨，乃至如許，誠可爲於悒矣。忠淸初面官賑救之策及前項各弊端矯正之事，分付該</p>
--	---	---

	<p>렇게 되도록 한 것만은 아닙니다. 민간의 폐단이 날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성해지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거두는 것이 한이 없어서입니다. 성상께서 정치를 행하는 처음에 백성들이 바야흐로 눈을 닦고서 기대하고 있는데, 결눈질하며 서로 원망하는 것이 이와 같은 데 이르렀으니, 참으로 근심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충청도 초면(初面)에 해당하는 고을에 대한 진구 대책 및 앞 항의 각 폐단을 바로잡을 일을 해조에 분부하여, 선혜청과 회동하여 상세히 논의해서 잘 조치하는 일은 늦출 수 없을 듯합니다.</p> <p>그리고 수령을 신중히 가려 뽑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인데, 이번에 돌아오면서 보고 더욱 이것이 제일가는 절실한 업무임을 알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조정이 이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유념하지 않은 듯하니, 조가(朝家)가 백성을 어여뻐 여기는 모든 명령이 모두가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고락은 오직 수령이 현명한가 현명하지 않은가에 달려 있으니, 수령을 잘 가려서 뽑지 않으면 조정에서 법을 세우고 경계하며 유지하는 것이 끝내는 보탬이 없게 됩니다. 민심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데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며, 민심이 따르고 배반함과 국가가 편안하고 위태함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명(聖明)께서는 유념하여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미 듣고 본 것이 있기에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경이 추위를 무릅쓰고 탈없이 빨리 다녀 왔으니, 참으로 매우 위로가 된다. 지난날의 조그마한 하사품에 대하여 어찌 그리도 사례를 하는가.〉 아뢴 내용을 살펴 보고서 가엾고 측은함을 견딜 수 없었다. 경들이 해관(該官)에 분부하여 좋은 쪽으로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라.”</p> <p>하고, 〈인해서 승정원에 전교하여 해사(該司)로 하여금 빨리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였다.〉</p> <p>〈사신은 논한다. 이덕형이 진달한 바가 절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며, 하</p>	<p>曹，會同宣惠廳，詳議善處，似不可緩。慎擇守令，人之常談，而今來見之，益知此是第一切務。頃年以來，朝廷於此事，似不甚留念，朝家恤民百令，俱是虛事。百姓苦樂，唯係守令賢否，守令不能擇，則朝廷立法、戒諭，終無益矣。少慰民心，莫甚於此，民心向背，國家安危。願聖明留省焉。既有聞見，不敢不達。答曰：“(知卿冒寒無恙，速爲往還，良慰良慰。頃日足些少之賜，何用致謝?) 啓意省來，不勝矜惻。卿等分付該官，從長議處。”(仍傳于承政院曰：“令該司速爲議處。”)(史臣曰：“德馨所陳，不爲不切，上之所教，不爲不嚴，卒不見着實舉行，何哉? 上下之言，徒爲虛文而已。”) ”</p>
--	--	--

	<p>교한 바도 엄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건마는, 끝내 착실하게 거행되지 않았으니 어찌서인가. 상하의 말이 한갓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p>	
<p>광해 26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3월 22일(무술) 9번째기사</p>	<p>이에 앞서 내의원(內醫院)이 아뢰기를, “각읍에서 진상하는 약재(藥材)를 대신 쌀로 받는다고 핑계하여 하나도 진상하는 것이 없으니, 전례대로 그 시기에 생산되는 약재를 채취하여 달마다 진상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께 진상하는 약재는 해사의 공물(貢物)에 비할 것이 아닌데, 선혜청이 모두 대신 쌀로 받게 하였으니, 사체(事體)의 경중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변통하게 하라.” 하였다.</p>	<p>先是, 內醫院啓: “各邑藥材, 諉以作米, 無一材封進, 請依前例, 從時產採取, 逐月封進。” 傳曰: “御供藥材則非如該司貢物之比, 而宣惠廳盡爲作米, 其可謂識事體之輕重乎? 使之更議變通。”</p>
<p>광해 27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윤3월 12일(정사) 3번째기사</p>	<p>사헌부가 앞서의 일을 연계(連啓)하고, 또 아뢰기를, “금년의 기근은 근래에 없던 것으로, 겨우 살아남은 잔약한 백성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구제하여서 초미의 위급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양호(兩湖)의 미곡을 운반해 오는 것은 오로지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함인데 이제야 도착하였으니, 이 역시 늦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때에 나누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얻어 먹는 자들은 모두 세력 있는 부자들이고 하소연할 곳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한 푼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여론이 모두 놀라 분개하고 있습니다. 진휼(賑恤)하는 당해 낭청(郎廳)을 파직하도록 명하시고, 이후로는 이를 관장하는 이로 하여금 일체 금하게 하여 전과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혼가(婚家)를 수리하는 일을 이토록 굳이 다투니,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기복(器服)에 관한 일은 윤택하지 않는다. 진휼 낭청에 대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p>	<p>司憲府連啓前事。 又啓曰: “今年饑饉, 近古所無, 孑遺殘氓, 幾將填壑。 所當汲汲救活, 以濟燃眉之急。 國家搬運兩湖米穀, 專爲賑恤饑民, 今始來到, 亦云晚矣。 而非徒不爲及時俵給, 其所食者, 俱係豪勢繼富之徒, 而無告貧民則未沾一分之惠, 物情莫不駭憤。 賑恤當該郎廳, 請命罷職, 今後令該掌一切禁斷, 俾無如前之弊。” 答曰: “婚家修理事, 如是固爭, 當令該曹議處。 器服事, 不允。 賑恤郎廳事, 依啓。”</p>

	<p>하였다.</p> <p>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의 제사에는 온 마리의 희생[體牲]을 사용하는데 조각조각 나누므로 신들은 항상 미안하게 여겨왔습니다. 일찍이 상신(相臣)의 헌의가 있었음을 지난번 박홍구의 말로 인하여 비로소 알고서 계품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많아 미처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에 특생(特性)을 쓰는 것은 예인데, 옛날에도 나누어서 사용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초 제1실에는 처음에 온 마리의 희생을 사용하였는데 3, 4실까지는 그래도 나누어 사용해도 되었지만, 10실이 되어서까지 그대로 답습하여 변화할 줄을 모르고 아직도 한 마리를 가지고 조각조각 나누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덩이 고기를 효경전에 나눈다면, 이토록 미안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제 만일 종묘에 소 한 마리만 추가하면 충분히 나누어 올릴 것이고, 또 《예경(禮經)》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아뢰옵니다.”</p> <p>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禮曹啓曰：“宗廟祭用體牲，片片分割，臣等常以爲未安。而曾有相臣獻議，則頃因朴弘耆之言，始爲聞知，委欲啓稟，而多事未遑矣。祭用特牲，禮也，古人亦有割用之制，當初第一室，始用體牲，及至三四室，則猶可割用，至於十室而因循不知變，尙以一牲片片分薦。又分一塊肉於孝敬殿，安有如此未安之事乎？今若於宗廟加用一牛，則足以分薦，亦不違於《禮經》之意，敢啓。”傳曰：“依啓。”</p>
<p>광해 27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윤3월 24일(기사)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p> <p>“동지사 정경세(鄭經世)와 여유길(呂裕吉) 등이 염초(焰硝)를 사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주선하여 많은 양을 사왔으니 매우 가상하다. 상사와 부사에게 각기 한 자금을 더해주고, 서장관 이분(李芬)은 승급하여 서용하고, 당상통사 장사원(張士元)은 실직에 제수하고, 상통사 남윤함(南胤咸)은 자금을 더해주라. 그리고 학식과 재행(才行)이 있는 선비로서 명성이 드러난 자는 모두 발탁하여 직책을 제수하여, 벼슬길을 맑게 할 <것으로 전조(銓曹)에 말하라.>”</p>	<p>庚戌閏三月二十五日庚午傳曰：“冬至使鄭經世、呂裕吉等，爲焰硝買來事，盡心周旋，優數買來，深用嘉焉。上、副使各加一資，書狀官李芬陞敘，堂上通事張士元實職除授，上通事南胤咸加資。且有識才行之士，表著聲名者，揀拔除職，以清入仕之路(事，言于銓曹。)”</p>
<p>광해 29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5월 11일(을묘) 7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경들의 도움에 힘입어 세자가 성인이 되었다. 이제 책봉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었으니, 술로 기쁨을 펴고자 한다. 환궁한 후에 부(傅) 이하에게 술을 하사할 것이라고 시강원에 말하라. 병조 판서 정창연(鄭昌衍)은 오래도록 이사</p>	<p>傳曰：“賴諸卿之力，世子得以成人。今加冊禮，聊以杯酒宣喜。還宮後傳以下宣醞事，言于侍講院。兵曹判書鄭昌衍久在貳師之任，使之同參宣</p>

	(貳師)의 자리에 있었으니 함께 술자리에 참여하게 하라.” 하였다. 【궁관에게도 술을 하사하였다. 】	醞。” 【宜醞宮官。】
광해 29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5월 13일(정사) 4번째기사	전교하였다. “어제 명부가 모였을 때에 비단 차린 음식이 너무 소략하여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전의 잔치상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때에 임박하여 차리느라 뒤죽박죽이 되었으니, 소홀함이 비할 데가 없었다. 심지어 나무 소반과 사기 그릇까지도 모두 깨지고 남루한 물건을 구차하게 충당하여 진설하였으니 불결하고 불경하기가 이보다 더할 수 없었다. 매우 놀랍고 한심스럽다. 사옹원(司饗院)의 해당 관원과 설리(薛里)·반감(飯監) 등을 모두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傳曰：“昨日會命婦時，非但饌品薄略埋沒，不能成形，內殿宴床，亦不設舖，臨時顛倒，慢忽無比。至如木盤、沙器，皆以破缺，麤陋之物，苟充排入，不潔不敬，莫大於此，極爲駭愕。司饗院當該官員及薛里、飯監等，竝推考治罪。”
광해 29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5월 18일(임술) 2번째기사	약방이 아뢰기를, “두 달 사이에 커다란 예식이 겹쳤습니다. 이제 장차 사직제를 친히 거행해야 하고 다시 음복연(飲福宴)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뜨거운 날씨에 옥체를 손상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의 건강은 좋다. 사직단의 제사는 중요한 예이므로 음복을 하지 않으면 미안스럽다. 선왕께서도 정해년 간에 사직제를 친히 지내시고 나서 음복례를 행하였는데, 더구나 나는 명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제사인데 어찌 날씨가 뜨겁다는 이유로 마땅히 행해야 할 예를 폐지해야 하겠는가. 약소하게 설치하여 예의 모양을 갖춘다면 불가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재차 아뢰어 시어소(時御所)에서 행하기를 청하니, 헤아려서 처리하겠다고 답하였다.	藥房啓曰：“兩月來大禮稠疊。今將親行社稷祭，又設飲福宴，當此暑月，恐傷玉體，惶恐敢啓。”答曰：“予候平安。祭社，重禮也，飲福之舉，不行未安。先王丁亥年間，親祭于社稷，仍行飲福禮。況予受命後，初行此祭，豈以天時之熱爲辭，而停廢當行之禮乎？略設成禮，未爲不可矣。”再啓，請行於時御所。答曰：“當量處。”
광해 31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7월 15일(무오) 3번째기사	전교하였다. “중국 사신의 소행이 무리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도리는 마땅히 예로 대우해야 한다. 오늘 접견하여 연회를 열지는 못했으나 내일 일찍 연례를 거행한다는 뜻으로 승지를 보내 말을 만들어 청하게 하라. 저들이 예의를 모르더라도	傳曰：“天使所爲，雖極無理，在我之道，當以禮待之。今日雖不爲接宴，明日早行宴禮之意，遣承旨措辭請之。彼雖不識禮義，所重者事體，不可相

	<p>중요한 것은 일의 체모이며 서로 계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의 자존심을 굽히고 잘 대우하는 것이 매우 의리에 맞으니 정원은 자세히 살펴 행하라. 오늘이 속절(俗節)이기는 하나, 현재 중국 사신이 관소에 있으니 전에 마련한 중원 예단(中元禮單)을 승지를 보내 증정하고 아울러 술과 음식을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원은 속히 살펴서 처리하라.”</p>	<p>較。 屈己善待，甚合義理，政院詳察爲之。 今日雖俗節，王人方留館，以前磨鍊中元禮單，遺承旨呈納，仍送酒饌似當。 政院斯速察處。”</p>
<p>광해 32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8월 12일(갑신) 4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참의 이지완(李志完)이 오늘 왕정선(王廷選)과 정민공(丁敏功)의 관소에 가서 술자리를 베풀고 이어 상계서 특별히 보내 위로하게 한 뜻을 말했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답했다 합니다. 술잔이 반쯤 돌아갔을 때 왕정선이 소지(小紙)를 꺼내 보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부산(釜山)에 머물고 있는 군사를 붙잡고 풀어주는 문제와 덕천(德川)의 시해(屍骸)를 검사하는 등의 일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재삼 간절히 부탁하면서 그로 하여금 상계 아뢰어 알게 하시도록 하였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굳이 거절할 마땅한 말이 없어 그 뜻에 따라 계달하겠다고 답하고는 조용히 술잔을 주고 받다가 일곱 잔째에 이르러 파한 뒤 이어 예단(禮單)을 주었더니 두 사람이 예를 행하고 나서 사첩(謝帖) 두 통을 보내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소지와 함께 모두 세 통을 입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이 중국인 차관(差官)이 말한 것을 해조로 하여금 속히 자세하게 살펴 처치하게 하고 정원이 검칙하라.” 하였다.></p>	<p>(禮曹啓曰: “參議李志完, 今日, 詣王廷選、丁敏功所館, 處設, 酌仍言自上別遣慰宴之意, 則答以多拜上。 酒半, 王廷選出小紙以示, 蓋挈解釜山留兵、檢驗德川屍骸等事也, 而再三懇囑, 使臣啓知, 臣牢拒無辭以依副啓達答之, 因從容酬酌至七爵而罷, 仍給禮單, 兩人行禮後, 送謝帖二道。 故其小紙竝三道入啓。” 傳曰: “知道。 此唐人差官所言, 令該曹速爲詳察處置, 政院檢飭。”)</p>
<p>광해 32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8월 29일(신축) 6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신 신흠(申欽)이 요동 차관 이세과의 관소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풀었더니, 다섯 잔을 마시고 나서는 술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극력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이변룡(李變龍)이 나왔을 때에는 귀국에서 후하게 예우하며 접대하였다. 그런데 나는 일찍이 엄일괴(嚴一魁)와 만애민(萬愛民)이 나왔을 때에 힘</p>	<p>(禮曹啓曰: “臣申欽進遼東差官李世科所館處, 設酌五爵訖, 辭以不勝酒固辭, 且言: ‘李變龍出來時, 則貴國優禮接待。 我則曾於嚴、萬出來時, 多有宣力之事, 而待我不及變龍何也?’ 云</p>

	<p>을 써준 일이 많았었는데 나를 변룡보다 못하게 대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였습니다. 이는 변룡이 나왔을 때에는 상신(相臣)이 가서 찾아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p> <p>대개 차관이나 위관(委官)을 접대하는 규정이 전일에는 정해진 법식대로 지켜졌는데, 근일의 차관들은 화를 내고 요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뒷날의 폐단을 생각하면 염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 온통 부산(釜山) 등처에 가보려는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갈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 사람은 양 어사(楊御史)의 헌패(憲牌)를 가지고 온 사람인만큼 그가 원하는 바를 따라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평관(太平館)의 차관의 예에 따라 요즈음보다는 낮게 다시 술자리를 베풀고, 예단(禮單)은 이변룡의 예대로 마련하여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사첩(謝帖) 2통을 입게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내용대로 우대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云。蓋變龍來時，則有相臣來見之事，故如是云云矣。大概差官、委官接待之規，在前日則有定式，而近日差官則嗔怒，要索不一，其端後日之弊，極爲可慮。此人主意，都在欲往釜山等處，有此恐喝，而但係是楊御史憲牌持來之人，其所欲不可不副以悅其心。依太平館差官之例，過近日更爲設酌，禮單，依李變龍例磨鍊贈給似當。謝帖二道入啓。”傳曰：“依啓意優，待以慰其心。”)</p>
<p>광해 32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8월 30일(임인) 5번째기사</p>	<p>정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온 설탕과 흑설탕은 모두 쓸모없는 물품이어서 시장에서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체하고 있으면서 비단 헛되이 날짜를 보낼 뿐만 아니라, 세 곳에 있는 허다한 중국 사람을 먹여주는 비용이 적지 않으며, 사은사의 행차가 중도에서 지체하고 있는 것도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 짐바리를 운반함에 연로에 사소한 폐단을 끼치기는 하겠으나, 이곳에 있으면 일이 끝날 기약이 없으니, 예조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개유해서 속히 독촉해 출발하게 하소서.”</p> <p>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p>	<p>政院啓曰：“今此漂流唐人持來雪糖、黑糖，皆無用之物，市上無買去之人。以此淹滯，非但虛過日字，三處許多唐人供億不貲，謝恩行次稽留中路，亦甚未安。其卜物輸轉，雖有沿路些少之弊，在此亦無完了之日，請令禮曹從便開諭，速爲督發。”傳曰：“允。”</p>
<p>광해 33권, 2년(1610</p>	<p>전교하였다.</p>	<p>傳曰：“領相爲覲病親，下往鄉曲，食</p>

<p>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9월 5일(정미) 2번째기사</p>	<p>“영상이 병든 아버이를 문안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니 음식과 주찬(酒饌)을 갖추어 보내 노친을 위로하도록 하라.”</p>	<p>物、酒饌備送，慰其老親。”</p>
<p>광해 34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10월 13일(갑 신) 1번째기사</p>	<p>우승지가 아뢰기를, “예전부터 안에 선운(宣醞) 할 때에는 승전색(承傳色)이 나아갔고 밖에 선운 할 때에는 승지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사대(查對)에 술과 음악을 내릴 때에는 으레 승지가 나아갔는데, 난리를 겪은 뒤로는 공신연(功臣宴)에 술과 음악을 내릴 때 도승지 박승종(朴承宗)이 나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로연(耆老宴)에 술과 음악을 내릴 때에도 승지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듯 한데 기로연이 정지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상고해서 전거로 삼을 만한 전례가 없습니다. 나아가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도승지가 나아가라고 전교하였다.</p>	<p>右承旨啓曰：“自前內宣醞則承傳色進去，外宣醞則承旨進去。以平時查對賜酒樂，例爲承旨進去，亂後功臣宴賜酒樂時，都承旨朴承宗亦爲進去。今次耆老宴賜酒樂，承旨似當進去，而耆老宴停廢已久，前例無憑可考。進去事，何以爲之？敢稟。”傳曰：“都承旨進去。”</p>
<p>광해 36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12월 13일(갑 신) 1번째기사</p>	<p>사간원이 아뢰기를, “전 수원 부사 김거병(金去病)은 본래 교활하고 간악한 사람입니다. 선혜청의 수미(收米)를 거두어들이는 때에 수송 마가(輸送馬價)라고 핑계대어 규정 외에 멋대로 더 거둔 것이 7백여 섬에 이르렀으며, 수송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부역에 조금이라도 빠진 자는 다 추려내어 억지로 수납하게 하였으므로, 읍민들이 모두 그를 잡아먹고 싶어하였습니다. 당초 대론(臺論)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 데에서 나왔었는데, 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풀어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죄를 지은 자는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국문하여 자백을 받아내어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어찌 2품 재상의 반열이라고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고찰할 만한 문서 중에 마가(馬價)를 더 받은 문서는 분명히 구비되어 있고 나누어준 문서는 한 장도 없으며, 그 원정(元情) 중의 7백 섬 쌀도 빈틈없이 변통하지 못하였으니, 그 둔 곳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거</p>	<p>庚戌十二月十三日甲申司諫院啓曰：“前水原府使金去病，本以驕猾奸濫之人，宣惠廳收米收捧時，託以輸送馬價，規外擅捧，多至七百餘石，及其輸運之際，抄其微細闕役者，勒令輸納，一邑之民，欲食其肉。當初臺論實出於國人之所共憤，而入獄未久，旋蒙解放之命。凡罪干贓污則毋論品秩高下，所當嚴鞫得情，按律科罪，豈可諉以二品宰列而有所容貸乎？況可考文書中，馬價加捧文書則昭然俱在，而分給文書則曾無一張，其元情中七百石米，亦不能詳盡區處，其無置處可知。請金去</p>

	<p>병을 다시 잡아들여 국문하고, 본부(本府)의 감독관과 색리(色吏)도 아울러 잡아들여 마가로 받은 7백여 섬의 거처를 일일이 다 물어 사실을 조사하여 정죄함으로써 재물을 탐한 데에 관계되는 법을 밝히소서.</p> <p>역관 남윤함(南胤咸)은 염초(焰硝)를 사온 일로 인하여 이미 당상의 명을 받았는데, 또 사물(私物) 1백여 근을 바쳐 가선(嘉善)의 중한 가자를 받기에 이르렀으니, 바친 물건과 거기에 대한 보답의 경중이 걸맞지 않는 데에 그칠 일만이 아닙니다. 북경을 한 번 왕래하는 사이에 두 차례나 가자를 내려주어 마치 땅의 지푸라기를 줍듯이 2품의 관직을 취하게 하니, 국가가 덕이 있는 자를 명할 때에 쓰는 명기(名器)를 어찌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사소하게 사물을 바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 보답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어찌 반드시 명기를 거둬 욕되게 하여 관직을 함부로 제수했다는 기룡을 남기려 하십니까. 남윤함에게 상으로 내린 가선의 가자를 빨리 개정하소서.</p> <p>전 학유(學諭) 김직재(金直哉)는 난리 초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핑계로 스스로 기복(起服)하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어미를 박대하여 다른 곳에 버려 두어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에 고생하는데도 마치 길가는 사람을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식된 자가 이러한 죄를 지고서는 벼슬아치의 반열에 들 수 없으니, 직첩을 돌려주라는 명을 거두소서.</p> <p>전 부정(副正) 신요(申橈)는 흥역(兇逆)이 국가의 정권을 주무르던 때에 아첨하고 불쫓아 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후의 교서에 흥역을 극도로 기렸을 뿐만 아니라 신하로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문자를 쓰기까지 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모두 격분하고 있으니, 직첩을 돌려주라는 명을 거두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病更爲拿鞠，本府監官、色吏，竝爲拿來，馬價米七百餘石去處，一一窮問，覈實定罪，以明贓汚之法。譯官南胤咸，以焰(焰)〔硝〕質來事，既膺堂上之命，又以私物百餘斤，至授嘉善重加，非但所納所酬，輕重不稱。北京一往來之間，疊授二資，取金將玉，如拾地芥，朝家命德之器，豈容若是其濫施乎？設有些少私納之事，自有可當可酬之典，何必重辱名器，以貽續豹/貂之譏乎？請南胤咸嘉善賞加，亟命改正。前學諭金直哉，亂初託以爲父復讐，私自起服，飲酒食肉，無異平日。今又薄待其母，置之他處，飢寒疾病，視若路人。爲人子負此罪惡，不可齒在衣冠之列，請收職牒還給之命。前副正申橈，當兇逆擅國之日，諂附之狀，無所不至。前後教書，不但極贊兇逆，至下臣子不忍言文字，至今物情，莫不憤激。請收職牒還給之命。”</p> <p>答曰：“金去病已爲推覈，終無的確可罪之實狀。南胤咸其所質納，明有必賞之功，予已參酌審處，勿爲煩論。金直哉等事，依啓。”</p>
--	--	---

	<p>“김거병은 이미 추핵하였으나 끝내 분명히 죄가 될 만한 실상을 찾지 못하였다. 남윤함이 그 물건을 사다가 바친 데에는 반드시 상을 내릴 만한 공이 있으므로 내가 이미 참작하고 살펴 처리한 것이니 번거로이 논하지 말라. 김직재 등의 일은 아된 대로 하라.”</p> <p>하였다.</p>	
<p>광해 41권, 3년(1611 신해 / 명 만력(萬曆) 39년) 5월 29일(무진) 1번째기사</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제주 목사의 사장(辭狀)으로 전교하셨는데, 목사 이기빈(李箕賓)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린 사직서에 병세가 위급하고 고통스런 정상을 극구 아뢰었습니다. 절도(絶島)인 중요한 곳의 관방(關防) 제무(諸務)와 구황(救荒) 등의 일을, 아무래도 병이 있는 사람이 소임을 살피기가 어려울 듯싶으니, 체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상께서 살펴 결정을 하소서. 그리고 본주에 양맥(兩麥)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백성들이 다들 끼니를 굶고 있다고 하니, 진구(賑救)하는 대책을 서둘러 처치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라도의 피모(皮牟) 5백여 석을, 본도가 상납하기로 되어 있는 포목 명목으로 시가(市價)에 따라 무환(貿換)하여 배에 실어 들여 보내는 것이 마땅하니, 해조로 하여금 한시 마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이기빈은 체차하고 그 대임자를 가려서 천거하라.”</p>	<p>備邊司啓曰：“以濟州牧使辭狀，傳教矣。牧使李箕賓累次控辭，極陳病勢危苦之狀。絕島重地，關防諸務及救荒等事，恐難帶病察任，遞差似當，伏惟睿裁。且本州兩麥失稔，民皆絕食云，賑救之策不可不急急處置。全羅道皮牟五百餘石，以本道應上納木布，從市直貿換，船運入送爲當，令該曹急速舉行何如？”傳曰：“允。李箕賓遞差，其代擇薦。”</p>
<p>광해 44권, 3년(1611 신해 / 명 만력(萬曆) 39년) 8월 3일(경오) 1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가례(嘉禮) 때에 안에서 쓰게 될 면주(綿紬) 10동, 목면(木綿)·포자(布子) 각 15동, 초주지(草注紙) 50권, 저주지(楮注紙) 1백권, 백지(白紙) 1백 50권이 상고(廂庫)에서 진배(進排)한 것과 해사(該司)에 저축된 것으로는 부족하니 외공(外貢)을 촉납(促納)하여 진배하고, 또 쌀과 콩 각 1백 석을 내수사에 실어 보내라.”</p>	<p>庚午/傳曰：“嘉禮時內用次，綿紬十同、木綿、布子各十五同、草注紙五十卷、楮注紙一百卷、白紙一百五十卷，廂庫進排，該司儲乏，則外貢促納進排。且米太各一百石，內需司輸送。”</p>
<p>광해 52권, 4년(1612 임자 / 명 만력(萬曆)</p>	<p>사간원이 아뢰기를, “대풍창(大風瘡)은 천하에 고약한 병입니다. 경상좌도 사람 가운데 이 증세를</p>	<p>壬子四月二十二日丙戌司諫院啓曰：“大風瘡，天下之惡疾也。慶尙左道人</p>

<p>40년) 4월 22일(병술) 1번째기사</p>	<p>가진 사람이 있는데, 근래에는 각 고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염되고 있습니다. 혹 물에 들어가 풍창(風瘡)을 씻거나 혹 집에서 가려워 긁기도 하는데 그 부스럼 딱지를 먹은 물고기와 닭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그 병을 앓게 됩니다. 본도만 그럴 뿐 아니라 점점 충주(忠州)·강원(江原)의 지경에까지 이르러 형세가 국중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도 수령이 보통으로 여겨 방치한 채 구료(救療)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 또한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있으니, 삼도의 감사를 추고하소서.</p> <p>그리고 해사로 하여금 상당한 약물을 내려보내어 다방면으로 구료하게 하고 또 도사에게 각 고을을 돌며 살피게 하되, 앓고 있는 사람을 일일이 책을 만든 뒤 그 가운데 마음을 쓰지 않는 수령은 각별히 통렬하게 다스리라는 일로 삼도에 유지하소서.”</p> <p>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有此證者，近來列邑之人，轉相傳染，或入水洗瘡，或在家搔癢，而川魚、家鷄，若食瘡痂，則人食其魚、鷄，輒患其病。非徒本道爲然，漸至於忠洪、江原之境，勢將遍於國中，而守令置之尋常，莫有救療之意，監司亦不致意。請三道監司推考。令該司下送相當藥物，多般救療，且令都事巡檢列邑所患之人，一一成冊後，其中不用意守令，各別痛治事，下書三道。”答曰：“依啓。”</p>
<p>광해 57권, 4년(1612) 임자 / 명 만력(萬曆) 40년) 9월 2일(계사) 7번째기사</p>	<p>왕이 황응양(黃應暘)을 접견하여 술잔을 주고받는 사이에 승지가 꽃을 올리면서 꽃기를 청하자 왕이 꽃았다. 이에 양사가, 욕되게 하였다고 하면서 색승지 이지완(李志完)을 추고하기를 청하였다.</p>	<p>王接見黃應暘，行酒間，承旨進花請插，王插之。兩司以爲卑辱，請推色承旨李志完。</p>
<p>광해 57권, 4년(1612) 임자 / 명 만력(萬曆) 40년) 9월 19일(경술) 2번째기사</p>	<p>녹훈 도감이 아뢰기를, “삼가 전의감이 약을 쓰는 것을 정지하는 일에 대해 아뢴 계사를 보건대 여러 도감에서 함부로 쓰는 폐단은 과연 있습니다. 그러나 생약재(生藥材)를 쓰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의사(醫司)에서 조제한 약은 전량(錢兩)과 포구(炮灸)를 모두 법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감탕나무로 감초(甘草)를 대신하고 고삼(苦蔘)으로 황지(黃耆)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무릇 약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의사에서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생약재를 가져다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감은 바로 훈신과 재신들이 모이는 곳인데, 당초에 사목(事目)을 계하할 때 병을 구완할 약을</p>	<p>錄勳都監啓曰：“伏見典醫監用藥停寢事啓辭，則諸都監濫用之弊，果有之矣。生材之用，則出於不得已也。醫司所劑之藥，非但錢兩炮灸，皆不依法，甚者，以柎木代甘草，以苦蔘代黃芪。凡藥欲以療病，而醫司所爲若是，則安得不以生材取用乎？都監乃勳宰所會之地，而當初事目啓下時，救病藥進排事，已爲蒙允。及其病急取用之</p>

	<p>진배할 일로 이미 윤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위급해 가져다 쓸 즈음에는 본감에서 많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반드시 정지시키려고 하니 사체에 있어서 아주 매몰스럽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도감에서 쓰는 약을 십분 간략하게 해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진의 사목에 의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배하게 해 국가의 체모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아뢰는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時，本監多費辭說，必欲停止，其於事體，極爲埋沒。自今以後，都監所用藥服，十分簡約，毋致濫觴，依前事目，使之進排，以存國體何如？”傳曰：“依啓。”</p>
<p>광해 59권, 4년(1612 임자 / 명 만력(萬曆) 40년) 11월 6일(병신) 5번째기사</p>	<p>왕이 내정전으로 나아가 지휘 황응양(黃應陽)을 접견하였다. 【산동 경리사 양호(楊鎬)가 특별히 지휘를 보내어 우리 나라 영남의 해변을 순찰하여 왜인들의 실정을 탐색하고 우리 군사의 훈련 상태를 보게 하였다. 그래서 남쪽 변방을 돌아보고 왔을 때 왕이 맞이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지휘가 말하기를,</p> <p>“제가 남쪽 변방을 순시해 보니, 연로의 수륙 군마(軍馬)들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p> <p>하니, 왕이 이르기를,</p> <p>“난리 뒤 백성들은 번창하지 못하고 물력은 넉넉치 못하여 군사 조련에 관한 일들이 정예화될 기약이 없으니 걱정이오.”</p> <p>하였다. 지휘가 말하기를,</p> <p>“제가 남쪽을 전부 돌아보고 변방의 방비가 완전하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돌아가 일일이 양야(楊爺)에게 보고하겠습니다.”</p> <p>하자, 왕이 이르기를,</p> <p>“대인이 직접 보았다시피 왜인들의 집이 변방의 어디에 있었소? 초옥(草屋)이 절반이나 섞였다는 말은 더욱 근거없는 말일 뿐이오.”</p> <p>하니, 지휘가 말하기를,</p> <p>“이번 순초(巡哨)에서 보아 다 알았으니, <어찌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사정을 돌아가 아뢰겠습니다.”</p>	<p>王御內正殿，接見指揮(黃應陽)〔黃應陽〕。【山東經理使楊鎬別遣指揮，巡略我國嶺南海邊，以探倭情，以觀操鍊。故自南邊回還時，王邀致宴接甚款。】指揮曰：“俺巡視南邊，一路水陸軍馬，皆整齊鮮好矣。”王曰：“亂後生齒不繁，物力未阜，操鍊諸事，精熟無期，是用憂悶(也)。”○指揮曰：“俺歷行南中，盡知邊備之完了。歸當一一查報於楊爺矣。”王曰：“大人之所目擊也，安有倭戶在邊地乎？草屋半雜之說，尤無所據爾。”指揮曰：“今番巡哨，領覽已悉。(安可憂之?)俺當以這樣事情，歸報矣。”○</p> <p>金時獻進啓曰：“南邊之事，指揮已知。但釜山開市，特我國羈縻之計，而事涉未穩，然天朝亦已知之，此外似無大段難事矣。”王曰：“大人爲我國遠來，哨探邊務，不憚跋涉之勞，誠極</p>

	<p>하였다. 김시헌(金時獻)이 나아가 아뢰기를, “남쪽 변방의 일은 지휘~가 이미 알았습니다. 다만 부산의 개시(開市)는 우리 나라의 기미책으로서 온당치 않은 일이긴 하나, 중국에서도 이미 알고 있으니 이 밖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 나라를 위해 멀리 와서 변방의 일을 순시하며 여러 곳을 돌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꺼려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감사하오.” 하였다. 지휘가 말하기를, “제가 양산(梁山)을 둘러 보니 인구는 적고 토지는 황폐해 있었습니다. 서둘러 백성을 모으고 둔전(屯田)을 만들어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비축해둘 계책을 세워야만 하니 이 일을 힘써 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인의 말이 참으로 옳소. 삼가 시행하겠소.” 하였다. 지휘가 말하기를, “저는 선대왕 때부터 여러 차례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동국(東國)의 일에 힘을 다해 주선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 변방의 군비를 보니, 초황(硝黃)이 부족하였습니다. 통제사도 이를 걱정하였으니, 제가 양야께 상세히 전달하여 많은 수량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 나라를 위해 이렇듯 힘써 주니 매우 감사하오.” 하였다. 지휘가 말하기를, “초황 뿐 아니라 다른 군무의 일도 모두 노야에게 전달하여 기어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조선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물불 속이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왕이 매우 감사하다고 하였다. 왕이 주례(酒禮)를 청하여 술을 네 잔씩</p>	<p>感拜。” 指揮曰：“俺見梁山之間，民居鮮少，田土廢荒。宜急募民屯田，以爲鍊兵，儲糧之策，此事力行何如？” ○王曰：“大人之言誠是。謹受教矣。” ○指揮曰：“俺自先大王時，屢蒙眷愛，故於東國之事，靡不盡心周旋。今見南邊軍備，則硝黃缺少，統制亦以是爲憂。俺當具達楊爺前，多數送之耳。” 王曰：“大人爲弊邦，如是盡力，不勝感荷。” ○指揮曰：“非徒硝黃，他如軍務之事，亦皆陳達于老爺，期於必行。凡事係朝鮮，則雖水火之中，亦不避矣。” 王曰：“無任感拜。” 王請行酒禮，酒行四爵。 指揮曰：“先王時，俺獻一玉盃矣。今已二十年之久，願得見之也。” 王曰：“疑在宮壺之中，而第恐歲月已久，未易搜得耳。”</p>
--	---	---

	<p>돌렸다. 지휘가 말하기를, “선왕 때 제가 옥술잔 하나를 드렸는데 지금 벌써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잔을 보고자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아마 궁중에 있을 것이나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쉽게 찾아낼 지 모르겠소.” 하였다.</p>	
<p>광해 59권, 4년(1612 임자 / 명 만력(萬曆) 40년) 11월 26일(병 진)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방금 내린 옥술잔은 황 지휘가 전에 선왕께 드린 것이다. 엇그제 지휘를 접견했을 때 다시 이 잔으로 마시기를 원하기에 내린 것이니, 오늘 접견하는 자리에 쓰도록 사용원에 이르도록 하라.”</p>	<p>傳曰: “今下玉杯, 乃黃指揮曾進先王者也。頃日接見, 指揮願更飲此杯, 故下之, 今日接見時用之事, 言于司饗院。”</p>
<p>광해 64권, 5년(1613 계축 / 명 만력(萬曆) 41년) 3월 24일(임오) 4번째기사</p>	<p>왕이 종묘에 친히 제사지낸 뒤에 음복연(飲福宴)을 행하려 하였다. 사헌부가 계청하기를, “일식의 변을 막 껴었으니, 연례(宴禮)를 정지하소서.” 하니, 왕이 예조에게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사가 예문(禮文)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해당 관원이 부득불 예에 의거하여 여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음식물을 계속 마련한 바람에 경비가 고갈되어 진실로 언관의 계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초하룻날에 또 일식의 변고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두려워하며 몸을 닦을 때입니다. 비록 음복(飲福)이라 하더라도 ‘잔치’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사리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하례를 드리는 예는 이미 권정례(權停例)로 하라고 명하셨으니, 음복연을 언관의 계사에 의거하여 정지하도록 특별히 명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음복연은 예문에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조종조의 옛 규례를 보니, 친히 제사를 지낸 뒤에 반드시 행하였다. 이는 마시는 것을 탐하는 데 비할 것</p>	<p>宗廟親祭後, 將行飲福宴, 司憲府啓請: “纔經日變, 請停宴禮。”王令禮曹議啓。禮曹啓曰: “飲餽之舉, 在於禮文, 故該官雖不得不據例仰稟。而近來需辦連仍, 經費困竭, 誠有如言官啓辭。況初一日, 又有日食之變, 此正戒懼修省之時。雖曰飲福, 既名爲宴, 則似爲未安。陳賀之禮, 既命權停例爲之, 飲福宴依言官啓辭, 特命停止爲當。”王曰: “飲福宴非惟禮文所載, 予見祖宗朝舊例, 親享後必行。此非耽飲之比, 但纔經會盟宴, 又有日食之變, 依言官之啓, 今姑勿爲, 賀禮並停可矣。”</p>

	이 아니다. 다만, 회맹연을 지내자마자 또 일식의 변고가 있었으니, 언관의 계사에 의거하여 지금 잠시 행하지 말고 하례도 아울러 정지함이 옳다.” 하였다.	
광해 67권, 5년(1613 계축 / 명 만력(萬曆) 41년) 6월 6일(계사) 11번째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함경도에 돌림병이 여러 해 동안 그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기근까지 겹쳐서 근근이 살아 남은 백성들이 먹여주기만을 바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아예 구제하지 않고서 마치 딴 지역처럼 잊어버리고 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현재 각도의 창고 곡식이 똑같이 바닥이 나 늘 국가의 경비가 모자라 걱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손쓸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본사에 잡무명 90여 동(同)이 있으니, 별도로 차관(差官)을 차출하여 전량을 감사에게 보내되, 특히 기근이 심한 곳에 곡식으로 바꾸어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영동에 3, 4백 석의 삼수량(三手糧)이 있다고 하니, 이게 비록 별것 아니지만 본도로 하여금 도사에게 맡기어 수로를 통해 함경도의 첫 고을로 수송하도록 한 다음 본도가 또 차례로 수송하여 굶주리는 백성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備邊司啓曰：“咸鏡道癘疫，經年不止，加之以饑饉，孑遺之民，望舖垂盡。而朝廷曾無賑救之事，有若置之於相忘之域者，極爲可慮。目今各道倉穀，一樣罄竭，國家經費，每患乏絕，百爾思量，他無容手之地。只有本司雜木九十餘同，另差差官，沒數輸送于監司處，或貿穀，以給尤甚飢荒處。聞‘嶺東有三手糧三四百石’云，此雖零星，令本道都事句管，以水路輸入于咸鏡道初面官，本道又爲次次輸轉，分給饑民，宜當。”傳曰：“允。”
광해 67권, 5년(1613 계축 / 명 만력(萬曆) 41년) 6월 15일(임인) 10번째기사	국청에 술을 내렸다.	鞫廳宣醞
광해 76권, 6년(1614 갑인 / 명 만력(萬曆) 42년) 3월 26일(무인) 4번째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역적의 옥사가 계속 일어나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천재가 거듭 되어 백성들이 곤궁하고 국고가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또 초봄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아 파종을 못하였고 보리와 밀도 말라죽었으니, 앞으로의 기근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앙을 구제하고 백성을 구휼할 계책을 의당	司憲府啓曰：“比年以來，逆獄繼起，內外騷然，天災荐臻，民窮財盡。又自春初，迄今不雨，種不入土，兩麥亦枯，前頭飢饉之患，有難勝言。救災恤民之策，所宜修舉，而乃於茲者，特

	<p>마련해서 거행해야 하기에, 이에 특별히 조도종사관(調度從事官)을 차임하여 각도에 파견하여 장차 산과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취하고 다른 고을에서 나누어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과 군수(軍需)를 마련하게 한 것이 그 뜻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다만 이전에 전쟁을 할 때에 일찍이 부득이 이 일을 시행했었는데, 어염색목(魚鹽色目)에 대한 세금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되고 말았으므로 바닷가 백성들의 원망과 괴로움이 이미 극에 달해 낭패스럽고 내지로 반입하는 수고로움 또한 심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녹아버리고 줄어들어 백성들에 공급하는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몰아붙쳐 재촉하고 강제로 팔게 하는 가혹함이 괴외의 막중한 부세가 되었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의 원망이 지금까지 뼈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농사가 자못 풍년이 들었는데도 폐단이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하물며 오늘과 같은 민생의 형편으로써 별도로 성사(星使)를 파견하여 사방을 소요스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호조에 명하여 자금의 형편을 다시 헤아려 알맞는 조치를 하게 하고 속히 명하여 종사관을 소환해서 곤궁한 백성들의 일분의 폐단이나마 풀어주소서.”</p>	<p>差調度從事官，派遣各道，將以取辦山海，分質列邑，所以資國用而辦軍需，其意豈偶然哉？但往在兵戈之際，曾爲此不得已之舉，而魚鹽色目之稅，未免徵斂之歸。海路怨苦，已極狼狽，內地搬入，勞擾亦甚，消融損縮，給民無幾。而其驅催勒賣之苛，爲科外莫重之賦，愚民怨氣，至今入骨。當此之時，年穀頗登，而弊猶如此，況以今日之民生時勢，而可以別遣星使，侵擾四方乎？請令戶曹，更量時宜，從便處置，而從事官亟命召還，以(紓)〔紓〕窮民一分之弊。”從之。</p>
<p>광해 77권, 6년(1614 갑인 / 명 만력(萬曆) 42년) 4월 28일(경술) 3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사직단 친제 의주를 서계합니다. 그중 상께서 대궐을 출입하실 때엔 모두 소여(小輿)를 타시고 음복(飲福)·수조(受胙) 등의 예도 거행하지 않습니다. 선왕 조에 기우제를 몸소 올리실 때의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자가 있으므로 의주 속에 이와 같이 마련한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고례(古例)는 빙거할 만한 명문(明文)이 없고 더구나 이때는 승여(乘輿)를 타고 출입할 수 없으니 나와 세자는 우선 연(輦)을 타고 출입하도록 다시 마련하여 입게하라.” 하였다.</p>	<p>禮曹啓曰：“社稷親祭儀註書啓矣。其中自上出還宮時，皆乘小輿，飲福、受胙等禮，亦不舉行。先王朝祈雨親祭時，有分明記憶者，故儀註中如是磨鍊之意，敢啓。”傳曰：“知道。古例未有可據明文，況當此時，不可乘輿出入，自上與世子，姑乘輦往還事，改磨鍊以入。”</p>
<p>광해 78권, 6년(1614</p>	<p>사직단에서 몸소 기우제를 올렸다.</p>	<p>親行祈雨祭于社稷。</p>

<p>갑인 / 명 만력(萬曆) 42년) 5월 4일(을묘) 1번째기사</p>		
<p>광해 80권, 6년(1614 갑인 / 명 만력(萬曆) 42년) 7월 11일(신유) 8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쌀 2백 석을 내수사로 보내주도록 하라.”</p>	<p>傳曰：“米二百石，內需司輸送。”</p>
<p>광해 80권, 6년(1614 갑인 / 명 만력(萬曆) 42년) 7월 11일(신유) 10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석회(石灰) 2백 석을 내수사에 지급하도록 하라.”</p>	<p>傳曰：“石灰二百石，內需司題給事，言于該曹。”</p>
<p>광해 80권, 6년(1614 갑인 / 명 만력(萬曆) 42년) 7월 14일(갑자) 3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기를, “서울의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실로 걱정스럽지만, 서쪽 변경의 군량도 반드시 미리 염려해야 되는데, 관서의 전세(田稅)를 상납하지 않게 한 것은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변경에 있는 장수들의 식량에만 쓸 뿐이겠습니까. 대개 변경에 군량을 많이 축적하였다가 갑작스러운 변고에서 쓸려고 한 것입니다. 계축년의 전세미(田稅米)에 수송하는 비용을 함께 주어 연해의 각 고을로 하여금 배에 실어 의주로 들여보내면 원래 정해진 수량에 비해 반드시 몇 배나 될 것입니다. 각 관창(官倉)에서 축적하였다가 방출할 쌀도 가을 안에 수량을 정하여 의주 등지의 창고에 실어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본도에서 진상하는 삼(蔘)의 값, 강변(江邊)의 공물 값, 내지(內地) 각 고을의 세두(稅豆)를 바꾸어 받아들인 목면으로 으레 상납할 것을 아직 실어보내지 못한 것들이 60동(同)이고, 체찰사 부서에서 마련하여 본도에 유치해 둔 목면도 40동인데, 이를 필수(匹數)로 계산하면 5천 필입니다. 지금 가을로 접어들려는 즈음에 미리 민간에 나누어 지급하였다가 추수를 한 뒤에 시장의 시가(時價)로 받아들인다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1필로 1곡(斛)의 쌀을 바꿀</p>	<p>戶曹啓曰：“京師經費，固患難備，而西塞糧餉，亦須預慮，關西田稅，不爲上納，其意有在。豈但爲塞上邊將支糧而已哉？蓋欲儲峙邊上，以擬緩急之用耳。癸丑條田稅米，竝與輸運之價，令沿海各官，載船輸入于義州，則其視元數，必至倍蓰。各官倉儲斂散之米，亦宜趁秋成量數，輸入于義州等處倉廩爲當。本道進獻蔘價，江邊貢物價；以內地各官稅豆，換作木綿，例上納未及輸來者，其數六十同，體府措備木綿留在本道者，亦有四十同，以疋數計之，則五千疋也。今當夏秋之交，預爲散給民間，秋成從市直收捧，則一疋一斛之米，不勞而換。將此事意，已</p>

	<p>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뜻을 가지고 이미 본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다시 알리도록 하소서.</p> <p>또 한 가지 사안이 있기에 감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쪽 지방의 열읍(列邑)에 본래 화기(火器)를 쓰는 데 필요한 여러 기구들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응용하는 것은 화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화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은 있지만 구리와 쇠를 넉넉히 사들일 길이 없습니다. 부산포(釜山浦)에 공무역(公貿易)으로 사들인 구리와 쇠 9천여 근(斤)을 해로(海路)를 통하여 차례 차례 운송하도록 작년 여름에 이미 계청하여 알렸습니다. 방금 신의 조(曹)에 실어 온 것 중 신의 조에 유치하였다가 불시의 용도로 쓸 3천여 근을 제외한 6천 근을 평안도 관찰사 관할로 운송하여 화기를 주조하게 한다면 적을 막는 데 쓸 이기(利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리와 쇠 1근당 목면 반 필로 값을 친다면 6천 근의 구리와 쇠는 목면 3천 필이 됩니다. 이것을 쌀로 바꾼다고 계산하면 실상 3천 석에 밀돌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군기(軍器)와 군량을 일거에 모두 마련할 수 있으므로 참으로 유익할 듯합니다. 이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p> <p>대개 평소 국가가 관서의 선로(船路)를 미리 금한 것은 본도의 미두(米豆)를 항상 풍족하게 하여 위급할 때의 용도로 쓰려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곡식을 무역하는 일은 타도에 비하여 매우 쉽습니다. 감히 이러한 일로 여쭙니다.”</p>	<p>爲移文于本道，請更爲行會。 又有一事，不敢不稟。 西方列邑，素無火器諸具。 臨戰應用，莫及於火器，雖有其價，優質銅鐵，亦無其路。 釜山浦公貿易銅、鐵九千餘斤，自海路次次運來事，上年夏間，曾已啓請行會。 今方來到輸入臣曹，除三千餘斤，留置臣曹，以爲不時國用外六千斤，運送平安道觀察使處，使之鑄成火器，則可備禦敵之利器。 每銅鐵一斤，準折木綿半疋，則六千之價，卽三千匹也。 所換之米，實不下三千石，如此爲之，則軍器、軍餉，一舉皆備，恐爲允益。 此一款請令廟堂速議處之， 大概平日國家，預禁關西船路者，蓋欲使本道米豆常足，以需急用。 故貿穀一事，比他道頗易、敢此仰稟。” 從之。</p>
<p>광해 90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5월 21일(병인) 3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p> <p>“올해의 가뭄은 근고에 없던 일로 불쌍한 생민들이 목숨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 까닭을 따진다면 전적으로 못난 내가 임금의 자리에 오른 때문이다. 깊이 조심스럽고 두렵구나. 내일부터 정전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고 풍악을 거두겠다.”</p>	<p>傳曰：“今年旱災，近古所無，哀我生民，大命近止。 究厥所由，專由不辟冒忝之致， 深用兢惕。 自明日避正殿、減膳、撤樂。”</p>
<p>광해 90권, 7년(1615)</p>	<p>왕이 기우제를 친히 행하고 궁으로 돌아왔다.</p>	<p>王親行祈雨祭，還宮。</p>

<p>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5월 29일(갑술) 1번째기사</p>		
<p>광해 93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8월 27일(신축) 1번째기사</p>	<p>【공성 왕후(恭聖王后)의.】 신주(神主)를 고쳐 썼다. <축시에> 친제를 행한 후 환궁하였다. 이날 한밤중에 장단(長湍)에 큰 비가 오고 벼락이 쳤다. <하서면(下西面)에 사는> 충의위 유광정(柳光庭)의 집에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마굿간을 불태웠는데 말 1마리와 소 2마리, 닭 10여 마리가 모두 불타 죽었다. 【이때에 재변이 이루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이것은 이번 가운데 큰 것이다. <마침 친제를 지내는 날 일어났으니 하늘이 아무 뜻도 없이 한 것이겠는가.> 】</p>	<p>恭聖王后改題主。(丑時，行)親祭卯時後，還宮。是日夜半，長端湍大雨雷震。(下西面居)忠義柳光庭家，火燄自天而下，焚其廐，一馬、二牛、鷄十餘首皆燒死。【當時災變，固不可殫記，而此則異之大者也。(適出於親祭之日，天其無意哉!)]</p>
<p>광해 97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11월 3일(을해) 1번째기사</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올해의 흉작은 예전에는 없던 일로서 하삼도(下三道)가 더욱 심합니다. 이처럼 수확하는 계절에 이미 호구하기 어려워져 길에 뿔뿔이 흩어져 떠돌고 있으니 듣고 보기에 참혹합니다. 명년 봄에 이르면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니, <구황(救荒)하는 계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부터 큰 흉년에는 반드시 중신(重臣)이 황정(荒政)을 관장하였으니, 지금 역시 구규(舊規)에 의하여 중신 한 사람을 진휼사(賑恤使)로 이름을 붙이고 종사관 한두 사람을 차출하여 구황하는 일을 때맞추어 요리해서 굶주리는 근심이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備邊司啓曰：“今年凶歉，振古所無，下三道爲尤甚。當此收成之節，已有艱食之歎，流亡載路，聞見慘惻，若至明春，則又有甚焉。(救荒之策，不可不預爲講究。)自前如遇大無之年，則必以重臣，句管荒政。今亦依舊規，重臣一員，稱以賑恤使，從事官一二員差出，救荒之事，及時料理，俾無捐瘠之患。敢啓。”傳曰：“依啓。”</p>
<p>광해 98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12월 3일(을사) 1번째기사</p>	<p>평안 감사 김신국(金薰國)이 치계하였다. “호조의 이문에 따르면, 본도의 삼값으로 내는 포는 매 필당 쌀 17두이고 노비신공은 매 필당 작미(作米) 30두입니다. 또 교지의 내용에 따르면, 본도 연해 지역의 각 고을의 쌀, 콩, 벼를 합하여 3만 석을 얼음이 풀리면 즉시 이전(移轉)할 곳으로 올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본도의 농사가 조금 잘 되었다고는 하나 눈보라와 이른 서리</p>	<p>平安監司金薰國馳啓曰：“伏准戶曹移文內，以本道參價布，則每匹米十七斗，奴婢身貢，則每匹作米三十斗。又伏准有旨內，以本道近海各官米太租合三萬石，解冰即時，上送于移轉所云。臣竊念本道農事雖曰稍稔，風雪</p>

	<p>로 손상을 입은 것이 태반이나 됩니다. 지금 이 해안의 각 고을에서 납부해야 할 쌀, 콩, 벼가 2만 석 이상이고 노비신공 명주를 작미한 것도 1만 2천여 석이며 선수청(繕修廳) 작미도 1만여 석이나 되는데, 해안 고을의 전안(田案)은 4만여 결에 불과합니다. 4만여 결의 땅에서 크게 흉년이 든 해에 5만 석의 엄청난 곡식을 마련해 내자면, 그 지역의 소출을 다 굶어내더라도 결코 징수해야 할 수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삼값 포의 시장 가격은 한 필에 단지 5, 6두인데 지금 15두를 요구하고 노비신공의 명주도 15두에 불과한데 지금 30두를 내라 하여 억지로 배나 넘게 정하니 원망이 끝이 없으며, 각 고을의 노비들이 모두 와서 명주 2필로 내기를 원하니 정상이 매우 불쌍합니다. 전 항목의 이전할 쌀, 콩, 벼 3만 석과 중화·평양 두 고을의 전세는 비록 종자와 양식을 헤아리지 않고 올려보낸다 하더라도, 삼값과 노비신공 명주의 작미는 잘 생각해 재량하셔서 중국으로의 사행길 길목의 백성들이 무너져 흩어지는 근심이 없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p>	<p>早霜，損傷過半。今此海邊各邑應上納米太租，不下二萬石，奴婢貢紬作米之數，亦一萬二百餘石，繕修廳作米，亦不下萬餘石，而濱海田案，不過四萬餘結。夫以四萬結大無之所收，辦出五萬石許多之穀，則雖盡其地之出、竭其廬之入，決不可取盈於徵科。且今市價，參價布則匹直米五六斗，而今責十五斗，奴婢貢紬，則亦不過十五斗，而今責三十斗，勒定倍稱，斂怨罔極，各邑奴婢齊來，願納二匹，情極矜悶。前項移轉米太租三萬石及中和、平壤兩官田稅，雖不計種糧而上送，參價、貢紬作米，商量裁處，使赴京一路之民，俾無潰散之虞(何如)?”</p>
<p>광해 98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12월 6일(무신) 2번째기사</p>	<p>승지 황근중이 아뢰기를, “좌상에게 술과 음악을 하사하는 일을 공홍도와 경상도 감사 등에게 분부할 시간이 급하니 금군에게 말을 주어 내려보내소서.” 하자,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p>	<p>承旨黃謹中啓曰：“左相處賜酒樂事，公洪、慶尙監司等處有旨時急，請以禁軍給馬下送。”傳曰：“允。”</p>
<p>광해 98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12월 7일(기유) 1번째기사</p>	<p>좌의정 정인홍에게 궤장과 술·음악을 내리는 일로 도승지 윤선(尹銑), 주서 김구(金渠), 예조 정랑 박수서(朴守緒), 중사 최언준(崔彦俊) 등이 명을 받들고 하직하고 떠났다.</p>	<p>左議政鄭仁弘處，賜几杖酒樂事，都承旨尹銑、注書金渠、禮曹正郎朴守緒、中使崔彦俊等，承命拜辭而行。</p>
<p>광해 98권, 7년(1615)</p>	<p>장악 도감이 아뢰기를,</p>	<p>掌樂都監啓曰：“(來)明春親蠶後勞酒</p>

<p>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12월 9일(신해) 3번째기사</p>	<p>“내년 봄 친잠(親蠶)한 후 위로하는 주연을 베풀 때에 시행한 <기생의 여러 가지 정재(呈才) 단자(單子)를 낙점받은 것 안에, 침향산 학무(沈香山鶴舞)를 정재에 아울러 넣어서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위로 주연에서 정재는> 여자 기생으로 행하는 것이 규례인데 침향산 학무는 남자의 무악입니다. 이 주연은 내정에서 설행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히 여쭙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평소에 내정에서 처용무(處容舞)를 관람할 때에도 학무(鶴舞)가 있었으니 조사하여 이 예에 따라 살펴 행하라. 혹 여자 기생에게 가르쳐서 해도 될 듯 싶다.”</p> <p>하였다.</p>	<p>宴時, (女妓)各樣呈才(單子落點內, 沈香山鶴舞, 竝入於呈才, 磨鍊施行事, 傳教矣。 勞酒宴呈才則)以女妓行用規例, 而沈香山鶴舞則係是男樂。 此乃內庭所設, 何以爲之? 敢稟。” 傳曰: “平時內庭觀處容時, 亦有鶴舞, 查倣此例察行。 或以女妓教習爲之。” ○(巳時, 太白[見]於未地。)</p>
<p>광해 98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12월 14일(병진) 3번째기사</p>	<p>비변사가 아뢰기를, “하삼도에 보낼 진휼사를 이미 차정하여 이제 진휼 정책을 시행할 참입니다만, 삼도의 기근은 전고에 없던 바이므로 반드시 힘을 다하여 조치해야만 만의 하나라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외의 저축이 탕진되어 나라나 민간이나 빈 몸뚱이뿐이어서 옮겨서 진구할 계책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p> <p>감영과 병영에 저축해둔 미곡 중 원수에 매이지 않은 것의 경우는 혹 거두어 가져다가 쓰임에 보탬 길이 없지 않지만 이미 선수 도감(繕修都監)의 용도로 삼아서 이제 그 사이에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각 고을 관청의 저축에 이르러서도 자잘하게 남은 것들을 모아들일 방법은 있지만 이처럼 큰 흉년이 든 해에 거두어들이기 어려우니 다시 취해 쓸 형편이 못 됩니다.</p> <p>양서 지방만은 조금 곡식이 익었으니, 각 고을 창고의 곡식을 그 원수(元數)의 다과에 따라 수를 헤아려 덜어내서 이른 봄까지는 경강(京江)에 도착하게 하고 삼도의 진구 정책의 완급을 참작하여 아래로 나누어 내려보내어, 한편으</p>	<p>備邊司啓曰: “下三道賑恤使臣, 已爲啓差, 今方料理, 而三道之飢饉, 振古所無, 必須盡力措置, 可救萬一。 而日今中外蕩竭, 公私赤立, 推移賑救, 計沒奈何。 如監兵營所儲米穀, 不繫元穀者, 或不無收取補用之路, 而已爲繕修都監之用, 今難着手於其間。 至於各官官廳之貯, 亦有零星湊合之路, 而若此大無之歲, 亦難收捧, 更無取用之勢。 唯兩西稍稔, 各官倉穀, 從其元數多寡, 量數除出, 須及早春, 運到京江, 酌其三道賑救之緩急, 派送本處, 一以爲救荒之資, 一以爲種子之用, 似不得已。 今聞戶曹已有此慮,</p>

로는 구황의 밑거리를 삼게 하고 한편으로는 종자의 용도를 삼게 하는 것이 부득이 할 듯싶습니다. 이제 들으니 호조가 이미 이러한 계려를 갖고 평안도의 창곡 중 쌀 1만 4천여 석을 초봄에 즉시 상납하라는 뜻으로 계하(啓下)하여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수를 비록 다 진구하는 용도로 삼을 수는 없겠으나, 종자로 쓸 벼의 숫자가 적어 삼도에 두루 미치지 어려우니 본도에 수를 헤아려 더 배정하거나, 혹 황해도에서 4, 5천 석을 때맞춰 올려보내도록 하는 일을 호조로 하여금 계품하여 통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년의 한재는 너무나도 심하여 봄여름부터 벌써 가을 수확이 없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였으므로 양호 지방의 백성들은 가을도 되기 전부터 이미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을 근심이 있어 다시 해를 넘겨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진휼을 의논하는 거조는 이렇듯 더디니, 이제 비록 충분히 힘을 들여 열심히 조치하더라도 늦어서 제때에 미치지 못해 눈썹이 타는 듯한 형세를 구할 수 없을 터인데, 더구나 이제 앞서 진술한 것처럼 망연히 손대볼 곳조차 없는 데이겠습니까.

예로부터 구황 정책은 반드시 진대(賑貸)를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죽과 나물국으로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에 부족하고, 관이 침탈하는 바가 없이 조세를 건감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백성을 구휼하는 실제 은혜인 것입니다. 삼도 중 양호 연해 지방의 극심한 각 고을에 대해서는 내년엔 받아야 할 공물을 중요한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일체 모두 탕척하여 받아들이지 말아서, 조정이 구휼하는 은혜로운 뜻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실로 구황 정책의 첫번째 의의입니다. 호조로 하여금 상세히 살펴 거행하게 하고 먼저 이 뜻을 가지고 해도에 이문하여 민간에 알리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관서의 쌀과 콩을 어찌 지나치게 많이 취해 쓸 수야 있겠는가. 참작해서 쌀을 운반하도록 하라.”

平安道倉穀米一萬四千餘石，開春卽時上納之意，啓下行移云。此數雖不得盡爲賑救之用，而種租數少，難以遍及三道，或於本道，量數加定，或於黃海道四五千石，及時上送事，令戶曹啓稟知會爲當。大概今年旱荒太甚，自春夏已占無秋，兩湖之民，未及秋成，已有流離丐乞之患，更無卒歲之意。而國家議賑之舉，未免若此遲緩，今雖萬分用力，拮据措置，緩不及時，無救燃眉之急。況今茫無下手之地者，如前所陳乎？自古荒政，必以賑貸爲先。蓋以(糜粥)〔糜粥〕菜羹，不足以活人性命，而蠲免租賦官無所侵，以安其居者，斯爲賑民之實惠也。三道中，兩湖沿海尤甚各官，明年應納貢物，勿論繁歇，悉皆蕩滌勿捧，以示朝廷憂恤惠鮮之意，此實荒政之第一義也，令戶曹詳察舉行。先將此意，移文該道，使之知悉民間何如？”答曰：“允。關西米太，豈可過多取用？參酌運米。”

	하였다.	
광해 98권, 7년(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12월 25일(정 묘) 1번째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안변 부사(安邊府使) 이시발(李時發)이 비축한 염초가 매우 많아 6백 13근이 나 됩니다. 한 도에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도보다도 우수하니 매우 가상합니다. 논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가자하라고 전교하였다.	兵曹啓曰：“安邊府使李時發所備焰硝， 多至六百十三斤。非但甲於一道，亦 且優於他道，極爲可嘉。論賞何如？” 傳曰：“加資。”
광해 104권, 8년 (1616 병진 / 명 만력 (萬曆) 44년) 6월 19 일(무오) 5번째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윤근수(尹根壽)에게, 예조의 계사에 따라, 쌀 열 다섯 섬, 콩 다섯 섬, 술 다 섯 병, 산 돼지 한 마리, 닭 다섯 마리, 석수어(石首魚) 20속을 특별히 하사하 였습니다. 해마다 상례로 삼으소서.” 하니, 따랐다.	戶曹啓曰：“尹根壽處，依禮曹啓辭， 特賜米十五石、太五石、酒五壺、生 豬一口、鷄五隻、石首魚二十束，歲以 爲常。”從之。
광해 106권, 8년 (1616 병진 / 명 만력 (萬曆) 44년) 8월 18 일(병진) 6번째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지난 5월 종묘 친제 후 음복연(飲福宴) 때에 시연관(侍宴官)에게 진설한 음 식상이 매우 누추하여 상께서 친림하는 잔치를 보기에 매몰스럽게 하였으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음복연과 상수연(上壽宴) 등의 각항의 연회 때에 만약 여전히 태만하고 소홀하게 하여 삼가 마음을 다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 예사롭게 추고해서는 결코 징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각사의 담당 관원은 과직하고 담당 아전은 잡아가두어 무겁게 다스릴 일을 승전을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承政院啓曰：“去五月宗廟親祭後飲福 宴時，侍宴官床排器皿，極麤極陋，使 親臨宴儀，所見埋沒，極爲駭愕。前 頭飲福、上壽各項宴禮，若有如前慢忽 不謹用意者，尋常推考，決難懲治。 各司色官罷職，色吏囚禁重治事，捧承 傳何如？”傳曰：“允。”
광해 106권, 8년 (1616 병진 / 명 만력 (萬曆) 44년) 8월 28 일(병인) 4번째기사	전교하였다. “전일 음복연을 할 때에 전좌(殿坐) 후의 연례(宴禮)를 즉시 거행하지 않아서 밤에까지 이어졌다. 지금 이후로는 이전의 전교에 의거하여, 전좌한 뒤에 즉 시 연례를 거행하여 지체시키지 말 일을 사용원에 말하라.”	傳曰：“前日飲福宴時，殿坐後宴禮， 不爲卽行，以致犯夜。今後依前傳教， 殿坐後卽行宴禮，勿爲遲滯事，言于司 饗院。”
광해 106권, 8년 (1616 병진 / 명 만력	전교하였다. “교외에서 친히 제사를 지내어 그 성공을 고하는 것은 그만둘 수가 없는 예	傳曰：“親祀于郊，告厥成功，所不可 已之禮也。第以予候不平，開月節寒，

<p>(萬曆) 44년) 8월 29일(정묘) 2번째기사</p>	<p>이다. 다만, 나의 건강이 좋지 않고 다음달은 절기가 추울 것이니, 예를 행하기 어려울 듯하다. 외방에서 하전(賀箋)과 물선(物膳) 등을 올리는 일도 다시 행회(行會)한 뒤에 봉진하라고 통지하고 신칙하도록 하라.”</p>	<p>似難行禮。 外方賀箋、物膳等事，更爲行會後封進事，知委申飭。”</p>
<p>광해 107권, 8년 (1616 병진 / 명 만력 (萬曆) 44년) 9월 7일 (을해)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음복연을 할 때에 가낭청(假郎廳)이 적은 듯하였다. 상수연(上壽宴) 때에는 10명을 나이 젊은 사람으로 더 차출하여 즉시 일을 도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수연에 입시할 인원을 이달 20일 이전에 미리 상세히 살펴 서계하여 그때에 가서 전도되는 걱정이 없도록 하라.”</p>	<p>傳曰：“飲福宴時，假郎廳似少。 上壽宴時，十員以年少人加差出，使之卽爲進止，勿致遲滯。 且壽宴入侍人員，今月二十日前，預爲詳察書啓，俾無臨時顛倒之患。”</p>
<p>광해 108권, 8년 (1616 병진 / 명 만력 (萬曆) 44년) 10월 16일(계축) 2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권화(勸花)를 아주 형편없이 조잡하게 만들었으니 일을 매우 소홀하게 한 것이다. 해당 관원을 각별히 추고하라.”</p>	<p>傳曰：“內外命婦勸花麤造無形，事甚慢忽。 當該官各別推考。”</p>
<p>광해 108권, 8년 (1616 병진 / 명 만력 (萬曆) 44년) 10월 16일(계축) 3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사화봉(絲花鳳)을, 대전(大殿)의 잔치 상에 사용한 것을 내전(內殿)에 옮겨 사용하였다 하니, 오늘날 나라의 저축이 바닥이 났다고는 하나 이 꽃을 어찌 만들 수 없었던 말인가. 해당 관원이 매우 일을 잘못된 것이다. 해당 관원을 각별히 추고하라. 뒷날 두 번째 존호를 올릴 때에는 내전의 사화봉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일을 신칙하여 시행하라.”</p>	<p>傳曰：“絲花鳳以大殿宴床所用件，移用於內殿云。 目今國儲雖曰虛竭，此花豈不得造用乎？ 該官之不能甚矣。 當該官各別推考。 今後再上號時，內殿絲花鳳，別爲造用事，申飭爲之。”</p>
<p>광해 108권, 8년 (1616 병진 / 명 만력 (萬曆) 44년) 10월 20일(정사) 3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26일 선수 도감에 사연(賜宴)을 할 때에 1등 주악(一等酒樂)을 내리고 내외의 선온(宣醞)도 아울러 마련하여 살펴 시행하라.”</p>	<p>傳曰：“二十六日繕修都監賜宴時，賜一等酒樂，內外宣醞，竝磨鍊察爲。”</p>
<p>광해 112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 (萬曆) 45년) 2월 2일 (정유) 6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도감 군사에게 지급하는 요미(料米)를 어찌하여 도감에서 요리해서 전과 같이 나누어주지 않는가? 한결같이 전례에 의거해서 급급히 마련해서 처치하라.”</p>	<p>傳曰：“都監軍兵料米，何不自都監料理，依前分給乎？ 一依前例，急急措備處置。”</p>

<p>광해 112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 (萬曆) 45년) 2월 2일 (정유) 7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도감 군병에게 주는 요식(料食)을 이미 정해진 수대로 나누어 주었는가? 살펴서 아뢰라. 그리고 잡곡으로 나누어주지 말고 쌀로 나누어주는 일을 착실히 거행하라.”</p>	<p>傳曰：“都監軍兵料食，已爲准給乎？察啓。勿以雜穀充給，以大米擇給事，着實舉行。”</p>
<p>광해 113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 (萬曆) 45년) 3월 8일 (계유) 2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기를, “〈내섬시 제조의 계사에서 말한 ‘공물(貢物)을 납부하지 않은 수령을 파직하고, 또 작미(作米)하지 말며, 봉자전(奉慈殿)에 복정(卜定)하였다가 도로 혁파한 물품을 해사(該司)에 옮겨서 납부케 하고, 또 부족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호조로 하여금 사들여서 쓰게 하라.’는 일에 대해서, 상께서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시었습니다.〉 각사의 외공(外貢)을 난리 뒤에 상정(詳定)할 때 눈앞에 당장 쓸 것만 계산하고 뒷날에 늘어날 것은 미처 생각지 않았습시다. 이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외방의 공물이 일제히 한꺼번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각사의 지용(支用)이 태반이나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다 가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는데, 〈내섬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각사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에 공문을 보내어 독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도가 모두 마찬가지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픡니다. 〈내섬시 외의 다른 각사도〉 일제히 조사해서 3년이 지나도록 공물을 납부하지 않은 수령은 일일이 파직하되, 사면령을 내리기 전의 일이더라도 구분하지 말고 파직하여 뒷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내섬시에서는 스스로 마련할 길이 없으니 호조로 하여금 무역해서 진배(進排)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본조를 설립한 것은 본디 각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 각사를 두루 살피고 규검(糾檢)하여 거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지난날에 난리가 끝난 지 얼마 안되어서 각 해사가 제대로 모양</p>	<p>戶曹啓曰：“(以內贍寺提調啓辭‘貢物未納守令罷職，且勿作米，奉慈殿卜定，還罷之物，移納其司，又有不足之物，令戶曹實用’事，傳曰：‘依啓’事，傳教矣。)各司外貢，亂後詳定時，只計目前之所用，不思他日之甚繁。式至于今，外方貢物，設令一齊上來，各司支用，則爲半不足。而至有經年不納者，非獨內贍寺也，各司同然。行移催促，非止一再，專不動念，八道一樣，誠爲痛心。(內贍寺外，他餘各司，)一齊查考，過三年貢物不納守令，一一罷職，勿揀赦前，以懲後來，似爲宜當。(但‘內贍無路自辦，責令臣曹，貿易進排’云者，有所不然。臣曹之設，本非爲各司補不足而設立也。只爲摠察諸司，糾檢舉行而已。)頃年間，去亂未遠，各該司不成模樣之時，適因詔使之來，恐未成形，本曹盡收各司貢物，直捧於戶曹，懋遷有無。名之曰分戶曹，推移破補，仍設不廢。</p>

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마침 조사(詔使)가 나옴에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어, 본조에서 각사의 공물을 모두 거두어들여서 호조로 곧장 봉입(捧入)하여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변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분호조(分戶曹)’라고 이름하였는데, 부족한 것을 옮겨 쓰면서 그대로 설치해 두고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는 이른바 ‘분호조’란 것이 하나의 시장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좌아(坐衙)하고 있을 때에는 시정의 무뢰배들이 각자 물화(物貨)를 가지고 와 관아의 뜰을 가득 메운 채, 서로 이곳을 다투느라 뒤섞여서 떠들어대는데, 차마 보고 들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담당 낭관을 책임자를 뽑지 못해서, 연줄을 타고 청탁을 해 놀랄 만하고 침뱄을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각사의 하인들은 공물의 수취권을 빼앗긴 뒤로는 살아갈 길이 없어서 날마다 와서 하소연하는데, 그 정상 역시 가련합니다.

성상께서 갖가지 폐단을 모두 통찰하시고 여러 차례 정과(停罷)하라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지난해 송순(宋諄)이 본조의 판서가 되었을 때 폐단의 정상에 대해 통렬히 진달하면서 정과하기를 청하여 입계해서 윤허를 받았는데, 그 뒤에 송순이 마침 체차당하여서 정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이충(李冲)이 본조의 판서가 된 뒤에 더욱더 각사가 감당할 수 없고 하리(下吏)들이 이곳을 노리는 것을 보고는, 전에 이루어진 공사(公事)를 준행해서 각사에 소속된 물품을 하나하나 도로 내려보낸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각사의 공물을 본조에서 한 데 거두어 모을 때에는 지공하기에 부족한 각사의 모든 물품을 본조에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조에서도 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해사의 잡물(雜物)을 모두 도로 내려준 뒤에도 부족한 물품을 그대로 본조에 요청할 경우, 본조에서 무엇을 가지고 해사의 일을 대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사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계속해서 시행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1년 원공(元貢)의 숫자가 1년의 지공(支供)

自是之後，所謂分戶曹者，爲一市場。坐衙之時，市井無賴之輩，各持物貨，駢填衙庭，爭競毫末，喧聒雜亂，不忍看聽。況且爲色郎者，未必得人，夤緣請托，可駭可唾之事，不一而足。各司下人，則自貢物被奪之後，無所聊賴，逐日來訴，情理亦矜。自上默燭種種弊端，屢下停罷之教。上年間，宋諄爲本曹判書時，痛陳弊狀，請罷事入啓，蒙允之後，諄適見遞，仍不停罷。臣冲待罪本曹後，益見各司之難堪，下吏之射利，遵前已成公事，各司所屬之物，逐一還下，已閱月矣。各司貢物，萃合本曹之時，則各司凡干支供不足之物，宜請於本曹，本曹亦不得辭。及此該司雜物盡數還下之後，其所不足之物，亦爲仍請於本曹，則本曹何所資而替行該司之事乎？不但甚非事體，決非可繼之道。一年元貢之數，若或不足於一年之支供，則不緊貢物，減省可也，不然則加定亦可也。若因頃年之謬例而不思還下，如前進排，則爲戶曹者，不亦悶乎？(諸各司中，內贍爲寺，比他稍優，而尙且如是。則如內資、禮賓等，無形衙門，亦依內贍寺例，又

에 부족할 경우에는 긴요치 않은 공물을 줄여도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해의 잘못된 규례로 인하여 도로 내려준 것을 생각지 않고 전과 같이 진배(進排)하게 한다면, 호조에서도 역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각사 중에서 내섬시(內贍寺)는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나은 편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으니, 내자시(內資寺)나 예빈시(禮賓寺) 등과 같이 형편없는 아문 역시 내섬시의 예에 의거하여 본조로 하여금 똑같이 진배하게 할 경우, 모르겠습니다만, 본조에서는 어느 곳을 취하고 어느 곳을 버리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거행하고자 하더라도 결단코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시(本寺)에서 진배하는 어공(御供)이 실제로 많은데도 원공(元貢)이 적은 듯하므로 지난해 12월에 본시에서 보고한 것을 인하여서 부족한 물품을 그대로 항공(恒貢)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미(作米)한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숫자에 준하여 더 정하여 계하받아 행이(行移)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관서에서는 허락받지 못한 것을 얻은 지 얼마 안되어서 또다시 본조에서 도와주기를 요구하니, 역시 온당치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 5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참기름과 꿀의 수효가 8백여 두(斗)나 된다고 합니다. 이 거두어들이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 각도의 감사에게 각별히 하유해서 3월 안으로 납김없이 상납하게 한다면, 족히 몇 년 동안은 지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쓴 뒤에, 계속해서 쓰기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천천히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

공물을 작미(作米)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번에 본 호조에서 각사를 취사 선택해서 작미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체 전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였으며,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에 관계되는 것은, 성상의 분부에 따라서 작미하는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의 규례에서 상고해 보니, 봉상

令本曹，一樣進排，則未知本曹何取何捨乎？雖欲舉行，決不可得矣。且本寺進排御供果多，而元貢似少，故上年十二月間，因其寺所報不足之物，仍爲恒貢。此則不在於作米之數，准數加定啓下，行移僅數月矣。纔得他司所不得而又欲求助於本曹，不亦未安乎？過四五年，未納油、淸之數，多至八百餘斗云。以此未收之物，別爲下諭于各道監司，三月內無遺上納，則足爲數年之支供。用此之後，不足繼用之事，徐議施行，恐或宜當。) 至於貢物作米，今番不自臣曹取捨各司而作與不作，一依前規，係干祭享、御供，則遵奉聖教，不入於作米之中。而考諸前例，則奉常寺、典牲署，祭享也，尙衣院、司藥寺、司宰監、掌苑署及長興庫供上紙，御供，而內贍寺不在於御供各司之中。故已爲抄出，行會本寺。若論以御供各司，則如內資、司圃署、濟用監、義盈庫等司，皆言御供進排之司，若除內贍，則此等各司，亦將竝減。未知無頗作米者，獨何司乎？況此等各司貢物，在前牟利之輩防納之時，所謂各司私主人者，默無一言，而

	<p>시(奉常寺)·전생서(典牲署)는 제향에 관계되고, 상의원(尙衣院)·사도시(司隲寺)·사재감(司宰監)·장원서(掌苑署) 및 장흥고(長興庫)의 공상지(供上紙)는 어공에 관계되는데, 내섬시는 어공하는 각사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출(抄出)해서 본시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어공하는 각사로 논할 것 같으면, 내자시(內資寺)·사포서(司圃署)·제용감(濟用監)·의영고(義盈庫) 등 각사는 모두 어공을 진배하는 각사라고 말할 수 있으니, 만약 내섬시를 제외할 경우에는 이들 각사 역시 아울러 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탈 없이 작미할 수 있는 각사가 유독 어느 각사이겠습니까. 더구나 이들 각사의 공물은, 전에 모리배들이 방납(防納)할 때에는 이른바 사주인(私主人)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말 없이 있었는데, 본조가 국가의 경비가 부족해서 사유를 갖추어 입계해 우연찮게 성사시킨 뒤에 미처서는 떠들어 대는 바가 있으니,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p> <p>방납하는 사람들이 ‘본색(本色)의 숫자 역시 맞추어서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에서는 각종 공물에 대한 대가(代價)를 한결같이 그들의 말에 따라서 맞추어서 지급해 준 뒤에, 인정(人情)과 작지가(作紙價)에 이르러서도 다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그들의 뜻에 차지 않는 점이 있기에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맞게 된 연후에 그만두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일은 또한 해마다 그대로 시행할 규정이 아니라, 금년에만 그렇게 하고 그 만들 것입니다. 이미 거두어들여서 반 정도를 구처(區處)하였으니, 지금 다시 합하여서 도로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각사의 예에 의거해 시행하소서. 그리고 시급히 써야 할 부족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상규(常規)에 의거해서 여유가 있는 다른 각사에서 차하(上下)해 주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찌 그 사에 보탬이 됨이 적겠습니까.</p> <p>봉자전(奉慈殿)의 제향조(祭享條)에 이르러서는, 참깨·참쌀·꿀 등의 물품을, 이러한 물품이 항상 부족할까 걱정되는 내자시·예빈시·내섬시 등 각사에 나누어</p>	<p>及此本曹，因國計不足，具由入啓，偶然作米垂成之後，乃有所云云，極爲不當。防納之人，則‘本色之數，亦不爲准給’云。而本曹則各樣貢物之價，一從其言准給之後，至於人情作紙，亦爲盡給，則有何不滿於渠意，必欲稱其心，然後已乎？此事且非每年仍行之規，不過今年而止，既已收捧，爲半區處，今不可復合還給，依他各司例施行。如有時急不足之物，則依常規，他司有裕處，可以傳請上下，則此豈少補於其司哉？至於奉慈殿祭享條，眞荏子、粘米、清蜜，果爲分給於內資、禮賓、內贍等，該用常患不足之司。而內贍提調啓辭如此，而本寺御供，果倍於他司。沒數移給於內贍事，各道監司處，更爲行移何如？”傳曰：“允。此作米曲折，雖未詳知，而貢物上納者，二百餘年流來舊例也。到今一朝不意作米，未知如何。且今年爲之，明年則切勿作米。且上年已納貢物、各司御供，他司竝勿作米事，着實舉行。”</p>
--	---	---

	<p>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섬시 제조의 계사가 이와 같은데, 본시의 어공은 과연 다른 각사에 비해서 배는 됩니다. 그러니 수량 전부를 내섬시에 옮겨주도록 각도의 감사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p> <p>“윤허한다. 이번의 작미에 대한 곡절을 상세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공물을 상납하는 것은 2백 년 동안 해내려온 규례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작미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다. 금년에는 하되, 내년에는 절대로 작미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해에 이미 납부한 공물과 각사의 어공은 다른 사도 아울러 작미하지 말라. 이상의 일을 착실하게 거행하라.”</p>	
<p>광해 114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 (萬曆) 45년) 4월 8일 (임인) 9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기를,</p> <p>“함경도에 기근이 든 상황에 대해서는 신들이 일찍이 자세하게 듣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비국의 계사가 있었고 본도의 장계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으며, 그곳을 갔다가 서울로 온 장사(將士)들이 자자하게 말하는데 ‘길가에 굶어죽은 시체가 즐비하여 떠도는 자가 부지기수이다.’고 합니다.</p> <p>현재 다른 도는 약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들이 미리 조처하지 못하여서, 상처입은 자처럼 보살펴주는 성상의 은택이 끝까지 미치지 못하게 해한 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혹독하게 유망(流亡)하는 화를 입게 하였으니, 직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p> <p>지금은 이미 시기가 늦어서 공문을 보내어 곡식을 옮겨 진구할 경우 제때에 미처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듣건대, 본도는 지난해의 환자곡에 대하여 대부분 모곡(耗穀)을 거두지 못하여 조금 여유있는 고을 역시 낭비하는 걱정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인근에서 곡식을 옮겨올 만한 곳은 단지 강원도뿐인데, 큰 고개로 가로막혀 있는데다 영서 지방의 군읍(郡邑)은 거리가 또 멀어서 결단코 곡식을 수송할 수 없으며, 영동 지방의 아홉 고을에서 거두어들이는 숫자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에는 달리 의지할 만한 길이 없습니다.</p>	<p>戶曹啓曰：“咸鏡道飢饉之狀，臣等未曾詳聞。近有備局啓辭，本道狀啓連續入來，行過將士之入京者，無不藉藉言之：‘道殍相望流移者，不知其幾。’云。目今他道稍稔，而臣等不能預爲劃處，使聖上如傷之澤，有所未究，一方之民，酷被流亡之禍，不職之罪，誠有所難免也。今已節晚，行文移轉賑救之際，亦難趁期爲之。聞本道上年還上，多未收捧耗穀，稍裕之邑，亦未免有浪費之患。隣境可移之處，只有江原道，而隔以大嶺，嶺以西郡邑，則道里又遠，決無飛輓之勢，嶺東九官應捧之數，亦且不敷，然此外他無可資之路。如烽軍作米、各軍作米，則例爲該道閑漫之用云。此米及已輸運稅米，</p>

	<p>봉군(烽軍)의 작미(作米)와 각군(各軍)의 작미는 으레 해도에서 한만하게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쌀과 세미(稅米) 가운데서 이미 수송해 온 반을 제외한 나머지 세미 및 세태(稅太)·삼수량(三手糧) 등을 전부 함경도로 운송하게 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대로 진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작목(作木)해서 서울로 납부한 고을의 경우에는 가수미(加收米)를 덜어 내어 숫자를 채워서 운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강원도독운차사원(江原道督運差使員)과 함경도해창봉상차사원(咸鏡道海倉捧上差使員)에게 미리 강정해서 신속히 운송하고 폐단없이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아울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p>	<p>一半外餘數及稅太、三手糧等，沒數督運，隨捧隨賑而已；作木京納之官，則以加收米除出，充數移送；且江原道督運差使員及咸鏡道海倉捧上差使員，預爲講定快速運到，無弊收捧之意，並行移何如？”傳曰：“允。”</p>
<p>광해 114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 (萬曆) 45년) 4월 23 일(정사) 5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p> <p>“요즈음 들어 사용원에서 올리는 경기의 진상생물(進上生物)과 일차진상생물(日次進上生物)이 모두 심하게 썩어서 사람이 입을 댈 수가 없었다. 봉진한 관리 및 사용원의 담당 관리를 모두 추고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사용원 제조로 하여금 전과 같이 하지 말고 별도로 살펴서 봉입(捧入)하게 하라.”</p>	<p>傳曰：“近日司饗院京畿進上生物及日次供上生物，皆甚腐敗，人不忍近口。封進官吏及司饗院色官吏，竝推考。自今後着令司饗院提調勿如前日，另加檢察捧入。”</p>
<p>광해 114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 (萬曆) 45년) 4월 24 일(무오) 3번째기사</p>	<p>선수 도감이 아뢰기를,</p> <p>“호조에 이송해 올 쌀 1만 석이 각도의 각 고을에 흩어져 있는데, 필시 별도로 도감의 낭청을 차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독해서 받아들이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감역관(監役官)들이 다수 나가서 감독하느라 현재 부족한 걱정이 있어서 지금 또다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p> <p>풍력(風力)이 있는 문관 한 사람을 해조로 하여금 가려뽑게 해서 도감 낭청의 칭호를 주어 내려보내고, 황연도(黃延道)의 경우는 그 도의 도사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할하여 독촉해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가까운 도는 다음달 20일까지 먼 도는 30일 안으로 일제히 배를 이용해 올려보내게 하되, 그 가운데 제때에 거행하지 못하는 수령에 대해서는 계문하여 과출하게 하고, 도사가</p>	<p>繕修都監啓曰：“戶曹移送米萬石，散在各道各官，必得另差都監郎廳，使之督捧。而監役官等，多數出送/去監董，方患不足，今不可又爲出使。有風力文官一員，令該曹擇差，都監郎廳稱號下送，黃延道則令其道都事專管督捧。近道則來月二十日，遠道則三十日內，一齊船運上送，而其中趁不舉行守令，啓聞罷黜，都事慢不舉行，則先罷後推事，黃延、公洪、全羅等道監司</p>

	<p>태만하여 거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과직한 다음 추고하게 하소서. 이상의 일을 황연도와 공홍도·전라도 감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p>	<p>處，下諭何如?” 傳曰：“允。”</p>
<p>광해 118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 (萬曆) 45년) 8월 29 일(신유) 1번째기사</p>	<p>오시에 왕이 선정전에 나아가서 함경 감사 권진(權縉)과 북병사 이수일(李守一)을 인견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북쪽 변방의 일 중에 염려되는 것이 많다. 병력도 부족하고 인심도 흉흉하여 나는 밤낮으로 우려하고 있으니, 경들이 잘 상의해서 처리하여 북쪽을 염려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풀어달라.”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북로(北路)의 흉년은 근고에 없을 만큼 심각하여 얼음에서 바치는 환자곡과 조세를 전혀 거두어 들일 수가 없고 백성들도 굶주림에 시달려 사망으로 흩어져 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구제하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하니, 듣기에도 한심한 일입니다. 북방은 춥고 토지가 척박한 지역이므로 풍년 일지라도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개가죽을 입거나 말안치를 두르기도 하고 풀 열매나 겨를 먹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으로 떠난 후에 본토로 돌아갈 뜻이 없기 때문에 유랑민들의 짐보따리가 길에 이어져 필시 도내가 텅텅 비고 난 후에야 그만 둘 것입니다. 어찌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듣기에는 금년 농사가 조금은 여물었다고 하더니, 이달 초에 함흥(咸興) 이남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 심한 피해를 입는 바람에 갑산 등처에는 생계가 아득했는데, 이번에 또 우박의 재해를 당하여 들에는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실정은 예측할 수 없으며 변방 수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으니 애처로운 우리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구황 정책을 너무 늦게 실시하여 전적으로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영</p>	<p>午時，王出御于宣政殿，引見咸鏡監司權縉、北兵使李守一。王曰：“北鄙之事，可虞者非一。兵力之單弱，人心之恟懼，予日夜憂慮，卿等相議料理，以舒予北顧之憂。” 권진曰：“北路凶荒，近古所無，列邑還上貢稅，全不收捧，民生飢困，散而之四方，坐視而不得救，聞來事極寒心。北方寒苦，土地瘠薄，雖在豐年，居民或衣狗皮，或被馬韉，食草實糠粃者滔滔。及今流離他境之後，無意於本土，故流民繼屬道路，必至於空虛而後已。豈非大可憂者哉？初聞今年則禾穀稍實，本月初，咸興以南，大風大雨，禾穀盡爲損傷，甲山等處，生計蕭然，而茲者又值雨雹之災，野無所收。虜情叵測，邊圉空疎，哀哀赤子，無所依賴。前者救荒太晚，不得全活。嶺南、嶺東一帶移粟之策，一日爲急，而設使兩道監司處，下諭丁寧，當此多事之日，他道救急，恐不能着實舉行。自朝廷擇差御史有風力幹事之人，下送</p>

	<p>남과 영동 일대에서 곡식을 운반할 대책이 하루가 급한데, 설사 두 곳 감사에게 간곡히 하유한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일이 많은 때에 다른 도를 지원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착실하게 거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위풍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어사로 차출하여 영남과 영동 등처에 내려보내서 안변(安邊)으로 서둘러 운반하게 하고, 안변 이북의 지역은 마상선(馬尙船)으로 운반해 주어서 다 죽어가는 북로의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한다면 이보다 다행스런 일이 없겠습니다.”</p> <p>하니, 왕이 이르기를, “구황 어사를 해조로 하여금 차출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왕이 권진에게 묻기를, “구황 어사를 본도에 보내야 하는가?”</p> <p>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본도에는 한 말의 곡식도 없습니다. 경상도와 강원도에 보내서 감독하여 운반하게 해야 합니다. 신이 드릴 말씀은 이렇습니다. 본도에는 그전부터 본래 사대부가 없고 단지 우직하고 성질 사나운 백성들만 있어서 일을 논의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로 보면 이시애(李施愛)의 난리에 열읍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고 임진년(壬辰年) 변란 때에도 왕자와 재신을 결박하여 적들에게 넘겨 주었으니, 인심이 패악스럽다는 것은 이것을 갖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p> <p>그러나 생각건대, 국가에서 그전부터 북쪽의 백성들을 다른 도와 달리 대우해 왔습니다. 옷감을 지급하거나 홀전을 실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니, 백성들이 국가에 대하여 무슨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다만 변방 장수와 수령이 한도 끝도 없이 침해하고 못살게 굴고 있어도 조정이 너무 멀어서 혜택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변방에 일이 생기면 백성들이 모두 무기를 거꾸로 들고 윗사람을 질시하곤 하는데, 이것이 어찌 백성들만의</p>	<p>于嶺南、嶺東等處， 催促轉運于安邊， 安邊以北， 自當以馬尙舡移運， 庶救北路垂死之民。 不勝幸甚。” 王曰：“救荒御史， 令該曹差出。” 王問於縉曰：“救荒御史， 當送於本道耶？” 縉曰：“本道無一斗之粟。 慶尙、江原兩道差送， 使之督運， 臣之所達如此矣。 本道自古素無士大夫， 只有愚悍之民， 無可與議事之人。 以往事見之， 則李施愛之亂， 列邑皆叛， 及乎壬辰之變， 王子、宰臣， 縛而與賊， 人心之悖惡， 執此可知矣。 第念國家自前待北民， 與他道頓殊。 至於給與衣資優恤之典， 靡所不用其極， 則民之於國家， 安有携異之意哉？ 但邊將、守令侵漁剝割， 罔有紀極， 而朝廷懸遠， 屯膏不下， 少有邊警， 則民皆倒戈， 疾視長上， 此豈惟民之罪哉？ 必有所召者矣。 小堡邊將， 雖不能皆得其人， 主鎮之官， 不可不擇遣也。 如有貪殘之輩， 則臣當不待殿最， 續續請罪， 自朝廷繩之重律， 以懲其惡。 此意亦申飭銓曹， 各別擇差。” 王曰：“主鎮之官， 則非銓曹所擬， 備邊司議薦， 而何至如此耶？” 縉曰：“該曹司當初豈不欲精擇乎？ 第人不畏法，</p>
--	---	--

	<p>죄이겠습니까.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p> <p>소보(小堡)의 변장은 비록 모두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진(主鎭)의 관원만은 제대로 선출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탐학한 무리가 있으면 신은 고가 평정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청할 것이니, 조정에서는 무거운 울로 다스려서 그 죄악을 징계하소서. 이러한 뜻으로 역시 전조(銓曹)에 신칙해서 각별히 선출하여 보내도록 하소서.”</p> <p>하니, 왕이 이르기를,</p> <p>“주진의 관원은 전조에서 의망한 것이 아니라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천거했는데,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p> <p>하자, 권진이 아뢰기를,</p> <p>“해사(該司)에서야 당초에 어찌 정밀하게 살펴서 뽑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부임한 후에는 자신을 살찌우는 것만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신중을 기해서 선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p> <p>하였다. 왕이 이르기를,</p> <p>“주진(主鎭)의 수령은 어느어느 곳인가?”</p> <p>하니, 권진이 아뢰기를,</p> <p>“육진(六鎭)과 삼수(三水)·갑산(甲山)·명천(明川)·길주(吉州) 등이 주진입니다.”</p> <p>하였다. 왕이 이르기를,</p> <p>“경이 진달한 것을 내가 유념하겠다. 우리 나라는 예전부터 적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지 변호(藩胡)가 와서 일러주는 말에만 의존할 뿐, 그 허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니, 짐승같은 적들이 어찌 우롱할 마음이 없겠는가. 앞으로는 오랑캐의 지역 근처에다 복병을 두어 잡인들의 왕래를 금지시키고 오랑캐의 실정을 살펴서 아뢰게 하라.”</p> <p>하니, 권진이 아뢰기를,</p> <p>“변호 가운데 직첩을 받고 귀순해 오는 자가 지금도 있으며 병사(兵使)가 그</p>	<p>赴任之後，專事肥己。唯當十分慎擇而已。”王曰：“主鎭守令，未知某某等處耶？”縉曰：“六鎭、三、甲、明川、吉州等處，足/是主鎭也。”王曰：“卿所陳，予當體念。我國自前不知賊情，只因藩胡之進告，而未諳虛實，彼以犬羊之賊，豈無愚弄之意哉？今後虜地近處伏兵，禁雜人來往，譏察虜情以啓。”縉曰：“藩胡受職牒向化者，今亦有之，而兵使自前多有知者云，下去則當往行營，可以從長審處矣。今此國家營建大役，大小臣民，孰不欲盡心助工？但今番助工木，分付于各道，則南北兵使等，除防斂布，創開無前之規，事極寒心。”王曰：“渠等無乃見朝廷事目，而如是爲之耶？”縉曰：“朝廷之意，本在於不煩民力也。豈使渠等放軍斂布乎？”王曰：“卿下去之後，一切禁斷。”王曰：“內奴婢等，亦是王民，而邊將、守令侵虐滋甚云。卿下去，另加優恤。”縉曰：“如有此弊，臣隨聞請罪。”王曰：“老僮處，須遣解事伶俐之人，偵探賊情可矣。”(李)守一曰：“前兵使金景瑞請遣人偵探，而朝廷不爲輕易許之矣。申忠一前日</p>
--	--	---

	<p>전부터 알고 있는 자가 많다고 하니, 이번에 내려가면 행영(行營)에 가서 잘 찾아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벌이고 있는 거대한 역사(役事)에 대하여 대소 신민들 가운데 누가 마음을 다해 공사에 협력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조공목(助工木)을 각도에 분부하자 남북의 병사(兵使)들이 방어하는 일을 면제시켜 주고 배를 거두어 들여 전에 없던 규례를 만들어 놓았으니, 일이 몹시 한심합니다.”</p> <p>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들이 조정의 사목(事目)을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p> <p>하였다. 권진이 아뢰기를, “조정의 의도는 본래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들로 하여금 균역을 면제시켜 주고 배를 거두게 하는 것이겠습니까.”</p> <p>하니, 왕이 이르기를, “경이 내려간 뒤에 일체 금지시키도록 하라.”</p> <p>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내노비(內奴婢)들도 역시 나의 백성인데 변장과 수령이 심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경이 내려가면 각별히 돌봐 주도록 하라.”</p> <p>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만일 이런 폐단이 있으면 신이 듣는대로 죄주기를 청하겠습니다.”</p> <p>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노추(老僮)에게 일을 잘 아는 영리한 사람을 보내서 적의 실정을 정탐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니, 이수일이 아뢰기를, “전 병사 김경서(金景瑞)가 사람을 보내 정탐할 것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가볍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신충일(申忠一)이 그전에는 오랑캐의 소굴에 왕래하였으므로 적들의 실정을 다소 알 수 있었는데, 그 후로는 전혀 상세히</p>	<p>往來虜穴，稍知賊情，而其後則絕未得詳探。前頭亦得人以送，則庶可知矣，不得其人，則賊情未能詳知，而反有漏洩軍機之患矣。”王曰：“然矣。解事伶俐人，各別擇送，細知虜情，兼察在逃逆賊可矣。”李守一曰：“六鎮流民，趁未刷還，則不待外寇之至，便作空虛之地，使祖宗豐沛之鄉，將不能保存。臣不勝憂悶扼腕之至，使之及時刷還可矣。”王曰：“予當議處。卿等下去本道，各別盡心善處。”王曰：“在逃逆賊罪人，十分盡心購捕可矣。”(李)守一曰：“自前細知此事，當竭力譏察。”王(曰)賜以甲冑、兵器等物曰：“卿等持去，以爲緩急之用。”</p>
--	--	--

	<p>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적합한 사람이 있어서 보낸다면 적의 동정을 알 수 있겠지만,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적의 동정을 상세히 알지도 못하고 반대로 군사 기밀만 누설하는 염려가 있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왕이 이르기를,</p> <p>“그렇다. 일을 아는 영리한 사람을 각별히 가려 보내 오랑캐의 동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망 중에 있는 역적도 겸하여 살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니, 이수일이 아뢰기를,</p> <p>“육진의 유민을 즉시 쇠환하지 않는다면 외구(外寇)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도 텅텅 빈 곳이 되어서 조종조끼서 태어나신 고향을 보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신은 민망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시급히 쇠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왕이 이르기를,</p> <p>“내가 의논하여 처리할 것이니, 경들도 본도에 내려가거든 각별히 신경써서 잘 처리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왕이 이르기를,</p> <p>“도망 중에 있는 역적 죄인들을 각별히 신경써서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도록 하라.”</p> <p>하니, 이수일이 아뢰기를,</p> <p>“그전부터 이 일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p> <p>하였다. 왕이 갑옷·투구 등의 무기를 하사하면서 이르기를,</p> <p>“경들이 가지고 가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광해 119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p>	<p>전교하였다. “전일 태묘에 천신(薦新)할 때 연어(鱣魚)를 날것으로 올렸는데 악취가 나서</p>	<p>傳曰：“頃日太廟薦新生鱣魚臭惡，人不堪近口。國之大事在祀，而近日凡</p>

<p>(萬曆) 45년) 9월 11일(계유) 2번째기사</p>	<p>사람들이 코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국가의 큰 일은 제사에 있는 것인데 요즘 태묘에 천신하는 물건에 대해 불경스럽기가 이러하니 매우 한심하다. 봉진(封進)한 관리와 감사는 조사하고, 앞으로는 봉상시(奉常寺)로 하여금 각별히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라.”</p>	<p>太廟薦新之物，不敬如此，極爲寒心。封進官吏及監司，竝察之，今後令奉常寺，另爲察處。”</p>
<p>광해 119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 (萬曆) 45년) 9월 17일(기묘) 1번째기사</p>	<p>왕이 공성 왕후(恭聖王后)의 관복(冠服)을 태묘에 고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어가를 타고 나갔다. 채봉(彩棚)과 향산(香山)을 설치해 놓고 배우와 기생들이 큰길에서 놀이를 하니, 곳곳에서 어가를 멈추고서 하루 종일 관람하였다.</p>	<p>王以恭聖冠服，告于太廟。祭畢駕出，盛陳彩棚、香山，優娼百戲于大路，寸寸駐輦，終日而觀之。</p>
<p>광해 119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 (萬曆) 45년) 9월 18일(경진) 1번째기사</p>	<p>왕이 정전(正殿)에 거둥하여 음복연(飲福宴)을 거행하였다. 여악을 설치하고 술이 아홉 순배가 돌았는데, 양사의 장관이 아뢰기를, “어제 상께서 밤새도록 제사를 지내시고 바로 음복연을 거행하시니 큰 경사스러움에 대한 일이 극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술잔수를 다하기 전에 밤이 깊어질 것입니다. 옥체가 상할까 염려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법연을 한 밤중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부당할 듯합니다. 정지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에 없던 큰 경사이니 비록 밤이 되도록 거행하더라도 괜찮다.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옥당과 정원도 거듭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열한 순배가 돌아 대신이 아뢰어 한밤에 연회를 파하였다.</p>	<p>王御正殿，行飲福宴。設女樂，爵九行，兩司長官啓曰：“昨日自上達夜行禮，旋即行飲福宴，大慶之事，非不極盡，而爵數未畢，將至夜深。非但恐傷玉體，莫大法筵，似不當至於夜分。請停止。”答曰：“無前大慶，雖或犯夜，仍行可矣。勿爲煩啓。”玉堂、政院亦皆申請，不從。及行十一爵，仍大臣啓辭，夜分乃罷。</p>
<p>광해 120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 (萬曆) 45년) 10월 27일(무오) 1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각도에서 토산물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에게 식량을 아직 지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것으로 연명하는 것을 면치 못하게 하였다 하니, 듣기에 거북스럽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는가. 해조의 낭청을 추고하고 속히 나누어 주도록 하라.”</p>	<p>傳曰：“各道方物陪持人，糧料尙不題給，使未免行乞連命，所聞不安。何廢閣命令至此乎？該曹郎廳推考，速令分給。”</p>
<p>광해 121권, 9년 (1617 정사 / 명 만력</p>	<p>예조가 아뢰기를, “친히 제사를 지낸 뒤에 서울과 지방에서 전문(箋文)을 올리고 축하하며 교서</p>	<p>禮曹啓曰：“親祭後京外進箋、陳賀、頒教，方物、物膳、表裏，儒生、耆</p>

<p>(萬曆) 45년) 11월 6 일(정묘) 1번째기사</p>	<p>(敎書)를 반포하고 토산물·음식물·안팎 옷감을 올리며, 유생·늙은이·교방(敎坊)에서 축하하는 시와 노래를 올리고 길거리에 채색천을 둘러치며, 향 동이를 이고 좌우편에서 탈춤을 추고 음복연을 여는 등에 관한 일들을 한결같이 관복(官服)을 받았을 때의 규례에 따라 차례대로 거행할 것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老、敎坊獻軸， 街路結彩、頂香盆左右、儼禮飲福宴等事， 一依冠服時例， 次第舉行之意， 敢啓。” 傳曰：“依啓。”</p>
<p>광해 125권, 10년 (1618 무오 / 명 만력 (萬曆) 46년) 3월 14 일(계유) 1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침을 맞는 것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닌데, 안약(眼藥)이 효과가 없는 데다 대례(大禮)를 여러 차례나 날짜를 물려 무척 안타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번에 걸쳐 침을 맞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조섭하여, 기필코 조금이라도 효과를 본 뒤에 대례를 억지로라도 행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삼사의 계사와 차자 역시 특이하게 새로운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미 들었던 여론(餘論)을 진달하는 것일 뿐 별로 긴급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주문(奏聞)하는 일에 대해서는 영상에게 물어보려 간 사람이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일은 위에서도 십분 참작하여 처리할 생각이다. 정청(庭請)에 불참한 사람의 문제도 그렇다. 어찌 꼭 조용히 조섭하고 있는 때에 이처럼 서두르면서 번거롭게 해야만 하는가. 며칠 전부터 안질(眼疾)이 더욱 심해진 탓으로 대례조차 어쩔 수 없이 또 물리게 되었으니 말할 수도 없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선 침을 맞으며 조섭하는 기간만이라도 억지를 부려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양사의 성상소(城上所)를 명초(命招)하여 이르라.”</p>	<p>傳曰：“受鍼非樂爲， 而眼藥無效， 大禮累退， 深用渴悶。 不得已累度受鍼， 合眼靜攝， 期見一分之效， 將勉行大禮。 而三司啓筭， 亦非奇異新語， 徒陳已聞餘論， 別無緊急之事。 至於秦聞之舉， 領相處往問之人， 時未來到， 此事自上亦當十分酌量以處矣。 庭請不參人， 亦何必汲汲煩擾於靜攝之中乎？ 數日以來， 眼疾尤苦， 大禮亦將不得不又退， 悶不可言。 姑限受鍼調攝間， 勿爲強煩事， 兩司城上所命招言之。”</p>
<p>광해 127권, 10년 (1618 무오 / 명 만력 (萬曆) 46년) 윤4월 3 일(신유) 2번째기사</p>	<p>사용원이 아뢰기를, “조정의 연향(宴享) 때 사용하는 화준(畫樽)이 난리를 치른 뒤로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늘 푸른 채색을 사다가 구워내려고 했습니다만, 사올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향하는 예(禮)가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가짜로 그려 사용하는 등 사체로 볼 때 구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현감 박우남(朴鵞男)이 화준 한 쌍을 바치고 싶다 하기에 그 뜻이</p>	<p>司饗院啓曰：“朝家宴享所用畫樽， 自經亂後， 蕩無遺在， 每欲貿青燔造， 而絕無貿易之路。 凡遇宴禮， 不得已假畫而用之， 事體殊甚苟簡。 今者前縣監朴鵞男， 將畫樽一雙願納， 其意可嘉。 看審則兩樽皆無蓋， 一樽之口，</p>

	<p>가상해서 살펴 보았더니, 두 단지 모두 뚜껑이 없고 하나는 주둥이에 틈이 벌어져 붙여놓기는 하였습니다만, 술상의 분위기를 빛내줄 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원에 놔두고 뒷날의 용도에 대비케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p> <p>하니, 진교하기를, “일찍이 수령을 지낸 사람이니 그에 상당한 수령으로 올려 제수하고, 단지 뚜껑을 속히 구워내는 일을 의논해 처리토록 하라.”</p> <p>하였다.</p>	<p>雖有罅缺粘付，而可賁酒亭，留置本院，以備他日之用宜當。”傳曰：“曾經守令之人，相當守令陞授。樽蓋速爲燔造事，議處。”</p>
<p>광해 129권, 10년 (1618 무오 / 명 만력 (萬曆) 46년) 6월 14 일(신미) 5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었다. “은(銀)과 삼(蔘)이 고갈되었는데 어떻게 해 볼 계책이 없습니다. 삼의 경우는 값을 주고 산출할 날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은의 경우는 값을 줄 수도 없어 마련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기유년에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사세가 군색하고 급박한 탓으로 왜관(倭館)의 은을 빌려 쓰기까지 하였는데 받지 않겠다고 회답했었다. 아직 남아 있는 왜은(倭銀)을 임시 방편으로 가져다 써도 무방할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건대, 사신이 이국(異國)에 가서 사명(使命)을 수행하면서 주는 선물도 받지 않고 물리친 것이야말로 사신의 체통을 떳떳하게 세운 것인데 사신도 달갑게 여기지 않은 물건을 거꾸로 공가(公家)에서 가져다 쓴다면 왜인이 듣고서 조정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본조의 재정이 아무리 궁핍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구차스러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p> <p>다만 이 경우는 두섬(杜暹)이 막하(幕下)에 묻어두었던 금(金)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서 왜(倭)에 속아 일단 우리 경내로 실어온 것이고 보면 달리 처치하는 일이 없을 경우 간사한 자가 혹 몰래 훔칠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본조에서 변방 관원에게 이문(移文)하여 잘 간수만이라도 해 두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일 재정의 수요를 계속 대기가 어려워 그야말로 긴급해지자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이렇듯 군대를 일으키는 날을 당하여 어떻게 꼭 상례</p>	<p>戶曹啓曰：“銀蔘告罄計沒奈何？蔘則給價容俟產出之日，銀則無價難辦，或以爲己酉天使時，因事勢窘迫，至於稱貸倭館之銀而用之，回答不受，倭銀之留在者，權宜取用無妨云。竊念使臣，奉使異國，却餽不受，深得使臣之體，使臣之所不屑，而反爲公家所取用，倭人聞之，其謂朝廷有人乎？本曹雖貧，豈容行此苟且之舉也？但非杜暹埋金幕下之比，爲倭所瞞，既已輸來，我境無他處置，或不無奸人潛竊之理，本曹欲移文邊官，使之護藏而已。近日財用難繼，萬分緊急，人議以爲當此軍興之日，何必膠守常例，無寧取而用之，除却嶺南一番貿銀之費，以紓民生一分之力，使臣大加獎賞，以示優異之典，則非無端取用之比云。然事係重大，非該曹所敢擅便，上裁何如？”</p>

	<p>(常例)만을 고집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그것을 가져다 씌으로써 영남에서 한번 은을 무역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조금이라도 민생의 힘이 퍼지게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사신을 크게 포장(褒獎)하여 특별히 대우하는 전범(典範)을 보여준다면 무단히 가져다 쓰는 유와는 같지 않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대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해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성격의 일이 아니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광해 133권, 10년 (1618 무오 / 명 만력 (萬曆) 46년) 10월 4 일(기미) 1번째기사</p>	<p>전교하였다. “상수연을 할 때 사용원이 살피지 못하여 은으로 된 잔을 세자의 술잔으로 사용하였는데 매우 놀랍다. 본원의 부제조, 제거(提舉), 제검(提檢) 등을 이미 추고하였는데, 아울러 물건 사전(勿揀赦前)하라.”</p>	<p>傳曰: “上壽宴時, 司饗院不爲致察, 以銀盃用於世子酌, 極爲駭愕。 本院副提調、提舉、提檢等, 已爲推考, 竝勿揀赦前。”</p>
<p>광해 134권, 10년 (1618 무오 / 명 만력 (萬曆) 46년) 11월 3 일(무자) 1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기를, “평상시 서쪽 변방에 수자리를 사는 병졸들은 정식으로 지급 받는 관량(官糧) 이외에 으레 노자와 방전(房錢)을 사적으로 싸가지고 가서 양식을 바꾸어 목숨을 연장시킬 터전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서쪽 변방에 흉년이 들어 토착민들도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그네로서 수자리를 사는 자들의 어려움은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리를 팔아야 겨우 쌀 4, 5두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량도 넉넉하지 못해서 오래지 않아 바닥이 날 것입니다. 대대적인 병력을 바야흐로 일으켜 진퇴를 자유로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남쪽의 조운이 통하지 않아 군량을 댈 길이 장차 두절될 상황이니, 천하의 일 중에 어찌 이보다 더 큰일이 있겠습니까. 묘당이 윤수겸(尹守謙)의 장계에 의거하여 양서(兩西)의 공물에 대해 품지(稟旨)하고 작미(作米)하는 일을 연달아 저지하고 있는데 설사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혹 본조로 하여금 상량해서 묘당에 품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리고 양서의 공물 가운데 토산품과 관련된 것은 내년 봄의 대례에 사용되는 것이니 빠뜨릴 수 없겠지만, 값을 치르고도 사기 어려운 물건은 부득이 다</p>	<p>戶曹啓曰: “常時兩邊戍卒, 應給官糧之外, 例以私持路資、房錢, 質糧添備, 以爲延命之地。 而西鄙凶歉, 土民不免飢餓, 客戍之艱苦可想。 鬻一馬僅得米四五斗云, 官糧不敷, 亦應未久告匱。 大兵方興, 進退不得自由, 而南漕不通, 餉路將絕, 天下事孰有大於此者乎? 廟堂據尹守謙狀啓, 兩西貢物稟旨, 作米事續續沮撓, 設有不便, 容令本曹商量, 稟議廟堂而處之。 且兩西貢物中, 係干土產, 爲明春大禮需用, 不可闕, 而有難給價買得之物, 則不得已移定於他道乎? 抑此時他道民力之屈, 與兩西無異, 移定前日所無之役, 亦極難處。 此等曲折, 令廟堂參</p>

	<p>른 도에 옮겨 배정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 다른 도의 민력이 피폐된 것은 양서와 차이가 없으니, 예전에 없던 역을 옮겨 배정하는 것도 또한 지극히 난처한 일입니다. 이러한 곡절을 묘당으로 하여금 헤아려 재가를 받도록 하소서. 그리고 양서의 공물 가운데 초주지(草注紙) 등의 물건은 분호조 참의 이창정(李昌廷)에게 닥나무를 넉넉히 사들여서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분조에 보내오면 본전을 갚아 주겠다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작미하는 일이 비록 긴급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제향(祭享)과 어공(御供) 및 국가의 긴요한 곳에 사용되는 물건 같은 것을 어떻게 모조리 작미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작미할 물목(物目)을 일일이 상세하게 개록해서 재가를 받도록 하라.”</p> <p>하였다.</p>	<p>商裁奪。而兩西貢物中，如草注紙等物，令分戶曹參議李昌廷，優數質楮造紙送曹，以本色償之之意，行移何如?”</p> <p>傳曰：“允。凡作米之事，雖出於切急，如祭享、御供及國用緊處之物，何可盡爲作米乎? 大概作米物目，一一詳細開錄，稟裁爲之。”</p>
<p>광해 140권,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5월 22일(갑진) 2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기를, “광흥창(廣興倉)의 쌀과 콩을 본조의 낭청을 보내어 번고(反庫)1142) 해 보았는데, 봉사 조택(趙擇)이 담당한 곳에 결손된 양이 도합 1백여 석이고 부봉사 조희진(趙希進)이 담당한 곳에 결손된 미곡이 1백 8십여 석이었습니다. 또 그 중기(重記)를 상고해 보니, 다른 창고의 미곡 2백여 석을 지우고 고쳐서 서명하여 그 창고의 결손된 수량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는 대체로 조택과 조희진 등이 결손된 흔적을 엄폐하려고 분대의 감찰에 부탁하여 다른 창고를 모두 열어 새로 받아들인 미곡을 나누어 넣어 결손된 수량을 채웠는데, 서로 짜고 한 간리의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발각된 후에는 본창의 서원 홍종남(洪終男) 등이 아래 사람을 겁주어서 일시에 흩어지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옛날에도 있지 않던 변고입니다. 봉사 조택과 부봉사 조희진 등을 먼저 파직 한 후에 추고하고, 우두머리인 집리(執吏) 홍종남을 포도청으로 하여금 붙잡</p>	<p>戶曹啓曰：“廣興倉米豆，遣本曹郎廳反庫，則奉事趙鐸所掌無面合一百餘石，副奉事趙希進所掌無面米一百八十餘石。且考其重記，則他庫米二百餘石，塗改着署，以沒其同庫無面之數。蓋趙鐸、希進等欲掩無面之跡，囑分臺監察，悉開他庫，分入新納之米，以充無面之數，其符同奸吏之狀，極爲駭愕。及其現發之後，本倉書員洪終男等恐動下人，一時潰散，此實古未有之變。奉事趙鐸、副奉事趙希進等，先罷後推；首犯執吏洪終男，令捕盜廳捕</p>

	<p>아 율에 의해 죄를 정하게 하고, 각 창고의 결손된 미곡을 자세히 실수를 조사한 다음 관원·색리·고자 등에게 법에 의하여 나누어 징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p>	<p>捉, 按律定罪。 各庫無面之穀, 詳查實數, 官員、色吏、庫子等, 依法分徵。” 傳曰: “依啓。”</p>
<p>광해 143권,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 (萬曆) 47년) 8월 7일 (정사) 1번째기사</p>	<p>왕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두 차관을 접견하였다. <왕이 두 차관과 서로 읊하고 자리에 앉아> 주례(酒禮)를 행하였는데 석 잔을 돌리고 마쳤다. 왕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오늘까지 보존된 것은 모두 황상의 덕분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오랑캐가 준동하여 침범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군신이 모두 불공대천의 원수로 여겨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원(開原)이 또 다시 함락되어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저들의 흉모는 감히 말로 이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차관이 답하기를, “우리 조정에서 기회를 놓쳐 패전의 불길한 일이 생겼고 귀국의 병마도 많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동이 위험한 지경이 되어 한시가 급박한데, 요동이 위험하게 되면 귀국도 따라서 위험하게 됩니다. 곧 귀국과 대국(大國)은 상호의존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땅히 서로 힘을 합하여 성원해야 됩니다. 국왕께서 하신 ‘불공대천’이란 말로 상국에 대한 국왕의 지극한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흉적이 침략하고 천자의 군사가 후퇴한 이후로 저는 늘 우려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혈기가 있는 모든 신민은 팔을 걷어붙이고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군졸로서 포로가 된 자들도 그들에게 붙어 동조한 이는 거의 없고, 계략을 써서 몰래 도망나오다가 중도에서 살해된 자가 수없이 많으며, 화를 면하고 나온 자 또한 많으니 상국에 대한 정성은 천지신명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p>	<p>王幸太平館, 接見兩差官。(王與兩差官, 相揖就座,) 行酒(禮)三爵而罷。 王曰: “小邦保有今日, 皆(天朝)皇上之德。 不幸奴酋猖獗(犯搶), 小邦君臣, 不勝痛惋, 誓不共戴一天, 而開原又陷, 軍民盡鑿, 伊賊凶逆, 不敢言諭。” 差官答曰: “天朝失機, 輿尸有凶, 貴國兵馬, 亦多損傷。 今者遼東危孤, 朝暮可虞, 遼東危則貴國亦危。 貴國與大國, 非唇齒之邦乎? 惟當相勢, 以助聲援。 國王所謂不共戴天之語, 足以見國王(向上)之至誠。” 王曰: “兇賊搶亂, 王師左次, 自此以後, 不穀食息煎憂, 夜不能寐, 而小邦(愚夫愚婦, 凡有血氣者, 莫不扼腕。)小邦被擄軍卒, 小無甘心附賊者, 設謀潛逃, 中路被害者, 不知其幾, 而出來者亦多, 向上之誠, 可質神明矣。” 差官曰: “頃在遼東, (因遼人)聞國王自喪師之後, 雄心消燦。 及見國王, 得與國王言, 則眷眷於天朝, 不忌邊虞, 國王之雄心, 誠不消燦矣。 聞貴國人多</p>

	<p>하니, 차관이 말하기를, “지난번 요동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통하여〉 국왕께서 군사를 잃은 후로 적개심이 위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국왕을 뵙고 국왕과 함께 말을 해 보건대 천조에 대하여 늘 사모하고 변방에 대한 경계를 잊지 않고 있으니 국왕의 적개심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귀국인 중에 적중에서 돌아온 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적중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왕이 말하기를, “적중에서 돌아온 자들은 모두 우매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첩보를 듣게 되면 즉시 진강(鎭江)의 아문에 통보하겠습니다.”</p> <p>하였다. 차관이 말하기를, “귀국의 팔도에 병마(兵馬)가 상당히 많을텐데 어찌 자력으로 흥기할 형세가 없겠습니까.”</p> <p>하니, 왕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국토의 길이가 삼천리에 불과한데, 임진년의 왜란에 모두 섬멸되어 백성이 씨가 마를 판에 천자께 고하여 재생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으니,〉 어찌 상국의 덕택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른바 ‘화수(火手)’란 본래 우리 나라의 장기가 아니고 난을 겪은 뒤에 중국인과 항복한 왜인이 처음으로 교련한 것으로서 그 수가 충분하지 않아 수천 명에도 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전날의 오랑캐와의 전투에서 모두 전멸하였고 나머지 노약자 약간 명이 있으나 우리 나라의 변방을 지키기에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금년 봄·여름·가을에 큰 가뭄이 들어 천리에 걸쳐 논밭이 타서 군량도 장만할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정을 대인께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흉적을 토벌해야 된다는 대의(大義)만이 준엄하게 살아 있으니 부응할 기회가 오게 된다면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p>	<p>自賊中來，賊中情事，可得知乎？”王曰：“來自賊中者，皆庸迷不識事情。如有所聞，即報鎭江衙門。”差官曰：“貴國入布政，兵馬非不多，其無自振之勢耶？”王曰：“小邦幅員，未滿三千里，壬辰之亂，盡被殲滅，(肝腦塗地，)人無孑遺，上告天子，獲蒙再造，(至今圖存，)何莫非上國之賜也？所謂‘火手’，本非我國長技，經亂之後，唐人及降倭，始爲教練，而厥數(不敷，)未滿數千。前日之役，盡陷虜中，餘存者雖有若干老弱，小邦守邊，不能自保。況今年春秋夏大旱，赤地千里，軍兵餽餉，辦備無策。小國情事，大人何能盡知乎？只有討賊大義，凜然不滅，如有可乘之機，敢不盡心？”</p>
--	---	--

	하였다.	
광해 143권,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 (萬曆) 47년) 8월 7일 (정사) 2번째기사	<하마연을 거행하였다. 술 다섯 잔을 돌리고 마쳤다.>	(行下馬宴。酒五酌，罷。)
광해 147권,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 (萬曆) 47년) 12월 4 일(계축) 2번째기사	<p>호조가 아뢰기를, “지금 경비로는 일만분의 일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비가 떨어진다면 신들이 비록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사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신들이 경창(京倉)에 현재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 쌀은 1만 6천 2백 27석이고, 콩이 2천 8백 99석인데, 뱃길이 얼어 붙어서 실어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내년 3월 얼음이 녹기 전까지 지출할 쌀과 콩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 쌀이 2만 8천 3백 45석이고 콩이 6천 7백 11석이나 되어, 이 지출할 숫자와 남아 있는 쌀과 콩의 수를 비교해 보니, 부족한 숫자가 쌀은 1만 2천 1백 18석이며 콩은 2천 8백 12석입니다.</p> <p>이에 대해 백방으로 생각해 봐도 만약 과격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양식이 떨어지는 걱정을 만에 하나라도 요행히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전날에 녹료를 줄인 수량도 한 달의 비용을 연장해 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족한 수를 미리 강구하여 지탱해 나갈 바탕을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들은 유사로 있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이처럼 번거롭게 아뢰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고 잘 처리하여 국사를 구제하게 하소서.”</p> <p>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p>	<p>戶曹啓曰：“日今經費，萬分難支，一朝遽爲乏絕，則臣等雖被罪罰，其於國事，有何益哉？臣等竊查京倉見在，米一萬六千二百二十七石、太二千八百九十九石，而船路凍合，更無運致米太之策，自十二月至明年三月解冰前，支放米太之數算計，則米二萬八千三百四十五石、太六千七百一十一石，以此支放之數，較於遺在米太，則不足之數，多至米一萬二千百十八石、太二千八百十二石矣。百爾思之，若不破格別措，則絕食之患，萬無倖免之理。前日減祿減料之數，不過延一月之用，此則不足之數，不可不預爲講究，以爲支繼之地，而臣等待罪有司，束手無策，不得不如是煩瀆。請令廟堂廣議善處，以濟國事。”答曰：“依啓。”</p>
광해 148권, 12년 (1620 경신 / 명 만력 (萬曆) 48년) 1월 8일 (정해) 2번째기사	<p>전교하였다. “공홍도(公洪道)가 정조(正朝)에 진상한 생안(生雁)·압자(鴨子)는 모두 부패해서 입에 가까이 할 수 없으니, <공홍도> 감사를 추고하라.”</p>	<p>傳曰：“公洪道正朝進上生雁、鴨子，盡爲腐敗，不敢堪近口，公洪監司推考。”</p>

<p>광해 148권, 12년 (1620 경신 / 명 만력 (萬曆) 48년) 1월 23 일(임인) 2번째기사</p>	<p>좌승지 이위경(李偉卿)이 아뢰기를, “올해의 기근은 옛날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중(京中)에 사는 사서인(士庶人)의 집에도 죽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반이나 됩니다. 더구나 내삼청(內三廳)1170)의 위졸(衛卒)들은 한 해가 다가도록 고달프게 지내면서도 녹만을 바라보고는 시위에 분주하느라 낮이나 밤이나 겨를이 없습니다. 비가 올 때나 몹시 추울 때를 막론하고 위험한 일들을 쉴새없이 하고 있으니, 실로 코를 썬 소와 동일한데 동정(冬政)이 이미 지나갔고 봄이 반도 더 지났으나 아직도 분등(分等)과 부록(付祿)도 하지 못하여 배고픔을 참고 빈 배로 굶어 죽겠다고 호소하며 꿈쩍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금위의 김응추(金應秋)란 자는 굶주림으로 인해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이 이처럼 참혹하고 측은해서 차마 말을 할 수 없으니, 만약 이조와 병조의 여러 당상관을 가리되 까닭없이 날마다 정사만 한다면 아마도 물마른 도랑에서 뼈끔거리는 물고기와 같은 백성의 급함은 이미 서강(西江)의 물을 터놓아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안에 정관(政官)을 폐초하여 도목 정사를 해서 녹을 쥐야 한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p>	<p>左承旨李偉卿啓曰：“今歲饑饉，振古所無。京中士庶之家，糊粥居半。況乎內三廳衛卒之徒，終年勞苦，惟祿是仰，其爲奔走侍衛，早夜罔暇。陰雨也、隆寒也，役役懸危，實同穿鼻之牛，而冬政既過，春科強半，尙未分等付祿，忍飢枵腹，呼餓四束。至於內禁衛金應秋者，因病餓死云。見聞慘惻，有不忍言。若擇吏兵曹諸堂上，無故日而爲政，則直慙枯魚噉喙之急，已無奈於西江之決也。明日內牌招政官，祿都目爲政之意，敢啓。”傳曰：“允。”</p>
<p>광해 149권, 12년 (1620 경신 / 명 만력 (萬曆) 48년) 2월 17 일(을축) 1번째기사</p>	<p>우부승지가 아뢰기를, “사도시(司藥寺)의 공물(貢物)은 오로지 어공으로 관장해 왔는데 외방에서 바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멍쌀에 있어서도 앞으로 1개월의 쓰임에도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민망합니다. 제조가 일일이 들어서 입계하면서 날짜를 정해 독책하여 바치게 하도록 청했는데 별단(別單)이 내려오지 않아 아직까지 거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별단을 속히 내리라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지금 병으로 괴롭다. 그렇지만 마땅히 찾아서 내릴 것이다.”</p>	<p>右副承旨啓曰：“司藥寺貢物，專掌御供，而因外方不納，盡爲乏絕。至於粳米，將不支一朔之用，極爲竭悶。提調枚舉入啓，請刻日督納，而別單未下，迄未舉行。請別單速下之意，敢啓。”傳曰：“予方病苦，從當覓下矣。”</p>

	하였다.	
광해 150권, 12년 (1620 경신 / 명 만력 (萬曆) 48년) 3월 13 일(신묘) 1번째기사	상이 친경례를 동적전(東籍田)에서 거행하였다. 환궁할 때에 헌가(軒架)·산대(山臺)·잡희(雜戲)·침향산(沈香山)·여기헌축(女妓獻軸)을 베풀었는데, 곳곳에서 연(輦)을 멈추고 구경하느라 온종일 < 행차를 못했다.>	王行親耕禮于東籍田。 還宮時， 設軒架、 山臺、 雜戲、 沈香山、 女妓獻軸， 處處(住輦) [駐輦]， 終日不進。
광해 150권, 12년 (1620 경신 / 명 만력 (萬曆) 48년) 3월 15 일(계사) 1번째기사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위로하는 주연(酒宴)을 행하였다.	王出御仁政殿， 行勞酒宴。
광해 151권, 12년 (1620 경신 / 명 만력 (萬曆) 48년) 4월 11 일(무오) 1번째기사	전교하였다. “수연(壽宴)을 할 때에는 여러 공신들은 비록 2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 참가하도록 하라.”	傳曰：“壽宴時， 諸功臣， 雖非二品， 竝令入參。”
광해 151권, 12년 (1620 경신 / 명 만력 (萬曆) 48년) 4월 11 일(무오) 2번째기사	왕이 인정전에 나아가 상수연(上壽宴)을 행하였다. 탑전에서 삼사의 장관들이 아뢰기를, “술잔의 수효도 거의 다했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며, 상께서 몸조리하는 뒤여서 성상의 몸이 노곤할 것이니, 술잔의 수효를 줄이소서.” 하니, 답하기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미 했다면 예의상 끝까지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王出御仁政殿， 行上壽宴。 榻前， 三司長官啓曰：“爵數幾盡， 日勢已暮。 自上調攝之餘， 恐勞聖體， 請減爵數。” 答曰：“不爲則已， 既已爲之， 則禮不可不究。 毋庸更煩。”
광해 151권, 12년 (1620 경신 / 명 만력 (萬曆) 48년) 4월 14 일(신유) 2번째기사	전교하였다. “기로소의 연회(宴會)를 23일의 내연(內宴)과 대궐 뜰에서 열리는 사연(賜宴) 뒤에 베푸는 일로 본소(本所)에 말하라.”	傳曰：“耆老所宴會， 過二十三日， 內宴及闕庭賜宴後爲之事， 言于本所。”
광해 151권, 12년 (1620 경신 / 명 만력	전교하였다. “내전(內殿)에서 친잠(親蠶)한 뒤에, 조종조의 전례에 의하여 1품 이상의 관	傳曰：“內殿親蠶後， 依祖宗朝舊例， 一品以上、 六曹堂上、 親籍都監堂上·

<p>(萬曆) 48년) 4월 16일(계해) 3번째기사</p>	<p>원과 육조의 당상, 친척 도감의 당상과 낭청, 선잠제(先蠶祭)의 헌관(獻官)과 승지, 병조와 도총부의 여러 장수들, 예조의 낭청에게 술과 1등 악공을 하사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로 해조로 하여금 살피서 시행하도록 하라.>”</p>	<p>郎廳，先蠶祭獻官·承旨、兵曹、都摠府諸將、禮曹郎廳，賜酒樂一等，設宴事，令該曹察行。”</p>
<p>광해 152권, 12년(1620 경신 / 명 만력(萬曆) 48년) 5월 5일(임오) 2번째기사</p>	<p>진휼청이 아뢰기를, “청(廳)을 설치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일이 2월 20일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보리가 익는 철이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곡물이 다 떨어져버려 구휼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달 초순부터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은 그만두자는 뜻으로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청에서 상세히 살피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에 박홍구가 대신으로서 당상(堂上)으로 있었는데, 나누어 진휼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진휼하는 것을 계청하여 중지시켰기 때문에 도성 아래로 모여든 안팎의 굶주린 백성 수백 명이 굶어 죽었다.> 【이 때에 박홍구(朴弘耆)는 대신으로서 진휼사를 겸하였는데, 대부분 일가(一家)와 가까운 노복을 굶주린 백성을 수록한 장부에 올려서 곡물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서 실어오는 쌀을 자제(子弟)에게 나누어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고 문부(文簿)를 없애버려서, 굶주린 백성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국가의 저축은 이 때문에 바닥이 나 버렸다. 이에 진휼을 정지하도록 계청한 것이다. 게다가 영남과 호서에 파견한 종사관 윤성임(尹聖任)과 신서정(申瑞廷) 등이 부잣집을 끝없이 침탈하였고, 굶주린 백성들은 조그마한 혜택도 입지 못하여 굶어 죽은 시체가 수없이 많았으므로 매우 심한 원성을 들었다.】</p>	<p>賑恤廳啓曰：“設廳賑饋饑民，始於二月念後，今已三朔。非但麥秋將至，所需穀物，罄竭難繼，(勢)不得已。自今月初旬間，停罷(供饋之意，敢啓)矣。” 傳曰：“自本廳詳察以處。 【時，朴弘耆以大臣兼賑恤使，多以一家所親奴僕，隸于飢民之籍，占割穀物。外方輸運之米，任其子弟分占，而沒其文簿，飢民未得蒙惠，國儲因以耗盡。於是啓請停賑。加以嶺南、湖西所遣從事官尹聖任、申瑞廷等，侵暴富戶，罔有紀極，而飢民則未蒙升斗之惠，餓孍相望，取怨極矣。】(是時，朴弘耆以大臣爲堂上，分賑既不能盡其道。至是，啓止之故，中外飢民，聚城下者數百人，餓斃殆盡。)</p>
<p>광해 154권, 12년(1620 경신 / 명 만력</p>	<p>전교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정원수가 매우 많다. 꽃을 하사하고 술을 하사하는 등의 일을</p>	<p>庚申七月十七日壬辰傳曰：“今此殿試額數極多，賜花、賜酒等事，各別(詳)</p>

<p>(萬曆) 48년) 7월 17 일(임진) 1번째기사</p>	<p>각별히 <자세하게> 살펴서 하라는 <일로 정원에 신칙하여> 뒤죽박죽되는 근심이 없도록 하라.”</p>	<p>察爲(之事, 政院申飭,) 使無顛倒之患。”</p>
<p>광해 169권, 13년 (1621 신유 / 명 천계 (天啓) 1년) 9월 14일 (임자) 3번째기사</p>	<p><차관의 하마연(下馬宴)에 대해 재신 김지남(金正男)이 아뢰기를, “신이 차관의 관사(館舍)에 나아가 하마연을 거행하겠다고 청하니, 차관은 모자와 띠가 없어 전건(戰巾)과 편복(便服)을 걸치고 정청에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이 먼길을 오느라 고생했다는 뜻으로 위로하니, 답하기를 ‘공사로 인해 왔으니, 별로 수고로울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다섯 순배 열 잔의 술을 든 뒤에 그만 치우려고 하다가, 신이 날씨가 차가우니 한 순배 더 마시자고 권하여 또 두 잔을 마셨습니다. 차관은 즉시 은냥(銀兩)을 내어 무동(舞童)·주자(廚子)·전주인(典酒人)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어 예단(禮單)과 하정 단자(下程單子)를 바치니, 두 차관이 받고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르는 곳마다 수토관(守土官)들의 예우가 극진하고, 교외에 이르자 국왕께서 재신을 보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이제 또 술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후의에 매우 감사드립니다.’고 하였습니다. 물러가려고 서로 읊(揖)한 뒤, 내일 국왕을 뵈겠다고 거듭 말하기에, 신이 ‘15일 접견하기로 이미 날짜를 정했다. 불과 하루 사이이니, 내일 미리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니, 차관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국왕에게 말씀드려라.’ 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p>	<p>(差官下馬宴, 宰臣金正男啓曰: “臣詣差官所館處, 請行下馬宴, 則差官無帽帶, 着戰巾便服出就正廳坐定, 臣以遠道勤苦之意, 措辭致慰, 則答曰: ‘因公幹而來, 別無勤勞.’ 行酒五酌十杯後, 將辭撤, 臣以天寒請更酌, 又加二杯, 差官即以銀兩, 請分給舞童、廚子、典酒人。 臣仍呈禮單及下程單子, 則兩差官受之曰: ‘俺等一路到處, 守土官致禮, 至郊外, 國王遣宰臣設宴, 今又設酌, 厚意多謝.’ 將辭退相揖之後, 明欲晉拜國王, 反覆言之, 臣答以 ‘十五日接見事, 已爲定日, 不過一日之間, 不必明日先詣’云, 則差官曰: ‘當依所言爲之, 然俺等速還之意, 啓知國王’云。 故敢啓。” 傳曰: “知道。”)</p>
<p>광해 171권, 13년 (1621 신유 / 명 천계 (天啓) 1년) 11월 11 일(무신) 2번째기사</p>	<p>왕이 동지 망궐례(冬至望闕禮)를 행하였다.</p>	<p>王行冬至望闕禮。</p>
<p>광해 171권, 13년 (1621 신유 / 명 천계 (天啓) 1년) 11월 11</p>	<p>전교하였다. “망궐례 때에 서반(西班)으로써 들어와 참석한 사람이 매우 적어 보기에 매우 매몰스러웠다. 분명히 늙어 병든 자나 지방에 있던 자를 제외하고는 아울러</p>	<p>傳曰: “望闕禮時, 西班入參者, 甚少所見, 極爲埋沒。 分明老病在外者外, 竝推考。”</p>

일(무신) 3번째기사	추고하라.”	
광해 182권, 14년 (1622 임술 / 명 천계 (天啓) 2년) 10월 9일 (신미) 1번째기사	태묘(太廟)에 제사를 지냈다. 상이 재궁(齋宮)에 나아가 존호를 올리는 예를 거행할 것을 친제하고 고하였다.	辛未有事于太廟。王親詣齋宮，以將行上號之禮，親祭而告之也。
광해 182권, 14년 (1622 임술 / 명 천계 (天啓) 2년) 10월 9일 (신미) 2번째기사	상이 제사를 끝나치고 환궁할 때 침향산(沈香山)을 설치하고 배우들이 왕의 수레 앞에서 온갖 놀이를 벌였는데, 수레를 멈추고 즐기면서 오래도록 환궁하지 않자, 사헌부와 사간원이 아뢰기를, “나례와 잡희는 황제의 은전을 호화롭게 하고 나라의 큰 경사를 축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비록 폐지할 수는 없더라도 구경거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길가에 수레를 멈추고 구경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인 듯합니다. 속히 궁궐에 돌아가시어 하례하는 일을 끝마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막중한 경사이고 응당 시행해야 할 예인데 어찌 매번 예를 이루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王罷祭還宮，設沈香山，倡優百戲于輦前，住駕耽歡，久不還宮。司憲府、司諫院啓曰：“儺禮、雜戲，不過侈皇上之恩典，稱一國之大慶，雖不可廢，亦不可玩賞。止輦路次，似爲未妥，速還法宮，以完賀禮。”答曰：“此乃莫重之慶，應行之禮，何可每不成禮乎？休煩可矣。”
광해 182권, 14년 (1622 임술 / 명 천계 (天啓) 2년) 10월 11일(계유) 1번째기사	왕이 인정전에 나아가 음복연(飮福宴)을 거행하고 궁전 안에서 기악(伎樂)을 펼치게 하였다.	王御仁政殿，行飮福宴，陳伎樂於殿內。

3. 인 조 실 록 기 사 자 료 집

인조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p>인조 2권, 1년(1623 계해 / 명 천계(天啓) 3년) 5월 7일(병신) 5 번째기사</p>	<p>자전(慈殿)이 공조 판서 이흥립(李興立), 호조 판서 이서(李曙), 병조 참판 신경진(申景禎), 이조 좌랑 최명길(崔鳴吉)·장유(張維), 공조 정랑 김자점(金自點), 형조 좌랑 김경징(金慶徵)·심명세(沈命世)·송영망(宋英望), 공조 좌랑 홍진도(洪振道), 사복시 주부 원두표(元斗杓), 군기시 주부 이해(李澥) 등을 명초(命招)하여 술과 상을 내렸다.</p>	<p>원문 慈殿命招工曹判書李興立、戶曹判書李曙、兵曹參判申景禎、吏曹佐郎崔鳴吉·張維、工曹正郎金自點、刑曹佐郎金慶徵·沈命世·宋英望、工曹佐郎洪振道、司僕主簿元斗杓、軍器主簿李澥等，賜酒賞賚。</p>
<p>인조 3권, 1년(1623 계해 / 명 천계(天啓) 3년) 9월 7일(갑오) 1 번째기사</p>	<p>기로소(耆老所)가 아뢰기를, “기영연(耆英宴)을 매년 봄가을에 거행한다는 것이 법전에 실려 있거니와 이는 곧 2백년 동안 전래해 온 거룩한 행사인데, 근래 국가에 일이 많아서 폐지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듣건대 영의정 이원익에게 궤장(几杖)을 내리라는 명이 있었다 하는데 이는 곧 오래도록 드물었던 은전으로 듣는 이마다 용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날 기영회를 결들여서 거행하여 한편으로는 성충을 빛내게 하고 한편으로는 고사를 속행하는 결과가 되게 한다면 한 시대의 거룩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고의 미담이 될 것이기에 감히 이렇게 나와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윤희하였다. 이어 선운하고 사악(賜樂)하였다. 이에 이원익이 대궐에 나아와 진사하니, 상이 답하기를,</p>	<p>耆老所啓曰：“耆英宴行於每歲春秋令節，載在法典，乃是二百年流來盛事。近因國家多事，廢之久矣。今聞有領議政李元翼賜几杖之命，此乃曠世恩典，瞻聆咸聳。若於此日，兼行耆英之會，一以侈聖寵，一以續故事，則非但一代盛事，亦爲千載美談。敢此來啓。”上許之。仍宣醞賜樂。元翼詣闕陳謝。上答曰：“几杖酒樂，實是敬老之常事耳。何至於來謝乎？適以國忌齋戒，不得引見，未安。”賜几</p>

	<p>“궐장을 하사하고 선은하고 사악한 것은 실로 노인을 공경하는 상사인데, 어찌 진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침 국기가 있어 재계하는 중이기 때문에 인견하지 못하니, 참으로 미안스럽다.”</p> <p>하였다. 궐장을 하사하는 것은 조종 때부터 전래해 오던 거룩한 행사인데, 임진 왜란 이후 오랫동안 이 행사가 없었다. 그런데 상이 원로를 우대하기 위하여 중단된 법전을 특별히 시행하였으므로 이날 조신들이 많이 모여 모두 기뻐하고 감탄하면서 이 행사를 노래하고 칭송하였다.</p>	<p>杖，自祖宗朝傳爲盛事，而壬辰之後，久無此事，上優禮元老，特舉曠典。是日，朝臣大會，莫不歡悅感歎，歌詠其事焉。</p>
<p>인조 5권,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3월 8일(임술) 4 번째기사</p>	<p>삼도 대동청(三道大同廳)이 아뢰기를, “대동의 역(役)은 본디 백성의 고달픔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근자에 외방의 물정은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대개 당초의 사목(事目)에 경외(京外)의 응당 지공해야 할 역으로서 감영(監營)·병영(兵營)에 바쳐야 할 것과 각 고을의 관수(官需)와 아료(衙料)를 모두 넣었던 것은 민간에 다시 다른 역을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가을에 받아들여야 할 수량을 작정하여 행회(行會)110) 할 적에 철이 이미 늦어서 각 고을의 관청에 바치는 것은 이미 반절이 넘게 받아들였고 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귀하기 때문에 1결(結)에 대하여 4두(斗)로 줄였고 각 고을에서 쓸 것은 우선 전례대로 받아 쓰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4두 내에서 덜어내어 지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사(各司)의 공물(貢物)에 있어서는 먼 지방에서 나는 것으로 서울에서 사기 어려운 물건과 봉상시에 바치는 것과 의사(醫司)의 약재에 대해서 모두 본청(本廳)에서 매긴 값에 따라 대동미(大同米)로 계산하게 하여 본색(本色)으로 사서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각 고을에서 이 4두를 받아들이는 이외에 온갖 역을 모두 전례대로 거두고, 본색으로 가져와 바쳐야 할 공물에 대해서도 대동 사목 이외에 따로 거둔다 합니다.</p> <p>민간에서는 당초에 대동으로 하면 다시 다른 역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는데,</p>	<p>三道大同廳啓曰：“大同之役，本爲救民之困也。臣等竊聞近者，外方物情，猶有不便之者。大概當初事目，則凡京外應供之役，如監、兵營所納各官官需衙料，皆在大同之中，要使民間，更無他役也。上年十月酌定秋等應捧之數，行會之時，以時節已晚，各官官廳所納，必已太半收捧，必以年凶穀貴之故，一結減定四斗，而各官所用，則姑令依前捧用，其餘皆令於四斗內，除出支供。至於各司貢物中，遠方所產、京中難貿之物及奉常寺所納醫司藥材，皆令依本廳折價，以大同米計除，使之貿本色以納，而今聞，列邑捧此四斗之外，一應諸役，皆依前徵之。至於貢物，當以本色來納者，亦於大同外別徵之，民間初聞既爲大同，則更無他役，而今則大同之外，衆役約查如此，民之</p>

	<p>지금 대동 이외에 여러 가지 역이 이처럼 복잡스러우니 백성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창립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외방에서 혹 법의 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또한 관리들이 성상께서 백성을 근심하시는 지극한 뜻을 몸받지 못하고 인연하여 폐단을 만들기 때문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사가 도리어 백성에게 해로운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픉니다.</p> <p>지금 법으로 매우 다스려 정령(政令)이 크게 행해지게 하자면, 많은 관리들을 똑같이 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변란을 막 겪었으므로 국가가 소요스럽고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였는데 모든 일이 새로 시작되어 형세 또한 크게 경장(更張)하기 어렵습니다. 그만두자니 정령이 나간 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각 고을에서 가을에 받는 쌀을 거의 다 거두어 들였고 산군(山郡)에서 작목(作木)하여 가져와 바친 것도 이미 많아서 이제 갑자기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p> <p>신들이 갖가지로 생각해 보건대, 한두 해 동안 다른 역은 모두 전례대로 하게 하되, 다만 두어 말을 적당히 받아들여서 서울의 각사(各司)의 공물을 공납하게 하고 앞으로 나라의 형세와 민심이 조금 안정되는 것을 살펴본 뒤에 다시 의논하여 크게 시행해야 좋을 듯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하기가 간편하고 경장하는 것도 점차 진행되어 백성이 편안하고 법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민결(民結)의 역은 공물보다 중한 것이 없고 백성이 괴로워하는 것은 방납(防納)111)에 있어 농간질하는 폐해보다 심한 것이 없는데 이 한 가지 폐단만 제거시키면 대부분의 백성이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간의 가난은 극도의 경지에 이르러 굶어 죽는 자가 있다는 말까지 들리니, 결코 봄·여름 사이에 독촉하여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양호(兩湖)의 강원도의 가을에 받는 미포(米布)는 상납하도록 재촉하되 올봄에 바치는 것은 면제하여 받아들이지 말고 보릿가을이 되거든 1결(結)마다 보리쌀 2두를 올려 보내게 하는 것</p>	<p>不便也宜矣。此蓋事係創立，外方或未明知法意，亦由官吏不體聖上憂民之至意，而貪緣爲弊，使救民之政，反害於民，誠可痛心。今若痛繩以法，使政令大行，則許多官吏，難可比而罪之。且新經大變，國內騷擾，民心未定，庶事草創，勢亦難以大更張。欲停罷之則令出已久，列邑秋等之米，幾盡收捧，山郡作木來納者已多，今不可遽罷。臣等百計思量，莫如一二年他役，並令依前爲之，只量捧數斗米，以供京各司貢物，徐觀日後國勢稍安、民心稍定，然後更議大行。如是則行之簡易，更張有漸，庶民安而法行矣。且民結之役，莫重於貢物，而民之所苦，莫甚於防納。操縱之害，只除此一弊，民之蒙惠，思過半矣。目今民間貧乏，已到十分地頭，至聞有餓死者，決不可責捧於春夏之前。請兩湖及江原道秋等米布，催促上納，而今春則減除勿捧，待麥秋，每結收牟米二斗，上送宜當。且貢物以本色來納者，如遠方異產，京中決不可買得者及藥材，則姑令以本色來納，而至於奉常寺貢物，則其中一二難買者外，其餘皆可</p>
--	---	---

	<p>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물을 본색으로 가져와 바치는 것에 있어서 먼 지방의 특산물로 서울에서 아주 살 수 없는 것과 약재들은 우선 본색으로 가져와 바치게 하고, 봉상시의 공물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사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쌀을 우선 지급하여 본색으로 상납하는 폐단을 없애버리면 향사(享祀)의 정성에 조금도 손상되는 것은 없고 백성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하는 효과는 클 것입니다.” 하니, 따랐다.</p>	<p>質用。今以現在之米，爲先支給，而除本色上納之弊，則於享祀之誠，少無所損，其爲民除弊則大矣。”從之。</p>
<p>인조 5권,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4월 1일(갑신) 4 번째기사</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해 가을에 영동(嶺東) 아홉 고을의 미곡을 북도(北道)로 운반하여 들여가라는 뜻을海道(該道)에 분부하였고, 또 함경 감사가 재촉하여 운반하기를 계청한 것에 따라 다시 신칙하였는데도 아직 한 섬도 운송해 들었다는 보고가 없으니, 일이 매우 한심합니다. 지금 들건대 함경남도 일대에 기근이 너무도 심하여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다 하니, 진구(賑救)하는 일이 하루가 급합니다. 본도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속히 달려가서 재촉하여 운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후 감사는 추고하고 차원(差員) 등은 결장(決杖)하고 심한자는 파직하여서 게을리하여 거행하지 않은 죄를 징계하소서.” 하니, 따랐다.</p>	<p>備邊司啓曰：“上年秋，以嶺東九官米穀運入北道之意，分付該道。又因咸鏡監司催運之啓，更爲申飭，而尙無一石運入之報，事極寒心。今聞咸鏡南道一帶，饑荒太甚，餓殍載路，賑救之舉，一日爲急。請令本道都事，恐速馳往，催趨發運，而前後監司推考，差員等決杖，甚者罷職，以懲慢不舉行之罪。”從之。</p>
<p>인조 5권,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4월 23일(병오) 1 번째기사</p>	<p>상이 위사(衛士)가 역질(疫疾)을 앓는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약을 내려 구출하기를 매우 지극히 하였다.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정원에 하교하여 해조로 하여금 면포(綿布)를 제공하여 매장하게 하였다.</p>	<p>上聞衛士患疫，特賜藥物，救恤甚至。及聞其死，下教政院，令該曹題給綿布，使之埋葬。</p>
<p>인조 7권,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9월 1일(임자) 1 번째기사</p>	<p>상이 주장에 자정전(資政殿)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호조 판서 심열(沈悅)이 아뢰기를, “어영군(御營軍)이 이제 올라올 예정인데, 본조로 하여금 특별히 양료(糧料)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감(都監) 군사의 양료가 1개월에 거의 3천 석이나 되므로 각도의 삼수미(三手米)를 다 받아들인다 해도 오히려 부족해서</p>	<p>上晝講《孟子》于資政殿。戶曹判書沈悅曰：“御營軍今將上來，令本曹特備糧料。都監軍士之料，一朔幾至三千石，雖盡捧各道三手糧，猶患不足，而近來海西則專委西餉，他道亦多流亡</p>

	<p>근심인데, 요즈음 해서(海西)는 서쪽의 군항(軍餉)을 전담하고 있고, 다른 도 또한 유망(流亡)하여 절호(絶戶)가 많아 실제 수입이 심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각 아문의 군관 및 편곤수(鞭棍手)의 무리는 모두가 신설된 병력인데 여기저기서 주선하여 겨우 양식을 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영군에게까지 양료를 주어야 하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군항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을 염려해서 징집하는 군사의 인원수를 많지 않게 하였으니, 모름지기 잘 조치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심열이 아뢰기를, “전일에 연신(筵臣)이 통영(統營)의 곡식을 가져다 쓸 것을 계청하였습시다만, 현재 늦가을이 되어 배로 운반하기가 어려우니, 임술년과 계해년에 받지 못한 전세(田稅)를 기일을 정해 수송하여 경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라는 뜻으로 급히 호남과 호서의 감사·도사에게 하유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絶戶，實入甚縮。至於各衙門軍官及鞭棍手之類，皆新設之兵，東西拮据，僅得接濟，而御營軍放料，又出意外，罔知所措。”上曰：“予亦慮餉道之難辦，故所徵軍士，其數不多，須善爲措處。”悅曰：“頃日筵臣啓請取用統營之穀，而目今秋節已高，舡運爲難。壬戌、癸亥未捧田稅，刻期輸送，以補經費之意，請急急下諭於兩湖監都事。”上從之。</p>
<p>인조 7권,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9월 15일(병인) 1번째기사</p>	<p>간원이 아뢰기를, “임진년 병란 때에 호종(扈從)한 제신(諸臣)과 묘사(廟社)의 신주를 시종 모셔 받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묘조(宣廟朝)에 이미 그들의 공로를 헤아려 책훈(策勳)하기도 하고 달리 상을 내리도록 하기도 하여 은전(恩典)을 이미 완결 시켰습니다. 그런데 광해(光海) 때에 연줄을 대고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외람되게 상소하여 끝내 요행을 바라게끔 하는 단서를 열었으니, 위성(衛聖)이란 칭호는 군더더기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정 초기에 즉시 혁파하자 인정이 모두들 통쾌하게 여겼는데, 그 뒤 조공근(趙公瑾) 등의 일로 인해 다시 녹훈(錄勳)하자는 의논이 있었고, 또 그들의 부조(父祖)를 위해 무턱대고 상언(上言)하여 바라서는 안 될 은전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까지 있게 되</p>	<p>諫院啓曰：“壬辰兵亂扈從諸臣及廟社主終始陪奉之人，宣廟朝既已量其功勞，或令策勳，或施他賞，恩典已完，而光海時夤緣希望之徒，猥濫陳疏，遂啓僥倖之端，衛聖之號，可謂贅矣。反正之初，卽爲革罷，人情皆以爲快。厥從因趙公瑾等事，更有錄勳之議，又有爲其父祖，冒呈上言，冀圖不可望之恩典者，極爲痛駭。錄勳都監所當明白回啓，以杜倖門，而未免回護，請議</p>

었으니, 지극히 통탄하며 놀랄 일입니다. 따라서 녹훈 도감(錄勳都監)으로서
 는 명백하게 회계하여 요행을 노리는 길을 막았어야 할 터인데, 이를 비호하
 며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시비를 결정하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사안이라면 의논하는 것이 옳습니
 다. 그러나 임진년에 묘사의 신주를 모시고 있었던 자나 폐주(廢主)를 시위
 (侍衛)했던 관원을 정사(靖社)의 훈적(勳籍)에 녹공(錄功)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찌 다시 대신들과 의논해 본 다음에야 가부
 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의 일은 선왕조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을 지금 시대에 반정한 공신들과 동시에 삼혈(敵血)하게 한다면, 어
 찌 신명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한
 공로를 전연 잊어버릴 수 없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베풀 만한 상당한 상이 있
 을 것이니, 결단코 구차하게 녹훈하여 거듭 요행을 노리는 길을 열어 놓을 수
 는 없습니다. 조공근 등의 일은 해조로 하여금 다시 처치하도록 하고, 유노
 (兪) 등의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게 한 공사는 거행하지 말도록 하소서. 관서
 (關西)는 물력(物力)이 이미 모두 고갈되었으니, 군향(軍餉)을 조달하고 모장
 (毛將)을 접응하는 이외의 나머지 일들은 십분 절약하여 민간의 폐해를 구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西路)에 왕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북
 경에 가는 사행(使行)으로 인해 서로의 폐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두 사행이 바다를 건널 때에 드는 양곡을 합계하면 1천여 석이나 되고
 격군(格軍)도 4백 명에 이릅니다. 그 사이의 번다한 비용은 대체로 모두 원역
 (員役)의 인원수가 많기 때문인데, 지난 번에 대간이 원역을 감하기를 계청했
 어도 끝내 의논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필시 해조가 서로 지역 백성들
 의 곤궁하고 고생하는 폐해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줄은 잘 알지 못해서 그
 령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북경에 가는 원역을 적당히 줄여 보내는 것이
 야말로 선조 때에 폐단을 염려해서 만든 좋은 규정입니다. 이 뒤로는 북경에

大臣。是非難定，事在可疑者，議之
 可也。壬辰年廟社陪奉、廢主侍衛之
 官，不可附錄於靖社之勳，雖三尺童子
 皆當知之，何待復議於大臣而後，定其
 可否也？況壬辰之事，在於先朝。若
 與當代反正之功，同時敵血，則豈不羞
 愧於神明乎？此輩當時跋涉勤苦之勞，
 不可全忘，則必有相當可施之賞，決不
 可苟且錄勳，重開僥倖之門。請趙公
 瑾等，令該曹更爲處置，兪訖等議大
 臣，公事勿爲舉行。關西物力，已盡蕩
 竭，調度軍餉、接應毛將之外，他餘凡
 事，不可不十分樽節，以救民弊。西
 路往來者多言赴京之行，又爲西路大病
 之加證。今者兩行過海之糧，通計千有
 餘石。格軍亦將四百名。其間煩費，
 大抵皆由員役數多之故也。前者臺諫
 請減員役，而議竟不行。該曹必未及
 細知西民困苦之弊，至於如此而然也。
 況赴京員役，量減以送，乃宣廟朝慮弊
 之良規。今後赴京員役，預爲減數磨
 鍊，以除西民一分之弊。”上從之。
 趙公瑾事，累啓始從之。

	가는 원역을 미리 수를 감해 마련하여, 서로 백성들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제거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조공근의 일은 여러 차례 아뢰고서야 비로소 따랐다.	
인조 7권,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9월 30일(신사) 2번째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강도(江都)를 보장(保障)으로 삼아 양항(糧餉)을 비축해 두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본부(本府)의 전세(田稅)를 작미(作米)하며 본창(本倉)에 보관하고 하삼도(下三道)의 전세도 강화에 비축하기로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세입(歲入)이 충분치 못해 경비가 모자라자 본부가 본창에 보관해 두었던 곡식을 서울로 실어 들었는데, 민간에 산재된 곡식을 거두어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음이 얼어 붙을 때 혹시라도 급하게 사용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본부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작미하여 거두어들이는 가을 곡식과 조례(阜隸)로부터 작미하여 받는 곡식을 본창에 보관해 둔 뒤 우선 다음 봄철의 정세를 보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 이런 뜻으로 경기 관찰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備邊司啓曰：“國家以江都爲保障，儲峙糧餉，實是今日之急務。故本府田稅作米，留置本倉，至於下三道田稅，亦有留儲江華之議矣。近因歲入不敷，經費乏絕，本府留倉之穀，輸入京城，散在民間之穀，未易收捧。前頭氷合之時，脫有緩急之用，則未知何以爲計。今年本府、宣惠廳秋等作米及阜隸作米，留置本倉，姑觀春來事勢，處之似宜。請以此意，下諭于京畿觀察使。”上從之。
인조 8권, 3년(1625) 을축 / 명 천계(天啓) 5년) 1월 16일(을축) 5번째기사	상이 밤에 흥인당(興仁堂)에 나아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술과 음식을 내리고 밤이 깊어서야 파하였다.	上夜御興仁堂，講《大學衍義》。講訖，賜酒饌，夜深乃罷。
인조 8권, 3년(1625) 을축 / 명 천계(天啓) 5년) 3월 4일(임자) 1 번째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사용원을 둔 것은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건을 가져다가 각 전(殿)의 어선(御膳)을 진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선혜청(宣惠廳)이 단지 기읍(畿邑)의 진상 값을 받아 저자에서 신선한 물건을 준비하여 바친 것은 관리들이 봉진할 때 수송하는 폐해를 줄이려고 한 것일 뿐이니, 다만 하나의 진상입니다. 열성들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정을 어찌 조금이라도 인색하게 했겠습니까마는, 대군이나 공주를 위하여 진상을 더 배정한 때가 있었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	諫院啓曰：“司饗院之設，取各道進上之物，以供各殿御膳也。今者宣惠廳，只捧畿邑進上之價，備納市上新鮮之物，欲省官吏封進轉輸之弊而已，特一進上也。列聖之慈愛友于之情，何嘗小嗇，未聞有爲大君、公主，加定進上之時。誠以名分不可僭，而幾微之際，

	<p>다. 참으로 명분은 어지럽혀서는 안 되고 기미가 짙트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신선한 꿩 1마리씩을 지급하는 것이 미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관계되는 바가 중대한 것입니다. 공자가 명분을 중요시하여 말 장식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한 것이 어찌 우리를 속이는 것이겠습니까. 공주의 집에 신선한 꿩을 진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p> <p>하니, 답하기를, “공주 집에 보내는 신선한 꿩을 길례(吉禮) 이후에는 감해야 될 듯 하였지만, 자전께서 진념하시는 뜻을 위하여 그대로 보내게 한 것이다. 하루에 신선한 꿩 1마리씩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물건이니, 규정 이외의 것인 듯 하기는 하지만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 다시 번거롭히지 말라.”</p> <p>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자 비로소 따랐다.</p>	<p>不可不慮也。 一日一鮮雉， 物雖微， 所係重大。 孔子之惜繁縷， 豈欺我哉？ 請還收公主房進排鮮雉之命。” 答曰： “公主家所送鮮雉， 吉禮後似當減下， 而爲慈殿軫念之意， 仍爲送之。 一日一鮮雉， 爲勿極微， 雖似規外， 庸何傷乎？ 更勿煩瀆。” 累啓， 始從之。</p>
<p>인조 9권, 3년(1625) 을축 / 명 천계(天啓) 5년) 4월 18일(을미) 2번째기사</p>	<p>상이 융정전(隆政殿)에 나아가 공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자·대신·여러 종재(宗宰)·구공신(舊功臣)도 아울러 입시하였다. 술이 세 순배가 되자 상이 중사(中使)에게 명하여 수찰(手札)을 반포하고 탑전에서 공신 반수(功臣班首)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또 승지에게 명하여 모든 공신들에게 뜰 위에서 선시(宣示)하도록 하였는데, 그 교시에 이르기를, “경들이 아니었더라면 윤기(倫紀)가 멸절되고 종사(宗社)가 전복되었을 것이니, 경들의 공은 고금에 없는 것이다. 회맹(會盟)의 예가 이루어졌으나 보답할 것이 없다. 원컨대 경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구제하고 경들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고자 한다. 군신 사이에 각기 그 도리를 다하여 사욕을 극복하고 지극한 다스림을 이룩하기를 도모하리라. 곤경에 처했을 때를 생각하니, 이 날이 어찌 이리도 행복한지 모르겠다. 각기 주량을 다하여 술잔을 사양하지 말라.”</p> <p>하였다. 윤방(尹昉) 등이 술잔 올리는 일을 여러 훈신(勳臣)에게 사양하고 연원 부원군(延原府院君) 이광정(李光庭) 등도 두 원훈(元勳)에게 사양하였으나</p>	<p>上出御隆政殿， 宴功臣。 王子、大臣、諸宗宰、舊功臣竝入侍。 酒三行， 上命中使， 頒手札， 諭功臣班首於榻前， 又命承旨， 宣示諸功臣於階上。 其教書曰： 微有卿等， 倫紀敦滅， 宗社顛覆。 卿等之功， 振古所無。 會盟禮成， 無以爲報。 願與卿等， 共濟艱難， 與同休戚。 君臣之間， 各盡其道， 克去己私， 圖臻至理。 緬惟在莒， 此日何幸？ 須各盡量， 勿辭杯酌。</p> <p>尹昉等讓進爵於諸勳臣， 延原府院君李</p>

	<p>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왕자·종재·여러 공신 및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술을 내리고 장사(將士)들에게도 두루 내렸다. 도승지 김상헌(金尙憲)이 아뢰기를, “오늘의 연례(宴禮)는 마땅히 아홉 잔을 들어야 하나 이미 일곱 잔을 들어서 상하 사이에 즐거운 뜻이 서로 흡족하니 신료들 그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예경(禮經)에 ‘즐거움은 극도로 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아홉 잔을 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찍 편전(便殿)으로 돌아가서 정사에 유념하심으로써 성경(聖經)에 전하는 교훈의 뜻을 잊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그러나 해가 저물지 않았으니, 연례를 제대로 완성하고 파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김류(金瑬)·이귀(李貴)·장만(張晩) 등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자고로 새 공신이 회맹을 한 뒤에는 반드시 분축연(分軸宴)이 있는 법인데, 위에서 으레 풍악을 하사하고 술을 내립니다. 신들은 20일에 행하려고 하는데, 대간이 논계하여 병사와 수령 등을 속히 내려가게 한다 하니, 성대한 일이 적적하게 될까 싶어 황공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직 그들을 머물게 하여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光庭等，亦讓於兩元勳，皆不許。 宣醞於王子、宗宰、諸功臣及入侍諸臣，遍及於將士。 都承旨金尙憲啓曰：“今日宴禮，當行九爵，而已行七爵，上下之間，歡意交洽，凡在臣僚，孰不感激？ 《禮》云：‘樂不可極。’ 不必盡行九爵，請早還便殿，留心政事，毋忘聖經垂訓之義。” 上曰：“此言是矣。 但日勢不暮，成禮而罷，亦無妨矣。” 金瑬、李貴、張晩進曰：“自古新功臣，過會盟後，必有分軸宴。 自上例賜樂、宣醞，故臣等欲於二十日行之，而臺諫論啓：‘令兵使、守令等速爲下去’云，盛事落莫，惶恐敢啓。” 答曰：“姑留行之可也。”</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6월 2일(계유) 3 번째기사</p>	<p>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신흠(申欽)이 아뢰기를, “신들이 조종조 국상 때 사례를 상고해 보니, 27일이 지난 후에는 정신(廷臣)이 권도를 따르시라고 계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 즉시 진달하지 않더라도 역시 한두 달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정(常情)으로 말하면 이처럼 지레 청하는 것이 부당할 듯하나 그 까닭을 깊이 따져보면 참으로 임금의 몸은 종사와 백성의 주인이어서 서민들이 일절(一節)을 굳게 지키는 것과는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 성명께서는 계운궁(啓運宮)께서 편찮으신 뒤부터 근</p>	<p>左議政尹昉、右議政申欽啓曰：“臣等竊考祖宗朝國恤時事例，過二十七日之後，則廷臣有啓請從權之舉。 雖或不卽陳稟，亦不過一二朔。 以常情言之，則似不當如是徑請，而徐究其故，則誠以人君一身，爲宗社、生民之主，不可下同凡庶，堅持一節而已。 況我聖明，</p>

	<p>심하고 애태우며 탕제를 받드느라 일찍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는데, 끝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당하셨으니, 성명께서 애상(哀傷)해 하고 쇠약해지신 지 이미 8~9개월이나 되었습니다.</p> <p>사람이 기운을 받는 데 있어 위경(胃經)이 주가 되기 때문에 평일에 채소를 먹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례를 지키다 제도를 지나치면 반드시 이롭하기 어려운 질병이 몸이 상한 나머지에 쌓여 일어나게 됩니다. 신들이 밤낮으로 민망하고 절박하여 걱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졸곡(卒哭)이 이미 지나갔고 조사(詔使)가 도착하게 될텐데 접대 의식의 번거로움이 평일보다 배가 될 것이니 원기(元氣)를 보양하는 방도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성명께서는 위로는 조종조에서 이미 행한 사례를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억조 신민의 정을 살피시어 빨리 고기 반찬을 드실 것을 승낙하소서.” 하니, 답하기를,</p> <p>“참으로 쇠로한 사람이 병으로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주 부끄러움이 없는 자일지라도 상중에 고기를 먹는 자가 없는데, 경들이 차마 이런 말을 내니 내가 매우 놀라 답할 바를 모르겠다. 경들은 예(禮) 아닌 말을 말아 내 마음을 편하게 하라.”</p> <p>하였다.</p>	<p>自啓運宮未寧之後，憂遑煎灼，奉持湯劑，未嘗一日安，而竟遭終天之痛，聖明之哀傷勞悴，已八九月矣。凡人之稟氣，胃經爲主，故雖平日咬菜之人，執喪過制，則必有難名之疾，發於積傷之餘。臣等夙夜悶迫，無以爲懷。卽日卒哭已過，詔使當臨，酬應之煩，倍於常日，調護眞元之方，不可少緩。伏願聖明，上念祖宗朝已行事例，下察臣民億兆之情，亟許從權。” 答曰：“苟非衰老之人，病不可支者，雖甚無恥，未有居喪啖肉者。卿等忍發此言，予極驚駭，不知所答。卿等勿爲非禮之言，以安予心。”</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6월 13일(갑신) 2번째기사</p>	<p>상이 남별궁(南別宮)이 행행하여 하마연(下馬宴)을 행하였다. 상이 절하기를 청하니, 조사가 허락하지 않아 서로 읊한 다음 자리에 앉아 의식대로 행주(行酒)하였다. 완배례(完盃禮)를 한 후에 좌의정 윤방(尹昉)으로 하여금 행주하게 하니, 조사가 사양하기를,</p> <p>“예(禮)는 이미 이루어졌으니, 다시 재신(宰臣)으로 하여금 행주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p> <p>하자, 상이 또 앉기를 청하였다. 상이 행주하여 언달아 3배(盃)를 건네고는 상이 묻기를,</p>	<p>上幸南別宮，行下馬宴。上請拜，詔使不許，相揖就座，行酒如儀。完盃禮後，使左議政尹昉行酒，詔使辭曰：“禮已成矣，不必再使宰臣行酒。”上又請座，上行酒連進三盃。上問曰：“廼者風聞，奴賊逆天犯關，大敗而走，此言誠然乎？小邦聞來，不勝喜幸。”兩使齊應曰：“然。奴賊果敗於寧遠，</p>

	<p>“지난번 소문을 들으니, 노적(奴賊)이 반역하여 산해관(山海關)을 침범하였다가 크게 패배하여 달아났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그 말을 듣고는 그지없이 기뻐합니다.”</p> <p>하니, 양사가 일제히 응답하기를,</p> <p>“그렇습니다. 노적(奴賊)이 과연 영원(寧遠)에서 패배하여 죽은 군사가 수만여 명이고, 왕이라 칭하던 그의 손자(孫子)도 죽었습니다.”</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p> <p>“매양 소문을 전해 듣고는 의심하였는데 지금 대인의 말을 들으니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p> <p>하고, 상이 또 말하기를,</p> <p>“모든 연회에서 반드시 대선(大膳)을 올리고 종배례(終盃禮)를 행하는 것은 그 예를 완결짓기 위한 것이므로 감히 청합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p> <p>“단지 정(情)에 있을 뿐, 어찌 대선(大膳)이 필요있겠습니까?”</p> <p>하자, 상이 말하기를,</p> <p>“대선은 올리지 말고 행배(行盃)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여, 드디어 종배례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p> <p>“완배(完盃)는 예를 완결짓는 것이나 감히 청하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조사가 허락하여 드디어 의식대로 행하였다.</p>	<p>軍士死者數萬餘，其孫稱王者，亦死矣。”上曰：“每以傳聞爲疑，今聞大人之言，喜極無言。”上又曰：“凡宴，必進大膳，行終盃者，所以成其禮也。敢請焉。”詔使曰：“只在情耳，何必大膳？”上曰：“勿進大膳，但行盃如何？”遂行終盃禮。上曰：“完盃，所以成禮，而不敢固請。”詔使許焉，遂行之如儀。</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6월 14일(을유) 7번째기사</p>	<p>상이 남별궁(南別宮)에 행행하여 익일연(翌日宴)을 행하였다. 상이 예단(禮單)을 받지 않은 일에 대해 사례하니, 조사가 답하기를,</p> <p>“귀국에서 요동 백성에게 계속 양식을 대주느라 지쳐 있으니, 우리들이 절제하는 것은 대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p> <p>하였다. 상이 인하여 말하기를,</p> <p>“지난번 병부의 자문을 보니 ‘속국이 두 마음을 지녔다.’라는 등의 말이 있어</p>	<p>上幸南別宮，行翌日宴。上謝不受禮單之事，詔使答以貴國疲於接濟遼民，俺等之節損，蓋爲除弊而然。上仍曰：“頃見兵部咨文，有‘屬國携貳’等語。小邦君臣，日夜惶懼，每慮父母之邦，或不諒小邦情事矣。今者大人，</p>

	<p>우리 나라 군신이 밤낮으로 황공해서 매양 부모의 나라가 혹 우리 나라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가 염려했습니다. 이번에 대인께서 마침 누추한 나라에 오셔서 원통한 마음을 거의 해명하게 되었습니다.”</p> <p>하니, 사신이 말하기를,</p> <p>“신종 황제(神宗皇帝)께서 귀국을 돌보신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셨고, 지금 우리 황상께서도 역시 귀국의 사대하는 정성을 알아서 조서를 반포하는 거조가 실로 내지와 같이 보아 경사를 함께 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어찌 두 마음을 품은 일이 있겠습니까. 문신이었으면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그가 무신이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p> <p>“이제 대인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 나라의 사정을 거의 변명할 가망이 있어 과인의 마음이 조금은 스스로 위안이 됩니다.”</p> <p>하니, 사신이 말하기를,</p> <p>“우리들이 조정에 돌아가면 마땅히 황상께 진달하겠습니다.”</p> <p>하자, 상이 말하기를,</p> <p>“이렇게까지 분부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p> <p>하였다. 인하여 행주(行酒)하기를 청하여 드디어 첫 잔을 돌리고 완배례(完盃禮)를 행하였다. 상이 또 재신(宰臣)에게 명하여 행주하기를 청하였다.</p>	<p>適臨陋邦，冤痛之情，庶可白焉。”使曰：“神宗皇帝字恤貴邦，靡不用其極，而今我皇上，亦知貴國事大之誠。頒詔之舉，實出於視同內服，與之同慶也。寧有携貳之事乎？文臣則必不如此，而以武臣之故，至此耳。”上曰：“今聞大人之言，則小邦情事，庶有暴白之望，寡昧之心，稍以自慰。”使曰：“俺等還朝，當陳達於皇上耳。”上曰：“盛教至此，多謝多謝。”仍請行酒，遂行第一酌，行完盃禮。上又請命宰臣行酒。</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6월 15일(병술) 4번째기사</p>	<p>상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회례연(回禮宴)을 행하니, 조사가 말하기를,</p> <p>“오늘 온 것은 회례(回禮)를 위해서이니, 먼저 절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p> <p>“당치 않습니다.”</p> <p>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p> <p>“감히 먼저 절하기를 꼭 청합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p>	<p>上御崇政殿，行回禮宴。詔使曰：“今日之來，爲回禮也，請先拜。”上曰：“不敢當。”使曰：“敢固請先拜。”上曰：“不敢當，不敢當。大人不許寡人先拜，請行揖。”遂相向再揖。詔使曰：“所送禮單，雖甚菲薄，願領微情。”上曰：“大人既儼然臨之，又侈</p>

	<p>“당치 않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대인께서 과인이 먼저 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읍하기를 청합니다.”</p> <p>하여, 드디어 서로 향하여 두 번 읍하였다. 조사가 말하기를, “보낸 예단(禮單)이 보잘것없으나 미미한 정을 받아주십시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이미 영광되게 오셨는데 또 분에 넘치는 예물을 주시니, 감히 사양하지는 못하나 당치 않습니다. 황공하기 그지 없습니다.”</p> <p>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처럼 사례하시니, 성의를 알 수 있습니다.”</p> <p>하고는 드디어 서로 향하여 두 번 읍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과인이 상을 당한 것을 염려하여 영광되이 조문하고자 하셨으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번에 또 지으신 제문을 보내주시어 이렇게까지 후대하시니 그지없이 감격스러워 재배하여 사례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이미 조문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감히 절을 받겠습니까.”</p> <p>하자, 상이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강청하는 것은 도리어 미안할 듯하니, 읍례를 행하기를 청합니다.”</p> <p>하여, 드디어 서로 향하여 두 번 읍하고는 자리에 앉기를 청하였다. 조사가 말하기를, “현왕께서 받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견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 “나이가 어려 예를 모르는 데다 또 황조의 책명을 받지 못하여 감히 대인을 알현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p> <p>하였다. 조사가 말하기를,</p>	<p>以禮物。雖不敢辭，亦不敢當，無任惶感之至。”使曰：“稱謝至此，盛意可知。”遂相向再揖。上曰：“大人念寡昧丁憂，猥欲臨弔，固已感拜矣，今者又送所構祭文。盛眷至此，不勝感激。請再拜以謝。”詔使曰：“既不得弔，何敢受拜？”上曰：“不許而強請，反似未安。請行揖禮。”遂相向再揖而請坐。詔使曰：“聞賢王有長子，請與相見。”上曰：“年幼不識禮，且未蒙皇朝冊命，不敢使謁於大人。”詔使曰：“賢王所教，豈不知禮？願一相見。”上曰：“時未得奏聞皇朝，而渠亦年幼，不閑禮節。且坐次非便，恐礙禮貌。是以不敢見矣。”詔使曰：“依命。”上曰：“頃者以遼民一事，奏聞皇朝，而見該部咨文，則頗有不諒衷曲之語。小邦不勝惶恐。”詔使曰：“朝見百官呈文，已知其詳矣。遼民甚衆，雖欲驅之於海島之中，亦不可容易。朝廷當有別樣處置，豈可使擾害於貴國乎？”上曰：“小邦土瘠民貧，接濟無路，其勢必至主客俱困，故不得不仰達於皇朝，而兵部之移咨如此，小邦之惶懼方深。適會大人銜命遠臨，庶</p>
--	--	---

	<p>“현왕께서 가르치신 바인데 어찌 예를 모르겠습니까. 한번 상견하기를 원합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 “아직 황조에 주문하지 못하였고, 그도 나이 어려서 예절에 익숙하지 못하며 또 자리 차서가 편치 못하여 예모에 구애될까 싶어서 감히 뵈게 하지 못하겠습니다.”</p> <p>하자, 조서가 말하기를, “명대로 하겠습니다.”</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지난번 요동 백성에 대한 한 가지 일을 황조에 주문하였는데 해부(該部)의 자문을 보니 조금 우리의 충심을 모르는 말이 있어 우리 나라에선 그지없이 황공하였습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아침에 백관들의 정문을 보고 이미 자세히 알았습니다. 요동 백성이 매우 많아서 바다섬으로 몰아넣고자 하나 역시 용이하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니, 어찌 귀국에 해를 끼치게 하겠습니까.”</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계속 양식을 대줄 길이 없으니, 그 형세가 반드시 주객이 다 고달픈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득이 황조에 상달한 것인데 병부의 이자(移咨)가 이러하니 우리 나라가 깊이 황공해 하던 중 마침 대인께서 황명을 받들고 멀리 오시어 거의 사정을 해명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아침에 배신(陪臣)의 말을 들으니, 대인께서 간곡하게 교유(教諭)하시어 조정에 돌아가 주문하겠다고까지 하셨으니, 대인의 후의는 입으로 사례하기가 어렵습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p>	<p>將有以暴白情事，幸甚。 朝聞陪臣之語，則大人委曲教諭，至欲還朝奏聞，大人厚義，口難容謝。” 詔使曰：“兵部事，別有深意也。 貴國之於遼民事，力不及，接濟無策，此則朝廷之所軫念，而賢王之忠憤，孰不知之？ 兵部，非爲遼民也，非爲貴國也，別有深意存焉。” 御前通事李景稷啓曰：“詔使所謂深意，必指毛將事，而言也。” 上曰：“盛意至此，不勝感幸。 小邦悶迫之情，若不仰懇於父母之邦，則將何所告乎？ 前日之奏聞，實出於不得已，而辭不達意，恐無以暴白下情。 今者大人洞察小邦情事，若於登對之日，陳奏四聰之下，則小邦之十奏，不如大人之一言，不勝區區企望之至。 大人之於小邦，待之以誠，故不避猥濫，敢此仰告。” 詔使曰：“俺等在朝時，已聞遼民事矣。 天子明聖，俺等還朝，當以政府呈文，陳達於皇上。 賢王雖無所教，俺所目覩，其敢不盡心乎？” 上曰：“多謝、多謝。” 行酒如儀。 上曰：“毛將以單騎渡江，義聲所暨，莫不奮起， 奴賊不敢近邊， 小邦賴以無事。 秋毫莫非聖天子德澤，小邦君臣，日夜</p>
--	---	---

	<p>“병부의 일은 별도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귀국이 힘이 부족하여 요동 백성에게 계속 양식을 대줄 계획이 없으니 이는 조정에서 염려하는 바인데 현왕의 충분(忠憤)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병부는 요동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귀국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p> <p>하였다. 어전 통사 이경직(李景稷)이 아뢰기를, “조사가 이른바 깊은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장(毛將)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후의를 보이시니, 그지없이 다행합니다. 우리 나라의 안타까운 청을 만약 부모의 나라에 우러러 호소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고하겠습니까. 전일에 주문한 것은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왔으나 말이 뜻을 전달하지 못하여 하정(下情)을 해명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제 대인께서 우리 나라의 사정을 통찰하였으니 만약 등대(登對)하시는 날 황상께 아뢰시면 우리 나라에서 열 번 주달하는 것이 대인의 한 마디 말만 못할 것으로 구구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대인께서 우리 나라를 성심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감히 이처럼 우러러 고합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조정에 있을 때 이미 요동 백성 일을 들었습니다. 천자께서는 밝고 거룩하시니, 우리가 조정에 돌아가면 마땅히 정부(政府)의 정문으로 황상께 진달할 것입니다. 현왕께서 분부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목도한 바이니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p> <p>하자, 상이 말하기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p> <p>하였다. 의식대로 행주(行酒)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모장에 대한 일을 말하지 않았는가? 어찌 그의 답한 바가 이러한가?”</p>	<p>感祝。但物力單薄，事不如心，是以惶恐。”詔使曰：“廟堂與兵部，孰不知貴國接濟遼民之事乎？”上謂李景稷曰：“不言毛將事乎？何其所答如是耶？”景稷啓曰：“毛將之事，非不詳陳，而但以知道答之，專以遼民事言之矣。”完杯禮後，上使承旨，呈禮單於詔使前，詔使曰：“但受單子，以領厚情。”上強請之，詔使曰：“情禮俱隆，敢不惟命？”</p>
--	--	---

	<p>하니, 이경직이 아뢰기를, “모장(毛將)이 단기(單騎)로 강을 건너서 의로운 명성이 이르는 곳마다 분기하지 않는 이가 없어 노적(奴賊)이 감히 변방에 접근하지 못하여 우리 나라가 거기에 힘입어 무사합니다. 이는 추호도 모두 성천자의 덕택 아님이 없으므로 우리 나라 군신이 밤낮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력이 다 떨어져서 일이 마음과 같지 못하여 이 때문에 황공합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묘당과 병부 그 누구인들 귀국에서 요동 백성에게 계속 양식을 대준 일을 모르겠습니까.”</p> <p>하였다. 상이 이경직에게 말하기를, “모장에 대한 일을 말하지 않았는가? 어찌 그의 답한 바가 이러한가?”</p> <p>하니, 이경직이 아뢰기를, “모장에 대한 일을 자세히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단지 알았다고만 답하고, 오로지 요동 백성의 일만 말한 것입니다.”</p> <p>하였다. 완배례 뒤에 상이 승지를 시켜 조사 앞에 예단을 올리게 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단자만 받아 후한 정을 받겠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억지로 청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정(情)과 예(禮)가 다 융숭하니, 감히 명대로 하지 않겠습니까.”</p> <p>하였다.</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6월 16일(정해) 1번째기사</p>	<p>조사가 제천정(濟川亭)에 나가 놀았다. 우의정 신희(申欽), 관반 이정구(李廷龜), 원접사 김류 등이 재배례(再拜禮)를 행하기를 청하니, 양사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해가 이미 저물어가고, 정자가 빼어난 경치이긴 하지만 배에 올라 양화도(楊花渡)로 내려가 배를 타고 돌아가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매우 좋은 일이</p>	<p>詔使出遊濟川亭。右議政申欽、館伴李廷龜、遠接使金瑬等行再拜禮，請行酒禮，則兩使辭曰：“日已向暮，亭雖奇勝，不可不上船，流下楊花渡，乘船而歸，甚是勝事。況諸賢高會，可與</p>

	<p>외다. 더군다나 제현(諸賢)의 좋은 모임에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중류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하면 되니, 여기에서 연회를 베풀 것은 없소이다.”</p> <p>하고는 즉시, 배에 올라 모두 편복으로 자리에 앉게 하였다. 또 행주(行酒)를 청하니, 양사가 말하기를,</p> <p>“오늘은 바로 좋은 모임이고 이미 관대를 벗었으니, 술잔을 돌리며 이야기를 나눌 것이지 하필 예수(禮數)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겠소이까.”</p> <p>하여, 드디어 자리 위에서 행주하여 5~6순배가 돌았다. 두 사신이 노를 빨리 저으라고 재촉하여 양화도로 내려가게 하였다. 관반과 여러 사람이 상의하기를,</p> <p>“이제 이미 해가 졌는데, 만약 잠두령(蠶頭嶺)으로 내려가면 거의 4경(更)에 이르러 형세상 반드시 낭패할 것이다.”</p> <p>하고는, 역관으로 하여금 고하게 하기를,</p> <p>“잠두령은 본디 경치가 좋은 곳이어서 전부터 조사들이 놀지 않음이 없었으나 하루에 다 가서 본 때는 드물었습니다. 대인의 행차가 바쁘시고 또 왕래하는 폐단을 생각하시어 오늘 가서 보고자 하시지만 마침 해가 저물어 갔다 돌아오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오늘은 중류에서 흔들거리며 달빛을 타고 돌아갔다고 모름지기 다른 날 가서 유람하소서.”</p> <p>하니, 양사가 말하기를,</p> <p>“행차가 바빠 다른 날 가기는 어려울 듯하외다.”</p> <p>하였다. 술을 8~9순배 돌리고는 파하여 돌아왔다.</p>	<p>同舟，中流穩話，不必排宴於此。”即爲上船，皆令以便服就坐。又請行酒，則兩使曰：“今日乃是佳會，既脫落冠帶，把杯相話，何必以禮數困人哉？”遂於座上行酒，至五六巡。兩使促櫓，令下楊花渡。館伴諸人相議曰：“今日日沒，若下蠶頭嶺，則幾至四更，勢必狼狽”，令譯官告之曰：“蠶頭固是勝地，自前詔使，無不往遊，而鮮有一日並行之時。大人行忙，且念往來之弊，欲於今日往觀，而適日晚，勢難往還。今日則中流搖曳，乘月以返，須於別日往遊”云，兩使曰：“行忙似難別往矣。”酒行八九巡，遂罷歸。</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6월 17일(무자) 1번째기사</p>	<p>상이 남별궁에 행행하여 회례연(回禮宴)을 행하였다.</p> <p>상이 말하기를,</p> <p>“대인께서 영광스럽게 와림하신 지 오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실 뜻을 보이시니 온 나라의 신민이 서운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조금 더 머물렀다는 명을 받았으니 이는 다행이지만 오래 머물러 동방 사람의 바람을</p>	<p>上幸南別宮，行回禮宴。上曰：“大人光臨未久，遽示回程之意，舉國臣民，莫不缺然。昨蒙少留之命，此則多幸，而更望久留，以慰東人之望。”詔使曰：“使臣之職，不過頒詔而已。況於</p>

	<p>위로해 주시길 다시 바랍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사신의 직무는 조서를 반포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돌아가는 길에 모영(毛營)의 병마를 반드시 점검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았으니, 어찌 감히 조금 인들 늦출 수가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병마를 점검하는 것이 급하다 하더라도 돌아갈 때 며칠이면 처리할 일에 불과하니 우리에게서 하루 이틀 더 묵으신다 해서 못 미칠 걱정이 뭐 있겠습니까. 전부터 조사가 오면 반드시 몇 순(旬) 동안 머문 것은 동방 사람의 바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께서는 돌아갈 기일을 조금 늦추어 이 소원에 부응해 주십시오.”</p> <p>하고, 누누이 머물기를 청해 마지않으니, 조사가 비로소 말하기를, “우리들도 역시 전의 규례를 들었는데 사신으로 온 사람이 일찍이 5~6일 동안 체류한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후의에 감격하여 억지로 며칠 머물렀으니 또한 이미 족하였습니다. 현왕께서 또 머물기를 청하시는 것이 이처럼 지극하시니 의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패문(牌文)을 돌이켜 날짜를 조금 물렸으면 합니다.”</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단히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p> <p>하고는 이어서 의식대로 행주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돈아(豚兒)가 예절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책명(冊命)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대인을 뵈도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대인의 명을 어기기가 어려워 와서 알현하게 하고자 하니, 대신께서 불러다 가르쳐 주십시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어진 부왕이 위에 계시어 가정의 교훈이 반드시 엄할 것인데 예절에 대해</p>	<p>歸路，毛營兵馬，必須點閱。 皇命在身，豈敢少緩？” 上曰：“點兵雖急，不過回還時數日底事也。 於我信宿，何患不及？ 自前詔使之來，必留數旬者，所以慰東人之望也。 願大人，少遲回期，以副此願。” 縷縷請留不已，詔使始曰：“俺等亦聞前規，奉使者未嘗有五六月淹留也，。 而俺等爲感厚情，強留累日，亦已足矣。 賢王又從而請留，至於此極，厚義不可孤。 請招還牌文，差退其日字。” 上曰：“不勝喜幸。” 仍行酒如儀。 上曰：“豚兒不閑禮節，且未受冊命， 故不敢使見於大人矣。 今者重違大人之命，將欲使之來謁，願大人，進而教之。” 詔使曰：“賢父在上，庭訓必嚴，其於禮節，何患不識？ 願與相見。” 上曰：“不敢。”</p>
--	---	---

	<p>어찌 모를까 걱정하겠습니까. 상견하기를 원합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당치 않습니다.” 하였다.</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6월 18일(기축) 3번째기사</p>	<p>상이 승정전에 나아가 청연(請宴)을 행하였다. 상이 먼저 절하기를 청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온 것은 작별하기 위해서이니, 먼저 절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더 머물 것을 청하고자 하는데 어찌 작별하십니까. 대인께서 광림하셨으니 절하여 사례하고자 합니다.” 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천하의 후의는 이미 회첩에 나타나 있으니, 사은의 절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광림하셨으니, 사은의 절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작별하기 위해 왔으니, 먼저 절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읍하기를 청해도 되겠습니까?” 하고는 드디어 서로 읍하고 앉았다. 조사가 말하기를, “어제 현왕의 만아들을 보았는데 금옥(金玉)같은 상(相)이니, 실로 동국 신민의 복이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하례드립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과분하게 칭찬하시니, 실로 부끄럽습니다.” 하고 상이 또 말하기를, “오늘은 청연(請宴)하는 날인데 대인께서 작별하신다고 하시니, 한편으로는</p>	<p>上御崇政殿，行請宴。上請先拜，詔使曰：“俺等之來，爲奉辭也，請先拜。”上曰：“將爲請留，何以辭爲？大人光臨，請拜謝之。”詔使曰：“殿下之盛意，已悉於回帖矣。請行謝拜。”上曰：“大人光臨，請行謝拜。”詔使曰：“俺爲奉辭而來，請先行拜。”上曰：“不敢強請。請行揖可乎！”遂相揖而坐。詔使曰：“昨見賢王長子，金玉其相，實東國臣民之福，不勝喜賀。”上曰：“褒稱太過，惶愧實深。”上又曰：“今日乃請宴之日，而大人乃稱以奉辭，一則缺然，一則慙覩。”詔使曰：“今日兼行二宴可乎？”上曰：“大人只許以一日之留，此豈小邦之所望哉！自前大人之銜命者，未嘗有如是之遽歸。寡昧誠薄，不能挽留，自反而愧，不知所喻。小邦山川，又有可觀處，願少淹留，以慰東人之望。”詔使曰：“俺等已領情矣。前日奉使之臣，只爲頒詔一事，故往返之期，寬以</p>

	<p>서운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하였다. 조사가 말하기를, “오늘 두 가지 연회를 겸하여 행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단지 하루 더 머무는 것만 허락하시니, 이 어찌 우리 나라가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전부터 황명을 받고 온 대인이 이처럼 갑자기 돌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과인이 성의가 박하여 만류시키지 못하였으니 스스로 돌이켜보아 부끄러워 뒤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천에 또 구경할 만한 곳이 있으니 조금만 더 머물러 동방 사람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자, 조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미 실정을 알았습니다. 전날 사신으로 온 이들을 단지 조서를 반포하는 한 가지 일 뿐이었기 때문에 왕래하는 기간이 1년이나 되었으나, 지금은 병마를 점검하라는 명이 있어 일정이 매우 빡빡하므로 감히 지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찌 차마 현왕과 곧장 작별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관사가 협소하며 누추하고 대접이 시원치 않아 더 머물기를 청하는 것이 미안한 줄은 잘 아나, 지성으로 바라는 바라 존엄한 면전에서 피치 못하는 바입니다. 대인께서는 하루 이틀 더 유숙하는 것을 허락하시어 동방 사람의 바람을 위로하십시오.” 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간절히 머물기를 청하시니 하루를 몰려 21일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하루 머무는 것 역시 매우 빠르지만 머물지 않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하루</p>	<p>一年。今則點兵有命，程限甚嚴，是以不敢濡滯矣。不然，俺等亦何忍便訣賢王也？”上曰：“館宇狹陋，供奉非薄，固知請留之未安，而至誠所發，不避嚴尊。願大人許以信宿，以慰東人之望。”詔使曰：“懇留至此，請差退一日，以二十一起程矣。”上曰：“一日之留，亦甚倏然，而與其不得留也，雖加一日，猶愈乎已。感激之至，不知攸謝。”詔使曰：“初欲於十八日啓程，而淹留至此者，摠爲殿下之厚情也。”上曰：“大人俯察願留之微懇，不勝榮幸。請行謝拜。”使曰：“不敢。”遂相揖。上行第一爵，行完杯禮。宰臣行酒，竝如儀。</p>
--	---	--

	<p>만이라도 거절하시는 것보다는 좋으니, 지극히 감격하여 사례할 바를 모르겠습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18일에 출발하고자 하였는데, 이처럼 지체하는 것은 모두 전하의 후의 때문입니다.”</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더 머물기를 원하는 하찮은 정성을 굽어 살피시니 대단히 영광입니다. 사은의 절을 올리고자 합니다.”</p> <p>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당치 않습니다.”</p> <p>하여 드디어 서로 읍하였다. 상이 첫째 잔을 돌리고 완배례(完盃禮)를 행하였고, 재신(宰臣)이 모두 의식대로 행주하였다.</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6월 19일(경인) 1번째기사</p>	<p>조사가 잠두(蠶頭)로 나가 놀 때 도승지 이홍주(李弘胄)가 어첩(御帖) 및 예단(禮單)을 바치자 답하기를, “매양 근시를 보내 문안하니, 후의에 감사합니다.”</p> <p>하였다. 인하여 다주례(茶酒禮)를 행하여 한 잔 든 후에 배에 올라 증류로 가 좌상에서 행주(行酒)하게 하여 10여 순배에 이르렀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유봉(仙遊峯)에 이르러 해가 이미 황혼이 되어 촛불을 밝히고 배를 돌렸는데, 아주 흡족하게 즐기었다. 파할 무렵에 여러 사람을 앞에 늘어서도록 하여 한꺼번에 행주하였다. 또 말하기를, “여러분께서 현왕의 성의를 받들어 여러 차례 조용한 기회를 만들어 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현왕은 밝고 거룩하시니, 여러분은 잘 섬기십시오. 상봉한 지 오래지 않아 헤어질 날이 이미 박두하니, 슬픈 마음 금하지 못하겠습니다.”</p> <p>하였다. 재삼 정녕하게 말하면서 아주 친근한 뜻을 보였다. 밤이 깊어서야 돌</p>	<p>詔使出遊蠶頭。 都承旨李弘胄， 呈御帖及禮單， 則答曰：“每遣近侍問之， 多拜盛意。” 仍行茶酒禮。 一酌後， 乘船中流， 令座上行酒， 至十餘巡， 從容談話。 到仙遊峯， 則日已向昏， 秉燭回船， 極其歡洽。 臨罷， 令諸人列立于前， 一時行酒， 且曰：“諸公奉承賢王誠意， 屢致從容， 多謝多謝。 賢王明聖， 願諸公善事。 相逢未久， 別日已迫， 無任悵然。” 再三丁寧， 極致慙懇之意， 夜深而歸。</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6월 20일(신묘) 1번째기사</p>	<p>아왔다.</p> <p>상이 남별궁(南別宮)에 행행하여 상마연(上馬宴)을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맑은 덕은 백세토록 잊기가 어렵습니다. 떠나는 수레 바퀴를 묶어둘 순 없으나 이곳에 끼치신 은덕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신민이 그 불후의 사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찌 기록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과분한 분부를 받자오니 한편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들도 역시 전하의 성대한 덕을 돌아가 황조(皇朝)에 아뢰어 전하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p> <p>하자, 상이 말하기를, “당치 않습니다.”</p> <p>하였다. 종연 배례(終宴盃禮)를 모두 전의 의식대로 하였다.</p>	<p>上幸南別宮，行上馬宴。上曰：“大人清德，百世難忘。《白駒》雖不可繫，《甘棠》尙有遺愛。小邦臣民，將欲記其不朽之實耳。”詔使曰：“俺等寧有可傳之事乎？承此盛教，一愧一謝。”又曰：“俺等亦將以殿下之盛德，歸奏皇朝，使天下之人，無不知之也。”上曰：“不敢當。”終宴杯禮，皆如前儀。</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6월 21일(임진) 1번째기사</p>	<p>상이 모화관에 행행하여 전연(餞宴)을 행하였다. 중국 사신이 상과 이야기를 나누는 즈음에 상당히 애모하는 기색이 있었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우리 나라를 염려하시어 의서(醫書)까지 선사하시니 동방 백성이 이로부터 거의 횡사하는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전하께서 백성을 돌보는 정성이 지극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백성을 치료하는 방서(方書)를 올린 것인데 뭐 사례할 것이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모 도독(毛都督)이 대인께서 이곳에 계실 때 올라와 면대해 의논하고자 하여 패문(牌文)까지 냈는데, 이제 사신의 수레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어 그가 오지</p>	<p>上幸慕華館，行餞宴。天使與上說話之間，頗有愛慕之色。上曰：“大人念恤小邦，至惠以醫書，東民自此，庶免夭札之患矣。不勝感激。”詔使曰：“俺聞殿下恤民之誠，靡不用其極，故以醫民之方，進之矣。何以謝爲？”上曰：“毛都督欲於大人在此時，上來面議，至發牌文，而今者星輶遽發，彼不及來矣。”詔使曰：“彼之來，爲何事，而雖來，亦何爲？”蓋文龍發牌文，率兵上京云者，恐喝本國之言也。是以</p>

	<p>못하게 되었습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그가 오는 것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p> <p>하였다. 대개 모문룡(毛文龍)이 패문을 내어 군사를 이끌고 상경하겠다고 한 것은 본국을 공갈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상이 이 말을 살짝 언급하여 중국 사신이 알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도독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지만 수만 명의 군량을 계속 댈 길이 없어 힘이 마음을 따르지 못해 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p> <p>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올 때에 모수(毛帥)를 보았는데 그의 말이 귀국에서 군량을 대어주는 것에 감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뒤 글을 받았는데 하나는 봉전(封典)에 대한 일을 진달한 것이요, 하나는 군량 조달을 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군량 조달은 조서를 반포하는 사신이 알 바가 아니라고 여겨 그렇게 답하였습니다. 설령 그가 올라오더라도 역시 어떻게 하겠습니까.”</p> <p>하자, 상이 말하기를, “두 대인께서 우리 나라의 사정을 환히 아시어 친절하게 분부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p> <p>하였다. 상이 술을 권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감히 마시지 않겠습니까.”</p> <p>하고, 또 말하기를, “자리가 비밀스럽지 못하여 말 나누기가 불편하니, 종배(終盃)를 기다려 조용히 서로 이야기하기를 청합니다.”</p> <p>하였다. 양사의 기색이 도독의 일을 비밀히 말하려다가 도로 중지하고 말았다. 상이 의식대로 행주(行酒)하였다. 조사가 말하기를,</p>	<p>上微發此言，欲使天使知之也。 上曰： “小邦之於都督，非不竭誠以待，數萬兵糧，繼之無路。 力不從心，是以爲悶。” 詔使曰：“來時見毛帥則其言，無非感貴國繼糧之意也。 其後得書，一則陳封典事也， 一則請調糧事也。 俺等以 ‘調糧非願詔使臣所知也’，以是答之。 彼雖上來，亦何爲哉？” 上曰：“兩大人洞知小邦情事，諄諄教之，不勝感謝。” 上勸酒，詔使曰：“敢不飲？” 又曰：“坐次不密，語言非便。 請待終杯，從容相話。” 兩使氣色，以都督事，將欲密語，而還止焉。 上行酒如儀。 詔使曰：“固不忍便訣賢王，而人生一會，便有一別，其將奈何？ 俺等還朝，只想殿下於夢寐中而已。” 上曰：“盛教至此，不勝感悚。 炎暑可畏，海路且險，願兩大人慎行李，以副遠人之望。” 詔使請拜以辭，上固辭不得，遂相與再拜，下階送之。</p>
--	--	---

	<p>“차마 현왕과 곧장 작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한 번 만나면 한 번 헤어짐이 있는 법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조정에 돌아가면 전하를 꿈속에서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말하기를,</p> <p>“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감격스럽고 송구합니다. 불별 더위가 두렵고 바닷길이 험하니, 두 대인께서는 여정을 잘 마치시어 멀리 있는 사람의 소망에 부응하소서.”</p> <p>하였다. 조사가 절하여 하직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고사하였으나 우겨서 드디어 서로 두 번 절하였다. 상이 계단을 내려가 전송하였다.</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7월 3일(계유) 4 번째기사</p>	<p>홍문관 부제학 홍서봉(洪瑞鳳) 등이 상차하기를,</p> <p>“거상하는 예는 수척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시청(視聽)이 쇠하지 않아야 하며,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되, 병이 회복되면 처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선왕(先王)께서 예를 제정하실 적에 몸을 훼손하여 목숨을 잃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몸을 훼손하여 길으로 드러나고 쇠약해진다면 형세상 장차 치료하기 어렵게 될 것이니,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p> <p>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는 지난번 시약(侍藥)하실 때에 오래도록 근심하고 과로하셨기 때문에 원기를 또한 너무도 많이 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사를 당하신 이래로 곡읍(哭泣)하고 기거(起居)하심에 있어 예제(禮制)를 벗어나셨으니, 훼손이 뒤따르는 것은 본래 당연한 일입니다.</p> <p>자전께서 옥체가 편안치 못함을 친히 살피시고 외정(外廷)에 하교하신 내용이 간절한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시종 고집하시면서 그 병이 점점 우려할 정도로 깊어지게 하십니까. 성상의 한 몸이야말로 종사와 생민이 의지하는 바인데, 한갓 필부의 행실만을 고집하고 성인의 달효(達孝)에 대한 훈계는 생각치 않으시니, 전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p>	<p>弘文館副提學洪瑞鳳等上筭曰： 居喪之禮，毀瘠不形，視聽不衰，有疾則飲酒、食肉，疾止復初。夫先王制禮，必使毀不滅性。若致毀，而至于形至于衰，則其勢將至於難醫之域，不其歸於滅性之歸乎？臣等伏念，聖上粵在侍藥之時，憂惶勞悴之久，致損眞元者，亦已多矣。自遭哀疚以來，哭泣起居，過踰禮制，傷毀之來，固其宜矣。今者慈殿，親覩玉體之不安，下教外廷，辭意懇惻。殿下豈可終始堅執，以致其疾之深憂乎？聖上一身，乃宗社、生民之攸托，而徒守匹夫之行，不思聖人之達孝。殿下不宜自輕之若是也。禮曰：“不勝喪，比於不孝。”先儒曰：“哀者，本是愛親，毀而傷生，</p>

	<p>《예기(禮記)》에 ‘상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하면 불효에 비견된다.’ 하였고, 선유(先儒)는 이르기를 ‘애통해 하는 것은 본래 아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훼손하여 목숨을 상한다면 이는 그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데 몸이란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이니, 그 몸을 아끼지 않는다면 바로 아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사람이 자식두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 부모의 상을 마치게 하려 함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성명께서는 자전의 뜻을 받들어 예제(禮制)대로 행하시어 효를 마치는 도를 다하도록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경들이 모두 경악(經幄)의 신하들로서 임금을 예로 섬길 것은 생각치도 않고 이렇게 무리한 말을 꺼내다니, 나는 매우 놀랍게 생각한다. 나의 뜻은 이미 대신에게 유시하였다. 경들은 다시 이처럼 비례(非禮)의 말을 하지 말라.”</p> <p>하였다.</p>	<p>則是不愛其身也。 身者， 親之遺體也。 不愛其身， 卽是不愛其親也。”</p> <p>又曰：“人之所貴乎有子者， 正欲其終父母之喪也。” 伏願聖明， 遵奉慈旨， 循依禮制， 以盡終孝之道。</p> <p>答曰：“卿等俱以經幄之臣， 不思事君以禮， 出此無理之說， 予甚驚異。 予意已諭于大臣， 卿等更勿爲如此非禮之言。”</p>
<p>인조 13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7월 4일(갑술) 1 번째기사</p>	<p>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삼가 전후로 성상의 비답을 받들건대 말씀이 준절하셨습니다. 이는 신들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고 말에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으나, 또한 성명께서 지극한 정에 가리운 나머지 예를 제정한 성인의 본뜻을 혹 살피지 못해서 그런 점도 있는가 싶습니다.</p> <p>대체로 효도하는 방법이 많습시다만, 자신의 몸을 해쳐 목숨을 잃는 것이야말로 불효 중에도 큰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예제(禮制)를 제정하여 후세를 가르치실 때, 상중에 있는 자로 하여금 머리에 종창(腫瘡)이 생기면 머리를 감게 하고, 몸에 종양(腫瘍)이 생기면 목욕을 하게 하고, 병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 하면서, 혹시 지나치게 훼손하여 목숨을 잃는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셨으니, 이 예를 제정한 뜻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주도하다 하겠습니까. 증자(曾子)가 친상(親喪)을 당하여 지나치게</p>	<p>大臣率百官啓曰：“伏承前後聖批， 辭旨峻截， 蓋臣等誠有所未至， 辭有所未達， 而亦恐聖明， 蔽於至情， 或未察於聖人制禮之本意也。 夫致孝之道， 廣矣， 以毀滅性， 非孝之大節。 聖人作爲禮制， 以教後世， 使居喪者， 頭有瘡則沐， 身有瘍則浴， 有疾則飲酒、食肉， 猶恐或過於毀， 以至滅性也。 此其制禮之意， 何等委曲， 何等周至耶？ 曾子遭親喪而過毀， 後乃悔之曰：‘自吾母而不用吾情， 吾惡乎用其情？’ 蓋以過哀傷生， 不但爲失禮而已， 聖賢之</p>

	<p>몸이 훼손되자 뒤에 후회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죽은 일에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니 다시 어디에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쓸 것인가.’ 하였으니, 이는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을 해치면 예를 잃는 일이 될 뿐만이 아니라는 것으로써 성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p> <p>우러러 생각건대, 성상께서는 지극한 효성으로 애통해 하시는 것이 멀리 전대(前代)를 뛰어넘고 계십니다. 시병(侍病)하실 때부터 초상(初喪)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쳐하시고 음식을 드심에 있어 아무리 예를 잘 지키는 필부라 할지라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만기(萬機)를 처결하고 온갖 일을 돌보시느라 마음을 고달프게 하고 기(氣)를 손상시키는 일을 맡씀드리자면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춘추가 한창이시고 백신(百神)이 보호하여 다행히 대단한 질병은 없으시나, 모르는 사이에 몸을 상하지 않으셨다고 꼭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p> <p>신들이 지난번 등대(登對)했을 때에 용안을 우러러 뵈고 실로 우려를 금치 못하였는데, 어제 자전의 하교를 받들고야 비로소 두려운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하게 되었으니, 느슨하게 행동하여 시기(時期)에 뒤진 죄를 이제 와서는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막연히 하교하시며 유침(劉湛)과 반기(潘起)의 말을 거론하시어 신들을 책망하시니 신들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신들의 말을 채납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어찌 간절한 자전의 뜻이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운을 상하는 것이 극도에 이르면 병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한다 해도 벌써 늦을까 두려운데, 병이 나기를 기다린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자신을 가벼이 여긴다 하더라도 종사는 어찌할 것이며 자전에 대해서는 어찌하실 것입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지극한 정을 억제하시고 자전의 뜻을 따르소서.”</p>	<p>意，蓋可見也。 仰惟聖上，至孝惻怛，高出前代。 自侍疾至于初喪，以及今日，其居處、飲食，雖匹夫之秉禮者，無以加焉。 加以裁處萬幾，酬應庶務，勞心、損氣，種種難言。 雖緣春秋鼎盛，百神護持，幸無大段疾痛，然其暗中傷敗，必有不可言者。 臣等頃得登對，仰望玉色，固已不勝憂念，昨承慈教，乃始恍然，有此請焉，遲緩後時之罪，至此而無所逃矣。 聖教邈然，反起劉湛、潘起之語，以責臣等，臣等竊惑焉。 聖上縱不以臣等之語爲可採，獨不念慈旨懇惻乎？ 積傷之極，必至生病。 病未形而預防，猶恐已晚，若待病之已形，悔何及矣？ 殿下雖自輕，其奈宗社何，慈殿何？ 伏願勉抑至情，以遵慈教。” 答曰：“三年之喪，自天子達乎庶人，餼粥、食菜，俱有其限。 聖人之設爲禁防，不亦至乎？ 古人之所慮滅性云者，豈指非衰老、無疾病之人，而言之哉？ 卿等所陳，不成說話，予甚異之。 人之執喪，當以禮制，人臣之事君，亦當以禮義。 非禮、非義，俱失其道矣。 寡昧誠孝淺薄，致有今日之紛紜，實深慙覩，不知所答。</p>
--	--	--

	<p>하니, 답하기를, “3년 상 때에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죽을 마시고 나물을 먹도록 모두 제한하였으니, 성인이 설정한 금방(禁防)이 또한 지극하지 아니한가. 옛 사람이 우려한 멸성(滅性)이라는 것이 어찌 노쇠하지도 않고 질병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겠는가. 경들이 개진한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으므로 내가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부모상을 치를 때는 예제(禮制)를 따라야 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섬길 때도 예의에 따라야 한다. 예도 아니고 의도 아니면 모두 그 도(道)를 잃는 것이다. 과인의 성효(誠孝)가 천박하여 오늘날 소란스러운 사태가 빚어졌으니, 실로 부끄러워 답할 말을 모르겠다. 경들이 예로 임금을 섬기려거든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재차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p>	<p>卿等如欲事君以禮，亟停勿煩。”再啓，不從。</p>
<p>인조 15권, 5년(1627 정묘 / 명 천계(天啓) 7년) 1월 19일(정해) 5번째기사</p>	<p>자전이 언서(諺書)로 삼공과 정원에 하교하였다. “주상이 오랫동안 소찬을 드시어 밤낮으로 걱정이 되었는데 지금 또 이와 같은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정무가 더욱 번거로우니 내 몫시 염려가 되었다. 친히 주상이 계신 곳에 나아가 울면서 권유하였더니 주상이 나를 위해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마지못해 따랐다. 이것은 바로 종사·신민의 복이니 나의 기쁜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내일부터 비로소 육선(肉膳)을 올리라.”</p>	<p>慈殿以諺書，下教于三公、政院曰：“主上久進素膳，日夜憂悶。今又遭此大難，萬幾尤煩，予甚念慮。親詣上所，且泣且勸，則主上爲予抑情勉從，此乃宗社、臣民之福，予之喜幸，曷有極哉？自明日，始進肉膳。”</p>
<p>인조 16권, 5년(1627 정묘 / 명 천계(天啓) 7년) 5월 6일(신미) 2번째기사</p>	<p>관향사(管餉使) 성준구(成俊耆)가 치계하기를, “선천(宣川)·철산(鐵山)에 적에게 잡혀갔다 돌아온 남녀 수만 명이 세 고을에 가득한데 굶어죽는 자가 매우 많으므로 둔전(屯田)의 피곡(皮穀)을 인구(人口)를 계산해 나누어주어 10일간의 생명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사(御史) 이경의(李景義)의 장계를 보건대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해서 강화미(江華米) 2천 석을 유민(流民)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쌀은 군량에만 쓰고 각읍(各邑)의 피곡을 유민들에 나누어주게 하소서.”</p>	<p>管餉使成俊耆馳啓曰：“宣、鐵刷還男女數萬，彌滿三縣，而飢死者甚多。以屯田皮穀，計口分給，以救旬日之命。卽見御史李景義狀啓，覆啓行會，以江華米二千石，分賑流民云。請以其米，專用於軍餉，以各邑皮穀，分給流民。”從之。</p>

<p>인조 16권, 5년(1627 정묘 / 명 천계(天啓) 7년) 5월 13일(무인) 1번째기사</p>	<p>하니, 상이 따랐다.</p> <p>신달도(申達道)가 치계하였다.</p> <p>“신이 가차도(加次島)에 당도해 보니 섬 안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기를 애걸하는 자들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많지 않아서 겨우 2백 명만을 배에 실었는데 미처 오르지 못한 자들은 해안에 둘러서서 큰소리로 통곡하며 모두가 ‘곡기(穀氣)를 끊은 지 여러 날이므로 당장 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천강(淸川江) 이북에서 섬 안에 피란해 온 남녀가 수만 명쯤 되는데, 이미 농사지을 가망이 없고 구제할 방책도 없으니 백성을 옹기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p>	<p>申達道馳啓曰：“臣行到加次島，島中人飢餓將死，願乞乘船而出海者，不知其幾，而舟楫不多，只載二百人。未及登舟者，環立岸上，哭聲如雷，皆云：‘絕粒累日，枯死，迫在此刻。’且淸川以北島中避亂男女，可至數萬，而既無東作之望。救活無策，移民之舉，不可少緩”云。</p>
<p>인조 16권, 5년(1627 정묘 / 명 천계(天啓) 7년) 5월 22일(정해) 5번째기사</p>	<p>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p> <p>“호인(胡人)은 안목이 넓어 우리 사신을 후대하였으니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도 후대하여 저들의 환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정원은 해관(該官)을 불러 각별히 검칙(檢飭)하도록 하라.”</p> <p>하고, 또 하교하기를,</p> <p>“원창군(原昌君)이 들어올 때 관원을 교외에 보내어 위로연을 베풀게 하여 영위(迎慰)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비국으로 하여금 헤아려 처리하도록 하라.”</p> <p>하니, 비국이 사연(賜宴)하기를 청하자, 답하기를,</p> <p>“술과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 매몰스러운데 이르지 않게 하고 일등악(一等樂)을 내리라.”</p> <p>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p> <p>“옛날 당 헌종(唐憲宗) 때 회서(淮西)가 평정되지 않자 유사(有司)에게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나는 사대부(士大夫)들이 전쟁하느라 몹시 고생하고 있는 것을 가엾게 여기고 있으니 교(郊)·묘(廟)의 제사가 아닌 경우에는 음악을 사</p>	<p>上下教于政院曰：“胡人眼大，厚待我人，在我之道，亦當厚待，勿失其權心。政院招致該官，各別檢飭。”又下教曰：“原昌君入來時，似當遣官于郊外，設慰宴，以示迎慰之意。令備局量處。”備局請賜宴，答曰：“豐備酒饌，使不至埋沒，一等賜樂。”政院啓曰：“昔者唐憲宗時，淮西未平，詔有司曰：‘予愍士大夫戰甚苦，非郊廟、祠祀，其無用樂。’今者新經賊變，兩西人民，殺掠殆盡，號哭徹天。此時一等賜樂，甚非所宜。”上從之。</p>

	용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막 적변(賊變)을 겪어 양서(兩西)의 인민들이 거의 죽거나 잡혀가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일등악을 내리시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16권, 5년(1627 정묘 / 명 천계(天啓) 7년) 7월 2일(병인) 6 번째기사	상이 관왕묘(關王廟)에 머물러 있는 한인들에게 식량과 반찬을 주고, 또 술과 고기, 옷감을 주게 하였다.	命給關王廟留置漢人等糧饌， 又賜酒肉、衣資。
인조 16권, 5년(1627 정묘 / 명 천계(天啓) 7년) 7월 20일(갑신) 3 번째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대전, 중전, 동궁계 며칠 동안 소선(素膳)을 올려야 하는지의 여부를 사용원이 본조에 물었는데 본조 역시 짐작하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문에 의거 참작해 보건대 대전, 동궁전에는 공제(公除) 뒤에 육선(肉膳)을 올리고, 중전은 졸곡(卒哭)이 지난 뒤에 육선을 올리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삼가 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동궁은 7일 동안 소선을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禮曹啓曰：“大殿、中殿、東宮， 限幾日素膳封進乎？ 司饗院問於本曹， 而本曹亦難酌定。 但據禮參商， 則大殿、東(殿) [宮]， 公除後進肉膳， 中殿過卒哭後進肉膳， 似合事宜， 伏候上裁。” 答曰：“依啓。 東宮則限七日行素。”
인조 17권, 5년(1627 정묘 / 명 천계(天啓) 7년) 8월 21일(갑인) 3 번째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의 방물(方物)을 1년에 한하여 전감(全減)하라는 분부가 일찍이 있었습니까?” 하니, 아울러 봉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禮曹啓曰：“祭享、御供方物， 限一年全減， 曾有聖教。 然則大妃殿方物， 竝不封進乎？” 答曰：“竝勿封進。”
인조 17권, 5년(1627 정묘 / 명 천계(天啓) 7년) 12월 18일(신해) 2 번째기사	비국이 아뢰기를, “서울 안에 모인 요민(遼民)은 1백 60여 명인데 시가지를 약탈하는 정상은 비록 미우나, 굶주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세입니다. 적이 침입했을 때에 소위포(少爲浦) 등에 사는 본국의 주린 백성을 도독(都督)이 구휼하였었고, 더	備局啓曰：“遼民之聚會都下者， 一百六十餘人。 掠奪街市， 情雖可惡， 而其勢亦出於飢餓不得已也。 賊變時少爲浦等處， 本國飢民， 都督亦垂賑救。

	<p>구나 이들은 중국의 백성이니 어찌 구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당 조로 하여금 차관(差官)이 있는 곳에 쌀가마를 보내서 요민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p> <p>하니, 따랐다.</p>	<p>況此天朝赤子，寧可不爲之矜恤哉？請令該曹，量送米包於差官處，分給遼民。”從之。</p>
<p>인조 18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6월 2일(신묘) 1 번째기사</p>	<p>간원이 아뢰기를, “한재(旱災)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술을 금하였던 것은, 하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낭비를 줄이고자 해서입니다. 서울에 쌀값이 매우 비싸고 각사(各司)의 전복(典僕)들이 몹시 피폐하였는데, 요즈음 포핍하느라 좌기할 때에 주식(酒食)의 비용을 이들에게서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예전의 규례라고는 하나 흉년에 성대하게 베풀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술을 금하는 예에 의하여 우선 정파하도록 명하소서. 각사의 관원들이 쓰는 초[炬燭]를 간혹 값도 주지 않고 하인들에게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일체 금단하도록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초는 값을 주어서 사서 쓰게 하라.”</p> <p>하였다.</p>	<p>諫院啓曰：“凡遇旱災，必有酒禁，畏天災而省浮費也。京中米價極貴，各司典僕，疲弊已極，而近以褒貶坐起，徵斂酒食之費。此雖舊規，荒年盛張，似非所宜。依酒禁例，姑令停罷。至如各司官員所用炬燭，或不給價，責出於下輩，其弊不貲，請竝一切禁斷。”</p> <p>答曰：“依啓。炬燭，使之給價買用。”</p>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8월 1일(기축) 1 번째기사</p>	<p>비국이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양호(兩湖)의 군현에 도적떼가 일어나 처음에는 좀도둑질을 하더니 급기야는 살인과 겁탈을 하고 있다는데, 혹 그 중에 무사(武士)도 많이 끼어 있으며 말을 탄 자도 많이 있다고 하니, 창고를 털고 장리(長吏)를 죽이는 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포도사(捕盜使)를 차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각처에 모두 영장(營將)이 있고 각읍마다 장관(將官)이 있으니, 병사(兵使)로 하여금 계약을 써서 체포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진휼종사관으로 하여금 창고의 곡식으로 진휼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방으로 붙여 알리게 한 뒤 도적떼 중에 있다가 오는 자에게도 우선 먼저</p>	<p>備局啓曰：“竊聞兩湖郡縣，嘯聚爲群，始爲草竊，終於殺人行劫。或云：‘武士多入，騎馬者亦衆云，劫倉庫、殺長吏之變，難保其必無。’此時雖不可差出捕盜使，各處皆有營將，各邑皆有將官，令兵使設機措捕。且令賑恤從事官，開倉賑濟，掛榜知委，雖來自賊中，先加賑恤，使得安業，則餘衆自然散落。請以此意，移文于監、兵使，</p>

	<p>진휼해 주어 생업을 갖게 하소서. 그러면 나머지 무리들도 자연히 흩어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감사와 병사에게 이문(移文)하여 착실히 거행케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使之著實舉行。”上從之。</p>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8월 4일(임진) 2 번째기사</p>	<p>좌의정 김류가 탑전에서 아뢰기를, “대개 진휼은 으레 다음해 봄에 실시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 초가을 부터 개시하였으니, 그야말로 계속 이어대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듣건대 전라도 금성 산성(金城山城)에 곡식 3천 석이 저장되어 있다 하니, 1천여 석을 운반하여 진휼을 돕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휼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라.”</p> <p>하였다. 회계하기를, “해조의 회계를 가져와 상고해 보건대 담양(潭陽) 금성 산성에 저장된 미두(米豆) 3천여 석 가운데 1천 석을 운송하여 진구용(賑救用)으로 쓰고 인근 고을에서 회부(會付)579 되는 미곡을 차차 수송해 들여와 그 액수를 채우는 것이 매우 온당하겠습니다. 다만 금성 산성과 선소(船所)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운송책을 강구하도록 하소서.</p> <p>그리고 양남(兩南)의 연해 지역에 있는 통영(統營)의 곡식을 미두나 잡곡을 막론하고 각각 5천 석씩 방출하여 1만 석을 채운 뒤, 경상도의 미곡은 통영의 일반 배로 경창(京倉)에 운반하고 전라도의 미곡은 병선(兵船)으로 해주(海州) 결성창(結城倉)에 운반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양남의 감사와 통제사에게 하유하여 강이 얼어붙기 전에 운반하도록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그리고 산성의 미곡은 어쩔 수 없어서 옮겨다 쓰는 것이니, 인근 고을의 별수미(別收米)로 그만큼 채워 넣도록 하라.”</p>	<p>左議政金瑬於榻前啓曰：“凡賑恤，必始於翌年之春，而今則不然，始於今年初秋，此實難繼之道。伏聞全羅道金城山城，有貯穀三千石云。請運致千餘石，以助賑救。”上曰：“令賑恤廳處之。”回啓曰：“取考該曹會計，則潭陽金城山城所儲米豆，三千餘石。運致一千石，以爲賑救之用，而隣邑會付之米，次次輸入，以充其數甚便，而但未知金城去船所道里。令本道監司，料理輸運之策。且統營之穀，在兩南沿海者，勿論米豆、雜穀，各出五千石，以準萬石之數，慶尙道米穀，則以統營船隻，載運於京倉；全羅道米穀，則以兵船載運於海州結城倉。以此意，下諭於兩南監司、統制使，使之移運於未凍前。”答曰：“依啓。且山城之米，不得已移用，則以隣邑別收米充數。”戶曹啓曰：“金城山城，非如赤裳等緊關必守之地，而其軍糧，無朝夕可用之處。大臣榻前之啓，蓋欲移用，</p>

	<p>하였다. 호조가 아뢰기를, “금성 산성은 적상 산성(赤裳山城) 등과 같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지역도 아니고 급하게 그 군량을 쓸 곳도 없기 때문에, 대신이 탐전에서 아뢰어 그곳의 군량을 옮겨 우선 급한 불을 끄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도의 별수미는 곧 삼수량(三手糧)580) 으로서 군사에게 지급하는 양식인 까닭에 산군(山郡)이나 해변을 막론하고 모두 본색(本色)으로 상납합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상납하는 미곡을 덜어 산성에 운반해 들여 보낸다면 이해관계로 볼 때 도치된 일이니,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거둬들이는 미곡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어찌 꼭 운반하기 어려운 산성미를 채우기 위하여 별수미를 대체하여 써야 하겠습니까. 진흙청의 계사대로 별수미 대신 담양 인근 고을에서 회부되는 미곡을 가지고 추수 때에 채워 넣도록 하고 산성의 미곡을 우선 갖다 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p>	<p>以救燃眉之急矣，本道別收米，卽三手糧，係是軍兵所饋之糧也。無論山郡、海邊，皆以本色上納。今若除上納之米，移入山城，則事之利害倒置。無寧仍存恒納之收米，何必換用難運之山城米乎？依賑恤廳啓辭，潭陽隣近官會付米，待秋成充數，而山城米姑先取用宜當。”上從之。</p>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8월 17일(을사) 1번째기사</p>	<p>양사가 합계(合啓)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겨우 병화(兵禍)를 겪고 나자 곧바로 전에 없던 흉재(兇災)를 만났으니, 진실로 크게 경동시키고 대대적으로 변통하는 일을 거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을 구제하며 나라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묘사(廟社)에 악무(樂舞)를 쓰는 것은 사체상 지극히 중대하니 참으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형세에는 완급(緩急)이 있고 일에는 경권(經權)이 있는 법입니다. 백성이 있고 나서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묘사도 있는 법이니, 그저 상례(常例)만을 고수하며 변통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임진 왜란 후로 묘사에 음악을 폐지한 것이 10여 년이나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 오늘날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이 안정될 동안만큼은 임시로 묘사에 악무를 폐지하고 적당히 악공(樂工)과 악생(樂生)들에게 배를 거두어 군수(軍需)에 보충하게 하소서.</p>	<p>兩司合啓曰：“國家不幸，纔經兵禍，旋遭無前之凶災。苟不爲大警動、大變通之舉，則其何以求生民，而濟國事乎？廟社樂舞，事體至重，誠有未可輕議者，然勢有緩急，事有經權。有民然後有國，有國然後有廟社。尚可膠守常禮，不思變通之義乎？壬辰亂後，廟社撤樂者十餘年，豈非今日所當法者乎？請限事定間，權罷廟社樂舞，量宜收布於樂工、樂生等，以補軍需。朔膳進上，今方間朔，輸回於諸道，而弊未盡祛，惠未下究，三名日方物，自今</p>

	<p>삭선(朔膳)을 진상하는 문제는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제도(諸道)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였으나 폐단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삼명일(三名日)에 방물(方物)을 진상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몇 년 기한으로 삭선을 완전히 감면하는 동시에 삼명일의 방물도 임시로 폐지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소서.</p> <p>지난번 비국의 계사로 말미암아 양서 내노비(內奴婢)의 신공(身貢)을 작미(作米)하여 보태 쓰도록 한 것은 정말 큰 은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해서(海西)의 갈밭[蘆田]과 어염(魚鹽)의 수세(收稅) 역시 묘당의 계사대로 우선 관에 소속되게 하소서.</p> <p>능료(廩料)를 줄이자는 것은 녹봉을 중시하는 뜻이 아니기는 하지만, 묘향(廟享)이나 어공(御供)까지도 모두 감하는 오늘날을 당하여 녹봉만 옛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4품 이상의 녹봉을 해조로 하여금 적당히 감하게 하소서.</p> <p>사용원에서 사기(沙器)를 구워 만드는 일은 1년 정도 정지한다 해도 쓰기에 부족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일 역시 몇 년 한도로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진흥하는 일에 옮겨 쓰도록 하소서.</p> <p>공조에 기인(其人)이 바치는 비용이 엄청나 폐단이 막중한데, 평소에 비해 얼마나 소용이 될지도 모르는 관에 값은 몇 배나 뛰어 올랐다 합니다. 지금은 원수(元數) 가운데 먼저 근수(斤數)를 감하고 그 다음 가격을 내리도록 하여 눈 앞에 닥친 위급함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의사(醫司)에 바치는 공물의 명목이 가장 많습니다. 삼가 들건대 지난해 대동법(大同法)을 마련할 때에 양 의사에서 가미(價米)로 환산해 정한 액수가 거의 5천 석에 달했다 하는데, 현 시가로 공물을 상정(詳定)한 액수로 따지면 필시 1만여 석을 밀돌지 않을 것이니, 이것으로 추산할 경우 타사(他司)는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번 변통하는 일도 없이 제멋대로 낭비하게 함으로써 이 백성이 폐해</p>	<p>年復進云。 請限年全減朔膳，亦權罷三名日方物，以紓民力。 頃因備局啓辭，以兩西內奴之貢，許令作米補用，甚大惠也。 海西蘆田及魚鹽收稅，亦依廟堂啓辭，姑令屬官。 減損廩糈，雖非重祿之意，而當此廟享、御供亦皆裁減之日，獨不可仍舊。 自四品以上俸祿，令該曹量減。 司饗院沙器燔造之役，雖寢一年，不至乏用。 亦宜限年停罷，以其所費，移用於賑救。 工曹其人，費鉅、弊重。 該用多少，比平時未知如何，而價則倍蓰云。 今宜就元數中，先減斤數，次減價直，以救目前之急。 醫司貢物，名目最多。 竊聞往年大同磨鍊時，兩醫司價米折定之數，幾至五千石云。 當時貢物詳定之價，必不下萬餘石，以此推之，他司可知。 豈可無一番變通，任其浪費，使斯民受其弊乎？ 頃日沈悅筭中，請罷醫司貢物，實有意見，而終不見施。 宜以該納萬石，捐千餘石之米，分作諸司用藥之資，推其餘，以備賑飢。 太僕之草價及屯田所入諸員價布等物，其數極多，而皆歸浮費。 繕工刈亂，爲畿甸莫重之弊。 似聞方有變通之議，而</p>
--	--	--

	<p>를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일에 심열(沈悅)이 차자를 올리면서 의사의 공물을 폐지하도록 건의했던 것이 실로 합당한 의견이었는데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납부할 1만 석 가운데 1천여 석의 쌀을 덜어내어 제사(諸司)에서 쓸 약의 자본금으로 나눠 주고 그 나머지는 진홀 대비 기금으로 전용(轉用)케 하소서.</p> <p>태복시의 초가(草價) 및 둔전(屯田)에 들일 제원(諸員)의 가포(價布) 등 물품 액수가 매우 많은데 결과적으로 모두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공감에서 갈대를 베어가는 일이 기전(畿甸)의 막중한 폐단이 되고 있으므로 현재 변통할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은 듯합니다마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결말은 으레 흐지부지하게 끝나기 십상입니다. 이 일 모두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요량껏 처리하여 선처하게 하소서.</p> <p>이상 10개 조목은 크고 작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오늘날 처리해야 할 급선무에 관계되는 사항이니,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시어 통쾌하게 단안을 내리소서.”</p> <p>하니, 상이 묘당에게 명하여 의논해 처리하도록 하였다. 회계하기를, “합계에서 논한 것은 10개 사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묘악(廟樂)을 잠정적으로 폐지하자는 한 조목은 일찍이 윤황(尹煌)의 서계를 인하여 본사가 이미 계품하였습니다. 삼명일의 방물은 계해년 이후로 지난해 동지 때까지 혹 군기(軍器)에 보충해 쓰기도 하고 혹 예에 따라 봉진(封進)하기도 하였으며 혹 작미하여 중국 사신 일행의 수요에 보충하기도 하고 혹 호변(胡變)으로 인하여 완전히 감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변란 때보다도 훨씬 사정이 어려우니 그대로 감면하여 물력이 조금 완전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듯싶습니다.</p> <p>내노비의 신공은 ‘자전에게 품하여 처리하자.’는 하교가 계셨으니, 그저 품정하기를 공손히 기다려야 마땅합니다. 갈밭과 어염의 세금 문제 역시 이미 진</p>	<p>此等結末，例無實著。并令廟堂，一體料理善處。凡茲十條，雖有大小、輕重之分，在今日皆係急務，請深思長慮，夫賜聖斷。”上命廟堂議處。回啓曰：“合啓中，所論者十條，而其中權罷廟樂一款，曾因尹煌書啓，本司既已啓稟。三名日方物，則癸亥以後，至于上年冬至，或補用於軍器，或依例封進，或作米以補天使時所需，或因胡變全減。今年大無，甚於變亂，似當仍減，以待物力稍完。內奴身貢，則有稟慈殿以處之之教，只當恭候稟定。蘆田及魚鹽之稅，亦已陳啓，而未得蒙允，不敢更瀆。御供、祭享等物，既皆裁減，百官祿俸，獨不可仍舊，宜令該曹量減。司饗院沙器，一年燔造，可支數年，亦姑停罷，以其所費，移用於賑救。其人則今方商議，宜待結末。兩醫司貢物，則沈悅亦曾請罷，而醫藥是活人之物，典醫監則專爲上司、各衙門所供之藥，惠民署則專爲救一國內外之民，而兩醫司一年應給之價，米三千二十石五斗、木五十八同十六匹，啓辭中所謂該納萬石，特誤聞耳。且令該曹與兩醫司提調，相議以</p>
--	--	---

	<p>계하였으나 아직 윤택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감히 다시 아뢰지 못하고 있습니다.</p> <p>어공과 제향 등 물품을 이미 모두 감한 관에 백관의 녹봉만 옛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적당히 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옹원의 사기는 1년 동안 구워 만든 것으로 몇 년을 지탱할 수 있으니 역시 우선 제작을 중단하고 그 비용을 진흙하는 데에 옮겨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인(其人) 문제는 현재 상의 중이니 결말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p> <p>양 의사의 공물에 대해서는 심열 역시 일찍이 폐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의약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물건으로서 전의감(典醫監)은 상사(上司)와 각 아문에 제공하는 약을 전담하고 혜민서(惠民署)는 온 나라의 백성을 치료할 책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양 의사에 1년당 지급해야 할 액수는 미곡 3천 20석 5두와 목면 58동(同) 16필(匹)로서, 계사에서 납입액을 1만 석이라고 한 것은 잘못 들은 것일 따름입니다. 이 문제는 해조로 하여금 양 의사의 제조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p> <p>태복시의 초가(草價) 등 물건에 대해서는 이미 의계하였고, 선공감에서 갈대를 베어가는 일은 경기 감사 최명길의 장계로 인하여 역시 이미 중지시켰습니다. 삭선(朔膳)에 대해서는 우선 임시로 중지하고 풍년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마는, 항상 어공하는 물품을 감하라고 청하는 것도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모두 재결하시기에 달렸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아된 대로 하라. 그 가운데 삼명일의 방물은 다시 시행하도록 했다만 지금 다시 감면하도록 하고, 대비전과 각전의 경우는 내년을 기한으로 완전히 감하도록 하라. 그리고 옛말에 ‘충신(忠信)한 자에게는 녹봉을 후히 준다.’고 하였는데, 요즈음 들어 백관의 녹봉을 이미 줄였으니 지금 다시 감할 수는 없다. 대비전의 삭선과 선왕 후궁의 별선(別膳)은 감하지 말라.”</p>	<p>處。太僕草價等物，既已議啓。繕工刈藪事，則因京畿監司崔鳴吉狀啓，亦已停當。至於朔膳，則姑宜權罷，以待豐年，而每請裁減御供之物，亦甚未安，竝惟睿裁。” 答曰：“依啓。其中三名日方物，雖令復設，今可更減，大妃殿、各殿，則限明年全減。且古語曰：‘忠信重祿。’近者百官俸祿，曾已省減，今不可更減。大妃殿朔膳及先王後宮別膳，勿減。”</p>
--	--	--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8월 26일(갑인) 1번째기사</p>	<p>필선 임효달(任孝達)이 상소하기를, “쓸데없는 관직을 줄이고 헛되이 나가는 비용을 절감하소서. 아무리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에 관계되는 물품이라도 모두 줄이소서. 각도의 공물과 삭선(朔膳) 방물과 삼명일(三名日)의 진상마(進上馬) 등을 일체 권감(權減)하는 대신 대략 미포(米布)로 거두어 군량과 진휼하는 자본으로 삼게 하소서. 어염(魚鹽)의 이익과 내탕(內帑)의 재물을 모두 탁지(度支)에 귀속시켜 나라의 재정을 여유있게 하소서.” 하였는데, 호조에 계하(啓下)하였다.</p>	<p>弼善任孝達上疏，請省冗官、節浮費，雖係祭享、御供，亦皆減損；各道貢物、朔膳、方物、三名日進上馬等，一切權減，略收米布，以爲軍餉、賑救之資；魚鹽之利，內帑之財，盡歸度支，以裕國用，啓下戶曹。</p>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8월 29일(정사) 2번째기사</p>	<p>호조의 계청에 따라 사복시 둔전(屯田)의 쌀과 콩 3백 석을 이송(移送)하여 진휼하는 데에 보태 쓰도록 하였다.</p>	<p>因戶曹啓請，移送司僕寺屯田米豆三百石，以補賑恤之用。</p>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9월 7일(갑자) 1번째기사</p>	<p>자전(慈殿)이 언서(諺書)로 정원에 하교하기를, “올해 흉년이 들어 백성이 기근상태에 놓였으니, 나에게 진공(進供)하는 물건도 모름지기 주상이 감손한 것과 똑같이 모두 감손하라. 나만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국가도 편안해지는 법이다. 백성이 굶주린다는 말을 듣고는 애처로운 마음을 참지 못하겠다. 주상은 효성이 지극하여 혹시 내 말을 따르지 않을지도 모르니 그대들이 극력 진달하여 똑같이 감손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부승지 유백증(兪伯曾)이 자전의 하교를 각 해사에 분부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자전께서 이렇게 하교하셨다 하더라도 정과할 수는 없는 일이니 절대로 분부하지 말고, 봉행할 수 없다는 뜻을 회계하라.” 하였다. 유백증이 자전에게 아뢰기를, “상께서 이렇게 전교하셨기에 감히 아뢰입니다.”</p>	<p>慈殿以諺書，下教于政院曰： 今歲失稔，人民飢饉，於予進供之物，亦須一從主上所減，而盡減之。予何獨安於心乎？百姓，邦國之本。百姓安然後，國家亦安。聞百姓之飢，不忍惻怛之心矣。主上至孝，雖或不從予言，爾等極力陳達，一樣減損。 右副承旨兪伯曾請以慈教，分付于各該司，答曰：“慈教雖如此，不可停罷，切勿分付，回啓以不得奉行之意。”伯曾啓于慈殿曰：“自上傳教如是，故敢啓。”慈殿又下諺書曰： 大殿之教，雖如是，而予之進供，若或</p>

	<p>하니, 자전이 또 언서를 내리기를, “대전(大殿)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하더라도 나에게 진공하는 것이 혹시라도 예전과 똑같은 경우 필시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게 될 것이다. 모름지기 반복해서 계달하여 꼭 대전과 마찬가지로 정과하도록 하라.” 하였다. 동부승지 민기(閔機)가 또 대전에게 아뢰기를, “자전께서 이렇게 재차 분부하시니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하니, 답하기를, “결코 봉행할 수 없는 일이다.” 하였는데, 자전이 또 언서를 내리기를, “주상의 뜻이 이와 같다 하더라도 나만이 진공을 그대로 받는 것은 너무나 미안한 일이기에, 안에서도 정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재삼 간곡히 고하였지만 끝내 들어 주지 않았다. 이는 곧 지극한 효성에서 나온 것이니 억지로라도 따를 수 밖에는 도리가 없겠다.” 하였다.</p>	<p>仍存，則必有民弊。 須反覆啓達，必與大殿一樣停罷。 同副承旨閔機又啓于大殿曰：“慈殿再教如此，何以處之？” 答曰：“決難奉行矣。” 慈殿又下諺書曰： 主上之意雖如是，予獨享進供，殊極不安。 自內亦以不可不罷之意，再三懇告，而終不聽從。 此乃至孝所致，勉強從之耳。</p>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9월 9일(병인) 2 번째기사</p>	<p>장신(張紳)이 치계하기를, “참혹하게 재해를 당한 곳으로는 연안(延安)과 배천(白川)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으로는 해주(海州)·평산(平山)·안악(安岳)이 심합니다. 따라서 이들 몇 개 고을부터 먼저 나누어 진휼하는 일을 거행해야 하겠는데, 타도(他道)에서 옮겨오는 곡식으로는 필시 다 혜택을 주지 못할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도내 4, 5개 읍의 전세(田稅)로 거두어 들이는 미곡을 덜어 연안과 배천 등 고을에 옮겨 나누어 줌으로써 눈 앞에 닥친 급한 불을 우선 끄고 봄 농사철의 종자 곡도 이것으로 나누어 준다면 허다한 백성들이 그런 대로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호조가 해주·평산·안악 등 읍의 전세로 거두어 들이는 미곡을 그곳에 옮겨 진휼한 뒤에 개록(開錄)하여 계문토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p>	<p>張紳馳啓曰：“被災之慘，莫如延安、白川，而海州、平山、安岳，又其次也。 分賑之舉，當先及於此數邑，而他道移粟，必有未及之患。 若除道內四五邑田稅收米，移給於延白等官，以救朝夕之急。 春後種、糧，亦以此分給，則許多民命，庶有生道。” 戶曹請以海州、平山、安岳等邑田稅收米，移賑後，使之開錄啓聞，上從之。</p>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9월 10일(정묘) 2번째기사</p>	<p>사용원이 아뢰기를, “이렇게 기근이 든 때를 당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부득이한 조치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원의 그릇 굽는 장인(匠人) 5백 명의 가포(價布)를 해조에 옮겨 보내 진홀과 군량에 보태쓰도록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전(漁箭)의 경우에 있어서만은 각도의 진상을 모두 혁파시킨 상황이라서 선어(鮮魚)를 어공(御供)하는 길이 오로지 이것 밖에는 없으니, 가뭄이 의논하여 정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이에 앞서 윤황(尹煌)이 평안도 어사로 나갔을 때, 사기(沙器)와 어전을 모두 견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서계하였기 때문에, 이런 거동이 있게 된 것이다.</p>	<p>司饗院啓曰：“當此飢饉，減損浮費，誠出於不得已也。宜以本院燔器匠人五百名價布，輸送於該曹，使之補用於賑恤及軍餉。至於魚箭，則各道進上盡罷之後，御供鮮魚，惟出於此，不可輕議停罷。”上從之。先是，尹煌爲平安道御史時，書啓以沙器、魚箭竝宜蠲減云，故有是舉。</p>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9월 10일(정묘) 3번째기사</p>	<p>선혜청이 아뢰기를, “전세조(田稅條)와 공물(貢物)을 함께 선혜청에 들이는 것이 곧 기민(圻民)의 큰 소원이기 때문에 신들도 처음에 주의를 기울여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세상 곤란한 점이 있어서 감사 최명길과 직접 의논하였습니다만 역시 결론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감사와 수령의 뜻은 백성의 폐해를 덜어 주자는 데 주안점이 있었고, 신들이 염려했던 것은 금년에 너무도 심하게 흉년이 들었으므로 필시 거두어들여기가 곤란하여 결국 낭패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금년은 미곡이 너무도 귀하므로 새로 역(役)을 신설할 경우 기한에 맞춰 와서 납부하기란 참으로 보장하기 어려운데, 사주인(私主人) 등은 매일처럼 와서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급해 주려니 쌀이 없고 그렇다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공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여 번거롭게 독촉하여 요구하게 되고 소요스럽게 수금(囚禁)하는 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들</p>	<p>宣惠廳啓曰：“田稅條貢物，竝入於宣惠廳，乃圻民之所大願，故臣等初欲銳意行之，然事勢有難便者，與監司崔鳴吉面議，而亦不歸一。蓋監司及守令之意，主於除民之弊，臣等之所慮者，今年凶歉太甚，必難於收捧，恐終至狼狽也。今年米穀極貴，惟此新設之役，趁期來納，誠所難必，而私主人等，則逐日來請。欲給則無米，不給則坐致闕供，不免有督責之煩，囚禁之擾。臣等之意，莫如待明年秋成，觀勢更議，而今年則姑令守令，親自領來，與本司官員及監察，按同捧納，則可無私</p>

	<p>의 의견으로는 내년 추수 때까지 기다려 형편을 보아가며 다시 의논하는 것만 같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금년은 우선 수령으로 하여금 직접 인솔하여 오게 한 뒤 본사의 관원 및 감찰과 함께 납부하는 것을 안험(按驗)하게 하면 사주인이 제멋대로 날뛰는 폐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전세조의 미곡과 각종 인정(人情) 및 작지(作紙)에 대하여 그 양을 참작하게 한 뒤 그 중 과람한 것은 적당량을 감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主人刁蹬之弊，更令本道監司，將田稅條米穀、各種人情、作紙，斟酌多少，其中過濫者，量數裁減。”上從之。</p>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9월 10일(정묘) 4번째기사</p>	<p>진흠청이 아뢰기를, “국가가 난리를 치른 뒤에 항상 공명 고신(空名告身)으로 곡식을 모집했는데 끝내는 불신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민(士民)들이 공명첩(空名帖)을 마치 통발이나 올가미처럼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지금 곡식을 납부하라고 권해도 기꺼이 바칠 리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삼도(下三道)의 사자(士子) 가운데 수령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은 곧바로 수령에 임명하고, 출신(出身) 가운데 변장(邊將)에 합당한 자는 납부한 곡식의 양에 따라 첨사·만호·권관(權官) 등의 직책에 임명한다면, 필시 응모하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양 전조(銓曹)에서 제수하여 처음으로 입사(入仕)하는 자들이라고 하여 어찌 모두가 납속(納粟)한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하겠으며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곡식을 저축한 자들이라 하여 어찌 꼭 모두 임용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까. 따로 사목을 만들어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납속한 사람들 가운데 전에 조관(朝官)을 지낸 사람은 수령이나 변장으로 임용해도 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단지 납속한 양을 따져 그 현부(賢否)는 알지도 못한 채 임명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 될 일이다.”</p>	<p>賑恤廳啓曰：“國家亂後，每以空名告身，募粟，而終歸於失信。士民視空名帖，有若筌蹄，今雖勸募，無肯納之理云。下三道士子中，人器可堪守令者，直拜守令，出身中可合邊將者，隨其所納多少，差除僉·萬戶、權管等職，則應募者必多矣。兩銓之除授初入仕者，豈皆賢於納粟之人，而鄉曲中，力穡儲穀者，豈必皆非可用之人乎？請別立事目，使之舉行。”答曰：“納粟人中，前朝官則守令、邊將未爲不可。只以納粟多少，不識其賢否而差除，則殊甚不可矣。”</p>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9월 13일(경오) 1번째기사</p>	<p>상이 소무(昭武)·영사(寧社) 양 공신(功臣) 및 구(舊)공신의 여러 적장자(嫡長子)들과 함께 북악(北嶽) 아래에서 회맹제(會盟祭)를 거행하였다. 단(壇)을 세우고 남면(南面)하여 완석(莞席)을 깔았으며 소 한 마리·양 한 마리·돼지 한 마리를 희생으로 바쳤다. 상이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여(輦)를 타고 악차(幄次)에 이르자, 면복(冕服)을 갖춘 왕세자와 복장을 갖춘 배제관(陪祭官) 및 집사관(執事官)들이 모두 들어와 제자리로 나아간 뒤 의식 절차에 맞춰 예를 거행하였다. 찬례(贊禮)가 삼혈(歃血)할 것을 청하자 상이 이에 삼혈하였고, 왕세자 이하 각 위치에 서 있는 자들도 모두 삼혈하였다. 독서관(讀書官)이 천신(天神)과 지기(地祇)에게 고하기를, “큰 악을 숙청하여 이에 무벌(茂伐)을 드러냈기에 그 공훈을 기리는 뜻에서 같이 맹세를 하니 신명(神明)이 보증하는 바이다. 국세가 불행한 시대를 만나 난역(亂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니 빈 산의 썩은 뼈다귀들마저 다시 해 불 마음을 낼 정도가 되었다.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고 무리를 현혹시켜 족당(族黨)을 모아 결탁한 뒤 모든 죄를 조정에 돌렸다. 병장기를 약탈하여 제멋대로 날뛰며 각 고을을 겁에 질리게 하고 하늘의 해도 쏘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 우리 훌륭한 인재들 덕분에 의(義)의 기치를 내걸고 힘을 합쳐 잡초를 베어버리듯 평정시키니 음산한 구름이 걷히듯 맑게 되었다. 군부를 배반하는 흉도를 징계시키지 않으면 도척(盜跖)의 꼬리치는 개들이 연달아 짚어대는 법이다. 혼조(昏朝)의 심복들과 적신(賊臣)의 남은 무리들이 종척(宗戚)의 도움을 받아 자지(慈旨)를 속여 꾸며낸 뒤에 원내(園內)에서 비밀히 통하고 환시(宦寺)들과 암암리에 결탁하였다. 그리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을 모집하여 원근에서 속여 유인하고는 도성 안에 군대를 잠복시키고 장교(將校)들과 단단히 약속을 한 다음 흉도들이 일제히 난을 일으키려 하였으니, 그야말로 화관이 하룻밤 사이로 박두하였다. 이에 구신(舊臣)들로서 충성</p>	<p>上與昭武、寧社兩功臣及舊功臣諸嫡長等，行會盟祭於北嶽下。爲一壇，南面鋪莞席，設犧牲，牛一、羊一、豕一。上以遠遊冠、絳紗袍，乘輦至于幄次，王世子具冕服，陪祭官及執事官，皆具服入就位，行禮如儀。贊禮請歃血，上乃歃血，王世子以下在位者，皆歃血。讀書官告于天地、神祇曰： 克清大憝，斯著茂伐，盟府藏勳，神明可質。邦運屬否，亂逆相尋，空山枯骨，亦復生心。假名惑衆，聚族連黨，罪狀朝廷，掠奪鎧仗。跳踉巖邑，謂天可射，賴我惟良，仗義協力，剪焉則定，席卷雲撤。梟獍無懲，跖犬繼吠。昏朝肺腑、賊臣餘派，挾助宗戚，矯誣慈旨，密通園內，陰托宦寺。募集不逞，誑誘遠邇，潛兵輦轂，結約將校，凶徒齊舉，禍迫一夜。乃有舊臣，忠志之士，炳幾奔告，逆節干紀。罪人斯得，殘孽罔逃，予嘉乃功，普爵甄勞。丹書之炳，宗社之寧，同指山河，垂裕追榮。凡膺胙土，新舊畢至，暨</p>
---	--	---

	<p>스러운 뜻을 지닌 인사들이 기미를 환히 알아차리고 달려와 고향으로써 절의(節義)를 거역하고 기강을 범하는 죄인들을 일망 타진하게 되었으니 나머지 무리들이야 도망칠 곳이 어디 있겠는가.</p> <p>내가 그 공을 가상히 여겨 널리 작위를 내림으로써 공로를 밝게 드러내는 바이다. 단서(丹書)에 분명히 기록하여 이 편안한 종묘 사직의 영화를 같이 할 것을 산하(山河)를 두고 맹세하는 바이며 앞으로 그대들의 자손에게도 두고두고 영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제 조토(胙土)를 수여받은 신·구 공신들이 모두 모였고 그 후손들도 와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단에 올라 희생을 바치고 이에 다시 맹세를 확인하는 바이다. 오늘 이후로 천백 세(世)에 이르기까지 군신 상하의 은혜와 의리가 변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의 절의를 시종 일관 견지하여 좋은 일 굵은 일을 함께 감당할 것이다. 만약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하늘과 땅의 신령들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다.”</p> <p>하였다. 이날 상이 숭정전(崇政殿)으로 돌아와 소무·영사 두 공신들을 인견하고 차례로 축(軸)을 반사(頒賜)하였는데, 그 교서에 이르기를,</p> <p>“신하로서 충성스러운 노고를 다 바쳐 이미 일월과 같은 공적을 드러내었기에, 국가가 경상(慶賞)으로 보답하여 이에 대려(帶礪)의 맹세를 확인하는 일환으로 이장(彝章)을 서훈하고 대호(大號)를 부여하는 바이다.</p> <p>생각건대 나는 보잘것없는 자질로 이렇게 막중한 기업을 이어 받았으므로 정사와 교화에 실책이 많아 백성이 따르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의 떳떳한 성품이 위령(威靈)을 진작시키지 못하여 역신(逆臣)들이 누차 방형(邦刑)을 범하게 되었다. 이것이 비록 국가가 불운하여 그랬다고는 하나 모두가 나의 덕이 알팍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p> <p>그동안 재야에 잠복해 있던 요사스러운 무리들이 감히 군부를 배반할 못된 마음을 드러내어 조정에 죄를 돌린 사건이야말로 여간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수재(守宰)를 협박해 몰아내어 그 세력이 이미 도모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p>	<p>厥後昆，罔不來與，陟壇陳牲，載申之誓。式自今日，迄千百世，君臣上下，恩義无替，終始一節，休戚共之。苟渝此盟，有如神祇云。</p> <p>是日，上還御崇政殿，引昭武、寧社兩功臣，以次頒軸。其教書曰：</p> <p>人臣竭其忠勞，既著旂常之績；國家報以慶賞，爰申帶礪之盟。式敘彝章，仍敷大號。念予藐質，承此丕基，政教失宜，生民不迪。常性威靈未振，逆節屢犯邦刑。雖云否運所關，罔非涼德之致。徂茲草莽之妖豎，敢逞梟獍之禍心。罪狀朝廷，意實在於非望；毆脅守宰，勢已成於難圖。幸賴良牧之奮忠，兼有諸將之協力。掃蜂蠆之搖毒，遂靖一方；執鯨鯢以行誅，用殲元惡。神人泄憤，京輔解嚴。以及孝立之魚然，實與仁居而締構。連結宦寺，稔謀於肘腋之間；煽動禁兵，伏戎於爪牙之列。犯闕之期垂迫，焚廟之計將成。眷言忠貞，實出踈遠。炳先幾而刺察，摘伏如神；屬勳宰而周防，狂奔盡氣。陰謀既破，大亂自消。九</p>
--	---	--

	<p>이르렀는데 다행히 충의로 떨쳐 일어난 훌륭한 지방관들과 여러 장수들의 협력으로 사독(邪毒)스러운 무리들을 소탕하고 마침내 한 지방을 평정하였다. 괴수를 붙잡아 주륙(誅戮)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분함을 씻게 되었으며 경보(京輔)의 경계도 풀게 되었다.</p> <p>그런데 그뒤에 자만심으로 가득 찬 효립(孝立)이 실로 인거(仁居)와 결탁하고는 환시(宦寺)와 줄을 대고 바로 나의 좌우에서 음모를 성숙시켜 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금병(禁兵)을 선동해서 조아(爪牙)의 대열에 군대를 몰래 숨겨 놓았으니, 대궐을 습격할 기한이 거의 박두하고 종묘를 불사를 계획이 거의 이루어질 판이었다. 이때 돌보아 주는 충정(忠貞)한 마음이 실로 소원한 듯한 속에서 나왔는데 먼저 사태를 환히 꿰뚫어 보고 면밀히 관찰하여 잠복되어 있는 실상을 귀신처럼 적발해 낸 뒤 훈재(勳宰)에게 부탁하여 철통같이 막게 하였다. 이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기운을 다 쏟아 음모를 일단 무너뜨리자 크게 일어날 난리가 스스로 가라앉게 되었으니, 구정(九鼎)이 동요될 걱정이 사라지고 오묘(五廟)엔 영장(靈長)의 경사가 있게 되었다. 호친(胡倩)을 전사(傳舍)에서 결박한 것은 광명(廣明)이 간인을 붙잡은 일과 동일하고, 곽씨(霍氏)를 금문(禁門)에서 저지한 일은 평통(平通)의 장계를 올린 공과 흡사하다.</p> <p>이 모두의 덕택으로 종묘 사직이 안정되었으니 어찌 봉작(封爵)의 은혜를 아끼겠는가. 삼등급으로 나누어 영광을 나타내고 두 개의 호를 거양하여 은명을 내리는 한편, 전민(田民)과 제택(第宅)을 부여해 주고 조고(祖考)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천지 신명에게 고하여 같이 희생의 피를 마시며 기록하여 맹세하는 한편, 그대들의 모습을 그려 화려한 기린각(麒麟閣)에 봉안하는 등 모든 성대한 의식을 구전(舊典)에 따라 준행하는 바이다. 아, 군신은 한 몸이니 상하가 아름다움을 같이 누릴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전하여 총록(寵祿)을 위태롭지 않게 간수함으로써 그 혜택이 묘예(苗裔)에까지 이르러 종석(宗祏)과 함께 무궁토록 하라.”</p>	<p>鼎無脆脆之虞，五廟有靈長之慶。縛胡倩於傳舍，事同廣明之禽茲；拒霍氏於禁門，功擬平通之言狀。茲皆社稷是賴，豈吝封爵之恩？列三等而疏榮，揭二號而錫命。賚以田民、第宅，施及祖考、子孫。告于神祇，共牲書之盟敵；圖其形像，煥麟閣之丹青。畢舉縟儀，皆遵舊典。於戲！君臣一體，上下同休。克全始終，保寵祿以不殆；爰及苗裔，與宗祏而無疆。</p> <p>因賞賜諸功臣有差，以凶歉不設宴，只賜祭酒、燔肉于諸功臣及諸祭官，只行一觴而罷。</p>
--	---	--

	하였다. 이어 여러 공신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리고, 흉년인 관계로 연회는 배풀지 않고 단지 제주(祭酒)와 번육(燔肉)을 여러 공신 및 여러 제관(祭官)에게 나누어 주는 한편 술 한 순배씩만 돌리고 과하였다.	
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9월 16일(계유) 1번째기사	강원도에서 진상한 삭膳(朔膳)을 상이 받지 않고 진휼청에 내렸다.	江原道進朔膳, 上不受, 下賑恤廳。
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10월 17일(갑진) 1번째기사	<p>주강에 《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특진관 이서(李曙)가 아뢰기를, “경기 내의 속오군이 1천 8백인데 이는 신이 거느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됐으니 그 장수된 자로서 그들의 죽음을 멀거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진휼할 수 있다면 그들도 사졸을 대우하는 은혜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남한 산성의 곡식을 내어 구제하고자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좋은 계획이다. 진휼청에서도 옮겨 진휼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가없는 백성인데 속오인즉 그 괴로움을 유달리 받고 있는데다 또 흉년을 만났으니 더욱 먼저 구원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역관 장예충(張禮忠)의 말을 들으니 모문룡이 ‘호적(胡賊)이 나를 유예(劉豫)로 삼으려 한다.611) .’고 말했다 하는데, 일이 매우 불측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룡은 짐승과 다름없다. 황제같은 지존에게도 꺼리는 바가 없는 자이니 예로써 책망할 수 없다. 감사 김기종(金起宗)이 임기응변으로 기를 꺾었으니 그 공이 매우 많다.”</p> <p>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유해도 죽지 않고 모영(毛營)에 투항하였다고 합니다.”</p>	<p>畫講《書傳》。講訖，特進官李曙啓曰：“畿內束伍一千八百，是臣所領，而皆將填壑，爲其將者，不可立視其死。若得賑救，渠亦知其遇士卒之恩，故臣欲出南漢山城之穀，以救之矣。”</p> <p>上曰：“此計善矣。自賑恤廳，亦有移賑之事矣。皆是赤子，而束伍則偏受其苦，又遭饑歲，尤當先救之也。”曙曰：“聞譯官張禮忠之言，毛文龍言：‘胡賊欲以渠爲劉豫。’事甚不測。”</p> <p>上曰：“文龍與禽獸無異。至如皇帝之尊，亦無所畏，不可以禮責之也。監司金起宗權辭折之，其功甚多矣。”曙曰：“劉海亦不死，來投毛營云矣。”</p> <p>上曰：“然。觀毛之意，已著跋扈矣。”曙曰：“曾見劉海，反覆多詐。渠若歸正天朝，則不必從毛。海之出來，甚可慮也。”上笑曰：“劉海非難</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가. 모의 뜻을 보건대 이미 발호할 기미가 드러났다.” 하였다. 이서가 아뢰기를, “일찍이 유해를 보건대 반복 무쌍하고 속임수가 많았습니다. 그가 만약 중국 조정에 귀순한다면 모를 따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유해가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입니다.” 하니, 상이 웃으며 이르기를, “유해는 대적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뭐 걱정할 게 있겠는가.” 하였다. 박동선(朴東善)이 아뢰기를, “어제 대신에게 내린 전교는 너무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하니, 임금의 명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다만 나랏일이 중대하니 일반 관원이라도 그렇게 피험해선 안 되는데 더구나 대신의 도리어겠는가. 나는 대신을 공경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라가 있는 연후에 대신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랏일의 중대함을 위하여 그런 전교를 한 것이다. 나의 뜻은 체부(體府)가 된 자는 만약 무역하는 폐단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말을 기꺼이 들어 작폐하는 부하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인피하며 남에게 뒤질세라 하니 매우 불가하다.” 하였다.</p>	<p>敵之人，何患之有!” 朴東善啓曰：“昨日下大臣之教，無已太過乎?” 【慢蔑之教也。】 上曰：“卿言然矣。 但國事爲重，雖庶官，尙不可如是避嫌，況大臣之道乎? 予非不欲敬大臣也，而有國然後，乃可以敬大臣，故蓋爲國事之重，而發此教也。 予意則爲體府者，如有貿販之弊，則必樂聞其言，而以治管下之作弊者，可也。 乃自引避，猶恐不及，殊甚不可矣。”</p>
<p>인조 19권, 6년(1628 무진 / 명 천계(天啓) 8년) 12월 25일(신해) 4번째기사</p>	<p>상이 오랑캐의 난리 때에 절의를 지켜 죽은 사람들을 추념(追念)하여 여러 차례 해조에 하교하여 그 집에 음식물을 하사하였다.</p>	<p>上追念胡變時死節人，屢下教於該曹，賜其家食物。</p>
<p>인조 20권, 7년(1629 기사 / 명 숭정(崇禎)</p>	<p>황해도 강령(康翎) 바다에서 청어(靑魚)가 잡혔다. 감사 이경용(李景容)이 그것을 봉진하고 이어 말하기를,</p>	<p>靑魚產於黃海道康翎海中。 監司李景容封進，仍言：“古老稱以西海靑魚復</p>

<p>2년) 3월 5일(신유) 1 번째기사</p>	<p>“옛날 노인들이 서해에 청어가 다시 나면 시대가 평화롭고 풍년이 든다고 하였습시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가 사사로이 진상하였다고 기롱하였다.</p>	<p>出，則時平、歲稔云。”人譏其私獻。</p>
<p>인조 20권, 7년(1629 기사 / 명 승정(崇禎) 2년) 4월 17일(임인) 1번째기사</p>	<p>태묘(太廟)의 집사(執事) 이천유(李天有)가 술잔을 올리다가 잘못 부딪쳐 엎질렀다. 상이 추고할 것을 명하였는데, 사헌부에서 다소 가벼운 죄를 적용하자, 상이 조율(照律)을 다시 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사헌 장유(張維)가 인피(引避)하기를, “그 죄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은 없고 다만 제향조(祭享條)의 옥백(玉帛)을 법대로 준비하지 않은 데 대한 율이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의 회계를 보건대, 대사(大祀)의 신어물(神御物)을 잘못 훼손한 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니, 그것은 그렇지 않을 듯싶습니다. 이른바 훼손이란 그 물건이 부서지고 깨진 것을 말하는 것이니, 지금 천유가 술잔을 부딪쳐 깨뜨렸다면 그 법을 적용하여도 되겠으나, 다만 제주(祭酒)를 엎지른 것뿐인데 그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 같습니다. 신들이 법률 조항을 참고한 결과 그릇된 견해가 이러하니 어떻게 태연히 직책에 있겠습니까.” 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가령 후일에 실지로 술잔을 잘못 부딪쳐 땅에 떨어져 깨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무슨 법을 더 적용할 것입니까. 바라건대 대사헌을 출사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고 이어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명하였다.</p>	<p>太廟執事李天有，奉爵之際，誤觸而覆之，上命推考。憲府照律差輕，上命改照律。大司憲張維引避曰：“律無正文，惟祭享條：‘玉帛不如法者’，差似近之。今見政院回啓，則以誤毀大祀神御物，擬律云，此則恐未然也。夫所謂毀者，損壞傷破之謂也。今天有若觸爵，而爵破，則論以誤毀，可也，只以傾覆祭酒，而用此律，恐涉過重也。臣等參考律文，謬見如許，何敢晏然在職乎？”憲府啓曰：“設令他日，實有誤觸奠爵，至於墜地毀破，則將何以加其律乎？請大司憲出仕。”上從之，仍命用前律。</p>
<p>인조 20권, 7년(1629 기사 / 명 승정(崇禎) 2년) 윤4월 25일(경진) 2번째기사</p>	<p>왜사 현방이 종자 8명을 거느리고 승정문(崇政門) 안에서 숙배하니, 상이 중사(中使)로 하여금 술대접을 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왜사가 숙배를 안하고 서계와 진공물을 곧바로 예조에 바치려 하였는데, 상이 통역관으로 하여금 전례를 들어 타일러 숙배를 하게 하였다.</p>	<p>倭使玄方，率從倭八人，肅拜于崇政門內，上令中使饋酒。初，倭使不欲肅拜，直納書契及進供之物於禮曹，上令譯官，據例開諭，使之肅拜。</p>
<p>인조 20권, 7년(1629 기사 / 명 승정(崇禎) 2년) 5월 5일(기축) 2</p>	<p>왜사 평지광이 종자 8명을 거느리고 대궐 아래서 숙배하니, 상이 중사로 하여금 빈청에서 술을 대접하게 하였다.</p>	<p>倭使平智廣，率從倭八人，肅拜于闕下。上令中使，饋酒于賓廳。</p>

번제기사	<p>우의정 이정구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북교(北郊)의 제사를 종전에는 매우 극진히 받들어 왔었는데 근래 와서는 홀만하기 그지없어 심지어는 향합(香盒)이 없이 향로(香爐) 뚜껑에다 향을 담고, 폐비(幣篋)가 없어 폐백을 사기(沙器)에다 올리고, 술잔도 없어 술을 사기 종자에다 붓고 있으니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검척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고서야 신(神)이 올 리가 있겠는가. 해관을 추고하고 다시 정하게 갖추게 하라.”</p> <p>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여러 차례 변란을 겪고 나니 물력(物力)이 남아난 게 없어 자성(棗盛)과 희생(犧牲)도 모두 격식대로 갖추 수가 없습니다. 봉상시(奉常寺)만 하여도 제기(祭器)가 갖추어 있지 않다고 본조에 보고하여 왔기에 해당 각 관아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으레 있는 것이 없어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로 우선 당장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교의 제기 역시 이와 같이 모양이 말이 아니니 참으로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지금부터 봉상시와 각 능소에서 보고해 온 제기에 대하여는 해당 관아에서 서둘러 정비하게 하고 전생서(典牲署)에서도 희생 사육에 더 많은 힘을 써 사전(祀典)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右議政李廷龜於筵中啓曰：“北郊之祭，自前極致尊敬，而近來慢忽莫甚。至於無香盒，盛香於香爐之蓋；無幣篋，奠幣於沙器；無酒爵，酌酒於沙鍾，事甚可駭。宜令該曹，特加檢飭。”上曰：“安有如是，而格神之理乎？該官推考，使之精備。”禮曹啓曰：“國家不幸，累經變亂，物力蕩殘，棗盛、犧牲，俱不得如式。至如奉常寺，以祭器不備，報于本曹，移文于各該司，非止一再，而例以殘弊未遑，爲目前推諉之地。今此北郊祭器之無形如此，誠極驚駭。自今奉常寺及各陵所報祭器，宜令該司，趁急整備，且典牲署犧牲，務加養飼，以重祀典。”上從之。</p>
<p>인조 20권, 7년(1629) 기사 / 명 순정(崇禎) 2년) 6월 29일(임오) 1번째기사</p>	<p>진휼청이 아뢰기를, “보리가 익은 후에는 당연히 진구(賑救)의 일을 정지해야겠으나, 다만 기민들이 오직 본청의 미음만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처지여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끊어 버리면 어디로 가서 먹을 곳이 없다고 애타게 호소하여 마지않기에</p>	<p>賑恤廳啓曰：“麥熟之後，宜停賑救之舉，而但此飢民等，專以本廳饋粥資活，一朝猝罷，無所就食，哀籲不已，每人各給皮穀三斗，而罷遣之，俾爲初</p>

	<p>매인당 피곡(皮穀) 3두(斗)씩을 주어 돌려보내면서 초두의 구급용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신들이 각도에서 모은 미곡과 포목의 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수가 적지 않은데, 그것을 지금 해조로 넘겨준다면 경비가 균색할 때 틀림없이 그것을 이용하여 소모시킬 폐단이 없지 않으며, 설령 후일에 흉년을 만나 백성을 구휼하거나 군사를 동원하여 쓸 일이 생겼을 경우 이미 써 버린 물건을 다시 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남아 있는 잡물(雜物) 중에 포목 미납분에 있어서는 계속 보내오도록 독려하고, 미곡은 각 고을에다 그대로 둔 채 낱알이 그 수를 계산하여 ‘진휼청 미곡’이라는 이름으로 색목(色目)을 구별한 후 평상시에는 환자곡으로 나누어주어 개색(改色)하고 재해를 당하면 진구용으로 쓰도록 하며, 또 이미 올려온 것 중에서 아직 남아 있는 미포와 잡물은 그 모두를 탁지(度支)로 넘겨 주되, 만약 출납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비국에 문서를 보내 알린 후에 출납하도록 하여 다른 곳에는 조금도 쓰지 못하게 하여 후일 백성을 구휼하거나 불시에 군사를 동원할 때 드는 비용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아직 올려오지 아니한 미포는 안주(安州)로 들여보내 군량으로 보태 쓰도록 하고 기민들을 돌려보낼 때도 포목을 적당히 주어 그들의 몸을 가리는 데 쓰게 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頭救急之資矣。 臣等仍查各道所募米布，其數不貲。 今若屬之於該司，則必因經費之窘，不無移用消耗之弊，他日設有荒政軍興之用，而已散之物，不可復合。 今此餘存雜物中，木布未納者，則仍令督送，米穀則留置各邑，一一會計，而稱以賑恤廳米穀，以別色目，常時則給糶改色，遇災則以爲賑救之用。 且以已上來遺在米布雜物，並付諸度支，而如有出納之事，則關由於備局，啓知後出納，而不許一毫他用，以爲他日荒政之用，或備軍國不時之需爲當。” 答曰：“以米布之未上來者，入送安州，以補軍餉，飢民散遣時，又量給木布，以爲蔽身之資。”</p>
<p>인조 21권, 7년(1629 기사 / 명 승정(崇禎) 2년) 11월 29일(경술) 2번째기사</p>	<p>사용원이 아뢰기를, “병란이 있던 초기에 진상(進上)을 감축시켰던 별봉진(別封進)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어(靑魚)와 대구어(大口魚)의 선장(膳狀)을 모두 도로 내려보내니,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통영(統營)에서 진상한 청어는 받아들이게 하소서.”</p>	<p>司饗院啓曰：“亂初減損進上，而別封進，則不在其中，而今則靑魚、大口魚膳狀，並皆還下，殊極未安。 統營所進靑魚，請令捧入。” 答曰：“統制使及水使，違令封進，事極不當， 推</p>

	<p>하니, 답하기를, “통제사와 수사(水使)가 영을 어기고 봉진을 하였으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그들을 추고하라.” 하였다.</p>	<p>考。”</p>
<p>인조 22권, 8년(1630 경오 / 명 승정(崇禎) 3년) 3월 22일(임인) 1번째기사</p>	<p>상이 인경궁에서 진풍정(進豊呈)의 예를 거행했는데, 아홉 번 술잔을 올리고 파하였다. 다음날 환궁하였다.</p>	<p>上在仁慶宮，行進豊呈禮，九酌而罷，翌日還宮。</p>
<p>인조 23권, 8년(1630 경오 / 명 승정(崇禎) 3년) 9월 19일(을미) 3번째기사</p>	<p>상이 흥정당(興政堂)에서 야대(夜對)를 명하였는데 승지 윤황(尹煌), 옥당의 이경증(李景曾)·최유해(崔有海), 가주서(假注書) 이도장(李道長), 사관(史官) 신상(申恂)·이해창(李海昌) 등이 입시하여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하였다. 강이 끝나고 좌우(左右)가 인사하고 물러가려 하자 상이 소환(小宦)에게 명하여 배반(杯盤)을 내어오게 한 다음 먼저 큰 술잔으로 한 잔 마셨다. 소환이 또 하엽배(荷葉杯)로 행주(行酒)하니 윤황이 마실 수 없다고 사양하자, 상이 이르기를, “술잔 잡은 모습을 보니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술잔이 4, 5순배에 이르자 최유해(崔有海)가 사양하면서 아뢰기를, “혹시 실례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례한들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는가. 다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한 순배를 더하니 좌우가 잔을 잡고 사양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부터 야대할 때에는 반드시 양껏 마시기에 이르렀으니, 지금도 음식은 변변찮지만 모조록 취하도록 마시라.” 하니, 최유해가 아뢰기를, “정신이 혼란해져서 엎어져 실의(失儀)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p>	<p>上命夜對于興政堂。承旨尹煌、玉堂李景曾·崔有海、假注書李道長、史官申恂·李海昌等入侍，講《大學衍義》。講訖，左右將辭退，上命小宦，進杯盤，先以一大卮飲之。小宦又以荷葉杯行酒，尹煌以不能飲，辭。上曰：“觀其執卮，可知其能飲，勿辭。”酒至四五行，有海辭曰：“恐或失禮。”上曰：“失禮何傷？盡酌可也。”又加一酌，左右執卮以辭。上曰：“自前夜對之時，必至盡量。今者物雖薄，須盡醉。”有海曰：“恐致精神亂，而顛倒失儀也。”上曰：“世宗朝則酌不過三杯，不至失禮，此固可法，成宗朝則學士醉倒，不能出去者甚多云，亦豈非好事耶？祖宗故事，皆可法也。”酒至七行，煌辭曰：“醉已極矣。伏乞退次。”上曰：“只盡此巡可也。”酒行</p>

	<p>“세종조 때는 술은 석 잔을 넘지 않았으므로 실례하는 데 이르지 않았으니 이는 진실로 본받아야 된다. 성종조 때에는 학사(學士)들이 취하여 엎어져 나아갈 수 없게 된 경우가 매우 많았었다고 하니, 또한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조종(祖宗)의 고사는 모두 본받을 만한 것이다.”</p> <p>하였다. 술이 일곱 순배를 돌자 윤희가 사양하기를, “너무 심하게 취했으니 삼가 물러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 순배만은 다 마시도록 하라.”</p> <p>하였다. 순배가 끝나자 취하여 부축을 받으면서 나왔는데 밤은 이미 삼고(三鼓)였다.</p>	<p>既畢，扶醉而出，夜已三鼓矣。</p>
<p>인조 23권, 8년(1630) 경오 / 명 승정(崇禎) 3년) 10월 13일(무오) 3번째기사</p>	<p>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이 정관(正官) 평성(平成) 등을 보내 유희 등의 물건을 바치며 좋은 매와 인삼·호피를 요구하였다.</p>	<p>對馬島主平義成，遣正官平成等，獻硫黃等物，求良鷹、人參、虎皮。</p>
<p>인조 23권, 8년(1630) 경오 / 명 승정(崇禎) 3년) 12월 20일(갑자) 2번째기사</p>	<p>대마 도주 평의성(平義成)이 정관(正官) 굴성종(橋成種)을 보내어 후추 등을 바치고, 호피와 표피 및 우리 나라의 토산물을 요구했다.</p>	<p>對馬島主平義成，遣正官橋成種，貢胡椒等物，且求虎、豹皮及我國土產。</p>
<p>인조 24권, 9년(1631) 신미 / 명 승정(崇禎) 4년) 5월 15일(무자) 2번째기사</p>	<p>상이 남교(南郊)의 단소(壇所)에 거둥하여 재숙(齋宿)하고 이튿날 새벽에 의식에 따라 기우제를 지냈다.</p>	<p>上幸南郊壇所齋宿，翌日曉，行祈雨祭如儀。</p>
<p>인조 24권, 9년(1631) 신미 / 명 승정(崇禎) 4년) 6월 1일(계묘) 1 번째기사</p>	<p>상이 하교하였다. “한재가 이와 같으니 약방의 향온(香醞)과 날마다 내리는 술을 각 전(殿)에는 보내지 말라.”</p>	<p>上下教曰：“旱災如此，藥房香醞及日下酒，各殿則勿進。”</p>

<p>인조 26권, 10년 (1632 임신 / 명 승정 (崇禎) 5년) 1월 8일 (병오) 1번째기사</p>	<p>상이 태묘(太廟)에서 춘향 대제(春享大祭)를 행하였다.</p>	<p>上行春享大祭于太廟。</p>
<p>인조 26권, 10년 (1632 임신 / 명 승정 (崇禎) 5년) 3월 28일 (을축) 2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성종(成宗) 때에 의경묘(懿敬廟)의 성행제(成行祭)를 문소전(文昭殿)의 예에 의해 양(羊)과 시(豕)를 삶아 올렸으니, 지금 역시 이에 의해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양과 시를 사용하고, 기타 삭망(朔望)에는 치(雉)·장(獐)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또 아뢰기를, “숭은전(崇恩殿)의 제식(祭式)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우선은 흑단령(黑團領)으로 행사하고, 앞으로의 하향(夏享)에는 제복이 없을 수 없으니 마땅히 도감으로 하여금 속히 만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禮曹啓曰：“成廟朝，懿敬廟成行祭，依文昭殿例，熟薦羊豕。今亦依此，夏享大祭，用羊豕，其他朔望，宜仍用雉獐。”答曰：“依啓。”又啓曰：“崇恩殿祭式未備，姑以黑團領行事，前頭夏享，不可無祭服，宜令都監，從速製造。”上從之。</p>
<p>인조 27권, 10년 (1632 임신 / 명 승정 (崇禎) 5년) 9월 11일 (병오) 1번째기사</p>	<p>약방이 좋은 음식을 올리하고자 하여 또 입대를 청하였으나, 상이 끝내 윤택하지 않았다.</p>	<p>藥房欲進滋味，又請入對，上終不許。</p>
<p>인조 27권, 10년 (1632 임신 / 명 승정 (崇禎) 5년) 9월 17일 (임자) 1번째기사</p>	<p>약방이 따뜻한 방으로 옮겨 거처하기를 재차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약을 복용하면서 오랫동안 조섭 치료하면 완쾌를 보게 될 터이니 경은 지나치게 염려 말라.” 하였다.</p>	<p>藥房再請移御溫室，上曰：“服藥調治則久當見瘳，卿勿過慮。”</p>
<p>인조 27권, 10년 (1632 임신 / 명 승정 (崇禎) 5년) 10월 10일(갑술) 1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금차(金差)의 진향(進香)은 마땅히 홍정전(弘政殿)에 나아가 예를 거행하여야 하니, 미리 수리 청소하고 전문(殿門) 및 정문(正門)에 받을 드리워, 엄중히 보이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들건대 금차가 다만 양(羊) 한 마리와</p>	<p>禮曹啓曰：“金差進香，宜就弘政殿行禮，預令修掃，而垂簾於殿門及正門，以重觀瞻宜當。且聞金差，只持一羊一猪而來云。彼雖來祭，而本國，則</p>

	<p>돼지 한 마리만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저들이 비록 와서 조제(弔祭)하지만 본국(本國)에서는 마땅히 본국의 제례(祭禮)에 따라야 하니, 봉상시(奉常寺)로 하여금 별도로 예찬(禮饌)을 마련하고 돼지와 양은 다른 소반에 담아 놓았다가 제사가 끝나면 모든 찬물(饌物)을 금차가 머무르고 있는 처소로 보내주도록 하는 것이 역시 타당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아뢴 대로 하되, 별도로 예찬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 같다. 다만 금나라 사람이 싸가지고 온 물건만을 진설하여, 금차로 하여금 홍정문 바깥 섬 돌 위에서 예를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p> <p>하였다. 회계하기를,</p> <p>“지금 호역(胡譯)의 말을 듣건대, 금나라 사람이 가지고 온 은(銀) 90냥 안에서 10냥은 돼지와 양을 사고, 그 나머지 80냥은 한 그릇에 담아 영좌(靈座) 앞에 놓아두고자 한다고 하니, 이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p> <p>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구관소(句管所)가 아뢰기를,</p> <p>“차비 역관(差備譯官)이 금차가 가지고 온 제의(祭儀) 물품을 베껴 내었습니다. 제문(祭文) 1축(軸), 단향(檀香) 1속(束), 제백(祭帛) 1단(端), 제주(祭酒) 1준(樽), 은호(銀壺) 1과(把), 은작(銀酌) 3집(執), 제저(祭猪) 1구(口), 제양(祭羊) 1강(羴)이었는데, 돼지와 양은 은 10냥으로 사서 제연(祭筵)에 쓰고, 은이 80냥이며 부단(賦段)이 8단(端)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것은 그들의 나라에서 이미 참작하여 물건을 준비해 온 것이니, 돼지와 양은 마땅히 그들의 말을 따라 마련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예를 거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p> <p>하자, 상이 따랐는데, 이튿날 금차가 말하기를,</p> <p>“과실 등 여러가지 물품의 진설을 본국(本國)의 하는 바에 일임하겠습니다.”</p>	<p>當遵本國祭禮，令奉常寺別具禮饌，而猪羊，則盛以別盤，祭畢，悉以饌物，送于金差館所亦當。” 上曰：“依啓。別具禮饌，似未妥當，只設金人齎來之物，令金差行禮于弘政門外階上宜當。更議以處。” 回啓曰：“今聞胡譯之言，金人所持九十兩銀子內，十兩爲買猪羊，其餘八十兩，則欲盛以一器，置於靈座前云。依此施行，亦似無妨。” 答曰：“依啓。” 句管所啓曰：“差備譯官贍出金差所持祭儀物目，有祭文一軸、檀香一束、祭帛一端、祭酒一樽、銀壺一把、銀酌三執、祭猪一口、祭羊一羴，猪羊則以銀十兩，買用祭筵，銀子八十兩，賻段八端云。蓋是自其國中，既已參酌備物而來，猪羊則合從其言備給，使之行禮。” 上從之。翌日金差言：“果實諸品之設，一任本國所爲。” 上許之。</p>
--	---	---

	하니, 상이 윤택하였다.	
인조 28권, 11년 (1633 계유 / 명 승정 (崇禎) 6년) 7월 19일 (기유) 2번째기사	평소 수라상의 반찬을 덜고 정전을 피하며, 억울한 옥사를 풀고 자신을 책하는 교서를 내려 중외의 충언을 구하였다.	減常膳、避正殿、理冤獄， 下罪己教， 求言中外。
인조 29권, 12년 (1634 갑술 / 명 승정 (崇禎) 7년) 6월 21일 (을해) 2번째기사	상이 남별궁(南別宮)에 행행하여 칙사의 하마연(下馬宴)을 행하였다.	上幸南別宮， 行勅使下馬宴。
인조 30권, 12년 (1634 갑술 / 명 승정 (崇禎) 7년) 8월 16일 (기사) 1번째기사	금나라 장수 마부대(馬夫大)가 종호(從胡) 30여 명을 이끌고 중강(中江) 건너편에 와 둔치고는 의주 부윤(義州府尹)에게 말을 전하기를, “우리들은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5백 명은 구련성(九連城)에 주둔하고 있고 2천 명은 대장 한 명이 거느리고 오는데 내일이면 구련성까지 진군할 것이다.” 하고, 이어 술과 고기 및 식량과 반찬 등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金將馬夫大率從胡三十餘人， 來屯中江越邊， 傳言于義州府尹曰：“俺等爲物貨輸運出來， 而五百人則留屯九連城， 二千人則大將一人領來， 明當進陣於九連城。” 仍求索牛、酒、糧、饌云。
인조 30권, 12년 (1634 갑술 / 명 승정 (崇禎) 7년) 윤8월 9일(임진) 1번째기사	상이 인목 왕후(仁穆王后)의 부모제를 거행하려고 종묘로 나아가면서 망묘례(望廟禮)를 거행하였다. 신주를 실은 가마가 효사전(孝思殿)으로부터 도착하자 상이 자리에 나가 경건히 맞이하였다. 이튿날 부모제를 거행하고 환궁하여 교서를 반포하였는데, 교서는 다음과 같다. “왕은 이르노라. 태묘에 나아가 부모의 의식을 마치고 온 나라에 알리려고 이어 교서를 반포한다. 아직 가시지 않은 슬픔을 잊지 못하는데, 어찌 하례받을 생각을 갖겠는가. 생각건대 우리 성후(聖后)의 정숙한 자태는 일찍부터 왕비의 아름다운 법도를 드러내셨다. 황천(皇天)의 도움을 받아 다시 윤기(倫紀)가 밝아짐에 소자가 감당할 수 없는 종사의 책임을 외람되이 맡게 되었다. 생전에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였는데, 돌아가신 뒤 추송하기도 쉽지 않았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상제(祥制)·담제(禫制)가 모두 지나, 종묘의 예에	上將行仁穆王后祔廟祭， 詣宗廟， 行望廟禮。 神輦自孝思殿至， 上出次祗迎。 翌日行祔廟祭， 還宮後頒教。 王若曰， 格于太廟， 已完升祔之儀； 誥爾多方， 爰發渙汗之號。 顧何心於受賀？ 予未忘於餘哀。 念我聖后之淑姿， 早著坤闈之懿則。 皇天所佑， 再見倫紀之明； 小子何堪？ 謬委宗社之托。 長樂之歡奉未洽， 喬山之仙馭難追。 歲月如流， 奄過祥、禫之制； 宗廟有禮， 宜序昭穆之班。 乃以甲戌閏八月

	<p>따라 의당 소목(昭穆)의 반열에 올라야 하겠기에, 갑술년 윤8월 10일에 삼가 황조비(皇祖妣) 소성정의 명렬광숙 장정인목왕후(昭聖貞懿明烈光淑莊定仁穆王后)를 받들어 태묘에 모셨다. 이제부터는 신(神)으로서 섬기고 예는 길례(吉禮)로 바꾸어 겨울의 증(蒸) 제사와 여름의 약(禴) 제사는 물론 사시의 제사를 모두 이곳에서 지낼 것인데, 이실동당(異室同堂)의 제도로 열성(列聖)의 자리가 모두 가지런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행적은 사필(史筆)에 빛나고 혼백은 이제 종묘에서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 이번에 큰 일을 마쳤으나 끝내 사모하는 정은 어찌하겠는가. 아, 서리 내리는 싸늘한 계절에 처창(悽愴)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만지고, 엄숙한 묘우(廟宇)를 바라보니 일기(一氣)가 집산(集散)하는 뜻을 다시금 느끼겠다.”</p>	<p>十日，祇奉皇祖妣昭聖貞懿明烈光淑莊定仁穆王后，祔享于太廟。事專以神，禮變之吉。冬蒸夏禴，四時之禮祀在茲；異室同堂，列聖之位次咸秩。徽音太史彤管，靈御栢板松楹。迨茲大事迄成，奈何終天有慕？於戲！履霜露之淒冷，采增悽愴之心；瞻廟宇之肅嚴，更感萃渙之義。</p>
<p>인조 30권, 12년 (1634 갑술 / 명 승정 (崇禎) 7년) 윤8월 12일(을미) 1번째기사</p>	<p>상이 인정전(仁政殿)에 거동하여 음복연을 거행하였다. 어깁(御羹)을 거두고 여러 재상들과 승지들에게 술을 내려 여섯 잔을 돌렸다. 도승지 이경직(李景稷)이 아뢰기를, “3년 동안 건강이 좋지 못하시다가 옥후(玉候)가 평안을 되찾고 이런 성대한 예를 갖게 되니 신민들의 경사가 더없이 큼니다. 다만 해가 이미 저물고 날씨가 쌀쌀하여 옥체를 상할까 두려우니, 자리를 파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동반(東班)의 재신(宰臣)들에게 미처 술을 주지 못하였으니, 한 차례 술을 돌린 뒤에 마치도록 하라.” 하였다.</p>	<p>上御仁政殿，行飲福宴。撤御羹，賜諸宰及承旨、史官，行六爵後，都承旨李景稷啓曰：“三年違豫之餘，玉候平復，而有此盛禮，臣民之慶，莫大於此，而但日已向夕，天氣涼冷，恐傷玉體，停罷爲當。”上曰：“東班宰臣未及進爵，進爵一巡後，停罷。”</p>
<p>인조 30권, 12년 (1634 갑술 / 명 승정 (崇禎) 7년) 9월 9일 (임술) 2번째기사</p>	<p>상이 어수당(魚水堂)에 술상을 차려 놓고 세자만 시종하도록 명하였다. 정묘년 변란으로 어수당이 거의 모두 퇴락하였는데, 상의 어소(御所)를 옮긴 뒤로 곧바로 개수토록 하였고, 또 열무정(閱武亭)가에 못을 파고 화선(畫船)을 만들어 띄웠는데, 화선은 십여 명을 태울 수 있는 것이었다. 때로 뱃놀이를 하였는데 여러 궁가(宮家)의 여악(女樂)을 불러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였으며</p>	<p>上置酒魚水堂，只命世子從焉。丁卯之變，魚水堂頽落殆盡。上移御之後，卽命修葺，又鑿池于閱武亭邊，作畫船，船可受十餘人。時事遊宴，招聚諸宮家女樂，使之歌舞，或至夜乃罷。</p>

	<p>더러는 밤이 되어서 마치고도 하였다. 환관들에게 밖으로 소문이 나가지 않게 하라고 명하였으나, 밖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p>	<p>命宦寺切勿洩外，而外人皆知之。</p>
<p>인조 31권, 13년 (1635 을해 / 명 승정 (崇禎) 8년) 10월 10 일(정해) 1번째기사</p>	<p>강원 감사 이민구(李敏求)가 치계하기를, “재해를 살펴서 급재(給災)하는 것은 백성을 구휼하는 중요한 정사이지만, 본도는 산길이 멀고 촌락이 궁벽하여 더러 2, 3일 일정이나 되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실정을 살펴러 왕래할 때 오래 되는 곳은 3, 4일이 걸립니다. 감영의 관원이나 이서(吏胥) 등에게 제공하는 주식(酒食)의 비용은 모두 재변을 당한 고을에서 나오므로 나중에 급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은 많지 않고 곤궁한 백성들의 생계만 먼저 바닥이 나기 때문에, 모두 재변을 당한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니, 호조에 계하하였다. 호조가 회계하기를, “강원도는 풍제가 혹심하지만 스스로 남은 곡식을 모아 관창에 세금을 낼 수 있으며, 뿌리를 캐고 열매를 주워 흉년에 대비할 수 있으니, 감사의 소청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p>	<p>江原監司李敏求馳啓曰：“覆審給災，乃恤民之大政，而本道山蹊迂遠，村塢窮僻，遠或二三日程，行審往來之際，久者三四日。監官、吏胥等酒食供饋之費，皆出於被災之村，終雖給災，其惠無多，而窮民之生計先盡，故皆不願報災云。”啓下戶曹。戶曹回啓以爲：“江原道風災雖酷，自可收拾餘穀，上輸官租，採根拾實，以備飢荒，監司之所請是也。”上從之。</p>
<p>인조 32권, 14년 (1636 병자 / 명 승정 (崇禎) 9년) 1월 28일 (갑술) 1번째기사</p>	<p>간원이 아뢰기를, “즉위하신 이후로 세 번이나 조사(詔使)를 겪었고 자주 국상을 당했습니다. 금나라 사람들을 책응하는 횡수와 중국 차인(差人)이 억지로 물건을 파는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시정 백성들에게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빌려 쓴다고 하고는 곧바로 값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백성들이 받는 폐해에 이르러서도 지금이 더욱 심한 형편입니다. 만일 변통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호조에 이미 별도로 마련해 둔 무명 1천여 동이 있으며 선혜청에도 쓰고 남은 쌀 수천 석이 있습니다. 호조의 무명을 내어 시정 백성들에게 빌어 쓴 것을 갚아 주고 선혜청의 쌀을 내어 경기 도내 봉수군의 품삯에 보충하게 하소서.”</p>	<p>諫院啓曰：“卽位以來，三經詔使，屢遭國葬。金人策應之數，唐差抑賣之物，日甚一日。市井之民，既無恒產，而稱以貸用，趁不還報。至於畿民之受弊，到今益甚，若不變通，怨咨日深。戶曹既有別置木千餘同，宣惠廳亦有用餘米累千餘石，請以別置木，償市井之所貸；以用餘米，充畿內烟軍之價。”上從之。</p>

	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32권, 14년 (1636 병자 / 명 승정 (崇禎) 9년) 5월 4일 (정미) 1번째기사	상이 하교하였다. “지난해 국휼을 당하여 백성들의 재력이 바닥났는데 올 여름에 다시 가뭄을 만나 들판의 곡식이 모두 말랐다. 지금 비록 비가 왔으나 두루 흡족하지 못하고, 팔도가 모두 그러한지도 기필할 수 없으니, 민생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축년 정조(正朝) 이전의 명일 방물(名日方物)을 제도로 하여금 모두 봉진하지 말게 하여 조금의 폐단이나마 덜게 하라. 또한 해조에 명하여 도시 백성들의 폐해와 병통을 자세히 살펴 사의(事宜)를 헤아려 변통해서 내가 백성들을 보살피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上下教曰：“上年遭國恤，民竭其財力，今夏復罹旱乾，而田野禾稼皆枯。今雖得雨，既未周洽，而八路之同然，亦未可必，眷念民生，良用惕然。丁丑正朝以前名日方物，令諸道並勿封進，以除一分之弊，亦令該曹，詳察都民弊瘼，量宜變通，以副予勤民之意。”
인조 33권, 14년 (1636 병자 / 명 승정 (崇禎) 9년) 7월 24일 (병인) 1번째기사	약방의 술과 쌀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命減藥房酒米。
인조 33권, 14년 (1636 병자 / 명 승정 (崇禎) 9년) 12월 18일(무자) 6번째기사	내주방(內酒房)의 은그릇을 해조에 보내 상격(賞格)에 쓰게 하라고 명하였다.	命以內酒房銀器，送于該曹，以爲賞格之用。
인조 33권, 14년 (1636 병자 / 명 승정 (崇禎) 9년) 12월 26일(병신) 2번째기사	삼공과 비국 당상이 입대(入對)하여 아뢰기를, “오늘 군사를 조발(調發)하여 출전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니 날씨가 조금 풀릴 때까지 기다렸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김류에게 이르기를, “경이 대장이니, 사태를 보아 가며 대처하라.” 하였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오늘의 위급한 상황을 어찌 다 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믿을 것은 외부의 구원뿐인데, 호서의 군사가 사식정(四息程)의 거리에 와 있으면서도 관망만 할 뿐 진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양남(兩南)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해도 아	三公、備局堂上入對曰：“今日欲調兵出戰，而風氣甚勁，欲待日氣稍溫耳。”上謂金瑬曰：“卿爲大將，相機而處之。”洪瑞鳳曰：“今日危急之狀，何可盡達？目前所恃者，只是外援，而湖西之軍，來到四息程，觀望不進；兩南之軍，其數雖多，尙未能一戰；西北之軍，亦無消息。所恃者，只城中士心之不沮，而日寒如此，摧傷甚矣。

	<p>직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으며, 서북의 군사도 소식이 없습니다. 믿을 것은 단지 성안 군사의 사기가 꺾이지 않는 것뿐인데, 날씨가 이토록 차므로 너무도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적이 만약 명분없이 물러가기를 어렵게 여긴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낸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온 성의 인정이 다 이와 같은데도 영상은 용사(戎事)를 맡고 있어 감히 논의에 참여할 수 없기에 신이 감히 아뢰입니다.”</p> <p>하고, 김류도 아뢰기를, “신이 용사를 맡고 있어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나 군정은 과연 좌상의 말과 같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실정만 말하라. 군정은 어린아이라도 알 것인데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p> <p>하였다. 김신국이 아뢰기를, “사람을 보내어 강화를 성사시킬 수 있다면 실로 국가의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 먼저 사람을 보내면 저들이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지할 것입니다.”</p> <p>하고, 장유가 아뢰기를, “저들도 처음 올 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립된 성이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산성의 형세가 올라다 보고 공격하기 어려우므로,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려 협박해서 강화를 맺고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이 성안의 형세가 매우 위급하니, 우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하지 말고 먼저 사람을 보내어 시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신국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호관의 말이 옳다. 다만 백관 부형이 모두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형세가 이</p>	<p>賊若以無名退去爲難，則自此送人何妨？一城人情，無不如此，而領相方受任戎事，不敢與議，故臣敢仰達。” 堯曰：“臣受任戎事，不敢發口，而群情果如左相之言矣。” 上曰：“第言賊之情僞。群情則兒童之所共知，予豈不知？” 金蓋國曰：“遣人而和可成，則實國家之幸。但自我先遣之，則彼雖有歸心，亦必中止矣。” 張維曰：“彼與初來時不同。初則謂此孤城在其掌握中矣。今則山城形勢，難於仰攻，故欲坐待我弊，脅與之和而歸也。顧此城中，勢甚危迫，姑勿論事之成不成，而先遣人以試之可矣。” 上顧蓋國曰：“戶判言是矣。但百官、父兄，咸入于此，而勢已至此，依昨日李曙之言，饋以牛酒亦可矣。” 崔鳴吉曰：“古有黃柑遺敵者，此亦無妨矣。” 上曰：“極擇宰臣之有計慮，善爲說辭者以遣之。” 朴潢曰：“以上命遣之，而不受則徒爲取辱，以大臣言遣之何如？” 上曰：“設令不受，亦無所妨。以國家之言，遣之宜矣。” 李景稷入對曰：“臣當往賊中矣。議于大臣則‘卽者賊兵向利阜峙，必有迎擊援兵之舉。如有</p>
--	--	---

	<p>지경이 되었으니, 어제 이서가 아뢰 대로 소와 술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 하였다. 최명길(崔鳴吉)이 아뢰기를, “옛날에도 황감(黃柑)을 적에게 보낸 경우가 있었으니, 이 역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신 중에 계략에 뛰어나고 언변이 있는 자를 엄선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박항(朴恒)이 아뢰기를, “상의 명으로 보냈다가 받지 않으면 괜히 모욕만 당하게 될 것이니, 대신이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설령 받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 국가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경직(李景稷)이 입대하여 아뢰기를, “신이 적의 진영에 가도록 되어 있기에 대신에게 의논했더니 ‘방금 적병이 이부치(利阜峙)로 향하고 있으니, 이는 필시 우리측 원병을 맞아 공격하려는 것이다. 만약 불행한 일이 있게 되면 저들은 필시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 왔다고 할 것이다. 오늘 복병에게 말을 전하여 사자를 보내겠다는 뜻을 먼저 통지해 놓고 내일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이를 양품(仰稟)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적의 진영에 가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십 년 동안 우호를 맺어온 나라가 지금 무단히 군사를 일으켰다. 너희는 맹약을 저버렸지만 우리는 옛날의 우호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p>	<p>不幸，則彼必以我爲乞和而來。 今日傳言於伏兵，先通遣使之意，而明日出去爲當’云。 敢此仰稟。” 上曰：“卿往賊營，將何以措語？” 對曰：“以十年相好之國，今既無端興師。 汝雖敗盟，吾則不忘舊好， 以此來餽云矣。” 上曰：“媾和之意，不須言及。 但以歲時之餽，爲辭可也。”</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화하는 뜻은 언급하지 말고 세시의 선물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인조 33권, 14년 (1636 병자 / 명 승정 (崇禎) 9년) 12월 27 일(정유) 2번째기사</p>	<p>이날 소와 술을 노영(虜營)에 보내려 하는데 대신이 들어와 청하기를, “재신(宰臣)을 보내었다가 구류되면 도리어 나라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니, 이 기남(李箕男)을 시켜 보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대사간 김반(金槃)과 승지 최연(崔衍)은 사 람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고, 교리 윤집(尹集)은 상소하여 논의를 주 도한 자를 목베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않고, 이기남으로 하여금 소 두 마리, 돼지 세 마리, 술 열 병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노장(虜將)이 받 지 않으며 말하기를, “황천(皇天)이 우리에게 동방을 주셨으니, 팔도의 주육(酒肉) 등 모든 물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국왕이 현재 석혈(石穴)에 처해 있고 내외가 통 하지 않아서, 종신(從臣) 이하가 모두 굶주릴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얻었 는지 모르겠다. 너는 가지고 가서 굶주린 신민에게 나누어 주라.” 하고, 또 말하기를, “원병이 어느 곳에 도착했기에 우리가 3천 군사로 모조리 죽었고, 또 다른 곳에서 2천 병사를 보내 모두 죽였다. 황제가 이미 나온 것을 너희 나라는 듣지 못하였는가?” 하니, 기남이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돌아왔다.</p>	<p>是日，將送牛酒於虜營，大臣入請曰： “若送宰臣而被拘，則反有損於國體。 令李箕男往遺之如何？”上從之。大 司諫金槃、承旨崔衍，請勿遣人。校 理尹集上疏，請斬主議者，上皆不從， 使李箕男持牛二、豬三、酒十瓶，往遺 之，虜將不受曰：“皇天畀我以東方， 八道酒肉等凡物，唯我所欲。國王方 處石穴，內外不通，從臣以下，無不飢 餒，未知此物，何處得來？汝其持去， 以給飢餒之臣民。”且曰：“援兵來到 某地，吾以三千兵鑿之。又於某地， 以二千兵鑿之。皇帝既已出來，爾國 不得聞之耶？”箕男不能措一辭而歸。</p>
<p>인조 34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 (崇禎) 10년) 1월 1일 (신축) 4번째기사</p>	<p>비국 낭청 위산보(魏山寶)를 파견하여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오랑캐 진영에 가서 새해 인사를 하면서 오랑캐의 형세를 엿보게 하였는데, 청나라 장수가 황제가 이미 왔으므로 감히 마음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며 공갈하는 말을 많 이 하였으므로 산보가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상이 삼공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고 이르기를,</p>	<p>遣備局郎廳魏山寶，持牛酒，往虜陣， 修歲禮，仍覘虜勢。清將以爲：“皇帝 已來，不敢擅受。”多有恐喝之言。 山寶持牛酒而還。上引見三公、備局 諸臣曰：“虜情如何？”領議政金瑬等</p>

	<p>“오랑캐의 정세가 어떠한가?” 하니, 영의정 김류 등이 아뢰기를, “오랑캐의 형세가 필시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인 듯합니다.” 하고, 이조 판서 최명길 이 아뢰기를, “그가 이름은 황제여도 스스로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니, 그가 오지 않았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한(汗)이 만약 온 나라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면 분명 까닭없이 군사를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 병력으로는 결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친하는 뜻으로 저들의 실정을 은밀하게 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어 사신을 파견해서 편지를 가지고 한에게 곧장 보내어 ‘듣건대 황제가 나왔다고 하니 본국의 실정을 모두 진달해야 하겠다.’고 한다면 저들이 응당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제신들은 모두 이를 불가하다고 하였으므로 오래도록 결정을 짓지 못하다가 상이 마침내 최명길의 말을 따라 드디어 김신국(金薰國)·이경직(李景稷)을 파견하여 오랑캐 진에 가서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오랑캐 장수 마부달(馬夫達)이 말하기를, “황제가 지금 성을 순찰하고 있으므로 천천히 여쭙어 결정해야 할 것이니, 내일 아침에 사람을 파견하시오.” 하였으므로, 김신국 등이 되돌아왔다.</p>	<p>曰：“虜勢必不至此。 皇帝出來云者，似是誇張矣。” 吏曹判書崔鳴吉曰：“彼名雖皇帝，不自持重，安知其不來也？ 汗若舉國而來，必不無端退師。以我兵力，決難抵當。 宜以和好之意，微探彼情， 仍遣使臣， 持書直送于汗曰：‘聞皇帝出來， 本國情事， 可以畢陳’云， 則彼當有酬答矣。” 諸臣皆言其不可， 久不能決。 上竟從鳴吉之言， 遂遣金薰國、李景稷， 往虜陣請和。 虜將馬夫達曰：“皇帝方巡城， 徐當稟定， 明早不可不遣人。” 薰國等還。</p>
<p>인조 34권, 15년 (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1월 1일 (신축) 6번째기사</p>	<p>삶은 고기와 찐 콩을 성첩(城堞)을 지키는 장졸(將卒)에게 내리도록 명하였다.</p>	<p>命賜烹肉、蒸豆于守堞將卒。</p>
<p>인조 34권, 15년 (1637 정축 / 명 숭정</p>	<p>상이 늙고 병든 제신(諸臣)을 불러다 보고 찬물(饌物)을 내리도록 명하였다.</p>	<p>上召見老病諸臣， 命賜饌物。</p>

<p>(崇禎) 10년) 1월 4일 (갑진) 5번째기사</p>	<p>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가 성 밖에 와서 상의 출성(出城)을 재촉하였다. 상이 남염의(藍染衣) 차림으로 백마를 타고 의장(儀仗)은 모두 제거한 채 시종(侍從) 50여 명을 거느리고 서문(西門)을 통해 성을 나갔는데, 왕세자가 따랐다. 백관으로 뒤쳐진 자는 서문 안에 서서 가슴을 치고 뛰면서 통곡하였다. 상이 산에서 내려가 가시를 펴고 앉았는데, 얼마 뒤에 갑옷을 입은 청나라 군사 수백 기(騎)가 달려 왔다. 상이 이르기를, “이들은 뭐하는 자들인가?” 하니, 도승지 이경직이 대답하기를, “이는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들인 듯합니다.” 하였다. 한참 뒤에 용골대 등이 왔는데, 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아 두 번 읍(揖)하는 예를 행하고 동서(東西)로 나누어 앉았다. 용골대 등이 위로하니, 상이 답하기를, “오늘의 일은 오로지 황제의 말과 두 대인이 힘써준 것만을 믿을 뿐입니다.” 하자, 용골대가 말하기를, “지금 이후로는 두 나라가 한 집안이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이미 늦었으니 속히 갔으면 합니다.” 하고, 마침내 말을 달려 앞에서 인도하였다. 상이 단지 삼공 및 판서·승지 각 5인, 한림(翰林)·주서(注書) 각 1인을 거느렸으며, 세자는 시강원(侍講院)·익위사(翼衛司)의 제관(諸官)을 거느리고 삼전도(三田渡)에 따라 나아갔다. 멀리 바라보니 한(汗)이 황옥(黃屋)을 펼치고 앉아 있고 갑옷과 투구 차림에 활과 칼을 휴대한 자가 방진(方陣)을 치고 좌우에 옹립(擁立)하였으며, 악기를 진열하여 연주했는데, 대략 중국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상이 걸어서 진(陣) 앞에 이르고, 용골대 등이 상을 진문(陣門) 동쪽에 머물게 하였다. 용골대가 들</p>	<p>龍、馬兩胡，來城外，趣上出城。上着藍染衣，乘白馬，盡去儀仗，率侍從五十餘人，由西門出城，王世子從焉。百官落後者，立於西門內，搥胸哭踊。上下山，班荆而坐。俄而，清兵被甲者數百騎馳來。上曰：“此何爲者耶？”都承旨李景稷對曰：“此似我國之所謂迎逢者也。”良久，龍胡等至。上離坐迎之，行再揖禮，分東西而坐。龍胡等致慰，上答曰：“今日之事，專恃皇帝之言與兩大人之宣力矣。”龍胡曰：“今而後，兩國爲一家，有何憂哉？日已晚矣，請速去。”遂馳馬前導。上只率三公及判書、承旨各五人，翰、注各一人，世子率侍講院、翊衛司諸官，隨詣三田渡。望見，汗張黃屋而坐，甲冑而帶弓劍者，爲方陣而擁立左右，張樂鼓吹，略倣華制。上步至陣前，龍胡等留上於陣門東。龍胡入報，出傳汗言曰：“前日之事，欲言則長矣。今能勇決而來，深用喜幸。”上答曰：“天恩罔極。”龍胡等引入，設席於壇下北面，請上就席，使清人臚</p>
---------------------------------------	---	--

	<p>어가 보고하고 나와 한의 말을 전하기를, “지난날의 일을 말하려 하면 길다. 이제 용단을 내려 왔으니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다.” 하자, 상이 대답하기를, “천은(天恩)이 망극합니다.” 하였다. 용골대 등이 인도하여 들어가 단(壇) 아래에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상에게 자리로 나가기를 청하였는데, 청나라 사람을 시켜 여창(臚唱)하게 하였다. 상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용골대 등이 상을 인도하여 진의 동문을 통해 나왔다가 다시 동쪽에 앉게 하였다. 대군(大君) 이하가 강도(江都)에서 잡혀왔는데, 단 아래 조금 서쪽에 늘어섰다. 용골대가 한의 말로 상에게 단에 오르도록 청하였다. 한은 남쪽을 향해 앉고 상은 동북 모퉁이에 서쪽을 향해 앉았으며, 청나라 왕자 3인이 차례로 나란히 앉고 왕세자가 또 그 아래에 앉았는데 모두 서쪽을 향하였다. 또 청나라 왕자 4인이 서북 모퉁이에서 동쪽을 향해 앉고 두 대군이 그 아래에 잇따라 앉았다. 우리 나라 시신(侍臣)에게는 단 아래 동쪽 모퉁이에 자리를 내주고, 강도에서 잡혀 온 제신(諸臣)은 단 아래 서쪽 모퉁이에 들어가 앉게 하였다. 차 한잔을 올렸다. 한이 용골대를 시켜 우리 나라의 여러 시신(侍臣)에게 고하기를, “이제는 두 나라가 한 집안이 되었다. 활쏘는 솜씨를 보고 싶으니 각기 재주를 다하도록 하라.” 하니, 종관(從官)들이 대답하기를, “이곳에 온 자들은 모두 문관이기 때문에 잘 쏘지 못합니다.” 하였다. 용골대가 억지로 쏘게 하자 드디어 위솔(衛率) 정이중(鄭以重)으로 하여금 나가서 쏘도록 하였는데, 활과 화살이 본국의 제도와 같지 않았으므로, 다섯 번 쏘았으나 모두 맞지 않았다. 청나라 왕자 및 제장(諸將)이 떠들썩하</p>	<p>唱。上行三拜九叩頭禮。龍胡等引上由陣東門出，更由東北隅而入，使坐於壇東。大君以下，自江都被執而來，列立於壇下少西矣。龍胡以汗言，請上登壇，汗南面而坐，上坐於東北隅西面，而清王子三人，以次連坐，王世子又坐其下，竝西面。又清王子四人，坐於西北隅東面，二大君連坐於其下。我國侍臣，給席於壇下東隅，江都被執諸臣，入坐於壇下西隅，進茶一杯，汗使龍骨大，告我諸侍臣曰：“今則兩國爲一家矣。欲觀射藝，其各效技。”從官等答曰：“來此者皆文官，故不能射矣。”龍胡強之，遂令衛率鄭以重出射，而弓矢與本國之制不同，五射而俱不中。清王子及諸將，雜竝射以爲戲。俄令進饌、行酒，酒三行，命撤杯盤。將撤，有從胡二人，各牽狗而至于汗前，汗親自割肉投之。上辭出，嬪宮以下士大夫家屬之被執者，皆聚於一處。龍胡以汗言，請嬪宮、大君夫人出拜，觀者灑泣，其實代以內人云。龍胡等以汗所贈白馬，具玲瓏鞍牽來，上親執轡，從臣受之。龍胡等又將貂裘而來，傳汗言曰：“此物，當初意欲</p>
--	---	---

게 어울려 쏘면서 놀았다. 조금 있다가 진찬(進饌)하고 행주(行酒)하게 하였다. 술잔을 세 차례 돌린 뒤 술잔과 그릇을 치우도록 명하였는데, 치울 무렵에 종호(從胡) 두 사람이 각기 개를 끌고 한의 앞에 이르자 한이 직접 고기를 베어 던져주었다. 상이 하직하고 나오니, 빈궁(嬪宮) 이하 사대부 가솔로 잡힌 자들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었다. 용골대가 한의 말로 빈궁과 대군 부인에게 나와 절하도록 청하였으므로 보는 자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사실은 내인(內人)이 대신하였다고 한다. 용골대 등이 한이 준 백마에 영롱한 안장을 갖추어 끌고 오자 상이 친히 고삐를 잡고 종신(從臣)이 받았다. 용골대 등이 또 초구를 가지고 와서 한의 말을 전하기를,
 “이 물건은 당초 주려는 생각으로 가져 왔는데, 이제 본국의 의복 제도를 보니 같지 않다. 따라서 감히 억지로 착용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의(情意)를 표할 뿐이다.”
 하니, 상이 받아서 입고 뜰에 들어가 사례하였다. 도승지 이경직으로 하여금 국보(國寶)를 받들어 올리게 하니, 용골대가 받아서 갔다. 조금 있다가 와서 힐책하기를,
 “고명과 옥책(玉冊)은 어찌하여 바치지 않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옥책은 일찍이 갑자년 변란으로 인하여 잃어버렸고, 고명은 강화도에 보냈는데 전쟁으로 어수선한 때에 온전하게 되었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소. 그러나 혹시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바치는 것이 뭐가 어렵겠소.”
 하자, 용골대가 알았다고 하고 갔다. 또 초구 3령(領)을 삼공(三公)을 불러 입게 하고, 5령을 오경(五卿)을 불러 입게 하였으며, 【형조 판서 심집(沈誥)은 대죄(待罪)하고 오지 않았다.】 5령을 다섯 승지를 불러 입게 하고, 【좌부승지 한흥일(韓興一)은 강도(江都)에 들어갔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말하기를,

相贈而持來。今見本國衣制不同，非敢強使着之也，只表情意而已。”上受而着之，入庭展謝，使都承旨李景稷，奉國寶以進，龍胡受之而去。俄而，來詰曰：“誥命、玉冊，何以不納耶？”上曰：“玉冊則曾於甲子年，因變亂失之。誥命則送于江華，兵戈顛倒之時，難保其獲全，而如或有之，則追納何難？”龍胡唯唯而去。又以貂裘三領，招三公着之；五領，招五卿着之；【刑曹判書沈誥待罪不來。】五領，招五承旨着之，【左副承旨韓興一則入江都，故不與焉。】謂之曰：“奉主上，勤勞於山城，故以此爲贈耳。”受賜者皆伏謝於庭。洪瑞鳳、張維入伏於庭，請得尋見老母，【其母入江都故也。】金石乙屎怒叱之。上地坐田中，待其進退，日晡後，始令還都。王世子及嬪宮暨二大君及夫人，竝令留置，蓋將以北行故也。上退，入見嬪宮於幕次，留崔鳴吉，姑令陪衛焉。上由所波津，乘船而渡。時，津卒死亡殆盡，只有空船二艘，百官爭渡，至攀御衣而上船。上既渡，汗隨後馳來，由淺灘渡軍，就桑田筍陣，令龍胡率護行軍兵，

	<p>“주상을 모시고 산성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이다.” 하였다. 하사(下賜)를 받은 이들이 모두 뜰에 엎드려 사례하였다. 홍서봉(洪瑞鳳)과 장유(張維)가 뜰에 들어가 엎드려 노모(老母)를 찾아 보도록 해 줄 것을 청하니, 【 그들의 어머니가 강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석을시(金石乙屎)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상이 발 가운데 앉아 진퇴(進退)를 기다렸는데 해 질 무렵이 된 뒤에야 비로소 도성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왕세자와 빈궁 및 두 대군과 부인은 모두 머물러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장차 북쪽으로 데리고 가려는 목적에서였다. 상이 물러나 막차(幕次)에 들어가 빈궁을 보고, 최명길을 머물도록 해서 우선 배종(陪從)하고 호위하게 하였다. 상이 소파진(所波津)을 경유하여 배를 타고 건넜다. 당시 진졸(津卒)은 거의 모두 죽고 빈배 두 척만이 있었는데, 백관들이 다투어 건너려고 어의(御衣)를 잡아당기기까지 하면서 배에 오르기도 하였다. 상이 건넌 뒤에, 한(汗)이 뒤따라 말을 타고 달려와 얇은 여울로 군사들을 건너게 하고, 상전(桑田)에 나아가 진(陣)을 치게 하였다. 그리고 용골대로 하여금 군병을 이끌고 행차를 호위하게 하였는데, 길의 좌우를 끼고 상을 인도하여 갔다. 사로잡힌 자녀들이 바라보고 울부짖으며 모두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지여, 우리 임금이지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하였다. 길을 끼고 울며 부르짖는 자가 만 명을 헤아렸다. 인정(人定)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서울에 도달하여 창경궁(昌慶宮) 양화당(養和堂)으로 나아갔다.</p>	<p>挾路左右，導上而行。被擄子女望見，號哭皆曰：“吾君、吾君，捨我而去乎？”挾路啼號者，以萬數。人定時，始達京城，御昌慶宮 養和堂。</p>
<p>인조 34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崇禎) 10년) 2월 11일(신사) 2번째기사</p>	<p>비국이 선혜청의 쌀 20석을 내어 도망하였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굶주리는 자들을 진휼할 것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p>	<p>備局請出宣惠廳米二十石，以賑逃還人之飢餓者，上許之。</p>
<p>인조 34권, 15년</p>	<p>진휼청(賑恤廳)이 아뢰기를,</p>	<p>賑恤廳啓曰：“被擄逃還之人，中路飢</p>

<p>(1637 정축 / 명 승정 (崇禎) 10년) 2월 27일(정유) 2번째기사</p>	<p>“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중로(中路)에서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길이 막막한 상황은 필시 원근(遠近)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청나라 군사가 물러가기를 기다려 일로(一路)의 각참(各站)에 모두 청(廳)을 설치하여 차례로 진구(賑救)하게 하소서.”</p>	<p>困不振之狀，必無遠近之殊。 俟清兵撤退， 一路各站， 竝設廳， 次次賑救。” 上從之。</p>
<p>인조 34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 (崇禎) 10년) 3월 1일 (경자) 1번째기사</p>	<p>황해 감사 홍입(洪瑩)이 배사하니, 소견하였다. 홍입이 아뢰기를, “본도의 산성을 모두 지키지 못하여 비축된 양곡이 조금도 없습니다. 양남(兩南) 지방의 양곡을 옮겨다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주의 산성이 어찌다 무너지게 되었는지 자세히 조사하여 계문하라. 양곡을 옮기는 계획은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조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한형길(韓亨吉)이 나아와 아뢰기를, “도망쳐 돌아오는 사람이 굶주려 도달하지 못하고 대부분 진두(津頭)에서 죽었다고 하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미리 진선(津船)을 준비하였다가 도착하는 대로 즉시 건너게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찌하여 거행하지 못하였는가. 경기 감사에게 물어서 아뢰라. 그리고 진휼청에 그릇이 모자란다고 하여 사용원더러 마련해 주라고 하였는데, 거행하였는가? 역시 신척토록 하라.” 하였다.</p>	<p>黃海監司洪瑩拜辭。 上召見之， 瑩言：“本道山城， 盡皆失守， 少無儲穀。 請移轉兩南之粟， 以賑飢民。” 上曰：“海州山城， 亦何以潰散耶？ 詳查啓聞。 移粟之策， 當令廟堂量處。” 韓亨吉進曰：“逃還之人， 飢不能得達， 多死於津頭云， 誠可矜憐。” 上曰：“預備津船， 使之隨到卽濟， 而今何不能舉行耶？ 問于京畿監司以啓。 且聞賑恤廳器皿缺乏云， 令司饗院覓給矣， 其已舉行耶？ 亦宜申飭。”</p>
<p>인조 34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 (崇禎) 10년) 3월 7일 (병오) 2번째기사</p>	<p>상이 광주 목사(廣州牧使) 허휘(許徽)를 소견하고 이르기를, “산성에 있을 때 한번 인견코자 했었는데 일이 많다 보니 그러지를 못하여 마음 속으로 늘상 한스럽게 여겼다. 본 고을이 병란을 가장 혹심하게 입었는데 근래에 민생이 어떻게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가?” 하니, 허휘가 아뢰기를, “겨우 살아남은 백성이 굶주림에 울고 있습니다. 신이 얼마간 남은 곡식으로</p>	<p>上召見廣州牧使許徽曰：“曾在山城， 欲一引見， 而多事未遑， 心常恨之。 本州被兵最酷， 近來民生， 何以支活耶？” 徽曰：“予遺之民， 飢餒啼泣。 臣以若干餘穀賑救， 而不能周施矣。” 上曰：“三倉所儲米穀幾許？” 徽曰：</p>

	<p>진흙하고 있으나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지는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창(三倉)에 비축해 둔 미곡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허취가 이르기를, “비축해 둔 것이 매우 적습니다. 청컨대 다른 고을로 이송하지 말고 전적으로 본 고을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아된 대로 시행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남한 산성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경의 공로이다.” 하였다. 허취가 배사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 고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 라.” 하였다.</p>	<p>“所儲甚少，請勿移送他邑，專救本州 飢民。”上曰：“依所啓施行。”上又 曰：“南漢之得保，卿之功也。”徽拜 謝。上曰：“本州餘民，限年免稅。”</p>
<p>인조 34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 (崇禎) 10년) 3월 26 일(을축) 2번째기사</p>	<p>비국이 아뢰기를, “김준룡(金俊龍)이 전라 병사로서 비록 패군한 죄는 있으나 광교산(光教山)의 싸움에서 한 차례 대승리를 하였는데 잡아다가 국문하고 유배보내는 것은 억 울할 듯합니다. 연신이 죄를 용서해주라고 청한 것은 실로 공의에서 나온 것 입니다.” 하니, 상이 사면하였다. 또 아뢰기를, “과발군을 배치하여 급보를 역마로 전달하는 것은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위란한 때이겠습니까. 지금 서로(西路)가 잔폐하여 보는 곳마다 상처투성이므로 과발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그 형세 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다만 청(淸)나라 병사가 국경 안에 있는데, 오늘은 어 느 곳에 있고 내일은 어느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 비록</p>	<p>備局啓曰：“金俊龍，以全羅兵使，雖 有潰軍之罪，而光教山之戰，得一大 捷。拿鞫遠流，似涉冤枉。筵臣之請 以宥罪者，實出公議。”上乃赦之。 又啓曰：“排置撥軍，遞傳急報，雖在 平時，固不可忽，況在危亂之日乎？卽 今西路蕩殘，瘡痍溢目，擺撥復設，其 勢誠難。第淸兵方在境上，而今日在 某地，明日向某處，漠然無聞。雖有 意外之事，亦何以知之？請令兩西及咸 鏡監、兵使，知會沿路諸邑，募得健步</p>

	<p>뜻밖의 일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양서(兩西)1400) 와 함경도의 감사·병사로 하여금 연변의 모든 군읍에 공문을 보내어 걸음 잘 걷는 사람 2, 3명을 모집하여 듣고 보는 대로 급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국으로 직송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p> <p>또 아뢰기를,</p> <p>“남한 산성을 수비하던 군병들이 모두 부모와 처자를 잃고 의탁할 곳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풍설 속에서 야영하며 온갖 고생을 겪었는데, 끝내 그들의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찌 더욱 가련하고 민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진휼하여 병들고 굶주려 죽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경기 및 삼남의 감사에게 하유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二三人，隨所聞見，急成報牒，直傳于本局爲當。”上從之。又啓曰：“南漢守堞諸軍，皆失其父母、妻子，栖託無所，飢餓切身。此輩暴露風雪，勤苦萬狀，而終至於不得保其生，則豈非尤可憐愍者哉？今宜另加賑貸，俾無捐瘠。請以此意，下諭于京畿及三南監司。”上從之。</p>
<p>인조 34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 (崇禎) 10년) 윤4월 2일(경자) 1번째기사</p>	<p>비국이 아뢰기를,</p> <p>“속환된 사람이 나올 때 반드시 중도에 굶어죽을 걱정이 있으니, 청북(淸北)에 있는 관항미(管餉米)를 통원보(通遠堡)의 서편에 실어다 두었다가 중도에 서 접제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備局啓曰：“贖還人出來時，必有中路飢死之患。請以管餉米在淸北者，輸置於通遠堡以西中路以濟之。”上從之。</p>
<p>인조 34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 (崇禎) 10년) 윤4월 10일(무신) 1번째기사</p>	<p>헌부가 아뢰기를,</p> <p>“또다시 대란을 겪어 국가의 형세가 위태로운데 천재와 민원이 갈수록 더욱 심하니 구구한 우려가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위로 하늘의 뜻을 돌리고 아래로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 근본은 역시 전하의 성실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는 청나라 병사가 아직 국경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성상의 마음에 슬픔이 서려 있었으므로 경연을 열 겨를이 없었던 것은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북의 군병도 철수하였고 병혁(兵革)의 일도 끝났으니,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지나간 실</p>	<p>憲府啓曰：“新經大亂，國勢杌隉，而天災、民怨，愈往愈甚，區區憂慮，曷有其極？目今所當務，唯在於上回天意，下悅民心，而其本亦不外乎殿下之誠心矣。頃因淸兵尙住域中，且念聖懷茹痛，未遑開筵，勢所然也。今則西北之兵撤矣，兵革之事息矣。請日御經筵，既往之失德、疵政，使之畢陳</p>

덕과 잘못된 정사를 앞에 모두 진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허물을 고치는 일에 혹시라도 인색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정치와 교화도 그 도리를 모두 강구하게 하여 행하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이 하되, 가식은 통렬히 제거하고 애써 성심을 다하여 천심을 바로잡고 민원을 소멸하는 근본으로 삼으소서. 봉수(烽燧)를 설치한 것은 위급함을 통보하기 위한 것인데 전후의 변란에 전혀 통보한 일이 없었고 이번 변란을 겪고 난 후로는 그 죄를 다스리는 일까지도 아울러 폐지하였으니, 일이 매우 한심합니다. 그 당시 해당 군읍의 관리도 검칙을 아니한 죄를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평안·황해·경기의 각 방면 당번 봉수군(烽燧軍)을 해당 도의 감사에게 조사하여 율에 의하여 처치하게 하고, 해당 군읍의 관리도 역시 감사에게 명확히 조사해 엄중히 추궁하여 징계하게 하소서.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고 씨앗과 농경할 소를 분급해 주는 것은 성상께서 백성을 진념하시는 지극한 뜻이므로 수령된 자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서둘러서 때에 맞추어 구제하여야 할 것인데,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만홀히 하고 고르게 하지 않는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에게 특별히 조사하여 삼가지 않는 자를 계문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실히 거행하게 하소서.

힘써 싸워 성첩을 지킨 공로에 대하여 상께서 간절하게 진념해 주시고 살펴서 기록하여 수령을 제수하라고 허락까지 하셨으니, 그 보답함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注擬)할 즈음에 고하와 선후가 반드시 모두 여망에 맞지는 않았으므로 군중의 심정이 매우 우울하여 수군거리는 말이 파다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수령과 첨사·만호를 주의할 즈음에 전공을 우선으로 하고 성첩을 지킨 자는 그 다음으로 하며 경야문(京衙門)의 상당한 직위도 차례로 제수하게 해서, 장사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고생스럽고 슬픈 심정을 풀어주고 또 대의를 일깨워 주는 것이 옛날에 군병대중을 위로하던 도리이니, 지금 친히 임하시어 호쾌하고 포상하는 뜻은

於前，改之母或吝焉。將來之出治、更化，靡不講究其道，行之如不及然，痛除文具，務盡誠心，以爲格天心、消民怨之本。烽燧之設，所以通警急，而前後變亂，漠然無報，今番變亂之後，竝與其治罪而廢之，事極寒心。各其時該邑官吏，亦難免不爲檢飭之罪。請平安、黃海、京畿各面當番烽燧軍，令該道監司查出，依律處置，該邑官吏，亦令監司，明查重究，以爲懲勵之地。賑飢民、分種穀、給耕牛，乃聖上軫念民生之至意也。爲守令者，所當盡心奔走，及時救濟，而列邑守令，多有慢忽、不均之說。請令監司，另加按廉，不謹者啓聞，使之着實舉行。力戰守堞之功，自上軫念之切，省錄之勤，至許以除拜守令，其於酬報，可謂至矣。但注擬之際，高下先後，未必盡合於輿望，用是群情甚鬱，偶語頗多。請令該曹，守令、僉·萬戶注擬之際，戰功爲首，守堞次之，京衙門相當職，亦以次除授，以爲慰悅將士之地。紱勤苦、悲傷之情，而又風之以義者，古之勞軍衆之道也。今此親臨犒賞之意，甚盛也，但其軍校中，

	<p>우 훌륭합니다. 다만 그 군병과 장교 중에는 부모와 처자를 잃은 자가 매우 많은데, 돌아가 그 집을 살펴보면 혹 폐허가 되어 있거나 혹은 사방 벽만 남아 있어서 가까스로 살아 남았으나 의지할 곳조차 없으니, 그 정상이 더욱 가궁합니다. 청컨대 친히 임어하시는 날 별도로 교서를 만들어 하유하시되, 사신(詞臣)에게 찬출하여 아뢰어 행하게 하소서.</p> <p>대란을 겪은 터라 공사간에 모두 텅 비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포(大布)의 옷과 대백(大帛)의 관으로 몸소 먼저 절검하시어 보고 느끼게 할 때입니다. 신이 듣건대 상의원에서 은그릇을 만들어 홍소주(紅燒酒)를 빚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록 어용에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나 하필 은그릇으로 할 것이 있습니까. 상계서 내주방(內酒房)에서 올리는 술을 정지하도록 명하셨으니, 이 무익한 물건을 만드는 것은 더더욱 부당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다시 부수어버리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주방의 은그릇은 소독하기 위한 것이지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니, 굳이 다시 부수어버릴 것은 없다.”</p> <p>하였다.</p>	<p>失其父母、妻子者甚多，歸視其家，或爲荒墟，或餘四壁，萬死之餘，孑孑無依，其爲情事，尤可矜惻。請於親臨之日，別爲教書而諭之，令詞臣撰出稟行。大亂之餘，公私赤立，此正大布之衣，大帛之冠，躬先節儉，以爲觀感之時也。臣竊聞，尙衣院造作銀器，煮紅燒酒云。雖係御用，何必以銀器爲哉？自上命停內酒房進酒，而作此無益之物，尤極不當，雖已造作，請令還毀。”答曰：“依啓。酒房銀器，意在消毒，非爲觀美，不必還毀。”</p>
<p>인조 35권, 15년 (1637 정축 / 명 순정(崇禎) 10년) 6월 11일(무신) 3번째기사</p>	<p>호조가 아뢰기를, “제기 주성청(祭器鑄成廳)의 공문을 보건대, 종묘(宗廟)와 각릉(各陵)의 제기를 만들어 마련해야 할 수요가 매우 많으니, 무슨 재력으로 쉽게 장만하겠습니까. 지금 청나라 군사가 겨우 물러가서 상처받은 것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굶어 죽은 주검이 잇달아서 마음 상하고 보기에 참혹한 것이 이와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조의 계사로 인해 세 조(曹)가 모여 의논하고 있으니 반드시 조치가 있겠습니까마는, 선왕 때를 생각하면 임진년의 병화(兵火)를 겪은 뒤에 제사도 지내지 못하다가 6년이 지난 뒤에 제기를 비로소 만들었으니, 어찌 오늘날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관(禮官)을 시켜 다</p>	<p>戶曹啓曰：“伏見祭器鑄成廳移文，宗廟、各陵祭器，造成磨鍊之數甚多，以何物力，容易辦此乎？目今清兵纔退，瘡痍未起，餓莩相望，傷心慘目，莫此時若也。今因禮曹啓辭，有三曹會議之事，必有所處置，而但念先王朝壬辰兵火之後，祭祀亦未設行，六年而後，祭器始成，豈非今日之所當法者乎？請令禮官，更議稟處。”答曰：“議于大</p>

	<p>시 의논하고 아뢰어서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대신이 아뢰기를, “선왕 때에 어찌 조금이라도 사전(祀典)을 소홀히 여겨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참으로 재력이 못 미쳐서 겨를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제기는 전에 쓰던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자못 많고, 또 준(樽)·뇌(壘) 등은 봄과 가을에 쓰는 것이 각각 다르다 하나 이것은 반드시 크게 엇매일 것 없으니, 지금 잠시 옮겨 쓰고 그 밖의 장만하지 못한 것은 사기(沙器)로 대용하다가 재력이 조금 갖추어지기를 기다려 각별히 더 의논하여 조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의논대로 하라. 깨진 그릇 가운데에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곧 보수하라.” 하였다.</p>	<p>臣。”大臣以爲：“先朝亦豈少忽於祀典而然哉？誠以物力不逮，勢有所未遑故也。今此祭器，前件應用者頗多。且聞樽壘等物，春秋所用各異。此則不必太拘，今姑推移用之，其他未備者，代以沙器，以待物力稍完，另加議處。”答曰：“依議。破器中可以修補者，趁卽爲之。</p>
<p>인조 35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 (崇禎) 10년) 6월 19일(병진) 1번째기사</p>	<p>전라도에 큰비가 내려 집이 무너져서 눌러 죽은 백성이 있었는데, 본도를 시켜 홀전을 거행하게 하였다.</p>	<p>全羅道大雨，壞廬舍，民有壓死者。令本道舉行恤(興)典。</p>
<p>인조 35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 (崇禎) 10년) 6월 23일(경신) 2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각릉(各陵)의 삭망제(朔望祭) 찬품(饌品)을 이미 임시로 줄이기는 하였으나, 그 찬품이 임진년 이후 봉상시(奉常寺)가 써 오던 제식(祭式)과 같지 않으니, 약과(藥果) 네 그릇만 줄어야 하겠습니다. 또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과 인빈(仁嬪)의 사명일(四名日)제사에는 이미 한 그릇을 더하였으니, 숙녕전(肅寧殿)에도 더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p>	<p>禮曹啓曰：“各陵朔望祭，雖已權減，而其饌品，與壬辰後奉常寺行用祭式不同，則宜只減藥果四器。且德興大院君、仁嬪四名日祭，既加一器，則肅寧殿亦不可不加，故敢稟。”答曰：“知道。”</p>
<p>인조 35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p>	<p>유리병과 잔을 구하라고 명하였다. 장차 청나라에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p>	<p>命索得琉璃瓶及杯。將以遺之清國故也。</p>

<p>(崇禎) 10년) 7월 20일(병술) 1번째기사</p>		
<p>인조 35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 (崇禎) 10년) 8월 9일 (갑진) 1번째기사</p>	<p>진휼청이 아뢰기를, “경기 각 고을은 가을보리의 씨가 떨어져, 바로 가을갈이를 당하였는데도 씨를 뿌릴 수 없으니, 본청에 저장한 5백 석을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p>	<p>賑恤廳啓曰：“畿甸各邑，秋麩絕種，正當秋耕，無以播種。以本廳所儲五百石，分送諸邑爲當。”上從之。</p>
<p>인조 35권, 15년 (1637 정축 / 명 승정 (崇禎) 10년) 8월 29일(갑자) 1번째기사</p>	<p>대신과 육경이 아뢰기를, “지난해 봄에 삭선(朔膳)을 특별히 줄인 뒤로 외간에서 모두들 어선(御膳)을 너무 줄인 것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사옹원의 어공물목(御供物目)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각사(各司)가 봉진(封進)하는 건어·채소 밖에는 경영(京營)에서 바치는 생치(生雉) 두 마리와 생선 세 마리뿐이었습니다. 조종조 때에 삭선을 설립한 뜻을 생각하건대, 대개 철과 풍토에 따라 나는 것이 각각 달라서 그곳에서는 흔히 나는 것이지만 경중(京中)에 가져오면 진기한 맛이 되므로 외임(外任) 관원이 각각 그곳에서 나는 것으로 작은 정성을 우러러 표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당연한 정례(情禮)에서 나와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전의 규례대로 다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잠시 일이 안정될 때까지는 간략하게 봉진하여 어주(御廚)를 돕게 하소서. 세자로 말하면 멀리 이역에 있으므로 동쪽·남쪽에서 철 따라 나는 것을 한번도 보내지 못하였으니, 또한 봉진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덕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큰 화를 만났으니, 죽고 다치고 잡혀간 것을 생각하면 음식이 목구멍을 내려가지 않는데, 어찌 차마 내 입과 배를 위하여 남은 백성에게 침탈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신 등이 이 때문에 세 번 아뢰니, 답하기를,</p>	<p>大臣、六卿啓曰：“自上年春，朔膳特減之後，外間皆言，御膳太減之未安。取考司饗院御供物目，則各司封進乾魚、蔬菜之外，只京營所納生雉二首、生鮮三尾而已。竊念祖宗朝設立朔膳之意，蓋以時節、水土之宜，所產各異，而在於本土則爲賤產，致之京中則爲珍味。外任之官，各以其地之產，仰表芹曝之情者，出於臣子情禮之當然，而不容已故也。今雖不能悉復前規，而姑限事定間，使之從略封進，以助御廚。至於世子，遠在異域，東南節產，一不得送，亦不可不封進。”答曰：“因子德薄，民曹大禍。言念死傷、俘擄，食不下咽。安忍爲予口腹，侵及餘民哉？”大臣等以此三啓，答曰：“卿等之請至此，新產之物，一番封進。”</p>

	<p>“경들이 이토록 청하니, 새로 나는 물건은 한 번 봉진하라.” 하였다.</p>	
<p>인조 36권, 16년 (1638 무인 / 명 승정 (崇禎) 11년) 1월 17일(신사) 1번째기사</p>	<p>주강에 《시전(詩傳)》을 강하였다. 강을 마친 뒤에 참찬관 김광옥(金光煜)이 아뢰기를, “정묘년(1442) 이후로 청북(淸北)의 각읍에 원곡(元穀)이 없어 흩어져 떠도는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와 모여 살고자 하나 진구(賑救)해 안집시킬 수가 없습니다. 3현의 둔전에서 나는 곡식이 1년에 거의 1만 석이나 되니, 이것을 나누어 주어 원곡으로 삼게 하면 모곡(耗穀)도 그에 따라 불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령은 이에 힘입어 자본으로 쓸 수 있고, 백성들은 이에 힘입어 다시 돌아와 모일 수 있으며, 군량은 이에 힘입어 부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헤아려 처치하게 하라.” 하였다. 특진관 임광에게 이르기를, “요즈음 임무를 부여받은 신하들이 국사를 심상하게 보고, 마음과 힘을 다해 공효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용렬하여 그런 것인지, 나라에 기율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를 모르겠다. 강도(江都)를 지키지 못한 죄는 이미 군율로 논하였으니, 이 뒤로 병사(兵事)를 주관하는 자들은 마땅히 거울로 삼아 부지런히 힘써야 할 것이다. 어제 이시백이 남한 산성을 수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현저히 있었다. 이미 수여하는 임무를 주었으니, 성패와 화복이 모두 이 성에 달려 있다. 일을 망친 뒤에 누가 그 허물을 지겠는가.” 하니, 임광이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로 내려가 주사(舟師)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무릇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구굉(具宏)과 구인후(具仁厚)가 남쪽의 일을 익히 잘 하는데, 모두 광양(光陽)에 전함을 두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합니다. 지</p>	<p>畫講《詩傳》。講訖，參贊官金光煜曰：“丁卯以後，淸北各邑無元穀，流散之民雖欲還集，本土不能賑救而安集之。三縣屯田之穀，一年幾至萬石，以此分給，儲爲元穀，則耗亦隨贏。守令賴以資用，民生賴以還集，軍餉賴以不乏矣”上曰：“令該曹量處。”謂特進官任統曰：“近來受任之臣，置國事於尋常之域，不肯盡心竭力，以期成效，予未知其人闡葺而然耶，國無紀律而然耶。江都失守之罪，既按軍律，此後主管兵事者，所當鑑戒而勉勵也。昨日李時白顯有不欲修築南漢之意。既授守禦之任，則成敗、禍福，皆係是城。償事之後，誰任其咎乎？”任統曰：“臣當往慶尙道，點視舟師。凡事未可遙度，而具宏、具仁厚熟諳南事，皆以光陽之不置戰船爲不當云。今雖不可猝辦，而防踏鎮之船無格軍，掛置海岸云，以此移給似當”上曰：“卿下去後，詳察以處之。”</p>

	<p>금 비록 갑자기 마련할 수는 없지만, 방답진(防踏鎭)의 배는 격군(格軍)이 없어 바닷가 언덕에 매어 두었다고 하니, 이것을 옮겨다 지급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이 내려간 뒤에 상세히 살펴서 처리하라.” 하였다.</p>	
<p>인조 36권, 16년 (1638 무인 / 명 승정 (崇禎) 11년) 1월 17 일(신사) 3번째기사</p>	<p>경기 감사 김남중(金南重)이 치계하기를, “겨우 살아 남은 백성들이 종자와 식량이 없는 데다 농사지을 소마저 없어 떠돌아다니며 빌어 먹고 있으니, 봄농사를 지을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진흙 청의 곡식을 각 읍에 옮겨 구제해 준다면 곤경에 처해 굶주리는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며, 농사짓는 데에도 힘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p>	<p>京畿監司金南重馳啓曰：“予遺民生，既無種食，又無農牛，流離丐乞，頓無春耕之望。以賑恤廳之穀，移轉各邑，則阻飢之民，庶免顛壑，且得自力於耕種矣。”上從之。</p>
<p>인조 36권, 16년 (1638 무인 / 명 승정 (崇禎) 11년) 2월 14 일(무신) 2번째기사</p>	<p>함경도가 병화를 당한 뒤에 또 흉년을 만나 사망자가 많았다. 감사 목장흠(睦長欽)이 장계를 올려 공물을 헤아려 줄여달라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p>	<p>咸鏡道被兵之後，又值凶歉，多有死亡者。監司睦長欽啓請量減貢物，上從之。</p>
<p>인조 36권, 16년 (1638 무인 / 명 승정 (崇禎) 11년) 4월 14 일(정미) 2번째기사</p>	<p>진흙청에 명하여 경기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조(租) 2천 석을 나누어 지급하고, 수령들로 하여금 몸소 전야(田野)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밭갈고 씨뿌리기를 권면하게 하였다.</p>	<p>命賑恤廳，分給租二千石于畿甸飢民，令守令，躬行田野，勸民耕種。</p>
<p>인조 36권, 16년 (1638 무인 / 명 승정 (崇禎) 11년) 4월 16 일(기유) 1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제주에는 세 읍을 통틀어 검은 소가 단지 세 마리밖에 없고 전생서에도 단지 다섯 마리밖에 없어 앞으로 제향에 이어 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禮)에 ‘흉년에는 하생(下牲)으로 제사한다.’ 하였습니니다. 흉년에도 오히려 예를 감하는데, 하물며 이처럼 소가 다 없어진 때이겠습니까. 임시 방편으로 변통하는 거조가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치하소서.”</p>	<p>禮曹啓曰：“濟州通三邑，黑牛只有三頭，典牲署亦只有五頭，前頭祭享，斷無繼用之路。《禮》曰：‘凶年祭以下牲。’凶年尙且殺禮，況此牛盡之時乎？合有權宜變通之舉，請議大臣處置。”領議政李弘胄、左議政崔鳴吉</p>

	<p>하였다. 영의정 이홍주, 좌의정 최명길의 아뢰기를, “제향에 쓰는 검은 소가 단지 몇 마리만 남았으니, 이러한 때에 밭갈이하는 소를 잡아 제사지내면 혹 조종의 신령께서 내려와 흠향하려 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역(周易)》에 ‘한 통의 술과 두 그릇의 음식을 질그릇에 쓴다.’ 하였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진실로 밝은 믿음이 있으면 시냇가나 연못가에서 자라는 풀이라도 귀신에게 올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선조에게 제향하는 도는 정성에 달린 것이지 물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소 대신 양을 써 예경(禮經)의 밝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양으로 소를 대신하는 것은 지극히 미안하다.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라.”</p> <p>하였다. 대신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교하시니 그만둘 수 없다면 누린 소로 대신하는 것이 양으로 소를 바꾸는 것보다 오히려 낫습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p>	<p>以爲：“祭用黑牛，只餘數頭。當此之時，殺耕牛以祭，則恐或祖宗神靈不肯降歆。《易》曰：‘樽酒簋贰用缶。’《傳》曰：‘苟有明信，澗溪沼沚之毛，可薦於鬼神。’以此言之，享先之道，在誠不在物。代牛以羊，式遵禮經明訓爲當。”答曰：“以羊代牛，殊極未安。更議處置。”大臣以爲：“上教如此，無已則代以黃牛，猶勝於以羊易之。”上從之。</p>
<p>인조 36권, 16년 (1638 무인 / 명 승정 (崇禎) 11년) 5월 5일 (정묘) 1번째기사</p>	<p>헌부가 차자를 올리기를, “지난날 척화론(斥和論)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의논이 동일했고 전하께서도 불끈 노하시어 팔방에 고유(告諭)하였습니다. 만약 국세가 강력하여 적이 침범해 와도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주장은 천하에 빛났을 것입니다. 어찌 문득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겠습니까. 국사를 담당한 사람은 나라를 그르친 죄를 받지 않았는데 논의한 사람만 일을 망친 책임을 뒤집어서 귀양은 먼저 가고 석방은 뒤로 밀렸습니다. 심지어 오달계(吳達濟) 같은 경우는 일을 담당한 신하를 지척(指斥)하여 말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죄를 입고 끝내 이역 만리 타국에서 죽었는데도 증직하거나 치제하지도 않았고 보살피는 은전이 있었다는 말이 들리지 않으니, 이것이 인심이 복종하지 않는 한 가지 일</p>	<p>憲府上筭曰： 往日斥和之議，舉國之所同也。殿下亦嘗赫然發憤，告諭八方矣。若使國勢自強，敵來有以待之，則此論將有光於天下，何遽爲亂亡之媒也？當國者不蒙誤國之罪，而論事者獨被生事之責，譴謫居先，原釋反後。至於吳達濟等，其言只是指斥當事之臣，而橫罹冤酷，竟死異域，贈祭不加，隱恤無聞，此人心不服之一事也。江都死事之臣，志</p>

	<p>입니다.</p> <p>강도(江都)에서 국사에 죽은 신하는 지절(志節)이 훌륭하니, 판탕(板蕩)의 때를 당하여 분의(分義)의 책임을 다한 자는 오직 그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김상용(金尙容)에게 사제(賜祭)의 은전을 내리는 일에 대하여 유독 주저하시며 여러 차례 미안한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윤방(尹昉) 등에 있어서는 죄가 무거운데도 곡진히 변호하시며 오랫동안 공의를 어겨왔습니다. 상벌(賞罰)의 시행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권장이 되고 징계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인심이 복종하지 않는 한 가지 일입니다.</p> <p>지난해 여러 장수들의 죄에 대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위아래가 모두 사정(私情)을 따르느라 해가 지나도록 질질 끌어 마침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무리들로 하여금 목숨을 보전하여 내지(內地)에 옮겨 살게도 하고 다시 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강도의 죄인들 중에 죽은 이가 네 사람인데 원수(元帥)와 제신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벌을 받은 자가 없으니, 여론이 격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김경징(金慶徵)·장신(張紳) 등의 귀신이 또한 지하에서 원통해 할 것입니다. 형벌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니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새로이 대란을 겪으면서 주벌을 백성들의 뜻과 같이 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인심이 복종하지 않는 한 가지 일입니다.</p> <p>예로부터 병가(兵家)의 승부는 오직 장수에게 달려 있는 것이므로 패전한 죄는 군사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패전한 군사에 대해서 이미 포(布)를 거두고 벌방(罰防)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또 듣자니 제도(諸道)의 곤수(閫帥)들이 군기(軍器)를 추징하여 재산이 거덜났으므로 원성이 치솟는다니, 이것이 또 인심이 복종하지 않는 한 가지 일입니다.</p> <p>제궁가(諸宮家)에서 산천(山川)과 해택(海澤)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전토를 많</p>	<p>節可尙，當板蕩之際，盡分義之責者，唯有此耳。殿下乃於金尙容賜祭之典，獨致疑難，多有未安之教。至於尹昉等，則罪累至重，而曲加私護，久拂公議。予奪如此，勸懲何在？此又人心不服之一事也。上年諸帥臣之罪，國人皆言其可殺，而上下循私，經歲依違，終使忘君負國之輩，得保首領，或移內地，或加赦復。江都之罪死者四人，而元帥、諸臣，無一人服法者，無論輿憤之共激，而金慶徵、張紳之鬼，亦且竊議於泉下矣。刑者，天刑，不可以私。殿下新經大亂，不與國人同其誅罰，此又人心不服之一事也。自古兵家勝負，惟係於將，喪敗之罪，不及於軍。國家則不然，今此潰軍，既有徵布罰防之舉。又聞諸道閫帥，追徵軍器，貲產蕩析，怨讟沸騰，此又人心不服之一事也。諸宮家私擅山海，廣占土田，爲民之害久矣。亂後大臣、臺諫及該部，皆以此爲請，殿下非徒不許，又從而諂讓之。在先朝時，諸宮之多，不如今日時事之艱，又非今比，而凡免稅賜給之物，猶有限節。今則諸宮所占，多少任意，罔有紀極，</p>
--	--	---

이 점유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란 후에 대신과 대간 및 해부(該部)에서 모두 그것을 시정하자는 것으로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선조(先朝) 때에는 제궁이 오늘날처럼 많지도 않았고 시사(時事)의 어려움도 지금에 비할 바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면세(免稅)하고 사급(賜給)해 주는 물건에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궁에서 마음대로 점유하는 일이 한이 없는데도 전하께서는 매번 선조 때 하사한 것이라 하여 개혁하기를 어렵게 여기시니, 이것이 또 인심이 복종하지 않는 한 가지 일입니다.

나라에서 믿는 바는 오직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을 나라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 취지가 둘로 나뉘어져서 자상하게 백성의 폐단을 제거하는 자는 도(道)를 어기어 명예를 구한다고 하고, 백성을 각박하게 몰아부쳐 국사를 성사시키는 자는 진심으로 봉공(奉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법(贓法)이 엄격하지 않고 사정(私情)을 쓰는 것이 날로 심해져서 탐오죄를 범해도 법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대간이 탄핵하면 아무리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 낭자해도 항상 그것이 사실이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지방관의 한마디 말로 죽음에 이른 자도 있습니다. 더구나 전하께서는 이목을 환관들에게 의지하고 대각의 신하들을 의심하시니, 이는 후세에 본받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이 또 인심이 복종하지 않는 한 가지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어려운 시기를 만나자마자 갖가지 근심과 치욕을 겪으셨으니, 와신상담하며 스스로 고통을 견디고, 몸소 술선하시어 편안하려는 마음이 가슴 속에 싹트지 않을 것이라 여기었습니다. 그런데 상방(尙方)의 은주기(銀酒器)는 비록 독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것이지만 실로 오늘 같은 때 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근래에 들건대 상방에서 베를 짜는 작업이 점점 많아지고 품질의 정밀 여부에까지도 성상께서 관심을 쏟으신다고 하니, 만일 구천(句踐)과 위문공(衛文公)을 전하의 오늘에 태어나게 한다면 반드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而殿下每以先朝賜與，難於釐革，此又人心不服之一事也。國之所恃者，唯在於民，故謂之邦本。近歲分而二之，以慈祥除弊者，爲違道干譽；以急切就事者，爲盡心奉公。加以贓法不嚴，私情日勝，罪犯貪污，而無一人準法者。且臺諫彈劾，則雖贓賄狼藉，而恒疑其不實，道臣一言，遂有抵死者。況殿下寄耳目於刑餘，而疑臺閣之臣，此不可爲訓於後世。此又人心不服之一事也。殿下纔當屯否，備經憂辱，謂宜薪膽自苦，以身率物，宴安之萌，不存乎中，而尙方銀酒器，雖爲銷毒之用，實非今日所急。近日又聞，尙方織組漸煩，至於製造精粗，亦煩聖慮。如使句踐、衛文，當殿下今日，則必無此事矣。此又人心不服之一事也。凡茲數者，俱係人心向背，固非薄物細故，而又有大焉，朝宗之路，一朝斷絕，曾無一封奏牘，具陳情實。西船之來，累有咨勅，而朝廷終以不受爲成算，復以主張之人當任其責爲教。夫模稜持兩端，不肯當事者，政今日廟堂之患，而殿下更以他日之禍恤之，若人蘄苟免，各私其身，國家大事，任其成敗，

	<p>것입니다. 이것이 또 인심이 복중하지 않는 한 가지 일입니다.</p> <p>위의 몇 가지는 모두 인심의 향배와 관계되는 것이니 실로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보다 커다란 문제가 있으니, 중국과의 길이 하루아침에 단절되어 일찍이 한 통의 주독(奏牘)을 올려 실정을 갖추어 아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오는 배가 누차 자칙(咨勅)을 가져오자, 조정에서는 끝내 받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의논을 주장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애매하게 양단(兩端)을 견지하면서 일을 담당하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묘당의 병폐인데, 전하께서는 다시 후일의 화로 겁을 주시니 만약 사람마다 구차히 모면하기만을 바라고 각기 제 한몸 보전할 것만 생각하여 국가의 대사는 되는 대로 맡겨둔다면 이것이 어찌 조정에 이로운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마땅히 애타게 정성을 다하는 실정으로 인정을 감동시켜야지 직접적으로 통제를 가하시어 거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p> <p>하였는데, 답하기를,</p> <p>“경들의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차자에 진술한 일들은 마땅히 유념하여 시행하겠다.”</p> <p>하고, 이어 하교하기를,</p> <p>“약방(藥房)의 주기(酒器)는 비록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해도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특별히 부수어버리게 하여 나의 과실 한 가지를 없애도록 하라.”</p> <p>하였다. 내의원 도제조(內醫院都提調)가 아뢰기를,</p> <p>“주방(酒房)에서 사용하는 은술은 조종조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것입니다. 병자 호란 때 파괴되어 쓸 수가 없었으므로 환도(還都)한 후에 상방으로 하여금 다시 만들게 한 것이니, 이는 옛것을 다시 만든 데 불과합니다. 헌부의 차자 중에 지적한 것은 필시 범범히 듣고서 한 말일텐데, 성상께서 특명으로 부</p>	<p>則豈是朝廷之利哉? 殿下當以惻怛之實, 感動人情, 不宜直加箝勒, 重拂群心也。</p> <p>答曰: “深嘉卿等憂愛之誠。 筭陳之事, 當體念而採用焉。” 仍下教曰: “藥房酒器, 雖無觀美之事, 人言如此, 特令碎破, 以除予一失。” 內醫院都提調啓曰: “酒房之用銀鍋, 乃祖宗朝流來舊物也。 丙子之亂, 破不可用, 還都後, 令尙方改造, 此不過重新舊物也。 憲府筭中所陳必出於泛聞, 而聖上之特命撞破者, 實是從諫之美意。 但紅燒酒, 不用銀鍋, 則不成色、味。 試令銅鍋煮之, 則果不堪進御。 燒酒所以驅濕, 銀鍋所以銷毒, 非爲玩好之物, 而重新舊物, 又非創造之比。 破已成之器, 而後若改造新鍋, 則事未妥當。 茲敢仰稟” 上不許。</p>
--	--	--

	<p>수어 버리도록 한 것은 실로 간언을 따르는 아름다운 뜻이기는 합니다. 다만 흥</p> <p>소주(紅麴酒)는 은술을 쓰지 않으면 색깔과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시험 삼아 구리술으로 끓여 보게 했더니 과연 진어할 수 없었습니다. 소주는 습기를 몰아내는 것이고 은술은 독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완호(玩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옛것을 다시 만든 것이니 새로 만든 것과는 다릅니다. 이미 만든 그릇을 부수어버리고 뒤에 다시 새술을 만든다면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감히 아뢰입니다.”</p> <p>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p>	
<p>인조 36권, 16년 (1638 무인 / 명 승정 (崇禎) 11년) 5월 7일 (기사) 1번째기사</p>	<p>이에 앞서 양사가 제향(祭享)에 말린 꿩으로 중포(中脯)를 대신하자고 계청하여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었는데, 최명길(崔鳴吉)이 아뢰기를,</p> <p>“꿩으로 소를 대신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 될 듯하니 노루·사슴·돼지 세 가지를 그때그때 있는 대로 취하여 중포를 만들어 쓰자고 청하자, 상께서 돼지포를 쓰기는 미안하다 하여 노루와 사슴만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듣자니 노루와 사슴은 비록 토산(土產)이라 해도 실로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얻기가 쉽지 않으면 형세상 불결한 것과 섞어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p> <p>신이 삼가 《주례(周禮)》를 살펴보니 ‘금수(禽獸)를 사용하는 데 있어 봄에는 새끼 양과 돼지 고기에 소기름[膏香]을 쓰고, 여름에는 말린 꿩[胹]과 말린 생선[鱸]에 개기름[膏臊]을 쓰고, 가을에는 송아지와 어린 사슴에 닭기름[膏腥]을 쓰고, 겨울에는 생선과 기러기[羽]에 양기름[膏羶]을 쓴다.’ 하였고, 그 주석에 ‘거(胹)는 말린 꿩이고, 속(鱸)은 말린 생선이고, 조(臊)는 개기름이고, 우(羽)는 기러기이다. 이는 사시(四時)의 물종이 각각 왕성하고 쇠약한 기운이 있으므로 같이 사용하여 서로 섞어서 왕의 반찬에 쓰고 인하여 제수에 쓰는 것인데, 각각 그 뜻이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p>	<p>先是，兩司請於祭享以乾雉代中脯，上命議于大臣。左議政崔鳴吉以爲：“以雉代牛，恐涉未安。請以獐、鹿、豕三物，隨所有作爲中脯，而自上以豕脯爲未安，使之只用獐、鹿。厥後聞之，獐、鹿雖曰土產，其實得之不易。既不易得，則其雜以不潔之物，勢所難免。臣竊考《周禮》，有曰：‘凡用禽獸，春行羔·豚，膳膏香；夏行胹·鱸，膳膏臊；秋行犢·麋，膳膏腥；冬行鱉·羽，膳膏羶。’註云：‘胹，乾雉；鱸，乾魚；臊，犬膏；羽，雁也。此乃四時之物，各有休相之氣，故竝用相和，以爲共王之膳，因爲祭祀之需者，各有其義。’云。臣自見此文，始知祭之用乾雉自有古禮。而臣學術蒙昧，前收</p>

	<p>신이 이 글을 보고 비로소 제사에 말린 꿩을 쓰는 것이 본디부터 고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신의 학술이 형편없어 전에 수의(收議)할 때 망령되게 소신의 의견을 주장하여 양사의 많은 관원들의 청을 반대하였으니 매우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의한 일이라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큼니다.</p> <p>대개 《주례》에는 춘추에 공진하는 바가 각각 다르니 사시에 모두 말린 꿩과 말린 생선을 쓴 것은 아니나 말린 꿩을 제수(祭需)에 쓴 것은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나라가 천고에 없는 변란을 당하여 우포(牛脯)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소를 이미 얻을 수 없고 노루와 사슴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잡물을 섞어 쓰게 되는 폐단을 끝내 막을 수 없습니다. 위로 주공(周公)이 예(禮)를 제정한 본 뜻을 근거하고 아래로 양사가 탐전(榻前)에서 청한 바를 채택하여 우선 소가 번식할 때까지 말린 꿩으로 대신하되, 지금 해시(該寺)에 저축된 중포(中脯)는 이미 불결하다는 말이 있으니 그대로 제향에 쓸 수 없고 내년의 공물을 금년에 미리 받을 수도 없으니, 우선 해조로 하여금 노루와 사슴을 무역하게 하여 포(脯)를 만들어 요즈음 소용되는 데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여염의 제사에는 모두 포를 사용하는데 종묘 사직에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다. 부득이하다면 노루와 사슴으로 조포(條脯)를 만들어 대용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끝에 계품한 것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p>	<p>議時，妄以己見，寢兩司多官之請，私切悔責，而業已建白，不敢更有所請，臣罪大矣。大概《周禮》，則春秋所供各異，非四時俱用脍鱸，而乾雉之用於祭需者，其來久矣。矧今國家遭千古所無之變，欲用牛脯，則牛既不可得，欲用獐、鹿，則混用雜肉之弊，終不可防。上據周公制禮之本意，下採兩司榻前之所請，姑限牛畜孳息間，代用乾雉，而即今該寺所儲中脯，既有不潔之言，則不可仍用於祭享。明年貢物，又不可引納於今年，姑令該曹，質得獐、鹿作脯，以爲近日之用，恐或得宜。” 答曰：“閭家祭祀，舉皆用脯，而獨於廟社，闕而不用，殊極未安。無已則以獐、鹿，作爲條脯，代用爲當。末端啓稟事，依議施行。”</p>
<p>인조 36권, 16년 (1638 무인 / 명 송정(崇禎) 11년) 5월 10일(임신) 1번째기사</p>	<p>이에 앞서 연신(筵臣)이 아뢰기를, “근래 제향에 쓰는 사슴 육장과 토끼 육장 등이 모두 정결하지 못하여 악취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주례》를 상고해 보니, 제사에 쓰는 육장에는 방합[麤]·고둥[羸]·개미알[蝼] 등이 있다고 했는데, 주석에 썩조개[蚌蛤]·소라고둥[螺蚶]이라 했으니</p>	<p>先是，筵臣啓曰：“近來祭享所用鹿醢、兔醢等物，皆不精潔，多有惡臭，人不敢近，事極未安。嘗考《周禮》，祭醢有麤、羸、蝼之物，注以爲蚌蛤螺蚶云，即今生蛤、小螺、白蝦等物也。</p>

	<p>바로 오늘날의 생합(生蛤)·소라(小螺)·백하(白蝦) 등입니다. 《예기(禮記)》에 ‘곤충의 기이한 것과 초목의 열매는 음양(陰陽)의 뜻을 갖추는 것이다.’ 했으니, 지금 고례에 따라 생합·소라·백하 등의 육장을 대신 써서 악취가 나는 사슴 육장과 토끼 육장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제(喪制)는 선조(先祖)의 것을 따라야지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불결한 것을 써서도 안 되니 예조에 말하라.”</p> <p>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토끼 육장은 여름에는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神明(神明)께 올리는 것은 실로 미안하기 그지없으나 이미 《오례의(五禮儀)》 제식(祭式)에 분명히 실려 있으니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짓을 담글 때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반드시 악취가 나거나 맛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신이 진달한 것도 일리가 있는 듯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소서.”</p> <p>하였다. 좌의정 최명길(崔鳴吉)이, 제향에 관한 것을 변통하는 것은 막중한 일이니 영상이 출사하고 우상이 돌아온 뒤에 회의하여 결정하자고 하니, 상이 따랐다.</p>	<p>《禮記》：‘昆蟲之異、草木之實，以備陰陽之義。’云。今依古禮，代用螺、蛤、白蝦等醢，除鹿、兔臭惡之物何如？”上曰：“喪制從先祖，不宜改易，而不潔之物，亦不可用，言于禮曹。”禮曹啓曰：“兔醢，夏節則臭惡不敢近。以人所不敢近者，薦之於神明，誠極未安，而既已昭載於《五禮儀》祭式，則代以他物，似未妥當。沈醢時，着鹽適宜，則必無臭味之變，而筵臣陳達，亦似有見，請議大臣處之。”左議政崔鳴吉以爲：“祭享變通，乃莫重之事。請待領相出仕，右相回來，會議以定。”上從之。</p>
<p>인조 37권, 16년 (1638 무인 / 명 순정(崇禎) 11년) 8월 26일(병진) 2번째기사</p>	<p>주강(周綱)에 《시전(詩傳)》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동지경연(東地敬演)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주례(周禮)》에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12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세금을 탕감하는 것이고 하나는 길례(吉禮)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로 말하면 사재감(司宰監)의 말린 돼지 고기는 또한 큰 폐단이 되니, 해조로 하여금 임시로 삭감토록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p> <p>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이에 의하여 시행하라.”</p> <p>하였다.</p>	<p>晝講《詩傳》。講訖，同知經筵李景奭曰：“《周禮》有十二荒政恤民之舉，一則曰薄征，一則曰省禮。以當今之事言之，司宰監乾豬，亦爲巨弊，令該曹權減宜當。”上曰：“卿言是矣。依此施行。”</p>

<p>인조 37권, 16년 (1638 무인 / 명 승정 (崇禎) 11년) 10월 17 일(병오) 2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왕비를 책봉(冊封)한 후에 백관들이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하면 지방 특산물과 선물도 봉해 올려야 하는데, 지금 상께서 특별히 국가가 쇠잔함을 생각하여 삼명일(三名日)1489)에 지방 특산물과 선물을 모두 삭감하게 하였으니, 위를 덜어 아래 백성을 구제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국모(國母)가 새로 책명(冊名)을 받는데 신하가 위에 진상하는 예가 없을 수 없으니, 지방 특산물과 선물은 예전대로 봉해 올리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니, 선물만 올리라고 답하였다.</p>	<p>禮曹啓曰：“冊妃後百官進箋陳賀，則方物、物膳，亦當封進，而目今自上特念殘敗，三名日方物、物膳，盡皆剋減，其損上恤民之意至矣。但念國母新受冊命，臣子不可無享上之禮，方物、物膳，依前封進爲當。” 答曰：“只獻物膳。”</p>
<p>인조 37권, 16년 (1638 무인 / 명 승정 (崇禎) 11년) 10월 18 일(정미) 3번째기사</p>	<p>가례 도감이 아뢰기를, “금(金)그릇과 은(銀)그릇을 특별히 감한 숫자가 이미 적지 않은데, 지금 연신(筵臣)이 아뢰어 바로 인하여 또 감하게 하였습니다. 동뢰(同牢)에 사용할 그릇은 다 감할 수 없으니, 다만 은병(銀瓶) 등 물건을 놋쇠로 대신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p>	<p>嘉禮都監啓曰：“金銀器皿特減之數，既已不少，今因筵臣所啓，又令量減，而同牢所用之器，不可悉減，只將銀瓶等物，代以鑪鐵爲當。” 從之。</p>
<p>인조 38권, 17년 (1639 기묘 / 명 승정 (崇禎) 12년) 3월 4일 (신유) 1번째기사</p>	<p>상이 정원에 묻기를, “근일 진휼을 받은 굶주린 백성이 몇 사람인가?” 하니, 회계하기를, “진휼청에 물어보았더니, 날마다 죽을 먹인 사람의 수효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대장을 만들어 표를 준 자는 5백 15인이라 합니다.” 하였다.</p>	<p>上問于政院曰：“近日飢民之受賑者，幾人耶？” 回啓曰：“問于賑恤廳，則逐日饋粥之數，或多或少，而其成冊給標者，則五百十五人云。”</p>
<p>인조 38권, 17년 (1639 기묘 / 명 승정 (崇禎) 12년) 3월 25 일(임오) 1번째기사</p>	<p>조강에 《시전》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영사 최명길(崔鳴吉)이 나아가 아뢰기를, “의논하는 자들이 대부분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사정을 탐문하고, 또 병자년의 일을 조용히 바로 말하여 그들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엄만 손상할 따름이지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p>	<p>朝講《詩傳》。講訖，領事崔鳴吉進曰：“議者多言：‘遣使日本，探聽事情，且以丙子事，從容直陳，以觀其意爲當。’云矣。” 上曰：“損威而已，何益之有？” 鳴吉曰：“臣欲薦尹兼善、許徽，授以大任。徽才可任刑曹、漢城</p>

	<p>하였다. 최명길(崔鳴吉)이 아뢰기를, “신이 윤겸선(尹兼善)·허휘(許徽)를 천거하여 대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허휘는 재간(才幹)이 형조(刑曹)나 한성부(漢城府)의 당상(堂上)에 임명할 만하고, 윤겸선은 판결사(判決司)나 병조(兵曹) 참의(參議)에 임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이경석(李敬碩)·이시백(李時白)이 번갈아가며 천거하고 칭찬하며 말하기를, “강명(剛明)하고 재간(才幹)이 있기로는 윤겸선(尹兼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찍이 죄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인 일 때문에 비난을 받기는 하였으나, 경야문(京衙門)에 있으면 반드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최명길(崔鳴吉)이 또 황해도(黃海道) 도사(都使) 강유(姜瑜)가 병조(兵曹)의 낭관(낭官)이 될 만하다고 천거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강유(姜瑜)는 전에 속인(屬人) 일이 있었으므로 쓰지 않았을 뿐이다.” 하였다. 또 전진주(晉州) 판관(判官) 조공숙(趙公淑)은 그 재능(才器)이 감사가 될 만하고, 전황주(黃州) 판관(判官) 이기발(李起浚)도 용렬(用劣)한 무리(무리)가 아니어서 재능(才器)이 쓸 만하다고 천거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조공숙(趙公淑)은 역모(逆謀)를 알고서도 고발(告發)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버렸던 것이고, 이기발(李起浚)은 처사(處事)가 오활(誤活)하다.” 하였다. 최명길(崔鳴吉)이 또 아뢰기를, “병자년(丙子年)에 일을 논한 여러 신하(臣下)들은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지금 풀어 주어 제주(濟州)와 기량(奇良)에 따라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이들은 나라의 존망(存亡)은 도외(道外)시하고 명예(名譽)만을 차지(차지)하려 하였으며, 같은 무리(무리)끼리는 감싸고 다른 무리(무리)는 배격(排擊)하여 나라가 망하게 하였으니, 매우 가증스럽다. 것처럼 경박(輕薄)한 무리(무리)를 쓴들 무슨 도움(도움)이 되겠는가.” 하였다. 상(上)이 조용히 묻기를,</p>	<p>府堂上， 兼善宜任判決事、兵曹參議矣。” 李景奭、李時白交口薦譽曰：“剛明幹局，無如兼善者。雖嘗以濫殺見非，而在京衙門，則必不然矣。” 鳴吉又薦黃海都事姜瑜， 可爲兵曹郎官， 上曰：“瑜前有欺罔之事，故不用耳。” 又薦前晉州判官趙公淑， 其才可爲監司；前黃州判官李起浚，亦非庸流，其才可用， 上曰：“公淑知逆謀不告，故棄之。起浚則處事迂闊矣。” 鳴吉又曰：“丙子年論事諸臣，日月已久，今可伸釋，隨其才器，而用之何如？” 上曰：“此輩以國之存亡，置之度外，謀占美名，黨同伐異，竟使宗國覆沒，甚可惡也。如許浮薄輩用之何益？” 上從容問曰：“卽今民間餓死者多乎？” 鳴吉對曰：“餓死者間或有之，而今年則無興兵之事，故民得作農矣。” 景奭曰：“自上特問餓死者，憂民之意至矣。臣請以所聞見陳之。臣聞有一婦人獨居，飢餓濱死之日，以悲痛之辭，書諸壁上而自絕云。且龍宮等地行商，過一兩班家，納其飯米，則久不炊給，商人訪其食，答云：‘飢餒已久，兒輩爭取其飯，不忍禁奪，已盡之’</p>
--	---	--

	<p>“지금 민간에서 굶어 죽은 자가 많은가?” 하니, 최명길이 답하기를, “굶어 죽은 자가 간혹 있으나 금년에는 군사를 출동한 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고, 이경석이 아뢰기를, “위에서 굶어 죽은 자를 특별히 물으시니 백성을 근심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신이 듣고 본 바로써 진달하겠습니다. 신이 들으니, 어떤 부인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굶어서 죽게 되던 날 비통한 말을 벽에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궁(龍宮) 등지의 행상(行商)이 한 양반의 집에 들러 밥 지을 쌀을 주었는데, 시간이 오래되어도 밥을 지어 주지 않으므로 상인이 그 밥을 달라고 하였더니, 답하기를 ‘굶은 지가 오래되어 아이들이 앞을 다투어 밥을 가져가는데 차마 빼앗지 못해서 이미 다 없어졌다.’ 하고, 옷으로 보상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인이 불쌍히 여겨 받지 않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 상인이 그 마을에 다시 가서 물어 보았더니, 이미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령이 그 녹봉으로 온 경내의 백성을 두루 구제할 수는 없으나, 이처럼 호소할 데가 없는 무리가 그 지방에서 굶어 죽는 데도 듣고 보면서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수령된 자가 몹시 통한스럽습니다. 사족이 감히 문을 나가 빌어먹을 수 없어서 이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부인으로서 굶주리는 자에게는 건량(乾糧)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몹시 놀랍고 참혹하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치하게 하라.” 하였다.</p>	<p>矣.’ 請以衣裙償之，商人憐而不受，分與其糧而去。厥後其商人還至其村問之，則已餓死云。太守以其所俸，雖不能遍救一境之民，如此無告之類，餓死於其地，而不能聞見濟活，爲守令者，殊可痛也。士族不敢出門行乞，以至於此，誠可矜惻。婦人飢餒者，則宜以乾糧分給。” 上曰：“誠極驚慘。令本道監司，查覈處置。”</p>
<p>인조 38권, 17년 (1639 기묘 / 명 승정)</p>	<p>내주방(內酒房)에서 관례대로 일용의 향온(香醞)을 올리니, 상이 한채를 이유로 올리지 말라고 명하였다.</p>	<p>內酒房例進日用香醞，上以旱災，命勿進。</p>

(崇禎) 12년) 5월 11일(정묘) 1번째기사		
인조 39권, 17년 (1639 기묘 / 명 승정 (崇禎) 12년) 7월 3일 (무오) 1번째기사	상이 남별궁(南別宮)에서 청나라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장(馬將)이 말하기를, “도망해 돌아온 사람 및 귀화한 사람을 쇄송(刷送)하는 일에 대해서 만일 신칙(申飭)하지 않으면 세월이 점차 흘러 저절로 지체될 것이니, 우리들도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국이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있지만, 수색해 잡기가 쉽지 않으니 그저 부끄럽고 두려움만 더할 뿐이오.” 하였다. 드디어 술을 돌려 오랜 시간 마시고 나서 끝냈다.	上宴清使于南別宮。馬將曰：“逃還人及向化刷送事，若不申飭，則歲月漸久，自底遲滯，俺等亦以爲慮。”上曰：“本國於此事，非不盡心，而搜捕未易，愧懼徒深耳。”遂行酒良久而罷。
인조 39권, 17년 (1639 기묘 / 명 승정 (崇禎) 12년) 7월 5일 (경신) 2번째기사	상이 남별궁(南別宮)에 거동하여 상마연(上馬宴)을 베풀었는데, 마장이 또 쇄환에 관한 일을 말하자, 상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일일이 거행하게 하겠다고 답하고, 이어서 술을 마시고 끝냈다.	上幸南別宮，設上馬宴。馬將又以刷還事爲言，上答以當令廟堂，一一舉行，仍行酒而罷。
인조 41권, 18년 (1640 경진 / 명 승정 (崇禎) 13년) 7월 4일 (계미) 1번째기사	내주방(內酒房)의 주미(酒米)를 감하였다.	減內酒房酒米。
인조 42권, 19년 (1641 신사 / 명 승정 (崇禎) 14년) 2월 3일 (무신) 1번째기사	상이 하교하였다. “자주 병란과 흉년이 잇따라 굶어 죽는 자가 즐비하다. 이는 내가 부덕한 때 문이니, 이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그지없다. 불쌍한 우리 백성 중에 늙고 병든 자는 더욱 구휼해야 할 것이니, 경외의 남녀 가운데 나이 80 이상인 자와 중병을 앓는 자에게 등급을 나눠 미곡을 지급하여 위급함을 구제토록 하라.”	上下教曰：“兵荒荐仍，餓殍相望。由予不德，言念及此，慙懼交極。哀我民老病者，尤宜隱恤，京外男婦年八十以上及篤疾者，分等給米，以周其急。”
인조 42권, 19년	경기 감사 박로가 치계하기를,	京畿監司朴斗馳啓曰：“漁箭之罷，出

<p>(1641 신사 / 명 승정 (崇禎) 14년) 3월 5일 (경진) 1번째기사</p>	<p>“어전(漁箭)의 혁파는 대간의 계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선(物膳)의 봉진은 어공(御供)의 중요한 일인데, 오로지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라면 연해의 고을에 분정(分定)할 수 없고, 대가를 주어 무역하여 올리게 한다면 이는 날마다 으레 봉진하던 규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영주인(營主人)들이 선혜청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으려 하면서 잇따라 모두 도피하여 흩어졌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p> <p>하였는데, 비국이 아뢰기를,</p> <p>“간관이 어전의 정지를 청한 것은 대체로 안산(安山)의 전결(田結)이 많지 않음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군(本郡)은 이미 어전을 설치할 곳에 얼음을 저장하였고 어전 설치의 도구도 모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혜청으로 하여금 본군에서 응당 상납해야 할 미곡 3백 10석을 덜어 지급하게 하여 어전의 설치와 태가(駄價)의 비용으로 삼게 하고, 서울의 영주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지 말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이미 혁파하였다가 곧 다시 설치하는 것은 아이들 장난 같을 뿐만 아니라 사체에도 구차스러울 듯하니, 시행하지 말라.”</p> <p>하였다.</p>	<p>於臺諫之啓。物膳之封，係是御供之重，專爲除弊，則又不可分定於沿海之官，給價貿進，則此不過逐日例封之規。今者營主人等，不肯受價於宣惠廳，仍皆逃散，莫知所爲云。”備局以爲：“諫官之請停漁箭者，蓋慮安山田結不多故也，而本郡既已藏氷於設箭之地，設箭之具，亦皆預備。令宣惠廳除給本郡米當上納者三百一十石，以爲設箭及駄價之用，而不令專責於京營主人爲當。”答曰：“既罷旋設，不但有同兒戲，其於事體，亦涉褻慢，勿施。”</p>
<p>인조 42권, 19년 (1641 신사 / 명 승정 (崇禎) 14년) 4월 29일(갑술) 2번째기사</p>	<p>호조 좌랑 이목(李穆)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p> <p>“신이 삼가 듣건대 비국이 대대적으로 사면하여 비를 오게 하려고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신이 망령되어 생각해 보건대, 이번의 큰 가뭄이 어찌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이 부른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엉뚱하게 사면하여 도리어 소인들의 복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건의 쇄환은 저들의 험박에 의한 것이어서 진실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들의 부모 처자의 경우는 잡역을 감해 주고 별도로 구휼해 주어 성상께서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이시면, 또한 비를 비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칠국</p>	<p>戶曹佐郎李穆上疏，略曰： 臣伏聞，備局欲以大赦而得雨。臣之妄料則今茲大旱，豈負罪罔赦之所召，而乃欲曲行恩貸，反爲小人之福乎？三件刷還，出於脅迫，誠無可奈何，而其有父母妻子者，則蠲減雜役，另加賑恤，以示聖上常抱惻怛之念，亦禱雨之</p>

	<p>(七局) 출신(出身)과 각청(各廳) 군관이 한달에 받는 늪료가 9백여 석에 이르니, 모두 적당히 줄여 구휼의 비용에 보충케 하소서.”</p> <p>하니, 상이 가납(嘉納)하고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p> <p>“쇄환되는 자들의 부모 처자에게 잡역을 감해 주는 일은 의당 상소의 내용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칠국과 군관의 늪료를 감하는 일은 경솔히 의논하기가 곤란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아된 대로 하라. 군관의 늪료도 적당히 감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一助也。 七局出身、各廳軍官一朔受料，幾九百餘石，竝宜量減，以補賑救之用。</p> <p>上嘉納之， 令備局議處。 備局以爲：“刷還人父母、妻子蠲役事， 當一依疏辭施行， 而七局及軍官減料事， 有難輕議。” 答曰：“依啓。 軍官料， 亦量減。”</p>
<p>인조 42권, 19년 (1641 신사 / 명 승정 (崇禎) 14년) 11월 25일(정유) 2번째기사</p>	<p>소 1백 69마리를 가지고 해주(海州)의 식량을 금주(錦州)의 전쟁터로 실어보냈다.</p>	<p>以牛一百六十九頭， 馱運海州糧于錦州戰所。</p>
<p>인조 42권, 19년 (1641 신사 / 명 승정 (崇禎) 14년) 12월 16일(정사) 1번째기사</p>	<p>청역(淸譯) 변란(卞蘭) 등 세 사람이 청주(淸主)의 명이라고 하면서 대어(大魚) 2마리와 소주(燒酒) 2병을 가지고 의주로 와서 전달하였다.</p>	<p>淸譯卞蘭等三人， 稱其主之命， 持大魚二箇及燒酒二壺， 來傳于義州。</p>
<p>인조 43권, 20년 (1642 임오 / 명 승정 (崇禎) 15년) 1월 17일(정해) 1번째기사</p>	<p>선혜청(宣惠廳)이 춘등(春等)으로 받는 쌀을 특별히 두 말을 감하여 조정이 한푼의 혜택이라도 베푸는 뜻을 보일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宣惠廳請於春等收米特減二斗， 以示朝廷一分之惠， 從之。</p>
<p>인조 43권, 20년 (1642 임오 / 명 승정 (崇禎) 15년) 4월 8일(정미) 2번째기사</p>	<p>전라도 순천부(順天府)에 사는 백성이 한번에 세 명의 사내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상이 쌀을 하사할 것을 명하였다.</p>	<p>全羅道順天府居民， 一產三男， 上命賜米。</p>

<p>인조 43권, 20년 (1642 임오 / 명 승정 (崇禎) 15년) 4월 16 일(을묘) 1번째기사</p>	<p>상이 하교하기를, “빈민으로서 재력이 없어 쌀을 바꿀까지 못하는 자에 대해 쌀과 콩을 나누어 주라는 하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누어 준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니, 호조가 회계하기를, “도성 백성의 수효는 1만 3천 33호이며 그중에 쌀을 바꿀까간 백성은 6천 2백 2호이고 그 나머지 부민(富民) 이외에 쌀을 사지 못한 자는 거의 6천 호에 이르는데, 이들에게 각각 쌀 5승(升)과 콩 2승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였다.</p>	<p>上下敎曰：“貧民之無價不能買米者，曾有分給米、菽之敎，其分給者幾人？” 戶曹回啓曰：“都民之數，一萬三千三十三戶，而買米之民，六千二百二戶，其餘富民外不得買米者，幾至六千戶，各給米五升、菽二升矣。”</p>
<p>인조 43권, 20년 (1642 임오 / 명 승정 (崇禎) 15년) 5월 13 일(신사) 1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가뭄이 너무 심한데다 서리가 또 자주 내리는데, 양서(兩西)가 한층 더 심각하니, 참으로 매우 염려스럽다.” 하고, 또 이시백(李時白)에게 이르기를, “진휼청의 기민(飢民)은 몇 명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죽을 먹는 자가 1천여 인인데, 그중에는 사대부도 끼여 있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기민을 구제하는 방도가 이제 상당히 내실이 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홍무적(洪茂績)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료를 접견하시는 일이 요즈음은 더 드무니, 옥체가 아직 쾌차하지 못하여 그런 것은 아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고르지 못한 소치이긴 하나 승지의 말은 사실이다.”</p>	<p>上引見大臣及備局堂上，謂之曰：“旱既太甚，霜降又數，而兩西尤酷，誠極可慮。”又謂李時白曰：“賑恤聽飢民幾人？”對曰：“食粥者千餘人，其中亦有士夫之就食者，誠可矜也。”上曰：“救饑之道，今頗着實，予甚嘉之。”參贊官洪茂績進曰：“接見臣僚，比來尤罕，未知玉體尙有所患而然乎。”上曰：“雖緣氣候不調之致，承旨之言則是矣。”工曹判書尹暉曰：“贈諡之典，自古有之，而至於高敬命、李舜臣、趙憲，尙未蒙贈諡，是誠欠典也。”上曰：“令禮曹稟處。”</p>

	<p>하였다. 공조 판서 윤휘(尹暉)가 아뢰기를, “증시(贈諡)하는 전례(典禮)는 예로부터 있는 것인데, 고경명(高敬命)·이순신(李舜臣)·조헌(趙憲) 등은 아직도 증시를 받지 못했으니, 이는 진실로 흠전(欠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조로 하여금 품의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p>	
<p>인조 43권, 20년 (1642 임오 / 명 승정(崇禎) 15년) 5월 23일(신묘) 1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청인(淸人)이 매우 다급하게 쌀을 요구하니 이상한 듯하다.” 하니, 영의정 이성구가 아뢰기를, “그쪽에 흉년이 지난해보다 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쌀을 재촉하는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경증(李景曾)에게 묻기를, “기민(飢民)의 수효는 지금 얼마나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대략 1천 4백여 인인데 과부(寡婦)로서 정장(呈狀)하고 식량을 받은 자도 수백 인이고 활인서에서 병든 사람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어 구제한 수효도 5백~6백 인이 됩니다.” 하였다.</p>	<p>上引見大臣及備局堂上，謂之曰：“淸人索米甚急，似乎異常矣。”領議政李聖求曰：“曾聞彼中失稔，甚於前年云，其所以趣之者，或以此也。”上問於李景曾曰：“飢民之數，今則幾何？”對曰：“大概一千四百餘人，而寡婦呈狀而受之者，亦數百人。活人署之分賑病人者，且五六百人矣。”</p>
<p>인조 44권, 21년 (1643 계미 / 명 승정(崇禎) 16년) 4월 2일(을축) 1번째기사</p>	<p>경기의 굶주린 백성이 진흙하는 조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와서 소청한 자가 1천 명을 헤아렸는데, 본청에 명하여 쌀을 나누어 주어 구제하게 하였다.</p>	<p>畿內飢民間有賑恤之舉，來訴者以千數，命本廳以米分賑。</p>
<p>인조 44권, 21년 (1643 계미 / 명 승정(崇禎) 16년) 4월 21</p>	<p>진흙청이 아뢰기를, “현재 동활인서(東活人署)의 환자가 4백 83인이고 서활인서의 환자가 5백 69인으로 도합 1천 52인이며, 여염(閭閻)에서는 전염병이 날이 갈수록 성하여</p>	<p>賑恤廳啓曰：“卽今東活人署病人四百八十三人，西活人署病人五百六十九人，合一千五十二人，而閭閻癘患，日</p>

<p>일(갑신) 1번째기사</p>	<p>사람이 없는 곳에 환자를 내다 두는데 죽은 자가 매우 많으니, 가련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계속 쌀과 소금을 지급하여 구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以益熾，出置於無人之地，而死者甚多，事甚矜惻。請續給米、鹽以救之。”上從之。</p>
<p>인조 45권, 22년 (1644 갑신 / 명 순정 (崇禎) 17년) 7월 21 일(병오) 1번째기사</p>	<p>동·서 활인서(活人署)에 있는 환자들에게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여러 해 된 전염병이 돌아 서로 전염되어 동·서 두 활인서에 수용된 환자가 거의 8백여 명에 이르렀다.</p>	<p>命給東、西活人署病人糧、饌。是時，經年癘疫，轉相薰染，兩署所置病人，幾至八百餘人。</p>
<p>인조 46권,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 (順治) 2년) 3월 27일 (경술) 1번째기사</p>	<p>이때 북경에 쌀 운송하라는 명령이 성화보다 급하여 1개월 이내에 배를 정비하고 연해 지방 백성들을 징발해서 뱃사람을 충당했는데, 고을 수령들은 그들이 도망쳐 흩어질까 염려한 나머지,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 그들의 부모 처자로 하여금 서로 만나보지 못하게 하다가 배가 출발할 때에 이르러서는 수령들이 직접 그들을 거느리고 가서 배에 태워 보냈다. 그러자 그들의 부모 처자 형제가 각각 주식(酒食)을 가지고 와서 길을 막고 그들을 먹이면서 서로 붙들고 통곡을 하니, 그 비통한 정상을 차마 볼 수 없었다.</p>	<p>時，北京運米之令，急於星火，一月之內，整備米船，調發沿海之民，以充水手，而列邑守令，慮其逃散，拘囚獄中，使其父母、妻子，不得相見。及其發船，守令躬自押領以遣之。其父母、妻子、兄弟，各持酒食，攔道而饋之，相携慟哭，慘不忍見。</p>
<p>인조 46권,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 (順治) 2년) 6월 10일 (신유) 9번째기사</p>	<p>정축년 난리 이후로는 모든 제사에 쓰는 생진(牲牲)이 많이 살지 못하였고 숫자만 채울 수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종묘에 제향의 일이 있자, 헌관(獻官) 한흥일(韓興一)이 아뢰기를, “희생의 돼지가 과리하고 작아서 종묘 제향의 용도에 합당치 않으니, 지금부터는 희생의 척도(尺度)를 정하여 써서 난리 이전의 옛 규례를 회복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自丁丑亂後，諸祀所用牲牲，多不肥腠，只得充數。至是有事于宗廟，獻官韓興一奏：“牲猪瘠少，不合祭享之用，請自今，定其尺度，以復亂前之舊。”上從之。</p>
<p>인조 46권,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 (順治) 2년) 9월 21일 (기사) 2번째기사</p>	<p>수어사(守禦使) 이시방(李時昉)이 치계하기를, “남한 산성에서 지난해에 거두어 들인 쌀로 백성들에게 지급한 것이 1만여 석에 이르는데, 금년은 근고에 없었던 흉년이기에 여러 고을이 모두 기근(飢饉) 때문에 쌀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강도로 옮겨간 곡식에 대해서는 이미 3분의 1만을 징수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남한 산성에서 지급한 쌀에 대해서도 여기에 따라 시행하소서.”</p>	<p>守禦使李時昉馳啓曰：“南漢山城前年糶米之給民者，至萬有餘石，而今年凶歉，近古所無，諸邑皆以飢荒難徵之狀，絡繹來報。江都移轉之穀，既有三分徵一之令，山城之糶，請亦依此施行。”備局以爲，宜從時昉之言，上從</p>

<p>인조 46권,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 (順治) 2년) 9월 24일 (임신) 2번째기사</p>	<p>하였다. 비국이 이시방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p> <p>비국이 아뢰기를, “정부(政府)는 육조(六曹)를 통솔하고 육조는 각사(各司)를 관장하여 다스린 다음에야 바야흐로 체통이 서로 유지되고 사무가 수거(修舉)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조가 개좌(開坐)한 날짜를 정부에 보고하여 근무 태도의 근면 여부를 빙고(憑考)하도록 일찍이 분부하였는데도, 근래에 조정의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서 백관이 사무를 게을리 하고 있고 각사가 개좌한 날도 드무니, 특별히 경계하고 신칙하여 직무에 진력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지금부터는 육조 가운데 사무가 바쁜 곳과 한성부·장례원은 법전(法典)에 따라 매일 개좌하게 하고, 또 각 속사(屬司)를 신칙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직무를 보도록 할 것이며, 외방의 문보(文報) 및 진공물(進貢物)은 도착한 즉시 수납(收納)하여 먼 데서 온 사람을 유체(留滯)시키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만일 명령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정부에서 법부(法府)에 공문을 내어 하나하나 규찰하여 조사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이때 이경석이 막 상부(相府)에 들어와 의견을 진술한 것이 많기는 했으나, 끝내 당시의 폐단을 대대적으로 혁파한 것이 없었다.</p> <p>또 아뢰기를, “지금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정사는 낭비를 절감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는데, 우선 사복시 한 기관의 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本寺)의 공물은, 공용(公用)된 것은 아주 미세한 반면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매우 거대한데, 각사 공물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이와 같은 유가 많습니다. 또 각도의 목장(牧場)에 둔전(屯田)을 설치한 것이 매우 많아서 1년에 수입된 것이 대략 쌀이 1천 4백여 석, 조(租)가 1천 2백여 석, 두(豆)가 1천 3백여 석, 목화(木花)가 1만여 근이나 되는데, 말 사료(飼料)인 콩은 호조에서 나오고 있고, 말을 기르고 길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본디 여러 원역(員役)들이 있습니</p>	<p>之。</p> <p>備局啓曰：“政府總率六曹，六曹統理各司，然後方可體統相維，事務修舉矣。六曹坐日，開報政府，以憑勤慢，曾已分付，而近來朝綱漸解，百隸怠官，各司開坐亦罕，不可不另加警飭，使之盡職。自今六曹中務劇處及漢城府、掌隸院，依法典逐日開坐，且飭各屬司，夙夜奉公，至於外方文報及進貢之物，到即收納，俾無遠人留滯之弊。如有不如令者，請自政府，移文法府，一一糾覈。”上從之。時，李景奭新入相府，多所建白，然卒未有大革時弊者。又啓曰：“目今救飢之政，莫急於節損浮費。姑以司僕一寺事言之，本寺貢物，用於公者甚微，而出於民者甚鉅，各司貢物之病民，類多如此。各道牧場設屯甚多，一年所入，大略米千四百餘石，租千二百餘石，豆千三百餘石，木花一萬餘斤，而喂馬料豆，出於度支，廝養調立，自有諸員。今若特罷各邑貢物，令本寺自爲措辦，其他養馬之具，【如馬衫、馬索、馬藥、馬鐵之類。】可以取用於屯田之入，以此永爲定式，則別無所損於馬政，而民之</p>
---	---	---

	<p>다. 그러니 지금 만일 각 고을의 공물을 특별히 혁파하고서 본시로 하여금 스스로 마련하게 하고, 기타 양마(養馬)의 도구는 【마삼(馬衫)·마삭(馬索)·마약(馬藥)·마철(馬鐵)따위이다.】 둔전의 수입에서 취해 쓸 수 있게 하여 이것을 영원히 정식(定式)으로 삼는다면, 마정(馬政)에는 별로 손상됨이 없이 백성들이 입는 혜택은 클 것입니다.</p> <p>또 생각건대, 이런 큰 흉년을 만나 백성들이 모두 굶주려서 떠돌다가 구렁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내구마와 외구마를 일체 평상시처럼 사육한다면 자못 ‘짐승에게 사람을 잡아먹인다.’는 경계를 범하게 될 것이니, 진실로 그 숫자를 양감하여 사육하는 비용을 덜어야 합니다. 본시(本寺)에는 둔전에서 해마다 거두어 들이는 것 이외에 현재 저축되어 있는 쌀·콩·피곡(皮穀)·목면(木綿)·은자(銀子)가 아직도 1천여 석이나 되니, 지금부터 외구마는 본시로 하여금 사육하게 하고, 호조에서 지급하는 쌀·콩은 백성 진휼의 용도로 바꾸어야 합니다.</p> <p>그리고 마초(馬草)에 있어서는 선혜청(宣惠廳)에서 값을 지급하되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국마(國馬)를 사육하는 이외에 본시의 관원들이 날마다 나누어 갖는 것이 또한 셀 수 없이 많으므로, 1년 동안의 초가(草價)가 많게는 5천 8백여 석에 이르는데, 낭비를 줄이는 오늘날을 당해서 어찌 한결같이 그 과람한 것을 그대로 용납하겠습니까. 명년 가을까지 이것을 양감하여 그 잉여분을 백성 구제하는 데 옮겨 쓰는 것이 실로 사의에 합당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구마는 명년 가을까지 양감하되 마초는 재감하지 말라.”</p> <p>하고, 인하여 외구마 40필을 감하라고 명하였다.</p>	<p>蒙惠大矣。 且念， 遭此大飢， 民皆填壑， 內、外廐馬， 一如平日， 則殊犯古人率獸食人之戒， 誠宜量減其數， 以省喂養之費。 本寺屯田歲入外， 時存所儲米、豆、皮穀、木綿、銀子， 常千有餘數。 自今外廐馬， 令本寺喂養， 而以戶曹所給米、豆， 移作賑恤之用。 至於馬草， 自宣惠廳給價， 而其數濫觴， 國馬所喂之外， 本寺官員逐日所分亦不貲， 故一歲草價， 多至五千八百餘石。 當此省冗之日， 豈容一向過濫？ 限明秋量減， 而移用所贏於賑濟， 實合事宜。” 答曰：“依啓。 廐馬限明秋量減， 馬草勿爲裁減。” 仍命減外廐馬四十匹。</p>
<p>인조 46권,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 (順治) 2년) 9월 30일</p>	<p>비국이 아뢰기를, “지금 백성 진휼할 때를 당해서 아직 허통(許通)되지 않은 서얼(庶孽)들에게 자원에 따라 쌀을 납부하고 첩문(帖文)을 받게 해야 합니다. 옛 관례를 가져</p>	<p>備局啓曰：“今當賑恤之時， 庶孽未許通者， 宜從自願納米受帖， 而取考舊例， 則賤妾子十二石， 良妾子十石乃</p>

<p>(무인) 1번째기사</p>	<p>다 상고해 보니, 천첩(賤妾)의 자식에게는 12석을, 양첩(良妾)의 자식에게는 10석을 받고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큰 흉년을 당해서는 자원하는 자가 의당 적을 것이니, 그 원수(元數)에서 각각 3석씩을 감해 주고 면포로 대납하는 자의 경우는 면포 6필을 쌀 1석에 준하여 수납하되, 후일에 이것을 관례로 삼지는 말도록 하며, 또 보충대(補充隊)가 납부하는 면포도 진홀청으로 하여금 이를 거두어들여서 주린 백성을 진홀하는 용도에 보충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許。當此大無，願者必少，就其元數，各減三石，如以綿布代納者，六匹准米一石，而勿爲後例。且補充隊所納縣布，亦令賑恤廳收捧，以補賑飢之用。”上從之。</p>
<p>인조 46권,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 (順治) 2년) 10월 17 일(을미) 1번째기사</p>	<p>비국이 아뢰기를, “해서(海西) 연해의 관항용 좁쌀 수량이 꽤 넉넉하다고 하니, 잘 헤아려서 옮겨다 구호곡으로 쓴다면 눈앞의 불은 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관항곡을 함부로 쓰기는 곤란하니, 서도(西道)에서 곡물을 사들여서 그 수량을 채운다면 군량에는 모자람이 없고 구호에는 보탬이 될 것입니다. 평안도 병영에 쌓아둔 군목(軍木) 30여 동으로 쌀 1천 석을 사들여 본도에 보관해 두고서 관항용에 보충하고, 연안·배천·해주 등 세 고을에 관항용으로 쌓아둔 좁쌀이 1만 6천여 석이나 되니 그 중에서 1천 석을 가져다 구호용으로 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p>	<p>備局啓曰：“海西沿海管餉小米，其數頗優，量宜移賑，可救目前之急，而此時餉穀，亦難輕用。若於西路貿穀，以充其數，則無欠於軍儲，而有補於賑濟。宜以平安兵營所儲軍木三十餘同，貿得千石之米，留置本道，以充管餉之用，而延安、白川、海州等三邑管餉所儲小米，有一萬六千餘石，請取其中一千石，以爲救荒之用。”上不許。</p>
<p>인조 46권, 23년 (1645 을유 / 청 순치 (順治) 2년) 12월 14 일(임진) 1번째기사</p>	<p>흉년으로 인하여 금주령을 내렸다.</p>	<p>以歲饑禁酒。</p>
<p>인조 47권, 24년 (1646 병술 / 청 순치 (順治) 3년) 10월 8일 (경진) 1번째기사</p>	<p>전남도의 진홀곡 2천 석을 굶주린 제주(濟州)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진홀하도록 하였다. 제주 목사 유정익(柳廷益)이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모두 육지에서 빌어먹기를 바란다고 아뢰고 묘당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해 달라고 청하였기 때문에 비국이 의논하여 곡식을 옮겨서 진홀하고 섬에서 나오지 못하</p>	<p>以全南道賑恤穀二千石，分賑濟州飢民。以濟州牧使柳廷益啓陳州民饑饉，皆願乞食於陸地，請令廟堂指揮，備局議移粟以賑，毋令出島。</p>

	도록 한 것이다.	
인조 48권,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 (順治) 4년) 4월 21일 (임진) 2번째기사	경기 감사 오준(吳竣)이 치계하기를, “봄부터 여름까지 한재(旱災)가 매우 참혹하여 밀보리는 다 마르고 들판은 불 에 탄 것 같아서 가난한 백성들은 목숨이 끊어질 듯합니다. 각 고을의 원곡 (元穀)은 벌써 다 나누어 주어 다시 진구할 방도가 없으니, 강도(江都)에 옮겨 놓은 쌀을 방출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강도와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비축한 양곡을 나누어 방출하여 구 제하도록 명하였다.	京畿監司吳竣馳啓曰：“春夏以來，旱 災孔慘，兩麥盡枯，田野如焚，蔀屋之 民，大命近止。各官元穀，已盡分給， 更無賑救之路，請出糶江都移轉之 米。”上命以江都、南漢所儲之穀，分 糶以救之。
인조 48권,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 (順治) 4년) 5월 8일 (무신) 3번째기사	헌부가 재변으로 인한 차자를 올려, 언로를 열어 임금의 덕을 넓히고 내탕(內 帑)을 덜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라고 청하니,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 들었다.	憲府因災異上筮，請開言路，以匡君 德；損內帑，以賑飢民，上嘉納之。
인조 48권,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 (順治) 4년) 5월 11일 (신해) 1번째기사	평안 감사 이만(李曼)이 치계하기를, “각 고을의 창고 곡식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위급을 구제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중에 더욱 심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진휼의 조치가 있어야 될 듯합니다. 각처의 둔전(屯田) 곡식을 약간씩 덜어내어 6월부터 수 십일 동안 특별히 죽을 쑤어 구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平安監司李曼馳啓曰：“各邑倉穀，不 可不分給飢民，以爲救急之地，而其中 尤甚者，似當別有賑恤之舉。請除出 各處屯穀若干石，自六月限數旬，別作 糜粥以救之。”上許之。
인조 48권,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 (順治) 4년) 5월 18일 (무오) 2번째기사	약방이, 소주를 올려 더운 계절의 약용에 대비하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감선(減膳)으로 술을 올리지 못하게 한 까닭이다.	藥房請進燒酒，以備暑月藥用，上不 許。時以減膳，不令進酒故也。
인조 48권,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 (順治) 4년) 6월 10일 (기묘) 1번째기사	상이 한재를 만난 뒤로부터 내주방(內酒房)의 일공(日供)을 과하도록 명하였 었다. 비가 내리자 약방이 저장한 소주를 적당히 공진하기를 청하였으나, 상 이 허락하지 않았다.	上自遇旱災，命罷內酒房日供。既雨， 藥房請以所儲燒酒，量宜供進，上不 許。

<p>인조 48권, 25년 (1647 정해 / 청 순치 (順治) 4년) 8월 24일 (임진) 2번째기사</p>	<p>내의원이 아뢰기를, “4도가 혹심하게 재해를 입어 묘당에서 황정(荒政)을 한창 논의하는데 본원에서 바치는 약재만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삼·우황 등의 약재는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다 그 대가가 모두 민력에서 나오니, 1부 1냥을 감하더라도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 복구한 우황과 인삼을 내년 가을까지 임시로 감해 주소서.”</p>	<p>內醫院啓曰：“四道酷被災損，廟堂方議荒政，本院所進藥材，不可獨無變通。如人參、牛黃等藥，措備甚難，其價皆出於民力，雖減一部一兩，其於恤民之政，大有所益。牛黃、人參之今年復舊者，請限明秋權減。”上從之。</p>
<p>인조 49권, 26년 (1648 무자 / 청 순치 (順治) 5년) 2월 4일 (기사) 1번째기사</p>	<p>헌부가 아뢰기를, “금년의 기근은 제도(諸道)가 모두 같은데 강원도와 영서(嶺西)가 더욱 극심합니다. 이에 역로가 잔폐되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곡식을 옮기지 않으면 장차 흩어져버릴 걱정이 있습니다. 일찍이 정축년에 영동(嶺東)에서 4백 석의 곡식을 옮겨다가 역로의 급박함을 구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참담한 병화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근도 그때와 다를 것이 없으니, 관곡이 넉넉한 곳에서 적당히 헤아려 옮겨다가 구제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곡식을 옮겨다가 제때에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신들이 전 고원 군수(高原郡守) 허겸(許謙)의 일 때문에 어제 논했었습니다. 신들이 다시 듣건대, 허겸이 파직당한 처음에 잉입되기를 도모하여 관미(官米)를 내어주고 품관(品官)들을 꺾어 그들로 하여금 잘 다스린다고 칭송하게 하였는데, 격쟁(擊錚)하기까지 하였으니, 사판에서 삭제시키소서. 그리고 격쟁한 자는 남의 사주를 받아 임금을 속였으니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수창자를 조사해 내어 계문하여 죄를 다스리게 함으로써 뒷날의 폐단을 막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憲府啓曰：“今年飢饉，諸道同然，而江原道嶺西尤甚。驛路凋弊，不成模樣，若無移粟之舉，將有渙散之患。曾在丁丑年，移嶺東四百石之穀，以救驛路之急，蓋以其時慘被兵禍故也。今此飢荒，無異曩日，則就其官穀有裕處，量宜移賑，在所不已。請令本道監司，從便移粟，及時賑救。”上從之。又啓曰：“臣等以前高原郡守許謙事，昨纔論之矣。臣等更聞之，謙見罷之初，欲圖仍任，出給官米，以誘品官，使之稱以善治，至於擊錚，請削去仕版。且其擊錚者，受人指嗾，欺罔天聽，亦不可不懲。請令本道監司，查出首倡者，啓聞治罪，以杜後弊。”上從之。</p>

<p>인조 49권, 26년 (1648 무자 / 청 순치 (順治) 5년) 5월 25일 (기축) 1번째기사</p>	<p>진휼청이 진휼하고 남은 미조(米租)의 숫자를 서계하니, 상이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아뢰기를, “이미 진휼을 파한 뒤인데 청호(廳號)를 그대로 두는 것은 미편한 듯합니다. 상평청(常平廳)이라고 일컫고서 쓰고 남은 미포는 수시로 전환하여 한편으로 는 지금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데 쓰고 한편으로는 뒷날 구황할 때 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관원은 선혜청의 당상과 낭청이 겸하여 관장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賑恤廳以賑恤所餘米租數書啓，上下備局。備局啓曰：“旣罷賑恤之後，仍存廳號，事涉未妥。稱以常平廳，以用餘米、布，隨時轉換，一以爲卽今利民之地，一以爲他日救荒之用爲當。官員則請以宣惠廳堂上、郎廳兼管。”上從之。</p>
<p>인조 49권, 26년 (1648 무자 / 청 순치 (順治) 5년) 7월 4일 (정묘) 1번째기사</p>	<p>왕세자가 숙령전(肅寧殿)에서 추향 대제(秋享大祭)를 거행하였다. 이어 중전에 게 문안하였다.</p>	<p>王世子行秋享大祭于肅寧殿。仍問安于中殿。</p>

4. 효종실록 기사자료집

효종실록 기사모음집

날짜	내용	원문
효종 1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 (順治) 6년) 5월 13일 (신미) 3번째기사 외지에서 진상하는 것 을 금지하다	상이 특명으로 외방(外方)에서 봉진(封進)하는 방물(方物) 및 물선(物膳)을 파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왕위를 이어받은 처음에 곧 이런 분부를 내리시어 검소함을 따르고 백성을 구휼하는 뜻이 말에 넘쳤으니 보고 듣는 사람치고 어느 누가 감격하지 않겠 습니까. 다만 신민이 진상하는 의례는 흠결(欠缺)이 있어서는 안 되며 더구나 즉위를 하례하는 봉진은 사체가 더욱 중대하여 철따라 생산되는 물건을 으레 올리는 것과는 다르니, 신들은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 방물을 받겠는가. 아울러 전에 내린 분부에 따라 봉 진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上特罷外方封進方物及物膳。 禮曹啓 曰：“嗣位之初，卽下此教，從儉恤民 之意，溢於言表，凡在瞻聆，孰不感 激？但臣民享上之儀，不可欠缺，而況 卽阡封進之舉，事體尤重，非如節產例 封之比，臣等不敢承命。” 答曰：“孤 何心受此方物乎？竝依前下教，勿令封 進。”
효종 1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 (順治) 6년) 5월 23일 (신사) 5번째기사 왕의 생일이라 정부와 육조가 봉진하였으나	상이 탄신일(誕辰日)에 정부와 육조가 봉진(封進)하는 소선(素膳)을 받지 않았 다. 예조가 상께서 비록 거상중(居喪中)에 있다 하더라도 향상(享上)하는 의식 을 폐할 수는 없다하여 소선을 간략하게 올리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역시 운 허하지 않았다.	上於誕日，不受政府、六曹封進素膳。 禮曹以上，雖在諒闇中，不可廢享上之 儀，請以素膳略進，亦不許。

<p>받지 않다</p> <p>효종 1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 (順治) 6년) 7월 23일 (경진) 1번째기사</p> <p>산릉을 만드는 일로 민폐가 있어 진봉을 금지시켜 백성의 고통을 줄여 주다</p>	<p>상이 하교하기를, “산릉(山陵)에 필요한 인력(人力)을 모두 민간에서 차출하므로 책임지고 부역에 임하는 백성들의 고통이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어찌 내가 먹을 것을 바치게 하여 거둬 백성들의 힘을 곤궁하게 할 수 있겠는가. 빈전(殯殿)과 대비전(大妃殿)에 진봉(進封)하는 이외의 제도(諸道)에서 올리는 삭선(朔膳)은 모두 정과(停罷)하게 하라.”</p> <p>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제도의 삭선을 모두 정과하라는 분부가 계셨으니 어찌 감히 상의 뜻을 우려 외방(外方)에 널리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줄이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으니 새로 생산된 물건은 때에 따라 진봉하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새로 생산된 것이라도 진봉하지 말게 하여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펴게 하라.”</p> <p>하였다.</p>	<p>庚辰/上下教曰：“山陵所需，悉出民間，責應之役，有難形言，豈可以口腹之供，重困民力哉？殯殿、大妃殿封進之外，諸道朔膳，竝令停罷。”禮曹啓曰：“諸道朔膳，有竝罷之教，敢不仰體上意，敷告外方，而但全然減損，實甚未安，新產之物，則請令隨時封進。”答曰：“雖新產，勿令封進，以紓一分民力。”</p>
<p>효종 1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 (順治) 6년) 7월 28일 (을유) 3번째기사</p> <p>가정자각을 따로 설치하는 문제로 대신과 예조가 의논하다</p>	<p>총호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가정자각(假丁字閣)을 목릉(穆陵)의 예에 따라 방금 역사(役事)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다시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건대 ‘왕후의 상이 대왕의 상 이전에 있으면 3년 안에는 산릉과 혼전에 모두 제사를 지낸다.’는 글이 있으니, 가정자각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더 참고하여 정하게 하소서.”</p> <p>하니, 예조가 복계(覆啓)하여 대신 및 예를 아는 사람들에게 널리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대신과 김집이 모두 아뢰기를, “길흉(吉凶)을 병행(并行)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 풍속에 여묘살이 하는 자 중에 양친(兩親)의 조식 상식(上食)을 합제(合祭)하는 자가 많았는데</p>	<p>摠護使李景奭啓曰：“假丁字閣，依穆陵例，今方始役，而更考《五禮儀》，王后喪，在大王喪之前，則三年內山陵及魂殿，有竝祭之文，假丁字閣不當別設。請令禮官，更加參考以定。”禮曹覆啓，請廣議于大臣及知禮之人。大臣及金集皆以爲：“吉凶不可竝行。在昔國俗，廬墓者多有合祭兩親朝夕上食者，先正臣李滉深以爲非曰：‘合祭，非但無文可據，凡於忌日，只祭當忌之</p>

	<p>데, 선정(先正) 이황(李滉)이 이를 그르게 여겨 말하기를 ‘합제하는 것이 의거할 만한 명문(明文)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일(忌日)에 다만 기일을 당한 신주에게만 제사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상을 당하여서도 어찌 합제해서야 되겠는가.’ 하였으니, 이 말이 비록 사대부 집을 위하여 한 말이기 는 하지만 사가(私家)와 왕가(王家)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선조(先朝)에서 이미 행한 예를 따라 그대로 가정자각을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p>	<p>主，則當喪而豈可合祭乎?’ 此雖爲士夫家而發，家與國何異焉？遵先朝已行之禮，仍作假丁字閣爲宜。” 從之。</p>
<p>효종 1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 (順治) 6년) 8월 19일 (병오) 4번째기사 이정영 등이 심액이 상피를 무시하여 법을 어겼음을 간하다</p>	<p>정언 이정영(李正英)이 인피하기를, “선조(銓曹)의 주의가 공정치 못한 것이 어떠한 잘못인데 종시토록 침묵하여 탄핵하는 소장이 도리어 원로 대신에게서 나오게 하였으니, 간관(諫官)의 직을 지니고서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원 감사 유석(柳碩)은 국상을 당한 이때 방자하게 공석에서 고기를 먹고, 심지어 가장(家獐)을 마련해 먹으면서 【나라의 풍속에 여름에 개고기를 삶아서 먹는 것을 가장(家獐)이라고 한다.】 맛이 없다고 화를 내며 요리하는 사람을 매로 쳐서 죽게까지 하였으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풍속을 살피는 직임에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이미 간통(簡通)하여 동료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는데 미처 논계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두 말을 전하였으니 논계하는 일을 허술하게 한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신을 체직시키소서.”</p> <p>하고, 집의 엄정구(嚴鼎耆)가 인피하기를, “장령 이석이 이조 판서 심액의 파직을 청하는 뜻으로 간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생각에는, 대체로 대간(臺諫)이 일을 논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실상을 제시하여야 죄를 청하는 근거가 있게 되고 죄를 받는 자도 다른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더구나 총재(冢宰)의 직임은 작지 않고, 사정을 따른 죄는 적지 않은 데이겠습니까. 과연 상피해야 할 자제(子弟)를 사정에 따라 주의한 일이 있었다면 마땅히 이름을 지적하여 논열해야 합니다. 그</p>	<p>正言李正英引避曰：“銓曹注擬之不公，是何等是非，而終始循默，彈章反出於元老大臣，官以諫名，寧不愧乎？且江原監司柳碩，當此國哀之日，肆然食肉於公坐，至設家獐，【國俗於夏月，烹炙犬肉而啖之，謂之家獐。】惡其味之不美，怒笞廚人，以致殞命。豈可以此人，仍置觀風之任乎？臣既發簡，僚議歸一，而未及論啓，人皆傳說，論事不密之失著矣。請遞臣職。” 執義嚴鼎耆引避曰：“掌令李皙以吏曹判書沈諮請罷之意發簡，而臣意以爲，凡臺諫論事，必舉其實然後請罪，有所據，而被罪者無辭。況冢宰之任，不爲小矣，循私之罪，不爲細矣。果有相避子弟循私注擬之事，則當指名論列，願聞其詳，皙乃以吳挺緯之爲京畿都事、李時中之爲義城縣令、安光郁之差都監郎</p>

래서 이석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듣기를 원하였더니, 이석은 이에 오정위(吳挺緯)가 경기 도사(京畿都事)가 된 것과 이시중(李時中)이 의성 현령(義城縣令)이 된 것, 그리고 안광욱(安光郁)이 도감 낭청에 차임된 것을 말하였습니다. 오정위가 경기 도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신이 그 당시 전랑(銓郎)으로 정사에 참여했습니다. 대체로 대관(臺官)이 새로이 체임되어 관직을 다시 부여할 때는 상피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조(政曹)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런데 오정위가 정언에서 체직되자, 경기 도사의 자리가 마침 비어 있었으므로 신과 동료들이 상의하여 정위를 예에 따라 비의(備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액이, 법으로는 비록 상피할 것이 없으나 마음은 실로 편치 못하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어렵게 여기기에, 동석한 여러 사람이 고사(故事)임을 들어 억지로 요구하자 비로소 의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그의 죄안(罪案)을 삼았습니다.

조석윤(趙錫胤)이 이조 참의로 있었을 때 민광훈(閔光勳)은 석윤의 처남(妻甥)으로서 집의에서 체직되어 사복시 정(司僕寺正)이 되었으며, 이기조(李基祚)가 이조 참판으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는 기조의 매부(妹夫)로서 주서를 거쳐 전적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전후하여 수없이 많지만 그 당시 이것으로써 상피를 무시하였다고 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정체(政體)가 그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신하도 모두 일가 형제간이라 하여 혐의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음을 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일의 일이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금일의 일도 관례를 따른 것일 뿐인데, 오늘날 이석이 유독 관직의 기울이 무너져 문란해졌다고 하면서 기필코 이로써 죄를 삼고자 하는 이유를 신은 모르겠습니다.

이시중의 일에 대해서는 신이 실로 그 전말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나, 시중이 비록 심액의 동서(同婿) 아들이라 하더라도 국법에 있어 이미 상피에 해당되지 않고 전부터 의망하고 제수할 때에 으레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廳爲言。 挺緯之爲京畿都事， 則臣於其時， 以銓郎參政。 凡臺官新遞而付職， 則不拘相避， 乃是政曹故事， 而挺緯纔遞正言， 而京畿都事適有窠， 臣與同僚相議， 欲以挺緯， 循例備擬。 沈諮以法雖無避， 心實不安， 持難者久之， 同席諸人， 以古事強之而後， 始乃擬望矣， 今乃以此爲其罪案。 趙錫胤爲吏曹參議， 閔光勳以錫胤妻甥， 遞執義而爲司僕正。 李基祚爲參判， 洪重普以基祚妹夫， 由注書而陞典籍。 若此類前後何限， 而未聞其時， 以此爲不顧相避者， 豈非政體則然也？ 此二臣者， 亦皆不以爲嫌於一家兄弟之間， 則其例之流來已久， 蓋可見矣。 前日之事， 出於循例， 則今日之事， 亦出於循例而已， 李皙之獨於今日， 謂之官方壞亂， 而必欲以此罪之者， 臣未曉其意也。 李時中事， 臣固未詳其顛末， 而時中之於沈諮， 雖曰同壻之子， 其在國法， 旣無相避， 自前擬除， 例不拘礙。 且聞其注擬， 亦非出於諮之本意云， 此則必有陳辨之人。 至於安光郁之事， 都監郎廳， 自是權設之任， 啓下之際， 亦有相避乎？ 此臣所不聞也。 朝家之

	<p>주의도 심액의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는 필시 진변(陳辨)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p> <p>그리고 안광옥의 일은, 도감의 낭청이 임시직인데 계하(啓下)하는 즈음에 역시 상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를 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정의 일은 한결같이 법례(法例)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니, 법 이외에 상피하는 것을 신은 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동료와 더불어 의견이 서로 다르고 또 신이 일찍이 오정위의 관직을 제수하는 정사에 참여하였으니, 신이 이 논의에 어찌 감히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시키소서.”</p> <p>하였다. 대사간 이지항(李之恒)이 인피하기를,</p> <p>“심액이 전조의 장관이 된 이후로 다른 비방하는 논의는 없었는데, 유독 상피에 관한 잘못된 규례를 그대로 답습한 것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지난번 오정위가 외직에 제수되자 이에 대해 사람들의 말이 상당히 있었습디다만, 그 나머지 대해서는 신이 실로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p> <p>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헌부가 이미 간통(簡通)을 하였으니 이는 함께 발론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으므로 즉시 인피하지 않았으니, 실수한 바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유석(柳碩)의 일은 법에 의거하여 논핵하는 것을 실로 늦출 수 없었으나 일부러 머뭇거렸던 것은 의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사람들이 모두 말을 퍼뜨렸으므로 논사가 주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그대로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p> <p>하였다. 장령 이석이 인피하기를,</p> <p>“신이 지난번 인피한 후에 심액의 파직을 청하는 뜻으로 곧장 동료들에게 간통을 하였더니 동료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는데, 집의 엄정구만이 유독 어렵게 여기다가 곧 이어 인피하면서 타당치도 아니한 전례를 끌어대어 말이 장황하기에 신은 혼자서 웃었습니다. 그의 인피하는 말에 ‘조정의 일은 한결같이 법례를 준수해야 하고, 법 이외에 상피하는 것을 신은 실로 이해할 수가 없다.’</p>	<p>事，一遵法例，法外相避，臣實未解。既與同僚，所見相左，而且臣曾參挺緯除職之政，臣於此論，何敢與焉？請遞臣職。”大司諫李之恒引避曰：“沈諮長銓之後，無他謗議，而獨於相避謬例，未免循襲。向日吳挺緯之除授外職，頗有人言，其餘臣實未及聞知，而臣之愚意，憲府既已發簡，則此非俱發之事，故不即引避，所失著矣。且柳碩事，據法論劾，固不可緩，而姑爲遲待，意有所在。同僚以人皆傳說，論事不密引避，臣何敢仍冒？請遞臣職。”掌令李哲引避曰：“臣頃於引避之後，以請罷沈諮之意，即發簡于同僚，則僚議歸一，而執義嚴鼎耆獨爲持難，旋乃引避，至援不當援之例，費辭張皇，臣竊哂之。其避辭曰：‘朝家之事，一遵法例，法外相避，臣實未解。’挺緯乃諮之外孫，雖云出繼，其本伊誰？既有祖孫之義，又有祖孫之情，則豈可諉以無相避，而擬差乎？臺臣之遞，或付直講、典籍，或擬郎僚、他職，法例固然，而纔遞臺閣，旋授外職，特除之外，更無前例。況執義之遞，移拜正職，自有古規，注書之出，必遷</p>
--	---	---

고 하였습니다. 오정위는 바로 심액의 외손이니, 비록 출계(出繼)하였다고는 하나 그 본원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미 조손(祖孫)의 의리가 있고 조손의 정이 있는데 어찌 상피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의차(擬差)한단 말입니까. 대신(臺臣)을 체직(體職)한 뒤에 직강(直講)이나 전적(典籍)의 관직을 주기도 하고 혹은 낭료(郎僚)에 의망하기도 하니, 다른 관직에 주의하는 법례가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각(臺閣)에서 체직되자마자 곧장 외직을 제수한 것은 특제(特除) 이외에는 다시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집의에서 체직되었을 때에는 정직(正職)으로 옮겨 제수하는 것이 고규(古規)이고, 주서에서 나오면 반드시 전적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상례(常例)인데, 어찌 이것을 끌어다 전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오정위가 비록 법에는 상피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정석(政席)에 있는데 손자가 수망(首望)으로 주의되었으니, 그렇다면 사정을 따른 자취가 분명하여 엄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중(李時中)은 심액의 동서 자식입니다. 《대전(大典)》의 상피조(相避條)에 외친 삼촌 숙모부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숙모부(叔母夫)가 이미 상피가 있다면 숙질(叔姪) 역시 그 중에 포함됨이 명백합니다. 설사 상피가 없다 하더라도 삼촌숙이 정관(政官)으로 있고 삼촌질이 태수(太守)가 되었다면 주의하는 사이에 반드시 사람들의 말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상피하는 조문이 명백한 데이겠습니까.

안광욱(安光郁)에 대해 말하자면 역시 그의 외손입니다. 도감(都監)이 비록 권설(權設)이라고 하나 법전에 임시직은 상피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는데, 어찌 자기 입으로 말하여 계하하도록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사사로운 정을 따른 것이 명백하게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를 거론하여 논핵하려고 했으나, 말이 신임을 받지 못하고 시끄러운 단서만 야기시켰습니다. 신을 체직하소서.”

하였다. 현납 홍처량(洪處亮)과 정언 임의백(任義伯)도 심액의 일을 미처 거론

典籍，乃是常例，豈可以此，援而爲例乎？設使挺緯，雖無法內相避之規，祖在政席，孫擬望首，則循私之跡，昭不可掩。且李時中，沈詒同壻之子也。《大典》相避條，有外親三寸叔母夫之文。叔母夫既有相避，則姪亦在其中明矣。設無相避，三寸叔爲政官，而三寸姪爲太守，則注擬之際，必有人言，況明有相避之文乎？至如安光郁，亦其外孫也。都監雖曰權設，法典既無權設勿避之語，則豈可自發於口，而乃爲之啓下乎？此其循私之表表彰著者，欲以此舉劾，而言不見信，只惹鬧端。請遞臣職。”獻納洪處亮、正言任義伯亦以沈詒之事，未及舉劾，柳碩之論，又致不密，竝引避。持平任翰伯、掌令李梓、持平洪處尹亦以意見異於鼎耆，竝引避。司諫沈大亨引避曰：“忝冒匪據，爲日已久，而聾聽甚於金尙憲，剛銳不如李哲，銓官是非，全不聞知。及今元老舉劾，憲官引嫌，風波所及，一院俱動，無敢晏然。後人來避，罷軟無堪，固已甚矣。且李正英之欲論柳碩，未知盡皆實狀，而遲待之意，適與李之恒相符。今者同僚，

	<p>하여 논핵하지 못한 것과 유석에 대한 논의도 주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인피하였다. 지평 임한백(任翰伯), 장령 이재(李梓), 지평 홍처윤(洪處尹)도 의견이 엄정구(嚴鼎耇)와 다르다는 이유로 아울러 인피하였다. 사간 심대부(沈大孚)가 인피하기를,</p> <p>“적임자가 아닌데도 외람되게 무릅쓰고 있는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귀 먹은 것이 김상헌보다 심하고 강예(剛銳)함이 이석보다 못해서 전관(銓官)들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원로가 거론하여 논핵하고 헌관이 인협함에 이르러 그 풍파로 원(院) 전체가 동요하고 있으니 감히 모른 채 있을 수 없습니다. 남보다 늦게 와서 인피하니, 둔하고 나약함이 참으로 심합니다.</p> <p>그리고 이정영(李正英)이 유석을 논핵하려고 한 일은 모두가 실상인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머뭇거리고 기다리려 한 뜻이 마침 이지항(李之恒)과 서로 부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료가, 일을 논한 것이 주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먼저 피혐하였으니, 진퇴가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시키소서.”</p> <p>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정영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정원이 아뢰기를,</p> <p>“국가에서 대신(大臣)을 대우함에 있어 그 예가 중한 것인데, 사간 심대부가 인피한 말에 원로 대신의 관칭(官稱)을 빼버리고 성명만을 들먹였으며, 심지어 귀먹었다고 하여 기롱하는 뜻이 현저하였습니다. 체면을 헤아려보건대, 어찌 감히 이러할 수가 있습니까.”</p> <p>하니, 답하기를,</p> <p>“매우 해괴한 일이다. 심대부를 추고하라.”</p> <p>하였다. 옥당이 【교리 심지한(沈之漢)·이회(李禴), 부교리 김응조(金應祖), 부수찬 김휘(金徽).】 상차하기를,</p>	<p>既以論事不密先避，則進退豈有異同？請遞臣職。” 答曰：“勿辭。” 正英等竝退待物論。 政院啓曰：“國家之待大臣，其禮尊重。 司諫沈大孚引避之辭，元老大臣，去其官稱，只舉姓名，至以聾聽，顯示譏意。 揆諸體面，豈敢如是？” 答曰：“事甚駭異， 沈大孚推考。” 玉堂【校理沈之漢·李禴、副校理金應祖、副修撰金徽。】上筭曰：兩司竝引嫌而退。 當此國哀，至設家獐，因以殺人，理所不近，非人所爲，事固可疑，而既出風聞，則隨事發論，亦或一道。 相避除拜，雖有前例，既涉謬規，不可爲援。 指斥舉劾，正得論事之體，姑爲遲待，有何可避之嫌？官師相規，可謂得矣，文飾前事，似欠至公。 一隨僚議，不爲堅執，論事不密，非所當言。 同僚發簡，所見既同，未卽歸一，何與於我？ 論議是非，有不暇言，推勘有命，勢難在職。 請正言李正英、大司諫李之恒、獻納洪處亮、正言任義伯、持平任翰伯、掌令李梓、持平洪處尹出仕，執嚴嚴鼎耇、掌令李皙、司諫沈大孚遞差。 從之。</p>
--	--	---

	<p>“양사가 모두 인협하여 물러갔습니다. 국상을 당한 이때 가장(家獐)을 마련해 먹고 인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사리로 보아 근리하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풍문이 나돌았으니 일에 따라 발론하는 것도 한가지 방도인 것입니다.</p> <p>상피해야 할 친속들을 제수한 일은 비록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릇된 규례이므로 그것을 끌어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들어 논핵하는 것은 일을 논하는 사체에 합당하였으니, 우선 머뭇거리면서 기다렸던 것이 무슨 피험할 만한 일이겠습니까.</p> <p>원과 법관이 서로 규찰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 하겠으나, 전의 일을 꾸며대는 것은 지극히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의논을 따르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았으니 ‘일을 논한 것이 주밀하지 못했다.’는 말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동료들의 간통(簡通)에 의견이 같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즉시 일치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시비를 논의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아닙니다.</p> <p>그리고 추고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형세상 재직하기 어렵습니다. 정언 이정영, 대사간 이지향, 헌납 홍처량, 정언 임의백, 지평 임한백, 장령 이재, 지평 홍처윤은 출사시키시고, 집의 엄정구, 장령 이석, 사간 심대부는 체차시키소서.”</p> <p>하니, 따랐다.</p>	
<p>효종 1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 (順治) 6년) 8월 25일 (임자) 2번째기사 진상하는 방물과 갑옷</p>	<p>상이 하교하기를, “병장기는 노리개가 아니다. 여러 도에서 진상하는 방물(方物)과 갑옷[甲冑]을 새로이 제정하는 초기에 이처럼 구차하게 충정할 수 없으니, 졸곡(卒哭) 후에 다시 품의하여 처리하라.”</p> <p>하고, 또 하교하기를,</p>	<p>上下教曰：“戎器非玩愒之物，諸道所進方物、甲冑，新制之初，不可如是苟充。卒哭後更稟以處。”又下教曰：“方物雖停罷，甲冑則勿罷。”</p>

<p>을 졸곡 후에 처리하도록 하다</p>	<p>“방물은 정과(停罷)하더라도 갑옷은 꺾이지 마라.” 하였다.</p>	
<p>효종 1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 (順治) 6년) 8월 25일 (임자) 5번째기사 사간원이 심액·유석·엄정구 등이 조정의 기강을 흐려 파직시킬 것을 간하다</p>	<p>간원이 【대사간 이지항(李之恒), 헌납 홍처량(洪處亮), 정언 이정영(李正英)·임의백(任義伯).】 아뢰기를, “강원 감사 유석(柳碩)이 지난 해에 기회를 이용하여 감정을 갖고 대로(大老)를 무함하였는데, 지적하는 뜻이 음흉스럽고 말이 간사하며 악독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공론이 분개해 합니다. 성명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예로써 원로들을 우대하시어 주석(柱石)같이 의지하고 기귀(耆龜)같이 중하게 여기셨는데, 시비와 사정(邪正)이 병립(並立)하는 것을 어찌 용납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유석은 국상을 당하여 공제(公除)가 끝나기도 전에 질병도 없으면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고기를 먹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풍속을 무너뜨리고 예를 혼란시킴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관에서 삭제하소서. 강원 도사 이비현(李丕顯)은 상중에 고기를 먹으면서 조금도 꺼리지 않았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조정은 사체가 지극히 엄하고 사대부 간에는 서로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원로는 성상께서 예로써 존경하고 온 나라가 우러러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전 사간 심대부는 피협하는 계사 중에서 원로 대신의 관직을 빼버리고 거만스레 이름만을 호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평을 깊이 간직하고 은근히 모욕하였으므로 물정이 모두 놀라 꺾이하게 여깁니다. 심대부를 파직하소서. 상피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제도가 본래 있는데 잘못된 규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모르겠으나, 이미 그것이 옛날의 법례가 아니라면 어찌 답습하여 행해야 하겠습니까. 이조 판서 심액은 주의하는 즘음에 삼가지 못하여 상피하는 법을 무너뜨렸으니, 뒤폐단에 관계됩니다.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심</p>	<p>諫院 【大司諫李之恒、獻納洪處亮，正言李正英·任義伯。】 啓曰：“江原監司柳碩，頃年乘幾挾憾，誣陷大老，指意陰險，遣辭儉毒，至今公論莫不扼腕。聖明初服，優禮元老，倚之如柱石，重之如蓍龜，是非邪正，豈容竝立？且碩國哀之日，公除之前，無病食肉，衆人所覩，略不愧懼。敗俗亂禮，莫此爲甚，請削去仕版。江原都事李丕顯，持服食肉，略無顧忌，請罷職不敘。朝廷之上，事體至嚴；士夫之間，相敬爲貴，況元老，聖上之所尊禮，一國之所瞻仰乎？前司諫沈大孚避辭措語之間，不但去其官稱，而名呼倨傲而已，深懷不平，隱然侵侮，物情莫不駭異，請沈大孚罷職。相避之嫌，自有定制，未知謬規備於何時，而既是非古，則豈宜因襲行之？吏曹判書沈詒注擬之際，不能謹慎，至於相避一款，壞了憲章。後弊所關，不可置之，請沈詒罷職。臺諫處置之際，不計相避，既是謬規，除授外職，尤爲不可。前執義嚴鼎壽，曾以銓郎，於吳挺緯之除</p>

	<p>액을 파직하소서.</p> <p>채임된 대간을 다른 관직에 배치할 때에 상피를 따지지 않은 것은 잘못된 규례이며, 외직에 제수한 것은 더욱 불가한 것입니다. 전 집의 엄정구는 일찍이 전조의 낭관으로서 오정위(吳挺緯)의 관직을 제수할 때에 주의를 담당하였는데도, 지금 인책(引責)하지 않고 도리어 장황하게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법 이외의 상피’라고 하여 원로의 논핵이 그릇된 것인 양하였으니, 몹시 해괴합니다. 엄정구를 중률에 따라 추고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유석은 파직시키고 이비현의 경우는 근리하지 않는 듯하다.”</p> <p>하였는데, 여러 번 아뢰자, 모두 따랐다.</p>	<p>職也，擔當注擬，今不引咎，乃反張皇辭說，至謂之法外相避，有若以元老之論爲非者然，殊甚可駭。請嚴鼎考從重推考。” 答曰：“依啓。柳碩罷職，李丕顯似不近理矣。” 累啓而竝從之。</p>
<p>효종 2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 (順治) 6년) 9월 16일 (임신) 1번째기사 홍년이 들고 도민의 역이 무거워 경기도의 조세를 감하여 주다</p>	<p>특히 경기의 부미(賦米)를 감하였다. 이때 산릉(山陵)의 역사가 겨우 완성되었는데 객사(客使)가 잇따라 이르러 경기 백성들의 역(役)이 다른 도에 비해 배나 되었고, 또 홍년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p>	<p>壬申/特減京畿賦米。時，山陵纔完，客使繼至，畿民之役倍於他道，而且值凶歉，故有是命。</p>
<p>효종 2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 (順治) 6년) 11월 17일(임신) 1번째기사 사간원이 시장·염분·어전의 독점을 혁파할 것을 간하였으나 따르</p>	<p>간원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급한 일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만한 것이 없고,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면 마땅히 백성을 병들게 하는 폐단을 고쳐야 합니다. 대저 하늘이 준 물건의 이로움은 본래 우리 백성을 위한 것인데, 위에 있는 자가 빼앗아 독차지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떠돌게 한다면, 그 역시 매우 불인(不仁)한 것입니다. 이는 왕정(王政)에서 백성들과 이익을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새로 교화하는 처음에 소홀히 해서 안 될 일입니다.</p>	<p>壬申/諫院啓曰：“今日急務，莫若保民，如欲保民，當革病民之弊。夫天之生物之利，本爲吾民，而在上者奪而專之，使斯民飢寒轉徙，其亦不仁之甚也。此王政所以與民同利，而新化之所不可忽者也。頃因本院論啓，有諸宮家勢家柴場、鹽盆、魚箭查罷之命，</p>

<p>지 않다</p>	<p>지난번 본원의 논계를 인해서 여러 궁가와 세력가의 시장(柴場)·염분(鹽盆)·어전(魚箭)을 조사해 혁파하라는 명이 계셨으나, 외방의 관리가 조정의 명령을 믿지 않고 한갓 권세 있는 집만 두려워해 조사해 혁파하는 즈음에 빠뜨린 것이 매우 많았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전지(田地)를 입안(立案)하는 데 이르러서는, 대간의 논의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핑계하여 외방에서 보고할 바를 잠재우고 행하지 않으니, 신들은 놀라고 탄식합니다.</p> <p>산택(山澤)의 이익 역시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곡식을 생산하는 토지를 어찌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해를 끼치겠습니까. 삼가 강원도(江原道)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각 고을에 입안(立案)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삼가 듣건대 해서(海西) 한 도는 이런 폐단이 더욱 심하여 가난한 백성과 하호(下戶)들이 줄지에 그들의 옛것을 잃은 자가 곳곳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렬히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인심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청컨대 제도(諸道)의 감사에게 유시하여 여러 읍에 신칙해 여러 궁가와 세가의 시장·염분·어전으로 전일에 조사해 보고한 이외에 만일 누락된 곳이 있으면 다시 더 엄히 조사하여 하나하나 계문하게 하고, 입안한 곳 역시 일체로 시행하게 하며, 해조는 각도에서 계문하는 대로 즉시 입계하여 사패(賜牌) 이외에는 아울러 혁파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p>	<p>而外方官吏，不信朝家之令，徒怵權勢之家，查罷之際，見漏者甚多，已極可駭，而至於田地立案，則諉以臺論所不舉，外方所報，寢而不行，臣等駭歎焉。山澤之利，亦宜與民共之，況於生穀之土，豈可任其壟斷，重貽生民之害乎？伏見江原道啓本，各邑立案之處，亦自不少。竊聞海西一道，此弊尤甚，寒民、下戶，拱手而失其舊物者，處處皆然。此而不加痛革，則何以慰悅人心乎？請諭諸道監司，申飭列邑，諸宮家勢家柴場、鹽盆、魚箭，前日查報外，如有漏落處，更加嚴查，一一啓聞，立案之處，亦一體施行，該曹隨各道啓聞，劃卽入啓，賜牌外，竝令革罷。”累啓而不從。</p>
<p>효종 2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 (順治) 6년) 11월 24 일(기묘) 1번째기사 부제학 민응형이 서북의 민폐를 고하다</p>	<p>상이 주장에 나아가 《중용(中庸)》 제 17장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부제학 민응형(閔應亨)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구언(求言)하는 전지를 내리셨으니 신들 역시 상차하여 진언해야 하는데, 이미 연석에 입시하였으니 민간의 질고(疾苦)에 대해 면전에서 진달하겠습니다.”</p> <p>하고, 인하여 수백 마디 말을 조목별로 진달하였는데, 서북 지방의 민폐에 대해 더욱 자세히 하였다. 또 아뢰기를,</p>	<p>己卯/上御書講，講《中庸》第十七章。講訖，副提學閔應亨曰：“聖上下求言之旨，臣等亦宜上筭進言，而既入侍筵席，請以民間疾苦面陳之。”仍條陳數百言，而於西北民弊，尤加詳焉。又曰：“各道封進內局人蓼一兩之價，多至綿布二十四匹，牛黃則臣曾爲江陵府</p>

	<p>“각도에서 봉진(封進)하는 내국(內局)의 인삼(人蔘) 1냥의 값이 많게는 면포(綿布) 20 필(匹)이고, 우황(牛黃)은 신이 일찍이 강릉 부사(江陵府使)로 있을 때 1부(部)의 값이 면포 15필, 혹은 20필이었는데, 순천 부사(順天府使)에 배수되기에 이르러서는 60필이었고, 또 안변(安邊)에 부임해서는 더해져 80필에 이르러 달마다 더하고 해마다 더했습니다. 이는 내국에서 좋은 품질만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백성들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 천재와 시변이 마구 나타나는데, 변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충성스런 말이 애뜻하여 나로 하여금 들어보지 못한 민폐(民弊)를 듣게 하니, 마음이 매우 후련하다.”</p>	<p>使，一部之價，綿布十五匹，或二十四匹矣，及拜順天則爲六十四，又赴安邊則增至八十四，月增而歲加。是由於內局之務擇好品，而民不能聊生者此也。且天災、時變，疊見層出，變不虛生，必有其應。”上曰：“忠言眷眷，使予得聞所不聞之民弊，心甚豁然。”</p>
<p>효종 2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順治) 6년) 12월 2일 (병술) 3번째기사 강을 마치고 남도와 영동 지역과 북로의 민폐를 듣다</p>	<p>상이 주장에 나아가 《중용(中庸)》 제 19장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함경감사(咸鏡監司) 정세규(鄭世規)를 소견하여 묻기를, “내가 전(前) 감사의 계를 보고 본도의 흉황(凶荒)을 알았고, 또 경의 소도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p> <p>하니, 세규가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대 남도(南道) 지방의 기민(飢民)이 조곡(糶穀)을 받은 것이 매우 많은데도 가난해서 갚지 못해 심지어 밥그릇까지 다 팔았다고 하니, 이후에는 반드시 수적(收糶)210) 하여 기민을 진구할 형세가 없습니다. 원컨대 영동(嶺東)의 미속(米粟)을 옮겨 진구하소서.”</p> <p>하였다. 호조 판서 이기조(李基祚)가 지경연으로 입시했다가 나아가 아뢰기를, “영동 역시 멀어서 전운(轉運)하기가 쉽지 않습니다.”</p> <p>하니, 세규가 아뢰기를, “군병이 용감하고 긴장하기가 북로(北路)와 같은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잔약</p>	<p>上御書講，講《中庸》第十九章。講訖，召見咸鏡監司鄭世規，問曰：“予見前監司狀本，已知本道之凶荒矣。又見卿疏，今將何以爲計？”世規對曰：“臣聞，南道飢民，受糶甚多，貧不能償，至於賣盡飯器云，此後斷無收糶賑飢之勢。願移嶺東米粟以賑之。”戶曹判書李基祚，以知經筵方入侍，進曰：“嶺東亦遠，誠難以轉運也。”世規曰：“軍兵勇健，莫如北路，而今則疲孱甚矣。”上曰：“何爲其然也？”對曰：“北人飢寒切身，救死不贍，何暇養勇也？”仍陳其祖彥信爲本道監司時事，上曰：“卿亦善爲之。”</p>

	<p>함이 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북쪽 사람들이 춥고 굶주림이 절박하여 죽음에서 헤어나기도 어려운데 어느 겨를에 용맹을 기르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그의 할아버지 정언신(鄭彦信)이 본도 감사로 있을 때의 일을 진달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 역시 잘하라.” 하였다.</p>	
<p>효종 2권, 즉위년 (1649 기축 / 청 순치 (順治) 6년) 12월 4일 (무자) 1번째기사 사간원이 상평청의 폐 단을 아뢰어 추고하게 하다</p>	<p>간원이 아뢰기를, “상평청(常平廳)은 바로 진휼청(賑恤廳)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처음 뜻은 본래 기민(飢民)을 구제해 살리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재물을 모으고 이익을 구하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諸司)의 상공가(常供價)를 먼저 서울 사람에게 주고 외방에서 두 배로 징수하니, 백성들의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청컨대 해청의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戊子/諫院啓曰：“常平廳，卽賑恤廳之改號者也。 初意， 本在於濟活飢民， 而今反爲聚財求利之地。 以諸司常供之價， 先給於京人， 倍徵於外方， 民生之重困何如哉？ 請該廳堂上、 郎廳， 竝推考。” 上從之。</p>
<p>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1월 17일(신미) 1번째기사 북도에 쌀과 콩 2천 석을 보내 백성을 구 휼하게 하다</p>	<p>영동(嶺東)의 미두(米豆) 2천 석을 옮겨다 북도(北道)의 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명하였다.</p>	<p>辛未/命以嶺東米豆二千石， 移賑北道飢民。</p>
<p>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p>	<p>영돈녕부사 김상헌이 선영(先塋)을 보살피는 일로 돌아가기를 원하니, 상이 명하여 말을 내주고 제구(祭具)를 관에서 갖추어 주도록 하는 동시에 내의(內</p>	<p>壬午/領敦寧府事金尙憲乞歸掃先塋， 上命給馬， 官備祭具， 仍令內醫， 以藥</p>

<p>7년) 1월 28일(임오) 1번째기사 김상헌이 성묘하러 내 려가 여러 물품을 보 내도록 하다</p>	<p>醫)로 하여금 약물(藥物)을 가지고 따라가도록 하였다.</p>	<p>物隨之。</p>
<p>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2월 5일(무자) 3 번째기사 함경도 회령과 종성에 노루떼가 나타나다</p>	<p>함경도 회령(會寧)과 종성(鐘城) 두 고을에 두만강을 건너온 노루가 수없이 많아 거주민들이 손으로 때려 잡아 먹기도 하였다.</p>	<p>咸鏡道會寧、鍾城兩邑，有獐鹿越豆滿 江而來者無數，居民或手格而食之。</p>
<p>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2월 6일(기축) 1 번째기사 소현 세자의 셋째 아 들을 강화로 옮기고 병이 나서 약을 보내 다</p>	<p>소현(昭顯)의 셋째 아들을 강화로 옮겼다. 상이 그가 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내의원에서 약을 가지고 가서 구하도록 명하였다.</p>	<p>己丑/徙昭顯第三兒于江華。 上聞其 有疾，命內醫齋藥往救之。</p>
<p>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2월 13일(병신) 2번째기사 좌의정 조익과 청사신 의 힐책을 걱정하여 대책을 의논하다</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좌의정 조익(趙翼)이 아뢰기를, “저들이 반찬이 박하였다는 것과 간략하게 한 표문(表文)의 착오를 가지고서 힐책하였다고 하는데, 전년부터 와전된 말이 매우 많으니 저들이 필시 들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6인의 사신이 오는 것은 아마 이 두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 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청고(祈靑古)는 문자를 약간 아니 필시 표문을 조사할 것이고, 파홀내(巴</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左議政趙翼 曰： “彼以饌品之薄略及表文之錯誤， 有所詰責云，而自前年訛言甚多，彼必 有聞。 今者六使之來，恐不但爲此兩 事也。” 上曰： “祈靑古稍知文字，必 爲表文查覈，而巴訖乃則主管東事，今 者出來， 必有詰責之事， 此可憂也。</p>

	<p>詔乃)는 동쪽의 일을 주관하는 자인데 이번에 나오니 필시 힐책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점이 걱정이다. 그리고 저들이 만일 아무개가 정권을 잡고서 아무 일을 오로지 주관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p> <p>하자, 부제학 조석운(趙錫胤)이 아뢰기를, “만일 범한 일이 있다면 참으로 어찌할 수가 없지만, 저들의 위세를 두려워해서 죄없는 사람을 잡아 보내도록 한다면, 어찌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먼저 거절하는 계책을 정해야 합니다.”</p> <p>하였다.</p>	<p>且彼若曰： ‘某也執政而專主某事。’ 云， 則當如之何?” 副提學趙錫胤曰：“如有所犯， 則固無奈何， 若重畏彼之威令， 執送無罪之人， 則安有如此之國乎? 必須先定拒絕之策可矣。”</p>
<p>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3월 4일(정사) 5 번째기사 청사신과 접견한 이경석을 불러 그들의 기색을 보고받고 대책을 의논하다</p>	<p>영의정 이경석(李景奭)이 서로(西路)에서 먼저 돌아왔다. 상이 인하여 대신을 소견(召見)하고, 경석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기색이 어떠하던가?”</p> <p>하니, 경석이 대답하기를, “처음 만났으나 상당히 기뻐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웃는 자는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10인으로 하여금 칙서를 지키도록 하면서 ‘만일 누설하는 자가 있으면 사죄(死罪)로 논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정명수가 아는 것이 있어도 역시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힐문할 적에 모두 사실대로 대답한다면 저들이 혹 관대히 용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물쭈물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국가에 일이 생기고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입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p> <p>하였다. 경석이 아뢰기를, “저들이 표문(表文)을 지은 사람과 대각에서 의논을 주장한 신하를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領議政李景奭自西路先還。 上仍召見大臣， 謂景奭曰：“彼之氣色何如?” 景奭對曰：“始與相見， 頗有欣然之色， 而古人云： ‘笑者不可測。’ 誠不可知也。 且彼令十人， 看護勅書， 如有泄漏者， 當論死云， 故命守雖有所知， 亦不敢言矣。 詰問之際， 皆舉實以對， 則彼或有寬恕之理， 若囁嚅而不以實對， 則必生事於國， 禍及其身矣。” 上曰：“卿言是矣。” 景奭曰：“彼若問表文撰述之人及臺閣發論之臣， 則將奈何?” 上曰：“此乃實事也。 表文則既有撰之者， 而至於發論之人， 若以不知答之， 則彼必益怒。 必須商量而善爲說辭也。” 右議政趙翼曰：“兩司多官姓名， 則皆可言之， 至於問及主論之人， 則答以 ‘此舉國公共之論， 本無主</p>

	<p>“그것이 바로 실제 문제이다. 표문은 지은 사람이 있지만, 논의를 주장한 사람은 만일 모른다고 대답할 경우 저들이 필시 더욱 화를 낼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해서 말을 잘 하여야 한다.”</p> <p>하였다. 우의정 조익이 아뢰기를,</p> <p>“양사의 많은 관원의 성명은 모두 말해 줄 수 있지만, 논의를 주장한 사람을 물을 경우 ‘이는 온 나라의 공공(公共)한 논의이므로 본래 주장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대답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영중추부사 이경여에게 하문하기를,</p> <p>“경의 뜻은 어떠한가?”</p> <p>하자, 경여가 대답하기를,</p> <p>“신의 생각도 그러합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사은표(謝恩表) 내용 중에 ‘절혜(節惠)’ 2자와 ‘귀모(歸贖)’ 2자가 힐책하는 단서가 되었다. ‘절혜’ 2자는 출처가 어느 책인가?”</p> <p>하니, 경석이 아뢰기를,</p> <p>“《예기(禮記)》의 말입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2본(本)의 칙서 중에 하나는 바로 섭정왕(攝政王)의 글이라 하는데, 만일 과연 구혼(求婚)하는 말이 있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p> <p>하니, 경석이 아뢰기를,</p> <p>“적합한 자가 없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저들이 모르고서 묻는다면 의당 그렇게 대답해야 하겠지만 혹 저들에게 몰래 말해 준 간사한 자가 있을 경우 매우 염려스럽다. 그리고 저들이 ‘만일 친공주가 없으면 그보다 조금 낮은 자도 괜찮다.’고 하면 이도 난처하지 않겠는</p>	<p>張之人。’ 爲宜矣。” 上問於領中樞府事李敬輿曰：“卿意何如？” 敬輿對曰：“臣意亦然。” 上曰：“謝恩表辭中，以節惠二字及歸贖二字， 爲詰責之端。節惠二字，出於何書？” 景奭曰：“《禮記》之言也。” 上曰：“勅書二本中，其一乃攝政王之書云， 若果有求婚之言，則將奈何？” 景奭曰：“以無可合者言之爲當。” 上曰：“彼若不知而問之，則當以此答之， 或有奸人潛言於彼者，則深可慮也。 且彼如曰：‘若果無親公主，則雖稍下於此者亦可。’ 云爾則是不亦難處乎？” 敬輿曰：“稍下者，尤不可許也。” 【謂昭顯女子也。】 上曰：“彼歷數五人之名曰：‘將以此五人，委任國事。 此後雖有斥和之事，五人當之。’ 云。 此言盛行，卿等聞之乎？” 景奭曰：“前朝果有奸人構亂嫁禍之時，而豈料當今復有此事乎？” 上曰：“所謂五人，乃金自點、元斗杓、具仁室、李時白、具仁壘云矣。” 上又曰：“三老臣之事，終當何如也？” 景奭曰：“趙綱則似必有詰問之舉矣。” 上曰：“以禮判時事而然乎？” 景奭曰：“彼以謝表及奏文等事，常有所云云矣。” 是時，訛</p>
--	---	--

	<p>가?”</p> <p>하니, 경여가 아뢰기를, “조금 낮은 자는 더욱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p> <p>하였다. 【소현(昭顯)의 딸을 말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5인의 이름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앞으로 이 5인에게 국사를 위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 척화(斥和)의 논의가 있더라도 이 5인이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고 하였다 한다. 이 말이 파다하던데 경들은 들었는가?”</p> <p>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전조(前朝)에는 과연 간인(奸人)이 난을 조작하고 화를 전가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5인이란 바로 김자점·원두표·구인후·이시백·구인기라고 한다.”</p> <p>하고, 또 이르기를, “세 노신(老臣)의 일은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p> <p>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조경(趙綱)은 필시 힐문하는 일이 있을 듯합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조 판서 때의 일 때문에 그러한가?”</p> <p>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저들이 사은표와 주문 등의 일을 가지고 항상 그런 말을 한다 합니다.”</p> <p>하였다. 이때에 뜬소문이 파다하였는데, 모두가 김자점 부자가 우리 나라의 일을 청나라에 누설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상도 의심하여 그의 자식 김연(金鍊)과 김식(金錫) 등을 외직(外職)으로 내보내 그들과 내통하는 길을 단절시키고자 하였다. 경여가 아뢰기를, “자점이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마는 요즘 의심하는 것은 증거가 없으니 처리</p>	<p>言競起，皆疑金自點父子，以我國事，洩漏於清人，而上亦疑之，欲出其子鍊、錫等於外，以絕其交通之路。敬輿曰：“自點烏得無罪，而至於近日所疑，則事無其迹，難以處之。”上曰：“非致疑也，乃欲以全之也。”大臣將退，上留之，命賜黃柑一盤，又以一盤賜承旨、史官，仍謂大臣曰：“今日之言，雖子弟，亦不必言及也。”</p>
--	---	---

	<p>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대신이 물러가려 하자 상이 만류하면서 귤[黃柑] 한 쟁반을 하사하도록 명하고, 또 한 쟁반은 승지와 사관에게 하사하도록 하였다. 인하여 대신에게 이르기를, “오늘의 일을 자제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였다.</p>	
<p>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3월 13일(병인) 1번째기사 이경석과 조경을 의주 의 백마성에 유배하고 후에 청의 허락이 있 어 석방하다</p>	<p>이경석과 조경을 의주(義州)의 백마성(白馬城)에 유배하였다. 경석이 떠나려 하면서 조경을 떠나는 회포를 진달하고 인하여 경계하는 뜻을 언급하였다. 상이 수찰(手札)로 답하기를, “덕이 부족하고 사리에 어두운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오늘과 같은 일이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 통탄스럽다. 관하(關河)가 아득히 멀어 그리움이 간절하겠지만, 천도가 밝으니 서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경은 모름지기 자중자애하라. 차자의 내용은 내가 가슴에 새기겠다.” 하고, 이어 표피(豹皮)와 납약(臘藥)을 내렸다. 【당시 청사가 관(館)에 있었기 때문에 대전 별감을 시켜서 전하게 하였다.】 상이 연경에 가는 인평 대군(麟坪大君)에게 청국에 가서 말하도록 하였는데, 청국이 석방을 허락해서 돌아왔다. 상이 소견(召見)하여 간곡히 위로하고 이어 귤[柑]을 내렸다. 얼마 뒤에 청사(淸使)가 또 온다는 말을 듣고 상이 지방으로 나가 피해 있게 하였다. 경석이 춘천(春川)으로 떠나려 하자, 상이 사관을 보내어 유시하기를, “듣건대, 경의 아들이 현재 안협(安峽)의 수령으로 있다 하니, 경은 우선 그곳으로 가서 편히 조리하라.” 하니, 경석이 고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본도로 하여금 음식물을 계속 지급하게 하였다.</p>	<p>丙寅/配李景奭、趙綱于義州白馬城。 景奭將行，筭陳去國之懷，仍及規戒之意。上以手札答之曰： 寡昧不能爲國，致有今日，予極痛歎焉。關河杳杳，雖切戀思，天道昭昭，相見有日，卿須自愛。筭中之辭，予當體念焉。 仍賜豹皮及臘藥。【時，淸使在館，使大殿別監來傳。】上於麟坪大君赴燕之行，使之言於淸國，淸國許令放釋。既還，上召見之，慰諭備至，仍賜柑。未幾，聞淸使又至，上令出避於外。景奭將赴春川，上遣史官諭之曰：“聞，卿子方宰安峽，卿姑往就，以便調養。”景奭固辭，不許，令本道繼以食物。</p>

<p>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3월 23일(병자) 1번째기사 청사신의 접대로 인한 민폐를 줄이고 국혼을 위해 사대부 자녀의 혼인을 지시하다</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하문하기를, “저들이 이곳에 오래 머물고 있으니 민력이 지탱해내지 못할까 참으로 염려 된다.” 하니, 영의정 이경여가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사복시에 은(銀)이 1만 냥이 있다고 하던데, 그 중에서 6백 냥 을 떼어 해서(海西)의 여러 참(站)에다 지급하고, 또 4백 냥은 경기의 여러 참에다 지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 6백 냥만 주겠는가. 더 주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선혜청의 쌀은 1년을 쓰고 남은 것이 있는가?” 하니, 호조 판서 이기조(李基祚)가 아뢰기를, “과연 남은 저축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의 백성에게는 선혜청에 저축된 것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니, 경여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백성의 고통을 이토록 깊이 염려하시니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 까. 신은 이를 인하여 아뢰고자 합니다. 옛말에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한다.’ 고 하였는데, 신이 남쪽 지방에 갔을 적에 들으니, 어공(御供)하는 해의(海衣) 1첩 값이 목면 20필까지 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도 들었다. 이후로는 다시 봉진(封進)하지 말라.” 하였다. 경여가 아뢰기를, “마른 봉어는 맛도 좋지 않은데 민폐가 역시 많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p>	<p>丙子/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問曰： “彼人久留至此， 誠恐民力之不能支 也。” 領議政李敬輿曰：“臣聞， 司僕 寺有銀萬兩云。 若捐其六百兩， 給與 海西諸站， 又以四百兩， 給與京畿諸 站， 則庶有所補矣。” 上曰：“然則何 止六百兩乎？ 加給之可矣。” 上又曰： “宣惠廳米一年用之， 有餘數乎？” 戶曹 判書李基祚曰：“果有餘儲矣。” 上曰： “畿民則宜以宣惠廳餘儲給之。” 敬輿 曰：“聖上軫念民隱至此， 孰不感激？ 臣請因是以陳之。 古語曰：‘節用而愛 民。’ 臣往南方時聞之， 御供海衣一 貼， 價至木綿二十四云矣。” 上曰： “予亦聞之。 此後勿復封進。” 敬輿 曰：“乾鮓魚味則不好， 而民弊亦多矣。” 上曰：“何可爲口腹， 而貽民之弊？ 今 後可除之。” 諸臣將退， 上命留李敬 輿、趙翼及元斗杓、李基祚、林潭、 李厚源等， 謂之曰：“近來士大夫爭先 婚嫁云， 其然乎？ 國婚當前， 宜預知某 家有子有女， 然後有以處之。 若士大 夫皆相婚嫁則奈何？ 卿等會予此意， 各 於親舊， 若有求婚者， 宜密聞知， 封書 以入。 予言亦涉於私， 難以言於大臣，</p>
--	--	---

	<p>“어떻게 먹는 것 때문에 백성에게 폐를 끼치겠는가. 앞으로 없애라.” 하였다. 신하들이 물러가려 하는데, 상이 이경여·조익 및 원두표·이기조·임담(林壇)·이후원(李厚源) 등을 남도록 명하고 이르기를,</p> <p>“근래에 사대부 집에서 서로 다투어 혼사를 치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국혼(國婚)을 앞두고 있으니, 미리 어느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지 알아야 대처할 수가 있는데, 사대부가 모두 서로 혼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경들은 나의 이런 뜻을 알고, 각기 친구에게 구혼하는 자가 있거든 은밀히 알아내어 봉서(封書)하여 들이도록 하라. 나의 말도 사사로움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대신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은 내외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p> <p>그리고 세자의 혼사는 중대한 혼사인데, 세자의 나이는 10세이다. 또 공주 두 명 중에 하나는 11세이고, 하나는 9세이다. 사대부의 자녀 중에 8세부터 12세까지는 모두 혼인을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p>	<p>而事無內外，故言之。 且世子之婚則大婚也，世子年十歲。 公主二，一則十一歲，一則九歲。 士大夫子女自八歲至十二歲者，皆可禁婚矣。”</p>
<p>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3월 25일(무인) 2번째기사 혼인할 여자인 금림군 이개윤의 딸을 의순 공주로 삼고 상을 내리다</p>	<p>금림군 이개윤의 딸을 의순 공주(義順公主)로 삼았다. 개윤에게 가덕(嘉德)의 품계를 더하고, 비단과 미두(米豆)를 후하게 내렸다.</p>	<p>以錦林君愷胤女爲義順公主。 加愷胤階嘉德，優賜綿布及米豆。</p>
<p>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4월 9일(임진) 2</p>	<p>부제학 조석윤(趙錫胤)이 상소하기를, “유계 등이 죄를 받은 것은, 실로 신이 경솔히 함부로 응대하여 성상의 위엄을 격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온 조정이 놀라 의혹하고 기상이 꺾였으니, 신이</p>	<p>副提學趙錫胤上疏曰： 俞榮等之被罪，實緣臣率爾妄對，激動天怒，舉朝惶惑，氣象慘沮，臣雖被刑</p>

번제기사
부제학 조석윤과 유계의
일에 대해 논하다

비록 형벌을 받더라도 그 죄를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가 생각건대 군신간은 부자간과 같습니다. 부모가 허물이 있으면 자식으로서는 의당 끝까지 간(諫)해서 매를 맞아 피가 흐르더라도 감히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니, 신하로서 임금에게 무엇이 이와 다르겠습니까. 신이 만일 피험하고 주벌(誅罰)을 두려워해서 생각을 다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유계가 시호를 의논드린 소에 참으로 털끝만큼이라도 기롱하고 폄하한 말이 있었다면, 조신(朝臣)들이 함께 분노하고 질책하였을 것이니, 어찌 엄한 성지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신이 탑전에서 삼가 성상의 하교를 들으니 ‘유계의 상소에 「어진자[仁者]는 사욕(私欲)이 없는 것이다.」는 등의 말이 있었고, 또 두 번이나 상소하면서 먼저 심대부(沈大孚)를 구원하고 이어 시호를 논란하였다.’고 하시면서 말씀이 엄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했다면 성상께서 유계를 의심하심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유계가 선왕을 기롱하여 의논하였는데도 신하들이 그를 변호하였다면 성상의 노여움이 큰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이 물러나와 그의 상소를 구해서 보니, 실제로는 성상께서 하교하신 구절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소는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유계의 본의는 다만 중첩되게 ‘조(祖)’를 시호로 사용하여 정문(情文)에 구애됨이 있을까를 염려한 것뿐으로 막중한 전례(典禮)가 지극히 온당하게 되게 하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상의 비답도 자못 온화하였는데, 이는 역시 그의 진실한 뜻을 양해하시어 허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가 바뀐 뒤에 갑자기 신료가 경솔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크게 진노하시어 변방에다 버리는 법까지 가하셨으니, 성인의 절도에 맞는 희로(喜怒)와, 왕자(王者)의 탕평(蕩平)하는 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심대부는 다만 유계의 일로 격노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중벌을 받아, 멀리 외진 북쪽으로 또는 황량한 산골로 유배를 갔으니, 관대하고 인자함으로 아래를 보살피시는 성명(聖明)의 덕에 어찌 손상됨이 없

章, 猶不足以贖其罪, 而竊念, 君臣猶父子也。 父母有過, 子當孰諫, 雖撻之流血, 而不敢止, 臣之於君, 何以異此? 臣若避嫌畏誅, 不盡所懷, 則是不愛君也。 夫俞棨議諡之疏, 苟有一毫譏貶之語, 則固朝臣所共憤嫉, 豈待嚴旨之下哉? 臣於榻前, 伏聞聖教以爲, 棨疏中有仁者無私欲等語, 且陳疏至再, 先救沈大孚, 繼論諡號, 辭旨嚴截, 果如是則聖上之有疑於棨, 固也。 旣以棨爲譏議, 而群下救解, 則天怒赫然, 亦宜矣。 然臣退而求見其疏, 則實無聖教所舉一句語, 未嘗再次陳疏。 以是觀之, 棨之本意, 只慮疊用祖諡之或有礙於情文, 而欲使莫重典禮, 歸於至當而已。 其時聖批, 亦頗溫醇, 蓋亦諒其實情, 而不以爲咎也。 乃於經年之後, 遽因臣僚躁率之失, 大震威怒, 至加投畀之典, 其於聖人喜怒之節, 王者蕩平之道, 何如也? 況沈大孚則只因棨事激觸, 而同被重律, 或流絕北, 或配荒峽, 豈不有傷於聖明寬仁恤下之德? 而況因此鼎席不安, 臺閣索然, 群臣喪氣, 舉國失望, 國家之不幸, 可勝言哉? 聖人胸次, 本無係滯, 以爲

	<p>겠습니까. 더구나 이로 인하여 정승이 불안해 하고 대각(臺閣)이 텅 비었으며, 신하들이 기가 꺾여 온 나라가 실망하고 있으니, 국가의 불행스러움을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p> <p>성인의 마음은 본래 매인 곳이 없어, 죄가 있으면 죄를 주고 용서할 만하면 용서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허심탄회하고 크게 공평하여 외물(外物)에 따라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도가 아니겠습니까. 신은 성명께서 그 본정(本情)을 통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이에 감히 외람스럽게 우리러 진달하니, 이 또한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신을 삭직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그대의 논변이 이러하니 나도 부득이 말을 다하겠다. 대개 대부의 상소는 한 번이었고, 비록 드러내어 배척하지는 않았으나, 은미한 뜻이 가증스러웠기 때문에 부처(付處)하는 벌을 대략 시행하였다. 유계는 두 번 상소하였는데, 처음에는 그대 상소에 한 말처럼 말이 심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는 감히 묘호(廟號)를 들어 배척하여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하였으니, 심한 중에서도 더 심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그대가 필시 미처 보지 못한 것일 것이다. 그 당시 이 두 사람의 창도로 인하여 사설(邪說)과 이론이 분분하게 일어났다. 당초 조정에서 의논할 적에 시비를 논하여 합당하게 되도록 힘썼다면 참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전례(典禮)가 이미 정해진 뒤에 두어 사람의 사설로 인하여 시비가 분분하게 되었으니, 사체나 정례(情禮)로 보아 어떻다 하겠는가.</p> <p>선왕께서 승하시던 날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에서까지 어쩔 줄 모르고 애모(哀慕)하였으며, 서울의 서민들은 다투어 쌀과 베를 내어 능역군(陵役軍)을 공궤하면서 행여나 뒤질까 염려하였다. 이토록 무지한 백성들의 행위와 유식한 조정 사대부의 비방하고 폄하한 행위를 비교해 보면, 역시 가슴이 아프지</p>	<p>可罪而罪之，知其可恕而怒之，豈非廓然大公，喜怒在物之道乎？臣恐聖明猶未盡燭其本情，茲敢冒昧仰陳，其亦不自量也。伏乞鑄削臣職。</p> <p>答曰：“爾論辨至此，予亦不得不盡言。大概大學之疏一，而雖不顯言斥之，其微意可惡，故略施付處之罰。榮則再上疏章，而其初則爾之疏中所謂者也，辭意不至已甚，而其再則敢舉廟號，而斥言之，以盡其心曲之蘊，不亦已甚之甚者乎？此則爾必未得見也。其時因此兩人之倡，而邪說異議，紛紜難狀。若於當初廷議之時，論其是非，務得恰當，固其所也。乃於典禮已定之後，因數人之邪說，有所云云，則其於事體與情禮，爲如何哉？當先王昇遐之日，深山窮谷，莫不奔走哀慕，京都庶民，爭出米、布，供饋陵役之軍，唯恐或後。以此無知下民之所爲，比之於有識朝士之譏謗貶薄者，則不亦痛心哉？其於義理與臣道，可乎不可乎？於渠等之心，亦安乎不安乎？予是以必欲正國法久矣，豈待今日而怒之也？又安有不念再疏之有無，而徒以一時之怒，敢稱先王而搆人之罪乎？今日臣僚，不</p>
--	--	--

	<p>않겠는가. 의리와 신하의 도리로 보아 옳은가, 그른가? 그들의 마음도 편하겠는가, 불안하겠는가? 이러기 때문에 나는 기필코 국법을 바꾸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다. 어찌 오늘의 일을 기다려서 성을 내는 것이겠는가. 또 두 번째 상소의 유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일시적인 분노로 감히 선왕을 핑계하여 남에게 죄를 씌우는 일이 어찌 있겠는가.</p> <p>오늘날의 신료들이 시비를 분별하지 않은 채 때지어 일어나 다투어 화를 내면서 마치 손을 댈 수 없는 것처럼 하는데, 나는 감히 성을 내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다. 그대는 이 두 사람의 상소 내용이 어떠했는가를 몰랐으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p> <p>하였다.</p>	<p>辨是非，群起爭怒，有若使不得下手者然，予不敢怒而反爲之恐懼焉。爾既不知此兩人疏辭之如何，則何罪之有？勿爲控辭。”</p>
<p>효종 3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4월 18일(신축) 1번째기사 후추 29말을 호조에 내려 청사신의 요구에 응하게 하다</p>	<p>상이 안에 저축해 둔 호초(胡椒) 29말[斗]을 호조에 내려서 청사(淸使)의 요구에 응하게 하였다.</p>	<p>辛丑/上下內貯胡椒二十九斗于戶曹，以副淸使之求索。</p>
<p>효종 4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6월 12일(갑오) 2번째기사 비변사가 역을 균등히 하는 문제를 논의하니 신하들과 의논하게 하 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근본은 우선 역을 균등하게 하는 데에 있음은 진실로 간원이 올린 계사와 같습니다. 삼남의 공안(貢案)이 고르지 못한 것 때문에 식자들이 오랫동안 탄식해 왔으니, 비록 변통하려고 해도 크게 불편할 것은 없습니다. 각도 전결(田結)의 원수(元數)를 계산하여 공물(貢物)의 많고 적음을 정하고 이것에 따라 쌀과 베로 계산해 내게 함으로써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매겨지는 곳이 없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원이 올린 계사에서 홍청도(洪淸道)만 시행하자고 하였으나 반드시 통합하여 한덩어리로 만든</p>	<p>備邊司啓曰：“安民之本，莫先於均役，誠如諫院之啓。三南貢案不均之患，久爲識者之歎，雖欲變通，亦不至於大段難便。不過計各道田結元數，以准貢物多寡，量出米、布，無偏重偏輕之處而已。啓辭之意，專在於洪淸一道，而必通融滾成一段然後，方無彼此妨礙之弊矣。令該曹專管，而刑曹判書李</p>

	<p>뒤라야 피차에 걸리고 방해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전담토록 해야겠지만 사무에 밝은 형조 판서 이시방이 이 직임에 적합하니, 그에게 겸하여 살피게 하고 서로 상의해서 삼남의 원공안(元貢案)과 전결의 총수를 조사하고 그 경중을 참작하여 영구한 법식을 만들도록 하소서.”</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어제 탑전에서 이시방이, 양호(兩湖)에서는 어디든지 1결에 쌀 서 말씩을 거두어 각사의 공물에 응하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신들이 본사 당상, 양사 장관과 서로 상의하여 양호의 결수(結數)와 공물값을 산출하였는데, 우의정 조익(趙翼)은 ‘1결당 쌀 서 말씩을 거두어 각사의 공물값으로 삼는다면 꽤 많이 남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거두는 양도 적어질 것이므로, 요역이 무거운 백성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역이 가벼운 고을도 내는 양이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게 될 것이니, 비록 다른 곳으로 옮겨 정해 쓰는 일이 없더라도 역이 절로 균등해지고 상하가 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대책으로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과 형조 판서 이시방, 대사간 민응형(閔應亨)의 뜻도 조익과 같았습니다.</p> <p>영의정 이경여(李敬輿)는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공물은 토산물로 정한 뜻을 이미 잃었으므로 모두 쌀과 베로 수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 농민과 공녀(紅女)의 손에서 나온 것이니, 결수를 계산해서 값을 거두는 것이 이치상 균평(均平)하다.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폐단을 한꺼번에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니, 대강 바로잡은 뒤에 양도에 그 좋고 나쁜 점을 물어 참작하고 헤아리되 한결같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따르며, 영남은 형편을 보아서 시행하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p> <p>대사헌 이후원(李厚源)은 말하기를 ‘역을 고르게 하는 것은 좋지만 쌀로 바꾸어 수납하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남는 것을 취한다는 혐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은군(海恩君) 윤이지(尹履之), 이조 판서 한흥일(韓興一), 호조</p>	<p>時昉, 通解事務, 亦合此任, 使之兼察相議, 按閱三南元貢案及田結總數, 參酌輕重, 以爲永式。” 又啓曰: “昨於榻前, 李時昉請通兩湖, 每結收三斗米, 以應各司貢物。 今日臣等, 與本司堂上、兩司長官, 相與商確, 筭出兩湖結數及貢物價多寡, 則右議政趙翼以爲: ‘收一結三斗之米, 應各司貢物之價, 則頗有贏餘, 而其出於民者亦輕, 非但役重之民爲便, 役輕之邑, 有減而無加, 雖無移用之舉, 而徭役自均, 上下俱足。 當今之策, 莫善於此。’ 兵曹判書李時白、刑曹判書李時昉、大司諫閔應亨之意, 與翼同。 領議政李敬輿以爲: ‘我國貢物, 已失任土之意, 竝以米、布輸納, 皆出於農民、紅女之手, 計結收價, 理宜均平。 偏重偏輕之弊, 不可不一番釐正, 大綱既正之後, 問其便否于兩道, 參商計度, 一從民願, 而嶺南則觀勢行之爲便。’ 大司憲李厚源以爲: ‘均役則可矣, 而換米以納, 似有難便之勢, 且涉取贏之嫌。’ 海恩君尹履之、吏曹判書韓興一、戶曹判書李基祚之意, 與厚源同。 群議雖無大段矛盾, 而不能無緩急先後</p>
--	--	--

	<p>판서 이기조(李基祚)의 뜻도 후원과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비록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늦추자는 의견과 서두르자는 의견, 우선하자는 의견과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서로 달랐으니, 후일 등대할 때에 다시 품의하여 정하도록 하소서.”</p> <p>하니, 따랐다. 그러나 그 뒤로 이런 논의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p>	<p>之異，請待後日登對，更稟以定。”從之。是後，議竟不行。</p>
<p>효종 4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6월 22일(갑진) 2번째기사 비변사가 농사를 위해 지방관리 중 선정하는 자를 잉입하라 하니 따르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왕정(王政)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는 농상(農桑)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자와 맹자께서도 모두 농사철을 빼앗지 않는 것이 백성을 보존하는 급선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6명의 청나라 사신 때문에 민력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내년의 희망은 다만 힘껏 농사짓는 데 있을 뿐인데 하늘이 재앙을 내려 가뭄과 황충의 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앞장서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진흥하는 책임은 오로지 수령에게 달려 있습니다.</p> <p>공산 현감(公山縣監) 이태연(李泰淵)과 충원 현감(忠原縣監) 이진(李軫)은 치적이 도내에서 으뜸이어서 온 고을이 편안하고 선정이 멀리까지 소문났습니다. 그들을 사농(司農)과 소부(少府)로 부르는 것이 승진의 은전을 베푸는 일에 진실로 합당합니다마는 이러한 때에 친구 수령을 맞고 보내는 폐단 또한 적지 않아 수십 명의 농민들이 수십 일 동안 도로를 왔다갔다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농부가 농사를 못 지으면 열 사람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따져본다면 굶주리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두 고을의 수령을 이미 출대(出代)하셨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변통하여 한 고을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닌 듯합니다. 이태연과 이진을 모두 잉입시키소서.</p> <p>옥천 군수(沃川郡守) 정기풍(鄭基豐)은 그 성적(聲績)이 어떠한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교체하는 폐해가 공산현 등과 다르지 않으니, 역시 똑같이 시행하셔야</p>	<p>備邊司啓曰：“王政所重，莫先於農桑。故孔、孟俱以不奪農時，爲保民之先務。況今年清使六人之行，民力已盡，嗣歲之望，只在力田，而天之降災，旱蝗相仍。前頭安集賑恤之責，專在守令。如公山縣監李泰淵、忠原縣監李軫，治績爲一道最，百里按堵，聲聞遠播。司農、少府之徵，固合陟明之典，而此時迎送之弊，亦甚不貲，數十荷鋤之民，往來道路，必費數十日字。一夫不耕，十人受飢。以此計之，飢民幾何？兩邑守令，雖已出代，及今變通，其施惠於一邑，似不淺淺，李泰淵、李軫，竝令仍任。沃川郡守鄭基豐，雖未知聲績之如何，而遞易之弊，與公山等官無異，亦宜一體施行。”上從之。</p>

	<p>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p>	
<p>효종 4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7월 6일(정사) 2 번째기사 가뭄이 들자 이경여가 수어사로 이시방을 적 임자로 천거하다</p>	<p>이때에 크게 가뭄자 상이 걱정하여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재(旱災)가 이 지경이니, 불쌍한 우리 백성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하니, 영의정 이경여가 아뢰기를, “화기(和氣)는 상서로움을 오게 하고 괴기(乖氣)는 재변을 불러오기 마련입니 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동안 상하가 가로막혀 화기가 이르지 못해서 이렇듯 전에 없던 재앙이 있는 듯합니다. 듣건대 양서(兩西) 지방의 한재가 더욱 참혹한데 관조(官糶)를 이미 다 풀어 주어서 진흙해 줄 길이 없다 하니, 해서(海西)에서 거둔 쌀을 경창(京倉)에 그대로 놔두어 진흙하는 자본으로 삼 게 하소서.” 하자, 상이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 “함경도의 관조가 무려 30만 곡(斛)이나 되는데, 이름만 있고 실제의 양은 없 다. 이는 대체로 전후로 일을 맡은 자들의 죄이다.” 하니, 경여가 아뢰기를, “남한산성도 포핍(逋欠)이 많은데, 더구나 영북(嶺北) 수천 리나 떨어진 외방 의 경우이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받을 만한 것은 받아내고 받을 수 없는 것은 버려 두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어사(守禦使)를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누가 적임자인가?” 하니, 이경여·조익 등이 모두 이시방을 천거하자, 상이 따랐다. 연성군(延城 君) 이시방이 아뢰기를, “하늘에 응할 때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구황(救荒) 정책으로는 긴</p>	<p>時, 大旱。 上憂之, 引見大臣及備局 諸臣。 上曰: “旱災至此, 哀我民斯, 何以爲生?” 領議政李敬輿曰: “和氣致 祥, 乖氣致異。 臣之愚慮, 竊恐邇來, 上下否隔, 和氣未臻, 有此無前之災 也。 聞, 兩西旱災尤慘, 而官糶已散, 無以賑救, 請海西收米, 勿納京倉, 留 置本道, 以爲賑救之資。” 上從之。 上曰: “咸鏡道官糶, 多至三十萬斛, 而名存實無, 蓋前後任事者之罪也。” 敬輿曰: “南漢山城尙多逋欠, 況嶺北 數千里之外乎?” 上曰: “然則可徵者徵 之, 不可徵者棄之。” 上曰: “守禦使 今當差出, 誰可者?” 李敬輿、趙翼等 皆薦李時昉, 上從之。 延城君李時昉 曰: “應天不可以文, 荒政莫如節損。 應罷之役, 不緊之務, 及時裁損, 以爲 敬天戒懼之實。” 上曰: “卿言是矣。 亟令講定。” 上謂敬輿曰: “卿筭中李 性恒左貶, 尤不明白了, 予當明言之。 性恒避辭中有曰: ‘殿下雖欲打破朋黨, 無人奉行。’ 今日朝臣, 設有此習, 何 敢爲此言乎? 又引李浚慶之事, 自爲明</p>

	<p>축만한 것이 없습니다. 혁파해야 할 공사와 긴급하지 않은 일은 제때에 알맞게 줄여서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실상으로 삼으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속히 강구하여 정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상이 경여에게 이르기를, “경이 차자 속에서 ‘이성항(李性恒)을 좌천시킨 것은 더욱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내가 그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겠다. 성항이 피혐(避嫌)한 말 속에 ‘전하께서 봉당을 타파하고자 하시더라도 받들어 시행할 사람이 없습니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조신(朝臣)들이 설령 이런 습성이 있을지라도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이준경(李浚慶)의 일을 인용하여 스스로 분명한 증거로 삼으면서 나에게 감히 가볍게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어찌 이런 도리가 있단 말인가. 한번 좌천시킨 것은 안 될 것이 없다.”</p> <p>하니, 조익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참으로 옳습니다만, 봉당을 타파하기는 어렵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이 나의 뜻에 매우 합치된다. 받들어 시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말라.”</p> <p>하였는데, 이경여의 차자 속에 조제(調劑)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부한 것이다.</p>	<p>證，使予不敢輕議，寧有是理？一番左貶，未爲不可。” 翼曰：“聖教誠然，而打破難矣。” 上曰：“領相之言，深愜予意。勿謂無人奉行也。” 李敬輿箚中，有調劑之語，故有是教。</p>
<p>효종 4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7월 7일(무오) 2 번째기사 비변사가 절약을 위해 혼인과 장례 등이 제</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해야 하니, 여염에서의 혼인·상장(喪葬)·가사(家舍)의 복·음식을 제도에 벗어나게 하고 있는 것은 일체 금지시키소서. 그리고 무격(巫覡)과 맹복(盲卜)이 행하는 음사(淫祀)와 독경(讀經)하는 등의 일로 재화와 곡식을 소비하는 것도 마땅히 통렬하게 금지시키소서. 또 봉선(奉先)하고 향상(享上)하는 물건이라도 다 임시로 줄여 구황(救荒)하고 제급(濟急)하는 자본</p>	<p>備邊司請：“節損浮費，閭閻婚姻、喪葬、家舍、衣服、飲食之踰制者，一切禁之。 巫覡、盲卜，淫祀讀經等事，凡在傷財費穀者，亦宜痛禁。 雖在奉先享上之物，亦皆權減，以爲救荒濟急之資， 以盡恤災勤民之道。” 答曰：</p>

<p>도에 벗어남을 금하라고 청하다</p>	<p>으로 삼아 재변을 구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도를 다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그 가운데 술을 빚어 취하도록 마시는 폐단은 곡식을 가장 많이 낭비하는 일이니, 더욱 엄금해야 한다. 공진(供進)하는 술도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p>	<p>“依啓。 此中作酒崇飲之弊， 糜穀最甚， 尤加嚴禁。 供進之酒， 亦令停罷。”</p>
<p>효종 4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7월 19일(경오) 2번째기사 영의정 이경여가 기전과 양서 지방의 구황 대책에 대해 상차하다</p>	<p>영의정 이경여가 상차하기를, “무릇 천하의 일은 기회를 잃지 않아야 힘을 덜 들이고 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전(畿甸)과 양서(兩西) 지방에 대한 구황(救荒) 대책을 마땅히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듯 해야 하는데, 일이 닥친 뒤에 구제하고자 한다면 10배의 힘을 들여야 할 것이니, 호조와 상평청(常平廳)으로 하여금 제때에 강론하게 해서 때 늦은 탄식을 면하게 해야 합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선혜청(宣惠廳)의 가을 조세를 보통 해에 견주어 급히 변통하지 않으면, 이는 백성들을 몰아다가 사방에 흩어지도록 재촉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모두 삭감하거나 반감할 경우 기전의 정공(正供)과 온갖 수응(需應)할 일들이 형편없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海西) 전세(田稅)의 경우 5두미(斗米)를 올려 오지 않은 것을 모두 머물러 두었다가 구황의 자본으로 삼는다면, 해조(該曹)의 경상 비용에 부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이른바, 일이 닥친 뒤에 구제하고자 한다면 10배의 힘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급히 해조와 선혜청으로 하여금 공물(貢物)의 완급과 숙저(宿儲)의 다소를 참작하고 헤아려서 감해도 될 것은 감하고 부득이한 것은 그대로 두는 등 상황에 따라 변통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소서. 그리고 경기 지방은 선혜청의 가을 조세를 전부 감하거나 3분의 1만 거두게 하소서. 황해도의 5두미는 이미 머물러 두도록 허락하였으니, 전세(田稅)로서 현재 본도에 있는 것도 운</p>	<p>領議政李敬輿上筭曰： 凡天下之事， 不失其機， 可以力省而功就。 畿甸、兩西救荒之策， 當如救焚拯溺， 事至欲救， 費力十倍， 宜令戶曹及常平廳， 及時講論， 俾免後時之歎。 仍念， 宣惠廳秋稅， 比擬常年， 不急變通， 則是驅民而促之四散也。 然若全減或賜半， 則畿甸惟正之供及凡百需應， 無以成形。 至於海西田稅， 五斗米未上來者， 竝留爲救荒之資， 則該曹經用， 有所不贍。 臣所謂事至欲救， 費力十倍者此也。 請急令該曹、宣惠廳， 參商貢物緩急、宿儲多少， 減其可減， 存其不得已者， 推移補綴。 京畿則宣惠廳秋稅， 或全減， 或徵三分之一。 黃海道五斗米， 已許留置矣， 田稅時在本道者， 亦令停運， 使本道物力， 稍有所賴， 然後聖上恤災愛民之仁， 方有所着手處， 而填壑流亡之患，</p>

송을 정지하게 해서 본도의 물력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야 성상께서 재변을 구제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인(仁)이 비로소 착수할 곳이 있게 되고, 유량하고 길에 쓰러져 죽는 걱정도 혹 조금은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도는 이미 6두미를 삭제했는데 지역이 또 멀어서 곡식을 옮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남(三南)은 3도와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풍년이 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 결실을 맺을지도 미리 알기 어려우니, 배를 띄우는 일을 참으로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본도의 온갖 공사(公私)의 신역(身役) 및 상납하는 각종 포물(布物)과 양영(兩營)에서 받아들일 것 가운데 적당량을 임시로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가운데에도 완급(緩急)의 차이가 없지 않고 재변을 당한 곳도 경중의 차이가 없지 않을 것인데, 활협(濶狹)을 참작하여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은 오직 해사(該司)와 해도(該道)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해사와 해도로 하여금 취재(聚財)의 말단적인 일만을 하지 말고, 백성을 다친 사람처럼 생각하는 성상의 뜻을 본받게 하며, 후일에 있을 처리하기 어려운 사세를 생각해서 상례(常例)만을 따르지 말고 특별히 선처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인족(隣族)에게 책임지우는 폐단은 원래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서도 큰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크게 흉년이 든 때에 백성에게서 끌어내는 정치를 행하여 끝내 실질적인 소득은 없이 백성의 유량만을 재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렵고 쉬움을 따지지 말고 3도의 감사로 하여금 일체 침책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위에 있는 자는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미루어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해야 할 것이니, 상례(常例)에 구애받지 말고 임시로 맥도(狹道)를 행한다면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고 백성의 재변을 구제하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亦或少救。平安道已除六斗米，地且絕遠，移粟甚難。且三南雖不如三道之比，亦非豐稔之歲，將來結實，且難預知，泛舟之役，固不可輕議。本道凡干公私身役及上納各樣布物、兩營所納，量宜權停，此爲救民之急務，而所納之中，不無緩急，被災之處，不無輕重，參酌闊狹，弛張得宜，唯在於該司及該道。令該司、該道，勿爲聚財之末務，仰體如傷之聖意，念後日難處之勢，毋循常例，另加善處。且隣族之弊，元是病民之大者，況此大無之年，忍行剝民之政，終無實得，只促其流亡乎？此則勿計難易，令三道監司，一切勿侵。且在上者，推不忍人之心，行不忍人之政，掃却常例，權行狹道，則以答天譴，以恤民災，有何難乎？

答曰：“所陳民事，誠如卿言，予甚憂懼，不知所出。昔張蘊古之言曰：“以一人治天下，不以天下奉一人。”況遇災恐懼，節損自奉，以爲便民之計，豈敢靳惜，重貽民隱哉？當與有司之臣，相議處之。”

	<p>“진달한 바 민사(民事)가 참으로 경의 말과 같으므로 내가 매우 걱정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옛날 장온고(張蘊古)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지 천하가 한 사람을 받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더구나 재변을 만나 두렵게 여기는 마당에 자신을 봉양하는 비용을 절감해서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계획을 어찌 감히 아껴 거둬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 주겠는가. 유사(有司)로 있는 신하와 서로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p>	
<p>효종 5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8월 1일(임오) 3 번째기사 비변사가 구휼을 태복시와 군기시의 미곡으로 할 것을 청하니 따르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양서(兩西)를 진구할 대책에 대해 회의를 했는데, 모두들 기민(飢民)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는 올해 거둬 들일 쌀을 감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사의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전결(田結)이 감축되리라는 것을 따라서 알 수 있는데, 전결이 일단 감축되면 거둬들이는 쌀도 자연 감해될 것입니다. 원수(元數)가 이미 감해진 뒤에 또 양감(量減)하는 거조가 있게 될 경우, 1년의 수입량을 1년 지출량과 비교하면 필시 부족하게 될 걱정이 있을 것인데,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달리 좋은 대책이 없습니다. 선조(先朝) 을유년에 재생(裁省)했던 규정에 의거하여 태복시(太僕寺)에서는 외구마를 줄이고 군기시(軍器寺) 및 훈국(訓局)에서도 군기 만드는 일을 정지하게 하여 거기서 줄인 미포(米布)로 부족한 경비의 수를 충당한다면, 경비를 절감하고 기민(飢民)을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 조금이나마 효력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경기와 해서(海西) 지방에서 새로 생산되는 것을 진상하는 것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찌 마음에 편하겠는가. 대비전(大妃殿)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모두 정파(停罷)하는 것이 좋겠다.”</p>	<p>備邊司啓曰：“臣等會議兩西賑救之策，則皆以爲，飢民之蒙惠，莫過於量減今年收米，而以卽今農事觀之，前頭田結之減縮，從可知矣，田結既縮，則收米亦隨而減。元數既減之後，又有量減之舉，則以一年所入之數，較諸一年之所出，必有不足之患。百爾思度，無他善策，請依先朝乙酉年裁省之規，太僕寺減外廐馬，軍器寺及訓局，亦停軍器打造之役，以其所減之米、布，添補於經費不足之數，則其於節損救民之道，不無一分之效矣。”上從之。仍下教曰：“京畿、海西新產之供，雖云不多，豈安於心乎？大妃殿外，今年則竝宜停罷。”</p>

<p>효종 5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8월 2일(계미) 2 번째기사 예조가 줄인 진상품 외에는 받아들여도록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p>	<p>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국상(國喪) 이래로 온갖 진상품을 일체 정파했는데, 요즘 한재(旱災)로 인하여 주방(酒房)의 어운(御醞)까지도 다시 임시로 줄였으므로 신들의 마음이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도에서 새로 생산되는 것을 진상하는 것까지 이제 또 모두 줄인다면 백성이 임금을 받드는 정성을 우러러 펼 바가 없습니다. 새로 생산된 것을 진상하는 것만큼은 줄이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풀 한 포기 쌀 한 톨도 백성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는데, 또 어떻게 구복(口腹)을 채우느라 가슴속에 불안을 끼치겠는가.” 하였다.</p>	<p>禮曹啓曰：“國恤後凡干上供，一切停罷，近因旱災，酒房御醞，亦復權減，臣等之心已極未安，而兩道新產之供，今又盡減，則臣民享上之誠，無所仰申。新產進供，請勿蠲減。” 答曰：“一草一粒，無非出於民，又豈可以口腹之供，貽中心之不安乎？”</p>
<p>효종 5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8월 6일(정해) 1 번째기사 비변사가 흉년이므로 군사를 축소할 것을 건의하니 따르다</p>	<p>비변사가 아뢰기를, “먹을 것을 버리고 군사를 버리는 것에도 차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게 흉년이 든 해를 당하여 원근의 군사를 모아 나라의 곡식을 허비하고 백성의 일을 해치고 있으니, 제도(諸道)의 어영군(御營軍) 및 기전(畿甸)의 정초군(精抄軍)이 번갈아 번(番)서는 일을 정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송도(松都) 속오군(束伍軍)의 번을 없애 남은 쌀은 본부에 머물러 두고 기민(飢民)을 구제하며 객사(客使)를 접응하는 데 쓰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p>	<p>丁亥/備邊司啓曰：“去食去兵，亦有次第。當此大無之年，聚會遠近之兵，以費國廩，且妨民事，請停諸道御營軍及畿甸精抄軍之更番，而松都束伍除番之米，則使留本府，以爲賑救飢民，接應客使之用。” 從之。</p>
<p>효종 5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10월 12일(임진) 2 번째기사 헌부가 공가에 쓰이는 여염분과 어전 등을 줄이라고 청했으나 따</p>	<p>헌부가 아뢰기를, “산림과 천택(川澤)에 금법(禁法)을 쓰지 않는 것은 바로 옛날 성왕들이 어진 정치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입안(立案)하는 법은 본래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 폐단이 근래 더욱 심하여 일반 백성들이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식자들이 개탄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간관들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성상의 뜻을 우러러 받들어 폐단을 혁파해야 한다는 의논을 제일 먼저 진달했는데, 곧이어 살펴 처리하겠</p>	<p>憲府啓曰：“山澤無禁，卽古聖王施仁之一端也。我國立案之規，本是病民之疵政，而其弊近來益甚，齊民之怨苦，識者之慨歎久矣。聖上嗣服之初，諫官仰體若保之意，首陳革弊之議，仍有查處之命，中外忻忻，傾聽聳觀，皆以爲：‘自今以後，庶復見聖王之政</p>

르지 않다

다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외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며 귀기울여 듣고 발돋움하여 바라보며 모두들 이제부터는 다시 성왕의 정치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찌 끝내 빈 문투가 되고 말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신들이 해조에 계하한 문서를 가져다 살펴보니, 수진궁(壽進宮)·내수사(內需司) 및 여러 궁가에 소속된 염분(鹽盆)·어전(漁箭)·시장(柴場) 중에서 줄인 것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각 아문의 공용으로 쓰이는 것은 혁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이고 혁파한 것은 얼마입니까? 당초 대간이 논계한 뜻과 성상께서 살펴 처리하겠다고 명하신 그 뜻이 어찌 이와 같은 데서 그치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조사만 해보고 도로 그만두어 거듭 원근의 여망을 실망시키는 것은 애초 조사하지 않는 것만도 못합니다. 성상께서 매번 궁가를 우대할 생각을 하시니, 이는 참으로 돈독히 하고 화목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의리는 어느 한쪽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수진궁 이하에 대해서는 단지 성상께서 처치하시기에 달렸는데, 또한 어디에서 견제를 받아 시원하게 시행을 하지 못하십니까. 또한 사대부나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혁파해야 할 대상 속에 들어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바르게 하여 아래를 거느리는 실상이 없으면 인심이 어찌 흔쾌히 복종하려 하겠습니까. 청컨대 해조로 하여금 선조(先朝)에서 내려주신 문서를 가져다 살펴서 그중에서 사사로이 입안한 것은 모두 시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록 분명히 내려준 곳이라도 만약 지나치게 범람한 것이 있으면 또한 헤아려 줄이거나 혁파하소서. 각 아문에 속한 것도 공용에 관계없는 것은 아울러 혁파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도에 신칙하여 이 이후로 입안하기를 도모하는 자는 계문하여 무겁게 다스려서 쌓인 폐단을 혁파해 못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여러 궁가의 어염 등에 관한 일은 합해 계산하면 그 수가 비록 많지만 나누

矣.’ 豈料終歸於虛套乎? 臣等取考該曹啓下文書, 則壽進宮、內需司及諸宮家所屬鹽盆、漁箭、柴場, 所減者未滿十分之一, 各衙門係干公用者, 亦令勿罷。 以此言之, 則所存者幾何, 而所革者幾何耶? 當初臺諫之論啓, 聖上之命查其意, 豈欲如是而止耶? 與其既查而還寢, 重失遠近之顯望, 不如初不查覈之爲愈也。 聖上每以優待宮家爲念, 此固敦睦之美意, 而恩義不可偏廢。 至於壽進宮以下, 則只在聖上處置中, 亦何所牽制而不能快施乎? 且士夫、常漢等所占, 則皆入應罷之中, 在上之人, 既無正己率下之實, 則人心豈肯悅服乎? 請令該曹, 取考先朝賜與文書, 其中私自立案者, 竝勿施行, 而雖分明賜與處, 如有過濫者, 亦量加減革。 各衙門不係公用者, 竝令革罷。 且申飭諸道, 此後圖出立案者, 啓聞重治, 以革積弊, 以慰群情。” 答曰: “諸宮家魚鹽等事, 合而計之, 則其數雖多, 分而觀之, 則不爲過濫。 不必如是煩論也。”

	<p>어 살펴보면 지나치게 범람하지는 않다. 이와 같이 번거롭게 논할 필요가 없다.”</p>	
<p>효종 5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10월 23일(계묘) 1번째기사 대신들을 인견하고 다 시는 술을 마시지 않 겠다고 말하다</p>	<p>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이경여가, 천재가 너무 참혹하고 시정(時政)에 잘못이 많다는 점을 극진히 진달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면직을 구하였는데, 상이 너그러이 답하고 허락치 않았다.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태묘가 어떠한 곳인데 제사에 차임된 관원으로 심지어 술에 취해 일을 살피지 않는 자까지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무리들은 반드시 무거운 법으로 처치한 뒤에야 백관을 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일찍이 심양(瀋陽)에 있을 때에 술을 가까이 한 적이 많았던 것은 여러 경들이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저위(儲位)에 오른 뒤로는 일체 술을 끊었다. 저들이 만약 정숙하고 공경히 일을 받들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잠시 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니, 호조 판서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오늘 친히 하교를 받들었으니, 앞으로 성상께서 만약 다시 술을 드시게 되면 신들은 마땅히 술잔을 깨뜨리고 간쟁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좋다. 내가 마시지 않을 것을 이 집을 두고 맹세한다.” 하였다.</p>	<p>癸卯/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李敬輿極陳天災孔慘，時政多闕，仍引咎乞免，上優答不許。 上謂諸臣曰：“太廟是何等地，而差祭之官，至有醉不省事者？如此之輩，必置重典，然後庶可以策勵群工矣。 予曾在瀋中，多近杯勺，此諸卿之所知也。 自陞儲位，一切斷之。 彼若以肅敬將事爲心，則頃刻之間，不飲何難？” 戶曹判書元斗杓曰：“諸臣今日親承聖教 日後聖上若復御杯勺，則臣等當破酒器而諫矣。” 上曰：“卿言好矣。 予所否者，有如此屋。</p>
<p>효종 5권, 1년(1650 경인 / 청 순치(順治) 7년) 윤11월 25일(갑 진) 1번째기사 왕대비가 옛 도총부로 이어하고 시약청이 약</p>	<p>왕대비가 또 옛 도총부로 이어하였다. 시약청이 벽사단(辟邪丹)과 옹황살귀원(雄黃殺鬼元)을 제조해 올렸다.</p>	<p>甲辰/王大妃又移御舊都摠府。 侍藥廳劑進辟邪丹、雄黃殺鬼元。</p>

을 올리다	<p>헌부가 【대사헌 홍무적, 집의 심로, 장령 임의백.】 아뢰기를, “수원 부사 변사기는 본래 먼 변방의 미미한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힘과 마음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데 도리어 본직을 깔보고 태연히 늙은 재상으로 자처하면서 병으로 사직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미 매우 통분하고 놀라운데, 임임된 뒤에는 더욱 스스로 교만하여 완전히 직무를 폐하였습니다. 한 도의 방백이 된 자는 반드시 보고 들은 바가 있어 하등의 고과에 두었을 것인데, 어찌 조정에서 방백을 들어 탄핵하고 사기를 임임시킬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감사의 직임은 체면이 지극히 중합니다. 지금 한 수령을 하등의 고과에 두었다는 것으로 갑자기 파척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또한 어찌 방백을 설치하여 포폄하는 임무를 맡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근래 떠도는 의논으로 인해 진정시키는 계책을 삼고자 하여 이런 놀랍고 기이한 거조가 있었을 것입니다.</p> <p>사기가 총애받는 정승에게 자취를 의탁하여 추악한 태도를 골고루 다해 나랏 사람들이 모두 그를 열자(孽子)라고 일컫습니다. 수원에 제수된 뒤로 소를 잡고 술을 빚어 날마다 장관(將官)들과 서로 마주 앉아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며 장사들의 마음을 사니, 보는 사람치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람들로 부터 말을 듣게 된 까닭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천재와 시변이 끝이 없어 임금과 신하 상하가 겨를없이 근심하고 있는데, 사기는 무식한 무부로 서울 가까운 병사를 주관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 또 이와 같으니, 식자들이 근심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 적청(狄靑)이 추밀사(樞密使)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장수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언 비어가 있자 구양수(歐陽修)가 차자를 올려 그의 직을 파직하도록 청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말하지 않았는데 구양수가 유독 그 점을 말하자, 인종(仁宗)이 가상하게 여겨 곧 적청을 추밀에서</p>	<p>憲府【大司憲洪茂績、執義沈^뽽、掌令任義伯】啓曰：“水原府使邊士紀，本一遐方微末人也。所當竭力盡心，以報國恩，而乃反輕視本職，偃然以老宰自處，至於以病辭職，已極痛駭。及其仍任之後，益自驕慢，專廢職務，爲一道方伯者，必有所聞見，而置諸下考，豈料朝廷至於舉劾方伯，而仍任士紀乎？監司之任，體面極重，今以一守令之置下考，遽至罷斥，則又何必設置方伯，委以褒貶之任乎？此必因近來浮議，而欲爲鎮定之計，有此駭異之舉也。士紀托跡倖相，備盡醜態，國人皆稱其孽子。自授水原，屠牛釀酒，日與將官，相對宴飲，以結將士之心，見之者莫不爲怪，此所以致人言也。況方今天災時變，罔有紀極，君臣上下，遑遑憂悶，而士紀以無識武夫，處於近京重兵之地，其所作爲，又如此，識者之憂，固其勢也。昔狄青爲樞密使時，人皆稱賢將，而其時適有訛言，(歐陽脩) [歐陽修] 陳筭請罷其職。時人皆不言，而(歐陽脩) [歐陽修] 獨能言之，仁宗嘉之，卽遞狄青樞密，出</p>
-------	--	--

	<p>체직하고 지진주(知陳州)로 내보냈습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를 미리 근심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감히 군상에게 말하는 자치고 구양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기 감사 김광옥은 도신(道臣)으로서의 체통과 전례를 깊이 체득한 사람으로 별로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청컨대 변사기를 파출하고, 김광옥을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p> <p>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p>	<p>知陳州。 今世之人， 預憂伏藏之禍， 不顧其身， 敢言於君上者， 未有如(歐陽脩) [歐陽修] 者也。 京畿監司金光煜， 深得道臣體例， 別無所失。 請罷黜邊士紀， 還收金光煜罷職之命。 ”</p> <p>上不從。</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월 20일(무술) 2번째기사</p> <p>경상 우병사 황헌을 면유하고 양서 지방의 백성을 구휼하는데 힘쓰게 하다</p>	<p>경상 우병사 황헌(黃濩)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내보내고, 이어 입시한 승지에게 하교하였다.</p> <p>“어제 서쪽에서 온 내관(內官)의 말을 듣건대, 서쪽 백성들의 기근에 허덕이는 정상이 극히 참담하다 하니 내 마음이 매우 측은하다. 승지는 이 뜻으로 특별히 양서(兩西)의 감사와 병사에게 유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정이 크게 염려하는 뜻을 유념하여 있는 마음을 다해 구휼하게 하라.”</p>	<p>慶尙右兵使黃濩辭朝， 面論以遣之。 仍下教于入侍承旨曰： “昨聞西來內官之言， 西民飢饉之狀， 極其矜慘， 予甚惻然。 承旨以此意， 特諭于兩西監、兵使， 使之體朝廷軫念之意， 盡心救恤。”</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2월 5일(임자) 2번째기사</p> <p>평안도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니 약물을 보내 구제하게 하다</p>	<p>평안도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관원을 보내 본도의 중앙이 되는 곳에 여제(癘祭)를 베풀 것을 명하고, 또 의사(醫司)에 명하여 약물을 나누어 보내 구제하게 하였다.</p>	<p>平安道癘疫大熾， 命遣官， 設祭於本道中央之處， 又命醫司， 分送藥物以救之。</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2월 10일(정사) 2번째기사</p>	<p>상이 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서전》의 우공을 강독하였다. 연신(筵臣)이 각기 기근에 시달리는 양서(兩西)의 정상을 진달하니, 상이 관향미(官餉米) 9만 2천 9백 석을 풀어 구제할 것을 명하였다.</p>	<p>上召對玉堂講官， 講《書傳》《禹貢》。 筵臣各陳兩西飢饉之狀， 上命以管餉米九萬二千九百石， 賑貸之。</p>

<p>강관을 소대하여 《서전》을 강하고 양서 지방에 관향미로 구제할 것을 명하다</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2월 21일(무진) 1번째기사 전 영의정 이경석과 전 예조 판서 조경을 인견하니 감사의 말을 아뢰다</p>	<p>상이 전 영의정 이경석(李景奭)과 전 예조 판서 조경을 인견하였다. 경석 등이 나아가 아뢰기를, “성상의 전후에 걸친 진지하고 간절하신 회유로 저들을 감동하게 하였고 또 대군(大君)의 행차를 통하여 조정에서 극력 주선해 주신 은덕으로 이제 두 번 사는 사람이 되어 다시 지척의 천안을 뵈게 되었으니, 살리고 보살피신 은택은 죽을 때까지도 갚기 어려워 감사하는 눈물만 날 뿐입니다.” 하니, 상이 경석에게 이르기를, “경이 국사에 마음을 다하려 하였으나 마침내 그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늘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 드디어 오늘을 보게 되었으니 나의 기쁨이 어찌 한이 있겠는가.” 하고, 이어 중관(中官)에게 각각 황감(黃柑) 한 그릇씩 하사할 것을 명한 뒤에, 또 경석에게 이르기를, “경은 부디 나를 멀리 버리지 말라. 나는 국가의 대사를 자문하고 싶을 뿐이다.” 하였다. 경석은 배사(拜謝)하고 물러갔다.</p>	<p>戊辰/上引見前領議政李景奭、前禮曹判書趙綱，景奭等進曰：“曲蒙聖上前後開諭懇懇，使彼感動，且於大君之行，得蒙朝家極力周旋，今爲再生之人，更近咫尺之光，生成之澤，沒齒難報，只自感泣而已。”上謂景奭曰：“卿欲盡心於國事，而竟至於此。天誘其衷，乃見今日，予之喜幸，曷有其極？”仍命中官，各賜黃柑一器，又謂景奭曰：“卿須不我遐棄。予欲咨訪大事耳。”景奭拜謝而退。</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2월 22일(기사) 2번째기사 호조가 강도의 쌀로 송도의 백성을 구휼하</p>	<p>호조가 강도(江都)의 쌀 1천 석을 송도(松都)의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구제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請以江都米一千石，分賑松都飢民，從之。</p>

<p>자고 칭하니 따르다</p>	<p>헌부가 해서(海西)의 쌀 1만 4백여 석과 피곡(皮穀) 8만 2천 5백여 석을 각 역참(驛站)과 각 고을에 나누어 주되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혹은 유상으로 대출해 주어서 굶주린 백성들의 당장 위급한 형편을 구제할 것을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조처하게 하라고 답하였다. 비국이 의주(義州)·안주(安州)·평양(平壤) 등지에 각각 관향곡(管餉穀) 1천여 석을 내주어 그것으로 동전(銅錢)을 사서 화폐를 통행시키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5두(斗)의 쌀을 거둘 때 그 절반은 동전으로 대신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p>	<p>憲府請出海西米一萬四百餘石、皮穀八萬二千五百餘石，分給各站、各邑，而或白給或散糶，以救飢民目前之急，答曰：“令廟堂酌處。”備局請於義州、安州、平壤等處，各出餉穀千餘石，爲買錢行貨之地，從之。又請以五斗收米，一半代錢，不許。</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3월 26일(계묘) 1번째기사 호조가 백관의 녹봉을 감한 것을 원래대로 하라고 칭하니 따르다</p>	<p>호조가 아뢰기를, “지난해에 흉년이 들어 세입이 크게 줄었고 사신의 행차가 거듭되어 비용이 날로 불어났기 때문에 지난 가을에 정해년(375)의 관례에 따라 백관의 녹봉을 7품 이상은 각기 쌀 1석을 감하고 8품은 쌀 1석을 감하는 대신 콩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대부들이 혹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쌀은 부족하더라도 콩은 그래도 이어 댈 수 있으니, 7품 이상에게 감한 쌀을 또한 콩으로 대신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癸卯/戶曹啓曰：“上年失稔，稅入大縮，客行相續，費用日增。故前秋就做丁亥之例，百官祿俸七品以上各減米一石，八品則減米一石，以豆代給。目今士大夫，或不免阻飢，米雖不足，豆猶可繼。請七品以上所減之米，亦以豆代給。”上從之。</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4월 19일(을축) 2번째기사 왜차 평성부가 면포를 쌀로 바꾸어 달라고 칭하니 5년기한으로 하다</p>	<p>왜차(倭差) 평성부(平成扶)가 우리 나라가 연례로 주는 면포(綿布) 1만 5천 필을 쌀 1만 5천 곡으로 바꾸어 달라고 청하자 조정이 허락하지 않으니, 성부는 반드시 그 요청을 얻어내기 위해 공갈 협박을 마지 않았다. 비국이, 우선 그 요청을 따라 주되 5년간으로 기한을 정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倭差平成扶請以歲給綿布一萬五千匹，換米一萬五千斛，朝廷不許，成扶必欲得請，恐嚇不已。備局請姑從其請，限以五年，從之。</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4월 21일(정묘) 3번째기사 예조가 부묘례가 끝난 후 진하하고 교서를 반포하라 청했으나 따 르지 않다</p>	<p>예조가 부묘례가 끝난 뒤에 백관은 전(箋)을 올려 진하(陳賀)하고 팔방에 교서를 반포하며 또 음복례(飲福禮)를 거행할 것을 청하니, 상이 정지할 것을 명하였다.</p>	<p>禮曹請祔廟禮畢後，百官進箋陳賀，頒教八方，且行飲福宴，上命停之。</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5월 21일(정유) 2번째기사 간원이 정언황의 체직 사건으로 헌부의 관리 를 체차하도록 청하다</p>	<p>간원이 【사간 이해창(李海昌), 헌납 채충원(蔡忠元).】 아뢰기를, “전 제주 목사 정언황은 술을 즐겨 마셔 일을 폐할 뿐만 아니라 본디 풍병(風病)이 있으니, 바다를 건너가 부임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체로 말하면 조정에서 그 실상을 알아서 조치하는 것이 옳은데, 헌부의 관원이 체차할 것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아무리 사람을 가려 말기자는 뜻이긴 하나 함부로 행동한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헌부의 관원들을 체차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관(臺官)이 수령을 체차할 것을 청하는 것은 본디 예삿일이다. 만약 그 사이에 일부러 고된 자리를 피하기 위해 사심을 따른 흔적이 있다면 명백하게 공척해야 옳을 것인데, 어찌 이처럼 몽롱하고 모호한 말로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 나는 매우 인정할 수 없다. 분명하게 다시 아뢰어 처치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는데, 해창 등이 모두 이로 인해 인피하여 체직되었으며 그 뒤에 장응일(張應一) 등을 추고할 것을 특별히 명하였다. 옥당이 상차하여 응일 등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미 추고를 명하였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p>	<p>諫院【司諫李海昌、獻納蔡忠元。】 啓曰：“前濟州牧使丁彥璜，不但嗜酒廢事，素有風痺之疾，其不堪越海赴任，人所共知。然以事體言之，則自朝廷，知其實狀而處之可也，憲府之官至於請遞，則雖是擇人之意，不無妄作之失。請命遞憲府諸官。”答曰：“臺官之請遞守令，自是常事。而若於其間，有厭避循私之跡，則明白痛斥可也。豈如是朦朧模糊，使人不得解見乎？予甚不取。明白更啓，以爲處置之地。”海昌等竝以此引避見遞，其後特命張應一等推考。玉堂上筭請罷應一等，上以已命推考，不許。</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5월 24일(경자) 2번째기사 영의정 김육이 진도 사람의 억울함을 아뢰 었으나 허락하지 않다</p>	<p>영의정 김육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뢰입니다. 지금 이 가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상께서는 위에서 걱정하고 수고하시며 백관은 아래에서 직무를 받들어 행하니, 마땅히 재앙은 저절로 소멸될 것인데도 천지의 괴변과 강상(綱常)의 변이 어찌 그리도 계속된단 말입니까. 재변이 일어나는 뜻은 어떤 일에 대한 조짐인지 알 수 없으나 백성의 목숨에 절박하기가 한재처럼 참혹한 것은 없습니다. 열 줄의 어찰(御札)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허물을 돌리시고, 술을 금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며 언로를 활짝 열어놓기까지 하셨으니, 전하께서 자신을 책망하신 것은 성탕(成湯)도 그보다 못한 것입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효성을 타고나 수많은 군왕 가운데 으뜸이시며 못신하를 예우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기르시지만 형정(刑政)의 사이에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지은 죄는 다 같은데 벌을 적용하는 기준이 간혹 달라서 모면한 자는 다행한 일이지만 벌을 받는 자는 너무도 억울하니, 공정한 대도가 아닌 듯합니다. 우선 요즘의 일로 말하더라도 불찰한 실수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가 고의성이 없는 일인데 신만이 유독 엄중하신 문책을 면하였으며, 그 본가의 한 집안 사람은 혹 파면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옥당과 태상의 관리는 거개가 도배(徒配)되었습니다. 동이를 얹어놓은 그 속에 하늘의 해가 비치지 않은 격이니, 이 어찌 용서해 줄 만한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도(珍島) 사람에게 대해서도 신이 두 번 세 번 계속 진계하여 임금께 번거롭게 고한 죄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이 어찌 바다 밖의 사람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운 뜻이 있어서 그러했겠습니까. 아, 하늘과 인간과는 그 사이가 밀접하여 성상의 분부가 한번 내리자 단비가 뒤따라 뿌리니, 감응하는 효험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도 빠릅니다. 신의 무식한 말을 다시 올릴 필요가 없으나 삼가 염려스러운 것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시 이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해이해지신다면 하룻밤의 비로서 반</p>	<p>領議政金堉上筭曰： 伏以，今茲之旱，胡爲厲矣？聖上憂勤於上，臣工率職於下，宜乎災沴自消，而天妖地怪，綱常之變，一何踵相接也？災變之意，未知何應，而未有切迫於民命，如旱災之慘者也。十行御札，丁寧引咎，至於禁酒減膳，廣開言路，殿下之責厥躬，成湯不如也。伏見殿下誠孝出天，卓冠百王，禮遇群臣，愛養百姓，而刑政之間，不能無失。作罪皆同，用罰或異，免者雖幸，受者最冤，恐非公正之大道也。姑以近日之事言之，出於不察之失，均是無情，而臣獨免嚴譴，其一家之人，或止罷免，而玉堂、太常之官，舉皆徒配。覆盆之下，天日不照，此豈非冤枉之可怨者乎？至於珍島之人，臣之陳啓，再三而不知止，難免瀆告之罪矣。然臣豈有一毫私意於海外之人哉？嗚呼！天人之際，間不容穽，聖教一下，甘澍隨至，感應之效，捷於影響。臣之瞽言，不須更進，而竊恐戒懼之心，倘或因此而少懈，則一宵之雨，必不盡洽於方千里矣。伏願殿下，澄省焉。 答曰：“久旱之餘，得此甘澍，實賴卿</p>
---	---	---

	<p>드시 천리 강토에 두루 흡족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잘 살 피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오랜 가뭄 끝에 이 단비를 얻은 것은 참으로 경들이 지성껏 기도한 공에 힘입은 것이다. 언급한 바 진도 사람의 일은 지극히 공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다만 사체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왕법(王法)으로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였다.</p>	<p>等至誠祈禱。所言珍島人之事，出於至公，寧有他意？第事體有不然者，不得不斷以王法也。”</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5월 25일(신축) 5번째기사 예조가 부모할 때 교서를 반포하자고 청하니 김육의 의견에 따라 허락하다</p>	<p>예조가 아뢰기를, “선왕(先王)과 선후(先后)를 태묘에 올려 부모하고 못 신하들을 조정에서 방락(訪落)하는 것은 곧 선왕의 뒤를 잇고 잊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를 중외에 교유(教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도 진하(陳賀)의 예를 사양하시어 예를 망가뜨리는 일을 초래하지 마소서. 진하와 음복(飲福) 등의 예는 감히 다시 여쭙지는 못하지만 부모한 다음날 백관을 불러모아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겠습니다. 대신에게 의논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중추부사 이경여가 헌의하기를, “대체로 국가의 전례(典禮)는 반드시 천하에 법이 되고 후세에 전할 만한 뒤에야 오래도록 시행되어도 폐단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역대로부터 우리 조종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태묘에 올려 부모하는 것을 막대한 경례(慶禮)로 삼아 번잡한 예문과 의식을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p> <p>아조(我朝)는 성자 신손(聖子神孫)이 서로 뒤를 이어 앞장서서 효성으로 천하를 다스리신 것이 전고에 뛰어났는데, 어찌 상사(喪事)를 마친 뒤에 갑자기 풍성하고 즐거운 행사를 벌여 쓸데없는 예식을 강행하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새로 태묘에 올라가신 선왕의 혼령이 길이 의탁할 곳이 생기고 열성(列聖)과 함께 제물을 흠향하면서 임금의 좌우에 오르내리는 점으로 볼 때 후사</p>	<p>禮曹啓曰：“躋祔先王、先后于廟，訪落群臣于朝，乃繼序不忘之意，不可不教諭于中外，聖上亦不宜撝謙，以歸於失禮之地。陳賀、飲福等禮，雖不敢更稟，而祔廟翌日，招集臣工，頒教中外，似不可已。請議大臣。”從之。</p> <p>領中樞府事李敬輿獻議曰：“凡國家典禮，必爲法於天下，可傳於後世，然後行之久遠而無弊矣。粵自歷代，及我祖宗，罔不以陞祔太廟爲莫大慶禮，彌文縟儀，靡所不舉。惟我朝聖神相繼，率先孝理，迥出前古，豈獨於喪畢之餘，遽爲豐亨豫大之舉，強行無益之浮文乎？正爲惟新陟王，永有依歸，列聖同享，陟降左右，此後嗣之不敢以一己終天之痛，有所謙抑，以孤神顧，以缺輿望，而臣民欽慶，雖出於三年深墨之</p>

(後嗣)로서 감히 자기 자신의 끝없는 아픔 때문에 그러한 예를 사양하여 신령의 돌보심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의 기대를 섭섭하게 할 수 없으며, 신민들이 삼가 경축하는 것이 삼년 동안 거상하는 가운데 행여 병환이 나시지 않기를 기대하던 기쁨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종묘의 막대한 경사는 또한 태묘에 올려 부모하는 성대한 예처럼 경하스러운 일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이따로 송조(宋朝)에서는 태묘에 일이 있을 경우 그때마다 신료로부터 하례를 받고 온 나라에 은혜를 반사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며 경학(經學)을 닦은 진유(眞儒)들 가운데 이를 그르다고 한 자가 없었습니다. 정자(程子)가 ‘하(賀)’자를 ‘위(慰)’자로 고칠 것을 청하고 주자가 상차하여 하례를 중지하라고 한 것은 다 삼년 이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늘날 상제를 마친 이후의 경우와는 또한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삼년상이 겨우 끝나고 부모의 예를 막 거행한 뒤라서 부왕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시어 응당 거행할 전례(典禮)도 모두 중지하고 행하지 않으시는데 더구나 신하들을 방락(訪落)하자마자 먼저 연례(宴禮)를 베푼다는 것은 정례(情禮)로 헤아려 볼 때 무엇보다도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유(先儒)가 한 말에 ‘삼년이 지난 뒤에 혹시 무슨 일로 인하여 악(樂)을 쓰는 것은 좋으나 일부러 베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는데, 악을 쓰는 것과 연례를 베푼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음복하는 연례를 정지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뜻이니 행하는 것이 그만두는 것보다 못합니다.

진하(陳賀)에 있어서는 실로 경솔히 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즉위 때는 새로이 시작되는 것을 하례하고 부모하는 것은 체협(禘祫)과 같습니다. 태묘에 올려 부모한 경사는 감히 하늘에 계신 혼령에게 하례드리지 못하고 그 뒤를 이은 왕에게 대신 하례하는 것입니다. 즉위에 대한 하례를 이미 거상의 초기에 행하였으니 태묘에 올려 부모한 것을 경하하는 것이 또 어찌 길레로 들

中，庶幾無疾之喜，而宗祧莫大之熙事，亦無過於躋祔盛禮之可賀故也。是以宋朝有事太廟，皆有受賀臣隣，頒恩區宇之舉，而其時薦紳諸臣經學眞儒，無有非之者。程子之請改賀爲慰，朱子之上筭停賀，皆指三年之內也，與今日制畢之後，似亦有間矣。然魯喪纔闋，殷禮甫舉，羹墻之慕，聖念彌篤，應行典禮，竝寢不行，況訪落之初，先設宴禮，揆諸情禮，最爲未安者乎？先儒有言：‘三年後如因事而用樂則可也，爲設則不可也。’用樂與設宴何異焉？然則飲福停宴，甚盛意也，行之不如已之。至於陳賀，實難輕廢。夫卽位，賀正始也，祔廟，如禘祫也。陞祔之慶，不敢賀於在天之靈，而替賀於後嗣王也。卽位之賀，已行於亮陰之初，則陞祔稱慶，又何疑於卽吉之後乎？倘深思今日請賀，不專在於歸美君上之意，則兩端之疑，不難斷矣。”領議政金堉獻議曰：“頃者禮曹請陳賀、飲福，聖上不允。外議皆以爲，自上雖不允許，大臣默無一言，以此咎臣等。臣則以爲，此雖載在典章，從前已行之禮，聖上不許之意，特出於悲感繼序之

어선 뒤의 시점에서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하례를 청하는 것이 오로지 임금에게만 아름다움을 돌리는 뜻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의심이 밝혀지기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 김육은 헌의하기를,

“저번에 예조가 진하와 음복을 하자고 청하자 성상께서 윤택하지 않으셨는데, 바깥의 의논은 모두가, 상께서 비록 윤택하지 않으셨지만 대신이 잠자코 한마디도 한 것이 없었다는 것으로 신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예가 비록 법전에 실려 있고 그전부터 이미 행했던 예라 하더라도 성상께서 윤택하지 않으신 뜻은 특별히 슬픈 마음과 선왕의 뒤를 잇는다는 효심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자로서는 마땅히 그 뜻을 따라야 할 일인데, 어찌 감히 반대하여 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삼년이 지난 뒤에 태묘에 부모하고 길복으로 조정에 임하셨으므로 이는 임금이 새로운 정사를 펴는 막대한 경사인데 어찌 진하하고 음복하는 성대한 예가 없을 수 있느냐고 합니다마는, 신의 생각에는 못 신하들이 상을 받드는 정성으로는 사실 당연한 일이나 성상의 입장에서는 스물 다섯 달이 지난 뒤에 아직도 슬픔이 가시지 않고 선왕의 뒤를 잇는다는 걱정으로 차마 조정에 임하여 하례를 받지 못하시니 이는 큰 효자의 거룩한 덕이라고 여겨집니다.

처음 상을 당해 망극한 가운데 보좌에 올라 하례를 받는 것은 폐할 수 없는 큰 예이니, 《맹자》에 이른바 ‘궤연에 나아가 곡을 하니 감히 슬퍼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인데, 삼년이 지난 뒤에 받드시 재차 하례를 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은 이와 같았기 때문에 예관의 뜻에 따라 계청하지 못했으니, 바깥 사람들이 이를 지적하여 잘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이 그 책임을 감히 사양하지 않습니다.

교서를 반포하는 일은 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하는 예는 이 얼마나 큰 일인데 중외에 널리 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은 신이 이미 예

孝思也。 臣子所當將順之不暇，又何敢強而請之乎？或以爲，三年之後，祔于太廟，吉服臨朝，此人君正始莫大之慶也，何可無陳賀、飲福之盛禮乎？臣則以爲，在群臣享上之誠，則固當然也，在聖上則二十五月之後，餘哀未盡，思繼先王而不忍臨朝受賀者，此達孝之盛德也。 初喪罔極之中，陸座受賀，此不可廢之大禮，所謂卽位而哭，莫敢不哀者此也。 三年之後，又何必再受賀乎？臣之所思如此，故不能隨禮官之意，而陳請，外人之指以爲非者，臣不敢辭也。 至於頒教之舉，固不可無也。 祔廟之禮，此何等大事，而不爲敷告於中外乎？ 此意則臣已言之禮官矣。” 左議政李時白獻議曰：“附廟後飲福、陳賀，領教中外，古也，自前列聖無不行之者，重其禮也。 陳賀之舉，若在於禫祭後，則喪制甫畢，遽卽受賀，揆之情禮，似爲未安，百官哭泣之餘，旋即陳賀，或近於歌、哭之同時，故曾於明廟禫後，卽有依舊例陳賀之舉，而先正臣李珣時在玉堂，乃以右意，上筭陳列，議大臣停之，祔廟後，只受百官賀，當時之事，至今稱之不

	<p>관(禮官)에게 말해졌습니다.”</p> <p>하고, 좌의정 이시백은 헌의하기를,</p> <p>“부묘한 뒤에 음복과 진하를 행하고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는 일은 고례(古禮)로서 그전부터 열성들께서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은 그 예를 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진하하는 일이 담제를 지낸 뒤에 있으면 상제(喪祭)를 금방 마친 시점에서 바로 하례를 받는 것이므로 정례(情禮)로 헤아려 볼 때 미안한 듯하며, 백관이 곡읍(哭泣)한 끝에 곧 진하하는 것은 노래와 곡을 동시에 하는 경우와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찍이 명묘(明廟)의 담제 뒤에 즉시 구례에 따라 진하례를 행하려 하였으나,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옥당에 있으면서 이상과 같은 뜻으로 상차하여 논열하자 대신에게 의논하여 그 예를 정지하고 부묘한 뒤에 백관의 하례만 받았으니, 그 당시의 일은 이제까지도 칭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방락을 끝내자마자 연회를 베풀어 음복하는 것은 혹 미안하긴 하나, 진하하는 문제는 곧 선왕과 선후를 태묘에 올려 부묘함으로써 종사의 막대한 경사가 되는데 어찌 성상의 남은 슬픔이 사라지지 않은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을 사양하여 조종들께서 대를 이어 행해오신 거룩한 전례(典禮)를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상을 당하신 초기에도 오히려 하례를 받았던 것은 곧 새 임금이 즉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때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p> <p>교서를 반포하는 일의 경우는 비록 보통 때라도 국가에 새로운 전례(典禮)가 있으면 또한 반드시 중외에 효유하는 법인데 더구나 부묘한 뒤에 어찌 널리 고하는 조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에는 진하를 정지해서는 안 되고 교서를 반포하는 것도 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옛말에 ‘요순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마땅히 조종을 본받아야 한다.’ 하였으니, 성명께서는 다시 신중히 생각하소서.”</p> <p>하였는데, 상이 영의정의 의논에 따를 것을 명하였다.</p>	<p>已。今者訪落之初，設宴飲福，雖或未安，至於陳賀一款，則乃先王、先后躋祔于太廟，爲宗社莫大之慶也。豈可以聖上餘哀未盡之私，有所撝謙而廢祖宗繼行之盛典耶？雖在亮陰之初，猶且受賀者，乃正始不可已之舉也。至如頒教之舉，雖在平時，凡有國家新典，亦必曉諭中外，況祔廟之後，安得無敷告之舉乎？愚意，陳賀固不可停，而頒教，亦不可廢也。古語曰：‘欲法堯舜，當法祖宗。’惟聖明之更加三思焉。”上命依領議政議。</p>
--	---	---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5월 26일(임인) 2번째기사 전 진선 송시열의 약 을 사양하고 왕도 정 치를 하라고 아뢰는 상소</p>	<p>전 진선(進善) 송시열(宋時烈)이 상소하여 하사한 약물을 사양하고 또 말하기를, “삼가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 지극하신 어진 마음을 확충하여 왕도 정치로 마음을 가지시고 생민을 염두에 두심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은택을 입지 못한 자가 없게 하소서. 옛날 어느 임금의 굶주린 자를 보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자, 굶주린 자의 말이 ‘원컨대 이것을 천하의 굶주리는 자에게 주소서.’ 하였고, 정 부자(程夫子)는 지성(至誠)을 백성을 장수하게 만드는 약으로 삼았으니, 신은 감히 전하를 위하여 이 말을 바칩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경계하고 가르쳐 준 말은 내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가슴 깊이 새기지 않겠는가. 병세가 조금 나아지면 즉시 올라오도록 하라. 나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겠다.” 하였다.</p>	<p>前進善宋時烈上疏， 謝賜藥物， 且言：“伏願殿下， 推此至仁， 以王道爲心， 生民爲念， 俾無一物之不被也。 昔有人君， 見飢者而賜之食， 飢者曰：‘願以賜天下之飢者。’ 程夫子以至誠爲壽民之丹， 臣敢爲殿下獻焉。” 答曰：“戒誨之語， 予雖不敏， 可不服膺焉？ 病若少愈， 幡然上來。 予日望之。”</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5월 29일(을사) 1번째기사 청차가 함경도에서 개 시하여 물품을 사가다</p>	<p>청차(淸差)가 함경도에 이르러 개시(開市)하여 소 1백 50두, 소금 1천 석, 백지(白紙) 1만 권(卷), 쇠남비 2천 5백 개, 술 2백 50개와 면포(綿布) 등 물품을 사갔다.</p>	<p>乙巳/淸差到咸鏡道開市， 求買牛一百五十頭、鹽一千石、白紙一萬卷、鐵鍋二千五百、釜二百五十及綿布等物。</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6월 2일(정미) 1 번째기사 통제사 유정익이 저축 한 곡식을 상평청에</p>	<p>통제사(統制使) 유정익(柳廷益)이 본영(本營)에 저축한 곡식으로 은 2천 60냥을 교환하여 비변사와 상평청으로 나누어 보내 국가의 비용에 보태쓰라고 하므로 비변사가 이를 아뢰니, 말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p>	<p>丁未/統制使柳廷益以本營所儲穀， 換銀二千六十兩， 分送於備邊司及常平廳， 以補國用。 備邊司啓之， 命賜馬。</p>

<p>보내 국가비용에 보태 게 하다</p>	<p>김익진(金益振)의 삭과(削科)에 대해 바깥 사람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사심을 행사한 자취가 있다면 고관(考官)이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하니 어찌 익진이 관계될 일이겠습니까. 그전부터 삭과되었다가 도로 원상 회복된 자가 한두 사람만이 아니니, 바라건대 억울함을 씻어주어 그 과목(科目)을 복구하소서. 종종 대왕께서는 혼란한 조정을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꾀하셨으므로 당연히 백대토록 신주를 옮기지 않는 제향을 누리야 하는데, 그 이른바 예를 중하게 하지 않으면 일이 정성스럽지 못하다고 한 것은 신들이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혼전(魂殿)의 삭망 제사에 곡례(哭禮)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이미 결정된 예로서 이제 새삼 거론할 것은 없습니다. 그 아래 이른바 먼저 성상의 뜻을 정하여 아랫사람을 격려하시라는 것과 좋아하는 사물에 빠지면 의지를 잃어버린다는니, 우임금은 맛있는 술을 싫어했다느니 하는 경계는 그 마음이 성상을 더 노력하시게 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 정자처럼 사냥을 좋아하는 마음이 흑시라도 싹틀까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한층 더 유의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시중 태만히 하지 말고 사냥을 좋아하는 마음이 흑시 싹틀지 모른다는 경계는 내 마땅히 깊이 유념하겠다. 수령을 가려 말기고 재주를 헤아려 벼슬을 제수하는 일은 해조에 엄중히 당부하여 그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거행하게 하라. 감·병사를 오래 유임시키는 일은 국조(國朝) 이후로 없었던 법일 뿐만 아니라 만약 책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도리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다. 곽평(股肱)의 대신과 이목(耳目)의 대관(臺官)에 대해서도 그 유능 여부를 살펴 만약 유능하다면 비록 여러해를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체차하지 말고 영임시켜 그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하고 유능하지 못하다면 1년이 채 되지 않았더</p>	<p>金益振之削科，外人莫不稱冤。若有行私之跡，則考官當被其罪，豈益振之所知哉？自前削科而還復者，非止一二人，幸賜昭雪而復其科焉。中宗大王革亂圖新，當有百世不遷之享，則其所謂，禮不重則事不誠者，臣等未知其意也。至於魂殿朔望之祭，不當有哭禮者，此已定之禮，今不須更論。其下所謂先定聖志，勉勵群下，玩物喪志，惡旨酒之戒，其心在於加勉聖上，而恐有好獵之或萌也。伏願聖上，益加留意焉。” 答曰：“終始勿怠，好獵或萌之戒，予當惕念。擇守令，量才授任，則嚴飭該曹，使之盡心舉行。監、兵使之久任，非但國朝以來所無之規，若非其人，則反必有弊。股肱大臣、耳目臺官，察其能否，苟賢也，則雖至累年之久，仍任勿遞，責成其效可也，苟不賢也，則雖未至一年，速去之可也，不必創立此規。俞榮、金益振等事，已定之事，不可到今撓改，置之宜當。”</p>
-----------------------------	--	--

	<p>라도 빨리 제거해야 할 것이니, 굳이 이 법을 새로이 만들 것은 없다. 유계와 김익진 등의 일은 이미 결정된 일로서 이제 와서 고칠 수는 없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p> <p>하였다.</p>	
<p>효종 6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6월 26일(신미) 2번째기사 감사가 청인이 회령에서 개시하여 무역했다고 계문하다</p>	<p>감사가, 청인(淸人)이 회령(會寧)에 개시(開市)하여 소 58두, 무명 37필, 포(布) 45필, 흰 종이 9백 34권(卷), 술 1백 60좌(坐), 쟁기 2백 31개, 소금 4백 26곡(斛)을 무역해 돌아갔다고 계문하였다.</p>	<p>淸人開市於會寧，質取牛五十八頭、木綿三十七匹、布四十五匹、白紙九百三十四卷、釜子一百六十坐、犁口二百三十一箇、鹽四百二十六斛而還，監司啓聞。</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7월 5일(경진) 2번째기사 예조에서 제사의 진설에 대해 아뢰다</p>	<p>예조가 아뢰기를, “무릇 큰 제사 때에는 제물의 진설을 으레 하루 전에 하게 되는데, 지금 새로 부향하려는 감실은 부향하기도 전에 먼저 제찬을 진설하는 것이 미안할 듯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제사지내는 자리에 나가시고 신주 또한 독(櫝)을 열어 놓은 뒤에 태복(太僕)의 태묘(太廟)를 맡아 지키는 사람 무리가 감히 드나들며 진설을 할 수 없으니, 형편상 모든 신위와 함께 일시에 먼저 진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종 대왕(元宗大王)을 종묘에 붙여 모실 때에도 이런 예가 있었으니, 이에 의하여 행하소서.”</p> <p>하니, 따랐다.</p>	<p>禮曹啓曰：“凡大祭時祭物陳設，例在於前一日，今者新祔之室，則未祔之前，先設祭饌，似涉未安，而第殿下既就祭位，神主亦既開櫝之後，則守僕【太廟典守之人。】輩不敢出入陳設，勢將與列位，一時先設。元宗大王祔廟時，亦有此例，請依此行之。”從之。</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7월 10일(을유) 1번째기사 존호를 올리고 책례할 때 민폐를 덜어주기</p>	<p>상이 하교하였다. “존호를 올리고 책례를 할 때에 각도의 방물(方物)·물선(物膳)·진상마(進上馬) 및 병조 진상마를 모두 진상하지 말게 하여 약간이나마 민폐를 덜어주게 하라.”</p>	<p>乙酉/上下教曰：“上尊號、冊禮時，各道方物、物膳、進上馬及兵曹進上馬，竝勿進奉，以除一分民弊。”</p>

<p>위해 방물 진상을 알 도록 명하다</p>	<p>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에 ‘왕세자의 관례(冠禮) 때 빈(賓)은 단술을 왕세자에게 올리고 빈찬관(賓贊冠)은 반찬을 자리 앞에 진설하며 예가 끝난 뒤에는 회소문(會所門) 안에서 빈객(賓客)을 모아놓고 주찬(酒饌)을 베풀어 회례(會禮)를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록으로 본다면 단술과 반찬은 마땅히 예문에 의거하여 사용원이 갖추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만 찬품(饌品)을 어떻게 갖추는지는 의거할 글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단술을 올리는 일은 연례(宴禮)와 다른데, 이미 ‘찬반(饌盤)을 빈찬관이 받들어 차려 놓는다.’ 하였고 보면 한그릇의 포찬(脯饌)에 불과한 것이지 연례처럼 성대하게 과반(果盤)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빈객을 모으는 날 준비하는 술과 찬품도 《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 다. 을축년 세자의 관례를 거행한 《등록(騰錄)》을 상고해 보았더니, 술은 내섬시(內膳寺)에서 진상하고 반찬은 예빈시(禮賓寺)에서 진상하였으며, 찬품의 종류도 의거할 수 있는데, 책례 도감(冊禮都監)이 감독하여 거행하였으니 지금도 도감 및 각 해사로 하여금 미리 갖추어서 거행케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 다. 다만 회례를 행하는 처소에 있어서는 《오례의》로 본다면, 빈(賓)·찬(贊)이 회소문 밖에 나가 섰다가 읍양(揖讓)하고 들어와서 회례를 행하였으니, 지금은 시민당(時敏堂) 뜰에서 회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세자가 회례에 참여하지 않는 바에야 뜰에서 회례를 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하였다. 예조가, 집영문(集英門) 밖에 장막을 치고 회례를 행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p>	<p>禮曹啓曰：“《五禮儀》：‘王世子冠禮時，賓進醴于王世子，賓贊冠陳饌于筵前，禮畢後，於會所門內會賓客，設酒饌行會禮。’ 以此載錄。 醴酒與饌，當依禮文，自司饗院備呈，而饌品某色則無可據之文。 竊念，進醴與宴禮有異，而既曰饌盤賓贊冠捧陳，則似不過一器脯饌，非如宴禮盛備果盤也明矣。 且會賓客之日，酒與饌品，亦不載於《五禮儀》，而考見乙丑年世子冠禮《騰錄》，則酒自內膳寺進供，饌自禮賓寺進供，饌品物種，亦有可據，而冊禮都監檢飭舉行之。 今亦令都監及各該司，預備舉行宜當，而第行會禮處所，則以《五禮儀》觀之，賓、贊既出立於會所門外，揖讓而人行會禮。 今則似當行禮於時敏堂庭中矣。” 答曰：“世子既不參於會禮，則不必行禮於庭中矣。” 禮曹請於集英門外設幕行禮，從之。</p>
-------------------------------	--	---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3일(무신) 3 번째기사 시독관 이정영이 잘못 된 논핵을 아뢰어 임 금이 타당치 못하게 여기다</p>	<p>----- -----</p> <p>상이 주장에 나아가 《서전(書傳)》의 반경(盤庚)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시독관(侍讀官) 이정영(李正英)이 나아가 아뢰기를, “부제학 이지항(李之恒)은 일찍이 홍산 현감(鴻山縣監)이 되었을 때 너무나 탐욕을 부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어찌 논사(論思)의 장관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말을 어찌 이처럼 갑자기 하는가.” 하고, 상이 모든 신하들에게 묻기를, “이 말이 옳은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자, 이정영이 아뢰기를, “지금 비록 신하들에게 두루 물으셔도 필시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그전부터 익히 들었기 때문에 항상 논핵하려 하였는데 지금 그가 신의 장관이 되자, 신이 수치스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에 감히 우러러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들은 바가 있다면 동료들과 상의해서 차자를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갑작스레 말하니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니, 이정영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신이 아뢰는 것이 잘못입니다.”</p>	<p>上御書講，講《書傳》《盤庚》。講訖，侍讀官李正英進曰：“副提學李之恒，曾爲鴻山縣監，貪濁甚矣。如此之人，豈可置之於論思之長？請罷職。”上曰：“此言何如是遽發乎？”上問諸臣曰：“此言是乎？”皆曰：“未有所聞。”正英曰：“今雖遍問，諸臣必不直對矣。臣曾慣聞，故常欲論劾矣。今則爲臣長官，臣有羞愧之心，故茲敢仰達。”上曰：“如有所聞，與同僚相議，上筭可矣，而如是猝發，予以此爲未妥矣。”正英曰：“然則臣之所達誤矣。”上曰：“予若以爾言爲非，則固有妨於言路，而爾猝發，故謂之未妥矣。”同知經筵閔應亨曰：“趙錫胤遇事輒諫，眞勁直之士也。頃日疏陳李友賓事，刑曹覆啓，直陳其冤。此本錫胤之言，而殿下摧折太甚，有不平之教。人君一言一動，係關興亡，可不慎歟？”上曰：“刑曹覆啓之批，豈指趙錫胤而發也？”應亨又曰：“殿下警飭諸司，無令廢其職事，意非偶然矣。兵曹則判書主斷事務，而判書具仁室，年老務殷，日不暇給，都試亦不得行。判書若多事，則參判、參議舉行，俾無</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만일 그대의 말을 그르다고 하면 진실로 언로(言路)에 방해가 있겠으나 그대가 갑자기 말하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동지경연(同知經筵) 민응형(閔應亨)이 아뢰기를, “조석윤(趙錫胤)은 간할 만한 일은 그때마다 간언하니, 참으로 강직한 선비입니다. 그가 지난번에 상소로 이우빈(李友賓)의 일을 진달하였는데, 형조가 이 일을 복계하여 그 원통함을 바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본래 조석윤의 말인데, 전하께서는 너무 심하게 꺾어 평은치 못한 하교까지 하셨습니다. 임금의 한 말씀, 한 행동에는 흥망이 달려 있습니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조의 복계에 대한 비답이 어찌 조석윤을 가리켜 한 것이겠는가.” 하였다. 민응형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모든 관사를 주의시켜 그 직무를 비우지 말도록 하셨으니, 그 뜻이 범연한 게 아닐 것입니다. 병조는 판서가 주로 사무를 결제하는데, 판서 구인후(具仁垆)는 늙은데다 사무가 번다하여 항상 시간이 딸리고 도시(都試)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서가 일이 많으면 참판과 참의가 거행하여 직무를 비우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이정영은 아뢰기를, “구인후는 정순방(鄭順方)의 아들에게 사은(私恩)이 있어서 위장(衛將)을 임명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구인후의 정고(呈告) 역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민응형이 아뢰기를, “듣건대, 상방(尙方)에서 지금 비단을 짠다 하니, 듣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는 필시 왕대비의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일 터인데, 하필 이처럼 이익 없는 일을 합니까. 지난번에 사옹원의 사기(沙器)가 정교하지 못하다 하여 해당 낭</p>	<p>曠廢之弊宜矣。” 正英曰：“具仁垆以鄭順方之子有私恩，除拜衛將，人言頗多。頃日仁垆之呈告，亦以此也。” 上不答。 應亨曰：“聞，尙方方織錦，聽聞不美矣。此必爲王大妃服用之具，而何必爲如此無益之舉乎？頃以司饗院沙器不精，嚴責該郎，提調待罪。殿下何察於細事，而忽於大計乎？” 上曰：“卿久不入侍，未聞箴規之言，今日得聞此言，裨益多矣。織錦本非內間所知，而有聞必達之誠可嘉矣。” 仍謂入侍承旨尹絳曰：“以此意，言於尙方，勿令織造。” 上曰：“李正英醉不能進講，令下番代講。閑居雖或飲酒，登筵之日，何敢昏醉若是乎？” 尹絳曰：“李正英請推考。” 上曰：“以飲酒之過，推考經幄之臣，似非優容之道，姑置之。”</p>
--	---	---

	<p>관을 엄중 문책하니, 제조가 대죄(待罪)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세세한 일에는 살피고 큰 계책에는 소홀하십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경이 오랫동안 입시하지 않아서 경계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런 말을 듣게 되니 도움이 많다. 비단 짜는 일은 본래 대궐 안에서 알 바가 아니지만 들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성의가 가상하다.”</p> <p>하고, 이어서 입시한 승지 윤강에게 이르기를,</p> <p>“이 뜻을 상방에 말하여 비단을 짜지 말게 하라.”</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이정영이 술에 취해서 강석에 나올 수 없으니, 하번(下番)으로 하여금 대신 강하게 하라. 한가히 있을 때에는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경연에 나오는 날 어떻게 감히 이처럼 진탕 취할 수 있겠는가.”</p> <p>하자, 윤강이 아뢰기를,</p> <p>“이정영을 추고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술 마신 과실로 경연의 신하를 추고하는 것은 너그러이 포용하는 도리가 아닌 듯하니, 그대로 두라.”</p> <p>하였다.</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5일(경술) 2번째기사</p> <p>예조가 삼명일의 방물·물선을 다시 올릴 것을 아뢰자 정지하라</p>	<p>예조가 아뢰기를,</p> <p>“각전(各殿)에 진상되는 3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은 국상(國喪)으로 인하여 3년 동안만 임시 감면하였습니다만, 지금은 3년상이 이미 끝났습니다. 앞으로 3명일의 방물과 물선은 동지(冬至)부터 전례에 의하여 올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각도에 분부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금년도 풍년이 아니니, 방물은 잠시 정지시키라.”</p>	<p>禮曹啓曰： “各殿三名日方物、物膳，因國恤限三年權減矣。 今則三年之制已畢， 前頭三名日方物、物膳， 似當自冬至， 依前例封進， 請分付各道。” 答曰： “今歲亦非豐年， 方物則姑停之。”</p>

고 명하다	하였다.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5일(경술) 3 번째기사 민응형이 법복 문제· 종이 진상 중지·능소 참배에 관해 아뢰다</p>	<p>예조 참판 민응형(閔應亨)이 대궐에 나아가 뵈기를 청하니, 상이 불러 보았다. 민응형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연석(筵席)에서 상방(尙方)이 비단 짜는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을 청하자, 곧 그만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그것은 바로 왕대비의 적의(翟衣)에 쓸 옷감이었다 하니, 적의는 법복(法服)입니다. 신이 만일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마땅히 ‘다시는 사사로이 비단을 짜지 마십시오.’라는 경계의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미처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렇게 진달하였으니 신은 진실로 황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도 들으면 꼭 말을 하니, 자세히 아는 일은 필시 숨김 없이 다 말할 것이다. 나는 그 때문에 가상히 여긴다.” 하였다. 민응형이 또 아뢰기를, “우(禹)임금은 의복과 음식을 검소하게 하였고, 한 문제(漢文帝)의 신부인(愼夫人)은 옷이 땅에 끌리지 않을 정도로 짧게 입었으니, 비록 법복이라 하더라도 사치스럽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남좌도는 기근(饑饉)이 바야흐로 심하여 세미(稅米)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전(諸殿)에의 종이 진상을 지금 다시 실시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값은 매우 높고 그 쓰임은 긴급하지 않으니, 비록 전부를 감할 수는 없지만, 전례에 의하여 절반을 감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상되는 종이 선조(先朝)에서는 그 수량이 본래 이보다 많았는데 전란 후에 견감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실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의 말이 그와</p>	<p>禮曹參判閔應亨詣闕請對，上召見之。 應亨進曰：“臣頃於筵席，請罷尙方織造，卽命停罷矣。今聞，此乃王大妃翟衣所用云。翟衣，法服也，臣若早知如此，當以勿復爲私織陳戒，而未及詳知，有此所達，臣誠惶恐。”上曰：“未詳知之事，有聞必言，則詳知之事，必當盡言不諱。予以是嘉之。”應亨曰：“大禹惡衣服非飲食，漢文之愼夫人衣不曳地。雖法服，不可尙侈也。”又曰：“湖南左道，饑饉方甚，稅米亦難辦出，而聞諸殿供上紙，今將復設。其價甚重，其用則不繁，雖不可全減，依前減半，則民必蒙惠矣。”上曰：“供上紙，先朝則其數本過於此，而亂後蠲減，故今欲復設。卿言如此，今年則姑勿復設可矣。”應亨曰：“長陵則殿下曾行展謁，健元陵、穆陵，禮當先謁。外議皆如此矣。”上曰：“卿言是矣。予意亦然，而喪畢之後，霜露之感，倍切於心，茲欲先謁於長陵耳。”</p>

	<p>같으니, 금년에는 다시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민응형이 아뢰기를, “장릉(長陵)의 경우에는 전하께서 일찍이 참배하셨으니, 건원릉(健元陵) 과 목릉(穆陵)을 예의상 먼저 참배해야 할 것입니다. 바깥 여론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나의 뜻 역시 그러하였으나, 3년상이 끝난 뒤에 계절이 바뀌에 따라 사모하는 마음이 배나 간절하였으므로 먼저 장릉을 참배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였다.</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7일(임자) 3 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이정영·이 지항의 추고를 청하자 이를 따르다</p>	<p>간원이 아뢰기를, “교리 이정영(李正英)은 술에 취해 경연에 나와서 하번(下番)으로 대신 강하게 하였고 옥당에는 본래 서로 탄핵하는 규정이 없는데 갑자기 장관을 탄핵하여 탐욕을 부렸다고 지칭하였으니, 매우 해괴한 일입니다.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소서. 그리고 부제학 이지항(李之恒)은 논사(論思)의 지위에 있으면서 탐욕을 부렸다는 비난을 거듭 받았으니 문초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중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諫院啓曰：“校理李正英乘醉登筵，使下番代講。玉堂本無相劾之規，而驟劾長官，指謂貪濁，事極駭異。請先罷後推。副提學李之恒方在論思之地，而重被貪濁之誚，不可置而不問。請從重推考。”上從之。</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9일(갑인) 2 번째기사 세자 관례에 대한 교 명문 내용</p>	<p>교명문(敎命文)은 다음과 같다. “왕은 이렇게 말한다. 장자(長子)가 제기(祭器)를 주관하는 것은 민심을 잡아 매기 위함이고, 성왕(聖王)이 관례(冠禮)를 중히 여긴 것은 국본(國本)을 삼기 위함이었다. 이에 아름다운 일을 당하여 마땅히 명사(命辭)가 있어야 하리라. 아, 너 세자 이연(李欄)은 성품이 총명하여 날 때부터 충효(忠孝)를 알았다. 열성(列聖)께서 도와 주신 경사요, 영고(寧考)께서 교훈에 힘써 주신 결과이다. 옷을 이길 만큼 자랐을 때 이미 원손(元孫)의 이름을 정하셨고 내가 왕위</p>	<p>敎命文： 王若曰。長子主器者，所以係民心；聖王重冠者，所以爲國本。茲當嘉事，宜有命辭。咨爾世子欄，性稟聰明，生知忠孝。維列聖啓祐之慶，繫寧考訓迪斯勤。粵自勝衣，已定元孫之號，肆予嗣服，爰正副君之名。有待殷禮</p>

	<p>를 계승하자 이에 부군(副君)의 명칭을 바르게 하였다. 관례를 행할 기일을 기다렸더니, 주 문왕(周文王)의 나이에 이르렀다. 사람의 도리가 이루어지니 실로 부모의 기쁨이 깊고, 왕의 교화가 시작되는 바이니 어린 생각을 힘써 버리라. 훌륭하도다, 몸을 가리우는 옷의 문채여. 아름답도다, 머리를 꾸미는 것의 제도여. 너의 용모와 말씨를 삼가서 태만하지 않으면 수구(壽考)와 복록(福祿)을 무궁히 주리라. 아, 오직 어진이를 가까이하고 몸을 공경하여야 덕이 진취될 수 있고, 오직 조종을 본받고 학문을 전념하여야 거의 뜻만 크고 실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면하리라. 이것은 오로지 나의 자애(慈愛)하는 지극한 정리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또한 온나라 신민(臣民)들의 크나큰 바람이다. 그래서 교시(教示)하노니, 자세히 알 것이라 생각하노라.”【대사성 황감(黃戾)이 지은 것이다.】</p>	<p>之期，殆及周文之歲。 人道乃成，實深父母之喜， 王教攸始， 勉棄童幼之思。 皇矣， 芘躬之章！ 美哉， 芘首之制！ 其慎爾容貌、辭令以弗怠， 則錫之壽考、福祿而無疆。 於戲！ 惟親賢敬身， 可以進德； 惟法祖典學， 庶免作狂。 匪亶出予慈愛之至情， 抑亦舉國臣庶之顛望。 故茲教示， 想宜知悉。 【大司成黃戾所撰也。】</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9일(갑인) 3 번째기사 홍문관이 정사의 바른 길에 대한 상소를 올린다</p>	<p>옥당(玉堂)이 【응교 홍명하(洪命夏), 교리 이석(李楮), 수찬 오정위(吳挺緯), 부수찬 정언벽(丁彦璧)과 민정중(閔鼎重).】 차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삼가 듣건대, 저번에 기전(畿甸), 호서(湖西), 해서(海西)의 바닷가에 있는 여러 고을은 해일이 너무도 심하여 전답의 곡식이 남김없이 손상되었다 하고, 또 들으니, 호남에는 가뭄과 홍수가 겹쳐서 겨우 남아 있는 곡식이 7월 20일 후에야 이삭이 꽤기 시작하였는데, 시중의 쌀값은 한 필의 목면(木綿)으로 겨우 6, 7승(升)을 살 수 있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굶주리고 있으며, 그중 영하(嶺下)가 더욱 심하고 영남도 같은 상황이라 합니다. 그런데다 또 이 달에 무서리가 내렸으니, 아, 하늘이 장차 우리 백성의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입니까. 어제는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렸으니, 잘못된 하늘의 도수가 또한 어찌 그리도 심히 이상합니까. 무릇 이 몇 가지의 변괴는 실로 위망(危亡)의 조짐인데 그것들이 우리 성상께서 정력을 쏟아 성세(聖世)를 도모하는 날에 집중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 등은 머리를 맞대고 매우 놀랐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진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덕(聖德)의 헛점과 시정(時政)</p>	<p>玉堂【應教洪命夏、校理李楮、修撰吳挺緯、副修撰丁彦璧·閔鼎重。】 上筭曰： 臣等伏聞，頃者畿甸、湖西、海西邊海諸邑，水溢太酷，田疇禾穀，損壞無餘。繼又聞，湖南旱、水兼備，禾穀堇存者，七月念後，始得發穗，而市中米價，一匹木綿，纔六七升，民皆飢饉，嶺下尤甚，而嶺南亦如之。又於今月，微霜乃降，嗚呼！天其將欲勦絕我民命耶？昨日雷電驟雨，又何其愆度異常之甚耶？凡茲數變，實是危亡之兆，而威萃於我聖上勵精之日，何哉？臣等聚首震駭，誠莫知致此之由也。 然於聖德</p>

	<p>의 잘잘못은 한두 가지 지적하여 진언할 만한 것이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너그러이 살펴 주소서.</p> <p>신 등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지성껏 정치를 도모하신 지 지금 3년이 되었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바로잡으려 하면 조정이 날로 혼탁해지고, 기강을 진작시키려 하면 기강이 날로 해이해지고 있으며, 민생을 보호하고 싶지만 갈수록 더욱 흠어지고, 법령을 정돈하고 싶지만 문란하여 질서가 없으며, 공도(公道)를 확정하려 하면 사의(私意)가 침탈하고 명실(名實)을 상부하게 하려면 허무한 것이 풍습을 이루며 심지어는 천도(天道)를 공순하게 받드는데도 천재(天災)가 극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 등은 전하께서 자신에게 절실한 공부에 미진한 바가 있는가 삼가 의심해 봅니다.</p> <p>왜냐하면, 《주역(周易)》에서는 건괘(乾卦)의 항구적인 도를 논하면서 그치지 않는 것을 크게 여겼고, 《대학(大學)》에서는 나라 다스리는 순서를 말하면서 몸뚱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실로 전하께서 그 큰 근본을 세워 일을 하는 사이에 미루어 나가고, 그 실지의 덕을 잡아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나타내신다면, 마치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교화를 금방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가 보건대, 근래에는 실심(實心)으로 서로가 믿지 못하고 허명(虛名)을 숭상하십니다. 날마다 경연(經筵)에 납시되 긴요한 공부를 하지 않고 의리를 강설하시나 존심 양성(存心養成)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남의 말을 널리 들으면서도 시비를 더러 가리지 못하고 사람을 살펴서 쓰고 있지만 어짊과 간사함을 더러 판단하지 못하며, 선을 착하게 여기면서도 실시한 바가 없고 악을 싫어하면서도 단절하는 바가 없습니다. 비록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다스린 실효를 얻기는 어렵습니다.</p> <p>전하께서 경연에서 하교하기를 ‘대간이 대동법(大同法)을 논한 것은 다만 소견을 진술하는 데에 불과하다.’ 하고는, 비국 계사의 답에는 ‘사람들의 말이</p>	<p>之闕遺、時政之得失，猶可以指陳其一二，伏乞殿下恕察焉。 臣等伏觀，殿下卽阼以來，至誠圖治，于今三載，未見實效。 欲正朝廷也，則朝廷日以混淆； 欲振紀綱也，則紀綱日以解弛。 民生非不欲保恤也，而散亡益甚； 法令非不欲整頓也，而紊亂無序。 恢張公道，則私意橫奪； 綜覈名實，則虛誣成風，以至奉若天道，而天災極矣。 臣等於是乎竊疑殿下切己之功，有所未至也。 何者？ 《義易》論乾健之道，而不息爲大； 《大學》說治國之序，而修身爲本。 誠使殿下立其大本，而推諸施措之間； 秉其實德，而發於辭令之際，則風行草偃之化，可以立致。 竊觀，近來實心未孚，虛名是尙，日御經筵而不下喫緊之功，講說義理而未見存養之力，聽言雖廣，是非或不得其正； 用人雖審，賢邪或不得其情，善善而無所施，惡惡而無所斷，雖有求治之名，而難得爲治之實也。 殿下於筵中教曰：“臺諫之論大同之法，不過只陳所見。” 而答備局之啓則曰：“人言雖巧，予豈動哉？” 夫巧言者，譖口惑亂之謂也。 前後論大同者，雖或意見不同，各陳利</p>
--	---	---

교묘하지만 내가 어찌 동요되겠는가.’ 하였습니다. 대저 교묘한 말이란 거짓 말을 하여 현혹함을 이르는 것입니다. 전후에 걸쳐 대동법을 논하는 자들의 의견이 더러 같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자 이해 득실을 설명한 것이니, 요컨대 그 본심은 나라를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만일 모두를 교묘한 말로 돌려 버린다면, 그 논하는 자가 반드시 자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교(聖敎)의 본의도 어찌 전후가 다르니까.

또 들건대, 경연에서 내사(內司)의 일로 재신(宰臣)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분부는 마치 한 일반 가정의 부자간에 서로 권면함과 다름이 없으니, 성상의 넓은 신 도량이 마치 천지와 같습니다. 신 등은 이런 분부가 계신 것을 들은 뒤로부터 너무도 기뻐하면서도 걱정하기를 ‘이와 같은 임금이 계시는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당우(唐虞)와 같은 시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못 신하들의 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상방(尙方)에 대해 답하신 전교가 갑자기 불평한 데에까지 이를 줄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가령 전일에 연신(筵臣)이 비단 짜는 곡절을 잘 알지 못하고 진달했다 하더라도 이는 본디 잘못 알려진 것이니 성덕(聖德)에 무슨 손상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오직 외인이 자세히 알지 못한 소치라고만 말씀하셨어야 할 것인데 ‘집집마다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알 바 아니다.’라는 등의 전교를 하였으니, 혹 성상의 도량이 모자라 넉넉하지 못함을 스스로 보인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은 비록 극히 미세한 것이지만 혹시 성덕에 손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한 기강이 해이하거나 신장되는 것은 본래 인군의 하는 일이 사리에 마땅하고 상벌(賞罰)이 이치에 맞아 인심이 기꺼이 따르게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형벌로 위협하고 힘으로 제재하는 일은 매양 역대의 혼란 시기에 나타나 한갓 패망의 화에 이르고 말았을 뿐입니다.

무릇 국가가 장차 쇠퇴하려면 정령(政令)과 기율(紀律)이 날로 점점 해이해집니다. 왕위를 계승한 임금이 그러한 것을 보고 법으로 구제하려 해도 인심이

害, 要其本心, 爲國無他。 若遽皆歸之巧言, 則其論之者, 未必自服。 聖敎本意, 亦何前後之殊耶? 又聞, 筵中以內司之事, 面諭宰臣之敎, 無異家人父子之相勉, 聖量之恢廓, 天地同大。 臣等自聞此敎, 喜極而憂曰: “有君如此, 不能引之當道, 措世唐、虞, 則實群下之罪也。” 豈意不日而答尙方之旨, 遽至不平耶? 假令前日筵臣不知織錦曲折, 有所陳達, 自是誤聞, 何損於聖德乎? 殿下惟當以爲外人不詳之致而已, 家喻戶說, 非予所知等敎, 無或聖量有歉而自示不廣乎? 如許等事, 雖極細微, 恐或有損於聖德也。 且紀綱弛張, 本在於人君之舉措得宜、賞罰當理, 使人心悅服耳。 刑威力制, 每見於歷代昏亂之日, 而徒爲敗禍之歸。 凡國家將衰, 政令紀律, 日漸解弛。 繼世之君, 見其然也, 欲濟之以法, 而人心既玩, 令亦不從。 由是上下相激, 情義不孚, 猜疑怨懟, 不復愛惜, 嚴刑酷罰, 竟至潰亂, 此, 理之然也。 明智之君, 知其如是, 故導之以仁義, 率之以禮讓, 勸之以刑罰, 使民日遷善, 而自不至於干犯也。 今願殿下, 明以

이미 달아빠져 명령을 또한 따르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상하가 서로 격돌하여 정의(情義)가 민음을 주지 못하는가 하면, 시기, 의심, 원망하여 다시는 아끼지 않고 가혹한 형벌을 사용하여 끝내는 체란되고 마는 것이 이치입니다. 명철한 임금은 이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인의(仁義)로써 인도하고 예양(禮讓)으로써 거느리고 형벌로써 권면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날로 착한 데로 옮겨 가 저절로 간범(干犯)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전하께서 밝게 사물을 살피고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며,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면, 기강을 진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진작될 것입니다.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근래에 자못 위엄을 숭상하여 심지어 추고(推考)와 같은 경미한 죄까지도 금부(禁府)에 하옥시키십니다. 믿는 데가 있어 죄를 지은 자와 재범인 자는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지마는, 비록 우연한 과실이어서 파직이나 체직될 지경에 이르지 않은 자도 하옥을 면치 못하니, 실로 성인의 너그럽고 인자스러운 덕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신하를 예로써 부린다는 도리에 손상이 있습니다.

아, 사치(奢侈)의 해는 천재(天災)보다 심하므로 옛날의 성현들이 이를 경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도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경건하고 조심하며 가정에 있어서는 검소한 생활을 하여, 복식(服飾)이나 기용(器用)은 간소하고 절약하기를 힘쓰고 심지어는 명일(名日)의 방물(方物)이나 대례(大禮)의 복식과 같은 것까지도 모두 감손(減損)하니, 신 등은 성상의 절약하고 검소하는 성대한 덕을 공경히 우리러 봅니다.

만일 전하께서 이런 마음을 시종 변하지 않고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으신다면, 우(禹)임금이 검소한 옷을 입고 세상을 다스린 치화(治化)와 문왕(文王)이 누추한 옷을 입고 백성을 편안케 한 공을 머지않아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경(詩經)》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시작은 잘 하지만 유종의미를 거둔 이는 적다.’고 말입니다. 이 때문에 신 등이 성상에게 간곡히 부탁

察物，斷以制事，罰及其罪，賞及其功，則紀綱不期振而自振。竊觀殿下，近日以來，頗尚嚴威，至如推考薄罰，亦下禁府。罪在怙終，則固難容貸，雖是眚災之不至，罷遞者亦未免下理，實非聖人寬仁之德，而反有損於使臣以禮之道也。嗚呼！奢侈之害甚於天災，古之聖賢未嘗不勉戒於此，而今殿下治民，祇懼克儉于家，服飾器用，務從簡約，至如名日之方物、大禮之服飾，亦皆減損，臣等欽仰聖上節儉之盛德也。若使殿下終始此心，靡有少懈，則夏后非衣之治、文王卑服之功，指日可待，而《詩》不云乎？靡不有初，鮮克有終。此，臣等所以惓惓於聖上者也。噫！下情之不通久矣。頃者常參之舉，誠美事也，在庭諸臣，只行拜禮而退，有若一時習儀者然，此豈臨朝聽政之本意哉？臣等伏聞，我世祖，朝則終朝視事，親自咨詢，大小公事，該司皆得稟斷。今既復設古禮，則各司可啓之事，皆宜面稟，以備睿裁。且常參罷退之後，諸司之官，各於本司開坐，以其稟旨之事，仍卽舉行可也。若夫經筵之法，自有三時之講，與夫召對、夜對之

	<p>드리는 것입니다.</p> <p>아, 아랫사람의 실정이 위로 통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상참(常參)의 거행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으나 뜰에 있는 신하들이 단지 배례(拜禮)만 행하고 물러나 마치 의식을 한 차례 익히는 것처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조정에 임하여 정사를 듣는 본의이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듣건대, 우리 세조조(世祖朝)에서는 아침내내 정사를 보면서 친히 물으시고 크고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관사가 모두 품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합니다. 이제 옛 예식을 다시 실시하기로 한 바에는 각사(各司)에서 아뢴 만한 일을 모두 면전에서 여쭙어 성상의 재가에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또 상참을 파하고 물러간 뒤에는 모든 관사의 관원들이 각각 본사(本司)에서 개좌(開坐)하여 그 품지(稟旨)한 일을 곧바로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p> <p>무릇 경연(經筵)의 법은 본디 세 때의 강론과 소대(召對), 야대(夜對)의 규정이 있으니, 이 밖에는 다시 의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군신의 사이에 엄숙함이 너무 지나치고 성실함이 부족하여 상하가 서로 믿는 의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일 정무를 보시는 여가에 요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정원(政院), 옥당(玉堂) 및 기타 쉼내의 직소(直所)에 있는 여러 신하들을 불러보고 전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계책에 대해서 그 가부를 물어보아 모두 옳다고 하면 단연코 행하여 백성의 이익이 되게 하시고, 또 신료들이 품고 있는 계책을 물으셔서 그들의 말이 공을 이룰 수 있으면 가납하소서. 이것이 진실로 요(堯) 순(舜) 시대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허심 탄회하게 정사를 토론하던 방법입니다.</p> <p>더구나 지금은 가을 날씨가 서늘하고 맑은데다 밤은 점점 깊어가니, 혹시 주무시고 남은 시간에 시신(侍臣)을 침실 안에서 접견하고 당세의 일을 물으시어 그들의 말이 쓸 만하면 채택해 쓰고 쓸 만하지 않은 것은 채용하지 않는다면 모두 성덕(聖德)에 도움이 있을 것이며, 한문전석(漢文前席)의 아름다운</p>	<p>規, 此外更無可議, 而竊念, 君臣之間嚴敬太過、誠實不足, 有非上下相孚之義。 若於萬幾之暇, 勿拘儀文, 不時召見政院、玉堂及他闕內在直諸臣, 以殿下所思之謀猷, 問其可否, 僉曰可則斷然行之, 爲百姓利, 又問臣僚所懷之謀猷, 其言底績, 則嘉納之, 此誠堯、舜都兪之道也。 矧今秋涼氣清, 更夜漸長, 或於丙枕餘閑, 晉接待臣于寢內, 咨之以當世之事, 其言可用採之, 不可用置之, 則是皆有裨於聖德, 而漢帝前席之美事, 可復見於今日也。 噫! 民生之困窮, 未有甚於此時。 元元之望, 只在今秋, 而大雨連月, 雷電竝作, 餘存之禾穀殆盡, 結穎之木綿損落, 八路民生, 已絕衣食之源, 不知殿下將何以救之哉? 嗚呼! 我先王以艱大之業, 投遺我殿下, 殿下今日, 惟無疆休, 亦無疆恤。 中人之家, 百金之產, 子孫不能守, 則人必謂之不孝。 矧惟我殿下, 踐先王之位, 行先王之政, 不能保先王之民生, 守先王之緒業, 則將何以爲廣孝之道, 而爲天下後世辭乎? 殿下其念之哉。 上嘉納之。</p>
--	---	---

	<p>일을 다시 오늘날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아, 민생의 곤궁이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희망은 단지 올 가을의 수확에만 있는데, 큰 비가 여러 달 계속 내리고 천둥까지 쳐 남은 농작물이 거의 다 없어지고 목화의 열매가 떨어져서, 팔도의 민생에게 이미 먹고 입는 것의 근원이 끊어졌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구제하시겠습니까.</p> <p>아, 우리 선왕(先王)께서 어렵고 큰 서업(緒業)을 우리 전하에게 물려 주셨으니, 전하의 오늘날은 무궁한 경사이며, 또한 무궁한 근심이기도 합니다. 일반 가문에서 백금(百金)의 재산을 자손이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불효라고 할 것인데, 하물며 우리 전하께서는 선왕의 자리에 앉아 선왕의 정사를 행하시면서 선왕의 민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선왕의 서업을 지키지 못한다면 장차 어떻게 효도의 길을 넓히며 천하 후세에 변명하시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p> <p>하니, 상이 가납하였다.</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15일(경신) 3번째기사 조사기·이응시가 논박 받은 이유로 사직을 청하다</p>	<p>정언 조사기(趙嗣基)가 인피하기를, “옥당의 신하가 술을 마시고 입시하여 진강(進講)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장관에 대하여 규정 밖의 논핵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너나없이 놀랐는데, 한번쯤 서로 규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지항 역시 한때의 사류(士流)로서 대대로 그 명망을 이루어 왔으니, 그가 관직에 있으면서 청렴하지 못했다는 말은 신이 미처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사모하여 세운 비(碑)를 본 사람이 많 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부렸다.’는 논핵이 이미 그의 몸에 미쳤으니, 다만 실정 밖의 일이라고 하여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말한 자도 필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고, 비방을 입은 자도 반드시 비방받을 꼬투리가 있을 것이니, 모두 추고하여 시비가 가려지면 경중에 맞게 나름대로 처치할 방도가 있을 것이므로 반복하여 상의해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자니, 경연석상에서</p>	<p>正言趙嗣基引避曰：“玉堂之臣，酣飲入侍，不能進講，規外論劾，驟及長官，聽聞無不駭之，一番相規，在所不已。李之恒亦以一時士流，世濟其名，居官不廉，臣未及聞。遺愛立碑，人多見者，而貪濁之劾，既及其身，則不可直謂之情外而置之。發言者必有所聞，被謗者必有其端，並皆推考，是非既分，則適輕適重，自有處之之道，反覆相議以啓矣。今聞筵席之上，玉堂之臣以臣等所論爲非，請遞臣職。” 司諫</p>

	<p>옥당의 신하가 신 등이 논한 것을 그릇된 일이라 하였다니,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p> <p>하고, 사간 이응시도 이 일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조사기 등은 모두 물러가서 공론을 기다렸다. 간원이 【정언 홍수(洪鏞).】 아뢰기를, “조사기와 이응시는 모두 인협하고 물러갔습니다. 경악(經幄)의 장관으로서 연신(筵臣)의 논핵을 입었으니, 아울러 추감(推勘)하기를 청한 것은 대개 그 사실을 자세히 들으려고 한 것으로서 신중을 기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무슨 피할 만한 혐의가 있겠습니까. 모두 출사하라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李應著亦以此引避， 答曰：“勿辭。” 嗣基等竝退待物論。 諫院【正言洪鏞。】啓曰：“趙嗣基、李應著竝引嫌而退。 以經幄之長， 重被筵臣之劾， 竝請推勘， 蓋欲詳聞其實， 出於慎重之意， 有何可避之嫌？ 請竝出仕。” 上從之。</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16일(신유) 3번째기사 사면령을 내리고 교문을 반포하다</p>	<p>사면명(赦免命)을 내리고 교문(敎文)을 반포하였는데, 그 교문은 다음과 같다. “왕은 이렇게 말하노라. 건원(乾元)이 처음 창조되는 것은 본래 순승(順承)의 공훈에 의지하고, 군도(君道)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상성(相成)의 교화를 힘입는다. 그러므로 제왕(帝王)이 배필을 세우는 전례는 곧 고금에서 다스림에 이르게 하는 근원이었다. 이미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고, 따라서 환한(渙汗)의 명령을 내리노라. 과덕(寡德)한 내가 외람되어 크나큰 기업(基業)을 지키며 왕업을 계승하는 어려움을 생각하니 영인(寧人)의 큰 업을 떨어뜨릴까 두렵노라. 종묘 사직의 주인이 되어 다행히 군자의 좋은 짝을 두었노라. 충효는 본디 명문에서 드러나고 아름다운 덕성은 일찍이 하늘의 품부에서 얻었노라. 북녘 지방에서 온갖 험난을 겪을 때 내조의 정성을 거의 다하였고, 동위(東闈)에서 영귀(榮貴)를 누릴 때에 가서는 더욱 경계하는 뜻을 아끼지 않았다. 삼조(三朝)에 사랑을 베풀어 능히 장락(長樂)의 승안(承顔)을 화평히 하고, 일색(一索)이 상서를 열어 진실로 원량(元良)을 기다림에 맞추었노라. 그래서 왕위에 오르는 날에 곤위(壺位)를 주관하여 다스릴 책임을 주었노라. 궁검(弓劍)을 더위잡지 못하여 종천(終天)의 애모(哀慕)를 함께 절실히 느꼈노라. 제수(祭需)의 일에 반드시 공경을 하여 어느새 중월(中月)의 명인(明禮)을</p>	<p>赦頒敎。 敎文： 王若曰。 乾元肇始， 本資順承之功； 君道履端， 必賴相成之化。 故帝王建配之典， 乃古今致理之源。 既舉禋盛之儀， 仍申渙汗之誥。 眇予寡德， 叨守丕基， 念堂構負荷之難， 恐墜寧人之洪業。 爲宗廟社稷之主， 幸有君子之好逖。 忠孝素著於名門， 柔嘉夙得於天賦。 備嘗險艱於朔域， 幾殫裨贊之誠； 逮膺榮貴於東闈， 益勤儆戒之志。 三朝展愛， 克諧長樂之承顔； 一索啓祥， 允協元良之延頸。 肆於踐阼之日， 畀以主壺之治。 弓劍莫攀， 共切終天之哀慕。 蘋蘩必敬， 奄經中月之明禮。 爰率舊章， 庸加顯冊。 內外定位， 三宮仰儷極之尊； 家國觀刑， 兆民</p>

	<p>지냈노라. 이에 구장(舊章)에 따라서 현책(顯冊)을 가하노라. 내외간의 지위가 정해지니, 삼궁(三宮)이 여극(麗極)의 존귀함을 우러러보고, 집안과 나라에 모범을 보이니, 만백성이 정시(正始)의 도리를 송축하노라. 이는 오직 조야(朝野)의 큰 경사이거늘, 어찌 사유(赦宥)의 특수한 은혜가 없겠느냐. 아, 관저인지(關雎麟趾)의 풍화를 추구하노니, 어찌 검근(儉勤)의 미덕을 떨어뜨리느냐. 홍범 구주(洪範龜疇)의 복록을 받았으니 거의 형가(亨嘉)의 아름다움을 같이 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노니, 잘 알 줄로 생각하노라.”【대제학 조석윤이 지은 것이다.】</p>	<p>頌正始之道。 茲惟朝野之大慶， 詎無赦宥之殊恩？ 於戲！ 追《關雎》、《麟趾》之風， 曷替儉勤之美？ 錫《洪範》龜疇之福， 庶同亨嘉之休。 故， 茲教示， 想宜知悉。 【大提學趙錫胤所撰也。】</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18일(계해) 1번째기사 잘못된 논핵을 한 이정영을 문초하라 명하다</p>	<p>상이 하교하기를, “시비를 밝히고 참소를 제거하는 일은 나라의 급무이다. 그런데 만일 참소하는 말이 연석(筵席)에서 나오고 시비가 끝내 정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전 교리 이정영(李正英)이 술에 취한 채 경연에 나와서 갑자기 그의 장관이 재물과 뇌물을 탐했다고 논박하자, 좌우의 재신(宰臣)들과 옛고을의 백성들이 이지항(李之恒)이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그에 대한 시비를 정하여 형벌을 주는 조치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이정영을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문초하게 하라.” 하니, 승지 남선(南詔)과 목행선(睦行善)이 아뢰기를, “방금 전 교리 이정영을 잡아다 문초하라는 분부를 보고 신들은 성명께서 지나쳤다고 여깁니다. 이정영이 갑자기 장관을 논핵한 것은 비록 경솔한 실수임은 면치 못하겠으나 그 본의를 추구해 보면 터무니 없는 말을 만들어 내어 참소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대간의 평론으로 인하여 그의 직책을 파면하였으니, 그의 망령된 죄를 징계하기에 족합니다. 만일 그를 하옥시켜 문초까지 한다면, 성조(聖朝)에서 유신(儒臣)을 대우하는 도리가 그와 같이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우레같은 위엄을 조금 멈추고 속히 성명(成命)을 회수하소서.”</p>	<p>癸亥/上下教曰：“明是非， 去讒譖， 爲國之切務。 若使讒言， 起於筵席， 是非終無所底定， 則其何能爲國乎？ 前校理李正英， 乘醉登筵， 猝駁長官之貪濁， 而左右諸宰及舊郡土民， 莫不稱冤， 其可無定是非， 服刑章之舉乎？ 李正英其令該府拿問。” 承旨南詔、陸行善啓曰：“卽者伏見前校理李正英拿問之命， 臣等竊以爲聖明之過舉也。 正英之驟劾長官， 雖不免率爾之失， 原其本情， 必非搆捏讒譖之事。 旣因臺評， 罷其職名， 則足懲妄作之罪。 若至下理按問， 則聖朝待儒臣之道， 似不當如是。 伏願少霽雷威， 亟回成命。” 答曰：“若使此人， 謂非搆捏讒譖， 則李之恒豈得晏然乎哉？ 是非之不可兩立， 古今之通誼。 以罷職爲足徵其罪，</p>

	<p>하니, 답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터무니 없는 말을 만들어 내어 참소한 것이 아니라면, 이지항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느냐. 시비가 함께 존재할 수 없음은 고금의 공통된 이치이다. 파직한 것으로 그의 죄를 충분히 징계했다고 여기어 그 일을 규명하지 않고 회미하게 덮어두란 말인가. 그대들의 말을 나는 실로 취하지 않겠다.” 하였다.</p>	<p>而不究其事，朦朧掩置乎？爾等之言，予實不取也。”</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20일(을축) 2번째기사 신하들이 이지항 논박 문제와 예관을 가둔 일에 대해 아뢰다</p>	<p>상이 주장에 나아가 《서전》 반경편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특진관 이해가 아뢰기를, “신이 호좌(湖左)에 있을 때 듣기로는 이지항이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칭찬은 있었으나 재물을 탐했다는 이름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이지항은 위인이 잔달아서 처자의 말만 듣고 절구나 절굿공이 등의 물건까지도 취해 오고, 또 장사를 하는 등의 일로 사람들의 말이 없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유신을 잡아다가두고 심지어 형벌까지 실시하려고 하니, 참으로 지나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은 비록 이와 같으나 어찌 단서없이 갑자기 말할 수 있는가.” 하였다. 참찬관 조계원(趙啓遠)이 아뢰기를, “이정영과 이지항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설은 여염 사이에 더러 있습니다. 마는, 이정영은 반드시 혐의나 원망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은 확실치 않아 밝히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술에 취해 경연에 나와서 급급히 논핵하였으니, 그 뜻이 필시 공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의 형세는 건국 초기와 달라서 인심이 아름답지 못하다. 군상(君上)이 만일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들어 주는 것으로 언로(言路)를 여는 일이라 이른다면 조정에는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p>	<p>上御書講，講《書傳》《盤庚》。講訖，特進官李漉曰：“臣在湖左時間，李之恒有善治之譽，別無貪名，而但之恒爲人細瑣，偏聽妻子之言，至於杵臼等物，亦且取來，又以貿販等事，不無人言矣。殿下拿囚儒臣，至欲施刑章，誠極過當矣。”上曰：“事雖如此，豈可猝發無端緒之言乎？”參贊官趙啓遠曰：“正英與之恒有嫌隙之說，閭閻間或有之，而正英必不因嫌怨而狙擊。此事暗昧難明矣。”上曰：“乘醉登筵，汲汲論劾，其意必不出於公心矣。卽今形勢異於國初，人心不美。君上若以聞人過舉，謂之開言路，則朝廷必無完人矣。李正英供辭，別無明白可據之言，兩人曲直，以此似難分辨矣。”同知經筵閔應亨曰：“頃見玉堂筓子之批，則其策勵之意，實出於至誠惻怛，</p>

	<p>이정영의 공사(供辭)에는 명백히 증거할 만한 말이 별로 없으니 두 사람의 곡직(曲直)을 이것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울 것 같다.”</p> <p>하였다. 동지경연 민응형(閔應亨)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옥당의 차자에 대한 비답을 보니, 그 책려(策勵)하신 뜻은 실로 지성스럽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보는 사람으로서는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위험과 패망의 재변이 이렇게까지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인데, 낙뢰의 재변이 그 뒤에 금방 생겼습니다.</p> <p>옛날 송(宋)나라 경공(景公)은 중간 정도 가는 임금이었는데 말 한마디 착하게 하자 화성이 물러갔고, 주(周)나라 성왕(成王)은 어진 임금이었는데 금둥(金籐)의 글을 보고 주공(周公)의 뜻에 감읍하자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재이의 참상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고 있으니, 신의 생각에는 성명께서 하늘을 받드시는 정성이 혹시 중단되는 바가 있어서 그런가 염려됩니다.</p> <p>무릇 임금이 하늘에 대한 것은 마치 자식과 아버지의 사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노여워하면 아들은 부득불 두려워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하늘은 단순한 하늘일 뿐만이 아니고 바로 사람인 것이며, 사람은 단순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고 곧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므로 서로 감응함이 매우 분명한데, 위망의 재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성상께서 더욱 근신하여 조금도 중단함이 없어야 할 때입니다.</p> <p>또 임금의 역량은 각자 동일하지 않아서, 창업(創業)할 역량도 있고, 혹은 중흥(中興)할 역량도 있고, 혹은 수성(守成)할 역량도 있는 것이니, 성명의 역량으로 만일 진작(振作)하신다면 창업과 중흥을 한다 해도 무엇이 어렵겠습니까.</p> <p>지난번 신주를 태묘에다 붙여 모시는 예에 미쳐 태묘를 수리하지 못하여 열성 신위(列聖神位)를 천막의 노천에다 모셔 놓게 되자, 전하께서 침전(寢殿)에 납시지 않고 예관(禮官)을 가두도록 명하셨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중에 이</p>	<p>見之者莫不感歎。 以此觀之， 則危亡之變， 宜不至此， 而雷震之災， 旋出於其後。 古者宋景公， 中主也， 一言有善， 熒惑退舍； 周成王， 賢辟也， 執書以泣， 歲乃有秋。 卽今災異之慘， 乃至此極， 臣恐聖明奉天之誠， 或有所間斷也。 夫人君之於天也， 猶人子之於父也。 其父怒則子不得不恐懼桐悶。 蓋天非天也， 天卽人也； 人非人也， 人卽天也。 天人一理， 相感孔昭， 而危亡之災日甚一日， 此正聖上益加戒愼， 無少間斷之日也。 且人君力量， 各自不同， 或有創業之量， 或有中興之量， 或有守成之量。 以聖明之量， 若果振作， 則創業中興， 亦何難乎？ 頃於祔廟之禮， 未及修理太廟， 以致列聖神位， 露處於幕次， 殿下不御寢殿， 命囚禮官。 此乃不知不覺之中， 有此警惕之舉， 而實合於事理。 臣於其時， 雖被拿囚， 反以爲喜者， 群下莫不因此警動， 此實聖上振作處也。”</p>
--	---	---

	<p>런 깜짝 놀랄 조치가 있었으나, 실은 사리에 부합된 것이었습니다. 신은 그때에 비록 잡혀 갇혔지만 도리어 기쁘게 생각한 것은 아랫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두려워 경계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니, 실로 정상께서 진작하신 것입니다.” 하였다.</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20일(을축) 4번째기사 예조가 새로 생산되는 물건을 봉진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p>	<p>예조가 해서(海西)·기전(畿甸)으로 하여금 새로 생산되는 물건(物膳)의 봉진(封進)하는 일을 옛 규례대로 할 것을 청하니, 그전대로 견감하라고 명하였다.</p>	<p>禮曹請令海西、畿甸封進新產物膳還復舊規，命仍前蠲減。</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8월 24일(기사) 3번째기사 호서의 대동법을 정리하고, 제사에 쓰는 제물에 대해 논의하다</p>	<p>호서의 대동법(大同法)을 비로소 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공법(貢法)은 너무나도 무너졌다. 서울에 있는 호탕하고 간교한 무리들이 경주인(京主人)이라고 하면서 제도(諸道)에서 공납하는 물품을 방납(防納)하고 그 값을 본읍(本邑)에서 배로 징수하였다. 그 물품의 값이 단지 1필(匹)·1두(斗)라 할 때 교활한 방법을 써 수십 필, 수십 석에 이르게 한다. 탐관 오리들이 그들에게 빌붙어 이익을 꾀하는데, 마치 구렁텅이로 물이 몰려드는 것 같아 그 폐단이 점점 불어났다. 또 임진 왜란 이후로 공안이 더욱 문란해져서 계해년에 강정(講定)하였으나 다과가 균등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였다. 그래서 60년 이래로 의논한 자들이 대부분 속히 개정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혹자는 “선왕이 토지를 맡겨 준 뜻에 따라 공안을 개정하여 그 생산물을 징수해야 한다.” 하기도 하고, 혹자는 “공안은 갑자기 개정하기 어려우니, 우선 양세(兩稅)의 제도에 의하여 1년 잡색(雜色)의 공물(貢物)을 통틀어 계산한 다음, 그 많고 적음에</p>	<p>始定湖西大同法。我國貢法甚壞，京中豪猾之輩，稱以京主人，防納諸道所貢之物，倍徵其價於本邑。其物僅直一匹一斗，而刁蹬至於數十匹、數十石。貪官汚吏，夤緣牟利，有同尾閭，其弊漸滋。且自壬辰亂後，貢案益紊，癸卯詳定，多寡不均，民甚病之。六十年來，議者多言宜速釐改，或以爲，當遵先王任土之意，改正貢案，徵其本色；或以爲，貢案猝難改正，姑依兩稅之制，通計一年，雜色之貢隨其多少，平定其價，或米或布，直輸京師，貿物作貢，俾無中間牟利之弊，議者紛然未</p>

따라 그 값을 공평하게 정하고 쌀이든 벼든 바로 서울로 실어 올려 물건을 무역해서 공물을 마련하게 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피하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한다.” 하는 등등의 의논이 분분하여 정해지지 않았다. 영의정 김육(金堉)이 대동법을 극력 주장하였고, 또 충청도는 공법이 더욱 고르지 못하다고 하여 먼저 시험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누차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혹자는 그것이 편리하다고 말하고 혹자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와서 상이 김육 등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고 그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익히 강론하여 비로소 호서(湖西)에 먼저 행하기로 정하였다. 【한 도를 통틀어서 1결(結)마다 쌀 10두(斗)씩을 징수하되, 봄·가을로 등분하여 각각 5두씩을 징수하였다. 그리고 산중에 있는 고을은 매 5두마다 대신 무명 1필(匹)씩을 공납하였다. 대읍(大邑)·중읍(中邑)·소읍(小邑)으로 나누어 관청의 수요를 제하여 주고, 또 남은 쌀을 각 고을에 맡겨 헤아려 주어서 한 도의 역(役)에 응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선혜청(宣惠廳)에 실어 올려서 각사(各司)의 역(役)에 응하게 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각 고을에서 제사에 쓰이는 생 노루를 공물로 바치는 것은 옛 규례인데, 상처가 없이 잡아서 먼 길에 실어다 바치는 것은 그 형세상 쉽지 않으며, 부득이 서울에서 사서 바치게 되면 노루 한 마리 값이 무려 목면(木綿) 60단(端)에 이르니, 그 폐단이 큼니다. 《예기(禮記)》에 1년 된 송아지니, 2년 된 송아지니 하는 설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생 노루 대신에 송아지를 쓰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의 옛 규례는 경솔하게 고칠 수 없으니, 다른 대신에게 의논해서 처리 하겠다.”

하였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의논드리기를,

定。 領議政金堉力主大同之法，又以忠淸一道， 貢法尤不均， 請先試於本道。 上屢詢諸臣， 或言其便， 或言其不便。 至是上引見金堉等諸臣， 熟講便否， 始定先行於湖西。 【通一道每一結收米十斗， 春秋分等， 各收五斗， 而山郡則每五斗作木一匹。 分大、中、小邑， 除給官需， 且量給餘米於各邑， 以應一道之役， 其餘輸納于宣惠廳， 以應各司之役。】 堉以爲：“各邑進貢祭用生獐， 乃是舊例， 而獵得完體， 遠道輸納， 其勢未易。 不得已自京質納， 則一獐之直， 多至木綿六十端， 其弊大矣。 《禮記》有一歲犢、二歲犢之說， 自今生獐代以牛犢似當矣。” 上曰：“祖宗朝舊例， 不可率爾改之， 議于他大臣處之。” 領中樞府事李敬輿獻議曰：“國家大享牲牢， 以牛爲重， 而無用獐之規。 以牛代獐， 由輕就重， 以大易小， 似無嫌於奉先之道。 但古人制禮， 各有其義， 大祀用特， 郊天用犢， 其他或用羊、豕， 輕重得宜。 今若換變獐犢， 無乃或近於無別乎?必用完體， 祭享與進上一也。 爲其除弊， 祭享用犢， 而御供似不可獨存， 然則御供亦將用犢

	<p>“국가의 큰 제사에 쓰이는 희생은 소를 귀중히 여기며 노루를 쓰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로 노루를 대신하는 것은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옮겨가고 큰 것으로 작은 것을 바꾸는 것이니, 조상을 받드는 도리에 혐의가 없을 듯합니다. 단, 옛 사람이 예를 제정하는 데 각각 그 의의가 있어서 대사(大祀)에는 황소를 쓰고 교천제(郊天祭)에는 송아지를 쓰고 그 밖에는 흑 양과 돼지를 쓰기도 하여 경중을 알맞게 하였는데, 지금 만일 노루와 송아지를 바꾼다면 무분별한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상처난 곳이 없는 것을 쓰는 것은 제향(祭享)에서나 진상(進上)에서나 동일합니다. 그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향에 송아지를 쓰되 어공(御供)에만 노루를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공에도 장차 송아지를 쓰려는 것입니까? 어공에는 결코 송아지를 쓸 수 없으니, 이 한 가지 점이 더욱 곤란합니다.”</p> <p>하였고, 영돈녕부사 김상헌(金尙憲)과 전 영의정 이경석(李景奭)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김상헌이 의논드리기를,</p> <p>“선조(先朝)에서 예절을 제정할 때 지극히 경건하고 엄중하게 하였습니다. 삼가 듣건대,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 같은 경우, 어느 때 제향의 제물은 더러 때아닌 천신(薦新)의 물건을 쓰는 일도 있었지만, 사직과 종묘의 제사만은 반드시 미리 길러 놓은 희생을 썼지 폐단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고기로 대신 썼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것을 대신 써서 폐단을 제거하는 것은 제 선왕(齊宣王)의 혼종(饗鍾)이나 송 인종(宋仁宗)의 소양인기(燒羊忍飢)와 같은 일이니, 조종의 일정한 제사의 예에 관계되는 것은 감히 다른 물건으로 대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禮)에 ‘이미 거행한 것은 감히 폐지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p> <p>하고, 이경석이 의논드리기를,</p> <p>“제향에 쓰이는 수륙(水陸)의 물품은 이미 조종조에서 정해 놓은 품식(品式)이 있으니, 큰 흉년이나 대단한 재난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으</p>	<p>乎? 御供則決不可用犢, 此一款, 尤涉難便矣。” 命議于領敦寧府事金尙憲、前領議政李景奭。 金尙憲獻議曰: “先朝制禮, 至敬至嚴。 竊伏聞, 如文昭、延恩殿常時祭享之物, 或有用非時薦新之物, 而至於社稷、宗廟之祭, 必用預先所養之犧牲, 未聞以有弊, 代用他肉也。 代用除弊者, 若齊宣王饗鍾; 宋仁宗燒羊忍飢之類, 係干祖宗常享之禮, 則似不敢以他物代用也。 《禮》云: ‘有其舉之, 莫敢廢也。’” 李景奭獻議曰: “祭享所用水陸之物, 既有祖宗朝已定之品式, 非有大侵大難萬萬不得已者, 似難輕議於其間, 而若以民弊爲慮, 則祭用之毛羽, 雖曰必取其無傷者, 而禮經、《春秋》, 別無毛羽暫傷則不用之文。 所傷不至大段, 則供用似或無妨。” 命依尙憲議。</p>
--	--	--

	<p>면 그 사이에 가벼이 논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민폐를 염려한다면, 제사에 쓰이는 짐승은 반드시 상하지 않은 것을 취한다 하지만 《예경(禮經)》과 《춘추(春秋)》에 약간 상처난 짐승을 쓰지 않는다는 조문은 따로 없으니, 상처난 정도가 대단하지 않으면 제물로 쓰는 것이 혹 무방할 듯도 합니다.”</p> <p>하니, 김상헌의 의논에 따르도록 명하였다.</p> <p>【태백산사고본】</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9월 20일(갑오) 1번째기사 가례 회례연에서 내· 외 명부의 음식 1백 가지를 감하도록 하다</p>	<p>가례(嘉禮) 때 회례연(會禮宴)을 행하기 앞서 도감이 광해군 때의 《신해등록(辛亥謄錄)》을 가지고 품계(稟啓)하니, 상이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음식상에 꽃송이 1백 가지를 감하도록 명하였다.</p>	<p>甲午/嘉禮時將行會禮宴， 都監以廢朝時辛亥《謄錄》稟啓， 上命內外命婦床排， 減花朵一百枝。</p>
<p>효종 7권, 2년(1651 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9월 24일(무술) 2번째기사 예조가 삭선의 진상을 올리기를 청하나, 허락 하지 않다</p>	<p>예조가 아뢰기를, “기축년 10월에 제도의 삭선(朔膳)을 정파(停罷)하라는 하교를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국상(國祥)이 이미 지났는데, 막중한 어공(御供)을 아직도 정파하는 것은 참으로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오는 11월 초하루에 제전(諸殿)에 진상하는 삭선을 구례(舊例)에 의하여 올리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년도 오히려 풍년이 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다시 내년 봄을 보아서 처리하겠다.”</p> <p>하였다.</p>	<p>禮曹啓曰：“己丑十月有諸道朔膳停罷之教， 而今則國祥已過， 莫重御供， 尙今停罷， 誠極未安。 請以來十一月朔， 諸殿朔膳進上， 依舊例， 使之封進。”</p> <p>上曰：“今歲尙未豐熟， 予何安受此乎？ 更觀明春處之。”</p>
<p>효종 7권, 2년(1651</p>	<p>상평청이 아뢰기를,</p>	<p>常平廳啓曰：“京中行錢， 今已議定。</p>

<p>신묘 / 청 순치(順治) 8년) 10월 29일(계유) 4번째기사 상평창에서 돈의 유통 시행에 대해 아뢰다</p>	<p>“서울에서 돈[錢]을 통용시키기로 지금 이미 의정하였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시중에서 돈을 쓸 것인데, 돈 값어치의 높고 낮음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양서(兩西)에서는 쌀 1되의 값이 돈으로 3문(文)하니, 서울에서도 이에 의거하여 통용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청에다 납부하는 길을 연 다음에야 백성들이 모두 돈을 사들일 것입니다. 먼저 여형(呂刑)의 속전(贖錢)의 법을 써서 각사에서 죄를 범하거나 금법을 범한 자에게 원하는 데 따라 납속(納贖)하게 하되, 속전(贖錢)의 수량은 태장(笞杖)의 등급에 따라서 바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통(許通)이나 면천(免賤), 노직(老職), 공명첩(空名帖) 등의 경우도 모두 돈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고, 시장의 모든 물건을 모두 돈으로 사고 팔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돈이 필요한 자는 본청에다 쌀을 바치고, 쌀이 필요한 자는 돈을 바치게 하며, 사사로이 교역하는 자도 아울러 값을 따져 통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화가 쉬임 없이 유통되어 물가가 오르지 않아 바로 상평창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관서에 분부하소서.” 하니, 따랐다.</p>	<p>自開月用錢於市，錢價高下，隨時隨處而有變，兩西則米一升直錢三文，京中亦當依此行用，而必開納官之路，然後民皆買錢先用。 《呂刑》贖錢之法，各司犯罪犯禁之人，從其願納，贖錢文之數，隨其笞杖。至於許通免賤，老職空名帖，皆許納錢，市上百物，皆質以錢，欲錢者納米於廳，欲米者納錢於廳，私相換質者，並計通用，則泉流不息，物價不騰，正合常平之名，請以此分付于諸司。” 從之。</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월 12일(을유) 4번째기사 익평위 홍득기의 궁노가 난동을 부리자 징계하도록 하다</p>	<p>형조가 아뢰기를, “익평위(益平尉) 홍득기(洪得箕)의 궁노(宮奴)가 우금(牛禁) 을 범해 놓고도 이를 단속한 관리를 마구 때렸는가 하면, 또 궁노를 이끌고 본조 참의 이척연(李惕然)의 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으니, 이는 예나 지금이나 없던 변고입니다. 궁노를 엄하게 다스려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풍조를 징계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난동을 부린 궁노를 색출하여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p>	<p>刑曹啓曰：“益平尉洪得箕宮奴，犯牛禁，亂打禁吏，又率宮奴，作挐於本曹參議李惕然家，此近古所無之變也。請嚴治宮奴，以懲蔑法恣行之習。” 答曰：“作弊奴子，查出治罪。”</p>
<p>효종 8권, 3년(1652)</p>	<p>비변사가 아뢰기를,</p>	<p>己丑/備邊司啓曰：“見京畿監司啓聞，</p>

<p>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월 16일(기축) 1번째기사 비변사가 통진현 송도 어장의 본현 귀속, 가평 시장의 혁파를 아뢰다</p>	<p>“경기 감사의 계문을 보건대, 통진현(通津縣)의 송도(松島) 어장이 병술년부터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집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본현은 한 군데도 물고기를 잡을 곳이 없다 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본현에 도로 소속시키도록 하소서. 가평군(加平郡)은 험한 산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장(柴場)으로 일컬어지는 곳을 나누어 점유하여 성안(成案)한 곳이 네 군데나 됩니다. 내수사에 소속된 곳이야 가벼이 의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궁가(宮家)에서 입안(立案)한 곳은 모두 혁파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통진은 해변 마을인데 고기잡을 곳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얼토당토 않은 말이니, 혁파하지 말라. 가평의 시장도 갑자기 혁파하기 어렵다. 본군에 있는 김세룡(金世龍)의 처의 시장은 도로 본군에 소속시키도록 하라.” 하였다.</p>	<p>通津縣松島漁場，自丙戌屬於麟坪大君家，本縣則無一處捕魚之所，誠極寒心矣，自今使之還屬本縣。加平郡則處於峽中，而稱以柴場，分占成案者，至於四處。內司所屬，雖不可輕議，諸宮家立案處，竝請革罷。” 答曰：“通津以濱海之邑，無處捕魚之說，殊涉不近，勿罷。加平柴場，亦難猝罷，本郡所在世龍妻柴場，則還屬本郡。”</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월 20일(계사) 1번째기사 상평청에서 조곡의 유용 방법에 대해 아뢰다</p>	<p>상평청(常平廳)이 아뢰기를, “금년 봄에 조곡(糶穀)을 배정하여 진구(賑救)할 때에 시급히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호서(湖西) 각읍은 원곡(元穀)이 많지 않아 잔읍(殘邑)은 1백 석이 채 못 되고 조금 여유있는 읍이라 하더라도 겨우 2, 3백 석 밖에 안 되어서, 빈민들이 관의 조곡을 얻지 못할까 걱정하는 반면, 대읍(大邑)은 1백만여 석이나 되고 있습니다. 만약 충주(忠州)의 원곡 2만 2천 석 중에서 2천여 석을 덜어내어 단양(丹陽)·연풍(延豐) 등 7개 읍에 나누어 준 뒤 추수 때에 7개 읍으로 하여금 각자 거두어들이게 하고, 청주(淸州)와 홍주(洪州)도 이 법을 쓰게 할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무리 작은 읍이라 하더라도 모두 1천 석 정도는 저축하게 되어, 곤궁한 백성들을 기아에서 구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라에 비축된 곡식의 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읍에서 덜어낸 곡식 역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모곡(耗穀)을 수대로 채워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p>	<p>癸巳/常平廳啓曰：“今春分糶賑救之際，有當行之急務。湖西各邑，元穀不多，殘邑則未滿百石，稍優之邑僅二三百石，貧民患不得官糶，而大邑則有萬餘石者。若以忠州元穀二萬二千餘石，除出二千餘石，分送丹陽、延豐等七邑，秋來使七邑各自收捧，至於淸州、洪州，亦用此法，則一年之內，雖小邑，皆有千石之儲，竊民之飢可救，而國穀之數有加。大邑除出之穀，不出數年，亦可以耗穀充數。湖南分糶，亦宜如此。請以此意，分付兩湖監</p>

	<p>다. 호남에서 조곡을 나누어 줄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뜻을 양호(兩湖)의 감사에게 분부하소서.”</p> <p>하니, 따랐다. 【좌의정 김육(金瑨)이 아뢰는 것이다.】</p>	<p>司。” 從之。【左議政金瑨之啓也。】</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월 21일(갑오) 1번째기사</p> <p>영의정 정태화가 아버지의 성묘를 청하자, 말과 음식을 내리다</p>	<p>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휴가를 얻어 수원(水原)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성묘하게 해 줄 것을 청하니, 말[馬]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본도로 하여금 식물(食物)을 넉넉히 주도록 하였다.</p>	<p>甲午/領議政鄭太和請暇省父於水原, 命給馬, 令本道優賜食物。</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2월 6일(무신) 1번째기사</p> <p>병조가 각도 수군의 역이 과중함을 아뢰다</p>	<p>병조가 아뢰기를,</p> <p>“각도(各道) 수군의 역(役)은 다른 역에 비해서 배나 과중합니다. 우선 홍청도 수영(水營)을 예로 들어 그 큰 것만 뽑아내어 말하건대, 1년에 번포(番布)로 3필을 내는 외에 역가(役價)·찬가(饌價)·육물가(陸物價)를 또 목면(木綿)으로 갖추어 바쳐야 합니다.</p> <p>이른바 육물이란 즉 생갈(生葛)·생마(生麻)·백석(白席)·초둔(草蓆) 등의 물건을 말하는데, 매년 1인당 거두는 것을 계산하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삼질(三秩)의 역(役)이 있습니다. 이른바 삼질이란 바로 영속(營屬)의 진무(鎭撫)·사령(使令)·등패(等牌)를 말하는데, 종마(從馬)라고 일컬으면서 수군이 입번(入番)할 때마다 개인별로 징수하는 포목의 숫자가 또한 많습니다. 이 밖에 교초(郊草)를 무명으로 환산하여 내게 하고 어물(魚物)을 무역해 팔게 하는 등 과외(科外)로 마구 징수하는 폐단이 한정이 없습니다. 또 이른바 미리 배정해주는[豫定] 폐단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는 대신 미곡·견사(繭絲)·목화·지지(紙地)·철물(鐵物)·과일 같은 일체 소용되는 잡물(雜物)들을 미리 배정하는 것인데, 번포에 비해 배나 되는 숫자를 강제로 징수하</p>	<p>戊申/兵曹啓曰: “各道水軍之役, 比他倍重。姑以洪清水營, 撮其大而言之, 則一年番布三匹之外, 役價、饌價、陸物價, 亦以木綿備納。所謂陸物, 卽生葛、生麻、白席、草蓆等物也。以各年每名所收計之, 則其數極多。又有三秩之役, 所謂三秩, 乃營屬鎭撫、使令、等牌也。稱以從馬, 每於水軍入番之時, 逐名徵布, 其數亦多。此外郊草作木, 魚物質販, 科外侵徵之弊, 罔有紀極。又有所謂預定之弊, 除其身役, 預定雜物, 如米穀、繭絲、木花、紙地、鐵物、果實, 凡百之用, 比番布倍數勒徵。一年所徵, 殆至木綿數十端, 無告軍卒, 怨聲徹天。往</p>

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년에 징수하는 것이 무려 목면 수십 단(端)이 되기 때문에, 불쌍한 군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 무인년 사이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본도의 감사로 있을 때에 본영(本營)에 분부하여 이런 폐단을 개혁해 없애도록 하였는데, 그 뒤로 폐단이 전일과 마찬가지로 되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프고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병영(兵營)은 수영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폐단이 없지 않은데, 이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홍청 수사(洪清水使)가 보령 부사(保寧府使)를 겸하게 하고 병사가 청주 목사(淸州牧使)를 겸하게 하였는데, 이런 제도를 신설한 초기에 반드시 고질적인 폐단을 제거하여 군졸들을 보존시킬 발판을 마련해야 하리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도 이에 힘쓰도록 신칙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분부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비변사가 복계(覆啓)하기를,
 “병사와 수사가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군졸들을 착취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그전부터 경계시키고 단속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폐습이 이미 고질화하여 따르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병사와 수사가 수령을 겸하도록 새로 규례를 창립한 때에, 만약 옛날의 폐단을 모두 개혁하지 않는다면 군졸들이 소생하게 될 기약이 없을 것이니, 병조가 아뢴 의도는 실로 이에 있습니다.

병사와 수사의 경우는 수령을 겸하게 되어 이미 대동미(大同米)를 제급(題給)받을 뿐 아니라 장사(將士)의 지공(支供)도 그 안에 포함되었으니, 이 뒤로 만약 조금이라도 군졸을 침해하는 일이 있으면 일이 발생하는 대로 적발해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사(御史)가 염찰(廉察)할 때에도 반드시 군병의 질고(疾苦)를 두루 물어 본 뒤, 만약 여전히 침해하는 자가 있으면 중률(重律)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홍청도의 병사와 수사에게 분부하시는

在戊寅年間，領議政臣鄭太和爲本道監司，分付本營，使之革去此弊，厥後弊端，猶夫前日，誠極痛駭。兵營則雖不如水營之甚，而亦不無此弊，非但此道，他道皆然。目今洪清水使兼保寧府使，兵使兼淸州牧使，當此新設之初，想必裁祛宿弊，以爲軍卒保存之地。而自朝廷亦不可無飭勵之舉，請令廟堂，參商分付。”從之。備邊司覆啓曰：“兵、水使之巧作名目，侵漁軍卒，不一其端。故朝廷之從前戒飭，非止一再，而弊習已痼，無意遵奉。到今兵、水使新兼守令，創立規例之日，若不盡革舊弊，則軍卒之蘇息無期，兵曹之啓，意實在此。兵、水使非但兼守令，既有大同題給之米，將士支供，亦在其中，此後如有一毫侵及軍卒之事，則隨事摘發。御史廉察時，亦必遍問軍兵疾苦，如有仍前侵漁者，繩以重律宜當。以此意分付於洪淸兵、水使，亦令道臣，別爲申飭，而他道兵、水使，雖不兼守令，科外誅求者，亦當嚴禁。請並行文於他道監、兵、水使。”從之。

	<p>동시에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다른 도의 병사와 수사는 수령을 겸하지는 않지만 과외로 가림 주구하는 자는 역시 엄금해야 마땅하니, 다른 도의 감사와 병사·수사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2월 14일(병진) 3번째기사 통천의 효명 옹주에게 물량을 풍부히 주게 하고 옷감을 하사하다</p>	<p>김세룡(金世龍)의 처(妻)가 통천(通川)에 위리 안치(圍籬安置)되어 있었는데, 공급(供給)되는 물량이 매우 적다고 통곡하여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상이 이를 듣고 군수 이익한(李翊漢)의 파직을 명하고, 도신(道臣)에게 엄히 신칙하여 넉넉히 미찬(米饌)을 내리게 함으로써 물량이 부족하여 어렵게 되는 근심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봄·여름 옷감을 특별히 하사하였다.</p>	<p>金世龍妻在通川圍籬中，以供給甚薄，哭聲聞於外。上聞之，命罷郡守李翊漢，嚴飭道臣，優賜米饌，俾無艱乏之患，仍特賜春、夏衣資。</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2월 29일(신미) 3번째기사 심지원이 호남의 기근이 심하자 부세와 공물을 줄이자 아뢰다</p>	<p>상이 주장에 나아가 《서전》 홍범편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동지경연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근래에 들건대 호남의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망자가 속출한다 하니, 특별히 하유하시어 도신(道臣)을 신칙하소서.” 하니, 따랐다. 특진관 민응형(閔應亨)이 아뢰기를, “올해의 흉년은 예전에 듣지 못했던 일이니, 백성을 보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성상께서 만약 백성을 보호하시려거든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賦稅)를 줄이는 것이 최상인데, 현재 부세와 요역이 무겁고 번다하니 백성이 어떻게 고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물(貢物)을 상정(詳定)한 것이 곧 2백 년 동안 내려온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폐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폐단이 생기게 된 원인은 대체로 헛된 비용을 줄이지 못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전계 공진(供進)하는 물건이야 줄일 수 없다 하더라도 어용(御用)의 물품같은 것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건대 현재 내전(內殿)의 의장(儀仗)을 만들고 있다 하는데, 이 일도 정지시키는 것</p>	<p>上御書講，講《書傳》《洪範》。講訖，同知經筵沈之源曰：“近聞，湖南飢饉尤甚，死亡相繼，請特爲下諭，申飭道臣。”從之。特進官閔應亨曰：“今年凶歉，古所未聞，保民誠今日急務也。聖上如欲保民，莫若輕徭薄賦，而目今賦役煩重，民安得不困也？貢物詳定，乃二百年流來之事，而其弊何可勝喻？其所以致弊者，蓋以不得省浮費而然也。慈殿供進之物，雖不得減，如御用之具，可以減之。且聞方造內殿儀仗，此役亦令停罷宜矣。兇賊就誅之後，天災尙且孔棘，必須大變通，然後始可爲國也。近以諸都監糜費，</p>

	<p>이 온당합니다. 흉적이 복주(伏誅)된 뒤인데도 하늘의 재변이 아직까지 극심하니, 반드시 크게 일을 변통시킨 뒤에야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여러 도감에서 비용을 허비한 나머지 호조와 병조의 물력(物力)이 점차 바닥이 나고 있는데, 공상지(供上紙) 같은 경우는 가미(價米)가 매우 많으니, 이것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모두 옳긴 하다만, 일이 있을 때마다 줄이는 것도 폐단이 있을 것이다.”</p> <p>하고, 또 이르기를, “지금 들건대 호남에 기근이 크게 들었다 하니, 달마다 새로 생산된 것을 봉진(封進)하는 물건이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추수 때까지 정지시키도록 하라.”</p> <p>하였다.</p>	<p>戶、兵曹物力，漸至蕩竭，而至如供上紙，則價米甚多，此亦可減也。” 上曰：“卿所言皆是，而隨事減改，亦有其弊矣。” 上又曰：“今聞，湖南大饑，每朔新產封進之物，雖些少，限秋成停罷。”</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3월 13일(갑신) 1번째기사 영장 설치·훈국 도감의 폐해 단속에 대해 논의하다</p>	<p>상이 대신 및 비국의 제신(諸臣)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영장(營將)을 다시 설치하는 데 따른 편리 여부를 좌의정 김육(金堉)과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에게 의논하였더니, 김육의 소견은 신과 서로 부합되었습니다. 다만, 이시백은 말하기를 ‘이미 혁파한 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진관(鎭管)의 수령은 장령(將領)에 합당한 자를 가려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고을 진관의 수령을 어떻게 모두 적임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정승이 나오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병력을 장악한 사람이 형세가 불편한 데 구애되어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은 채 임의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무리 재주가 있는 자에게 임무를 맡기더라도, 그 뜻을 펴기 어려울 것입니다.”</p>	<p>甲申/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曰：“以營將復設便否，議于左議政金堉、右議政李時白，則金堉所見，與臣相符。 時白則以爲：‘不宜既罷復設。 鎭管守令，以將領可合者，擇送爲當。’ 各邑鎭管守令，何能盡得其人也？ 當待兩相之出，更議處之，而第念掌兵之人，拘於形勢之難便，繫其手足，不得任意舉職，雖委任於有才者，亦難以展布矣。” 上曰：“雖曰有煩，豈無隨便修舉之事乎？ 以此廢職，良可駭也。” 兵曹參判許積曰：“訓局</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번거로운 일이 있다고 하지만, 어찌 편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겠는가. 이 때문에 관직을 폐지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였다. 병조 참판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훈국(訓局)의 군병들에게 종이와 꿀을 수납하면서 군수 물자를 보충한다고 핑계대어 생기(省記)에서까지 제외해 주기 때문에 항오(行伍)가 텅텅 비어서 습진(習陣)하는 날마다 그 숫자가 매우 부족하니 이 또한 놀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수 물자를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둔(屯)을 설치하고 무역하면서 생기에서까지 제외해 주고 거두어 들인다면, 둔곡(屯穀)과 무역해서 번 돈은 어디에 쓴다는 말인가. 자못 해괴하기 짝이 없다. 엄히 도감을 단속하여 다시 전날의 습관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p>	<p>軍兵，除省記，收納紙、蜜，稱補軍需，故行伍踈缺，每於習陣之日，其數甚少，是亦可駭矣。”上曰：“稱以補軍需，設屯貿販，而又除省記，有所徵斂，則屯穀貿販，用於何處乎？殊甚駭異，嚴飭都監，使不得復踵前習。”</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3월 30일(신축) 2번째기사 정의현에 표류한 중국 상인에게 중국·일본의 상황을 물어보다</p>	<p>중국 상인이 정의현(旌義縣)에 표류해 왔으므로 현감 이탁남(李卓男)이 가서 살펴 보니 28 인이 모두 삭발하고 모자를 썼는데 그 옆에 화려한 비단으로 감싼 시체들이 쌓여 있었다. 온곳을 물어 보니, 대답하기를, “우리는 모두 남경(南京) 소주(蘇州) 백성들로서 일본에 무역하러 갔다가 이제 막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태풍을 만나 바다 가운데에서 배가 부서졌다. 그 결과 1백 85인이 빠져 죽고 다행히 살아남은 자는 겨우 28인인데, 침몰된 재화가 엄청나게 많다.” 하기에, 혜엄을 잘 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10분의 1이나마 채취하게 하였더니, 여우·수달·표범·쥐 가죽과 인삼·동철(銅鐵)·향랍(香蠟)·증백(縉帛)·의상·장석(帳席)·도검·기물 등이 각각 수천 수백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 묘진보(苗珍寶)라는 자가 꽤 문자를 해독하기에, 대명(大明)의 존부(存否)와 중국의 형세를 탐문해 보니, 대답하기를,</p>	<p>有漢商漂到于旌義縣，縣監李卓男往視之，二十八人皆剃髮着帽，旁有積屍，裹以綵帛。問其所自來，答云：“俱以南京、蘇州民，行商日本，纔得回船，忽遇颶風，船敗大洋中。溺死者一百八十五人，幸而生者只二十八人，而其所沈沒財貨甚多。”令善泅者，撈出其什一，則如狐·獺·豹·鼠之皮、人參、銅鐵、香蠟、縉帛、衣裳、帳席、刀劍、器用之物，各累千百。其中有苗珍寶者，頗解文字，探問大明存否、中國形勢，則答云：“曩歲，崇禎</p>

	<p>“수년 전 승정 황제(崇禎皇帝)가 이자성(李子成)에게 시해되고 북경(北京)은 마침내 청나라 사람들에게 함락되었다. 홍광(弘光) 이후로 또 노왕선(魯王先)이 장주(漳州)와 복건(福建) 사이에 있다가 다시 청나라 군대의 침략을 받아 광둥(廣東)으로 옮기고는 연호를 영력(永曆)이라고 하였다. 이에 광서(廣西)에 있던 이자성의 아들이 노왕을 추대하여 청나라 군사를 막았는데, 정승은 산서(山西) 굴옥현(屈沃縣) 사람 노진비(路鎮飛)이고 장수는 학성(郝姓)을 가진 사람이었다.</p> <p>청나라 사람들이 남경·협서(陝西)·산둥(山東) 등 지역을 모두 차지했는데, 과거에 명나라의 총병(總兵) 강상(姜祥)이 대동부(大同府)에 웅거하고 6부(府)의 군사를 조발(調發)하여 여러 차례 청나라 군대 수십 만을 죽이면서 2년이나 버티었으나 양식이 떨어지고 군사가 굶주린 끝에 부하에게 살해당하였으므로 산서 지방도 청나라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사천(泗川)은 장현충(張顯忠)이 이미 죽고 무대정(武大定)이 점거하였으며, 운남(雲南)은 목영(沐英)의 후예가 아직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감히 침입을 못하고 있다.”</p> <p>하였다. 또 유구(琉球)와 일본 양국의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유구는 일본에 소속되었는데, 남경과 복건 사람들이 또한 양국과 서로 왕래하고 있다.”</p> <p>하였다. 묘진보가 이어 스스로 공사(供辭)를 써서 이탁남에게 간청하기를, “소상(小商) 등은 남경 소주부 오현(吳縣) 사람들로서 홍광 원년에 성지를 받들고 바다를 건너 일본에 무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자성의 난을 만났는데다가 청조(淸朝)가 남경을 쳐 홍광 천자가 해를 입어 천하가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소상 등이 감히 돌아가지 못하고 교지(交趾)로 들어가 행상으로 업을 삼아 온 지 이제 7년이 됩니다.</p> <p>삼가 듣건대 청조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한다 하기에 본토에 돌아가려고 1월 22일 일본에서 배를 띄워 2월 9일에 귀국의 지방에 이르렀는데, 바람을</p>	<p>皇帝爲李子成所弑，而北京遂爲清人所陷。弘光之後，又有魯王先，在漳、福之間，復被清兵寇掠，徙居廣東，以永曆爲號。李子成之子在廣西者，翊戴魯王，以拒清兵，其相則山西屈沃縣人路鎮飛，其將則郝姓人也。清人盡得南京、陝西、山東等地，而曩時有大明總兵姜祥，坐據大同府，調發六府兵，屢殺清兵數十萬，居二年，食乏士飢，爲麾下所殺，故山西亦爲清人所有。泗川則張顯忠既死，爲武大定所據，雲南則沐英之後，尙在其地，故清兵不敢侵矣。”</p> <p>又問琉球、日本兩國之事，答云：“琉球屬於日本，而南京、福建人，亦與兩國互相往來矣。”</p> <p>苗珍實仍自寫供辭，懇請于卓男曰：“小商等以南京蘇州府吳縣人，弘光元年，奉旨過洋，往賈日本。遽遭李子成之亂，且緣淸朝侵伐南京，弘光天子被害，天下洶擾，小商等不敢回歸，轉投交趾，行商爲業，今至七年。竊聞，淸朝，愛民如子，故將還本土，正月二十二日自日本發船，二月初九日到貴國地方，遇風船敗，同伴二百十三人皆溺死，存者僅二十八人。懇祈老爺，大</p>
--	---	---

	<p>만나 배가 부서져 같이 왔던 2백 13인이 모두 익사하고 살아남은 자는 겨우 28인입니다. 간절히 기원하던 노야(老爺)께서 크게 자비심을 베풀어 소상들을 곧바로 일본에 보내 주신다면 그런 대로 살아날 가망이 있겠습니다. 만약 북경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길이 더욱 멀어 2, 3년은 걸려야 본토에 도착할 텐데, 생명을 온전히 하여 도착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본까지는 겨우 며칠 거리밖에 안 되고 일본에서 남경까지도 수개월 거리인데, 부모와 처자를 다시 서로 만날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이보다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삼가 청하건대 국왕 전하께 품하여 시행해 주소서...” 하였다.</p> <p>이탁남이 확인한 사실을 모두 기록하여 그의 공사와 함께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鎭)에게 보고하니, 이원진이 치계하여 알렸다.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상에게 아뢰기를, “표류해 온 중국인을 덮어두기는 어려우니, 전례(前例)에 따라 그 재물도 실어서 북경에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힐문하는 단서를 주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 우리 나라에서 잡아 보낸 자들이 모두 도륙(屠戮)되었는데, 내 또 차마 박절하게 죽을 곳으로 보내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하니, 장차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고, 마침내 정태화의 의논을 따랐다.</p>	<p>發慈悲，直送小商等于日本，則庶可得生也。若送北京，道路逾遠，二三年當到本土，而其全生得達，不可必也。自此距日本，纔數日程，自日本距南京，亦數月程，父母、妻子重得相逢，恩莫大焉。伏乞稟于國王殿下，施行云云。”卓男悉記所見，且將供辭，報于濟州牧使李元鎭，元鎭馳狀以聞。上令廟堂議處，領議政鄭太和言於上曰：“漂來漢人，難可掩置。宜遵前例，載其貲財，送至北京。不然，恐有詰問之端矣。”上曰：“前日自我國執送者，盡被屠戮，予又不忍迫就死地，而時勢到此，其將奈何？”竟從太和之議。</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4월 2일(계묘) 3번째기사 동지중추 민응형이 사</p>	<p>동지중추 민응형(閔應亨)이 청대(淸對)하니, 상이 소견(召見)하였다. 민응형이 아뢰기를, “사치의 피해는 천재지변보다 심합니다. 지난 혼조 때부터 세상이 모두 화려한 것만 숭상하여 고질적인 폐습이 이루어져 오랜 세월을 지내 왔습니다. 선왕께서 반정한 초기에 오히려 모두 다 변화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오늘날에 와</p>	<p>同知中樞閔應亨淸對，上召見之。應亨曰：“奢侈之害甚於天災。粵自昏朝，世尚華靡，風成習痼，積有歲月。先王改紀之初，猶不能盡變，及至今日，其弊滋蔓，章服素制，貴賤無別。</p>

회의 폐단·조석윤 구제에 대해 아뢰다

서는 그 폐단이 자라나 장복(章服)의 제도가 문란하고, 귀천이 구분이 없습니
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맑게 하여 욕심을 줄이시고 검소한 덕을 애써
닦으시어 대우(大禹)가 옷과 음식을 거칠게 하고, 문왕(文王)이 궁실을 낮게
하고, 한 문제(漢文帝)가 신부인(愼夫人)의 옷을 땅에 끌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하소서. 전하께서 비록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성인의 훈계를 강론하시지만
항상 갑(甲)한테서 화난 것을 을(乙)에게 돌리시는 병통이 있으시며 말씨가
너무 노골적이고 형벌이 중도를 잃었으므로 언로(言路)가 이미 막혔으니, 그
피해가 어찌 작겠습니까.
지난날 조석윤(趙錫胤)은 실지로 죄가 없었는데, 이경억(李慶億)을 친구(伸救)
한 것으로 인하여 유배를 보내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갑한테서 화난 것을
을에게로 옮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사면해 주라는 명을 특별히 내리
셨으니, 신하로서 어느 누가 성상의 넓으신 도량을 모르겠습니까마는, 다만
신의 소견으로는, 조석윤은 진정한 사류(士流)이므로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
들 중에 그보다 뛰어난 자는 없다고 봅니다. 세상이 점점 낮아져 인물이 잔달
아 나라에는 믿을 만한 신하가 없으니 원컨대 조석윤을 속히 수용하여 언로
를 열어 주소서.
지난번에 흰 무지개가 해를 가로지르는 이변이 있었는데도 일관(日官)이 사실
대로 아뢰지 않았으며, 근래에는 또 큰 바람이 불어 피해가 있었으니, 앞날의
걱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일 전하께서 겨우 약간의 비가 왔다고 하여
문득 만족해 하시고 근신에게 명하여 시를 지어 기쁨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또 빈번한 하사가 있으셨으니, 이는 실로 상제(上帝)를 대하는 정성이 계속되
지 못하여 그러한 것으로, 이날 비가 멈추고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대체로
공구 수성은 재앙을 늦추는 방법이며, 한번 쟁그리는 것과 한번 웃는 것은 현
명한 임금이 아꼈던 바인데, 어찌 시를 지으라는 분부를 하시어 하늘을 공경
하는 마음을 소홀히 하십니까.”

願殿下清心寡慾，務修儉德，如大禹之惡衣食，文王之卑宮室，漢文帝、愼夫人之衣不曳地也。殿下雖日御經筵，講論聖訓，而常有怒甲移乙之病，辭氣太露，刑罰失中，故言路已塞，其害豈淺淺哉？頃日趙錫胤實無其罪，而因李慶億之伸救，至於行遣，此非移乙之怒乎？其後特賜宥赦，臣下孰不知聖度之恢廓也？第以臣所見，趙錫胤眞士流也，在廷諸臣，無出其右。世漸汚下，人物眇然，國無倚仗之臣，願速收用錫胤，以闢言路。向有白虹貫日之變，而日官不以實聞，近又有大風之災，前頭之憂，不可量已。日間殿下，纔得小雨，便以爲足，乃命近臣，賦詩志喜，又有便蕃之錫，是實對越之誠，有所間斷而然，是日雨卽收而風大作矣。夫恐懼修省，弭災之道也，一嘖一笑，明主之所惜也。何遽爲賦詩之舉，以忽敬天之心乎？”上曰：“卿之惓惓陳達，悉出至誠，不但樂聞於耳，良切嘉悅之心。”仍謂入侍承旨朴長遠曰：“所陳如是懃懃，虛辭優答，殊非誠實之道，趙錫胤絃用。”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정성을 다해 진달한 것이 모두 지성에서 나온 것이니, 비단 듣기에만 좋을 뿐 아니라 마음에도 매우 기쁘다.” 하고, 입시 승지 박장원(朴長遠)에게 이르기를, “진달한 내용이 이렇듯 간절하니, 빈말로 너그러운 대답만 하는 것은 자못 성실한 도리가 아니다.” 하고, 조석윤을 서용토록 하였다.</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4월 6일(정미) 2 번째기사 상평창의 곡식 1백 석 으로 남한산성에 있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 다</p>	<p>상평창(常平廳)에 있는 곡식 1백 석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있는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p>	<p>以常平廳粟一百石， 賑救南漢山城飢民。</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4월 9일(경술) 2 번째기사 해서 지방의 결손된 조곡 3천 5백 석을 건 감하다</p>	<p>해서 지방의 결손된 조곡(糶穀) 3천 5백 석을 건감하였다. 이에 앞서 조정이 강화도의 창곡을 풀어 해서 지방의 여러 고을에 옮겨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자를 받게 하였는데, 해가 갈수록 더욱 불어나 백성들이 갚을 수 없게 되자, 감사 정치화(鄭知和)가 흉년이 들어백성들의 생활이 곤란하다 하여 그 결손분을 건감해 줄 것을 청하였으므로 따른 것이다.</p>	<p>蠲免海西糶穀三千五百石之耗。 先是，朝廷命發江都倉穀，轉移海西列邑，與民取息，逐歲益滋，民不能償。 監司鄭知和以歲饑民困，請蠲其耗，從之。</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4월 10일(신해) 4번째기사</p>	<p>동지중추부사 허적(許積)이 상소하기를, “삼가 정언 이만웅의 상소를 보니, 있는 힘을 다하여 신을 공격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그와 따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편안히 받고만 있겠습니까. 당초에 대동법(大同法)을 강정(講定)하던 날, 신이 비국의 여러 재상을 따라</p>	<p>同知中樞府事許積上疏曰： 伏見正言李萬雄之疏，攻斥臣身，不遺餘力。 臣雖不敢與較，亦安得安而受之？ 當初大同講定之日，臣忝隨備局諸</p>

허적이 이만옹이 대동법에 대한 상소를 올린 것과 관련 사직 상소를 올리다

경연에 입시했었는데, 성명께서 신들에게 대동법이 편리한지 여부에 대해 두루 물었습니다. 여러 대신들은 대부분 그 일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신은 감히 이 법의 설치는 비록 백성을 편리하게 하자는데 그 의도가 있으나 시행하는 즈음에 장애되고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진달했었고, 이어 호서 지방 선비들이 올린 상소로 인해 고상신 한흥일(韓興一)이 그 법을 시행하자고 강력히 청하였습니다. 성명께서 여러 재상에게 다시 물었는데, 신도 처음 의견에 변함이 없었고 여러 재신도 불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자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신은 생각을 숨긴 적이 없는데, 이만옹은 성상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그 법이 불가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니, 경연에서 주고 받았던 대화를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요하게 말하여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신의 죄안을 삼은 것입니까. 우연히 상신이 잘못 천거함으로 인하여 성명께서 신의 무상함을 모르시고 드디어 유사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재주는 빈약하고 임무는 중대하다는 것을 신이 어찌 몰랐겠습니까마는 성상의 하교가 정녕 하니 감히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신하가 되어 일을 맡는 도리는 반드시 뜻에 합당한 것을 가려서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법인데, 오늘날 정사를 맡은 자 중에 위로는 낭묘(廊廟)로부터 아래로 백집사(百執事)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받들어 행하는 일이 어찌 모두 자기들 뜻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신은 또 어리석게도 스스로의 능력은 헤아리지 않고 여러모로 잘 생각하면 혹시라도 조그마한 보탬이 될까 해서 명을 받고 사직하지 않은 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 없이 7, 8개월을 지내 왔습니다. 비록 정사에 대단한 도움은 주지 못했지만 또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만 했다는 말은 어찌 신의 실정 밖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상물의 종류를 자세히 결정하여 그 절목을 강구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신에게 상

宰, 入侍筵席。 聖明遍詢便否於臣隣, 諸臣多以不曉事爲對, 臣敢陳茲法之設, 雖在便民, 行之之際, 多有窒礙難便者。 繼緣湖西士子之上疏, 故相臣韓興一, 請行甚力, 聖明更問諸宰, 而臣又不變初見, 諸宰亦不以爲不可, 遂至斷定。 臣之所懷, 未嘗有隱, 而萬雄乃曰: “承詢前席, 不言其不可。” 無乃筵中說話, 未之聞知耶? 抑以不能極言力爭, 爲臣罪案耶? 偶因相臣之謬舉, 聖明不知臣無狀, 遂責之以有司之事。 才弱任重, 臣豈不知, 聖教丁寧, 其敢不承? 況人臣任事之道, 必擇其合意者而從之, 否則違之。 今之從政者, 上自廊廟, 下至百執事, 其所奉行, 必皆合於己意耶? 臣又愚不自量, 庶幾揣摩裁度, 或有一分之利益, 受命而不辭, 竭慮焦思者, 邇來七八月矣。 雖不足以大有補於施措, 亦自謂盡心力焉耳。 唯以奉行而已云者, 豈非臣之情外乎? 至如詳定物種, 講究節目, 無不稟議於大臣, 而唯是朔膳及方物, 自京封進一款, 再達於榻前, 而相臣及同僚之意, 與臣所見, 不無參差, 臣乃紕己見而從之, 亦緣不能自信故也。 所謂

	<p>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삭선(朔膳)과 방물(方物)만은 서울에서 봉진해야 한다는 일에 대해서 재차 탐전에서 진달하였는데 상신과 동료의 의견이 신의 견해와 다른 면이 없지 않아서 신은 저의 견해를 접어두고 그들을 따랐는데 그것은 역시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생각하는 실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지적하여 말한 것입니까? 돈을 무역하는 법은 본래 한홍일이 건의한 데서 나온 것인데, 강구하던 초기에 신이 마침 병으로 누워 있었으므로 결국 그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영이 반포된 후에도 그 법이 유해하다는 것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을 모신 자리에서 먼저 서울에만 시험해 보고 서서히 지방에까지 확대하자는 뜻을 대략 진달하고 또 돈을 주조(鑄造)하는 것이 돈을 무역하는 것보다 편리하지 않다는 것을 진달했습니다. 그 후에 신이 좌상에게 말하기를 ‘돈을 사용하는 법은 마땅히 미곡전(米穀廩)에서부터 비롯해야 한다.’고 하자, 좌상이 상당히 어렵다는 뜻을 보였지만 신이 그 법을 시행하자고 강력히 청하였습니다.</p> <p>시민들의 원망이 신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신이 비록 변변찮지만 어찌 감히 나의 죄를 어렵게 여겼던 상신에게 돌리겠습니까. 설령 신이 사람들의 비방을 모면할 꾀를 엉뚱하게 내었다고 한다면 어찌 당초 경연에서 장애 요인이 많아 편리하게 여기기 어렵다는 등의 말로 자신을 변명할 소지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설령 신이 짐짓 대충 넘길 생각을 하였다면 마땅히 명을 받기 전에 했을 것이고 책임을 맡은 후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른바 물러가서 뒷말을 하였다는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의 어떠한 말을 지적한 것이며,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p> <p>지난번에 홍청 감사(洪淸監司) 김홍욱(金弘郁)이 여러 번 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는 큰 일이 성과를 거두려 하는데 중간에 그만 둘 수 없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스스로 백성들의 원망을 책임질 것을 기약하여 비방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신을 격려해 주기에 신</p>	<p>無商確之實者，指此而發耶？錢貨之法，本出於韓興一之建白，講究之初，臣適病臥，終不得與聞其議，及其令布之後，亦未嘗論其有害。但於前席，略陳先試京中，徐及外方之意，且陳鑄錢不如買錢之便矣。其後臣言於左相曰：“用錢之法，宜自米穀廩始。”左相頗有持難意，臣力請行之。市民之怨，實由臣起，臣雖無狀，何敢以己罪，歸之於持難之相臣乎？設令臣曲生免謗之計，則何不以當初筵席窒礙難便等語，爲自明之地乎？設令臣姑爲依違之計，則當在於未承命之前，不當在於既受任之後也。所謂退有後言者，未知指臣何樣說話，而得之何人也。往者洪淸監司金弘郁，屢抵臣書，一則曰：“大事垂成，不可中輟。”一則曰：“自期任怨，不撓謗言。”且以此勉臣，臣亦以內外一心，庶克有濟，復書勸之矣。弘郁設或失着於節目之間，至如反生厭避之心，欲待臺評之說，非實狀也。終始擔當，任怨不撓者，尙被評論，臣何足恨？伏乞鑄臣本職及常平、備局之任。</p> <p>答曰：“卿之所帶職名，無非緊切之務，</p>
--	--	---

	<p>역시 내외가 한 마음이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답서를 보내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홍욱이 설혹 절목 사이에 실책을 범하였다고 하나, 도리어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대간의 평을 기다리고자 한다는 말에 있어서는 실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원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가 오히려 대간의 논박을 받았는데, 신이야 어찌 한할 것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신의 본직과 상평창(常平倉) 그리고 비국의 임무를 삭탈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경이 맡고 있는 직명이 긴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잠시라도 비워 둘 수 없다.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보라.”</p> <p>하였다.</p>	<p>決不可暫曠，勿辭察職。”</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4월 15일(병진) 2번째기사 가뭄이 심하게 들자 이에 대한 교서를 내리도록 하다</p>	<p>이때에 가뭄이 매우 심하였는데, 상이 수찰(手札)로 하교하였다.</p> <p>“부덕한 내가 외람되게 대통을 이어 백성들의 위에 있으면서, 일찍이 백성을 보살피 주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한갓 물난리와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끼치게 하였으니, 그저 부끄럽고 두려울 뿐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겪고 있는 가뭄의 참상은 근고(近古)에 없던 일로 애처로운 우리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지경이다. 아, 하늘이여, 죄는 나에게 있으니 나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몇몇한 이치인데, 어찌하여 차마 무고한 백성들에게 내리는가. 그 허물에 대해 조용히 살펴보니, 진실로 나 한 사람 탓이다. 오늘부터 정전(正殿)을 피하여 더욱 자신을 책망하고 허물을 반성할 터이니, 물선(物膳)을 줄이고 술을 금하는 등의 일을 유사에게 명하여 거행토록 하라. 승지는 나를 대신해서 교서를 지어 바른 말을 널리 구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보필하도록 하라. 인하여 생각건대, 상하가 서로 수신하는 것은 고금의 통상적인 의리이다. 재앙을 불러온 것이 비록 우매한 나의 부덕 한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신하들에게 있어서도 어찌 실책한 바가 없겠는가. 안팎의 관리들에게 칙령(勅令)을 내려 제각기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하면서 조심하고 반성하여 하늘의 노여움에</p>	<p>時，旱災甚酷，上以手札下教曰：眇予否德，叨承丕緒，託乎兆民之上，曾無恤民之政，徒貽水旱之災，固已不勝其慙懼。及至今日，早曠之慘，近古所無，哀我民生，大命近止。嗚呼皇天！罪在寡躬，降罰予一人，理之常也，胡寧忍之於無辜之民乎？靜省厥咎，亶在予小子。自今日避正殿，益加責躬省愆，減膳、禁酒等事，其令有司舉行。承旨代予草教，廣求直言，以補不逮。仍念，上下交修，古今之通義。召災致沴，縱由於寡昧之不德，其在臣隣，亦豈無所失乎？勅令中外官吏，各勤乃職，恐懼修省，以答天譴。</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4월 19일(경신) 3번째기사 김여옥을 석방하고, 기 우제에 있어서 정성껏 재계할 것을 명하다</p>	<p>답하도록 하라.” 상이 주장에 나아가 《서전》 대고편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나서 지경연 박서가 아뢰기를, “김여옥(金汝鉦)은 사람됨이 솔직하고 국가를 위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바인데, 응대할 때 실책을 범했다 하여 어찌 무거운 죄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국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재앙이 생긴 것이 실로 나 때문이다만 백관마저 태만하여 그들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있는데, 김여옥의 말도 동료들에게 미루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임금이 혼자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치가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함께 일을 하란 말인가. 그러나 경의 말이 이러하니, 반드시 무거운 죄를 줄 것은 없다. 유사로 하여금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참찬관 이홍연(李弘淵)에게 이르기를, “너무도 참혹한 가뭄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다. 대신을 보내어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가 오지를 않으니, 걱정스런 마음이 지극한 나머지 친히 기우제를 지내보고 싶다. 하늘에 대한 정성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으므로 신하들을 책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나의 뜻을 몸받지 않았으니, 이는 상하가 정성과 공경을 다한 도가 아니다. 제관(祭官)에게 칙령을 내려서 정성껏 재계하여 술도 마시지 말고 냄새 나는 채소도 먹지 말게 하라. 그리고 헌부의 관원을 불러 이 교지의 뜻을 전하여 제관과 제사에 참여할 사람 중에 만약 재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모두 적발하도록 하라. 대궐 안에 입직하는 관원은 더욱 공경을 다하여 그전처럼 서로 술을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병조로 하여금 다시 수문장(守門將)에게 칙령을 내려 잡인의 출입을 엄금토록 하라. 승지는 이미 나의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 혹시라도 받들어 시</p>	<p>上御書講，講《書傳》《大誥》。 講訖，知經筵朴遼曰：“金汝鉦之爲人眞率，奉公盡職，人所共稱，應對失當，豈足深罪乎？”上曰：“今日國事，無可爲矣。 災沴之生，實由寡躬，而百隸怠慢，不事其事，汝鉦之言，亦出於推諉同僚。 人君無獨運之理，其誰與共事乎？然卿言如此，不必深罪。 其令攸司放釋。” 上謂參贊官李弘淵曰：“旱氣孔慘，愈往愈甚。 遣大臣禱雨，亦無冥應，憂悶之極，將欲親禱。 對越之誠，唯在予躬，不可責之臣隣，而然在下者，不體予意，則殊非上下交致誠敬之道也。 勅令祭官，虔誠致齋，不飲酒不茹葷。 且召憲府之官，傳此教意，祭官與參祭之人，若有不謹齋戒者，悉加摘發。 闕中入直之官，尤當致敬，使不得相從飲酒，如前之爲。 令兵曹更飭守門將，嚴禁雜人之出入者。 承旨既悉予意，如或奉行有未盡者，難免其咎矣。”</p>
--	---	---

	행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허물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4월 21일(임술) 1번째기사 가뭄을 이유로 진상하 는 물선을 그만두라고 명하다	여러 도에서 진상하는 물선(物膳)을 그만두라고 명하고, 왕대비전에만 봉진하 도록 명하였다. 【가뭄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명을 내린 것이다.】	壬戌/命寢諸道物膳， 只令封進於王大 妃。 【因旱災有是命。】
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4월 24일(을축) 3번째기사 가뭄 해결에 대한 논 의를 하다	상이 삼공, 원임 대신, 육경, 삼사 장관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뭄의 참혹함이 날이 갈수록 심하니 이는 실로 과인이 부덕하여 하늘의 죄 를 받은 것이다. 내가 직접 기우제를 지내던 날 비가 쏟아질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구름이 걷히고 맑게 개었으니 타는 듯한 나의 생각이 어찌 한이 있겠는 가. 그래서 경들을 만나 나의 잘못에 대해서 듣고자 한다.” 하니,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상이 직접 사직단에 제사를 지내고 나자 가랑비가 뿌리기에 지극한 정성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살핌이 있는 것인가 하고 여겼더니 순식간에 구름이 걷히 고 뜨거운 해가 다시 비추니 신들은 직정이 되고 민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 겠습니다. 이제는 죄수들을 석방하여 경죄인과 중죄인을 따지지 말고 옥문을 활짝 열어 준 뒤에야 원망과 사나운 기운이 해소될 것입니다. 만약 문안(文 案)만을 가지고 논단(論斷)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분변하여 실정을 얻어내기 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에 대응한 상소에 혹 계복한 죄인도 심리하 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 말이 진실로 옳은 말입니다. 마땅히 형관으로 하여금 다시 분명하게 심리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上引見三公、原任大臣、六卿、三司 長官。 上曰：“旱災之慘， 日甚一日， 實由寡昧不德， 獲戾于天也。 親禱之 日， 庶幾有霏然之望， 而旋即開霽， 予 之焦思竭慮， 曷有其極？ 玆接卿等， 欲 聞闕失。” 領議政鄭太和曰：“親祀社 稷， 微雨露灑， 至誠所感， 若有冥應， 而須臾解陰， 杲日復出， 臣等憂遑悶 迫， 不知所爲也。 今宜疏釋罪辟， 勿 問輕重， 洞開囹圄， 然後可以解冤枉， 而消戾氣也。 若但取文案而論斷， 則 恐難辨核得情矣。 且於應旨之疏或以 爲， 啓覆罪人， 亦宜審理， 此言誠是。 宜令刑官， 明覆疏決。” 上曰：“予意 固已如此矣。 國家多事， 不覆大辟， 囚于今十餘年。 此囚等雖已就服， 其

	<p>“나의 뜻도 진실로 이와 같다. 국가에 일이 많아서 사형수를 계복하지 못한 지가 지금 십여 년이 되었다. 이 죄수들이 비록 복죄하였다고 하나 그 가운데 원한을 품은 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자가 없었겠는가. 여러 해를 옥에 가두어 두었으니 필시 억울한 기운이 있었을 것이다.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재해를 불러들인 것이 아마 이 일 때문인가 보다.”</p> <p>하였다. 좌의정 김육이 아뢰기를,</p> <p>“심리(審理)는 단지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인데 만일 죄가 있는 자까지 모두 사면을 받는다면 어찌 심리라고 하겠습니까.”</p> <p>하고, 대사헌 오준(吳竣)이 아뢰기를,</p> <p>“계복한 죄인은 법률상 마땅히 사형을 해야하므로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대사헌의 말은 법률대로 집행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사형수 중에 혹시라도 실정을 따져서 사형을 면할 자가 있을지 모르니 지금 일체로 심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p> <p>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선왕조 때는 계복한 죄인이 혹 그들의 처자(妻子)가 상소를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므로 인해 사형을 감하여 정배된 일이 있습니다.”</p> <p>하고, 우의정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p> <p>“선왕이 일찍이 가뭄을 만나 신하들을 인접하고 형옥에 대하여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죄인은 단지 문안(文案)만으로 논단(論斷)할 수 없습니다. 죄는 가벼운데 정상이 가증스런 자가 있으며, 죄는 무거운데 정상이 용서해 줄 자가 있습니다.’ 하니, 선왕이 그날 바로 금부와 형조의 당상을 불러들이도록 하여 죄수를 탐전에서 의결토록 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신은 여기에서 형옥의 실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p>	<p>中豈無抱冤難明者乎? 累歲繫獄, 必有鬱抑之氣。 傷和召災, 恐由於斯也。”</p> <p>左議政金堉曰: “審理只是解冤枉而已, 如使有罪者, 竝蒙宥赦, 則豈審理之謂也?” 大司憲吳竣曰: “啓覆罪人, 在法當死, 不可輕議。” 上曰: “大憲之言, 執法之意也, 而然死囚之中, 亦或有原情免死者, 今宜一體疏決。” 太和曰: “先王朝啓覆罪人, 或因其妻子之上言訴冤, 減死定配矣。” 右議政李時白曰: “先王嘗遇旱災, 引接臣隣, 問及刑獄, 臣對曰: ‘罪人不可但以文案論斷。 或有罪輕而情可惡者, 或有罪重而情可怨者也。’ 先王即日命召禁府、刑曹堂上, 議決罪囚於榻前, 居數日大雨。 臣於此, 益知獄情之不可不詳察也。” 上曰: “諸大臣之言是矣。 再行審理, 雖非常例, 今茲旱暵, 既是異常之變, 予欲親覈罪囚, 疏決冤枉。 其令攸司, 即日舉行, 而除逆賊緣坐, 凡罪人勿論輕重, 一體審理。” 太和曰: “先朝亦有榻前審理之舉, 而詳議稟決, 至於夜深。 今請依此例, 令禁府、刑曹堂上, 各持文案, 入侍稟裁。” 上從之。 領府事李敬輿曰: “臣竊念, 致旱</p>
--	---	---

	<p>더욱 알게 되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여러 대신들의 말이 옳다. 재차 심리하는 것은 비록 상례가 아니지만 지금 가뭄은 이미 이상한 재변이니, 내가 친히 죄수를 논핵하여 그들의 원통함을 심리하고자 한다. 유사로 하여금 오늘 당장 거행토록 하되 역적과 연좌된 자는 제외하고 일반 죄인들은 경중을 따지지 말고 일체로 심리하라.”</p> <p>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선조 때도 탐전에서 심리했던 거조가 있었는데, 상세하게 의논하여 품결하느라 늦은 밤까지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와 같은 규례에 따라 금부와 형조의 당상으로 하여금 각각 문안을 가지고 입시하여 품제(稟裁)토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영부사 이경여(李敬輿)가 아뢰기를,</p> <p>“신이 삼가 생각건대, 한재를 불러온 이유는 건강(乾剛)한 기운이 유달리 강하여서 위아래가 서로 통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높다랗게 위에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전하께서 두려워하는 정성으로 제사를 지냈건만 아직도 비가 오지 않으니, 전하의 마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어떠하시겠습니까. 전하는 또한 백성들의 하늘입니다. 대체로 전하의 허물과 시정(時政)의 잘못에 대하여 혹 숨기지 않고 직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뜻밖의 진고를 내려 엄한 말로 지적하시니 이러한 거조가 언로를 막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마땅히 스스로 반성하시어 천심(天心)을 감격시키도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내가 구언(求言)을 하는 것은 직언을 들어서 착한 일을 하고 허물을 고치고 싶어서이다. 경의 말이 지극히 간절하니, 어찌 감격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사실 불민한 내가 일을 해내지 못할까 염려되니 공경(公卿)과 여러 신하들이 제각기 품은 생각을 진달하라.”</p> <p>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p>	<p>之由，無乃乾剛獨亢，上下不交之故歟？夫高高在上者，天也。以殿下恐懼之誠，圭璧既卒，而尙無報應，則殿下之心，到此尤如何哉？今殿下亦臣民之天也。凡殿下之過失與時政之疵病，或有直言不諱者，則反下情外之教，嚴辭斥之，此等舉措，幾乎杜塞言路矣。殿下亦宜自反於己，以格天心也。”</p> <p>上曰：“求言所以欲聞直言，遷善改過也。卿言切至，寧不感激惕念哉？實恐不敏，無以克濟，公卿諸臣，各陳所懷。”</p> <p>敬輿曰：“既下求言之教，終無應旨之人，於此可見下情之壅遏矣。”</p> <p>上曰：“願聞可救之策。”</p> <p>敬輿曰：“先德後刑，是人君治國之道也。殿下雖無嚴厲細察之失，政令施措，多有急切之舉。意者，殿下欲以刑法，爲激末世振頹綱之具，而以臣所見，不立其大本，徒區區於刑政之末，則弊日益生，無以爲治。夫醫者之治病也，試藥而無效，則更投他藥。殿下既以刑法御下，而尙無其效，今宜更張，務尙德政也。”</p> <p>上曰：“卿言有遠大之慮。聽之如飲醇醪，敢不惕念焉？夫百執事，任一司之責，而猶懼其不能盡職，況乎受</p>
--	---	---

	<p>“구언한다는 전교를 내렸는데, 아직까지 전교에 대응하는 상소를 올리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에서 아랫사람들의 심정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듣고 싶다.”</p> <p>하자, 이경여가 아뢰기를,</p> <p>“덕을 먼저 베풀고 형벌을 뒤에 쓰는 것이 임금의 국가를 다스리는 도입니다. 전하께서 엄하게 다스리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실책은 비록 없었다 하더라도 정령(政令)을 시행함에 있어 서두르는 거조가 많으셨습니다. 생각건대 전하께서 형법(刑法)을 가지고 말세를 경동시키고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려는 도구로 삼으려는 듯합니다만, 신의 소견으로는 그 대원칙을 세우지 않고 구구하게 형정의 말단만 추구한다면 폐단은 날이 갈수록 더욱 발생하여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의원이 병을 치료할 때 약을 썼다가 효과가 없으면 다시 다른 약을 쓰는 법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형법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렸는데도 오히려 그 효과가 없었으니, 이제는 그 법을 바꾸어 덕(德)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숭상해야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경의 말에는 원대한 생각이 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치 순주(醇酒)를 마신 듯하다. 감히 마음에 새기지 않겠는가. 대체로 백집사(百執司)가 한 관아의 책임을 맡는 데에도 오히려 맡은 직분을 다하지 못할까 염려하는데 더구나 조종(祖宗)이 물려 주신 중대한 책임을 맡고서 백성들의 위에 있는 자이겠는가. 세도(世道)가 미약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무너져서 아랫사람이 상전을 능멸하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업신여기니, 밤낮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차라리 법령과 기강을 엄숙히 하여 세상을 격려시키고 말지언정 힘 없이 쓰러져 진작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싶지는 않다. 또 지금</p>	<p>祖宗付畀之重，處於臣民之上者乎？世道委靡，日以益壞，下凌上、賤凌貴，盡思夜度，了無善策。寧欲嚴肅法綱，激礪一世，而不欲爲頽惰不振之歸耳。且今諸臣啓稟之事，循私者十常二三，故雖大臣獻議，予不得屈己從之。誠以下無周、召之輔弼，而隨事從之，則有不可故也。”敬輿曰：“二三諸臣，雖有不逮之失，豈敢負殿下哉？”上曰：“頃於鄭士俊斷律之日，予非以諸大臣獻議，爲有私意也，世俗有一端議論，不知曲折，而妄言是非，故大臣亦必不得自由也。”敬輿曰：“臣言非以爲，人君不親政事，專委臣下而後，可做治平也。凡臣僚所言，折衷而用之，無不可者矣。”上曰：“人臣不能盡其責，故不見信於君上。予是以每見其所爲，輒疑其出於私也。”太和曰：“自有朋黨，朝論携貳，故糾劾之舉，雖出於公議，殿下必先致疑於伐異。是以搢紳之間，不敢相規，默默苟容矣。”上曰：“頃者閱鼎重劾一宰臣【李滄。】曰：‘人不可以一眚永廢，苟有所失，隨聞糾劾，後復收用，誠是相規之道也。’予嘉其言，卽許罷斥，而旋復起</p>
--	---	---

<p>여러 신하들이 계품한 일을 보면 사심을 따른 자가 항상 열에 두셋은 되므로 비록 대신이 현의한 것이지만 자신을 굽혀 따르지 못하겠다. 이는 진실로 아래에 주공(周公)·소공(召公)과 같은 보필하는 신하가 없어서 일마다 따르면 불가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p> <p>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두세 명의 신하들이 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실책이 있으나 어찌 감히 전하를 저버리기야 했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정사준(鄭士俊)의 죄를 결정하던 날, 내가 여러 대신이 현의한 것을 가지고 사사로운 뜻이 있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풍습이 어떤 일에 논의를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곡절은 알지 못한 채 망녕스레 옳으니 그르니 하므로, 대신도 필시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여긴 것이다.”</p> <p>하였다. 이경여가 아뢰기를, “신이 말한 것은 임금의 친히 정사를 관여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하에게 맡긴 뒤에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신료(臣僚)들이 말한 것을 절충해서 쓰는 것이 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신하가 그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므로 임금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매번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문득 그것이 사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p> <p>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붕당이 있고 나서부터 조정의 논의가 엇갈리므로 바로잡는 거조가 비록 공적인 논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필시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선비들 사이에 감히 서로 규율하지 못하고 잠자코 있곤 합니다.”</p>	<p>用矣。 向者鄭士俊之罪， 關係極重， 故獨斷處之， 而諸臣慮有日後尚刑之漸， 爭諫紛紜， 而予終不從。 此非但臣下之不見信於君上， 抑亦君上之不見信於臣下也。” 副提學閔應亨曰：“湖南飢饉， 甚於諸道， 宜加顧恤， 俾得安集。 田稅雖難撓改， 凡干貢物， 竝賜蠲免， 然後庶可以保民命矣。 且御供乾秀魚， 必以除頭， 尾准一尺者封進， 故一尾之價， 至於米十斗。 御享雖重， 豈必用盈尺者乎？ 雖不滿尺， 以數斗米， 貿得魚鮮之可合於進供者用之， 似無不可矣。 夫十斗之米， 實係十人十日之命， 今若除此， 以補民賦， 爲惠甚大矣。 長興庫、 司宰監貢物及司饗院進上之不緊者頗多， 亦宜省減。” 上謂入侍承旨安獻徵曰：“副提學之言， 悉令該曹議啓。” 上仍命禁府、 刑曹諸臣入侍， 審理禁府罪人， 尹昌壽限年定配， 李有源定配， 沈之溟放歸田里。 刑曹罪人啓覆應死中， 減死者二人， 在配減等者九十餘人， 蒙宥者亦九十餘人。</p>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민정중이 재신 한 사람을 【이완(李浣).】 논핵하면서 말하기를 ‘한 가지 우연히 잘못된 허물이 있다 하여 그 사람을 영원히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실책이 있으면 들은 대로 규책을 하고 뒤에 다시 수용하는 것이 진실로 서로 규율하는 도입니다.’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아름답게 여겨 곧바로 파척했던 것을 다시 기용하도록 윤택하였다. 지난번에 정사준(鄭士俊)의 죄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므로 내가 독단으로 처치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후일에 형벌을 승상하는 조짐이 될까 염려하여 분분하게 간쟁하였으나 나는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비단 신하가 임금에게 신뢰받지 못해서일 뿐만 아니라 임금이 신하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서인 것이다.” 하였다. 부제학 민응형이 아뢰기를, “호남은 흉년이 다른 도보다 심하니 마땅히 흉전을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을 되찾게 해야 합니다. 전세(田稅)는 개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무릇 공물에 관계되는 물품은 모두 감면해 준 다음에야 백성들의 목숨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공(御供)으로 쓰는 건승어[乾秀魚]를 반드시 머리와 꼬리를 빼고 한 자[尺]가 되는 것으로 봉진하게 하였기 때문에 한 마리의 값이 쌀 열 말에 이릅니다. 어향(御享)이 막중하기는 하나 어찌 반드시 크기가 한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비록 한 자가 못 되더라도 두어 말의 쌀로 살 수 있는 신선한 고기로 진공하기에 합당한 것을 쓰더라도 불가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대체로 열 말의 쌀이면 사실상 열 사람이 열흘 동안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쌀을 덜어내어 백성들의 부세(賦稅)를 도와 준다면 혜택이 매우 클 것입니다. 장흥고(長興庫)와 사재감(司宰監)의 공물과 사옹원(司饗院)의 진상물 중에서 긴요하지 않은 것이 꽤 많은데 역시 줄여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입시 승지 안헌징(安獻徵)에게 이르기를,</p>	
--	--	--

	<p>“부제학의 말을 모두 해조로 하여금 의계토록 하라.”</p> <p>하였다. 상이 이어 금부와 형조의 여러 신하들을 입시하라고 명하여 금부의 죄인들을 심리하도록 하였는데, 윤창구(尹昌壽)는 기한을 두고 정배토록 하고, 이유원(李有源)도 정배하였으며, 심지명(沈之溟)은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형조의 죄인은 계복하여 사형을 받아야 할 자 중에 사형을 감면한 자가 두 사람이고, 유배가야 할 자 중에 등수를 감한 자가 90여 인이며, 사면을 받은 자 역시 90여 인이었다.</p>	
<p>효종 8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6월 29일(기사) 3번째기사 어영군을 증치하다</p>	<p>어영군(御營軍)을 증치(增置)하였다. 인조조에 이서(李曙)가 건의하기를,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군병 이외에 친병(親兵)을 별도로 설치하여 당가(唐家)의 좌우상(左右廂)의 제도를 모방하여 위급할 때 호위하게 해야 하겠습니까.”</p> <p>하여, 경외(京外)의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을 막론하고 각각 그 기예로 불러 모아 시열(試閱)하되, 포(砲)쏘기를 원하는 자는 포쏘기를 시험하고 활쏘기를 원하는 자는 활쏘기를 시험하고 힘이 센 자는 모래 주머니와 돌을 들게 하여 그 힘을 시험한 뒤에 뽑아 어영 군병(御營軍兵)이라고 일컬었다. 가려뽑은 4천여 명은 몸이 건강하고 솜씨가 좋아 정예병(精銳兵)이라고 불렀는데 10월 15일에 상번(上番)하고 이듬해 2월 16일에 파해 보내게 하였으니, 대개 얼음이 얼 때의 변란을 대비한 것이었다.</p> <p>이 뒤로는 재주를 시험하는 법규도 폐지된 데다 신역(身役)이 다른 군병에 비해서 가장 가볍기 때문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가 점점 많아져 용렬하고 잡된 자들이 반을 차지했다. 상이 즉위하여 이완(李浣)에게 그 일을 맡겨 그 규모를 증가시키고 노약자와 재주없는 자를 도태시키고 군안(軍案)을 개정하게 하였다.</p> <p>원호(元戶) 2만 1천여 호에 각각 보인(保人) 3명을 주고, 매양 1천 명으로 서울에 천경(踐更)하게 하고 두 달을 채운 뒤 교대하게 하였는데, 1년 열두 달</p>	<p>增置御營軍。 仁祖朝，李曙建議以爲：“訓練都監軍兵之外，不可不別置親兵，以倣唐家左右廂之制， 爲緩急侍衛之用。” 無論京外公私賤，各以其藝，招募試閱， 願砲者試其砲， 願射者試其射， 有膂力者， 使之舉沙、石試其力， 稱以御營軍兵。 所抄四千餘人， 身手俱健， 號稱精銳。 十月十五日上番， 明年二月十六日罷遣， 蓋爲合冰時待變也。 是後試才之規廢， 而身役比他軍最輕， 故願屬者寢多， 而庸雜居半。 及上卽位， 使李浣掌之， 增定其規模， 汰其老弱、不才者， 改正軍案。 元戶二萬一千餘， 各給保三人， 每以一千人踐更于京中， 滿二朔始許替， 一年十二朔上番之數摠六千。 以此周而復始。 就三保中， 抽出一保， 使戶首徵其番布， 以爲本軍上番往來資裝之用。 其</p>

의 상변하는 숫자가 총 6천 명이였다. 이렇게 한번 돌면 다시 시작하였다. 보인 3명 가운데 1명을 뽑아내어, 호수(戶首)로 하여금 그 번포(番布)를 징수하여 본군(本軍)이 상변하기 위해 오고갈 때의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 그 나머지 보인 2명은, 산군(山郡)에 있는 자는 포(布) 2필을 거두고 해읍(海邑)에 있는 자는 쌀 12두를 거두었는데, 포는 2백여 동이 되었고 쌀은 1만 3천여 석이 되었다. 경강(京江)에 창고를 지어 해마다 수송해 들어서 이것으로 군량에 이어 쓰고 탁지(度支)의 경비를 번거롭히지 아니했다. 대장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고, 도제조 한 사람을 두어 대신(大臣)으로 맡기고, 병조 판서로 제조를 으레 겸하게 하였다. 또 문관·무관 낭청을 각각 한 사람씩 두어 군병의 양향(糧餉)을 나누어 관리하게 하였다.

이전에, 좌의정 김육(金瑨)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주역(周易)》에 ‘일을 처음에 잘 도모한다.[作事謀始]’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일은, 그 성공은 일의 시작에 복이 싹튼 것이고 그 실패는 일의 시작에 화가 싹튼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화와 복이 어찌 일찍이 일의 시작에서부터 말미암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국가의 큰 일이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어영군에 대해서 이미 그 대개를 진달하였거니와, 다 아뢰지 못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군대의 설치는 본래 후궁들을 호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외정에서 쓰기 위해서였는데, 적신(賊臣)이 권병을 잡고는 확대하여 널리 모아서 숫자가 4만 명이 넘고, 스스로 공으로 삼아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편오(編伍)는 그 뛰어난 자를 뽑아내어 비었고, 조세와 부역은 복호(復戶)를 하는 바람에 줄었으며, 한정(閑丁)은 보인을 주기 위하여 뽑혀나갔습니다. 그러나 4, 5년 이래로 조용(調用)한 곳이 없었습니다. 한가로이 놀며 보내는 날이 오래고 교만하고 사나움이 습속을 이루었으며 소굴로 많이 투숙하여 이미 통제하기 어려운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보인에게 양식을 징수하고 또 두 말의

餘二保則在山郡者收布二匹, 在海邑者收米十二斗, 布爲二百餘同, 米爲一萬三千餘石。 設倉于京江, 每歲輸納, 以此繼餉, 而不煩於度支經費。 使大將主之, 置都提調一員, 以大臣領之, 以兵曹判書例兼提調。 又置文武郎廳各一員, 分管軍兵糧餉。 先是, 左議政金瑨上筭曰:

《易》曰: “作事謀始。” 天下萬事, 其成也, 福兆於始, 其敗也, 禍萌於始。 成敗禍福, 何嘗不由於始也? 小事尙然, 況國家之大事乎? 臣曾於御營之事, 已陳其概, 願申未盡之懷。 此軍之設, 本非爲鉤陳之儲胥, 只欲用於外也, 賊臣主柄, 鋪張廣募, 數餘四萬, 自以爲功, 貽害萬端。 編伍拔其尤而空, 租賦復其戶而縮, 閑丁給其保而抽。 四五年來, 無處調用, 閑遊日久, 驕悍成習, 多投萑符, 已爲難制之兵。 一朝徵糧於保, 又加二斗之米, 立番於京, 必生怨苦之心。 此猶不足恤也。 此類皆山尺、逋民, 如不羈之馬, 技藝雖妙, 習於剽竊者也。 出入京輦, 有害無益。 且立營左右, 重其衙門, 都監、御營少無差等, 主客之

쌀을 더 거두니, 서울에서 번을 설 때에 필시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근심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 부류들은 모두 산척(山尺)이나 포민(逋民)들로서 고삐 매지 않은 말과도 같아, 기예가 비록 묘하기는 하나 겁탈하고 도둑질하는 습성이 붙은 자들입니다. 서울에 출입하면 해만 있고 이익은 없습니다. 또 좌우에 영(營)을 세워 그 아문(衙門)을 중히 하여 도감(都監)과 어영(御營)이 조금도 차등이 없으니, 주객(主客)의 형세가 필시 서로 이기고자 하여 그 말류의 폐단이 감히 말로 다하지 못할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신(摠紳)간에도 오히려 사이가 나빠질 근심이 있는데, 하물며 이런 부류들에게 잘 지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매우 근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류들은 본도(本道)에 소속시켜 복호(復戶)와 급보(給保)를 모두 옛 규례대로 하고, 그 호칭을 별도로 정하여 늘 넉넉히 구휼하며, 연습과 훈련을 한결같이 편오(編伍)의 예대로 하였다가, 조발할 곳이 있으면 장수를 정하여 거느리고 가게 하소서. 그러면 저들에게는 양식을 준비하여 번을 서야 하는 괴로움이 없을 것이고 나라에는 위급할 때 힘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도감의 군병들은, 숙위(宿衛)에 전속시켜 변동이 없으면, 군병들은 뜻이 안정되고 보인들은 딴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양남(兩南)이 흉년이 든 이 때에 솔정(率丁)에게 양식을 징수하여 바다를 건너 운송하게 하는 것은 계속하여 용도를 잇기 어렵고, 모집해 들이는 숫자를 달마다 더하고 해마다 증가시키면 또 필시 호조에 요구하여 오늘날의 삼수량(三手糧)과 같게 될 것이니, 이것 역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대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단속하지 않으면 장차 자신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군대를 양성하는 나라는 그 형세가 필시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형편없는 신이 차지해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군대의 일에 대해서는 헤아려 처리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 군대의 설치가 눈앞에 임

勢, 必求相勝, 其流之弊, 有不敢盡言者矣. 摠紳之間, 尙有携貳之患, 況責之於此類乎? 臣之所大憂者此也. 臣之本意則以爲, 此類屬之於本道, 復戶、給保, 竝依舊規, 別其名號, 常加優恤, 鍊習、教訓, 一如編伍之例, 有調發之處, 定將領赴, 則渠無備糧立番之苦, 國有緩急得力之效. 都監之兵, 專屬宿衛, 無所變動, 則軍志先定, 保無他虞矣. 當此兩南凶歉之歲, 徵糧於率丁, 越海運餉, 難以繼用, 募入之數, 月加歲增, 則又必責之於地部, 如今日之三手糧, 此亦非小憂也. 古人曰: “兵猶火也.” 不戢將自焚. 養兵之國, 其勢必至於難支也. 臣之無狀, 忝於匪據, 軍旅之事, 未暇料理, 而此軍之設, 在於目前, 敢以謀始之道, 冒死以達. 伏願聖明, 廣詢博訪, 使老臣之過慮, 無驗於後日.

又上筭曰:

前日所陳, 實係安危, 中夜思之, 耿耿不寐. 知而不言, 是不忠也, 再瀆之罪, 臣何敢避? 姑以農事言之. 畿甸、湖西, 雖或少稔, 兩界、兩南, 一樣大侵, 若到發春, 民飢必甚, 救活之

박했으므로 일의 시작을 잘 도모하는 방도로써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
 다. 삼가 원컨대 성상께서는 널리 자문을 구하시어 늙은 신하의 지나친 걱정이
 뒷날 징험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또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전일 아뢰 바는 실로 안위에 관계되는 일이어서 밤새워 생각하며 잠을 이루
 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아뢰지 않는 것은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니, 거듭 번
 독스럽게 하는 죄를 신이 어찌 감히 피하겠습니까. 우선 농삿일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기전(畿甸)과 호서(湖西)는 더러 조금 여물었으나 양계(兩界)와
 양남(兩南)은 모두 큰 흉년이어서, 봄이 되면 백성들의 굶주림이 반드시 심해
 질 것이니, 구할하는 정책을 쓰더라도 오히려 방책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그
 런데 또 이 부류들로 하여금 양식을 싸가지고 천경(踐更)하게 한다면, 이른바
 보·솔(保率)은 아들이 아니면 아우이어서 두회(頭會)의 미곡이 한 집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궁핍한 해에는 하루의 양식도 쉽지 않고, 아홉 말의 요
 미(料米)로는 먹는 것도 넉넉하지 못한데, 방전(房錢)과 시가(柴價)를 어떻게
 마련해 내겠습니까. 형세상 필시 도민(都民)의 물건을 빼앗게 되어 서울에 변
 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삭(每朔)에 1천 명의 군사를 더하고 빼는 것은 숙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 피해는 이와 같습니다.
 또 북방이 근심스러워 상께서 바야흐로 염려하고 계시는데, 조만간에 침략하
 는 일이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래 풀어놓았던 군사를 조발하는 것은
 번거롭게 소문이 나게 될까 염려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고요히 있으면
 길하고 움직이면 흉하다.[用靜吉用作凶]’고 하였습니다. 마지못하여 응하는
 것이라면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조용히 있을 수 있는데도 움직이면
 근심이 필시 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호남
 은 바람의 이변이 을해년보다도 심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성변(星變)이 보였으
 니, 하늘의 뜻을 두려워할 만합니다. 원컨대 사세를 두루 상세히 살펴 처리하

政, 猶患無策。 又使此類贏糧踐更, 則所謂保率, 非子則弟, 頭會之米, 出
 於一家。 當此窮年, 未易宿春, 而九
 斗之料, 食且不飽, 房錢、柴價, 從何
 以辦? 勢必至於剽掠都民之物, 京師之
 桴鼓警矣。 每朔添却千兵, 不爲加重
 於宿衛, 而其害有如此者。 且朔方可
 虞, 聖慮方軫, 早晚似有侵徵之舉。
 抑恐此際, 調發久放之軍, 恐其有煩於
 聽聞也。 《書》曰: “用靜吉, 用作
 凶。” 不得已而應, 則民不怨, 可以靜
 而動, 則患必深, 此不可不察也。 況
 湖南風變, 甚於乙亥, 地震星見, 天意
 可懼。 願察事勢, 周詳而處之。 昔在
 世宗朝, 烏夷數戶, 願居三浦, 上嘉其
 義而許之, 許稠泣諫曰: “後日當爲國
 家之大害。” 及其臨卒, 再三陳啓, 終
 未蒙允, 卒致庚午之變。 以世宗之聖
 明, 持難於許稠之忠言, 臣求其說而不
 得。 百爾思量, 豈禍之所兆, 至微如
 鵲巢蟻垤, 或有所覺, 而聖人不爲致疑
 於微細之始也。 今日此事, 雖不可比
 而同之, 安危所係, 必有後患, 則無以
 異也。 伏願殿下, 博訪朝紳, 兼問宿
 將, 量時度勢, 群議僉同, 然後行之。

	<p>소서.</p> <p>예전 세종조에 섬 오랑캐 몇 호가 삼포(三浦)에 거주하기를 원하니, 상께서 그 뜻을 가상히 여겨 허락하였는데, 허조(許稠)가 눈물로 간쟁하기를 ‘뒷날 국가에 큰 해가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죽음에 임해서도 두 번 세 번 진계하였으나, 끝내 운허를 받지 못했는데, 결국 경오년의 변란을 당했습니다. 세종 같은 훌륭한 임금께서 허조의 충성스러운 말을 받아들이기를 어렵게 여기셨으니,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해 본바, 아마도 화가 생기는 것은 매우 미세하기가 까치 둥지나 개미 집과 같아서 혹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도 성인이 미세한 시초에 의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날 이 일은 비록 견주어 같게 여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안위가 걸린 문제로서, 필시 후환이 있게 되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정의 여러 신료들에게 널리 자문하시고 노숙한 장수에게 겸하여 물으시고 때와 형세를 헤아리시어 못 의논이 모두 같아진 뒤에 행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무릇 일이란 굳게 집착하여 지나치게 염려하면 생각이 깊을수록 의심이 더욱 생기는 법이다. 경은 어찌 꼭 생각을 지나치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후환을 방지하는 방도이다.”</p> <p>하였다.</p> <p>당시에 상이 수양(修攘)하는 정책에 뜻을 두고 바야흐로 용정(戎政)을 강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육의 의논이 들어가지 못했다.</p>	<p>答曰：“凡事固執而過慮，則思愈深而疑益生。卿何必過慮？此乃防後患之道也。”時，上銳意修攘之策，方講戎政，故壻議不入焉。</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7월 19일(무자) 2번째기사</p>	<p>이에 앞서 통영(統營)의 토병(土兵) 서일립(徐一立) 등 10여 명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들어갔다가 바람에 표류하여 일본국 지기도(智奇島)를 거쳐 장기도(長崎島)에 정박하였다. 임진년에 잡혀간 우리 나라 사람이 그곳에 많이 살았는데, 앞다투어 보러 와서 울며 본국의 일을 묻고 이어서 말하기를 “지난</p>	<p>先是，統營士卒徐一立等十餘人，爲捕魚入海，遇風漂到日本國智奇島，又轉泊長崎島。我國壬辰年被擄人多居焉，爭相來見，泣問本國之事，仍言：“往</p>

<p>일본 지기도에 표류하였던 통영 토병 서일립 등이 돌아와 일본의 사정을 알리다</p>	<p>을해년(610)에 왜인이 조선 군사가 국경을 침범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우리들이 내놓을까 의심하여 모두 가두었다가 병자년(611) 신사(信使)의 행차 때에 비로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풀어 주었다. 또 임진년 군사를 일으켰을 때에 살상된 사람이 많아서 아직도 고아와 과부의 울음소리가 들릴 지경이다. 그로부터 왜인은 완전히 서쪽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였다. 서일립 등이 돌아와 통제사 유정익(柳廷益)에게 고하였는데 유정익이 치계하여 알렸다.</p>	<p>在乙亥年，倭人錯認鮮兵將犯境，疑渠輩爲內應，舉皆拘囚，丙子年信使之行，始知其不然，乃解釋之。且壬辰興兵，多所殺傷，尙有孤兒、寡婦之哭。自是倭人，斷無西向之意矣。”一立等歸告統制使柳廷益，廷益馳啓以聞。</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8월 19일(무오) 4번째기사 주강에 나가 《서전》 주고편을 강하고 술을 경계토록 하다</p>	<p>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주고편을 강하였다. 지경연 오준이 아뢰기를, “술이 해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예전 세종(世宗) 때에 이행(李荇)에게 명하여 술을 경계하는 글을 지어 중외에 반포하였고, 선조(宣祖) 때에도 술을 금하는 영을 선포했는데, 근래 사대부를 보면 술을 숭상하는 자가 많으니, 옛일에 따라 금령을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젊은 명관(名官)은 반드시 거리낌없이 마셔야 명류라 하고, 혹 마시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도리어 비웃으니 매우 놀랍다. 주량은 한정 없지만 취해 흐트러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은 공자(孔子)만이 할 수 있고, 어느 사람은 한번 술잔을 대하면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나서야 마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평소에 술을 즐기던 사람도 반드시 결심하고 술을 끊으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저위(儲位)에 있고부터는 술을 전혀 가까이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니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절로 없어졌다. 이것을 보면 술을 끊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였다. 참찬관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성명께서 춘궁(春宮)에 계실 때부터 이미 술을 끊으셨으니, 성명께서는 늘 그 마음을 간직하여 끝내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p>	<p>上御書講，講《書傳》《酒誥》。知經筵吳竣曰：“酒之爲害久矣。在昔世宗朝，命李荇作戒酒文，以頒中外，宣祖朝亦申禁酒之令。竊見，近來士大夫多崇飲，宜遵故事，更申禁令。”上曰：“近來年少名官，必放飲然後，稱以名流，間有不飲者，則人反譏笑，尤可駭也。惟酒無量，不及亂，惟孔子能之。凡人若一接盃觴，必迷亂而後已，可不慎哉？雖平日嗜酒之人，必欲決意斷酒，則有何所難？予自居儲位，絕不近酒，歲月既久，自無思飲之念。以此觀之，止酒亦非難事。”參贊官洪命夏曰：“聖明自在春宮，既已斷酒。伏願聖明，恒存此心，終始勿替。”上曰：“承旨特加戒飭，書諸院壁，以爲申明奉行之地。”</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특별히 더 경계하고 정원(政院)의 벽에 써서 더욱 밝혀 봉행하는 바 탕으로 삼으라.” 하였다.</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8월 25일(갑자) 2번째기사 금주 사목을 어긴 문 과 초시의 일소 시관 유준창을 추고케 하다</p>	<p>헌부가 아뢰기를, “문과 초시의 일소 시관(一所試官) 유준창(柳俊昌)은 음주를 삼가지 못하고 종일 몹시 취하였으므로 많은 선비들이 보고 모두 비웃고 손가락질하였으니, 중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준창은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라. 함부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 사목 (事目)이 매우 엄한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으니, 응판관(應辦官)도 추고하여 뒤폐단을 막으라.” 하였다.</p>	<p>憲府啓曰：“文科初試一所試官柳俊昌，不能戒飲，終日泥醉，多士所見，莫不嗤點，請從重推考。” 答曰：“柳俊昌先罷後推。 毋得濫用盃酒，事目甚嚴，而有此可駭之事，應辦官亦推考，以杜後弊。”</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8월 29일(무진)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신하들을 인견하고 능의 전알 각도의 삭선 등을 논 의하다</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예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에 게 이르기를, “조종 때에 해마다 반드시 여러 능(陵)에 전알(展謁)하신 것은 인정과 예법상 당연한 것인데 혹 일이 많기 때문에 전례를 따르지 못한 것은 참으로 결례이 다. 이제부터 봄가을에 번갈아 전알하려 하니, 때에 따라 계품하는 것을 정해 진 제도로 영구히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후원이 아뢰기를, “제도(諸道)의 삭선(朔膳)을 정지한 지 이미 오래된 것은 참으로 신하가 위에 공헌하는 예에 흠이 되는 것이니, 이제부터 다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들리고 보이는 근래의 천재시변은 모두 놀랍고 참혹한데, 어찌 복구해서 되 겠는가. 올해까지는 그대로 줄이고 방물(方物)도 면제하게 하라.”</p>	<p>戊辰/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上謂禮曹判書李厚源曰：“祖宗朝每年必展謁諸陵，情禮當然，而或緣多事，未遵舊例，實欠典也。 自今欲於春秋，輪回展謁，宜以時啓稟，永爲定制。” 厚源曰：“諸道朔膳，停廢已久，誠欠臣子享上之禮，請自今復設。” 上曰：“近來天災時變，耳聞而目見者，無不驚慘，豈宜復舊？ 限今年仍減，方物亦令蠲除。”</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0월 19일(정사) 2번째기사 주강 후 지경연사 이 후원이 창곡을 조사하 는 일로 외방이 소란 하다고 아뢰다</p>	<p>하였다. 상이 주장에 나아가 《서전》 소고를 강하였다. 강이 끝나고서 지경연사(知經筵事)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근래 국가에서 군정(軍政)을 자못 엄하게 하였으니, 북로(北路)의 수령이 충군(充軍)되고 남원(南原)의 읍재(邑宰)가 고문을 받은 것은 모두 여기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고을들이 황급하여 세초(歲抄)할 한정(閑丁)을 한꺼번에 찾아냅니다. 또 듣건대, 국가에서 관원을 보내어 창곡(倉穀)의 허실(虛實)을 조사하려 하므로 외방에서 매우 소란하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해야 하겠으나, 급하게 하면 도리어 폐단이 있을 것이고 늦추면 일이 많이 해이해질 것이니, 알맞게 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이후원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남방에 지진의 변이 잇달아 있자 인심이 마치 장차 보전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합니다. 대개 오래 병화를 당하지 않아 민물(民物)이 풍성하므로 식자들이 늘 이것을 근심하니, 지금의 계책으로는 인심을 진정시키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건대, 성명께서 위엄과 노여움이 지나치시니, 재앙을 만나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는 방도에 어그러지는 듯합니다.” 하였다.</p>	<p>上御書講，講《書傳》《召誥》。講訖，知經筵事李厚源曰：“近來朝家軍政頗嚴，北路守令之充軍，南原邑宰之被拷，竝坐於此。是以列邑遑遑，歲抄閑丁，一時搜括。又聞朝家將遣官，按驗倉穀之虛實，外方之騷然甚矣。” 上曰：“予亦已料其如此也。當與大臣議處，而急之則反有弊端，緩之則事多解弛，得中難矣。”厚源曰：“臣聞，南中連有地震之變，人心危懼，若將不保。蓋久不被兵，民物殷盛，識者之憂，恒在於此。爲今之計，莫如務鎮人心也。且觀，聖明威怒過中，恐非所以遇災修省之道也。”</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0월 21일(기미) 4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올린 언관의 처벌을 풀고, 궁가</p>	<p>간원이 【대사간 민응형(閔應亨), 사간 권우(權堧), 헌납 이형(李迥), 정언 남용익(南龍翼).】 차자를 올리기를, “오늘날 나라의 형세는 통곡할 만합니다. 천상(天象)으로 말하면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고 형혹성이 태미원(太微垣)에 들어가고 유성이 나타나고 해와 달에 무리[暈]가 진 것이 이미 심상한 변이 아니며, 지도(地道)로 말하면 만물을 싣고 있는 것이 안정하지 못하여 호남·영남에서 지진이 있었으며, 인사(人事)</p>	<p>諫院【大司諫閔應亨、司諫權堧、獻納李迥、正言南龍翼。】上筭曰： 今日國勢，可謂痛哭。以言其乾象，則太白之見，熒惑之入，流星之出，日月之暈，已非尋常之變；以言其地道，則萬物之載，不能安靜，震動於湖嶺之</p>

의 민전, 염분 등의 침
탈을 막으라는 차자

로 말하면 이룬(彝倫)의 변이 거듭 나타나고 기강의 어지러움이 이미 극도에 달하였으며, 농사로 말하면 해마다 흉년이 들어 7로(七路)가 굶주립니다. 절후(節候)로 말하면 겨울이 봄처럼 따듯하고 길은 안개가 사방에 막히고 배나무 살구나무가 꽃을 맺어 물리(物理)가 상도(常道)를 어기고, 또 순음월(純陰月)의 건자일(建子日)에 크게 천둥하고 번개치며 비가 내려 울리는 소리와 번쩍이는 빛이 온 나라를 진동시키며, 퍼붓듯이 내리는 비는 사흘 동안 계속하여 마치 여름철의 장마와 같았습니다.

이런 모든 재변은 필시 부른 까닭이 있어서 나타난 감응일 것이니 전하께서 두렵게 여기고 경계하여 마음에 근심하고 괴로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직언을 구하신 하교를 보건대, 참으로 재앙을 바꾸어 상서로움으로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재변을 당하면 곧 두렵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못 신하가 극진히 말하면 반드시 깊이 유념한다는 하교가 있었으나, 재변이 지난 뒤에는 성심(聖心)이 이미 게을러져 한 마디 말이라도 따르고 한 가지 방책이라도 시행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전일처럼 걸치레만 숭상하지 마소서.

전하께서는 천성으로 타고난 성효(聖孝)와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영명(英明)한 자질로 성색(聲色)·화리(貨利)의 욕심과 사냥·토목의 일을 한번도 마음에 두신 적이 없으니 이미 성인의 덕을 가지셨으며, 넓은 도량은 격식을 따지지 않고 허물 고치기를 꺼리지 않고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으시니 또한 성인의 도량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굳지 않아서 손상받는 것도 많으십니다. 빠른 말과 급변하는 안색이 혹 신하들과 가부를 말할 때에 나타나고, 엄한 말씀과 준열한 비답(批答)이 생각 밖에서 많이 나오므로 못 신하들은 두려워서 감히 말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벌이 지나쳐 경중이 마땅하지 못하여 재신(宰臣)·언관(言官)이 잇달아 옥에 갇히고 과실로 인한 가벼운 허물로도 고문을 받게 되니, 이것이 어찌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

南; 以言其人事, 則彝倫之變疊出, 紀綱之壞已極; 以言其稼穡, 則連年失稔, 七路阻飢; 以言其節候, 則冬暖如春, 陰霧四塞, 李、杏結華, 物理反常。 又於純陰之月, 建子之日, 大雷電以雨, 轟轟之聲、燁燁之光, 震驚一國, 翻盆之注, 三日不霽, 恰似暑月淫霖。 凡此災異, 必有所召, 亦必有所應, 宜殿下惕然兢戒, 隱痛於心也。 伏覩殿下求言之教, 誠轉災爲祥之機也。 第念聖上遇災, 卽有恐懼之心, 群下盡言, 必有體念之教, 而災過之後, 聖心已懈, 未聞從一言, 行一策者。 伏願殿下, 毋如前日之徒尙文具焉。 伏見殿下, 聖孝出天, 英明蓋世, 聲色·貨利之欲、犬馬·土木之役, 一未嘗留心, 則既有聖人之德矣。 大度恢廓, 不見畦畛, 過勿憚改, 怒無終日, 則亦有聖人之量矣。 然而殿下持心不堅, 受病亦多。 疾言、遽色, 或發於都兪之際; 嚴辭、峻批, 多出於意慮之外, 群臣惴慄, 莫敢盡言。 以致刑罰過當, 輕重失宜, 宰臣、言官連被縲繼, 眚災薄過, 亦受拷榜, 此豈聖朝之美事乎? 趙錫胤、申弘望, 雖有過差之

	<p>겠습니까. 조석윤(趙錫胤)·신흥망(申弘望)에게 과실이 있기는 했으나 한밤중에 엄히 꾸짖고 천위가 거둬 진노하여 죽인다는 등의 말씀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형옥(刑獄)에 관한 문서를 재계(齋戒) 중에도 피하지 않으시고, 근밀한 신하의 말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대각의 신하도 미처 쟁집(爭執)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떠한 거조인지 모르겠습니다.</p> <p>근래 항간에서 소요가 날로 심하고 인심이 흉흉하여 마치 조만간에 환난이 닥칠 듯하므로, 신들이 괴이하게 여겨 여론을 자세히 들어 보니 다들 무슨 일인지는 모르면서 다만 조정이 숨긴다고 의심합니다. 이것은 관례에 따른 대단찮은 일까지 다 비밀이라 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경연 석상에서 한 이야기 같은 것은 더욱이 숨길 것이 아닌데 연신(筵臣)이 감히 전하지 못하고 바깥 사람이 감히 묻지 못하므로 성상께서 설사 실언을 하시더라도 국민이 알지 못하고 대간이 듣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국가의 복이겠습니까.</p> <p>실정에 맞지 않는 산림(山林)의 큰소리가 적용하기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임금에게 신임을 얻어 도를 행하면 또한 한 세상에서 모범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진 선비를 대우하던 뜻을 끝내 이어가지 않아서 잊은 듯이 버리십니다. 형세에 얽매어 좌우에서 오래 있지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올린 글이 쓸만하면 채택하고, 국가의 전례에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자문한다면 어찌 성덕에 보탬이 없겠습니까.</p> <p>이 밖에 일을 말한 신하는 오히려 폐기된 자가 많고 뜻을 거스른 무리는 수용되지 못하니, 이러한 때에 탕척하는 은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경외의 죄수는 감옥에 가득하여 괴로워하는 소리가 화기를 손상하기에 충분하니, 경중에 따라 곧 소결(疏決)하면 반드시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한 가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가(宮家)의 입안(立案)은 폐단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염분(鹽盆)·어전(漁箭)이 온 바다에 다 있고 풀밭과 목장 때문에 빈 땅이 없는데, 한</p>	<p>失,而半夜嚴督,天威震疊,誅殺等教,大駭瞻聽。刑獄文書,不避坐齋,近密之言,不能匡救,臺閣之臣,未及爭執,未知此何等舉措耶。近來閭巷之間,騷屑日甚,人心洶懼,若將有朝夕奔波之患。臣等竊怪之,細聽輿人之言,則皆不知爲何事,而只以朝廷之秘諱爲疑,此豈非循例不緊之事,皆稱秘密之所致?至若筵中說話,尤非可諱者,而筵臣不敢傳,外人不敢問,廈鼂之上,設有失言過舉,國人不知,臺諫不聞,此豈國家之福哉?山林之士,迂闊大言,縱不合於適用,得君行道,亦足矜式一世,而權輿不承,棄之如遺。拘於形勢,雖不得長在左右,有時封章,言可用則採之,朝家典禮,事有疑則咨焉,豈無裨益於聖德哉?此外言事之臣,尙多廢棄,忤旨之輩,不見收用,當此之時,可無滌蕩之典哉?京外罪囚,充滿囹圄,痛楚冤苦之聲,足以感傷和氣,隨其輕重,劃卽疏決,則未必爲消災之一助也。宮家立案,爲弊已痼。鹽盆、漁箭,盡海而有;草薺、牧場,無地空閑,雖定限制,猶踵前習。澤梁有禁,芻蕘不往,則其與文</p>
--	--	--

	<p>계를 정하더라도 예전 버릇을 계속합니다. 저수지와 어량(魚梁)에 제한이 있어서 낮은 백성이 왕래하지 못한다면 주 문왕(周文王)의 정치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근일 부마(駙馬) 집 전장(田庄)의 폐단은 거의 이보다 심합니다. 내수사의 공문을 앞다투어 가지고 가서 열읍(列邑)의 수령을 위협하는데 조금만 어기면 혹 죄에 걸려 파직되고 침탈이 민전(民田)에도 미치고 제방(堤防)의 이익까지 다 차지하므로, 내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공론입니다. 이제 자원하여 내수사에 투탁(投託)하는 자를 물리치고 송사하는 마당에서 사리에 어그러지는 자를 패하게 하여 더이상 퍼져 가지 못하게 한다면 또한 민간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 폐단은 전하께서 변경하시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 “말한 것은 모두 약석(藥石)과 같아 매우 가상히 여긴다. 중외의 옥수(獄囚)는 이미 빨리 재결하게 하였다. 산림의 은사(隱士)를 등용하고자 함은 내 큰 소원이나 나름대로 곤란한 점이 있어 뜻대로 할 수 없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여러 궁가의 어염(魚鹽)은 선조(先朝)의 왕자·옹주 이외는 이미 한계를 정하였으니, 내수사에서 실상을 살펴 정수 이외의 것이 있으면 곧 폐지하도록 하라. 자원하여 투탁하는 자는 일체 금하라. 송사하는 마당에서 사리에 어그러지는 자는 요즈음 새로 만든 법이 있으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p> <p>하였다.</p>	<p>王之政，大相左矣。近日駙馬家田庄之弊，殆有甚焉。爭持內司之公移，威恟列邑之守令，一有違忤，或至坐罷，侵及民田，利盡堤防，內需之可罷，國人之公言，而今若自願投附者拒之，訟場非理者屈之，毋使滋蔓，則亦可除民間一分之害也。凡此數弊，只在殿下一轉移之間耳。</p> <p>答曰：“所論無非藥石，深用嘉尚。中外獄囚，已令速決。欲用山林隱士，予之大願，而自爾難便，不能如意，是可恨也。諸宮家魚鹽，先朝王子、翁主外，已定限制，按實於內司，如有數外之物，可即革罷，自願投附者，一切禁之。訟場非理者，近有新法，必不饒貸矣。”</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0월 23일(신유) 4번째기사 문학 홍위가 올린 내수사 노비 소송·궁장</p>	<p>문학(文學) 홍위(洪葳)가 상소하기를, “신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인효(仁孝)의 덕이 능히 위아래 사람들의 믿음을 받고 성색(聲色)의 오락에 빠졌다는 소문이 중외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어조는 화평이 매우 부족하고 간언을 받아들일 때는 원만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경연을 열어 신하를 접할 때 조금이라도 성의(聖意)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어조와 안색이 매우 격렬하여 사람을 두려워 떨</p>	<p>文學洪葳上疏曰： 臣竊惟，殿下仁孝之德，克孚于上下；聲色之娛，未聞於中外。然而辭氣之發，殊欠和平，聽納之際，有乖轉圜。開筵接下，稍有一言拂於聖意，則聲色太厲，使人戰慄，或有作過犯罪，則嚴</p>

의 어염 폐해 등에 대한 상소

게 하고, 혹 잘못하여 죄를 범하면 엄히 꾸짖고 깔보고 욕하시니, 이것이 어찌 성인(聖人)의 중화(中和)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대각의 신하가 한 가지 작은 일을 논하거나 한 그릇된 사람을 탄핵하여도 문득 망설이고 허가하려 하지 않으시니, 옛사람처럼 간쟁을 하면서 옷자락을 잡아끌고 난간을 부러뜨리는 자가 있다면 전하께서 어떻게 허용하여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조정의 신하가 갈라진 지 이제 1백 년이 되어 가는데, 전하께서 타파하시려는 뜻은 매우 성대하시지만 그 뿌리가 굳고 흐름이 만연하여 일조일석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같은 사류(土類)여서 사정(邪正)이 가려지지 않으니 왼쪽을 편들거나 오른쪽을 편들면 모두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께서는 다만 선입견을 먼저 정하지 말고 이르지 않은 것을 미리 헤아리지도 말고서 마음을 비우고 접하며 뜻을 바로하고 임하여, 그 현부(賢否)를 살피고 그 시비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피차를 가르겠으며 어찌 색목(色目)을 걱정하겠습니까. 타파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절로 태화(太和)한 가운데에서 자취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한 사람을 논하면 자기와 다른 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한 사람을 구제하면 같은 당으로 의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조정에 논박할 사람이 있고 말할 일이 있어도 선비들이 다 서로 돌아보며 선뜻 말하려 하지 않으니, 이는 편당(偏黨)한다는 이름이 자신에게 붙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부(賢否)가 혼동되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태평한 지 오래되어 세월만 보내는 것이 버릇이 되었으므로 전하께서 기강을 세우려 하시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마는, 기강이 서는 것은 체통이 문란하지 않고 거조가 마땅한 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위벌(威罰)이 엄중한 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요즈음 가벼운 죄과라도 모두 감옥에 갇히는데, 저 경사 대부(卿士大夫)들은 다 전하께서 평소에 예모를 갖추어 공경히 대접하던 자들입니다. 하루아침에 가두고 욕하여 다시는 돌보지 않

責之、嫚罵之，此豈聖人中和之道哉？臺閣之臣，論一細事、彈一匪人，輒且持難，而不肯許可，設有牽裾折檻如古人者，殿下其能容而受之乎？朝著之携貳，今將百年，殿下之欲打破之者，甚盛意也，然其植根固、流波漫，非一朝一夕所可除去。均是土類，邪正未判，則移左移右，俱落一偏。殿下只宜不先定己見，不億逆未至，虛心以待之，端意以臨之，察其賢否，審其是非。何分乎彼此，何患乎色目？不待打破，而自然無迹於太和之中矣。今則不然，論一人則疑其伐異，救一人則疑其黨同。是以，朝廷之上，人有可論、事有可言，而士皆相顧，不肯出言者，惡偏黨之名加於身也，以致賢否相蒙，豈不惜哉？恬嬉日久，玩揭成習，殿下之欲立紀綱，誠今日急務，而紀綱之立，在於體統不紊，舉措得宜，不在於威罰之嚴重明矣。今者苟有薄罪細過，則皆就囹圄，彼卿士大夫，皆殿下平日禮貌而敬接之者也。一朝拘幽僂辱，無復顧藉，廉陛之喻，賈生亦嘗太息而言之，殆非所以養禮義礪廉恥之道也。近者趙錫胤之被罰，舉朝皆以爲過重，

는 것은 엄폐(廉陛)의 비유로 가생(賈生)도 일찍이 한숨지어 말하였거니와, 아마 예의를 기르고 엄치를 힘쓰게 하는 방도가 아닐 것입니다.

요즈음 조석윤(趙錫胤)이 벌받은 것은 온 조정이 다들 지나치게 무겁다 합니다. 다마는, 신은 조석윤과 외숙·생질 사이가 되는 혐의가 있으므로 죄가 있든 없든 신이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사(三司)의 신하가 번갈아 글을 올려 굳이 간하니 공론을 알 수 있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석연하시지 못한 것은 또한 사사로이 감싸는 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일(天日)이 위에 있고 물의가 아래에 있는데, 사사로이 감쌀 마음이 있더라도 어찌 감히 의기양양하게 입을 놀려 엄위(嚴威)를 무릅쓰고 한 마디 말인들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신흥망(申弘望)이 지레 인피하고 홀로 아된 것은 과연 터무니없이 잘못된 일이지는 하나 평생 원수진 자를 시켜 그 죄를 논하게 하더라도 중벌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어찌 감히 가까운 사람에게 아부하여 일부러 이런 말을 만들겠습니까. 성조에 혹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해서일 뿐입니다.

백성의 고통은 진실로 낱알이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근래 인심이 착하지 않아서 주인을 배반하는 종이 흔히 있습니다. 배반하면 반드시 내수사에 의탁하는데, 그 주인이 말없이 승복하면 여러 대의 공(貢)을 거두고, 송사에 맞섰다가 지면 압공(壓公)한 율(律)로 논합니다. 참으로 압공하였다면 죽어도 아깝지 않겠으나, 혹 그 사이에 억울한 일이 있다면 또한 매우 가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야에 있는 사람은 전토나 노비를 혹 세력이 강한 집에 빼앗겨도 오히려 손을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더구나 공물(公物)을 차지하려고 감히 내수사와 쟁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압공한 자는 적고 억울한 자가 많을 것입니다. 신이 사는 고을에서 두 집이 이런 일을 당하여 처자를 이끌고 걸어서 배소(配所)로 간 일이 있었으니, 작은 고을에서 두어 해 사이에 이미 두 집이 있었다면 넓은 팔도의 많은 고을에서는 또 몇 사람

臣於錫胤有舅甥之嫌，有罪無罪，臣不敢言。三司之臣，交章爭執，公議亦可見矣。殿下猶不釋然者，亦以其出於私護也。然天日在上，物議在下，雖有私護之心，豈敢揚眉伸喙，冒嚴威而出一言乎？且如申弘望徑避獨啓，果爲顛妄，而雖使平生仇怨者論其罪，必不至重典。臣雖無狀，豈敢阿私所親，故作此言？只恐聖朝，或有一毫過舉耳。民生疾苦，固未可毛舉，而近來人心不淑，奴叛主者，比比有之。叛則必投於內司，其主無辭而自服，則徵其累世之貢，接訟而見屈，則論以壓公之律。真是壓公，則死亦不惜，或有冤枉於其間，則不亦愍惻之甚者乎？草野之人，田園、臧獲，或爲豪勢家所奪，猶且拱手而坐，況乎圖占公物，敢與內需爭辨乎？以此推之，壓公者少，而冤枉者多矣。臣所居之鄉，有二家遭此事，提携婦子，徒步而赴配，十室之邑，數年之間，已有二家，則八路之廣、列邑之多，又不知其幾許人乎。臣以爲陳告之法，雖不可革罷，自服者不徵貢，見屈者不論罪，則無損於內司，而亦不招怨於民矣。且臣鄉有一

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진고하는 법은 폐지할 수 없더라도 스스로 승복한 자에게는 공을 건지 말고 송사에 진 자에게는 죄를 논하지 않는다면 내수사에 손해가 없고 백성에게 원망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의 고향에 큰 산 하나가 있는데 궁가에서 수노(守奴)를 두어 나무와 풀을 베는 것을 금합니다. 강가에 큰 들이 있고 그 사이를 강물 한 줄기가 가로지르는데 강의 동쪽은 목밭이고 서쪽은 내수사 궁가의 초장(草場)입니다. 풀을 베는 자가 동쪽에 많이 모여 풀을 베어서 도시로 운반해다 뒷쌀·말쌀과 바꾸는데, 혹 중도에서 궁가의 종을 만나면 자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곳의 풀이 아닌데도 다 ‘이것은 우리 초장의 풀이다.’ 하고 문득 빼앗으니, 낮은 백성들의 원망이 궁가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에도 미칩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은 대개 모두 이러합니다. 또 염분(鹽分)·어전(漁箭)은 이보다 더 심합니다. 아, 이것을 고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번번이 선조(宣祖) 때에 내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백성이 흩어져서 나라가 위태하게 되면 어찌 저 궁가만이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난리 뒤에 호서에 떠돌아다녔으므로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이웃과 겨레붙이에 징포하는 폐단도 직접 보았습니다. 한 집에서 부자 형제의 나이가 아직 정(丁)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 군역(軍役)에 충정(充定)되므로 가산을 다 없애고서는 가족을 이끌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 구렁텅이에 뒹굴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군적(軍籍)에 남아 있어 징포(徵布)의 역(役)이 이웃과 겨레붙이에 미칩니다. 도망자가 군역 면제 나이를 지나도 역을 면제시킬 수가 없고, 이미 죽었어도 죽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신은 이런 것들을 모두 탕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도에서 상납하는 표피(豹皮)·인삼·우황(牛黃)으로 말하면 그 값이 지나치게 비싸서 백성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표피는 쓰기에 적당하면 될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길고 넓어야 하겠습니까. 우황·인삼은 정하고 좋으면 될 것인데 어

大山，而宮家置守奴禁樵蘇。沿江有大野，一水橫其間，其東卽荒田，其西卽內司宮家草場也。刈芻者咸集於其東，或馱或負，轉入都市，換得升斗之米，或於中路，逢著宮家奴，則雖非其主，咸曰此吾草場之草也，輒卽奪取，小民疾怨，不但在於宮家，亦及於國家，近京之地，大都如是。且鹽盆、漁箭，又甚於此，嗚呼！此不可革耶？殿下每以宣祖朝所賜爲教，而一朝民散而國危，則彼宮家、其可獨保乎？臣於亂後，流落湖左，逃故隣族之弊，亦嘗親見之矣。一家之內，父子兄弟，年雖未丁，而皆充軍役，傾財破產，相率而之他，身填溝壑。名在尺籍，徵布之役，及於隣族。其在逃者，年過老除而不得除，身已見故而不言死。臣以爲，此類竝宜蕩滌。至於諸道上納豹皮、人參、牛黃，其價過重，民甚苦之。豹皮適用則可矣，奚必長廣爲哉；牛黃、人參，精好則可矣，奚必九分之重，如指之大乎？長短、輕重、大小之間，其價懸殊，先殺其品，以減其價，則民蒙一分之惠矣。且臣聞之，萬事之本，在於人主之一心，而正心之本，

	<p>찌하여 반드시 9푼의 무게에 손가락처럼 커야 하겠습니까. 길이·무게·크기에 따라 그 값이 아주 다르니, 먼저 품질을 낮추어 값을 줄이면 백성이 조그만 혜택이나마 입을 것입니다. 또 신이 듣건대, 만사의 근본은 임금의 마음에 있고 마음을 바꾸는 근본은 또 학문을 강구하는 데에 있다 합니다. 신이 어리석은 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비천한 말을 올립니다.”</p> <p>하니, 상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p>	<p>又在於講學。 臣不揆鹵莽， 獻此芻蕘之說。</p> <p>上嘉納之。</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1월 13일(신사) 4번째기사</p> <p>진선 송시열이 회덕에서 올린 하사품을 거둘 것을 청하는 상소</p>	<p>진선(進善) 송시열(宋時烈)이 회덕(懷德)에서 상소하기를,</p> <p>“신이 듣건대, 장자(張子)는 굶주린 자를 보고 음식을 먹으니 음식 맛이 없었고, 정자(程子)는 당시의 재상이 보낸 것을 사양하면서 ‘어찌 정이(程頤)만이 가난하겠는가. 천하에 가난한 자가 많다.’ 하였다 합니다. 이제 사방의 이웃이 굶주림에 울고 또 세금 수탈에 고달파하고 있는데, 이를 편안하게 할 계책을 올리지 못하고 오매초(烏昧草)도 바치지 못하니, 가없는 우리 백성이 매우 급하고도 위태롭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앉아 있어도 온 방안 사람이 모두 즐겁지 않는데, 더구나 온 방안 사람이 돌아앉아 있는데 어찌 차마 혼자서 먹고 목구멍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하늘은 사사로이 덮는 것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싣는 것이 없고, 일월(日月)은 사사로이 비추는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세 가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유의하여 빨리 은명(恩命)을 도로 거두어 어리석은 분수를 편안하게 하소서. 아, 전하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때에 백성이 기뻐하여 바라보며 덕화(德化)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오늘날의 국세가 이처럼 위태하고 인심이 이처럼 흩어졌습니까. 신은 참으로 매우 상심하거니와, 그 연유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천재(天災)가 매우 참혹하여 전국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다들 헤아릴 수 없는 화가 아침 저녁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 하니, 이는 바로 서둘러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해야 할 때인데, 어찌 신하들에게 은택을 반사할 때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께서 능히 경덕(敬德)을 힘</p>	<p>進善宋時烈在懷德上疏曰：</p> <p>臣聞，張子見餓者而食不甘，程子辭時相之饋曰：“何獨頤貧也？天下之貧者衆矣。”今者四隣啼飢，復困征斂，安上之圖不上，烏昧之草莫進，哀我民斯，孔棘且殆。一夫向隅，滿堂不樂，矧伊滿堂向隅，一夫奚忍獨食而下咽乎？孔子曰：“天無私覆，地無私載，日月無私照。”伏願殿下，以三無私爲心，亟還恩命，以安愚分。嗚呼！殿下初元，有生欣覩，冀見德化之成，夫何今日國勢之危若此，人心之離若此哉？臣誠痛傷，莫究其由。況今天災孔慘，舉國駭惶，皆謂不測之禍生於朝夕，此政汲汲遑遑，猶懼不及之時也，豈是恩澤匪頒之時也？伏乞聖明，能疾敬德，實誠小民，實享天心，以固基命，則臣雖枵腹，轉死丘壑，萬萬無所恨矣。</p>

	<p>써 참으로 낮은 백성을 화평하게 하고 참으로 천심을 받들어 기명(基命)을 굳히시면, 신은 배를 주리고 구덩이에 굴러 떨어져 죽더라도 전혀 한탄할 것이 없겠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한번 시골로 돌아가고부터 해가 여러 번 바뀌어 목마르듯이 기다리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서 간절하였는데 이 소장을 보고 황홀히 다시 만난 듯하여 기쁨이 특별하다. 아침 저녁으로 덕음을 듣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데, 도리어 이 변변치 않은 예물을 어찌 사양할 것이 있겠는가. 사양하지 말고 받도록 하라. 경덕을 힘써 낮은 백성을 화평하게 하라는 가르침이 어찌 오늘날 두렵게 여기고 돌이켜 생각할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불민하기는 하나 감히 마음에 간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p>答曰：“一自歸鄉，星霜屢變，如渴之念，常切于中，覽茲疏章，恍如復面，欣喜倍品。以朝暮不能得聆德音爲恨，顧此薄禮，何足謝也？勿辭領受。疾敬德，誠小民之誨，豈非今日惕然恐懼省念處乎？寡昧雖不敏，敢不服膺焉？”</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1월 13일(신사) 5번째기사</p> <p>전 진선 송준길이 올린 하사품을 거두고 학문에 힘쓰라는 상소</p>	<p>전 진선 송준길(宋浚吉)이 상소하기를,</p> <p>“지금 백성이 굶주리고 부역이 무거워서 신음소리가 길에 가득한데, 가난한 자에게 혜택을 베푸는 정사가 먼저 환과(鰥寡)에게 가지 않고 신처럼 죄짓고 변변치 못한 자가 도리어 큰 사여(賜與)를 받으니, 영총(榮寵)은 깊으나 부끄럽고 두려워서 어찌 견디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다만 두어 가족과 함께 선대의 사업을 지키며 겨우겨우 살아 가는데 또 어찌하여 성려(聖慮)를 거둬 움직여 관廩(官廩)을 허비하겠습니까. 임금이 내린 것을 받은 옛 사람이 천하의 굶주리고 추운 자에게 내리기 바란다고 한 것은 참으로 매우 절실한 말입니다. 바라건대, 성상의 자애로움으로 신의 지극한 정성을 헤아려 성명(成命)을 거두어 미친한 분수를 편안하게 해주소서. 또한 신의 몸은 병이 깊으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으로 말하면 지니고 있는 상도(常道)에 뿌리박아 없애버릴 수 없고 사모하는 일념은 항상 궁궐에 있습니다. 늘 바라건대, 잠시 죽지 않고 전하의 덕업(德業)이 성취하여 쇠퇴한 것</p>	<p>前進善宋浚吉上疏曰：</p> <p>卽今民飢賦重，殿屎盈路，惠鮮之政，不先鰥寡，而如臣負罪無狀者，反蒙大賚，榮寵雖深，愧慄何堪？況臣早失父母，只與數三家累，保守先業，饘粥粗繼，亦何至重軫聖慮，以費官廩？古之人受君賜者，以爲願賜天下之飢寒者，此誠苦切之言。伏乞聖慈，諒臣至懇，收回成命，以安微分。抑臣身雖病蟄，若其愛君憂國之誠，根於秉彝，銷鑠不得，依依一念，長在五雲。每願須與無死，及見殿下德業之成，以興衰撥亂，嘉靖邦國，則舊時經幄微臣，與有</p>

	<p>을 일으키고 어지러운 것을 다스려 나라가 안정됨을 보게 된다면 예전에 경악에 있던 미신(微臣)에게도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초지(初志)를 더욱 돋우어 성심으로 늘 학문에 힘쓰고 공경을 도타이하고 실속을 힘써서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고 나라의 명맥을 이어 가소서. 이것은 성색(聲色)이나 웃는 얼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p> <p>하니, 답하기를, “그대가 가까이 있지는 않으나 어찌 잊은 적이 있겠는가. 이 소장 끝에 경계를 아뢰는 말을 보니,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알 만하다.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참으로 여느 경우보다 훨씬 더하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린 물건은 내 뜻을 나타낸 것인데, 어찌하여 사양하는가.”</p> <p>하였다.</p>	<p>榮耀。更望殿下，益勵初志，誠心典學，篤恭務實，以答天譴，以續邦命。此不可聲色笑貌爲也。</p> <p>答曰：“爾雖不在左右，豈嘗忘焉？覽茲疏末進戒之言，足見憂愛之誠。嘉悅之心，實倍恒品，可不惕念？所賜之物，表予之意，何用辭焉？”</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1월 28일(병신) 2번째기사 사은사 이시백이 국경을 넘어가 삼을 캐다 잡힌 백성의 일로 객사가 파견된다고 치계하다</p>	<p>사은사(謝恩使) 이시백(李時白) 등이 의주(義州)에 이르러 치계하였다. “벽동(碧潼)의 삼 캐는 백성으로서 저 나라에서 잡힌 자가 지금 심양(瀋陽)에 갇혀 있는데, 객사가 조사하러 나올 것이라 합니다.”</p>	<p>謝恩使李時白等到義州馳啓曰：“碧潼採參民被執於彼國者，方囚繫瀋陽，客使將以查問出來云矣。”</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2월 14일(임자) 2번째기사</p>	<p>선혜청(宣惠廳)이 아뢰기를, 【김욱(金埵)이 아뢰는 것이다.】 “홍청도(洪淸道)에서 태묘에 천신(薦新)할 고니[天鵝]를 얻기가 가장 어려우므로 기러기로 대신한 것은 실로 존양(存羊)의 뜻입니다마는 또한 정성으로 섬기는 도리가 아니니, 기러기도 아울러 없애소서.”</p>	<p>宣惠廳啓曰：“【金埵之啓也。】洪淸道太廟薦新天鵝，最難得，故代以生雁，實是存羊之意，而亦非事之以誠之道，請竝與生雁而去之。”上命問于他</p>

<p>선혜청에서 홍청도 태묘에 천신하는 기러기를 없애기를 건의했으나 불허하다</p>	<p>하니, 상이 다른 대신에게 물으라고 명하였다. 전 영의정 이경석이 아뢰기를, “만약 양(羊)을 아끼느냐 예(禮)를 아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경중을 따져보면, 대봉(代封)하는 기러기까지 없애는 것은 폐단을 없애자는 뜻에서는 절실하지만 예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p> <p>하고,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이 아뢰기를, “이미 이것이 천신에 쓰는 것이고 보면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는 것은 더욱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예전에 선조(宣祖) 때 고(故) 참판 김권(金權)이 북도순안 어사(北道巡按御史)가 되어 북도 백성이 고니와 이리 꼬리의 공납을 매우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연유를 갖추어 조정에 아뢰니, 선조께서 없애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찬선(饌膳)을 줄이신 때를 당하여 성상의 본의를 체득하고 상의하여 여쭙었던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상이 이경석의 말을 따랐다.</p>	<p>大臣。前領議政李景奭以爲：“若以羊，禮之愛，酌其輕重，則並去其代封之雁，雖切於除弊，於禮不可。”領議政鄭太和、左議政金堉、右議政李時白以爲：“既是薦新之用，則代以他物，尤似未安。昔在宣廟朝，故參判金權爲北道巡按御史，知北民甚苦天鵝、狼尾之貢，具奏于朝，宣祖命除之。今當聖上減膳之日，仰體聖意，相議啓稟矣。”上從景奭言。</p>
<p>효종 9권, 3년(1652) 임진 / 청 순치(順治) 9년) 12월 25일(계해) 1번째기사 홍년 때문에 제전에 진공하는 생선을 계속 줄이도록 하교하다</p>	<p>상이 하교하여 어공(御供)하는 생선을 여전히 줄이게 하였다. 당초 제전(諸殿)에 진공(進供)하는 생선을 연한을 정하여 임시로 줄이게 한 명령이 있었는데 연한이 찼으므로 사용원이 아뢰어 다시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홍년이 라 하여 또 수년 동안의 진공을 줄이라고 명한 것이다.</p>	<p>癸亥/上下教，仍減御供鮮魚。初，諸殿所供鮮魚，有限年權減之令，而年限已準，司饗院啓請復設，上以年凶，又命減數歲之供。</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월 1일(무진) 3번째기사 청사가 삼공·육경·지의금 등을 불러 압록강</p>	<p>청사(淸使)가 삼공·육경·대사헌·지의금(知義禁) 등을 불러 말하기를, “본국인으로서 압록강을 건너 삼(蔘)을 캔 자와 이를 잘 금단하지 못한 수령과 변장을 모두 안주(安州)로 잡아다가 대기시키시오. 감사(監司)·병사(兵使)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요.”</p> <p>하였다. 드디어 호조 참판 허적(許積)을 사문사(查問使)로 삼아 먼저 안주로 가게 하고, 인하여 삼을 캔 사람을 체포하여 대기시키게 하였다. 또 추가로</p>	<p>淸使招三公、六卿、大司憲、知義禁等，言曰：“本國人越江採蔘者及守令邊將之不能禁者，竝來待于安州。監、兵使亦難免罪矣。”遂以戶曹參判許積爲查問使，先往安州，因令本道，緝捕採蔘人以待之。又追作奏本，</p>

<p>을 넘어 삼을 캔 자를 대기케 하다</p>	<p>주본(奏本)을 만들어 청사(淸使)의 사행(使行)에 부송(附送)하였다. 그 뒤 죄수들을 논죄하였는데 각기 차등을 두었다.</p>	<p>附送于淸使之行。 其後論罪諸囚， 各有差。</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월 6일(계유) 2번째기사 전 영의정 이경석이 전지에 응해 올린 인사·형벌·봉당 등에 대한 상소</p>	<p>조정은 사방에서 본받는 것이고 명관(名官)은 백료(百僚)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명관은 스스로 삼가고 단속하여 뛰어난 식견이 볼 만한 연후에야 조정이 엄숙해지고 백료들이 꺼리는 것이 있게 되는 법입니다. 옛날의 명류(名流)들은 자신을 단속하는 것이 존경할 만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공경했는데, 지금의 명류들은 왕왕 방종한 것을 즐기면서 자신을 단속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서 금주(禁酒)시킨 것이 한두 번뿐만이 아닌데도 술 마시는 것을 고아한 풍치로 삼는 사람이 아직도 간혹 있습니다. 대간(臺諫)이 되어서는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다시(茶時)의 회좌(會坐)를 본부(本府)에서 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인가를 취택하여 뜻에 따라 편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에 나아가는 것도 매우 늦어서 간혹 먹고 난 뒤에 느릿느릿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란(禁亂)은 참람한 짓을 금단하는 것인데, 취득한 금물(禁物)을 혹 종자(從者)에게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기강이 무너진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진퇴와 용사(用捨)는 모두 전조(銓曹)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런 습관을 변혁시키지 않는다면 장차 조정을 바꿀 수 없게 될 것입니다.</p> <p>종사의 제사는 국가의 큰 일로서 구차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공자는 먼저 부서(簿書)에 의거, 제기(祭器)의 숫자를 정당하게 정하여 계속 잇대기 어려운 사방의 물건으로 부서에 근거하여 정한 제기에 공례하게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물품에 상수(常數)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전생서(典牲署)에서 제향(祭享)에 공례하는 유모(柔毛) 701) 가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분정하면 되는 것인데, 외방에서 객사를 전송할 적에 쓰는 양과 바꾸어 공례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더없이 구차</p>	<p>朝廷， 四方之所取， 則名官百僚之所相敬。 名官能自謹飭， 風裁可觀， 然後朝廷肅而百僚憚矣。 古之名流， 其律己也可敬， 故人亦敬之， 今之名流， 往往樂放縱而惡繩檢。 自上禁酒， 非止一再， 而以含盃爲高致者， 猶或有之。 爲臺諫不可不謹， 而茶時之坐， 不於本府， 取其近家， 惟意所便。 其赴茶時也甚晚， 或有食後， 緩緩往者。 禁亂所以禁僭亂也， 禁物之得， 或給其從者云， 信斯言也， 紀綱之壞， 無足怪矣。 進退用舍， 都在銓曹， 此習不變， 則將無以正朝廷矣。</p> <p>宗社之祀， 國之大事， 其不可苟也明矣。 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 供簿正， 言其物之有常也。 典牲署祭享所供柔毛， 不足則別定可也， 而似聞， 將以外方上送客使所用之羊， 換供云。 果如此言， 則苟且莫甚。 吉蠲之薦， 豈容如是？ 此弊不革， 則祀事無以潔矣。</p>

	<p>스러운 것입니다. 정결하게 해야 하는 친물(薦物)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폐단을 변혁시키지 않는다면 사사(祀事)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월 26일(계사)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신하들을 인견하고 이형·신상·조수익 등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제신(諸臣)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재이(災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지진까지 일어났으니 놀랍고 두려운 조짐을 다 진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도 걱정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사문사(查問使) 허적(許積)이 서쪽 지방에서 올 때 새벽길을 걸었는데 백성(白星)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고, 허적은 아뢰기를, “광망(光芒)의 크기가 동이[盆]만 했습니다.” 하고, 김옥(金堉)은 아뢰기를, “이른바 백성이란 것은 별이 아니고 봉서(蓬絮)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미성(尾星)과 기성(箕星)의 분야(分野)에 나타났는데 지금은 동남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간원의 제신들은 진실로 외직에 보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형은 80세 된 늙은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없는 독자(獨子)인데, 천리 먼 길을 떠나게 되었으니, 화기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정리(情理)가 딱하기 그지없으니, 효도로 다스리는 세상에 관대하게 용서하는 도리가 있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은 도배(徒配)된 경우와는 다르니 스스로 왕래하면서 근친(覲親)하면 된다. 단지 그 인품으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지가 우려된다.”</p>	<p>癸巳/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曰：“災異疊見， 昨又地震， 驚懼之象， 不可盡陳。” 上亦憂之。 太和曰：“查問使許積， 自西來時， 曉行見白星復出云矣。” 積曰：“光芒大如盆矣。” 金堉曰：“所謂白星， 非星也， 乃蓬絮之類也。 且前則出於尾、箕之分， 而今則出於東南間云矣。” 又曰：“諫院諸臣， 固不宜補外， 而況李迥有八十老父， 以獨子無兄弟之人， 千里遠別， 足以感傷和氣矣。” 太和曰：“情理可矜， 孝理之下， 合有寬恕之道。” 上曰：“守令異於徒配， 自可往來省覲。 但慮其爲人， 不足以奉職耳。” 堉曰：“趙壽益曾爲諫長， 不卽進參鞫廳， 坐此編配， 旋蒙放釋， 而尙未收斂。 臣聞， 其時事亦有情實之可恕， 且其爲人可惜矣。” 上曰：“雖曰無情， 事涉可駭， 故不得不罪矣。 大臣之意如此， 收斂可矣。” 金益熙曰：“申恂論事， 似不明白， 固有所失， 然其所論， 既非失實。 且言事之臣， 豈</p>

	<p>하였다. 김육이 아뢰기를, “조수익(趙壽益)이 일찍이 간장(諫長)으로 있을 적에 즉시 국청에 나아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좌죄(坐罪)되어 귀양갔다가 곧 석방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수서(收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그때의 일도 정실(情實)이 용서해도 될 만했다고 하고, 또 그의 인품이 아깝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정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일이 경악스러운 데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죄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신의 의견이 이러하니, 수서하도록 하라.”</p> <p>하였다. 김익희(金益熙)가 아뢰기를, “신상이 논한 일은 명백하지 않은 듯하니, 진실로 잘못된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가 논한 것이 일단 사실과 어긋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일을 말한 신하를 멀리 귀양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응시가 무장에게 청탁 행위를 한것은 자못 사대부가 처사하는 도리에 흠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은 아깝습니다. 더구나 청탁했다는 죄로 귀양까지 보내는 것은 원래 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조 때 일시적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후세에 전하기 위한 바꿀 수 없는 법전은 아니었습니다. 신은 두 사람의 죄를 모두 양감(量減)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잠정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국법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p> <p>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삼(蔘)을 캐는 사람을 수포(收捕)할 적에 강가의 백성들이 대부분 흩어져 버렸으니, 안집(安集)시킬 방법을 조금도 완만하게 해서 안 됩니다. 의당(米布)을 내어서 무마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였다. 박서가 아뢰기를, “본도(本道)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을 가려 정하여 곡물(穀物)을 나누어 지</p>	<p>合遠竄？李應著通關節於武將，殊欠士夫處事之道，而其人可惜。況關節之罪，至於編配，元非定律，先朝欲矯一時之弊，非垂後不易之典也。臣謂兩人之罪，竝宜量減。”上曰：“暫行國法何妨？”積曰：“採參人收捕時，江邊之民舉皆渙散，安集之策，不容少緩。宜捐米、布，以爲撫摩之地。”上令廟堂議處。朴遜曰：“令本道擇定差使員，分給穀物，而招集之可矣。”上從之。</p>
--	--	---

	<p>급하게 하면서 불러 모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2월 2일(기해) 3번째기사 선혜청에서 건의한 충 청도 진상의 가미, 외 사용의 설치에 대해 논의하다</p>	<p>선혜청(宣惠廳)이 아뢰기를, “충청도 진상(進上)의 가미(價米)를 감정(勘定)하여 기록해서 아뢰었더니, 하 교하시기를 ‘이것은 모두가 백성들의 고흥(膏血)인데, 어떻게 함부로 허비할 수가 있겠는가. 가미를 감손하기라도 해서 민역(民役)에 보탬이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신들이 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시행할 때에 진상하는 물종(物種) 을 서울에서 값을 지급하여 봉진(封進)하는 한 조항에 대해 상의하지 않은 것 은 아닙니다마는, 막중한 상공물(上供物)을 감히 용이하게 변통할 수는 없었 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의 분부를 받들고 하배(下輩)들 가운데 제대로 판출할 수 있는 사람을 널리 모집하여 각종(各種) 가미(價米)를 산정(算定)하여 지급 했습니다만, 외방에서 생산되는 것을 서울에서 사들인다는 것이 사세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진(封進)할 때 또한 허비되는 것이 있는 탓으로 응모자 (應募者)들이 후한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도(本道)에서 정한 값보다 더 많 이 지급하는 액수가 무려 4백여 석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약간의 물중에 대 해서는 대략 그 값을 감하고는 있습니다만 감한 것은 겨우 60여 석입니다. 제전(諸殿)의 삭선(朔膳)도 혹 복구(復舊)되기는 했습니다만 본가(本價)가 역 시 3천 1백여 석을 밀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식으로 정하여 한결같이 경영(京營)에서 공상(供上)하는 준 례와 같이 하는 것도 편의로울 듯하긴 합니다만,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 는 법이니, 이것보다는 차라리 본가를 공가(公家)에 예치시켜 놓고 계절마다 생산되는 것을 시장에서 사들이면서 한결같이 중국의 고례(古例)와 똑같이 하 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기에, 대신들이 이런 내용으로 탐전에서 진달한 적도 있 었습니다.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는 것과 탄일(誕日)·정조(正朝)·동지(冬至) 의 물선(物膳)과 납육(臘肉)은 구례대로 본청(本廳)에서 값을 지급하여 봉진하</p>	<p>宣惠廳啓曰：“忠清道進上價米，勘定 列錄以啓，則下教以爲：‘此皆民之膏 血，豈可濫費？或減其價米，以補民 役。’ 臣等於大同設施之初，進上物 種，自京給價封進一款，非不相議，而 莫重上供之物，不敢容易變通。及承 上教，廣募下輩之能辦者，以各種價 米，算定以給，而第外方所產，質於京 中，其勢未易。封進之際，亦有所費， 應募人等要素厚價，則比諸本道所定之 價，加給之數，多至四百餘石，而其中 若干種，略減其價，所減者僅六十餘石 矣。諸殿朔膳，雖或復舊，而本價亦 不下三千一百餘石。以此定式，一如 京營供上之例，似合便宜，而第法久弊 生，毋寧留儲本價於公家，隨其節產， 質諸市上，一如中朝古例之爲愈，故大 臣曾以此意，陳稟於榻前。宗廟薦新 及誕日·正朝·冬至物膳·臘肉則依 舊例，自本廳給價封進，而朔膳節產 中，如清蜜·雉獐·魚鹽·果實之可以 預備者，亦依例封進。至如生魚之類， 隨其節產，或以他魚代封，各於當產之</p>

	<p>게 하고, 삭전(朔膳)의 경우 철에 따라 생산되는 물산 가운데 청밀(淸蜜)·치장(雉獐)·어염(魚鹽)·과실(果實) 등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 또한 구례대로 봉진하게 하소서. 생어류(生魚類)는 계절따라 생산되는 대로 혹 다른 물고기로 대신 봉진하게 하되, 각기 생산되는 달에 물목(物目)을 기록하여 품지(稟旨)해서 낙점(落點)받은 다음 철에 따라 사서 봉진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p> <p>만일 궐문(闕門) 밖에 따로 외사옹(外司饗)이라고 명명하여分院(分院)을 설치하고 생어(生魚)의 가미(價米)를 계산하게 하는 한편, 네 순번으로 나누어 각각 해당되는 계절에 실어다가 창고에 저장해 두게 하고 본원(本院)의 관원이 주관하여 사들이게 하되 시장의 값보다 조금 후하게 지급하게 하면, 물고기를 잡은 자들이 반드시 팔기 위해 먼저 오게 될 것입니다. 대신들의 의견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값을 감하지 않고도 변통시킬 수 있는 방도는 이것을 버리고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p> <p>하니, 상이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전 영돈녕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p> <p>“진실로 경외(京外)가 모두 편하게 되고 철에 따라 생산되는 것도 모자라지 않게 된다면 한번 시행해 본들 뭐가 해롭겠습니까. 그러나 물목(物目)을 기록하여 품지해서 낙점받게 하자는 것은 번거롭고 잔단 것에 관계되는 것 같고, 사체에 의거하여 헤아려 보아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p> <p>하니, 상이 하고하기를,</p> <p>“이 헌의(獻議)를 살펴보건대, 대체로는 곤란하게 여기는 뜻이다. 그런데 3천여 석이라는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것이니 진실로 변통시켜야 한다. 제전(諸殿)에 진상하는 물종을 본도(本道)에 책임지운다면 민간의 폐해가 매우 많게 되고, 사주인(私主人)에게 위임시킨다면 허비되는 것이 또한 많을 것이고, 따로 외원(外院)을 설치하게 되면 폐단이 반드시 시전에 미치게 될 것이다. 어</p>	<p>月, 列書物目, 稟旨受點, 隨節貿進, 恐無所妨。若於闕門之外, 別設分院, 稱以外司饗, 計其生魚價米, 分爲四巡, 各於其節, 輸置庫中, 其所市貿, 使本院官員主之, 比於市直, 稍優其數, 則持魚者, 必將求賣而先至, 大臣之意, 亦不外此。雖不特減其價, 而變通之道, 捨此無他。”上命議于諸大臣。前領敦寧李景奭以爲: “苟或京外兩便, 節產無乏, 則試之何害? 至於列書物目, 稟旨受點, 似涉煩瑣, 揆以事體, 未知其必當。”上下教曰: “觀此獻議, 蓋其難便之意, 而三千餘石之說, 尤可驚駭, 固當變通。但諸殿進上之物, 歸之於本道, 則民弊甚多; 委之於私主人, 則虛費亦多, 別設外院, 則弊必及於市塵。無已則諸殿進供應入之價, 從略定數, 別置於空闕, 使中官掌之, 隨時貿進, 則非但依中朝古例, 亦無浪費民生膏血之患。更議于大臣。”李景奭以爲: “別設饗院之弊, 誠如聖教。若依指揮, 善爲奉行, 則其弊必省, 無容他議。”領議政鄭太和以爲: “該廳啓辭, 臣亦同參, 而不能的知其行之無弊, 猶有後慮矣。伏觀</p>
--	---	---

	<p>떨 수 없다면 제전의 진공(進供)에 응당 들어가야 하는 값만큼 대략 수효를 정하여 따로 빈 대궐에 저장해 두고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는 한편 수시로 사서 들여오게 하면, 중국의 고례(古例)를 따르는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민생의 고혈(膏血)을 낭비하는 걱정도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라.”</p> <p>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따로 사용원을 설치하는 폐단은 진실로 성교(聖敎)와 같습니다. 만일 지휘(指揮)에 따라 잘 봉행한다면 그 폐단이 반드시 줄게 될 것이니 다른 의논을 제기할 것이 없겠습니다.”</p> <p>하고,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아뢰기를, “해청(該廳)의 계사(啓辭)에 신도 동참했습니다만, 그것을 시행할 때 폐단이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없어 여전히 뒷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하교를 받드니, 전하의 생각이 미치신 것이 군하(群下)들이 헤아린 것보다 월등히 뛰어났으므로 감격스럽고 다행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p> <p>하고, 좌의정 김육(金堉)은 아뢰기를, “삼가 성비(聖批)를 살펴건대, 그야말로 백성을 다친 사람 보살피듯 하고 거친 옷을 입으며 거친 음식을 먹는 성대한 덕입니다. 이미 본도(本道)의 고통을 염려하시고 또 사주인의 허비를 우려하였음은 물론, 이어 시전의 폐단까지 걱정하여 중국의 고례를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꼭진한 보살핌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 세 곳에 털끝만큼인들 폐단이 있겠으며 백성들의 고혈을 낭비하는 걱정이 있겠습니까. 본청으로 하여금 법식을 정하여 거행하게만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중관(中官)이 충직(忠直)하여 성의(聖意)를 잘 몸받는 사람이 아니면 오래된 뒤에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잘 선발하여 직임을 제수하고 법을 엄하게 하여 외람된 것을 금하게 함으로써 영구히 시행되게 하는 방도를 만드소서.”</p>	<p>下敎， 聖算所及， 迥出於群下料度之外， 不勝感幸。” 左議政金堉以爲：“伏覩聖批， 此誠視民如傷， 非衣惡食之盛德也。 既軫本道之苦， 又念主人之費， 仍慮市廛之弊， 欲依中朝古例。 委曲至此， 豈有三處毫毛之弊， 百姓浪費之患哉？ 令本廳定式舉行而已。 但中官非忠直， 克體聖意者， 久則不能無弊， 極擇而授任， 嚴法而禁濫， 以爲永久可行之道。” 上命依議。</p>
--	---	---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2월 4일(신축) 1번째기사 주장 후 공물의 감면, 창덕궁 환어 등에 대해 논의하다</p>	<p>하니, 상이 의논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주장에 나아가 《서전》 무일(無逸)을 강하였다. 상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임금은 몸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의당 먼저 농사짓는 일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세자(世子)의 경우는 깊은 궁궐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어떻게 그 어려움을 알 수 있겠는가. 옥당의 관원으로서 춘방(春坊)의 직임을 겸한 사람이 점을 개진(開陳)해야 한다. 조종조에서 후원(後苑)에 논을 만들어 놓은 것은 대를 이어받는 임금에게 그 어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논을 갈 적에 세자에게 와서 보게 한 적이 있었다. 옛 사람의 시(詩)에도 ‘한낮에 논을 매니 땀방울이 논바닥으로 떨어지네.[鋤禾日當午 汗滴田中土]’ 하였으니, 그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이에 의거해도 알 수가 있다. 내가 서로(西路)를 왕래할 적에 하나의 기와집이 길가에 있기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더니, 곡초(穀草)와 잡물이 뜰과 방에 가득히 흩어져 널려 있었으므로 거처할 데가 없었다. 이는 백성 가운데 상당한 부자(富者)의 경우였는데도 그 집의 고생스러운 모습에 이르러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말[斗]을 얹어놓은 것 같은 오두막집에서 초식(草食)도 계속 잇대기가 어려워 긴 여름날 호미를 메고 굶다가 먹다가 하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뭐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노라면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없다.” 하니, 특진관 이시방이 아뢰기를, “근래 민간에 농사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 제도(諸道)에 하유(下諭)하여 다시 더 권과(勸課)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승지에게 전교를 기초하여 유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시방이 또 아뢰기를, “병자 호란 뒤로 공물(貢物)을 재감(裁減)한 탓으로 매양 부족한 것을 걱정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봉상시(奉常寺)야말로 제향(祭享)을 관장하는 중요한 곳</p>	<p>辛丑/上御書講，講《書傳》《無逸》。上謂筵臣曰：“人君不待躬稼，而宜先知穡事之艱難也。至如世子，生於深宮，何以知之？玉堂官之兼任春坊者，宜以是開陳也。祖宗朝設水田於後苑者，欲使繼體之君，得以知之也。予嘗於耕耘之時，使世子往見之矣。古人詩云：‘鋤禾日當午，汗滴田中土。’其勤苦，據此可知矣。予往來西路時，見一瓦屋在路傍，入而憩焉，則穀草、雜物散置庭戶，無可止接處。此則民之稍富者，而其家間苦態如此。何況蔀屋如斗，草食難繼，而長夏荷鋤，或飢或食者乎？思之未嘗不惻然。”特進官李時昉曰：“近來民間多不務農，宜下諭諸道，更加勸課。”上命承旨，草教而諭之。時昉又曰：“丙子亂後，裁減貢物，每患不足。況奉常寺乃祭享重地，尤似未安。如畿甸、忠清、江原三道，則皆設大同法，不當出於民結，只以大同之米，計給爲便。”上然其言，而以復設難之，令議于大臣。時昉又曰：“辛卯條貢物，納於壬辰，壬辰條貢物，納於癸巳，而湖</p>
---	--	---

	<p>인만큼 더욱 미안스러운 것 같습니다. 기전(畿甸)·충청(忠淸)·강원(江原) 이 세도에는 모두 대동법을 실행하고 있어 민결(民結)에서 염출하는 것이 부당한 실정이니, 단지 대동미(大同米)를 헤아려 지급하게 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그 말을 옳게 여겼으나 다시 설치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어렵게 여겨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시방이 또 아뢰기를,</p> <p>“신묘년 조의 공물(貢物)을 임진년에 납입하고 임진년 조의 공물을 계사년에 납입하도록 했는데, 호남(湖南)의 재상(災傷)을 입은 고을 중에 혹 공물을 감손시키기 전에 이미 납입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것을 계사년 조의 것으로 옮겨서 감손시켜 줄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허락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조정에서 이미 공물을 감손했는데 각 고을에서 지레 먼저 와서 바친 것을 지금 허락하여 주지 않는다면 신의를 잃게 될까 염려스럽다.”</p> <p>하였다. 시방이 아뢰기를,</p> <p>“그렇다면 세폐(歲幣)의 차목(次木)을 헤아려 감하소서.”</p> <p>하니, 상이 옳게 여겼다. 시방이 또 아뢰기를,</p> <p>“화전(火田)의 폐단이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었는데, 샘의 근원이 고갈된 것도 여기에 연유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화전의 세금이 수령의 사사로운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령(禁令)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이 뒤로는 정전(正田)의 예에 의하여 세금을 거두라. 세금이 무거우면 금하지 않아도 저절로 중지될 것이다.”</p> <p>하였다. 지경연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p> <p>“창덕궁(昌德宮)으로 환어(還御)하기 위해 이제 이미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p>	<p>南被災之邑， 貢物或有未減前已納之處。 此類今願移減於癸巳條， 此則不宜許也。” 上曰：“朝廷既減貢物， 而各邑徑先來納， 今不許之， 恐失信也。” 時昉曰：“然則可以歲幣次木量減也。” 上以爲然。 時昉又曰：“火田之弊， 至於赭山， 泉原之枯渴， 亦由於此。” 上曰：“火田之稅， 爲守令之私用， 故禁令不行。 今後可一依正田收稅， 稅重則不禁而止矣。” 知經筵沈之源曰：“還御昌德宮， 今已卜日， 而穢惡之氣， 未必銷散。 況其壯麗， 非比他闕， 願寢還御之命， 以爲避殿之一助。” 之源又曰：“洪茂績、陸行善未付軍職， 今已久矣。 臨政注擬， 每患乏人， 乞賜寬典。” 上皆不許。 侍讀官金始振言南陽之弊以爲： 敗缸拯米， 改徵無據； 司僕諸員， 闕額難補； 島中生鹿， 覓納未易。” 上竝令有司稟處。</p>
--	--	---

	<p>만, 더러운 기운이 모두 없어졌다고 기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장려(壯麗)함이 다른 대궐에 견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 환어하시겠다는 명을 도로 중지하심으로써 피전(避殿)의 일조(一助)가 되게 하소서.”</p> <p>하고, 지원이 또 아뢰기를,</p> <p>“홍무적(洪茂績)·목행선(睦行善)을 군직(軍職)에 붙이지 않은 지가 이제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정사(政事)에 임하여 주의(注擬)할 적에 매양 사람이 모자란 것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니, 관대한 은전(恩典)을 베푸소서.”</p> <p>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시독관 김시진(金始振)이 남양(南陽)의 폐단을 말하면서 아뢰기를,</p> <p>“패선(敗船)된 데에서 건져낸 쌀을 다시 징수하는 것은 전거가 없는 것입니다. 사복시(司僕寺)의 제원(諸員)이 궐액(闕額)된 것을 보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섬에서 산 사슴을 찾아서 바치기가 쉽지 않습니다.”</p> <p>하니, 상이 아울러 유사(有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2월 12일(기유) 3번째기사</p> <p>선혜청에서 각도 명절의 삭선의 봉진 물품을 아뢰자 외방에 이 전치 말게 하다</p>	<p>선혜청이 아뢰기를,</p> <p>“충청도의 삭선(朔膳)을 변통시키는 일을 지금 이미 강정(講定)했는데, 각종 가미(價米)가 2천 1백 77 석이고 감면한 것이 7백 1 석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탄일(誕日)·동지(冬至)·정조(正朝)·납일(臘日)은 삭선(朔膳)에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응당 공상(供上)해야 할 물선(物膳)을 봉진(封進)하지 않는다면 사체로 헤아려 볼 때에도 매우 미안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 값을 사주인(私主人)들에게 주어 각각 절일(節日)에 준례에 따라 봉진(封進)하게 하는 것이 실로 정례(情禮)에 합치됩니다. 납저(臘猪)·신도(新稻)·생복(生鰯)·홍시(紅柿) 등 약간의 종류는 곧바로 본도(本道)로 하여금 봉진하게 하는 것이 번신(藩臣)이 진상하는 의례(儀禮)에 있어서도 서운한 바가 없을 것입니다. 본도와 서울에서 봉진해야 될 것을 아울러 따로 기록하여 아뢰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宣惠廳啓曰：“忠淸道朔膳變通之學，今已講定， 各種價米二千一百七十七石， 而所減者七百一石。 第念， 誕日、冬至、正朝、 臘日， 非如朔膳之比， 亦不以應供之物封進， 揆以事體， 殊極未安。 此則給價於私主人， 各於節日， 依例封進， 實合情禮。 至於臘猪、新稻、生鰯、紅柿若干種， 直令本道封進， 其在藩臣享上之儀， 亦無所歉。 本道及自京封進者， 竝別錄以奏矣。” 答曰：“旣以省費爲主， 則不可分而爲二。 凡諸進封之物及臘肉， 俱</p>

	<p>“이미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주안점을 삼았다면 나누어서 둘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진봉물(進封物)과 납육(臘肉)은 모두 큰 폐단이 되고 있으니, 다시 외방에 이정(移定)하지 말라.”</p> <p>하였다.</p>	<p>是巨弊，更勿移定于外方。”</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2월 13일(경술) 1번째기사 이경석·정태화·김육·이 시백이 아뢰는 재변을 해소시킬 방도</p>	<p>부응교 심지한(沈之漢), 교리 홍처후(洪處厚)·홍처윤(洪處尹), 부교리 김시진(金始振), 수찬 홍처대(洪處大), 부수찬 이단상(李端相) 등은 아뢰기를 ‘재변을 없애는 계책에 여섯 가지 조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답게 자신을 반성하는 것으로, 겉치레만 일삼지 말고 실덕(實德)을 닦도록 힘써야 합니다. 반드시 정령(政令)을 시행할 적에는 희로(喜怒)와 취사(取捨)를 한결같이 사리에 합당하게 하여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재를 수용하는 것으로, 산림(山林)의 선비들을 끝까지 잘 기용하지 못하고 정직한 신하를 내치고 수용하지 않았었는데, 의당 이들을 아울러 수용하여 순방(詢訪)에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언로를 널리 여는 것으로, 대각(臺閣)의 신하들이 잇따라 견벌을 받아 곧은 기운이 꺾인 탓으로 올바른 말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당 말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시어 광망(狂妄)스러운 말이라도 죄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는 내수사에 투속(投屬)하거나 여러 궁가에 서 함부로 점유하는 폐단으로, 내수사에 투속한 무리들은 본주인(本主人)을 모함하고 있으며 궁가에서 입안(立案)할 적에 외람되이 백성의 전지(田地)를 점유하였으니, 의당 명백히 조사하여 원망을 품은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호서(湖西)의 삭선(朔膳)에 대한 가미(價米)를 중관(中官)으로 하여 금 주관하게 하는 데 대한 폐단으로, 의당 경기(京畿)의 물선(物膳)에 관한 준례를 모방하여 값을 주고 봉진(封進)하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능(陵)에 거동할 적에 기전(畿甸)의 백성들을 동원하는 폐단에 관한 것으로, 능침(陵寢)에 전알(展謁)하는 것이 비록 놀러가는 일은 아닙니다만 때아닌 때에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은 수성(修省)하는 도리에 있어 어긋나는 점이 있으니, 의당 물려</p>	<p>副應教沈之漢、校理洪處厚·洪處尹、副校理金始振、修撰洪處大、副修撰李端相等以爲：‘消災之策，其目有六。一曰，修省以實。毋事文具，懋修實德。必須政令施措，喜怒取舍，一當於理，無拂乎天。二曰，收用人才。山林之士，用之不終，直諒之臣，擯而不收，宜竝收用，以備詢訪。三曰，廣開言路。臺閣之臣，連被譴罰，直氣摧沮，讜言不聞。宜恢容受之量，不罪狂妄之言。四曰，內需司、諸宮家投屬冒占之弊。內司投屬之輩，謀陷本主，宮家立案之際，冒占民田，宜加明覈，俾無抱冤之人。五曰，湖西朔膳價米，令中官主管之弊。宜倣京畿物膳之例，使之授價封進。六曰，陵幸時畿甸動衆之弊。展謁陵寢，雖非遊豫之舉，非時動衆，有乖修省之道。宜令退行，以待秋成。’ 臣景奭等觀此諸臣所陳，無非切實之言。明賞罰、崇儉約、慎刑政、伸冤枉、戒</p>

	<p>거행하여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였습니다.</p> <p>신 경석(景奭) 등이 이렇게 여러 신하들이 진달한 내용을 살펴보니 절실하지 않은 말이 없었습니다. 상벌을 분명히 하고 검약을 숭상하고 형정을 신중히 하고 억울함을 신리(伸理)하고 회로를 경계하고 현준(賢俊)을 등용하고 처음 벼슬하는 사람을 잘 선발하고 유일(遺逸)을 수용(收用)하고 언로를 넓히고 장재(將才)를 택취(擇取)하고 사치스런 습관을 제거하고 내사(內司)와 궁가(宮家)의 폐단을 막고 궁액(宮掖)의 부정한 길을 엄금하는 것이 모두 오늘날의 급선무인데, 억울한 것을 쾌히 씻어주고 적체된 죄수들을 소결(疏決)하고 언로를 크게 열고 대신(臺臣)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현재(賢才)를 수용하고 헛된 낭비를 줄이는 것은 더욱 간절한 일입니다. 이렇게 변이(變異)가 매우 참혹한 때를 당하여 착실히 거행하는 효과가 없다면 오늘의 이 일은 또한 걸치레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상께서 몸소 시행해야 될 일은 즉시 시행하시고 유사(有司)가 봉행해야 될 것은 또한 즉시 분부하여 행하게 하소서. 능침에 거동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응당 행해야 할 예법이기는 하지만 방금 공구 수성(恐懼修省)하는 중이고 또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하는 폐단이 있는 일이니, 서서히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혹 사의(事宜)에 맞을 것 같습니다. 환어(還御)하실 날짜를 이미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의심하고 우려하고 있으니, 다시 시일이 좀 오래되기를 기다려 더러운 기운이 모두 없어진 뒤에 환어하시는 것이 또한 여망(輿望)을 흡족하게 하는 일이 되리라 여깁니다.</p> <p>호서(湖西)의 삭선을 변통시키는 일은 비용을 줄이자는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인데, 만일 기전(畿甸)의 준례와 같게 한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부득이한 거조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당초 외사옹(外司饗)을 설치하자고 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p>	<p>喜怒、登賢俊、簡初職、收遺逸、開言路、擇將才、去侈習、杜內司・宮家之弊、嚴宮掖邪逕之禁、俱爲今日之先務、而快雪幽枉、疏決滯囚、大開言路、寬假臺臣、收用賢才、節省浮費、尤爲緊切。當此變異孔慘之時、若無着實舉行之效、則此日此舉、亦不免爲文具之歸。在聖上體行之事、則劃即施之；有司所當奉行者、則亦即分付而行之。至於陵幸、雖是應行之禮、方在恐懼修省之中、且有農時動衆之弊、徐待秋成、似或得宜。移御雖已卜日、群情猶有所疑慮、更待日月差久、穢氣都消、然後還御、亦愜輿望。湖西朔膳變通、出於省費之聖意、若如畿甸之例、則其弊不貲、故有此不得已之舉。當初請設外司饗者、正爲此也。</p>
<p>효종 10권, 4년(1653)</p>	<p>예조가 친경(親耕)에 대한 의논 때문에 밖에 있는 대신에게 문의하였다. 영돈</p>	<p>禮曹以親耕之議、問于在外大臣、領敦</p>

<p>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2월 13일(경술) 2번째기사 예조에서 친경의 의식에 대해 대신들에게 문의하다</p>	<p>녕 이경석(李景奭)은 아뢰기를, “우상(右相)이 진달한 바 백성에게 일을 권면하고 근본을 힘쓰게 하자는 뜻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공구 수성하는 때를 당하여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이 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이른바 공구 수성에도 본말(本末)이 있습니다. 피전(避殿)·감膳(減膳)·구언(求言)은 말(末)에 속하고, 날마다 두려워하여 조심하면서 성찰하여 마음속에 보존해서는 그것이 덕이 되고 밖으로 발현해서는 그것이 선정(善政)이 되며 희로(喜怒)와 상벌(賞罰)이 혹시라도 중도(中道)에 지나침이 없고 구언(求言)하여 자신의 잘못을 들은 다음 반드시 그 말을 써주는 것이 본(本)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번다한 걸치레와 허튼 비용을 일체 없애버리고 몸소 다섯 번 미는[五推] 법전을 행하여 만민을 권면시키는 동시에, 세종조(世宗朝)의 고사(故事)대로 크게 십행(十行)의 교서(敎書)를 내린다면 그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영의정 정태화(鄭太和)는 아뢰기를, “만일 하늘에 응답하고 재변을 해소시키는 방도를 강구하여 먼저 실답게 극진히 하고 나서 친경의 의식(儀式)을 거행한다면 어찌 성대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김육(金堉)은 아뢰기를, “친경하는 전례(典禮)가 재변을 해소시키는 것보다 급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을 힘써 농사를 권장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풍년에는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하며 부족(富足)한 가운데 예의가 생겨나게 하고 태평한 가운데 송가(頌歌)가 드날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왕정(王政)의 급선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 의(威儀)와 절문(節文)을 간략하게 하여 직접 몸소 거동하시어 잠시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p>	<p>寧李景奭以爲：“右相所陳，勸民力本意甚善。以臣愚見，在恐懼修省之時，此事猶非第一件事也。所謂恐懼修省，有本末焉，避殿、減膳、求言，末也。兢兢業業，日加省察，存諸中而爲之德，發諸外而爲之政，喜怒賞罰，無或過中，求聞闕失，必用其言者，本也。如是而煩文浮費，一切擺脫，躬行五推之典，以勸萬民，且依世宗朝故事，誕降十行之教，則夫誰曰不可？”領議政鄭太和以爲：“若於應天消災之道，先盡其實，而次行親耕之儀，則豈不爲盛舉乎？”左議政金堉以爲：“親耕之禮，雖似不急於消災，而務本勸穡，使民樂歲而飽，凶年免於死，禮義生於富足，歌頌騰於熙皞者，實王政之先務。宜略其威儀，簡其節文，親舉玉趾，暫行縟儀。”答曰：“知道。”</p>
<p>효종 10권, 4년(1653)</p>	<p>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상차하기를,</p>	<p>領中樞府事李敬輿上筭曰：</p>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2월 13일(경술)
3번째기사
영중추부사 이경여가
올린 적전 친경·어공
변통 등에 관한 상차

“근본을 힘써 농사를 권면하는 것이야말로 왕자(王者)의 대정(大政)입니다. 그래서 천자(天子)가 맹춘(孟春)에 기곡제(祈穀祭)를 지내는 것이 월령(月令)에 나타나 있고, 주 선왕(周宣王)이 즉위하여 적전(籍田)에서 친경(親耕)하지 않자 궤공(虢公)이 극구 간쟁했으나, 옛사람들이 이 일을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 직접 다섯 번 미는 법전을 거행하여 사방의 백성들을 권면시키자고 건의하여 청한 그 뜻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조종조 이래로 이를 태평 시대의 고사(故事) 정도로 여긴 나머지 번거로운 예문과 절차가 한없이 확장되어 습속(習俗)이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졌고 들은 것 또한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중히 여겨 백성을 권면하는 뜻은 숨겨져 드러나지 않고 태평 성대를 노래한다는 소문만 먼저 원근에 전파되는 실정이고 보면, 어찌 조금이라도 공구 수성하는 도리에 방해되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성충(聖衷)으로 결단하시어 전에 해오던 습관을 크게 변혁시켜 장고(掌故)를 답습하지 않고 전공(田功)을 힘써 구혁(溝洫)에 진력하는 한편 직접 몸소 밭을 걷고 쟁기를 잡으면서 성심으로 곡식이 잘 되기를 기원함으로써 위로 하늘의 뜻을 감동시키고 아래로 백성들의 마음을 용동시켜 모두 농사에 전념하게 하는 동시에 번거롭고 말단적인 절문(節文)은 일체 없애버린다면, 조정에서 근본을 중히 여기고 걸치례를 숭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집집마다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전하께서 자신의 마음에 반성하여 진퇴(進退)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겉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되고 만다면, 팔방(八方)에 비웃음만을 사게 되어 손상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전일 어공(御供)을 변통시키는 일로 하문을 받았습시다만, 그때 병이 극심하여 우견(愚見)을 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늘 마음속으로 잊지 못하

務本勸穡，爲王者大政，故天子以孟春祈穀，著於月令。宣王卽位不籍，虢公苦爭，可見古人重此事也。夫親行五推之典，以勸四方之民，建白之請，意甚盛也。但祖宗朝以來，爲太平故事，彌文繁節，極其鋪張，習俗已久，聞見亦熟。重農勸民之意，隱而不彰，豐亨豫大之言，先播遠近，則不暇有妨於恐懼修省之道耶？然若能斷自聖衷，大變前爲，毋襲掌故，田功是卽，盡力溝洫，親勞玉趾，從事耜耒，而誠心祈穀，上格天意，聳動民聽，轉緣南畝，至於煩文末節，一切掃除，則朝廷重本，不尙文具之意，雖不戶喻，或致人感。此則惟在殿下求諸在己，而進退之耳。苟或不然，而徒爲賁飾之歸，則貽笑八方，所損非細。且臣於前日，以御供變通，曾有下詢，而當時疾劇，未達愚見，耿耿在心，中宵不寢。或至精神稍定，復省前議，則雖欲發口，事已後矣。今因獻議之筭，兼陳前日之懷。無隱之義，豈容終默？茲不敢以成事爲嫌，更進瞽說。夫國朝惟正之供，最得任土之意。但法久弊生，民不堪命，更而張之，誰曰不可？別設

여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찌다 정신이 조금 안정되었을 적에 다시 전의 의논을 살펴보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일이 이미 지나간 뒤였습니다. 지금 헌의(獻議)하는 차자를 인하여 겸해서 전일의 의견까지 진달드릴까 합니다. 임금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의리에 비추어 볼 때 어찌 끝내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혐의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 국조(國朝)의 정공법(正供法)은 토산에 맞게 한다는 의의에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겨난 나머지 백성들이 감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경장(更張)시킨다면 그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따로 태관(太官)을 설치하는 것은 대체로 중국의 구제(舊制)를 모방하여 호민(湖民)의 힘을 조금이나마 너그럽게 해 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시나마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을 풀어주는 방도가 되게 하여 상공(上供)을 폐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자는 것이니,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우견으로는 이것도 말절(末節)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강을 정돈하고 중외를 엄숙하게 하여야 하는데, 일월(日月) 같은 전하의 조찰(照察)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극히 가까운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위로 액정(掖庭)에서부터 아래로 이서(吏胥)에 이르기까지 은밀한 소굴을 완전히 두드려 부수고 안팎의 세력을 엄히 단절시키는 이것이 근본입니다. 만일 일마다 뺨질을 하여 동쪽의 것을 가져다 서쪽을 막고 서쪽의 것을 가져다 동쪽을 보강한다면, 하나는 구제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둘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조처가 잘못되어 폐해가 경시(京市)로 옮겨간다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닌 것이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관(中官)이 주관하도록 명하셨는데, 이렇게 한 성상의 의도는 가능한 한 간

太官，蓋倣中華舊制，寬湖民一分之力，爲暫解倒懸之道，使上供不廢，民瘼少紓，不可謂無少補也。臣愚猶以此爲亦涉於末節，何也？整頓綱維，肅清中外，日月之照，尤先於眉睫之近。上自掖庭，下達吏胥，掃破陰幽之窟，嚴截表裏之勢，此其本也。若隨事補綴，架漏東西，則救得其一，寧保其二乎？倘有措置或失，害移京市，則此非細故，不可不深長思也。至於中官主掌之命，聖意所存，要以務簡省煩，而但念，謀事必謹其始，杜漸當自其微。問原之對，初非失人，而貽譏後世；三品之拜，不是任事，而終成厲階。殿下歷見前古，必審得失，慮及後日，何輕視此等事也？擇人之說，意亦有在。設使幸而得人，呂強、承業，不可世有，日後之患，得無如貞元宮市之爲耶？臣之愚意，此則決不可行。無已則極擇司饗院官員，專責句管，而嚴飭中官，使絕掖庭阻撓之弊，則雖不及周官酒漿、膳服，皆屬冢宰之制，亦可救一時之弊矣。宜令廟堂，更爲酌處。嗚呼！以殿下明聖，有何獲戾於天，而凡前牒所載亂亡之徵，叢集於一時也？

략하게 하고 번거로운 것을 덜게 하려고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그 시초를 삼가야 하는 것이고, 조짐을 막으려면 그것이 하찮을 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원(問原)의 대답이 처음에는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었으나 결국은 후세에 기룡을 남기게 되었고, 3 품의 제배(除拜)가 일을 맡긴 것은 아니었으나 끝내는 화(禍)의 계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전하께서 전고(前古)의 일들을 두루 살펴보셨으니 반드시 득실을 아실 것인데, 뒷날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등등의 일을 경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가려서 뽑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의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설사 다행히 적격자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여강(呂強)·장승업(張承業) 같은 사람이 대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보면, 뒷날 정원(貞元)연간의 궁시(宮市)와 같은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신의 우견으로는 이것을 결단코 행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만둘 수 없다면 사옹원의 관원을 엄선하여 구관(句管)하도록 전담시킨 뒤 중관(中官)들을 엄히 단속하게 함으로써 액정(掖庭)이 저지하는 폐단을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주관(周官)의 주장(酒漿)과 선복(膳服)이 모두 총재(冢宰)에게 예속되었던 제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또한 한 때의 폐단은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조치하게 해야 합니다.

아, 성명(聖明)하신 전하께서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과거 역사에 기록된 난망(亂亡)의 조짐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입니까. 어찌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애(仁愛)하는 마음에서 이것으로 전하를 크게 경동(警動)시켜 훌륭한 인덕(仁德)을 완성시켜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명(大命)을 맞이하여 계승해 가게 하는 것도 오늘날에 달려 있고 하늘이 시재(時災)를 내리게 하는 것도 오늘날에 달려 있으니, 그 기미야말로 털끝도 용납할 수 없는 정도라 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전하의 마음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豈非惟天、惟祖宗仁愛陰隲，乃以此大警動於殿下，而玉成之也？逆續景命，其在今日，祝降時災，亦在今日，其幾間不容髮，而只在殿下之心耳。惟天設后王、君公，惟以亂民，非爲一人。人主識得此理，着在淵衷，無時間斷，勿參己私，若保如傷，以承天心，則天怒可回，民怨可紓，轉災爲福，豈容他求？然必學古有獲，義理昭明，然後乃能知至意誠。克己循理，天下歸仁，亦不外是。臣前既應旨，略陳提綱挈要之說，不宜復陳腐淺，而目見災害竝臻，使至尊獨憂社稷，區區所懷，敢此竝及，而膏肓垂死，文不達意，其所欲言，豈止此哉？

答曰：“親耕一款，大臣之意勸懇，故欲爲廣詢矣。設令擺脫煩文，親執耒耜，其奈聞見習熟之譏何？湖西進供，付之饗院之弊，殆有甚焉，決不可爲也。如是不便，則令該廳，依當初所定，行之可矣。災變之沓臻至此，無非寡昧之罪，而但念今日之所望，惟在同寅協恭，共扶顛隲。雖以堯舜之聖，未聞獨治天下也。以予之不才無德，將若之何？不知所諭。”

하늘이 후왕(后王)과 군공(君公)을 둔 것은 오직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이런 이치를 알아서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고 언제나 간단(間斷)이 없게 하여 자신의 사심(私心)을 개입시키지 말고 백성을 다친 사람 보살피듯이 하며 하늘의 마음을 받든다면, 하늘의 노여움을 돌이키게 할 수 있고 백성의 원망도 풀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변을 전환시켜 복록으로 만드는 방법을 어찌 다른 데서 구할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옛글을 배워 터득함으로써 의리에 밝아진 연후에야 아는 것이 지극하고 뜻이 성실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天理)를 따라 온 천하가 인(仁)으로 귀의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전에 이미 유지(有旨)에 응하여 대략 강령이 되고 요점이 될 만한 이야기를 진달드렸으니, 다시 진부한 천견(淺見)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해가 한꺼번에 이르러 지존(至尊)께서 홀로 사직(社稷)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서 구구한 소회를 감히 이렇게 아울러 언급한 것입니다. 고질병으로 거의 죽게 된 몸이라서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이야 어찌 여기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친경(親耕)에 대한 한 조항은 대신(大臣)의 뜻이 은근하였기 때문에 널리 자문을 구해 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설령 번거로운 절문(節文)을 없애고 직접 쟁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보고 들은 것이 익숙한 데서 오는 기룡을 어쩔 것인가. 호서(湖西)의 진공(進供)을 사용원에 맡긴다면 더욱 폐단이 극심할 것이니, 결단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당초에 정한 바에 따라 행하도록 하라. 재변이 이처럼 몰려오게 된 것은 모두 내가 과매(寡昧)한 탓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오늘날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다함께 힘을 합하여 기울어져 가는 것을 같이 붙잡아 세우는 그 일뿐이

	<p>다. 요(堯) 순(舜)같은 성인도 혼자서 천하를 다스렸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나처럼 재능도 없고 덕도 없는 몸으로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p> <p>하였다.</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2월 23일(경신) 1번째기사 주강 후 대사성 이일 상 등과 수원의 군병 등에 대해 논의하다</p>	<p>상이 주장에 나아가 《서전》 군척(君奭)편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나서 특진관 대사성 이일상(李一相)이 아뢰기를,</p> <p>“수원(水原)의 군병은 훈국(訓局)에 견주어 더욱 성대하고 그 사람들은 무사(武事)에 익숙한데 쓰여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재(守宰) 또한 훈척(勳戚)의 신하로서 무유(撫綏)하는 방법을 극진히 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에서 인심을 굳게 단결시키는 방법은 특별히 경관(京官)을 보내 호궐(犒饋)하고 시상(施賞)하여 은전(恩典)을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조처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수원은 본디 무향(武鄉)으로 과연 경의 말과 같다. 연전에 능침(陵寢)을 배알할 적에 수원의 군병이 서울에 머물러 지키기 위해 왔었는데, 내가 시재(試才)하여 상을 주려고 했으나 거리끼는 점이 있어서 또한 억지로 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의 말이 이러하니 대신들과 의논하겠다.”</p> <p>하였다. 일상이 아뢰기를,</p> <p>“성묘(成廟)께서 성군관에 향실(香室)을 설치했었는데 임진왜란 때 남김없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앞서 신이 문형(文衡)에 대죄하고 있을 적에 마침 여가(閭家)에서 하나의 판각(板刻)을 보았는데 바로 홍귀달(洪貴達)·성현(成倪)이 향실의 낙성식 때 현판(懸板)에 썼던 서기(序記)였습니다. 지금은 일이 많아 중건(重建)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제사에 참여하는 많은 관원들이 앉아 있을 재소(齋所)가 없으니, 가을이 되면 어떻게든 건립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게 하라고 명하였다.</p>	<p>庚申/上御畫講，講《書傳》《君奭》。講訖，特進官大司成李一相曰：“水原軍兵，比諸訓局，爲尤盛，其人習於武事，樂爲之用。卽今守宰，亦勳戚之臣，撫綏之方，似無不盡，而朝廷之所以固結人心者，莫如別遣京官，犒賞示恩。乞議于大臣而處之。”上曰：“水原本武鄉，果如卿言，而年前拜陵時，水原軍兵爲留都而來，予欲試才施賞，而有所畏忌，亦不得強行。卿言如此，當與大臣議之。”一相曰：“成廟置安香室於泮中，壬辰之亂，燒盡無遺。先臣待罪文衡，適見一板於閭家，乃洪貴達、成倪香室落成時懸板序記也。今值多事，未得重建，參祭多官，坐齋無所，請於秋來，拮据營構。”上令該曹，待秋舉行。一相曰：“圓點儒生供饋之規，以二升米爲一日之供，二升豆爲饋價。養士之道，薄略如此，請以一升豆，換之以米。”上曰：“言于該曹。”承旨洪命夏曰：“今</p>

	<p>일상이 아뢰기를, “원점(圓點)을 치는 유생(儒生)에게 공궤(供饋)하는 법규를 보건대 2승(升)의 쌀을 1일 공궤하는 식량으로 삼고 2승의 콩을 찬가(饌價)로 삼고 있습니다. 선비를 배양하는 방도가 이처럼 야박하니, 1승의 콩을 쌀로 바꾸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이르라.” 하였다. 승지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지금 이 여섯 가지 조항으로 특별히 천목(薦目)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2품의 벼슬에 있는 사람이 꼭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는데, 분경(奔競)하고 청탁(請托)하며 서로들 사심을 따르게 된다면, 단지 소요만 야기시킬 뿐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은 세상의 사람이라도 또한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가령 천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해조로 하여금 대신들과 의논하게 하라. 이른바 천주(薦主)도 자급(資級)에 구애받지 말고 당하관이라도 삼사(三司)를 출입한 사람은 또한 천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p>	<p>此六條別薦，薦目極重，而官爲二品者，未必知人，奔競請囑，互相循私，只致紛擾，難望實效。”上曰：“今世之人，不亦可愧乎？借使被薦，將焉用哉？其令該曹，議于大臣。所謂薦主，勿拘資級，雖在堂下而出入三司之人，亦令舉薦宜矣。”</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3월 2일(무진) 1번째기사 쌀과 면포를 수원부에 수송하여 시재한 군병을 시상케 하다</p>	<p>면포(綿布) 7백 필과 쌀 1백 석을 수원부(水原府)로 수송하여 시재(試才)한 군병들에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p>	<p>戊辰/命以綿布七百匹及米一百石，輸送於水原府，以賞其軍兵之試才者。</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3월 3일(기사)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신하를 인견하고 강도의 모곡 면제·군사 조련 등을 논의하다</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각 고을의 조적곡(糶糶穀)에 대해 특별히 모곡(耗穀)을 면제시키도록 허락했는데, 강도(江都)의 경우만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민(府民)들이 매우 원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강도 유수 이만(李曼)이 군무(軍務)에 대해 면의(面議)하러 올라왔다가 아뢰기를, “본부에서 사도시(司禦寺)로 바치는 것이 쌀과 콩 약간 석(石)인데, 이를 본부에 유치(留置)시키게 한다면 수송하여 운반하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이만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일은 인화(人和)가 제일인데, 백성이 곤궁해도 재화가 떨어져 은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요새지를 설치하는 것인데, 성지(城池)와 갑병(甲兵)이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련시키는 방법도 매우 허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휘(忌諱)해야 할 점이 있을 뿐더러 백성들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갑자기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병이 있어도 교련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급박할 때에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일은 과연 갑자기 거행하기가 어려우니 편의에 따라 선처하라. 일을 폐기시키지 않으면서 번거로운 결과를 야기시키지 않게끔 하는 것을 일을 맡은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였다.</p>	<p>己巳/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曰：“各邑糶糶， 特許除耗， 而江都則獨不許， 府民頗怨云矣。” 江都留守李曼以面議軍務， 上來曰：“本府所供於司禦寺者， 米、豆若干石， 若留置本府， 則可除輸運之弊矣。” 上許之。 曼曰：“今日之事， 人和爲上， 而民窮財弊， 無可施之恩澤。 其次設險， 而城池、甲兵無可恃矣。 教鍊之方， 亦極踈邊。 此不但有所忌諱， 民且不便， 故難可猝舉矣。” 上曰：“有兵不教， 何賴於緩急乎？ 此事果難猝舉， 隨便善處。 不廢事不致煩， 在任事之人耳。”</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3월 4일(경오) 3번째기사</p>	<p>상이 주장에 나아가 《서전》 군석(君奭)편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나서 참찬관 이시해(李時楷)가 아뢰기를, “신이 어제 성균관에 갔더니 대사성 이일상(李一相)이 ‘유생들에 대한 공봉(供奉)이 너무 박하여 전번에 으레 지급하는 것 가운데에서 콩을 쌀로 바꾸어</p>	<p>上御書講， 講《書傳》《君奭》。 講訖， 參贊官李時楷曰：“臣昨往成均館， 大司成李一相言： ‘多士之供奉甚薄， 前者請於例給中， 以豆換米， 而該曹惜</p>

<p>주강 후 참찬관 이시해의 청으로 성균 유생의 공봉 중 콩을 쌀로 바꾸도록 하다</p>	<p>주기를 청했었는데, 해조(該曹)가 경비를 아끼느라고 아직도 거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니, 즉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p>	<p>費，尙不舉行。’云矣。”命卽舉行。</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3월 7일(계유) 2번째기사 강화에 기근이 들자 선혜청의 춘부미 1천 석을 지급케 하다</p>	<p>강화(江華)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선혜청(宣惠廳)의 춘부미(春賦米) 1천 석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p>	<p>江華饑，命給宣惠廳春賦米一千石。</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3월 28일(갑오) 2번째기사 사옹원에서 웅어를 봉진하자 태묘 천신 후 봉진토록 하교하다</p>	<p>사옹원이 웅어[葦魚]를 봉진(封進)하니, 상이 하교하였다. “태묘(太廟)에 올리는 월령(月令)의 천신(薦新)이 내일 있는데, 해원(該院)이 먼저 제전(諸殿)에 봉진하였으니 일이 매우 미안스럽게 되었다. 천신이 있는 뒤에 봉진하기 시작하도록 하라.”</p>	<p>司饗院進葦魚，上下教曰：“太廟月令之薦，在於明日，而該院之先爲封進於諸殿，事甚未安。待薦新後，始令封進。”</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4월 13일(무신) 1번째기사 평안도에 큰 흉년이 들자 관향곡의 모조 1만 석과 피곡 수천 석을 지급하다</p>	<p>평안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감사 허적(許積)이 관향곡(管餉穀)의 모조(耗租) 1만 석과 피곡(皮穀) 수천 석을 내어 북경(北京)을 왕래하는 고마(雇馬)의 대가에 충당하게 할 것을 청하니, 허락하고, 이어 더 지급하여 기민(飢民)을 진구하게 하였다.</p>	<p>戊申/平安道大饑。監司許積請出管餉耗租一萬石、皮穀數千石，以充北京往來雇馬之價，許之，仍命加給，以賑飢民。</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4월 27일(임술) 2번째기사 사간원에서 황해 감가 이후산 등을 영임하지 말기를 청했으나 불허하다</p>	<p>간원이 아뢰기를, “수령의 출척(黜陟)은 전적으로 방백(方伯)에게 책임지워 그 체통을 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신(道臣)이 파출시킨 자를 조정에서 영임(仍任)시키게 한다면, 장차 어떻게 수령들을 통제할 수 있겠으며 일도(一道)를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수령이 된 자도 이미 파출당한 뒤에 도로 그 자리에 부임하게 되면 윗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을 접하는 사이에 사세상 반드시 곤란할 것입니다. 황해 감사 이후산(李後山)이, 평산 부사(平山府使) 김종필(金宗泌), 수안 군수(遂安郡守) 조인형(趙仁亨)이 자신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파출시켰는데, 어제 대신(大臣)의 청에 따라 영임시키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송(迎送)의 폐단을 우려한 데서 나온 조치이긴 합니다만, 두 고을의 수령이 이미 행장을 거두어 돌아왔고 보면 영송의 폐단이 신구(新舊)가 다를 것이 없게 되었고, 사체상으로 손상되는 점이 크니, 영임시키라는 명을 환수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교관(敎官)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각기 동몽(童蒙)들을 데리고 술 자리를 벌이는 모임을 갖고 이어 제술하게 하여 문예를 비교하였는데, 점점 주흥과 함께 말이 거칠어져서 술로 인한 실수가 많았고 어떤 교관은 동몽에게 구타당하여 상처를 입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잘 가르치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해조로 하여금 적발하여 파직시키게 하고, 기타의 교관들도 경중을 나누어 벌을 시행함으로써 명교(名敎)를 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諫院啓曰：“守令黜陟，專責於方伯，以重其體統可也。道臣之所黜者，自朝廷仍任，則將何以彈壓守令，號令一道？爲守令者，亦已被黜之後，還莅其任，則待上接下之間，勢必難便。黃海監司李後山以平山府使金宗泌、遂安郡守趙仁亨，不遵其令，罷黜，而昨因大臣之請，有仍任之命。雖出於慮其迎送，而兩邑守令既已捲還，則迎送之弊，新舊無異，而有損事體則大矣。請還收仍任之命。”上不從。又啓曰：“頃聞，諸敎官各率童蒙，持酒聚會，仍令製述，以較其藝，輾轉作挈，多有酒失，有一敎官，爲童蒙所打傷云。常時不能敎誨之失，在所難免，請令該曹，摘發罷職，其他敎官，亦分輕重施罰，以重名敎。”上從之。</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5월 3일(무진)</p>	<p>선혜청(宣惠廳)이 아뢰기를, “호서(湖西)의 크고 작은 민역(民役)은 모두 대동(大同)의 십두미(十斗米) 속에 들어 있으므로 추호도 민결(民結)에 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p>	<p>宣惠廳啓曰：“湖西大小民役，皆入於大同十斗米之中，秋毫不得加賦於民結，乃是立法本意，而洪州則今年春等</p>

<p>2번째기사 선혜청의 건의로 춘등미를 남징한 홍주 목사 유경집·감사 조형등을 추고케 하다</p>	<p>을 만든 본의인데, 홍주(洪州)의 경우에는 금년의 춘등미(春等米)를 법대로 징수한 뒤에 또 1두 3승(升)을 추가시켰습니다. 이것이 전임관이 대여한 창곡(倉穀)이어서 충당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본청에 알리지도 않은 채 멋대로 독촉하여 징수함으로써 이런 춘궁기를 당하여 또 백성들의 원망을 불러들였으니, 목사 유경집(柳景緝)은 먼저 파직시키고 난 후에 추고하소서. 그리고 정신 옹주(貞愼翁主)를 예장(禮葬)할 때의 역군(役軍)들의 역가(役價)는 의당 대동(大同)의 여미(餘米)로 제공해야 하는데, 감사가 또한 품의(稟議)하지도 않은 채 곧장 민호(民戶)에 따라 분정(分定)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법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감사 조형(趙珩)을 추고하소서.” 하니, 모두 잡아다가 추문하라고 명하였다. 그뒤 상이, 유경집이 추이(推移)하여 숫자를 채운 것은 수령들의 통상적인 작태라는 이유로 해부(該府)로 하여금 그의 죄를 의논하게 하고, 조형은 법 밖의 역가를 염출하여 법을 동요시켰다는 이유로 신문(訊問)하려 하니, 대신이 극력 불가하다고 진달하였는데, 모두 도년 정배(定配)시켰다.</p>	<p>米准徵之後，又加一斗三升。雖曰前官之所貸倉穀，不可不充，而不稟本廳，擅自督徵，當此窮春，又招民怨。請牧使柳景緝先罷後推。且貞愼翁主禮葬時役軍之價，所當以大同餘米題給，而監司亦不稟議，直以民戶分定，以致民不信法，請監司趙珩推考。”命皆拿問。其後，上以柳景緝之推移充數，守令之常態，令該府議其罪，趙珩法外出役，以撓法欲訊之，大臣力陳其不可，竝令徒年定配。</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5월 25일(경인) 2번째기사 각전의 봉진과 태묘의 천신 법식을 개정하다</p>	<p>각전(各殿)에 봉진(封進)하는 것과 태묘(太廟)에 천신(薦新)하는 법식을 개정하였다. 상이, 외방에서 물품을 봉진하는 것이 혹 종묘에 천신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예조로 하여금 월령(月令)을 개정하게 하여 천신을 먼저 하고 봉진을 뒤에 하도록 드러내어 법식으로 삼게 하였다.</p>	<p>改定封進各殿及薦新太廟之式。上以外方封進之物，或先於宗廟之薦，令禮曹改定月令，使先薦而後進，著以爲式。</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6월 26일(경신) 1번째기사 압록강을 건너가 삼을</p>	<p>상이 하교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압록강가의 백성들이 춥고 배고픔을 참지 못한 나머지 강을 건너가 삼(蔘)을 캐어 국금(國禁)을 범하였으며 끝내는 죽기에 이르렀으니, 이미 법을 시행했어도 진실로 측은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천리 변방 밖의 백성이니 반드시 시체를 거두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옛날의 왕자(王者)는 시</p>	<p>庚申/上下教曰：“予惟江邊之民飢寒，越江採蔘，冒犯國禁，終於死，雖已行法，良用愍惻。千里塞外之氓，必無斂屍之人。古之王者，有埋齒掩骼之政，其令攸司，特施恤典。”</p>

<p>캐다 처벌된 백성들을 홀전케 하교하다</p>	<p>체와 해골을 묻어주는 정사를 했었으니, 유사로 하여금 특별히 홀전을 시행하게 하라.”</p>	
<p>효종 10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6월 29일(계해) 1번째기사 병조 판서 박서가 죽 다</p>	<p>병조 판서 박서가 죽었다. 박서는 연일 과음(過飲)하다가 갑자기 죽었다. 상이 하교하기를, “박서는 나라를 위하여 직무를 극진히 수행한 결과 성취된 일이 있어 내가 일찍이 가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늙지도 않은 나이에 죽었으니, 내가 매우 애통하게 여긴다.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관재(棺材)와 상수(喪需)를 하사하게 하라.” 하였다. 박서는 본병(本兵)에 구임(久任)하면서, 몸가짐이 상당히 검소하였고 군국(軍國)의 계획도 상의 뜻에 합치되도록 힘썼다. 그리하여 상이 총애하고 신임했기 때문에 이 하교가 있게 된 것이다.</p>	<p>癸亥/兵曹判書朴遼卒。 遼累日過飲而暴死。 上下教曰：“朴遼爲國盡職，事有成就，予嘗嘉之。 不幸年未老而死，予甚痛悼。 其令該曹，特賜棺材及喪需。” 遼久任本兵，持身頗簡，而軍國猷爲，務合上意，上寵任之，故有是教。</p>
<p>효종 11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7월 2일(을축) 1번째기사 구인후·유철·남선·홍명 하·정두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p>	<p>구인후(具仁壘)를 병조 판서로, 유철(兪徹)을 경기 감사로, 남선(南銑)을 예조 판서로, 홍명하(洪命夏)를 대사간으로, 정두경(鄭斗卿)을 사간으로 삼았다. 정두경은 일찍부터 문명(文名)이 있었으나 술을 즐기고 방일(放逸)하여 세상 일을 버렸으니, 간쟁(諫諍)하는 직책은 그의 책임이 아니었다.</p>	<p>乙丑/以具仁壘爲兵曹判書， 兪徹爲京畿監司， 南銑爲禮曹判書， 洪命夏爲大司諫， 鄭斗卿爲司諫。 斗卿早有文名，嗜酒疎放， 遺棄世事， 諫諍之職， 非其任也。</p>
<p>효종 11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7월 27일(경인) 1번째기사 홍명하가 사신 행차시 역관들이 삼화를 많이 가져가 사역한 것을 아뢰고 인피하다</p>	<p>대사간 홍명하(洪命夏)가 인피하기를, “이번 사신 행차에 삼화(蔘貨)를 지나치게 가져갔다는 말과 내사(內司)를 핑계삼았다는 말이 못사람의 입에 널리 퍼졌으므로, 신이 못 견디게 개탄스러워서 적발하여 죄주게 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조의 공사(公事)를 보니, 사신이 역관(譯官)을 친구하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 삼가 듣건대, 풍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교하셨다 하니, 그 사이의 곡절을 신이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강(渡江)한 초기에 허다한 짐바리에 내패(內牌)를 꽂았는데, 내사가 발급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발급한</p>	<p>庚寅/大司諫洪命夏引避曰：“今番使臣之行， 參貨濫齎之說、內司假託之言， 傳播衆口， 極其狼藉。 故臣不勝慨然， 請令摘發科罪矣。 卽見刑曹公事， 使臣申救譯官， 不遺餘力。 且伏聞以風聞失實爲教， 其間曲折， 臣不得不辨焉。 渡江之初， 許多馱載， 插以內牌， 雖未知內司之所給與否， 而果無是事，</p>

	<p>일이 없었다면 핑계댄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사신 일행 중에 반드시 눈으로 본 자가 많을 것입니다. 어지러이 교역(交易)할 뿐더러 자문 가운데에 삼화를 거론하기까지 하여 뒷날의 끝없는 폐단을 열었습니다. 장삿꾼들이 마음대로 아문(衙門)에 정문(呈文)하여도 사신이 몰랐으니, 나라를 욕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p> <p>역관들은 김귀인(金貴仁)·한유상(韓有相) 외에 거의 모두 금령을 범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름을 끌어낸 자가 있었으나 성상께서 규외(規外)로 미루어 버려두고 묻지 않으셨고, 김귀인이 또 두세 사람을 끌어대었으나 형관이 손을 저어 말리고 빠뜨려 적지 않아서 김귀인만이 엄한 형신을 받아 옥중에서 억울하게 죽게 하였으니, 형옥의 사체가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심이 승복하지 않는 까닭이고 나라의 기강이 날로 무너져 가는 까닭입니다.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하교를 받았으니, 어찌 감히 태연하게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p> <p>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명하가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상이 하교하기를,</p> <p>“홍명하가 인피한 이 사연을 보면, 사신 일행이 도강한 초기에 내사의 화물이라고 핑계하며 내패를 쫓은 것이 50여 바리라 하였는데, 행대(行臺)인 관원이 어찌하여 금지하지도 않고 어찌하여 계문하여 엄중히 다스리지도 않았는가. 또 형관이 김귀인만을 형신하여 사의(私意)를 두고 취사(取捨)한 정상도 매우 부당하니, 모두 추고하라. 내사가 패를 발급한다는 말은 고금에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의심하게 되니, 참으로 통탄스럽다.”</p> <p>하였다. 홍명하의 인피하는 사연 가운데에 이른바 성명을 끌어낸 자라는 것은 역관 장현(張炫)인데, 궁인(宮人)의 아버지이다.</p>	<p>則可知其假託，豈不痛哉？一行使臣，必多目覩者矣。紛紛交易之外，至於咨文中，舉論參貨，啓日後無窮之弊。商賈輩任自呈文於衙門，而使臣不之知，非辱國而何？譯官輩金貴仁、韓有相外，舉皆犯禁，其中有援引姓名者，而聖明諉之規外，置而不問，金貴仁且引數三人，而刑官揮手止之，沒而不書，使貴仁獨被嚴刑，枉死於獄中，刑獄事體，豈有是理？此人心之所以不服，國綱之所以日頹也。今承失實之教，何敢晏然仍冒？請遞臣職。”</p> <p>答曰：“勿辭。”命夏退待物論。上下教曰：“觀此洪命夏避辭，則使臣一行渡江之初，稱以內司貨物，插牌者五十餘馱云，行臺之官何不禁止，何不啓聞重治乎？且刑官之獨刑貴仁，有意取捨之狀，亦極無謂，竝推考。內司給牌之說，古今之所未有，人之致疑至此，良可痛歎也。”</p> <p>命夏避辭中，所謂援引姓名者，即譯官張炫，乃宮人之父也。</p>
<p>효종 11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p>	<p>함경 감사 이기조(李基祚)가 처음에 영의정 김육의 배척을 받아 북백(北伯)으로 나갔으므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언짢아 하면서 술을 지나치게 마시다가</p>	<p>乙未/咸鏡監司李基祚，初被領議政金堉之斥，出爲北伯，意忽忽不樂，過飲</p>

<p>10년) 윤7월 2일(을미) 1번째기사 함경 감사 이기조가 술병이 악화되어 체직을 청하다</p>	<p>병이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이 악화되자 여러 번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니, 윤허하였다.</p>	<p>成疾, 至是病劇, 累陳疏乞遞, 許之。</p>
<p>효종 11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윤7월 3일(병신) 1번째기사 대사간을 체차시키고 이광재의 고신을 뺏고 전리로 방귀시키다</p>	<p>상이 하교하기를, “대사간은 백사(百司)를 바로잡는 관원인데 어찌하여 전혀 문안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니, 정원이 병이 있다고 상소하였으나 감히 봉입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자, 상이 이르기를, “병이 있으면 어찌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는가. 체차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대간을 특지(特旨)로 가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니, 사직하는 상소를 들여온 뒤 가라고 명하고, 또 하교하기를, “내사(內司)를 가탁한 죄가 무겁기는 하나 본디 죽을 죄가 아닌데, 김귀인(金貴仁) 등이 신장(訊杖)을 맞다가 죽게 되어도 승복하지 않기에 내가 비로소 의심하였으나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제 이광재(李光載)가 함답(緘答)한 사연과 대답한 말을 보건대 군색하고 구차하여 한갓 군더더기 말로 스스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함답한 사연 가운데에 이른바 ‘가탁한 일이 없다면 누가 두려워 움츠리겠는가.’ 한 말 등은 다 제 뜻으로 억지를 부려 무함하는 것이다. 대개 이 사람을 보면 매우 불길하다. 가탁이란 두 자를 만들어내어 일행을 일망타진하고 장차 사신까지 범하려 하였으니, 더욱 놀랍다. 이른바 ‘두 장(張)의 세력이 커서 감히 따지지 못하고 또 액정(掖庭)의 세력을 믿는다.’고 한 것이 과연 그러하다면, 기염이 하늘을 덮히고 손대면 났을 것인데, 어찌 서장관만이 듣고 부사가 모를 일이겠는가. 이광재는 마음 쓰는 것이 형편없어 홍명하(洪命夏) 등이 논한 말을 입증해 주려 하였고 또 액정</p>	<p>丙申/上下教曰: “大司諫以糾正百司之官, 何以全不參問安耶?” 政院以有病陳疏, 而不敢捧入對, 上曰: “有病則豈可冒居? 遞差可也。” 政院以特遞臺諫爲未安, 乃命入其辭疏而遞之, 又下教曰: “假託內司之罪雖重, 元非死罪。 貴仁輩至於杖斃而不服, 予始疑焉, 而未究厥由。 今觀李光載緘辭與所對之說, 則窘迫苟且, 徒以贅說蔓語, 只自支吾而已。 況緘辭中所謂, 不有假託之事, 誰肯斂手等語, 皆以己意, 勒成構誣者也。 概觀, 此人甚是不吉。 做出假託二字, 欲網打一行, 將侵及使臣, 尤可駭矣。 所謂二張勢大, 莫敢誰何, 且恃掖庭之勢云者, 果如此, 則氣焰薰天, 灸手可熱者也, 豈書狀之所獨聞, 而副使之所未知也? 光載設心無狀, 欲實命夏輩所論之言, 且以掖庭等語, 上以箝制, 下以沽直, 世間寧有如此之人也? 且羽翼等說, 未知</p>

	<p>등의 말로 위로는 견제하고 아래로는 곧은 채하였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또 우익(羽翼) 따위의 말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뜻이 또한 망측하기 짝이 없다. 사헌부의 조율(照律)대로 고신(告身)을 뺏은 뒤 전리(田里)로 방귀시키라.” 하였다.</p>	<p>指誰而發，其意亦甚叵測也。依司憲府照律，奪告身之後，使之放歸田里。”</p>
<p>효종 11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윤7월 5일(무술) 1번째기사 신하들을 인견하고 정사를 보다</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자전(慈殿)의 증후가 위중하여 못 신하가 근심하느라 어쩔줄 몰랐는데, 이제 다행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막대한 경사이니, 축하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접매 장릉(章陵)에 갔을 때에 연도(沿道)에서 본 바로는 농사가 형편없었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내린 비가 흠족하지 못하는데 오늘은 비가 오려다가 내리지 않으니, 내 마음이 타는 듯하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이징과 이숙이 어린아이이기는 하나 못소인들과 흉역(兇逆)의 일에 간여하였으므로 공론이 그 곳에 그대로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만, 신은 그 처치가 어려운 것을 염려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옥사(獄事)는 당초에 바깥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으나, 일이 자전에 게 미쳤으므로 유사에게 내어 주어 다스리게 하였다. 이제 이 때문에 먼 곳에 옮겨 둔다면 입고 먹는 것과 약물(藥物)이 또한 어떻게 제때에 닿겠는가.” 하였다. 병조 판서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p>	<p>戊戌/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領議政鄭太和曰：“慈殿症候危重，群下憂遑，而今幸平復。此今日莫大之慶，當有稱慶之舉矣。”上曰：“然。”太和曰：“臣頃往章陵，沿途所見，農事無形，極可慮也。”上曰：“昨日之雨未洽，今日欲雨而不雨，予心如焚矣。”太和曰：“澍、瀟雖是稚兒，與群小輩干預兇逆之事。公議以爲，不當仍置其處，而臣則慮其處置之難矣。”上曰：“此獄初不欲使外人知之，而事及慈殿，故出付有司治之。今若以此移置遠地，則衣食藥物，亦何以及時也?”兵曹判書元斗杓曰：“臣概觀，外方軍簿殊甚虛疎。守令皆愒視度日，而久遠之後，則皆思蕩滌，誠可寒心。”上曰：“得卿任之，庶無憂矣。卿須盡心職事，修舉廢墜。”斗杓曰：“宜擇禁軍別將，久任而以責成效。”上曰：“禁軍若成才，則所賴必多。卿</p>

	<p>“신이 외방의 군부(軍簿)를 대충 보았는데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수령들이 다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세월을 보내며 오랜 뒤에는 다들 탕척되리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경을 얻어서 맡겼으니 근심이 없을 것이다. 경은 직무에 마음을 다하여 퇴폐된 것을 닦아야 한다.”</p> <p>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p> <p>“금군 별장(禁軍別將)을 가려서 오래 맡겨 효과를 이루도록 걸머지워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금군이 재능을 성취한다면 힘입는 것이 많을 것이니, 경이 오로지 살펴 검척(檢飭)하고 별장도 옮기지 말라.”</p> <p>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해조가 주의할 때에 번번이 아경(亞卿)의 인재가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니, 성충(聖衷)으로 가려서 몇 사람을 발탁하여 쓰소서.”</p> <p>하니, 상이 그러겠다고 하였다. 그뒤에 정태화가 조수익(趙壽益)·이행진(李行進)·김익희(金益熙)·민응협(閔應協)·이시해(李時楷) 등을 천거하니, 상이 차례로 발탁하여 썼다. 대사헌 김남중(金南重)이 홍명하(洪命夏)를 특지로써 부사(副使)로 차출하라는 명을 도로 거둘 것과 전 서장관(書狀官) 이광재(李光載)를 전리(田里)로 방귀시키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고, 대사간 민응형(閔應亨)도 전에 아된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상이 다 따르지 않았다. 정태화가 윤이지(尹履之)를 특별히 석방한 일을 감사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경이 말하였으므로 특별히 법을 굽혀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형관의 일은 매우 놀랍다. 김귀인(金貴仁)은 죄가 없는데 혹독하게 형신하여 죽었으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나는 오늘날의 가뭄이 반드시 김귀인이 억울하게 죽은 데에서</p>	<p>專察檢飭，別將亦勿遷動。” 太和曰：“該曹注擬之際，每患亞卿之乏人，請簡自聖衷，擢用數人。” 上曰：“然。” 其後太和以趙壽益、李行進、金益熙、閔應協、李時楷等薦之，上皆次第擢用。 大司憲金南重請還收洪命夏特差副使之命，且寢前書狀官李光載放歸田里之命，大司諫閔應亨亦申前啓，上皆不從。 鄭太和以特釋尹履之爲謝，上曰：“卿既有言，故特屈法而從之耳。 然刑官之事，極可駭矣。 金貴仁無罪，而酷刑殺之，是何意耶？ 予恐今日亢旱，未必不由於貴仁之枉死也。 且李光載之心，可謂兇慘矣。 予初見其緘辭，固已知其無狀人矣。 及入對於政院，做出假託二字，以辱國家，又以掖庭羽翼等語，上以箝制君上下以沽取直名，旁誣使臣，陷之不測，世間寧有如此之人乎？ 洪命夏五十馱之說，一之已甚，其可再乎？ 張皇引避，而又請姑推光載，使之發出多少說話，以實其所言，其亦巧矣。” 太和曰：“命夏不知行中事狀，故有五十馱之說耳。” 上曰：“不知，故欲使之一往，而知之耳。 且光載與大君，往返萬里，同苦</p>
--	--	--

	<p>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듯하다. 또 이광재의 마음은 흉참하다 하겠다. 내가 그 함답(緘答)한 글을 처음 보고 벌써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급기야 정원(政院)에 들어와 대답할 때에는 가탁(假託)이란 두 글자를 만들어내어 국가를 옥보이고 또 액정(掖庭)이니 우익(羽翼)이니 하는 따위의 말로 위로는 임금을 견제하고 아래로는 정직하다는 이름을 얻으려고 했는가 하면 사신을 무함하여 어찌될지 모르는 지경에 몰아넣었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홍명하는 한 번도 심한데 어찌 두 번이나 쉰 바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장황하게 인피하고 또 우선 이광재를 추문하기를 청하여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 하여 자기가 말한 것을 실증하려 하였으니, 그 또한 교묘하다.”</p> <p>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명하는 사행 중의 사정을 몰랐으므로 쉰 바리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가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또 이광재는 대군(大君)과 함께 만리 길을 다녀오며 반년 동안 고난을 같이하였는데, 기어이 함해하려고 기회를 타서 몰래 움직여 물여우처럼 모래를 머금었다가 그림자를 쏘아 해치려는 생각을 한 것은 대관절 무슨 마음인가.”</p> <p>하였다.</p>	<p>半年，而必欲陷害，乘便竊發，爲含沙射影之計者，抑何心哉？”</p>
<p>효종 11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윤7월 12일(을사)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다</p>	<p>상이 조강에 나아가 《서전》 입정편(立政篇)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집의 윤집(尹鑣)이 전에 아뢰던 일을 다시 아뢰어 유철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본부(本府)의 개좌(開坐)가 매우 드물다. 백사를 규감하는 관원으로서 이처럼 태만하여도 되는가.”</p> <p>하니, 윤집이 아뢰기를, “근래 대간이 잇따라 미안한 하교를 받아 자주 인피하므로 안좌할 날이 없습니다.”</p>	<p>乙巳/上御朝講，講《書傳》《立政》。講訖，執義尹鑣復申前啓，請俞撤罷職不敘，上不從。上曰：“本府開坐甚罕。以糾檢百司之官，如是怠慢可乎？”鑣曰：“近來臺諫連承未安之教，頻頻引避，無安坐之日矣。”上曰：“一月三十日，皆日日避嫌乎？”鑣曰：“殿下責勵至此，臣等亦有罪矣。</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 달이면 서른 날을 다 날마다 피험하는가.” 하니, 윤집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토록 책려하시게 된 것은 신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마는, 전하께서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도 매우 심합니다. 근일의 일로 말하면, 직언을 구하는 하교는 여러 번 내리셨으나 실지로 채용하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광재(李光載)의 경우 그가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흉교(兇狡)하다는 등의 하교는 실로 뜻밖입니다.” 하였다. 사간 권우(權堧)가 아뢰기를, “근일 조정에 어찌 직언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따금 한둘 말하는 자가 있으면 문득 꺾이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홍명하(洪命夏)는 말을 다한다고 조금 일컬어졌는데 여러 번 엄한 하교를 내리고 또 원행(遠行)으로 벌주신 반면 장현(張炫)은 도리어 곧 사유(赦宥)를 받았으니, 이것은 매우 미안한 것입니다.” 하고, 윤집이 아뢰기를, “바깥 사람들이 다 대사간은 장현의 일 때문에 죄받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매우 노하여 이르기를, “집의도 죄 없는 유철을 파직하기를 청하고 괴망한 이광재를 여러 번 친구하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였다. 윤집이 인피하며 체직시켜 주기를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는데, 권우가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따랐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의 말이 이러하니, 역관의 가자를 도로 거두게 하라.” 하였다. 영경연(領經筵)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대간도 어찌 대군(大君)을 침해하는 것이겠습니까. 역관들이 인삼을 가져갔다는 말이 중외에 크게 돌았으므로 대신이 논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 가자</p>	<p>然殿下之不用臺諫之言，亦已甚矣。以近日之事言之，求言之教屢下，而絕無採用之實。至於李光載雖無狀，兇狡等教，實是情外矣。” 司諫權堧曰：“近日朝廷，亦安有直言也？然間有一二言者，輒被摧折，甚可憂也。洪命夏稍有盡言之稱，累下嚴教，又以遠行罰之，張炫反卽蒙宥，此是未安之甚者也。” 鏞曰：“外人皆言，大司諫以言張炫事得罪云矣。” 上怒甚曰：“執義亦請罷無罪之俞樾，屢伸救怪妄之李光載，此則何意乎？” 鏞引避請遞，答曰：“勿辭。” 仍退待物論。 權堧請出仕，從之。 上謂承旨曰：“人言如此，譯官加資，其令還收。” 領經筵李時白曰：“臺諫亦豈侵害大君者也？譯輩齋蓼之說，大行於中外，故臺臣論之矣。到今雖命還收其加資，而殿下辭氣之不平如此，誠極未安矣。雖父子兄弟，所見各自不同，臣下所見豈盡合於聖明之意乎？” 上曰：“使清使之行，一不出來，實是民生之大幸，故使之加資矣。物情未快，故卽令還收矣。” 上又曰：“洪命夏亦勿差使臣。” 上聲色俱厲曰：“世道可駭。離間骨肉，人莫不惡其</p>
--	---	---

	<p>를 도로 거두라고 명하셨지만 전하의 사기(辭氣)가 이처럼 화평하지 않으시니, 참으로 매우 미안합니다. 부자 형제라도 소견이 각각 절로 같지 않은데, 신하의 소견이 어찌 죄다 성명의 뜻에 맞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청사(淸使)의 행차가 한 번도 나오지 않게 한 것은 실로 백성의 다행이므로 가자하게 하였으나, 물정이 좋게 여기지 않으므로 곧 도로 거두게 한 것이다.”</p> <p>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p> <p>“홍명하도 사신으로 차출하지 말라.”</p> <p>하였다. 상이 목소리와 얼굴빛을 모두 돋우어 이르기를,</p> <p>“세도(世道)가 놀랍다. 골육을 이간한다는 이름을 사람이면 누구나 듣기 싫어 하는데, 이제는 알 만큼 배운 사람도 꺼림없이 하니, 매우 괴이하다.”</p> <p>하니, 지경연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p> <p>“군신은 부자와 같습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까.”</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망룡의(蟒龍衣)에 관한 말이 어찌 이간하는 꼬투리가 아니겠는가.”</p> <p>하였다. 이시백이 매우 힘써 변론하였으나, 상이 들으려하지 않았다. 시독관이단상(李端相)이 아뢰기를,</p> <p>“홍명하를 보내지 말라는 하교는 더욱 미안합니다. 홍명하도 어찌 이 일행이 될 수 없겠습니까.”</p> <p>하고, 이시백이 아뢰기를,</p> <p>“홍명하를 차출하여 보내더라도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께서 이 하교를 도로 거두시기 바랍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전후에 고쳐 차출한 것이 전도된 듯하기는 하나, 오늘날의 일에 두려운 것이</p>	<p>名。 今則有識之人， 亦不憚而爲之， 甚可異也。” 知經筵沈之源曰：“君臣猶父子也。 殿下此言， 何爲而遽發也？” 上曰：“蟒龍衣之說， 豈非離間之端乎？” 時白辨論甚力， 上不之省。 侍讀官李端相曰：“洪命夏勿遣之教， 尤極未安。 命夏亦豈不可作此一行乎？” 時白曰：“洪命夏之差遣， 有何不可乎？ 願上還收此教。” 上曰：“前後差改， 雖似顛倒， 然今日之事， 有可畏者， 不得不爾。” 時白曰：“可畏之教， 亦甚惶恐。” 上曰：“不然。 人君豈不畏人言乎？ 今日之事， 不得不如是。 卿等亦不免外間之是非矣。” 時白曰：“臣忝在大臣， 以如此微細之事， 苦口陳達， 而亦未見省， 臣何敢在此職乎？” 上曰：“卿言若是懇懇， 不可不勉從， 而予心則未安矣。” 權堦請於外方科試， 勿許改題， 且監、兵使軍官， 勿令許赴其道之科， 上從之。 端相曰：“咨文有國王蔘三十包之說， 而回咨中不爲舉論， 有若眞有是事者然， 請令改其措語。” 上曰：“此事殊極可駭。 此言是矣， 回咨措語改之。”</p>
--	--	--

	<p>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두렵다는 하고 또한 황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임금이 어찌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오늘날의 일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들도 바깥의 시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신이 대신으로 있으면서 이처럼 작은 일로 애써 아뢰어도 살피 주시지 않으니, 신이 어찌 감히 이 직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이처럼 간절하니 애써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내 마음은 미안하다.” 하였다. 권우가 외방의 과시(科試)에서 시제(試題)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또 감사·병사의 군관은 그 도의 과시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단상이 아뢰기를, “자문(咨文)에는 국왕(國王) 삼(蔘) 30포(包)라는 말이 있는데 회자(回咨) 가운데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마치 참으로 이 일이 있는 듯해졌으니, 그 조어를 고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매우 놀랍다. 그 말이 옳다. 회자의 조어를 고치라.” 하였다.</p>	
<p>효종 11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윤7월 12일(을사) 3번째기사</p>	<p>예조가 주성청(鑄成廳)을 시켜 산천에 제사지낼 때의 제기(祭器)와 친제 때의 제기를 새로 만들게 하기를 청하니, 따랐다.</p>	<p>禮曹請令鑄成廳，新造山川祭器及親祭時祭器，從之。</p>

<p>예조가 주성청을 시켜 제사지낼 제기를 새로 만들게 하기를 청하다</p>		
<p>효종 11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8월 6일(무진) 2번째기사 제주 목사 이원진이 난과당한 서양인에 대 하여 치계하다</p>	<p>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원진(李元鎭)이 치계(馳啓)하기를, “배 한 척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기에 대정 현감(大靜縣監) 권극중(權克中)과 판관(判官) 노정(盧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뒤집혀 살아 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배 안에는 약재(藥材)·녹비(鹿皮) 따위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목향(木香) 94포(包), 용뇌(龍腦) 4항(缸), 녹비 2만 7천이었습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레나룻은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그 옷은 길어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옷자락이 넷으로 갈라졌으며 옷깃 옆과 소매 밑에 다 이어 묶는 끈이 있었으며 바지는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습니다. 왜어(倭語)를 아는 자를 시켜 물기를 ‘너희는 서양의 크리스찬[吉利是段]인가?’ 하니, 다들 ‘야야(耶耶)’ 하였고, 우리 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고려(高麗)라 하고, 본도(本島)를 가리켜 물으니 오질도(吾叱島)라 하고, 중원(中原)을 가리켜 물으니 흑대명(大明)이라고도 하고 대방(大邦)이라고도 하였으며, 서북(西北)을 가리켜 물으니 달단(韃靼)이라 하고, 정동(正東)을 가리켜 물으니 일본(日本)이라고도 하고 낭가삭기(郎可朔其)라고도 하였는데, 이어서 가려는 곳을 물으니 낭가삭기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전에 온 남만인(南蠻人) 박연(朴燕)이라는 자가 보고 ‘과연 만인(蠻人)이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금려(禁旅)에 편입하였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화포(火炮)를 잘 다루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는 코로 통소를 부는 자도 있었고 발을 흔들며 춤추는 자도 있었다.</p>	<p>濟州牧使李元鎭馳啓曰：“有舡一隻，敗於州南，閣於海岸，使大靜縣監權克中、判官盧錠，領兵往視之，則不知何國人，而船覆海中，生存者三十八人，語音不通，文字亦異。船中多載藥材、鹿皮等物，木香九十四包、龍腦四缸、鹿皮二萬七千。碧眼高鼻，黃髮短鬚，或有剪髯留髭者。其衣則長及胫，而四襟衿旁袖底，俱有連紐，下服則襞積而似裳。使解倭語者問之曰：‘爾是西洋吉利是段者乎？’衆皆曰：‘耶耶。’指我國而問之，則云高麗，指本島而問之，則云吾叱島，指中原而問之，則或稱大明，或稱大邦，指西北而問之，則云韃靼，指正東而問之，則云日本，或云郎可朔其，仍問其所欲往之地，則云郎可朔其云。”於是，朝廷命上送于京師。前來南蠻人朴燕者見之曰：“果是蠻人。”遂編之禁旅，蓋其人善火炮。或有以鼻吹簫者，或有搖足以舞者。</p>

<p>효종 11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8월 13일(을해) 1번째기사 예조가 방물과 삭선을 회복하길 청하다</p>	<p>예조가 방물(方物)과 삭선(朔膳)을 회복하기를 청하니, 삭선은 계속하여 봉진(封進)하지 말라고 명하였다.</p>	<p>乙亥/禮曹請復設方物及朔膳， 命朔膳則仍勿封進。</p>
<p>효종 11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0월 4일(병인) 2번째기사 풍정하는날 삼전과 양 궁에서 쓸 그릇의 수 를 줄이게 하다</p>	<p>상이 하교하였다. “풍정하는 날에 삼전(三殿)과 양궁(兩宮)에서 쓸 그릇이 지나치게 많으니, 유사를 시켜 적당히 줄이게 하라.”</p>	<p>上下教曰：“豐呈之日， 三殿、兩宮所用器皿過多， 令有司量減。”</p>
<p>효종 11권, 4년(1653) 계사 / 청 순치(順治) 10년) 12월 20일(임오) 1번째기사 은대·옥당·춘방 등의 낭관에게 춘회금원을 시제로 십운 배율을 짓게 하다</p>	<p>상이 은대(銀臺)·옥당·춘방(春坊)과 한림·주서와 병조의 낭관에게 명하여 춘회금원(春回禁苑)을 시제로 하여 십운 배율(十韻排律)을 지어 바치게 하고, 이어서 주찬(酒饌)을 내렸다. 이튿날 대제학 채유후(蔡裕後)를 명초(命招)하여 어제의 시제와 운(韻)으로 스스로 지어 바치게 하여 어필로 등제(等第)하여 내리고 이어서 여러 신하가 지은 시를 고교(考校)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대제학 채유후와 도승지 이시해(李時楷)에게 각각 초피모(貂皮帽)와 귀가리개를 부수찬 이만웅(李萬雄)에게 초피립(貂皮笠)과 귀가리개를 우승지 안헌징(安獻徵), 우부승지 남훤, 설서 유창, 검열 안후열(安後說)에게 각각 삭지(朔紙) 2권과 후추 5승을 내렸다.</p>	<p>壬午/上命銀臺、玉堂、春坊、翰林、注書、騎省郎官， 製進春回禁苑詩， 十韻排律， 仍賜酒饌。 翌日命招大提學蔡裕後， 以昨日題韻， 使自製進， 以御筆等第以下， 仍命考入諸臣所製詩。 賜大提學蔡裕後、都承旨李時楷各貂皮帽、耳掩， 副修撰李萬雄貂皮笠、耳掩， 右承旨安獻徵、右副承旨南翽、說書俞瑒、檢閱安後說， 各朔紙二卷、胡椒五升。</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1월 12일(계묘)</p>	<p>좌의정 김육이 상차하기를, “병사(兵士)는 정예에 주력하고 많은 것에 주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의 재력이 이미 바닥났으니 병사를 기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성의 병</p>	<p>左議政金堉上筭以爲： 兵務精不務多。 國家財力已匱， 養兵甚難。 輦下之兵， 宜以五千定額， 老</p>

<p>3번째기사 정예 병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좌의정 김육의 상차문</p>	<p>사를 마땅히 5천 명으로 정원을 정하고, 늙고 병든 사람은 면제시키고 빠진 사람은 보충하여 그 수효를 잃지 않게 해야 할 뿐입니다. 또 경대부 및 사서인의 자제로서 직역(職役)이 없고 나이 20세 이상인 자에게는 해마다 베 1 필씩을 납부하여 국가의 재용을 돕도록 하고, 떠돌아다니는 백성으로서 산골짜기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둔진(屯陣)을 설치하고 전답을 개간하여 영원히 농사짓도록 해 그에 대한 조세를 거둬들여 군사들을 먹여 살리는 비용에 보태소서.” 하니, 그 차자를 비국으로 내려보냈으나 의론이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p>	<p>病者除之，有闕者補之，使不失其數而已。且令卿大夫及士庶子弟無職役者，年二十以上，歲納布一匹，以助國用，流民之散處山谷者，各設屯墾田，使爲永業，仍收其稅，以補餉軍之用。下其筭于備局，議竟不行。</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1월 15일(병오) 2번째기사 홍천도 대흥현 백성이 딸 세 쌍둥이를 출산하니 쌀을 하사하게 하다</p>	<p>홍청도(洪淸道) 대흥현(大興縣) 백성이 한 번에 세 딸을 출산하니, 본도로 하여금 준례에 의거하여 쌀을 하사하도록 하였다.</p>	<p>洪淸道大興縣民，一產三女，令本道依例賜米。</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1월 15일(병오) 4번째기사 치국에 대한 영돈녕부사 이경석의 상차문</p>	<p>전하께서는 음악·여색·사냥 등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그 안일(安逸)과 기욕(嗜欲)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기(己)’라는 것은 사욕이니,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도 사욕이요, 간함을 거절하는 것도 사욕이요, 말을 경솔히 하는 것도 사욕이요, 갑자기 성내는 것도 사욕이요, 남이 나만 못하다고 여기는 것도 사욕이요, 동정 언행이 도를 따르지 않는 것도 모두 이 사욕입니다. 진실로 능히 자기의 사욕을 이겨 내고 용감하게 성찰하고 힘껏 실행하여 구차하고 황급할 때라도 잘 생각하여 안팎이 서로 수양되면, 정치가 나오는 근원이 맑고 허명(虛明)하여 중심에 보존된 것이 치우친 바가 없고 외부에 발로된 것이 언제나 모두 절도에 맞을 터인데, 무슨 말이</p>	<p>殿下無聲色、弋獵之好，其於逸欲，無大可憂者。然而所謂己者，私也；自用，己也；拒諫，己也；易言，己也；暴怒，己也；謂人莫己若，己也，動靜、云爲之不由乎道者，皆是己也。苟能克去己私，猛省力行，造次克念，表裏交養，則出治之源，湛然虛明，存乎中者，無所偏倚；發乎外者，動皆中節，何言之逆耳，何過之憚改，何事之</p>

	<p>귀에 거슬리겠으며, 무슨 과오인들 고치기를 꺼리겠으며, 무슨 일을 잘못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덮어주고 싣고 있음에 만물이 수용되는 것처럼, 기상이 화평한데 어찌 혼연히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p> <p>또 엿드려 생각건대 풍정(豊呈)을 거행하는 것은 본래 국가가 재물이 풍족하여 만사가 형통할 때에 거행하는 융성한 예이니, 오늘날 이 일은 그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께서 자전(慈殿)을 봉양함에 있어 약을 쓰지 않고도 병환이 나은 경사를 거듭 겪으셨으니, 인정과 도리로써 헤아려 봄에 한번 장수를 축원해 드리는 예를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의장(儀章)과 도수(度數)의 사이에 과연 능히 절약 감축하여 거행한다면 누가 불가하다고 말할겠습니까. 신은 가만히 생각건대 연회를 베풀고 풍악을 연주하면서 만수(萬壽)의 술잔을 올리는 것은 예이고, 인(仁)을 미루어 나가고 덕을 베풀어 오래도록 즐거워하는 기쁨을 다하는 것은 정성입니다. 만일 그 기쁨을 다하고자 할진대 어찌 만백성들의 환심을 얻는 것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만백성들의 환심을 얻어 국가의 복록을 공고히 하는 것은 제왕의 효도입니다. 이른바 만백성들의 환심을 얻는다는 것은 꼭 사람사람마다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 거지가 적의함을 얻으면 인심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효도에 대한 생각이 결핍되지 않기 때문에 길이 같은 무리들에게 과급시킨다.’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효도를 다하는 마음을 미루어 나가고 동료에게 과급시키는 인(仁)을 베풀어, 외로운 신하와 귀양간 사람으로 하여금 양기(陽氣)의 화창함에 따라 귀가하여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만나 보아 이별하는 한이 없게 해준다면, 또한 훌륭한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p> <p>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인원이 그 수효가 많지 않은데도, 어려움이 많은 때를 당하여 미처 연회를 베풀어 주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풍정을 거행한 뒤에 기로소의 여러 신하들이 담로(湛露)797)의 은택을 받는다면, 이는</p>	<p>做錯? 如天地之覆載, 而萬物容焉, 氣象和平, 孰不欣然而自得?</p> <p>且伏惟念, 豊呈之舉, 本爲豊亨時盛禮, 今日此舉, 似非其時, 而上奉慈殿, 重經勿藥之慶, 揆以情理, 一番上壽之禮, 烏可已乎? 儀章、度數之間, 果能節省而行之, 則夫誰曰不可? 臣竊以爲, 張筵奏樂, 獻萬壽之觴者, 禮也; 推仁布德, 盡長樂之歡者, 誠也。如欲盡其歡, 孰外於得萬姓之歡心乎? 得萬姓之歡心, 以鞏固國祚者, 帝王之孝也。所謂得萬姓之歡心者, 非必人人而悅之, 舉措得宜, 則人心悅服。《詩》不云乎? 孝思不匱, 永錫爾類。今若推盡孝之心, 施錫類之仁, 使孤臣遷客, 逐陽和而旋歸, 母子相見, 無別離之恨, 則不亦爲盛德事乎? 且耆老所入參之員, 其數無多, 而值時多艱, 未遑賜宴者久矣。豊呈之後, 耆老諸臣得霑湛露之澤, 則斯實爲曠世之盛典矣。耆老之臣, 曾爲執法之官, 邂逅過差, 坐此被譴, 縮伏城外, 歲已換矣。年迫八十, 罰已行矣, 此亦不可以恕之乎? 歲時存問高年, 舊例可考,</p>
--	--	---

	<p>진실로 세상에 드문 용성한 은전이 될 것입니다. 기로소의 신하로서 일찍이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되었던 자가 우연히 잘못을 저질러서 이 때문에 견책을 당하여 성밖에서 움츠리고 엎드려 있는 지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80에 가까운데다가 벌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이것도 또한 용서하여 줄 수 없겠습니까. 세시(歲時)에 고령자에 대하여 위문하는 것도 예전의 준례를 상고할 수 있으니,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서울과 지방에 신칙하여 80세 이상에게는 두루 선물을 보내주면서 위문하도록 하고, 봄철이 화창하여 구휼을 의론할 때이므로, 홀아비·과부·고아·독신자로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먼저 적곡(穀糶)을 지급해 주며, 나라를 위하여 죽은 사람의 집안에 대하여 별도로 구휼해 주는 바가 있으면, 늙은이를 존경하는 은혜가 널리 미치고 자식처럼 사랑하는 인(仁)이 모두 덮일 것입니다.</p>	<p>爰命有司，申飭中外，八十以上，徧加存饋，春和議賑之時，鰥寡孤獨之無告者，先給糶穀，死事之家，別有所贍，則老老之恩廣及，而子惠之仁，並被矣。</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1월 17일(무신) 2번째기사 우의정 구인후가 연경에 가게되어 휴가를 얻다</p>	<p>우의정 구인후(具仁厚)가 장차 연경(燕京)에 가게 된 까닭으로 휴가를 얻어 귀향하여 부모의 묘소를 성묘할 것을 청하니, 말을 내주도록 명하고 또 본도로 하여금 제수(祭需)도 하사하도록 하였다.</p>	<p>右議政具仁厚以將赴燕京，乞暇歸省父母墳，命給馬，且令本道賜祭需。</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2월 10일(신미) 3번째기사 시폐에 대한 정언 이 상진의 상소문</p>	<p>가만히 듣건대, 병조 판서 원두표가 주찬(酒饌)을 준비하고 기악(妓樂)을 챙기어 수상(首相)의 집으로 가서 한바탕 연음(宴飲)을 벌였다고 합니다. 품계가 높은 중신이 어떻게 감히 주찬과 기악을 준비하여 대신에게 아침할 수 있으며, 대신도 또한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종조(世宗朝)에 호조 판서 김종서(金宗瑞)가 물을 만 밥을 상신(相臣) 황희(黃喜)에게 올리자, 황희가 그것을 물리치고 종서를 불러 뜰 아래에 세워 놓고서 아침한다고 꾸짖었으니, 지금까지 전해 오면서 이야기하며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데, 두 신하들</p>	<p>竊聞兵曹判書元斗杓備酒饌，張妓樂，就首相家，作一場宴飲。崇品重臣，何敢以酒饌、妓樂，媚悅大臣，大臣亦何可受之？粵在世宗朝，戶曹判書金宗瑞進水飯于相臣黃喜，喜却之，招宗瑞立庭下，責以媚悅，至今傳說而美之，兩臣猶不聞之耶？兩臣此事，可見朝綱</p>

	<p>은 아직까지 그것을 듣지 못하였단 말입니까. 두 신하의 이 일에서 조정 기강이 무너졌는데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대단히 나약한 풍습이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아, 소관이 대관의 잘못을 논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 신하들이 전하의 과오를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더 좋아하는 법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직간(直諫)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관원끼리 서로 규간하는 도리도 따라서 무너졌습니다. 상께서 과오를 듣기 싫어하시므로, 아랫사람들이 구차히 용납되는 것만을 구하여 크고 작은 온갖 일들에 안일만을 일삼고 있으니, 비록 당장에 그럭저럭 지내고자 하나 마침내 국가의 일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이처럼 그럭저럭 지낸다면 당장 망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위태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되는 것이 다만 전하에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고질화된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면 먼저 언로를 열어 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언로를 열어 주고자 하면 일을 말하다가 죄를 얻은 여러 신하들을 수용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위로하고 풀어 주는 방도에 있어서는 마땅히 먼저 새로 차출한 시비(侍婢)들을 방송해 주어야 하고, 기타 크고 작은 백성들의 폐해에 있어서는 스스로 차례대로 조치함에 있을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잠시 살펴 보소서.</p>	<p>之類，而人不爲怪，尙無言者，大儒之習，尤可歎矣。噫！小官之不能論大官之失，政如諸臣之不能言殿下之過矣。上有好者，下必有甚焉。殿下既不喜直諫，故官師相規之道，又從而壞矣。上惡聞過，下要苟容，大小百爲，悠泛是事，雖欲姑息於目前，終置國事於何地？臣愚以爲，若此因循，亡可立待。轉危爲安，只在殿下。欲祛痼弊，莫如先開言路；欲開言路，莫如收用言事獲罪之諸臣也。至於慰解民怨之道，則宜先放其新抄侍婢，其他大小民瘼，自在次第措置中耳。伏願少垂察焉。</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2월 13일(갑술) 2번째기사 병조 판서 원두표와 이조 판서 이후원이 이상진의 상소로 인피</p>	<p>병조 판서 원두표(元斗杓), 이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이상진의 상소 중에 자신들이 대신과 더불어 연회를 벌여 술을 마신 것을 규탄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상소를 올려 면직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p>	<p>兵曹判書元斗杓、吏曹判書李厚源以李尙眞疏中，斥其與大臣燕飲，竝陳疏乞免，不許。</p>

<p>하다</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2월 13일(갑술) 3번째기사 정언 이상진이 자신의 상소로 물의를 일으키 자 인피하다</p>	<p>정언 이상진이 인피하면서 아뢰기를, “신의 망령된 말로 인하여 대신과 중신이 불안해 하고 이어서 양사마저 인피 하게 되어 소란스러움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미 황송스러워 숨을 죽였습 니다. 그런데 대신에게 답하신 비답을 엿드려 보건대 지극히 엄격하고 준절하 니, 신이 더욱 두려워서 몸 둘 곳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말이 망령되 어 두서가 없다는 것은 신이 스스로 반성하여 잘못을 찾아보아야 하겠거니와, 곤욕을 주었다는 한 글자는 이것이 어찌 위대한 임금의 말씀이겠습니까. 예로 부터 임금의 과오를 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다만 신하로서 임금을 간하였다는 말만 들었고 임금으로서 신하에게 곤욕을 당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의 조정에 만일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난간을 부러뜨리면서 까지 간하는 신하가 있었다면, 다시 어떤 엄지(嚴旨)를 내리어 곤욕을 주었다 는 글자 이외에 몇 배나 더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신의 말이 아무리 참 람되더라도 전하께서는 힘쓰고 고치실 뿐이지, 아마도 뒤집어서 신을 죄주는 자료로 삼는 것은 부당한 듯합니다. 신이 말씀드린 것은 다만 보고 들은 것에 의거하여 바로 아뢰었을 뿐이니, 참으로 우직한 마음과 피맺힌 정성에서 나왔 습니다. 조금이라도 속인 것이 있다면 도끼 아래에서 죄를 받겠습니다. 신이 두 신하를 논핵한 것도 역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만 조정의 체통을 보존하고자 한 것일 뿐이니, 두 신하들이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자중하기를 황희(黃喜)처럼 하고 과오 알기를 김종서(金宗瑞)처럼 한다면 또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 나라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데, 누가 그 허물을 책임질 것 입니까. 임금과 정승의 과오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그 폐단을 초래한 근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지금 한 번 입을 열어서 상하에 죄를 얻었 으니, 감히 그대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p>	<p>正言李尙眞引避曰：“緣臣妄言，以致 大臣、重臣之不安，繼有兩司之引避， 鬧擾至此，已足悚息，而伏見答大臣之 批，極嚴且峻，臣益悸恐，措身無地。 第惟言之狂妄無倫，臣自反求，困之一 字，是豈如紘之王言乎？自古言君之過 者何限，而只聞以臣諫君，未聞以君見 困於臣也。殿下之庭，倘有牽裾折檻 之臣，則更下何等嚴旨，而困字之外， 加之幾層語也？臣言雖僭，殿下勉之 而已、改之而已，恐不當翻作罪臣之資 也。臣之所言，只據見聞而直陳之， 實出於愚衷血誠，一有誣罔，請伏斧 鑕。臣之論兩臣，亦非大段，只欲存 朝廷事體，兩臣各自勉勵，自重如黃 喜，知過如金宗瑞，則不亦美乎？嗚 呼！國事日非，誰任其咎？不言君相之 過，于何救其致弊之源？臣今一開口， 得罪上下，不敢仍冒，請罷臣職？”答 曰：“爾之言皆好矣。大臣、重臣，只 是不敢自安之意，寧有他哉？爾其勿 辭。”</p>
---	---	--

	<p>“그대 말은 다 좋다. 대신과 중신이 다만 감히 스스로 편안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느냐. 그대는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2월 29일(경인) 1번째기사 부교리 남용익이 봄철에 열무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아뢰다</p>	<p>부교리 남용익(南龍翼)이 상소하기를, “성상께서 바야흐로 능을 참배하려는 행차를 정지하신 것은 정성이 지극하지 못해서가 아니요, 이미 결정하였다가 도로 중지한 것은 특별히 여러 신하들의 주청을 따르신 것이니, 무릇 보고 들음에 있어 누군들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엎드려 듣건대 친히 옥지(玉趾)를 거둥하여 강가에서 조련하신다고 하니, 이는 열무(闕武)하는 예전 법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임금께서 병환이 없다는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신이 삼가 《한지(漢志)》를 살펴보건대 ‘입추(立秋) 날 전진(戰陣)의 거동을 연습하는 것을 추유(獮劉)라고 한다.’ 하였으며, 또 월령(月令)을 살펴보건대 ‘봄철을 당하여 대중들을 취합하지 말라.’ 하였고, 또 ‘큰일을 일으켜 농사를 방해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단비가 이미 내려 흙의 맥이 참으로 부드러워졌으니, 농삿일을 시작하는 시기를 진실로 빼앗을 수 없고, 또 시세가 위협스러워 날로 점점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 해를 계속하여 친히 열무하는 것이 어찌 보고 들음에 해롭지 않겠습니까. 여항 사람들이 모두 ‘전하께서 오랫동안 밖에서 고생하여 안마(鞍馬)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자못 구중 궁궐에서 단정히 팔짱끼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행사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것이 비록 매우 어리석은 필부의 말들이지만 식자들의 걱정도 일찍이 여기에 있었습니 다. 말을 달려 사냥하는 조짐이 이로부터 싹틀까 두렵습니다. 이어서 가만히 엎드려 듣건대 왕세자도 어가(御駕)를 수행한다고 하니, 신은 더욱 대단히 염려스럽고 몹시 걱정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왕세자는 춘추(春秋)가 어리어 정말로 어린이 교육을 받을 시기에 해당하니, 전하의 조석 문안을 여쭙고 수라를 보살피는 이외에는 다만 마땅히 서연(書筵)을 열어</p>	<p>庚寅/副校理南龍翼上疏曰： 聖上纔停拜陵之行，誠非不至也，而既定還泥者，特循群下之請也，凡在瞻聆，孰不忻聳？繼而伏聞，親學玉趾，將習操于江上，此出於闕武之舊典，而吾王無疾之喜舉。然而臣謹按《漢志》，立秋日習戰陣之儀，名曰獮劉，又按月令曰：“當春月，毋聚大眾。”又曰：“毋作大事以妨農事。”方今膏雨既降，土脈正柔，俶載之時，誠不可奪，且時勢危疑，日漸曉曉，連年親闕，不瑕有妨於聽聞乎？閭巷之人皆以爲：“殿下久勞于外，習於鞍馬，故殊不堪端拱九重，有此遊豫之舉。”云。此雖蚩蚩匹夫之言，識者之憂，亦未嘗不在於此。竊恐馳騁畋獵之漸，從此而萌也。仍竊伏聞，王世子亦將隨駕，臣尤不勝過慮切憂之至。王世子春秋幼沖，正當蒙養之時，問寢視膳之外，只當開筵講書而已，豈可示以軍旅之事，以導之哉？目今天災時變，不一而足，金星日見，赤雪無前，癘疫大熾，</p>

	<p>글을 강론하여야 할 뿐이지, 어찌 군려(軍旅)의 일을 보여주어 그를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이 자주 일어나, 금성(金星)이 날마다 나타나고 전에 없던 붉은 눈이 내렸으며 여역(癘疫)이 크게 번성하여 서울과 지방이 모두 그러합니다. 신이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말하건대 아산현에서 사망한 사람이 1 백 40여 명입니다. 한 고을이 이와 같다면 한 도를 알 수 있고 한 도가 이와 같다면 8 로(路)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군신 상하가 두려워하고 경계하여 창고를 열고 진대(賑貸)를 의논하기를 붙에 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듯이 급히 하여 탄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조치와 시행하는 것이 느긋하게 평시와 다름이 없으니, 만일 가의(賈誼)가 이때에 태어난다면 반드시 통곡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말지는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다시 더 심사 숙고하여 친히 거동하여 진법(陣法)을 연습하려는 명령을 속히 정지하소서.” 하니, 상이 하교하기를,</p> <p>“열무는 바로 국가의 법전상 마땅히 거행하여야 할 일인데, 어찌 감히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서 망령되이 스스로 억측하면서 여항의 말로써 핑계하여 바로 꾸짖고 욕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는 그 분주하는 노고를 싫어하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열무하는 날 남용익은 어가를 수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中外皆然。以臣目見言之，牙山縣死亡者一百四十餘人。一縣如此，則一道可知；一道如此，則八路可知。此正君臣上下恐懼戒飭，發倉廩、議賑貸，汲汲如救焚拯溺之不暇，而不此之思，舉措施爲，旋旋然與平常之世無異，若使賈誼生此時，則必不痛哭流涕而止耳。伏乞聖明，更加三思，亟停親臨習陣之命。</p> <p>上下教曰：“闕武乃國典應行之事，何敢以邪曲之意，妄自臆度，諉以閭巷之談，而輒爲詬辱之言乎？此不過厭其奔走之勞也。前頭闕武之日，南龍翼令勿隨駕。”</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3월 3일(계사) 5번째기사 내자사에서 명절 떡을 올리니 감소하라는 명을 어겼다고 추고하라</p>	<p>내자시(內資寺)에서 명절 떡을 올리니, 상이 일렀다. “일찍이 특별히 감소하라는 분부가 있었는데도 해관이 명칭하게 봉진하였으니 추고하도록 명하라.”</p>	<p>內資寺進節日餅，上以爲：“曾有特減之教，而該官朦然封進，命推考。”</p>

<p>고 명하다</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4월 8일(정묘) 2번째기사 경상도 천성 등 3진의 토병이 굴을 따 먹고 50여명이 죽다</p>	<p>경상도 천성(天城) 등 3 진(鎭)의 토병(土兵)들이 굴을 따먹고 갑자기 죽은 사람이 50여 명이었는데, 도신(道臣)이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p>	<p>慶尙道天城等三鎭土兵，採食石花，暴死者五十餘人，道臣以聞。</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5월 11일(경자) 2번째기사 참찬관 홍명하가 호남 의 전염병에 대해 아 뢰자 구휼하게 하고 약품도 내리다</p>	<p>상이 조강에 나아가 《시전》 죽간(竹筴)·환란(芄蘭)·하광(河廣) 등의 장(章)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참찬관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신이 신천익(愼天翊)의 말을 듣건대, 호남의 온 도(道)에 전염병이 아주 심한 데 연해(沿海)가 더욱 심하여 사망자가 연이어서 폐농(廢農)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 불쌍하고 측은합니다.” 하니, 상이 승지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백성의 부모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차마 이 말을 듣겠는가. 모조록 나의 뜻을 본도의 방백(方伯)에게 유사해서 곡식을 내어 구휼토록 하라. 또 전염병에 걸린 집안의 전토(田土)는 필시 목을 것이니 회생하더라도 어떻게 생활을 꾸리겠는가. 그들의 이웃과 족인(族人)으로 하여금 서로 돌보고 돕게 할 것은 물론 약품도 의사(醫司)로 하여금 내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강을 파하고 제사(諸司)의 운대관(輪對官)을 불러보았다. 사복시 정심광수(沈光洙)에게 이르기를, “품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라.” 하니, 광수가 아뢰기를, “이 무더운 계절을 당하여 날마다 경연에 나오시니 학문에 애쓰는 정성을 누군들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다만 말씀하시는 사이에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p>	<p>上御朝講，講《詩傳》《竹筴》、《芄蘭》、《河廣》等章。講訖，參贊官洪命夏曰：“臣聞愼天翊之言，湖南一道，癘疫大熾，而沿海尤甚，死亡相繼，人多廢農，誠可矜側也。”上顧謂承旨曰：“爲民父母者，寧忍聞此言乎？須以予意，諭本道方伯，出穀而賑之。且其病家田土，必不免蕪穢，雖得回生，何以資活？使其隣里及族人，互相顧助，藥物亦令醫司下送。”講罷，召見諸司輪對官。謂司僕寺正沈光洙曰：“如有所懷，悉陳無隱。”光洙曰：“當此暑月，日御經筵，勤學之誠，孰不欽仰，而第辭氣之間，未免太露，竊恐聖學未盡成就而然也。孔子曰：‘君子不重則不威，學則不固。’聖人之學，以主忠信爲本。曾參之三省、顏子之四</p>

	<p>내시는데 이는 성학(聖學)이 다 성취되지 못하여 그러한 듯합니다.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군자(君子)가 후중(厚重)하지 않으면 위엄스럽지 못한데, 그런 상태에서는 배워도 견고하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성인(聖人)의 학문은 ‘주충신(主忠信)’으로써 근본을 삼으니, 증삼(曾參)의 삼성(三省)과 안자(顏子)의 사물(四勿)이 학문의 종지(宗旨)가 됩니다. 무릇 학문하는 방법은 종지를 알지 못하면 온종일 아무리 애쓰더라도 끝내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말한 것이 이와 같은데,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勿，是爲學問宗旨。凡爲學之道，不解宗旨，則雖終日乾乾，終無實效矣。”上曰：“所言如此，可不體念？”</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5월 21일(경술) 3번째기사 충청도 천안군에서 세 쌍둥이를 낳은 여자에게 쌀을 하사하게 하다</p>	<p>충청도 천안군(天安郡)에 거주하는 백성의 아내가 한 태(胎)에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본도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쌀을 주도록 하였다.</p>	<p>忠清道天安郡民妻，一胎產三子，令本道依例賜米。</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5월 26일(을묘) 2번째기사 전남 감사 이만이 강도미를 꾸어주어 진구하게 하라고 치계하여 1만 석을 이송하다</p>	<p>전남 감사 이만(李曼)이 치계(馳啓)하기를, “도내의 인민들이 지금 극도로 굶주리는데 관청의 비축이 벌써 다하여 구휼할 방책이 없습니다. 강도미(江都米) 수천 여석을 꾸어주어 진구하소서.” 하니, 상이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였다. 비국이 쌀 5천석을 보내자고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숫자는 매우 적으니 1만 석을 이송하라.” 하였다.</p>	<p>全南監司李曼馳啓曰：“道內人民，飢饉方極，而官儲已盡，賑救無策。請貸江都米數千餘石以賑之。”上令備局議之。備局請送米五千石，上曰：“此數甚少，移送萬石。”</p>
<p>효종 12권, 5년(1654)</p>	<p>상이 하교하였다.</p>	<p>上下教曰：“災異至此，明年誕日方物，</p>

<p>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6월 17일(을해) 2번째기사 재이로 내년 탄일에 올리는 방물을 중지하라 하고하다</p>	<p>“재이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년의 탄일(誕日)에 올리는 방물(方物)은 특별히 중지하여 과하도록 하라.”</p>	<p>特令停罷。”</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6월 20일(무인) 4번째기사 대신의 언로, 인재 등용, 화폐 유통에 대한 영중추부사 이경여의 상차문</p>	<p>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제 구언(求言)하는 명이 벌써 내리어 중외의 신하들이 서로 잇달아 주장(奏章)을 올리어 공거(公車)에 이미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언로(言路)의 막힘, 말한 사람이 죄를 얻음, 궁정의 옷과 쓰는 물건의 사치함, 지대(池臺)와 관우(館宇)의 증축과 지나친 꾸밈, 제도를 넘는 전장(田庄)과 저택의 규모, 대소 신료의 실직(失職), 상사(賞賜)와 형벌의 알맞지 못함, 궁(宮)과 부(府)가 일체가 되지 못하여 액정(掖庭)·내수(內需)의 폐단이 자꾸 불어나는 것 따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은 감히 여기에 미칠 겨를이 없고, 삼가 먼저 자기 잘못을 바로잡은 뒤에 남을 바루는 의(義)에 따라 말씀드리려 하니, 그 이유는 실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심(聖心)이 한번 깨달아 먼저 큰 것을 우뚝하게 세우면 반드시 사방의 문을 널리 열어 즐거이 직언(直言)을 들을 것이니, 어찌 자신의 지혜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성색(聲色)으로 천리 밖에서 사람을 막겠습니까? 반드시 정사(正士)를 친근히 하여 혹시라도 물리갈까봐 걱정할 것이니, 어떻게 소홀히 하여 버리거나 배척하여 쫓아 내고, 또 죄까지 주겠습니까. 반드시 몸소 빨고 닦기를 마치 대우(大禹)가 좋지 않은 옷을 입고 험한 음식을 먹던 것과 같이 할 것이며, 반드시 금(金)을 아끼어 대(臺)를 철거하기를 마치 한 문제(漢文帝)가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할 것입니다. 반드시 친애에 치우쳐서 전원(田園)을 넓게 두고 저택을 홀륭하게 꾸며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반드시 뛰어난 인재를 가리</p>	<p>領中樞府事李敬輿上劄，其略曰： 茲者求言之旨既下，中外之臣，相繼陳章，公車已滿，而不過曰言路之杜塞也，言者之獲罪也，宮庭服用之侈靡也，池臺館宇之增飾也，田庄第宅之過制也，大小臣僚之失職也，慶賞刑罰之不中也，宮府不能一體，而掖庭、內需之弊滋蔓也。臣則不敢暇及於此，而區區自附於先格後正之義者，誠以聖心一悟，卓然先立乎大者，則必能廣開四門，樂聞直言矣。安有訑訑聲色，拒人於千里也？必能親近正士，唯恐或退矣，安有踈棄斥逐，又從而罪之也？必能躬服澣濯，如大禹之非衣惡食矣；必能惜金輟臺，如漢文之節用愛民矣。必無親愛之僻，廣設田園，崇飾第宅，以貽生民之弊也；必盡宅俊之道，辨別賢邪，革去偏黨，以成咸熙之績也，此所謂一正君，而國定矣。此臣所以不</p>

는 방법을 다하여 어진 이와 간사한 이를 변별하고 편당을 완전히 제거하여 모두가 넓어지는 치적을 이룰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한번 임금을 바꾸어서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오활하다는 혐의를 피하지 않고 시종 학문을 강론하고 이치를 밝히며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거듭거듭 고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옛적의 선치(善治)를 이룬 임금은 함께 다스리는 어진이가 없지 않았으니, 재상의 직분은 오직 임금을 바루는 데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의당 옳은 것은 올리고 그른 것은 그치게 하여 성덕(聖德)을 돕고, 어진이는 내세우고 간사한 이는 물리쳐서 사람 가리는 것으로써 임금을 섬기며, 공변되게 듣고 아울러 관찰하여 못 계책을 거두는 것 등으로써 책망하고, 장부와 회계(會計)나 처리하며 분주히 임금의 뜻이나 받들어 따르는 것으로써 공순하고 조심하는 것이라 여기고 또 재능이라 여기지 마소서.

대각(臺閣)의 임무는 오직 하기 어려운 일로써 남을 힘쓰게 하는데 있습니다. 의당 일에 따라 바로잡아 간하여 그른 것을 바로잡아 일을 바꾸며, 법을 지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장을 엄히 잡고서 호되게 꾸짖도록 권하여 옷깃을 잡아 당기고 난간이 부러지더라도 모두 후하게 용납하고, 아첨하여 구차스런 얼굴을 하며 입을 다물고 묵묵히 지내어 편안함을 피하는 것을 충후(忠厚)함으로 여기거나 임금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체통(體統)이 어지러워지지 않고 혈맥(血脈)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다스림에 있어서의 절실한 사무입니다. 그리고 또 넓게 듣고 책을 읽은 문학(文學)의 선비를 얻어서 마치 세종조(世宗朝) 집현전(集賢殿)의 규정처럼 하여 아침저녁으로 함께 지내면서 가까이 하여 믿으며, 궁정의 기거(起居)·음식·복식·동작·말하는 것 등을 모두 들어 알아 일에 따라 바로잡아 풍간(諷諫)하도록 하소서. 기타 정령(政令)이 편하고 편하지 못한지, 논의가 옳고 그름지를 의논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십시오.

避迂闊之嫌，終始以講學明理，端本清源，眷眷申告者也。然在昔致治之主，莫不有共理之賢。宰相之職，唯在匡辟，殿下宜責以獻可替否，以輔聖德；進賢退邪，以人事君，公聽竝觀，以收群策，毋以簿書期會，趨走承順爲恭謹爲才能。臺閣之任，唯在責難，宜責以隨事糾諫，格非正事，守法不撓，操切豪責，牽裾折檻，亦皆優容，勿以阿諛句容，含默圖便爲忠厚爲愛君。如此然後，體統不紊，血脈相通，此爲治之切務，而又得博聞讀書文學之士，如世宗朝集賢殿之規，朝夕與處，親之信之，宮庭起居膳服，動靜云爲，竝得聞知，使之隨事規諷。其他政令便否，朝臣賢否，論議是非，莫不參議。山林之士，亦宜盡誠召致，勿拘常規，俾得一體論思，則其於存養聖心，夾持天德，必有所大益矣。此則今日玉堂之任，極選一時之善士，待之以非常之禮，則豈無侍文興起之人乎？抑臣又有戚戚於心者，常所仰屋而竊歎者，不得不別有獻焉。凡係聖躬之闕遺、政令之失當，大臣、三司則必待其成，乃能救正，其在四方聽聞，已無及矣。若

산림(山林)의 선비도 정성을 다하여 초치하여 정해진 규정에 구애하지 말고 한결같이 논사(論思)하도록 하면 성심(聖心)을 보존하여 기르고 천덕(天德)을 단단히 잡는 데 필시 크게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옥당(玉堂)의 임무이니, 한 때의 선사(善士)를 있는 대로 모두 뽑아 평범하지 않은 예(禮)로 대우하면 어찌 어진 임금이 나오기를 기다려 흥기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또한 신이 마음에 슬픈 것이 있어서 언제나 지붕 위를 쳐다보며 남몰래 탄식하기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성상의 과실과 정령의 잘잘못에 관계되는 것을 대신과 삼사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바로잡을 수 있으니, 사방의 소문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경우 가까운 곳에 있으니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큰 것이면 봉하여 돌려 보내고 작은 것이면 아뢰어야 합니다. 해와 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일식과 월식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조처는 미연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唐)·우(虞)가 납언(納言)에게 미덥게 하라는 것으로 명하고, 한(漢)·당(唐)이 상서(尙書)에게 봉박(封駁)을 허락하였던 까닭입니다. 세상이 쇠한 이후로 인재를 얻기가 이미 어려워지고 맡기는 것도 가벼워서 임금이 옛날의 관직 설치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갓 자신의 말을 어김이 없게만 하려고 합니다. 의리에 합당한지 않은지는 따져보지 않고 한갓 위엄을 부리고 성내는 실덕(失德)을 멋대로 하여 꺾어버리고 모욕을 주니, 이는 스스로 목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위에 계시니 사방의 문을 활짝 열고 옛도(道)를 회복하여 더러운 풍습을 아주 씻어버려야 할 텐데 어찌 지극히 잘 다스려지기를 우러러 바라는 때에 도리어 전에 없었던 일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은대(銀臺)의 관원이 예에 따라 아뢰는 것 가운데 한 마디의 말이라도 뜻에 거슬리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산이나 바다로 귀양보내기도 합니다. 이 뒤로부터 국가를 운용하는 핵심적인 자리가 대궐이나 지키는

政院則處近密之地， 命令之不合於理者， 大則封還， 小則陳啓。 日月之更， 不待既食之後； 時措之失， 可救未然之前。 此唐、虞納言， 命之以惟允； 漢、唐尙書， 許之以封駁者也。 叔季以來， 得人既難， 委任亦輕， 人主罔念古昔置官之意， 徒欲惟予言莫之違也。 不參義理之當否， 徒肆威怒之逸德， 摧折之、戮辱之， 是自塞其咽喉也。 聖明在上， 四門廓開， 宜復古道， 痛洗陋習， 豈料顛望至治之日， 反有前所未有之事？ 銀臺之官， 循例陳啓， 片言忤旨， 或就縲紲、或竄山海。 自此之後， 運斗之地， 爲守闔之冗官， 此豈所望於我殿下哉？ 方今朝臣貶逐竄黜者， 非有四凶之罪也， 因事編配者， 非盡枯終之輩， 而離親戚、棄墳墓， 或弔影窮荒， 或寄迹他鄉， 或陟岵倚閭， 叩心呼天， 或妻子兄弟， 分離莫保者， 不啻百數。 此足以傷天地之和， 致水旱之災， 不有累於天覆之仁哉？ 宜令有司， 將遠近流配， 削黜奪職之類， 商議於廟堂， 有罪無罪， 可釋可紱， 勿循罪名， 唯觀情犯， 明白詳覈， 仰稟睿裁， 大霽曠蕩之恩， 豈非弭災之一大助也？ 且治平之世， 必

	<p>변변치 못한 관원이 되고 말 것이니, 이 어찌 우리 전하에게 바랐던 바이겠습니까?</p> <p>현재 조신(朝臣)으로서 좌천되어 쫓겨났거나 귀양간 자는 사흉(四凶)과 같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인하여 변방으로 유배된 자는 모두 세력을 믿고 끝까지 고치지 않은 무리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친척과 이별하고 조상의 산소를 버리고서 아주 궁벽한 곳에서 몸과 그림자가 서로 위로하기도 하며 다른 고을에 자취를 의탁하기도 합니다. 혹은 호(岫)에 오르거나 여문(閨門)에 기대어 가슴을 치면서 하늘에 울부짖기도 하고, 혹은 처자와 형제가 이별하여 보전하지 못하는 자가 백 명 정도뿐이 아닙니다. 이는 천지의 화기를 상하게 하기에 넉넉하여 수재와 한재의 재이를 불렀으니, 하늘이 만물을 덮어주는 어짐에 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당 유사(有司)로 하여금 원근에 유배되었거나 삭직되어 쫓겨났거나 관직을 빼앗긴 무리들에 대하여 묘당에서 상의하게 하여, 죄가 있고 죄가 없는 자와 석방할 만하고 서용할 만한 이를 죄명에 따르지 말고 오직 범법한 원정(原情)을 살펴 명백하게 조사해서, 상에게 아뢰게 하여 대사(大赦)의 은전을 크게 내리면 어찌 재이를 그치게 하는 데에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p> <p>또 태평스럽게 다스려진 세상에는 반드시 ‘관리는 그 직책을 잘 수행하고 백성은 그 직업을 편안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수령을 조심스럽게 가리고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래 호령이 번거롭고 법망이 점차 세밀해져서, 열읍의 수령된 자는 세력가의 자제이거나 명망 있는 관원으로서 외직에 보임된 자가 아니면 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새 수령을 맞이하고 묵은 수령을 전송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으니, 민생이 생업을 잃고 간사한 아전이 농간부리는 것이 전적으로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너무 심한 자는 제거하고 조그만 실수는 덮어주어 손과 발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여 그의 재능을 조금이라도 펼치도록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p>	<p>曰吏稱其職，民安其業。 慎擇守令，勿爲數遞，安民之要道。 近來號令煩擾，文網稍密，列邑分憂者，非勢家子弟，名官外補者，鮮能保全，迎送絡繹，民生失業，姦吏舞文，職由於此。 去其太甚，略其小過，俾手足得措，小展其才，不爲無益於便民之方矣。 立法創制，尤當謹慎。 古者國有大事，謀及卿士，參以時勢，然後可無反汗之弊。 錢貨，遠自三代，爲天下之通寶，生民衣食之外，別作一貨，通濟有無，其便民利國，孰大於斯？ 領相受知遇之恩，任經濟之責，思欲遵倣古制，期致通行，其意好矣，其勤亦至矣。 然東土建國，自檀、箕以下四五千年，其間明君誼辟、碩輔良弼，豈不知用錢之有益於人國也？ 未聞有行之者，或有乍行而旋廢者，其必有所以然矣。 銅鐵不產於域內，而乃欲取資於他國，通行於一方，一難也。 我國民貧，家無剩財，耕田而食，織布而衣，雖有以工、商爲業者，不過土木·皮革之器、絲麻·米穀之用。 互相貿遷，纔能自給，而猶有飢寒流徙之民，以何餘財蓄儲，取錢居積，圖什一之利哉？ 此二難也。 村</p>
--	--	---

	<p>도에 보탬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p> <p>법을 세우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더욱 삼가고 조심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옛적에는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경사(卿士)에게까지 상의하고 시세를 참작하였으니, 그렇게 한 뒤에야 내었던 명령을 도로 걷어들이는 폐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화(錢貨)는 멀리 삼대(三代)로부터 천하에 통용하는 보화(寶貨)가 되었기에, 생민들의 옷과 음식 이외에 따로 한 화폐를 만들어서 있고 없는 것을 유통시켜 썼으니, 백성을 편리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영상이 지우(知遇)의 은혜를 받고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책무를 맡아 옛 제도를 따르고 모방하여 기필코 통행시키려 하니, 그 뜻은 좋으며 그 애쓰는 것도 지극합니다. 그러나 동방에 나라를 세운 지가 단군(檀君)·기자(箕子) 이래로 4천~5천 년인데, 그 사이 밝고 의로운 임금과 훌륭한 어진 보필이 어찌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백성과 국가에 유익함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시행한 사람이 있었음을 듣지 못하였고 혹 잠깐 이행하다가 곧 폐지하기도 하였으니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동철(銅鐵)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데도 곧 다른 나라에서 자료를 취하여 온 나라에 통행시키려 하니, 첫째 어려움입니다. 우리 나라의 백성은 가난하여 집에 남은 재산이 없어서 농사지어 밥을 먹고 길쌈하여 옷을 입으며, 공업과 상업을 직업으로 삼는 자가 있어도 흙·나무·가죽으로 만든 기물과 일상으로 쓰는 무명·삼베·곡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 없는 것을 교역하여 겨우 자급을 하는데도 오히려 굶주리고 떨면서 이리저리 떠도는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남은 재산을 축적하여 돈을 모아 1할의 이익을 피하겠습니까? 이것이 둘째 어려움입니다. 시골 백성과 주점(酒店)을 하는 일반 백성은 오직 한 되나 말의 쌀을 구하여 아침 저녁의 다급함을 구제할 생각뿐인데, 그의 부모 처자가 한창 배가 고파 먹기를 바랄 적에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들 삶을 구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셋째 어려움입니다. 아, 많고많은</p>	<p>民野夫、酒店編氓，惟思求升斗之米，濟朝夕之急，方其父母妻子枵腹仰哺之際，雖帶錢歸家，亦何補於救活？此三難也。噫！天下穰穰，皆爲利往，天下熙熙，皆爲利來。貨物通行，如水行地，豈可以政教徵發，抑勒而爲之哉？觸處窒礙，公私俱病，固不可言，而任事之輩，假公營私，折辱守宰，侵擾閭井，不一其端，而西民尤被其害。領相當國盡誠，靡策不講，每以便民利國，夙夜孜孜，盡瘁之忠，臣素多之，豈有洞此弊，而強爲之哉？只緣聞事不實，實事不聞。方伯、守令、同朝薦紳，不識廟堂本意，莫肯明言利病，俱曰可行，無賴牟利之輩，又從以扇動之，相臣位尊體重，無路得聞。國事非一家事，何妨熟講善完？願以臣章，詢于領相，詢于在廷諸宰及三司、臺閣之臣，使之明白可否，趁卽變通，亦一慰民心之大助也。自古帝王之孝于親、友于兄弟者，非不多矣，而獨稱大舜者，以其能盡處變之道也。殿下仁愛孝友，迥出百王，不幸遭非常之變，而能盡其處變之道，是同符于重華也。海島霧露，園中之尙免疾患者，賴殿下</p>
--	---	---

천하 사람들이 모두 이익을 위하여 가고 옵니다. 화물(貨物)의 통행은 마치 물이 땅에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찌 정교(政敎)로써 징발하여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치는 곳마다 막히어 공사간에 모두 병드는 것을 진실로 다 말할 수 없으며, 일을 맡은 무리들이 공사(公事)를 핑계로 사리(私利)를 도모하여 수령을 모욕하고 민간을 어지럽히는 일이 한두 가지뿐이 아닌데, 서쪽 백성들이 더욱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이 나라의 정사를 맡아 성의를 다하여 강구하지 않은 계책이 없어서, 언제나 백성을 편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방도를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부지런히 애써 몸이 여위도록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신도 평소 이를 훌륭히 여겨왔는데, 어찌 그가 이러한 폐단을 환히 알면서도 억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지 일을 들음이 부실하고 실사(實事)를 듣지 못한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방백과 수령 및 조정의 동료 벼슬아치들이 묘당의 본 뜻을 알지 못하여 이익과 손해를 분명하게 말하려 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행할 만하다 하고 무뢰한 모리배들이 또 따라서 선동합니다만, 상신(相臣)은 벼슬이 높고 체면이 무거워 들을 길이 없습니다. 나랏일은 한 집안의 일이 아니니 익히 강구하고 잘 완비하도록 함에 무슨 꺼리길 것이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신의 이 글을 영상에게 자문하고 조정에 있는 여러 재상과 삼사·대각의 신하에게 자문하여 가부(可否)를 명백히 하도록 하고, 즉시 변통하는 것도 한 번 민심을 위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제왕 가운데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하던 사람이 많았지만 유독 대순(大舜)을 일컫는 것은 능히 처변(處變)하는 도리를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하의 인애와 효우는 못 왕들에 비하여 훨씬 뛰어나 불행히 비상한 변을 만났으나 능히 처변하는 도리를 다하였으니, 이것이 대순의 경우와 똑같이 부합하는 것입니다. 해도의 안개와 이슬에 휩싸인 가시울타리 속에 계신 분이 그래도 병이 들지 않은 것은, 전하께서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덕으로 입히고 먹여서 곡진히 보살펴준 사랑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天地生成之德，衣之食之，曲加軫恤之仁耳。然生長深宮，體襲綺紈，雖以慮患保全之意，不能迎置輦轂之下，以盡友于之歡。若廣其墻垣，高其室屋，豐其衣食，足其使令，使之優遊度日，以待時事稍定，其於聖德，豈不彌彰；在於弭災，曷云無補？
 答曰：“卿之誠意至此，再三莊誦，不覺惕然而懼。予雖不敏，敢不服膺焉？末端事，當令備局議之。”

	<p>깊은 궁궐에서 성장하여 비단을 몸에 두르고 살았으므로 환난을 염려하여 보전(保全)해 주려고 했으나 서울로 맞아다가 우애의 즐거움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담장을 넓히고 집을 높이며 의식을 풍족하게 만들고 부리는 하인을 넉넉히 두어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도록 하면서 시사가 조금 안정되기를 기다린다면 성덕이 어찌 더욱 드러나지 않겠으며, 재이를 그치게 하는 데 있어 도움이 없겠습니까.”</p> <p>하니, 답하기를, “경의 성의가 이런 정도이니 두세 번 크게 외우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낀다. 내가 명민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가슴에 새겨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맨 끝에 말한 일은 비국에게 의논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효종 12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6월 23일(신사) 3번째기사 개성부의 가혹한 세급 징수와 공주의 사치로운 사택에 대하여 의논하다</p>	<p>“호남의 부유함은 우리 동방에서 제일이어서 예로부터 흉년이 그곳을 병들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올해의 기근(飢饉)은 전에 없던 것이어서 전하께서 창고의 곡식을 내어 진휼하였으니 은혜로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이 아닙니다. 인정(仁政)은 요역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호남에 전세의 반을 감해주면 백성들이 실제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p> <p>하고,</p>	<p>“湖南富饒，甲于我東，自古凶年不能病。今歲飢饉，前所未有，聖上出倉穀以賑之，惠則大矣，然此非愛民之本也。仁政莫如輕徭而薄賦也，若賜湖南田稅之半，則民可蒙實惠矣。”</p>
<p>효종 13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7월 7일(갑오) 1번째기사 역적 강의 일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p>	<p>황해 감사 김홍욱(金弘郁)이 상소하기를, “신이 얼마전 구언하는 교서를 보았는데 이어서 죄인을 심리하라는 하교를 내리니 전하께서 재변을 만나 반성하며 몸을 닦는 방도가 지극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뒤에 조정 신하들이 잇달아 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채택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한갓 형식적인 일로 돌아가 결국에는 죄수를 소결(疏決)하여 도년(徒年)의 죄인 몇명을 방면</p>	

황해 감사 김홍욱의
상소문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하늘의 견책에 응하여 재변이 그치기를 기대한다면 또한 어렵습니다. 아, 재변의 발생이 어느 세상이고 없었겠습니까마는 오늘날처럼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영남에서는 붉은 비가 오고 관동 지방에는 붉은 눈이 내려 이미 놀랍고 참혹하기가 그지없는데 금성(金星)이 도수(度數)를 벗어나 날마다 낮에 나타나 가뭄이 든 날에 태양과 밝기를 다룹니다. 그 이외에 갖가지 별의 이변과 사물의 변괴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고금에 없이 경성에 큰물이 저서 물에 휩쓸려 죽은 도성 백성이 매우 많고 대궐 안에서 도량물이 넘쳐 사람이 죽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더욱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또 수백리 밖은 홍수와 가뭄이 각각이어서 송도 서쪽의 황해도 지방은 가뭄이 극심하여 5 월 보름 이후로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곡식이 다 타죽었고 초목은 누렇게 낙엽이 졌습니다. 농촌과 해변이 더욱 참혹하여 농민들이 울부짖으며 목숨이 거의 끊어지려 하는데, 이것은 다른 재변과 비할 바가 아니니 어찌 초미(焦眉)의 절박한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참혹한 재변이 이와 같이 두려운데도 대응하는 방법은 매우 소홀하니, 비단 재변을 없애고 화기(和氣)를 불러올 수 없을 뿐만아니라 도리어 하늘이 흠향하지 않아 노여움만 돋우게 될까 두렵습니다. 옛날부터 비상한 재변을 만난 경우에는 비상한 조치를 반드시 취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어떤 일이며 국가의 큰 옥사로 의심스러울 만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 생각지 않으시고 한갓 구구하고 자잘한 일에만 신경을 쓰신다면 신은 그점을 크게 민망히 여기는 바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강(姜)의 옥사가 가장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어찌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저주의 변이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어(移御)하였을 때 일어났는데 그 당시는 궁중 상하가 화락하고 편안하였으니 강(姜)이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불측한 큰 역모를 했겠습니까. 만약 그때는 강의 짓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궁중에서의 저주가 어떤 일들이기에 아무나의 손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신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강이 심양(瀋陽)에 간 뒤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만리 밖에 있으면서 비복(婢僕)을 시켜 흉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 기밀이 누설되지 않았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물며 소현(昭顯)이 갑자기 서거한 뒤에는 명색은 금중(禁中)에 거처한다고 하나 역적 조(趙)에게 미움을 받아 별도의 처소에서 간혀 있다시피 하면서 안팎이 차단당하여 방수(防守)가 매우 엄했으니 아무리 흉악한 짓을 하려고 했더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주가 이때 심했다고 하니 어찌 크게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승전(儲承殿)을 수리할 때에 저주하는 더러운 물건들이 더욱 많이 발굴되었는데, 이 또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전일에 묻어 둔 것이라고 한다면 소현이 졸하기 전에 어떻게 미리 예측하고서 흉악한 짓을 저질렀겠으며 졸한 뒤에 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 안되어 곧 대계(大計)를 결정하여 세자의 자리가 정해 졌으니, 그의 세력은 더욱 외롭게 되어 궁중의 일개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흉한 물건을 묻고자 한들 누가 그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어선(御膳)에 독을 넣었다는 설에 있어서는 더욱 가깝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역적 조의 세력이 후궁에 진동하여 날마다 초방(椒房)에서 모시었기 때문에 전후 좌우 모두가 역적 조가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무리 흉악하고 교묘하다고 해도 틈을 탈 수 없었을 것이니 이것이 또한 매우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기타 의심스러운 점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적 조는 안에서 날조하고, 역적 자점은 밖에서 조작해내어 건강 부회로 옥사를 일으켜 끝내는 사사(賜死)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온 가문의 노소를 남김 없이 주륙하였으니 아, 참혹합니다. 그리고 소현의 두 자식의 죽음도 모두가 자점이 빚어낸 것입니다. ‘청장(淸將)이 운운했다.’는 설은 처음에 정 역관(譯官)에게서 나오고, 다시 형장(馨長)의 입으로 전해진 것으로 은밀한 기밀이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인데도 자점이 연좌(緣坐)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p>또 후환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외방에 멀리 유배시키기를 굳이 청했습니다. 나이 어린 연약한 아이들이 고생스레 방황하면서 서로 이끌고 한꺼번에 남쪽으로 옮겨 가게 되자 길에서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유배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잇따라 죽게 되니 자점의 사주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p> <p>설사 그 어머니께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연약한 아이들은 애당초 몰랐을 것인데, 하물며 그 어머니의 죄가 그다지 명백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유배의 유을 적용하여 끝내는 애매하게 죽게 만들어 구천(九泉)의 아래에서 영원히 원한을 품도록 만들었으니, 이를 듣고 사람이라면 누군들 불쌍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인조 대왕께서는 궁인을 엄하게 국문하여, 간호를 신중하게 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다가 곤장을 맞고 죽게까지 하였으니 또한 지극한 자애심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죄없이 죽었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p> <p>아, 천리(天理)는 밝고 보응(報應)은 매우 신속하여 역적 자점과 조는 나란히 함께 주륙되었으나 강의 원통한 정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으면서도 선왕조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만으로 신하들을 위엄으로 제어하여 감히 말을 못하게 하시는데 신은 삼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성인이 성인을 계승했어도 오히려 변경이 있었으니 요(堯)임금 시대의 사흉(四凶)을 순(舜)임금 때에 와서 처벌하였지만 승계(承繼)하는 의에 무슨 해 될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나라에 와서도 중종조(中宗朝)의 간흉들이 여러 어진 이들을 기묘년에 죽이고 해쳤으며 명종 때에 와서 신원(伸冤)했으며, 명종조(明宗朝)에 권간(權奸)이 사림(士林)에 해를 덮어 씌우고 위훈(僞勳)에까지 책록되었지만 선조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여러 신하들이 청하여 훈적(勳籍)을 혁파하고 그 작위를 모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해와 달의 광명에도 오히려 일식이나 월식으로 가리워질 수 있듯이 간흉이 가리운 환란을 아무리 성군이라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뒤를 이어받은</p>	
--	---	--

군왕이 시비를 분명히 밝혀 억울한 것을 씻어준다면 공업(功業)은 앞에 빛나고 명예는 후대에 드리워질 것이니 실로 계술(繼述)하는 효도에 부합한 것입니다. 선정(先正)의 말씀에 ‘준수해야 할 것을 준수한 것이 계술하는 것이며, 변통해야 할 것을 변통하는 것 역시 계술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아, 한 지어미가 품은 원한에도 3년간 가뭄이 들었었고 외로운 신하의 통곡에도 5 월달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지금 강(姜)의 일문(一門)이 죽음을 당한 것은 단지 한 지어미의 원한이 맺힌 정도일 뿐만이 아니고 외로운 신하가 통곡한 것보다도 더 하니 화기(和氣)를 손상시켜 재앙을 불러 온 것이 괴이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조정 신하 중에 누군들 이 옥사가 매우 원통하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마는 입을 다물고 감히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몸을 아껴서입니다. 대신은 전하의 팔다리이며, 대간은 전하의 이목이며, 옥당(玉堂)은 전하의 복심(腹心)인데 불충하게도 전하를 저버리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대신과 삼사를 특별히 앞에다 불러 놓고 시험 삼아 신의 소를 하문해 보소서. 만약 신의 말이 망령되지 않다고 한다면 두루 의논하여 원한을 풀어주게 하시고, 신의 말이 망령된 것이라면 역적을 감싼 죄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의 억울함을 씻어 주고나면 세 아이들도 의당 방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징(李澂)과 이숙(李瀾)도 모두 어린 아이이니 그 어미가 흉모를 저지를 때 어찌 간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설사 간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로 그 어미가 억박지른 결과였을 것이니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그런데 해도(海島)에 유배된 지 이제 여러 해가 지났으니 국법은 이미 시행된 것입니다. 특별히 명하여 은사(恩赦)를 내려 서울로 방환시켜 한 곳에 두고 외부 인사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서 가정을 갖게 해서 일생을 마치게 한다면 어찌 성조(聖朝)의 관대한 은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숙은 그 당시 가장 어렸으니 더욱 불쌍한 점입니다. 오직 전하께서는 유

	<p>넘하소서.</p> <p>신이 일찍이 서울에 있을 때 지극히 참람한 수재를 목격했었는데, 지금 또 서쪽 변방에 와서 극심한 가뭄을 보게 되니 실로 국가의 위태로운 화가 조석간에 박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한 폐단을 진달하는 소장으로는 성명(聖明)의 조서에 보답할 수 없고, 하늘의 노여움을 그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평소에 개탄하던 점을 천일(天日) 아래에 진달하여 성상께서 한 번 깨달으시기를 기대하옵니다.”</p> <p>하였는데, 소장이 들어가자 상이 진노하여 하교하기를,</p> <p>“역적 강에 관한 일은 일찍이 전교가 있었으니, 그 당시의 내용을 정원은 고찰하여 아뢰라.”</p> <p>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p> <p>“임진년 6월 대신들을 인견했을 때에 하교하시기를, ‘비록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라도 만약 역적 강의 말을 조정에 아뢰는 자가 있으면 역당(逆黨)으로 논죄하여 궐정(闕庭)에서 국문한다는 것을 각사(各司)에 분명히 하유하라.’ 하였습시다.”</p> <p>하니, 또 하교하기를,</p> <p>“지금 김홍옥(金弘郁)의 상소 내용을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임진년 전교에 따라 시행함이 마땅하다. 즉시 인사 맡은 관원을 불러 정사(政事)를 해서 서울에 있는 별다른 연고가 없는 사람을 차출, 홍옥을 대신하게 하고, 금부도사도 함께 내려 보내 홍옥을 잡아오도록 하라.”</p> <p>하였다. 홍옥의 소장을 의정부에 내려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모두 보게 하였다.</p>	
<p>효종 13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9월 10일(병신)</p>	<p>전남도(全南道)에 큰 기근이 들어 도신(道臣)이 치계하여 노인직(老人職)의 직첩(職帖)으로 곡식을 사들여 진휼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p>	<p>全南道大饑，道臣馳啓，請得老職帖，買穀以賑，從之。</p>

<p>2번째기사 전남도에 큰 기근이 들어 도신이 진휼할 것을 청하다</p>		
<p>효종 13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9월 18일(갑진) 1번째기사 북도에 기근이 심하여 면포 1천여 필을 보내어 진휼하게 하다</p>	<p>북도에 큰 기근이 들어 이산하는 백성들이 많다고 하니 상이 듣고 호조와 병조에 명하여 면포 1천여 필을 보내 나누어 주어 진휼하게 하였다.</p>	<p>甲辰/北路大飢，民多流散。上聞之，命戶、兵曹，送綿布千餘匹，分賑之。</p>
<p>효종 13권, 5년(1654) 갑오 / 청 순치(順治) 11년 11월 26일(임자) 1번째기사 금부가 황헌이 범한 장물을 조사하여 아뢰자 사면하라 하고, 강계에 유배시키다</p>	<p>금부가 대간의 아뢰에 따라 전 통제사(統制使) 황헌(黃濼)이 범한 장물(贓物)을 조사했는데, 쌀과 콩이 수백 곡(斛)이고, 면포가 5백여 필, 다른 물화도 이와 맞먹었다. 상이 하교하기를, “황헌이 이미 장오죄(贓汚罪)를 크게 범했으니 마땅히 형신(刑訊)을 가해야겠다. 그러나 다만, 선왕조에 역적이 난을 꾸며 일이 급박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먼저 고발함으로써 종사가 그 덕택으로 편안하게 되었다. 굳은 맹약으로 후세까지 영원히 변치 말자고 맹세했으니 법을 굽혀 사형을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없다. 멀리 유배만 시켜서 그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라.” 하였다. 금부가 강계(江界)에 정배하니 양사가 여러 차례 율에 따라 죄를 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p>	<p>壬子/禁府因臺啓，查覈前統制使黃濼所犯贓物，米·豆數百斛、綿布五百餘匹、他物稱是。上下教曰：“黃濼既犯巨贓，固當刑訊，而第念，先朝逆孽構亂，事在呼吸，而此人先幾告變，宗社得以再安。山河帶礪之盟，永詒後世，不可不屈法貸死。只令遠竄，以全其生。”禁府定配于江界，兩司累請按律定罪，上竟不從。</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월 3일(무자) 2번째기사 대신과 남한 산성·백</p>	<p>상이 대신과 비국(備局)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수어사(守禦使) 이시방(李時昉)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 안에 군량을 장만하여 두려 하나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강가에 있는 각 고을의 세미(稅米) 5, 6천 석을 산성에 운반하여 급할 때에 군사를 먹일 거리로 삼으소서.”</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守禦使李時昉曰：“南漢城中，欲措置軍糧，而無他料理之策，請以水上各邑稅米五六千石，輸入山城，以爲臨急餉軍之資。”上曰：“其數雖至萬餘石，盡令輸置于</p>

<p>마 산성 등의 방어에 관한 일을 논하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수량이 1만여 석에 이르더라도 죄다 남한에 날라 두도록 하라.” 하였다. 이시방이 또 아뢰기를, “충주(忠州)는 관곡(官穀)이 가장 많으니, 재고 모곡(秣穀)의 10분의 3을 또한 산성에 날라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지 홍처대(洪處大)가 아뢰기를, “접때 연중(筵中)에서 백마 산성(白馬山城)을 【의주(義州)에 있다.】 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들이 사적인 편지로 평안 감사에게 비밀리 물었더니, 산성의 포루(砲樓)와 창고가 거의 다 무너져서 이제 수축하려 하나 소문이 번거로울 것이므로 바야흐로 중들을 모아 절을 짓고 이어서 산성을 수리하려 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혹 번거롭게 누설되면 매우 염려스러울 것이니, 중들이 짓게 하는 생각은 좋을 듯하다.” 하였다.</p>	<p>南漢可矣。”時昉又曰：“忠州官穀最多，三分耗穀，亦請輸置山城。”從之。承旨洪處大曰：“頃於筵中，以修治白馬山城【在義州。】爲教矣。臣等以私書密問于平安監司，則答以山城砲樓倉庫，幾盡頽廢，今欲修築，而有煩聽聞，故方募聚僧徒，營造寺刹，仍欲修葺山城云矣。”上曰：“若或煩泄，則極可慮也，僧徒營造之計，似得之矣。”</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3월 6일(신묘) 2번째기사 인정전에서 청나라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세자를 시켜 술을 돌리게 하다</p>	<p>상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청나라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세자를 시켜 술을 돌리게 하니, 좌우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상이 청사에게 말하기를, “세자가 어리고 두역(痘疫)도 겪지 않았으므로 예(禮)에 간이(簡易)하게 한 것이 많으니,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청사가 답하기를, “우리들이 보기에 세자는 의표(儀表)가 비상하고 예모가 중도에 맞습니다. 이는 반드시 하늘이 도와 천인(天人)을 독실하게 길러낸 것이니, 국가가 장차 태평을 누릴 것입니다. 국왕께서는 두역을 겪지 않았다 하여 염려하지 마소서.”</p>	<p>上宴清使于仁政殿。令世子行酒，左右至有垂涕者。上謂清使曰：“世子年幼，且未經痘疫，禮多簡易，心甚未安。”清使答曰：“俺等瞻望世子，儀表非常。禮貌得中，此必皇穹眷佑，篤生天人，國家將享太平，願國王勿以未經痘爲慮。”【清使爲冊封而來，故世子不得已行禮。】</p>

	<p>하였다. 【청사가 책봉하러 왔으므로 세자가 행례(行禮)하지 않을 수 없었다.】</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3월 8일(계사) 1번째기사 심지원이 허목·윤휴를 천거하여 쓰게 하고, 예판이 《악학궤범》 의 출판을 청하다</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달에 천둥치고 3월에 눈이 내리는 것도 다 망국의 조짐이다마는, 영동(嶺東)에서 바닷물이 언 재변으로 말하면 매우 괴이하다.” 하니,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재변을 당하면 대신(大臣)을 임금의 명으로 파면하였습니다. 신은 지금 하는 일이 없이 중임에 있으니, 먼저 파면하여 하늘의 꾸중에 답하소서.” 하였다. 부제학 김익희(金益熙)가 아뢰기를, “재변이 매우 참혹한 이때에 대신은 격려하여 미치지 못한 점을 함께 닦아야 본디 마땅합니다. 어찌하여 반드시 파면한 뒤에야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는 도리에 유익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김익희가 아뢰기를, “《의례경전(儀禮經傳)》은 새로 인쇄하여 반사(頒賜)하였거니와, 이제 속집(續集)을 더 인쇄하면 전서(全書)가 될 수 있습니다. 재주가 있는 젊은 문관(文官)을 뽑아서 강습(講習)시키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기는 하나, 젊은 문신들은 술을 마시고 한가히 놀며 무리를 좇아 다니기를 일삼을 뿐이고 전경(專經) 시험에도 통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무슨 예경(禮經)을 학습할 희망이 있겠는가.” 하였다. 심지원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허목(許穆)·윤휴(尹鑄)가 힘써 배워 재주가 많으며 행실이 남보</p>	<p>癸巳/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上曰：“臘月雷、三月雪，皆亡國之兆，而至於嶺東，海水合水之災，甚可怪也。” 右議政沈之源曰：“古者遇災異，則策免大臣。 臣今尸居重任，請先策免，以答天譴。” 副提學金益熙曰：“當此災異孔慘之日，大臣固宜策勵，交修不逮，何必策免，然後方可有益於修省之道乎。” 上曰：“卿言善矣。” 益熙曰：“《儀禮經傳》，新印頒賜矣。 今若加印《續集》，則可爲全書。 抄選年少文官有才學者，使之講習，則好矣。” 上曰：“卿言雖好，而年少文臣輩，徒事飲酒閑遊，追逐儕流，而至於專經，亦多不通者，有何學習禮經之望乎。” 之源曰：“臣聞許穆、尹鑄力學多藝，行誼過人，如此之人，宜加擢用，以爲勸獎矣。” 上曰：“尹鑄何如人乎。” 兵曹判書元斗杓曰：“鑄乃孝全之子，而多讀古書云。” 上曰：“言于該曹，使之收用。” 禮曹判書李厚源曰：“掌樂院所藏《樂學軌範》三卷，乃成廟朝成倪所撰也。 廟庭之樂，皆用此制，</p>

	<p>다 낫다 하니, 이러한 사람은 발탁하여 써서 권장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휴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였다. 병조 판서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윤휴는 윤효전(尹孝全)의 아들인데 고서(古書)를 많이 읽었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말하여 거두어 쓰게 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장악원(掌樂院)에 있는 《악학궤범(樂學軌範)》 세 권은 성종(成宗) 때 성현(成愼)이 지은 것입니다. 묘정(廟庭)의 음악은 다 이 제도를 쓰는데, 이것은 여염집에 있는 서적이 아니므로 임진란 뒤에 장악원이 개간(開刊)하였고 판본(板本)이 본원에 있으니, 교서관(校書館)을 시켜 여러 건(件)을 박아 내게 하여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而此非閩家所有之書。 壬辰亂後， 掌樂院開刊， 而板本在本院。 請令校書館印出累件， 分藏史庫。” 從之。</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4월 15일(기사) 1번째기사 제사에 저축된 무명 1백 동을 곡물로 바꾸어 백성을 진구하는 데에 쓰게 하다</p>	<p>제사(諸司)에 저축된 무명 1백 동(同)을 육진(六鎭)과 삼수(三水)와 갑산(甲山) 등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곡물 4천 9백여 석과 바꾸어 백성을 진구(賑救)하는 데에 쓰게 하라고 명하였다. 본도의 감사 이응시(李應蓍)의 청에 따른 것이다.</p>	<p>己巳/命以諸司所儲木綿一百同， 分送于六鎭三甲等邑， 換穀四千九百餘石， 以爲賑民之用。 從本道監司李應蓍之請也。</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4월 16일(경오)</p>	<p>상이 전 영돈녕부사 이경석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 겨울 객사(客使)가 오려 할 때에 사기(事機)가 어떠한지 모르므로 경을 황급히 지방으로 나가게 하고 마음이 매우 서운하였는데 오늘 경을 보니</p>	<p>庚午/上引見前領敦寧府事李景奭。 上曰：“前冬客使將到， 未知事機之如何， 使卿蒼黃出外， 心甚缺然。 今日</p>

1번째기사
이경석을 인견하여 독
서당의 시행에 관해
의논하다

기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경석이 일어나 사례하고 아뢰기를,
“신의 일 때문에 조정이 여러 번 견책받았으니, 먼 지방에 있기는 하였으나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어제 온화한 비답을 받고 이미 극진히 감격하였는데,
이제 또 성상을 뵈니, 영광과 다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접때 나라에서 힐책한 것은 실로 국가의 운수에 관계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적신(賊臣)이 중간에서 꾸민 데에서 나온 것이지, 경 때문이 아니다.”
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한 번 마시고 한 번 먹는 것이 다 성은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음식을 내려 국
도를 떠난 신하에게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격한 말씀 밖에 아될 바를 모르
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동강(桐江)의 낚시 줄이 한(漢)나라의 구정(九鼎)을 붙들어 세웠다 는 것은
옛 말입니다. 가는 한 줄이 어찌 무거운 구정을 붙들겠습니까마는, 이런 말이
있는 것은 대개 물러가 있더라도 일세(一世)의 풍절(風節)을 격려할 수 있었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처럼 변변치 못한 자는 감히 옛사람과 같기를 바라
겠습니까. 이제 또 일을 그르쳐 국가에 옥을 끼쳤으니 신에게서 무엇을 취하
겠습니까. 그런데 또 특별히 월봉(月俸)을 내리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덕이
없는데 녹을 먹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찌 하는 일이 없이 앉아서
먹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안녕한 때이니 한낱 한가한 사람이 되어 시
골에 물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히 사변이 있다면 어찌 감히 편안하기를
피하여 구차하게 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경의 소장을 보니, 혹 서울에 있기도 하고 시골에 있기도 한다는 따위

見卿，欣幸可言。” 景奭起謝曰：“緣
臣之事，朝廷屢被譴責，雖在遠外，置
身無地。 昨承溫批，已極感激，今又
仰瞻清光，榮幸如何。” 上曰：“頃者
彼中之詰責，實係國家之數，且出於賊
臣之從中交構，非卿之故也。” 景奭
曰：“一飲一啄，莫非聖恩，而至於食
物之賜，及於去國之臣，感激之外，不
知所達。 又曰：“桐江一絲，扶漢九鼎
者，此古語也。 一絲之微，豈扶九鼎
之重，而有此云云，蓋雖退處，亦有以
礪一世之風節也。 然如臣無狀，敢望
古人？ 今又誤事，貽辱國家，何取於
臣，而又有特賜月俸之命。 無德而祿，
殃也，豈可無事，而坐食乎？ 國家安寧
之時，願作一閑人，退處鄉曲，不幸有
事變，則安敢偷安苟活乎？” 上曰：“昨
見卿疏，有或京或鄉等語，卿何可以一
閑人自處乎？ 須在輦轂之下，議國家大
政可也。 且卿試觀今之國事，豈卿處
休投閑之時乎？ 古之待賢，亦有庖人繼
肉、廩人繼粟之舉，例給月俸，卿何辭
焉。” 景奭曰：“伏承聖教，益切漸
悚。 如臣無狀，有何裨益，而敢當異
恩哉？” 又曰：“讀書堂選擇，啓稟已

	<p>말이 있었다. 경이 어찌 한낱 한가한 사람으로 자처할 수 있겠는가. 서울에 있으면서 국가의 대정(大政)을 의논해야 한다. 또 경은 지금의 국사를 생각해 보라. 어찌 경이 한가한 곳에 가 있을 때인가. 예전에 어진이를 대우하는 데에도 포인(庖人)이 고기를 대고 늙인(廩人)이 곡물을 대는 일이 있었다. 상례(常例)로 월봉을 주는 것을 경은 어찌 사양하는가.”</p> <p>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를 받자오니 더욱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신처럼 변변치 못한 자가 무슨 도움이 있어서 감히 특이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또 아뢰기를, “독서당(讀書堂)의 선택은 계품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봉행하지 못하였으니, 매우 타당하지 못합니다.”</p> <p>하였다. 대제학 채유후(蔡裕後)도 입시하였는데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함당하지 못한 자리에 무릅쓰고 있는데, 인재를 가리는 것으로 말하면 더욱 감당하기 어렵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루 동안 벼슬에 있더라도 하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만 공심(公心)이 사심(私心)을 이기지 못할 것이 염려될 따름이다.”</p> <p>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신은 선조(先朝)에서 또한 독서당의 당상으로 있었는데, 독서당의 공해(公廩)를 중창하였습니다.”</p> <p>하고, 채유후가 아뢰기를, “신의 얕은 소견으로 독서당에 뽑을 만한 자가 대여섯 사람 있기는 하나 또한 많을 듯합니다.”</p> <p>하고, 이경석이 아뢰기를, “대여섯 사람이면 많지는 않습니다. 문재(文才)가 성취되는 것은 한 해로 바</p>	<p>久, 尙不奉行, 殊甚未妥矣。” 大提學蔡裕後亦入侍, 進曰: “臣忝冒不似, 至於掄選人才, 尤所難堪。” 上曰: “在職一日, 當盡一日之責, 但恐公不勝私爾。” 景奭曰: “臣於先朝, 亦忝堂上讀書堂, 重創書堂公廩矣。” 裕後曰: “以臣淺見, 可抄於書堂者, 猶有五六人。 而似亦多矣。” 景奭曰: “五六人不至多矣。 文才成就, 未可以朞月期也。” 上謂承旨曰: “讀書堂使之從速抄擇。” 仍賜酒。</p>
--	--	--

	<p>랄 수 없습니다.”</p> <p>하니,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독서당을 빨리 뽑게 하라.”</p> <p>하고, 이어서 술을 내렸다.</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4월 19일(계유) 1번째기사 금군의 수를 1천으로 늘리려 생각하고 호조 에 능료가 모자랄까 염려하여 묻다</p>	<p>이에 앞서 금군(禁軍)의 수는 모두 6백 29원(員)이었는데, 그 뒤에 3백 71원 을 더 뽑았다. 이때에 상이 또 늘려서 1천을 채우려 하였는데, 그 능료(廩料) 가 모자랄까 염려하여 호조(戶曹)에 물었다. 호조가 아뢰기를, “한 해의 전삼세(田三稅)는 쌀이 11만 2천여 석이고 콩이 3만 9천여 석인데, 녹을 나누어 주는 수는 쌀은 10만 석이고 콩은 4만 석입니다. 금군의 수를 이제 1천으로 채운다면 쌀은 잇대어 쓸지라도 콩은 조금 모자라겠습니다. 각 창고의 쌀과 콩이 남아 있는 것이 조금 넉넉하니, 옮겨서 보태면 그래도 지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지용(支用)이 모자라더라도 금군은 더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해에 녹을 나누어 주는 데에 쓰는 것이 어찌하여 10만 석에 이르도록 많은가. 쓸데없고 급하지 않은 것을 태거(汰去)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다.”</p> <p>하였다.</p>	<p>癸酉/先是禁軍之數，共六百二十九員，其後加抄三百七十一員，至是，上又欲 增之以滿一千，恐其廩料不敷，問于戶 曹，戶曹啓曰：“一年田三稅米十一萬 二千餘石、豆三萬九千餘石，而頒祿之 數，米則十萬石、豆則四萬石。禁軍 之數，今若滿千，則米雖繼用，豆或不 贍，而各倉米豆，剩貯稍優，推移相補， 猶可支過矣。” 答曰：“支用雖不足， 禁軍則不可不增置矣。一年頒祿之費， 何至十萬之多乎？汰冗濫去不急，在所 不已也。”</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4월 20일(갑술) 1번째기사 일본 통신사 조형, 부 사 유창, 종사관 남용 익이 사조하여 면유하 여 보내다</p>	<p>일본 통신사 조형(趙珩), 부사 유창(俞場), 종사관 남용익(南龍翼)이 사조(辭 朝)하니, 면유(面諭)하여 보내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사신의 부모와 가족에게 유사를 시켜 특별히 능료(廩料)와 약물(藥物)을 내 리게 하여 내가 위로한다는 뜻을 보이라.”</p> <p>하였다.</p>	<p>甲戌/日本通信使趙珩、副使俞場、從 事官南龍翼辭朝，面諭以遣之，仍上教 曰：“使臣父母家屬，令有司特賜廩餼 藥物，以示予閔勞之意。”</p>
<p>효종 14권, 6년(1655</p>	<p>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경여(李敬輿)가 조정에 돌아왔다. 상이 소견(召</p>	<p>乙(酉) [未] /前領中樞府事李敬輿還</p>

<p>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5월 12일(을미) 1번째기사 전 영부사 이경여가 조정에 돌아와 사례하고 돌아갈 것을 청하였으나 윤희하지 않다</p>	<p>見)하여 이르기를, “황급히 국도를 떠났을 때에 내 마음이 매우 언짢았으나 이제 이미 입조(入朝)하였으니 못 견디게 기쁘다.” 하니, 이경여가 일어나 사례하고 이어서 치사(致仕)하고 돌아갈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위유(慰諭)하고 윤희하지 않으며 술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p>	<p>朝。 上召見之曰：“蒼黃去國之日。 予懷甚惡， 今已入朝， 不勝欣喜。” 敬輿起而謝， 仍請致仕而歸。 上慰諭不許。 命宣醞。</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5월 20일(계묘) 3번째기사 상평청의 쌀 2천 8백 83석과 콩 6백 18석을 강화와 자연도에 나누어 보내다</p>	<p>상평청(常平廳)의 쌀 2천 8백 83석과 콩 6백 18석을 강화(江華)와 자연도(紫燕島)에 나누어 보내라고 명하였다.</p>	<p>命以常平廳米二千八百八十三石、豆六百十八石，分送于江華及紫燕島。</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6월 5일(무오) 2번째기사 제물을 더럽힌 영장 백홍성의 죄를 상소한 광주 유생 배위 등을 정거하게 하다</p>	<p>이에 앞서 순천(順天)의 영장(營將) 백홍성(白弘性)이 선묘(宣廟)의 기일(忌日)에 흥양현(興陽縣)에서 풍악을 벌이고 군사에게 호쾌하였다. 이 날 유생이 석전(釋奠)에 쓸 제물을 받들고 향교에 가는데 백홍성이 문루(門樓)에 앉아 제물을 굽어보았다. 유생이 정로(正路)를 거쳐 가려 하니 백홍성이 바야흐로 진을 쳤다 하여 허가하지 않았다. 유생이 제물은 우로(迂路)를 거쳐 갈 수 없다고 굳이 다투니, 백홍성이 크게 노하여 제물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를 잡아 매를 때렸다. 제물을 가지고 따라가던 자가 이 때문에 흩어지면서 제물을 길가에 버려두었으므로 듣는 자가 모두 통탄하였다. 백홍성이 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스스로 계문하여 유생의 죄를 꾸며서 무고하였다. 이 때에 광주(光州)의 유생 배위(裴緯) 등 1백여 인이 궐하에 와서 상소하여 아뢰고 백홍성을</p>	<p>先是，順天營將白弘性當宣廟諱日，張樂犒軍於興陽縣。 是日儒生，奉釋奠祭物，往鄉校，弘性坐於門樓，俯臨祭物。 儒生欲由正路而行，弘性以方結陣不許，儒生以祭物不可由迂路而行，強爭之，弘性大怒，執祭物陪持人杖之，陪持者因此散去，棄置祭物於路傍，聞者莫不痛惋。 弘性恐被罪，先自啓聞，構誣儒生之罪。 至是光州儒生裴緯等百餘人，來詣闕下，上疏陳</p>

	<p>죄주기를 청하니, 상이 정원을 시켜 그 시비를 의논하게 하였다. 승지 이상진(李尙眞)·정지화(鄭知和) 등이 상의 노여움을 건드릴세라 염려하여, 백홍성과 유생에게 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 다만 가볍고 무거운 구별이 있다고 말하니, 그 소를 물리치고 배위는 해조(該曹)를 시켜 정거(停學)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정원이 정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엄하게 비답하고 듣지 않았다.</p>	<p>白，請罪弘性，上令政院，議其是非。承旨李尙眞·鄭知和等，恐觸上怒，以爲弘性與儒生，俱有所失，但有輕重之別云，命却其疏，裴緯令該曹停學。政院請還收停學之命，上嚴批不聽。</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6월 8일(신유) 5번째기사 병조에서 백홍성과 유생 정석·김기추의 형량을 정하여 아뢰다</p>	<p>병조가 아뢰기를, “백홍성(白弘性)은 국기일(國忌日)에 군사에게 음식을 내렸으므로 매우 놀랍고 괴이하기는 하나, 교생(校生)이 말을 타고 진중(陣中)에 돌입하였다면 영장(營將)이 예리(禮吏)와 교노(校奴)에게 곤장을 친 것은 별로 잘못된 것이 없는데 열읍(列邑)에 통문(通文)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홍양 현감(興陽縣監) 허각(許恪)은 수령의 신분이면서 방편으로 처치하지 못하고 토민(土民)이 왕인(王人)을 모욕하는 것을 좌시하며 감히 그 사이에서 문책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소에 벼슬살이가 변변치 못하였다는 것을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백홍성은 장 80 하되 공죄(公罪)로 논하고, 허각은 장 1백 탈고신(奪告身)하고, 홍양의 유생 정석(丁皙)·김기추(金起秋)는 왕인을 모욕한 율로 시행하되 모두 사죄(私罪)로 논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고 또 본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정석 등을 잡아다가 엄히 형신하여 계문하게 하였다. 판서 원두표(元斗杓)가 상의 뜻에 맞추어, 백홍성이 스스로 변명한 말만을 거론하고 그가 제물(祭物)을 더럽혀 육보인 죄는 전혀 감추고 가벼운 형률을 적용하였고, 도리어 유생이 통문하여 죄를 성토했던 것을 왕인을 내쫓는 것으로 여기고, 또 상이 일찍이 허각을 아울러 다스리려 하였으므로 그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아울러 죄를 논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분개하여 욕하였다.</p>	<p>兵曹啓曰：“白弘性犒饋軍兵於國忌之日，雖甚駭異，而校生騎馬突入陣中，則營將之棍打禮吏及校奴，別無所失，而至於通文列邑。興陽縣監許恪身爲主倖，不能方便處置，坐視土民之侮辱王人，而不敢誰何於其間，常時居官之無狀，推此可知。請白弘性杖八十，論以公罪，許恪杖一百奪告身。興陽儒生丁皙、金起秋施之以侮辱王人之律。而竝論以私罪。”上從之。又命本道監司，拿致丁皙等，嚴刑啓聞。判書元斗杓，迎順上旨，只舉弘性自明之辭，全沒其汚辱祭物之罪，擬以輕律，反以儒生之通文聲罪，爲驅逐王人，且上曾欲竝治許恪，故知其無罪，而竝請論罪，人皆憤罵。</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6월 15일(무진) 3번째기사 관학 유생 이해 등이 상소하여 백홍성을 치 죄하고 호남 유생들을 풀어주길 청하다</p>	<p>관학 유생(館學儒生) 이해(李嵒) 등이 상소하기를, “사전(祀典)을 엄하게 하는 것은 선성(先聖)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사기(士氣)를 부추기는 것은 국맥(國脈)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이 엄하지 않으면 제사를 올리더라도 미치지 못한 법도에는 오히려 흠향이 없을 것이고, 사기를 부추기지 못하면 학교를 설치하더라도 퇴폐한 풍속에는 외려 교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례(失禮)가 있으면 반드시 불경(不敬)하다 하여 죄주고, 조금 과격하더라도 반드시 피어 도와서 인도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어찌 신명을 업신여긴 자가 요행히 죄를 면하고 선비인데도 형벌을 받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우리 국조(國朝)는 제사를 돌보는 법을 전대(前代)보다 더욱 삼가서 종묘와 사직에 이어 석채(釋采)를 가장 중히 여기므로 생뢰(牲牢)·자성(棗盛)이 풍성한 것이 태묘와 같고 준이(尊彝)·종거(鍾虬)의 수효는 임금의 제도를 갖추어 쓰며 축문·폐백에 휘(諱)를 쓰고 정승이 일을 맡으니, 먼 지방에서 의물(儀物)이 같지 않을지라도 엄숙하고 공경하는 뜻에는 어찌 차이가 있겠습니까. 희생·폐백이 지나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말과 수레에서 내리는 것으로 말하면 공경을 넓히는 까닭이므로 어기는 것이 있으면 관형(官刑)을 베푸니, 그 공경하고 엄숙한 것이 지극합니다. 인재를 기르는 즐거움이 성대한 것은 삼대(三代)에다 뒤미처 짝하였고 돕고 진작하는 방도와 사기를 일으키고 현재(賢才)를 기르는 규례를 극진히 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궁벽한 시골이나 먼 지방에서는 가르치는 방법이 혹 부족할지라도 백성을 새롭게 하는 교화는 어느 먼 지방인들 입지 않겠습니까. 포의(布衣)의 항론(抗論)에 대해서는 번번이 포용을 보이고 망령된 것이 있더라도 죄주지 않았으니, 너그러이 용납하는 것이 지극합니다.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모두 구법(舊法)을 따르고 전헌(前憲)을 폐기한 것이 없으시며 공경히 신명을 섬기고 예로 선비를 대우하는</p>	<p>館學儒生李嵒等上疏曰： 嚴祀典，所以尊先聖也，扶士氣，所以樹國脈也。祀典不嚴，則俎豆雖陳，不及之儀，猶無享也。士氣不扶，則庠舍雖設，頽廢之俗，猶無教也。是以，一有失禮，必以不敬而加之，雖少過激，亦必誘掖而導之。自古爲國，曷嘗有慢神者幸免，爲士而受刑者哉。惟我國朝恤祀之典，尤謹於前代，自宗廟社稷以往，最重釋采，牲牢棗盛之殷，品視太廟，尊彝·鍾虬之數，備用王章，祝幣書諱，上宰莅事，雖遐方下土，儀物不等，而嚴敬之義，豈有間哉？至於牲幣所過，大小皆下路馬乘車，所以廣敬，苟有所失，皆麗官刑，其祇肅至矣。菁莪樂育之盛，追配三代，輔翼振作之方，興士養賢之規，靡極不用。雖窮鄉遐土，教具或闕，而作新之化，何遠不被哉？至於布衣抗言，每示包容，縱有狂妄，亦不加罪，其優容至矣。恭惟主上殿下，自御極以來，率循舊卞，無廢前憲，敬以事神，禮以待士，自是本朝家法，遠近之望曰：‘必能至德馨香，殷禮無闕，士氣大振，狂簡成章。豈料因一武夫，挾兵</p>
---	--	--

것은 본디 본조(本朝)의 가법(家法)이므로, 원근이 바라기를 ‘반드시 지극한 덕이 향기를 멀리 미치고 성대한 예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서, 사기가 크게 떨치고 이상만 높고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문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어찌 한낱 무부(武夫)가 군사를 내세워 교만하게 굴어서 모욕이 선성(先聖)에게 미쳐도 사구(司寇)가 죄를 묻지 않고 도리어 엄하고 급한 형벌을 선성을 높이는 선비에게 시행할 줄 알았겠습니까. 백홍성(白弘性)의 죄는 이미 호남 선비의 상소 가운데에 상세하니, 허각(許恪)의 함사(緘辭)는 다시 번거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모화관(慕華館)에서 무시(武試)의 개장(開場)이 있거나 도감(都監)이 군졸을 조련할 때에도 향축(香祝) 또는 제릉(諸陵)의 제물이 혹 지나가면 명관(命官) 이하가 다 계하(階下)로 내려가 공경히 배웁니다. 영장(營將)은 조정에서 명한 것이기는 하나 그 존귀하기가 어찌 명관·대장과 같겠으며, 문묘의 제물은 서울과 지방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대저 명을 받들어 시험을 관장하고 진영을 벌여 싸움을 익히는 것도 국가의 큰일인데 오히려 고관이 깎듯하게 굽히고 장수가 내려와 절하거늘 더구나 수백 명의 재주를 시험할 뿐인 한 고을의 속오(東伍)이겠습니까. 백홍성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거만스레 스스로 방자하여 성묘(聖廟)의 제물을 보고도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문루에 기대어, 배종하여 제물을 가져가는 전복(典僕)과 뒤따르는 예리(禮吏)를 잡아 놓고 흰 곤봉이 어지러이 날고 군례(軍隸)가 혼잡하게 달려들어 자성(棗盛)·주례(酒醴)를 길거리에 버려두게까지 하였으니, 한(漢)나라의 법으로 논하면 어찌 불경한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주금(酎金)은 작은 일인데 귀척(貴戚)이 제후(諸侯)의 작(爵)을 잃으며 죄를 받고, 묘연(廟壩)은 빈 땅인데 임강(臨江)이 하옥되어 자살하였습니다. 이제 거칠고 사나운 한낱 무변(武弁)이 완악하고 미련한 짓을 멋대로 하고 희생을 함부로 버렸어도 법리(法吏)의 평의가 가해지지 않으니,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또, 정석(丁皙) 등은 모두 재궁(齋宮)에 모였다가 그 일을 목견하였고 선성을

自驕，侮及先聖，而司寇不問，反行嚴急之刑於尊聖之士哉。弘性之罪犯，已悉於湖土疏中，許恪緘辭，不必更煩。竊觀慕華館武試開場，都監鍊卒，香祝若諸陵祭物或過，則命官以下，皆降階祇送。營將雖朝廷所命，其尊豈若命官大將？文廟祭物，內外何別？夫承命掌試，開營習戰，亦國家大事，猶且冠帶鞠躬，介胄下拜，況一縣東伍，只是數百試才。弘性何人，敢爲傲然自肆，視聖廟祭物，曾無祇敬之心。據倚門樓，捉持陪持典僕及隨後禮吏，白掬亂飛，軍隸雜沓，至使棗盛酒醴，棄置衢路。論以漢法，詎免不敬之律哉？酎金，小事也，貴戚失侯抵罪，廟壩，隙地也，臨江下獄自殺。今至使麤悍一弁，肆其頑癡，橫棄牲牲，而吏議不加，抑獨何哉？且丁皙等，咸聚齋宮，目見其事，尊聖嫉惡，自是秉彝常性，衆怒水次，寧顧一時之少激哉？朝廷所以深罪者，不過以通文一事。通文之規，不知自何代權輿，而凡有儒林盛事，學宮大舉，皆用通文，實非作俑於今日也。夫子之廟，既非興陽之獨私，則通告士林，固是例事，抑有何罪

높이는 것은 본디 도리를 지키는 떳떳한 마음이므로 못사람의 분노가 격렬하였으니, 어찌 한때 조금 과격할 것을 돌보겠습니까. 조정에서 매우 죄책하는 까닭은 통문(通文)한 한 가지 일 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문하는 규례는 어느 세대부터 시작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무릇 유림(儒林)의 성대한 일 또는 학궁(學宮)의 큰 일이 있으면 다 통문을 쓰니, 실로 오늘에 선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자(夫子)의 사당은 흥양(興陽)만이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사림에 통고하는 것이 본디 예사로운 일인데, 또한 무슨 죄가 있습니까. 통문이라는 것은 또 그 사람을 몰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어 감히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많은 선비를 불러 모아 논의가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혹 도주(道主)에게 정문(呈文)하거나 대궐에 하소하여 죄를 청해야 차례가 맞는 일입니다. 이것은 학궁의 통규(通規)로서 예전부터 그러하였고 아직 조금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통문한 것을 죄안(罪案)으로 삼는다면 안으로는 관학(館學)부터 밖으로는 교원(校院)까지 무릇 유적(儒籍)을 가진 자는 누가 이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의 분부에 이른바 조정의 명신(命臣)을 몰아 쫓아낸다고 하신 것은 어찌 매우 억울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 신해년 에 적신(賊臣) 정인홍(鄭仁弘)이 선정신(先正臣) 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을 모욕하고 배척하였으므로 태학생(太學生)이 함께 분노하여 유적에서 이름을 삭제한 것을 당세에서 쾌하게 여겼습니다. 대저 정인홍은 산림(山林)에 몸을 가탁하고 재상 자리에 몸을 붙였으니, 그 무겁고 높기가 어찌 백홍성에 견주겠습니까마는, 사기가 격분한 것을 공론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정석 등이 다투는 것은 그 때에 견주어 의논할 것이 아니기는 하나, 그 뜻은 성묘를 높일 줄 아는 것이고 그 일은 학궁의 통규입니다. 지위를 헤아리면 정인홍의 형세가 높고 일을 견주면 성묘의 체례(體例)가 크며 벌을 논한다면 빈말이 삭적(削籍)에 비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는 찬찬히 밝히

哉。所謂通文，又非迫逐其人，只是事係重大，不敢自專，倡合多士論議往來，然後或呈文道主，或叫閣請罪，方可次第舉也。此學宮通規，自古而然，未之或廢。若以擅發通文，爲其罪案，則內自館學，外而校院，凡有儒籍，誰能免此。聖教所謂驅逐朝廷之命臣者，豈非可冤之甚乎？昔在辛亥年間，賊臣仁弘，侮斥先正臣李彥迪、李滉，太學生共憤，而削名於儒籍，當世快之。夫仁弘假迹山林，托位鼎鉉，其重其尊，豈弘性之比哉？士氣所激，公論許之。今日丁哲等所爭，雖非擬議於曩時，而其志則知尊聖廟，其事則學宮通規。度位則仁弘勢尊，較事則聖廟體大，論罰則空言，孰與削籍？殿下不加徐究，遽施風霆，先入一夫自明之偏說，未察多士尊聖之至意，暴摧以情外之教，至加以嚴訊之命。噫！盛暑拷掠，人命難期，設有不幸，卒然濫先，則豈不有悔於他日也？聖教一下，群情錯愕，薦紳無光，朝野失色，孰謂聖明在上，而乃有此等氣象也。自古儒士之被刑者，或因詩案，或因口語，未聞以尊聖獲罪。通文售禍也。此既然

지 않고 문득 진노하시어 한 사람이 스스로 변명한 치우친 말을 먼저 듣고는 많은 선비가 선성을 높이는 지극한 뜻을 살피지 않으시어 뜻밖의 하교로 사납게 꾸고 엄히 형신하라는 명까지 더하셨습니다. 아아, 한더위에 고문하면 사람의 목숨을 기약할 수 없으니, 혹 불행히 갑자기 죽는다면 어찌 뒷날에 후회가 없겠습니까. 성상의 분부가 한 번 내려지자, 못사람의 심정이 놀라고 벼슬아치가 풀이 죽어 조야가 실색하였으니, 누가 성명이 위에 계신데 이런 기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예전부터 선비가 형벌을 받는 경우는 시안(詩案) 때문이거나 말씨 때문이지, 선성을 높였기 때문에 죄받거나 통문한 것 때문에 화를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이미 그렇거니와, 배위(裴緯) 등이 다시 상소하자 이어서 정시(停試)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전전하여 죄를 연좌시키는 것이 어찌다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저 호남의 선비들이 어찌 사사로운 원한이 있어서 백홍성에 대해 매우 분노하겠습니까. 다만 문묘의 일이 중대하고 또 정석 등이 뜻밖에 법망에 걸렸으므로 먼 길에 발이 부르터가며 대궐에 와서 호소한 것입니다. 실로 조정에서 선성을 높이고 제사를 중히 여기는 성덕(盛德)만을 믿고 소원하고 미천한 자신의 참람한 것이 혐의가 된다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서 분을 품고도 고할 데가 없으므로 부모에게 하소한 것이니, 그 뜻이 가상하고 그 심정도 슬픔니다. 한두 사람이 죄받은 것은 본디 말할 것도 못되나, 성조(聖朝)에서 어진 인재를 많이 기르는 뜻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남의 많은 유생들의 마음에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어진 사관(史官)이 있어서 ‘어느 고을의 석전(釋奠)의 제물이 영장 백홍성의 손에 더럽혀졌는데도 백홍성은 죄받지 않고 상소한 유생이 벌받고 교생(校生)이 형신을 받았다.’고 쓴다면 후세에서 금세를 보고 또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또 신들이 듣자니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성종(成宗)께서 일찍이 편찮으시므로 안에서 주관하여 무당을 두고 벽송정(碧松亭) 뒤에서 빌었는데, 대개 자

矣, 而裴緯等, 復以陳疏, 繼下停試之命, 輾轉收司, 一何至此? 彼湖士等, 豈有私怨深怒於弘性。 只爲文廟事重, 且悶丁哲等橫被文網, 百舍重繭, 叫雲闐闐。 實恃朝廷尊聖重祀之盛德, 不量其身疎賤僭越之爲嫌, 懷憤莫告, 疾呼父母, 其志可尙, 而其情亦戚矣。 一二人被罪, 固不足道, 其在聖朝據樸之義, 未知如何? 其在湖南滿萬章甫之心, 以爲如何? 若有良史氏書之曰: ‘某邑釋奠之物, 見汚於營將白弘性, 弘性不以此被罪, 而疏儒蒙罰, 校生受刑云。’ 則後世之視今世, 亦以爲何如也? 且臣等竊伏聞, 成廟嘗違豫, 自內裏設巫禱於碧松亭後, 蓋長樂意也。 當時多士, 驅逐諸巫, 打破供具, 東朝震怒, 將置之罪, 成廟聞之, 至有士氣如此, 予病自瘳之教, 深嘉不已。 至今傳爲美談, 在於長老之耳。 聖祖之意, 豈不以士氣於國, 猶元氣於人, 必培植而滋養, 激勸而興起, 然後是氣不餒, 能配道義也。 湖南多士之欲尊聖廟, 胡大罪也, 而殿下不惟不能煦嘘太和, 導迎善氣, 又從而暴摧折之, 雪霜所加, 生意索然。 我祖宗深培厚養,

	<p>전의 뜻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선비가 무당들을 몰아내고 공구(供具)를 때려 부수었으므로 자전께서 진노하여 죄주려 하셨는데, 성종께서 듣고서 사기(士氣)가 이리하니 내 병이 절로 낫겠다는 하교까지 하고 매우 칭찬하여 마지않으셨습니다. 이제까지 미담으로 전하여 장로(長老)들이 압니다. 성조(聖祖)의 뜻이 어찌, 나라의 사기는 사람의 원기와 같으므로 반드시 심어 가꾸고 키우고 격려하여 흥기하고서야 이 기운이 부족하지 않아서 도의(道義)를 갖출 수 있으리라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남의 많은 선비가 성묘를 높이려 한 것이 어찌 큰 죄이겠습니까마는, 전하께서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선기(善氣)를 이끌어 들이지 못하실 뿐더러 또 이어 사납게 꺾으셨으므로 눈과 서리를 맞은 듯이 생기를 잃었습니다. 우리 조종께서 깊이 배식하고 도답게 양육하여 사기를 성취시키려 하신 것이 이에 이르러 다시는 끼친 뜻이 없어졌으니, 이것이 어찌 억만년 국맥(國脈)을 길게 하고 조상이 자손을 위하여 좋은 계책을 끼치고 도와서 평안하게 하는 도리이겠습니까.</p> <p>아아, 사전(祀典)은 큰일인데 이토록 모욕하여도 버려두고 문책하지 않으며, 통문은 예사인데 전전하여 잇달아서 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 지방에서 들리는 말이 혹 진실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이미 문묘의 제물을 모욕하였다면 본디 금오(金吾)에 잡아다 실상을 캐내고 시행해야 할 율(律)을 시행해야 옳을 것인데 죄상이 이처럼 명백하여도 조정에서는 도리어 덮어 감쌌습니다. 또 호남의 선비들에게 과격한 말이 있었다라도, 사문(斯文)에 관계된 바에야 또한 그 광망(狂妄)한 것을 용서하고 그 정기(正氣)를 성취시켜서 성묘를 높이는 마음을 위로해야 옳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본정(本情)은 결코 다른 뜻이 없는데도 조정에서는 또 꺾어 욱보였습니다. 이 뒤로는 중외의 여러 제사에 불경하기가 이보다 큰 것이 있더라도 조정에서 들을 수 없고, 뒷날 사문에 불행하기가 이보다 큰 것이 있더라도 사론(士論)이 나올 수 없을까 신들은 걱정입니다.</p>	<p>所以成就士氣者，到此無復遺意。此豈億萬斯年永壽國脈，貽謨燕翼之道哉？嗚呼！祀典，大事也，侮辱至此，而置而不問，通文，例舉也，輾轉相仍，而至於加刑。設使遠外聽聞，或有未實，既曰侮辱文廟祭物，則固當拿致金吾，究問實狀，以施當施之律可也，罪狀明白如此，而朝廷反掩護之。且於湖士輩，雖有過激之語，而既曰關係斯文，則亦當恕其狂妄，成其正氣，以慰尊聖之心可也。況其本情，斷無他意，而朝廷又折辱之。臣等恐從今以後，中外諸祀，雖有不敬，大於此者，朝廷無自以聞，他日斯文，雖有不幸。大於此者，士論無自而發。且弘性可罪之論，豈但興陽之士。獨有此心？實是湖中多士所共憤也。不獨湖士爲然，數千里冠章甫者，舉同此心矣。然則丁哲之受刑，環湖之士，皆受其痛矣，裴緯之被停，舉國之士，皆與之不幸矣。既係聖廟，理無內外，豈可以事在興陽，而猶越視秦乎。茲冒萬死，略陳愚衷焉。</p> <p>答曰：朝家處置，似非偶然，亦非侮聖而然也，爾等毋事紛紜，退修學業。”</p>
--	--	--

	<p>또, 백홍성을 죄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어찌 흥양(興陽)의 선비만 이 마음을 가진 것이겠습니까. 실로 호남의 많은 선비가 함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호남의 선비들이 그러할 뿐이 아니라 수천리의 장포(章浦)를 쓴 자들이 모두 이 마음을 같이합니다. 그렇다면 정석이 형신을 받는 것은 온 호남의 선비가 다 그 고통을 받는 것이고, 배위가 정거(停擧)당하는 것은 온 나라 안의 선비가 다 불행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묘에 관계되었으면 중외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흥양에서 있었던 일이라 하여 월(越)나라 사람이 진(秦)나라 사람을 보듯이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 번 죽을 죄를 무릅쓰고 어리석은 마음을 대략 아뢰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 “국가의 처치는 우연한 것이 아닌 듯하고, 성묘를 모욕하여 그런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분란을 일삼지 말고 물러가 학업을 닦으라.”</p> <p>하였다.</p>	
<p>효종 14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6월 25일(무인) 1번째기사 평안도 평양부의 백성이 한 태에 두 사내아 이와 세 계집아이를 낳다</p>	<p>평안도 평양부(平壤府)의 백성이 한 태(胎)에 두 사내아 이와 세 계집아이를 낳았는데, 본도에 명하여 먹을 것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戊寅/平安道平壤府民， 一胎產二男一女， 命本道賜食物。</p>
<p>효종 15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7월 17일(기해) 1번째기사</p>	<p>이때 여러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상이 하교하였다. “아, 과인이 부덕하여 하늘에 죄를 얻었기 때문에 백성으로 하여금 대신 그 재앙을 받게 했으니, 내 마음이 칼로 에이는 듯하여 차라리 지금 당장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누차에 걸쳐 근신을 보내어 경건히 기도를 올렸으나 무</p>	<p>己亥/時數月不雨。 上下教曰：“嗚呼！寡昧不辟， 獲戾于天， 使民替受其殃， 予心如割， 寧欲溘然。 屢遣近臣， 虔誠祈禱， 而頑雲乍凝， 若雨不雨， 復過</p>

<p>가뭄이 심해 기우제를 행하기로 하고 해조로 하여금 날을 가리지 말고 거행케하다</p>	<p>정한 구름은 잠깐 엉겨 비가 오려고 하는 것 같다가 내리지 않으니, 다시 며칠을 지난다면 농사를 망치게 될 것이다. 내가 희생(犧牲)을 대신하여 친히 기도를 드리고자 하니, 해조로 하여금 날을 가리지 말고 거행하게 하라.”</p>	<p>數日，穡事已矣。 予欲代犧親禱，其令該曹，不卜日舉行。”</p>
<p>효종 15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7월 17일(기해) 3번째기사 가뭄으로 정전을 피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등의 일을 행하고 교지를 내리다</p>	<p>상이 하교하기를, “내가 외람되이 자리에 오른 이래로 마음을 놀라게 하고 눈에 참혹한 재앙과 변이가 매달 발생하니, 조종이 부여해주신 무거운 책임을 실추시킬까 두려워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우려하고 두려워하며 편안히 거처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한재의 참혹함이 가을에 접어든 이후에 발생하여 모든 곡식이 타죽고 말라죽으니, 결단코 가을에 결실을 보게 될 희망이 없게 되었다. 애처로운 우리 백성들이 머지않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 일을 두고 장차 누구를 탓할 것인가. 조용히 생각해 볼 때 낮부끄러운 점이 있으니 어찌 농사만 탓하고 스스로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죄는 실로 나에게 있는데 하늘은 어찌하여 나에게 재앙을 내리고 우리 만백성의 목숨을 살리지 않는가. 말이 여기에 미치니 마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듯하여 감회를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다. 이제부터 정전을 피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일 것이니, 금주(禁酒) 등의 일도 또한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승지는 나를 대신해 교서를 기초하여, 널리 직언을 구하여 나로 하여금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또 생각건대, 오늘의 일은 책임이 과인에게 있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 또한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바라건대 우리 중외의 대소 군신들은 나의 경황없고 속타는 지극한 뜻을 이해하고, 각자 경건한 마음으로 봉직하여 상하가 서로 수양하는 도리를 다해 주었으면 한다.”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하신 내용이 전하의 마음을 충분히 다 표현하여 우려하고 두려</p>	<p>上下教曰： 予自忝位以來，驚心慘目之災異，式月斯生，恐墜祖宗付畀之重，夙夜憂懼，不遑寧處。 及至今日，旱暵之慘，出於金神按節之後，百穀焦枯，斷無西成之望。 哀我民生，大命近止，是將誰咎。 靜言思之，有覩面目，其可罪歲，而自安乎？ 罪實在予，天乎天乎，何不降殃于寡躬，而活我齊民之命乎？ 興言及此，若隕淵谷，無以爲懷。 自今避正殿減膳矣，禁酒等事，亦令該曹舉行。 承旨代予草教，廣求直言，使予得以遷善改過。 且念今日之事，責在寡躬，而在廷臣僚，亦安得晏然而已乎？ 惟我中外大小群工，體予憂遑煎灼之至意，各自惕慮奉職，以盡上下交修之道。 政院啓曰：“聖上下教之辭，寫盡宸衷憂畏之誠，溢於言表。 雖欲更爲模寫，不能彷彿其萬一，請以聖教，播告中外。” 從之。 是夕雨下如注，達夜不</p>

	<p>위하는 정성이 말 밖으로 넘치니, 비록 다시 베껴 쓰려고 하더라도 그 만분의 일도 비슷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상의 하교로써 중외에 포고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날 저녁에 비가 쏟아붓는 것처럼 내려 밤새 그치지 않았다. 상이 하루 동안에 누차 자신을 자책하는 교서를 내려 내용이 몹시 간절하였는데, 미처 친히 기도드리지도 않아서 큰비가 이처럼 내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극한 정성에 감동된 바라 하였다.</p>	<p>止。上，於一日之內，累下罪己之教，辭甚懇惻，未及親禱，大霈如此，人以爲至誠所感。</p>
<p>효종 15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8월 1일(임자) 2번째기사 주강에서 《시전》 별목장을 강독하고 봉당에 대해 논하다</p>	<p>상이 주장에 나아가 《시전》 별목장(伐木章)을 강하였다. 영경연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p> <p>“이 시는 술을 마시면서 서로 즐겁게 노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옛사람은 술을 절제하면서 마신 것이 이와 같았는데, 요즈음 사람들은 대부분 진탕 마셔서 위의를 상실하고 일을 폐지하기까지 하니, 매우 가증스러운 일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어찌 한갓 위의를 상실하고 일을 폐지하기만 하겠는가. 몸을 망치고 목숨을 잃는 자도 종종 있다.”</p> <p>하였다. 대사헌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p> <p>“옛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은 단지 기쁨을 함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니, 어찌 요즘 사람처럼 절제할 줄을 알지 못하여 얻어지는 데까지 이르렀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술 한 잔을 올리는 예에 손님과 주인이 백 번이나 절을 하였다. 봉우란 덕을 벗하는 것으로 비록 술을 마시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다 권면하고 충고하는 도리가 있었는데, 요즈음 사람들은 오직 지나치게 흥허물이 없고 무례한 것만을 일삼는다.”</p> <p>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p> <p>“지금 세상은 봉우의 도리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p>	<p>上御晝講，講《詩傳》《伐木章》，領經筵沈之源曰：“此《詩》云飲酒以相樂，古人之節飲如此，而今人率多崇飲，至於失儀而廢事，甚可惡也。”上曰：“豈徒失儀廢事。亡身殞命者，往往有之矣。”大司憲洪命夏曰：“古人飲酒，只爲合歡而已，豈有如今人不知節，以至傾敗者也。”上曰：“一獻之禮，賓主百拜，朋友者，友其德，雖盃酒之間，皆有勉勵責善之道，而今人唯以狎侮褻慢爲事矣。”之源曰：“今之世，無朋友之道久矣。”上曰：“一自色目既分之後，所謂朋友者，同聲相應，各自爲友，苟其同志者，雖有過失，必相掩護，了無責善之道，豈不寒心乎。”之源曰：“朋黨之弊，觸事有害矣。”上曰：“其始非必欲爲朋黨，而同己者與之，異己者排之，終不免爲黨者，亦有之矣。”命夏曰：“大抵人情，</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번 당색이 나누어진 뒤로는 이른바 봉우란 것이 한 목소리로 서로 호응하면서 각자 친구를 하여, 진실로 뜻을 같이하는 자이면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반드시 서로 덮어주고는 전연 충고하는 도리가 없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p> <p>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 “봉당의 폐단은 일마다 피해가 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처음에는 꼭 봉당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자기와 같은 자를 편 들고 자기와 다른 자를 배척하다보니 끝내는 봉당이 되어버린 자도 또한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대저 인정이란 친하면 잘못된 점을 덮어주고 싶고 소원하면 그렇지 않은 법이니, 말류의 폐단은 저절로 봉당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대개 ‘봉(朋)’이란 것은 착한 도리로 사귀는 공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당(黨)’이란 것은 착한 도리로 사귀지 않고 사사로이 서로 협조하는 것을 말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사로이 돕고 싶은 생각은 근엄하게 공경을 유지할 때에는 나오지 않고 가까이 하는 즈음에 쉽게 발하는 것이다. 이 시는 ‘화락하되 지나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p> <p>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당(黨)’이라는 한 글자는 선묘조 계유년 으로부터 비로소 있게 되었는데, 선배들은 그래도 사대부로 자처하였으므로 오늘날처럼 극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당쟁만을 주로 하면서 조금도 거리끼는 것이 없고, 봉우간의 충고하는 도리나 국가가 잘되고 잘못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연</p>	<p>親則欲護其非， 踈則不然， 末流之弊， 自歸於朋黨矣。 蓋朋者， 以善道相交， 而出於公心者也， 黨者， 不以善道相交， 而私相比附之謂也。” 上曰：“私比之意， 不出於莊敬之時， 易發於親昵之際。 此《詩》可謂和樂而不淫矣。” 命夏曰：“黨之一字， 自宣廟朝癸未年， 始有之， 而先輩則猶以士夫自處， 故不至如今日之甚。 今則專主黨比， 無復顧忌， 至於朋友責善之道， 國家利病之源， 全不顧念， 此亦士夫風節， 掃地而然矣。” 侍讀官李端相曰：“君子小人， 各自爲朋， 則辨之似易， 而今日之黨， 邪正混雜， 不能辨別， 其弊漸痼， 不可救矣。”</p>
--	---	--

	<p>아랑곳하지 않으니, 이것은 또한 사대부의 풍도가 모두 사라져 그런 것입니다.”</p> <p>하니, 시독관 이단상(李端相)이 아뢰기를, “군자와 소인이 각자 봉당을 하면 변별하기가 용이할 듯한데, 오늘날의 봉당은 정사(正邪)가 뒤섞여 있어서 변별할 수가 없으므로 그 폐단이 점차 고질화되어 구제할 수 없습니다.”</p> <p>하였다.</p>	
<p>효종 15권, 6년(1655) 을미 / 청 순치(順治) 12년) 12월 13일(계해) 1번째기사 전을 시행하는 법을 영돈녕부사 김육의 청에 의해 박수진을 등용하여 다시 정하다</p>	<p>전(錢)을 시행하는 법을 다시 정하였다. 처음에 전법(錢法)을 시행하려 했는데, 전이 적어 쓰기에 부족하여 양서(兩西) 연로의 제읍에만 겨우 시행했으나 거기도 또한 통행되지 않았으므로 상이 듣고 우선 서서히 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영돈녕부사 김육이 청하기를, “다시 법을 정하여 경기(京畿)의 작미(作米) 매 1결(一結) 8두에서 1두는 전으로 대신하되 곡물이 귀하면 2두를 전으로 대신하며, 점포를 기전(畿甸)과 양서(兩西)에 설치해서 가까운 데로부터 먼 곳에 미쳐 서울과 지방에 통행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고 호조·형조·한성부·장례원의 속포(贖布)는 전(錢)과 포(布)를 절반씩 하는 것을 허락하고 각사(各司) 공물가(貢物價)의 5분의 1과 각사의 고역(雇役), 호조·병조의 요포(料布)의 3분의 1은 다 전으로써 대신하도록 하소서. 또한 돈은 일정한 값이 없이 때에 따라 조절하는데 은(銀)을 기준으로 그 값을 정하되 은 한 냥(兩)을 전 6백 문(文)에 해당시키며, 미(米)와 포(布)는 은 값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하는데 쌀 1승(升)의 값은 전 4문에, 은 1냥의 값은 쌀 1섬에 해당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또 전을 훼손하는 것을 신칙하여 엄금하소서.”</p> <p>하고, 이어서 차자를 올려 박수진(朴守眞)을 천거하여 돈을 통행시키는 일을 위임할 것을 청하니, 상이 그대로 허락하였다.</p> <p>이때 전을 훼손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 비록 엄하였으나, 주장(鑄匠)의 무리가</p>	<p>癸亥/更定行錢法。初錢法將行，而錢少不足於用，僅行於兩西沿路諸邑，而亦未通行。上聞之，命姑徐之。至是領敦寧府事金堉，請更定科條，京畿作米，每一結八斗，一斗則代以錢，而穀貴則二斗代錢，設鋪子於畿甸及兩西，自近及遠，使得通行於京外。戶·刑曹、漢城府、掌隸院贖布，許以錢布參半，各司貢物價五分之一，各司雇後戶、兵曹料布三分之一，皆以錢代之。錢無定價，隨時低昂，以銀折定其價，銀一兩直錢六百文，米布視銀直高下，米一升直錢四文，銀一兩，直米一石。且申嚴毀錢之禁。仍上筭薦朴守眞，委以行錢之事。上，許之。時錢禁雖嚴，鑄匠輩以爲錢必不行，煽誘閭里，以廉價買錢，潛入山中，鑄成器皿。由是錢日益耗，常平所貯之錢，通計散</p>

	<p>전은 결코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며 민간을 선동하여 염가로 전을 사들여 몰래 산속에 들어가 그릇들을 주조했다. 이로 말미암아 돈은 나날이 더욱 줄어들었으므로 상평청에 저축된 돈과 흩어져 밖에 있는 것을 통계해 보아야 수십만 관(貫)도 채 되지 않았다. 겨우 중인(中人) 열 가구의 자산쯤 되는 양을 가지고서 온 나라에 두루 시행하려 했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김육은 돈이 적어서 시행되기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한 채 법이 정립되지 않아서라고 탓하여, 법을 다시 정하며 가혹하고 심하게 하니, 한 번씩 변경할 때마다 백성들은 번번이 손해를 보았다. 의논하는 자들이 다 그르다 하고 상께서도 또한 싫어하였으나, 김육은 견지하기를 오히려 굳건히 하였다. 박수진은 서울 사람이다. 본래 용렬하고 비루했으며, 가정이 몹시 가난하였다. 일찍이 한 가옥을 짓는데 계약으로써 초부(樵夫)·목동(牧童)을 모집하여 부역을 시켰다. 사람이 더러 그가 재능이 있다고 말하고, 수진이 또 “나를 등용하면 돈을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김육이 그것을 듣고 조정에 천거하였던 것이다. 수진은 얼마 안 가서 질병이 발생하여 죽었다.</p>	<p>在外者，不滿數十萬貫。 僅以中人十家之產，欲以遍行於國中，所以行之之難也。 堉不知錢少難行，而咎法之不立，更定科條，苛細漸甚，每一變更，民輒失利，議者皆以爲非，上亦厭苦之，堉持之猶堅。 朴守眞京人也，素庸鄙，家甚貧。 嘗營一屋，以計募樵童役之人。 或言其有才，守眞又言，用我則錢可行，堉聞之，薦于朝。 守眞尋遇疾而死。</p>
<p>효종 16권, 7년(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1월 5일(갑신) 3번째기사 대궐 뜰에서 시위 장사에게 술을 하사하다</p>	<p>대궐 뜰에서 시위 장사(侍衛將士)에게 술을 하사하였다.</p>	<p>賜酒侍衛將士于闕庭。</p>
<p>효종 16권, 7년(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1월 16일(을미) 2번째기사</p>	<p>도목정(都目政)을 하였다. 홍명하(洪命夏)를 대사성으로, 송준길(宋浚吉)을 찬선으로, 권시(權認)를 진선으로 삼았다. 권시는 담론을 잘하고 기개를 숭상하여 방외지사(方外之士)로 자처하였다. 본래 술을 좋아하여 취하기만 하면 팔을 휘두르며 큰소리를 치니 사람들이 감히 당하지 못하였다. 송시열(宋時烈)·</p>	<p>爲都目政，以洪命夏爲大司成，宋浚吉爲贊善，權認爲進善。 認善談論，尙氣概，自處以方外之士。 性嗜酒，醉輒揚臂大言，人莫敢當。 與宋時烈、</p>

<p>홍명하·송준길·권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p>	<p>송준길(宋浚吉) 등과 사귀었으면서도 진퇴는 달리 하였다. 채충원(蔡忠元)을 승지로, 민정중(閔鼎重)을 교리로, 이재(李梓)를 보덕(輔德)으로, 서필원(徐必遠)을 수찬으로, 권대운(權大運)을 이조 정랑으로, 윤희(尹鑄)를 자의(咨議)로 삼았다. 윤희는 독서를 많이 하여 당시 이름이 있었으나, 상도를 따르지 않아 괴이한 행동이 꽤 있었다.</p>	<p>宋浚吉等從遊，而趨舍不同。蔡忠元爲承旨，閔鼎重爲校理，李梓爲輔德，徐必遠爲修撰，權大運爲吏曹正郎，尹鑄爲咨議，鑄多讀書有時名，而不循常軌，頗有說異之行。</p>
<p>효종 16권, 7년(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2월 9일(무오) 2번째기사 병으로 조정에 나오지 못하는 전 판서 조경에게 음식물을 넉넉히 주도록 하교하다</p>	<p>전 판서 조경(趙綱)이 포천(抱川) 고을에 물러가 살면서 병 때문에 상의 부름에 나오지 못하니, 상이 하교하였다. “조경이 오래도록 시골에 있으며 병으로 부름에 나오지 못하니, 내가 매우 딱하게 여긴다. 본도(本道) 감사로 하여금 음식물을 넉넉히 주어 내가 늙은 신하를 잊지 못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p>	<p>前判書趙綱退居抱川縣，以病不赴召。上下教曰：“趙綱久在田野，病未能赴召，予甚愍焉。其令本道監司，優賜食物，以示予不忘老臣之意。</p>
<p>효종 16권, 7년(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2월 24일(계유) 1번째기사 상평청에 명하여 동·서 활인서의 병자들에게 식량과 반찬을 주도록 하다</p>	<p>상평청에 명하여 동·서 활인서(活人署)의 병자들에게 식량과 반찬을 주도록 하였다.</p>	<p>癸酉/命常平廳，賜糧饌于東西活人署病人。</p>
<p>효종 16권, 7년(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3월 7일(병술) 1번째기사 영중추부사 이경여가</p>	<p>또 신이 듣건대 영남의 흉년은 근고에 없었던 바로 가을과 겨울부터 이미 떠돌며 빌어먹는 자가 있고 이 지역의 백성들은 모두 마치 수레바퀴 자욱에 고인 물에 고기가 입을 쳐들고 오물거리는 것과 같으니, 나라에서 비록 구원하려고 하나 형세상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신사(信使)의 행차에 오랑캐가 바친 것을 공무목(公貿木) 3백 동(同)과 바꾼다면 이는 거저 얻는</p>	<p>且臣聞嶺南飢饉，近古所無，自秋冬時，已有流離行乞者，合道生民，嗚嗚若涸轍之魚，國家雖欲極援，事力有所不逮。今者信使之行，以蠻人所贈，換公貿木三百同，此白地滿萬之貨，可</p>

<p>상차하여 재변에 대해 임금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 등을 아뢰다</p>	<p>많은 재화이니, 한 지방의 위급한 고통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굶주린 백성의 입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지고 빚을 갚도록 독촉한다면 반드시 한 지방의 조그마한 바람마저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사(有司)가 어떻게 처분할지 모르겠으나 특별히 1년의 상납분(常納分)을 감면해준다면 작은 보살핌으로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목(稅木)과 공목(公木)을 각읍에 나누어 배정하되 재앙을 입은 주군(州郡)에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참작하여 고루 나누어 주는 것은 또한 관찰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뜻으로는 성상께서 마음으로 결정하여 빨리 시행하고 의심치 않으시면 70주(州)의 백성들이 누가 성상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재앙을 구제하는 도는 마땅히 이러한 비용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옛날 명(明)나라 인종 황제(仁宗皇帝)가 사신의 복명(復命)을 인하여 강회(江淮)에 기근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수백만의 곡식을 내어주고 급히 조서를 내려 나누어 주게 하자, 각신(閣臣)이 무상으로 줄 것인가의 여부를 물으니, 인종 황제가 이르기를 ‘자식의 위급함을 구제해주면서 뒷날 갚으라고 하는 것이 될 일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아, 제왕(帝王)의 한 마디 말은 실로 천지(天地)의 마음인지라 사기에 기록되어 미담으로 전하고 있으니, 훌륭한 덕을 지니신 전하께서 어찌 유독 이번 일에 아끼시렵니까.</p>	<p>救一方倒懸之急。設或責償於飢民口吻之中，則必孤一方升斗水之望。未知有司，何以處分，而特減一年之常納，可爲濡沫之大恩。然稅木公木，分定各邑，被災州郡，且有輕重，酌量均施，又在道臣。臣愚以爲：‘斷自宸衷，亟行勿疑，則七十州生民，孰不感戴聖澤，而國家恤災之道，不宜惜此費也。’昔大明仁宗皇帝因使臣復命，聞江淮饑甚，特捐數百萬粟，馳詔分賑，閣臣以白給與否爲請，帝曰：“救子之急，責報於他日可乎。”嗚呼！帝王一言，此實天地之心也，載在方策，傳爲美談，以殿下盛德，奚獨有靳於今日耶。</p>
<p>효종 16권, 7년(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3월 14일(계사) 1번째기사 영남에 기근이 들어 상평청의 곡식을 내어 진휼하다</p>	<p>영남에 기근이 들어 상평청의 곡식을 내어 진휼하였다.</p>	<p>癸巳/嶺南饑，發常平廳粟以賑之。</p>

효종 16권, 7년(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5월 12일(경인)
1번째기사
천안 군수 서변이 오
정일·허적·이완·원두표
등이 역적 모의를 하
였다고 무고하다

천안 군수(天安郡守) 서변(徐忭)이 글을 올려 오정일(吳挺一)·허적(許積)·이완(李浣)·원두표(元斗杓) 등이 역적 모의를 하였다고 무고(誣告)하였다. 정일은 바로 인평 대군(麟坪大君) 부인의 형이다. 어느날 대군이 밤에 정일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허적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때 승지 유도삼(柳道三)이 취한 채 밖에서 들어와 대군이 있는 것을 살피지 않고 오만 무례하였는데, 정일이 팔뚝을 잡아끌자 도삼이 비로소 깨닫고 황급히 일어나 사죄하고 잘못 소신(小臣)이라 말하였다. 이는 연석(筵席)에서 주대(奏對)할 때의 언어에 습관이 되어 그것이 망발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 그후 사대부 사이에 전하며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서변이 천안 군수에 임명되어 부임하기 전에 이 말을 듣고는 공로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마침내 상소하여 밀고하기를, “형상이 있는 것은 소홀히 해도 되지만 형상이 없는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전 군수 홍주일(洪柱一)의 아들 홍만시(洪萬時)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하루는 만시가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진사 한전(韓戩)과 참군(參軍) 윤세교(尹世喬)가 우리 집에 와서 목을 때 시사(時事)에 대해 언급하기를 「흉악한 무리 몇 사람이 소를 잡아 술자리를 베풀고 이유형(李惟馨)의 집에 모여 변란을 꾀하였다.」고 했다.’ 하기에, 신이 흉악한 무리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을 추대하였는가 물어보니, 만시가 ‘한전·윤세교 두 사람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신이 목격한 바는 아니지만 이미 그 말을 들었으니 감히 급히 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대신, 금부 당상, 양사(兩司)의 장관, 좌우 포도 대장을 불러 서변 및 홍만시·한전·윤세교·이유형 등을 체포하라고 명하였다. 말이 나온 근원을 물어보니 만시는 한전에게 들었다 말하고 한전은 이관주(李觀周)에게 들었다 하고 관주는 신경윤(愼景尹)에게 들었다 하고 경윤은 조운석(趙胤錫)에게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오정일·허적·원두표·이완 등의 이름이 여러 사람의 공초에 어지럽게 나왔다. 이에 국청이 아울러 잡아다 국문하자고 청하니, 상이 그

庚寅/天安郡守徐忭上書, 誣告吳挺一、許積、李浣、元斗杓等謀逆。挺一卽麟坪大君夫人之兄也。一日, 大君夜往挺一家飲酒, 許積亦在坐, 承旨柳道三乘醉從外來, 不省大君, 傲慢無禮, 挺一肘之, 道三始覺, 惶忙起謝, 誤稱小臣。蓋習於筵中奏對時言語, 不覺其妄發也。其後士夫間, 頗有傳說者。忭拜天安郡守, 未及赴任, 聞此言, 有希功之心, 遂上書密告曰: “有形可忽也, 無形不可忽也。臣與前郡守洪柱一子萬時, 隔牆而居, 一日, 萬時來言于臣曰: ‘進士韓戩、參軍尹世喬來宿吾家, 語及時事曰: 「兇徒若干人, 殺牛置酒, 聚議于李惟馨家, 謀爲變亂。」’ 臣問: ‘兇徒爲誰, 推戴何人’, 萬時曰: ‘韓、尹兩人, 亦不明言云。’ 此事非臣目覩, 而既聞其言, 敢緩奔告。” 上命召大臣禁府堂上、兩司長官、左右捕盜大將, 逮捕忭及萬時、戩、世喬、惟馨等, 問言根出處, 則萬時言, 聞於戩, 戩言, 聞於李觀周, 觀周言, 聞於愼景尹, 景尹言, 聞於趙胤錫云, 而挺一、積、斗杓、浣等之名, 亂出於諸人之供辭。鞫廳竝請拿

	<p>상소가 무고(誣告)인줄 알고 윤택하지 않았다. 다만 명하여 이완은 차고 있는 대장의 병부를 벗게 하고, 중군(中軍) 김시성(金是聲)으로 하여금 대신 그 무리를 거느려 궁성을 호위하게 하며, 두표는 현재 판의금(判義禁)을 겸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국문에 참여토록 하라고 하였다.</p>	<p>問，上知其誣，不許。只命李浣，解所佩大將兵符，使中軍金是聲代領其衆，扈衛宮城，斗杓方兼判義禁，仍令參鞠。</p>
<p>효종 17권, 7년(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8월 7일(임오) 1번째기사 주장에서 지경연 홍명하가 술에 취한 채 대궐에 입직한 관원에 대해 아뢰다</p>	<p>상이 주장에 나아가 《시전》의 소완장(小宛章)을 강독하였다. 지경연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이 소완장은 술을 경계하라는 뜻을 말하였는데, 크게는 국가를 망하게 하고 작게는 자신을 망치는 것이 대부분 술에서 연유하니, 이것을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임진년(1444)에 성상께서 특별히 술을 경계하라고 내리신 하교가 몹시도 간절했는데 요즈음 대궐에 입직하는 관원 중에 술에 취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누구냐고 묻자, 시독관 이연년(李延年)이 아뢰기를, “신이 본디 술을 잘 못마시는데 지난번에 친척이 권하여서 매우 취한 상태에서 입직하여 요석(僚席)에서 예의를 잃었으니, 황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잠자코 있었다.</p>	<p>壬午/上御書講，講《詩傳》《小宛章》。知經筵洪命夏曰：“此章言戒酒之意，大而亡國，小而喪身，率由於酒，是豈可不慎哉？往在壬辰，聖上特下戒酒之教，不啻丁寧，而近日禁中入直之官，亦有酗酒者云矣。”上曰：“誰也。”侍讀官李延年曰：“臣素不能飲，而向因親戚之勸，昏醉入直，以致失儀於僚席，不勝惶恐。”上默然。</p>
<p>효종 17권, 7년(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10월 8일(임오) 1번째기사 독서당에 뽑힌 사람들을 불러 시를 짓게 하다</p>	<p>독서당(讀書堂)에 뽑힌 김수항(金壽恒) 등 다섯 사람을 명소(命召)하였다. 제목을 내어 시를 짓도록 하고 술과 물품을 내려주었다.</p>	<p>壬午/命召讀書堂被選金壽恒等五人。命題賦詩，宣醞賜物。</p>
<p>효종 17권, 7년(1656) 병신 / 청 순치(順治) 13년) 10월 8일(임오) 2번째기사</p>	<p>상이 후원의 초당(草堂)에 나아가 수리 도감 제조(修理都監提調)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등을 불러 술을 내리고는 날이 저물어서야 파했다. 승지와 사관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였다.</p>	<p>上御後苑草堂，召修理都監提調領議政鄭太和等宣醞，日暮乃罷。承旨史官，皆不得與焉。</p>

<p>후원 초당에 나아가 수리 도감 제조 등에 게 술을 내리다</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1월 7일(경술) 3번째기사 야수를 산 채로 운반 하지 말도록 하교하다</p>	<p>상이 하교하였다. “내가 전남 감사의 추함(推緘)을 보니, 납향(臘享)에 산 노루를 마치는 것이 있어 각 고을에서 죽지 않은 것을 감영으로 보낸다고 한다. 야수(野獸)를 산 채로 운반할 때, 그 폐단이 어찌 적겠는가. 내 마음이 불안하니,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 뜻을 해당 도에 하유하라.”</p>	<p>上下教曰：“予觀全南監司推緘，則臘享有生獐之供，各邑以不死者，送于監營云。生致野獸之際，其弊豈少乎？予心不安，不如不享之爲愈。以此意下諭于該道。”</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1월 23일(병인) 4번째기사 경기 지방에 기근이 들어 거두는 쌀의 반을 줄여주도록 명하다</p>	<p>경기 지방에 기근이 들었다. 봄에 거두는 쌀의 반을 줄여주도록 명하였다.</p>	<p>畿內飢荒，命減春收米之半。</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2월 11일(갑신) 1번째기사 개성 유수의 청에 따라 구제미를 빌려 주고 빌려간 군미를 감면해주다</p>	<p>개성 유수 최혜길(崔惠吉)이 치계하기를, “삼가 성상의 분부를 보건대, 재변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구휼하시려는 성상의 지극한 뜻을 삼가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신이 만약 말을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허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개성부는 비록 큰 고을이라 하지만, 지방이 작고 논밭이 많지 않아, 백성들이 농사를 일삼지 않고 오직 장사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라 해도 매년 먹고 살기 어렵다는 탄식이 있는데, 지난 해에는 한 해 동안에 가뭄과 큰물이 서로 잇달아 쌀값이 매우 비싸서 한 해를 보낼 방법이 없었고, 봄이 되자 기근이 점차 심해져서 곧 굶어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비록 마음을 다해 방법을 써서 곧 죽어가는 백성</p>	<p>甲申/開城留守崔惠吉馳啓曰：“伏見聖旨，欽仰聖上懼災恤民之至意。臣如不言，當有厥咎。本府雖曰大處，地方褊小，田地無多，民人不事耕種，唯以商賈爲業。雖在豐年，每有艱食之歎，而去年則一歲之內，旱澇相仍，米價極高，卒歲無策，入春以來，饑饉轉甚，填壑之患，迫在朝夕。雖欲竭心料理，以救涸轍之命，而本府之勢，有</p>

을 구제하고자 하나, 본부의 형세는 마치 밀가루도 없이 수제비를 만들려는 격입니다. 이제 상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굶주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감격한 끝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본부는 각도의 주군(州郡)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서, 이미 관청 설립에 대한 규례도 없고 또 창고에 쌓아둔 곡식도 없습니다. 1년의 수입은 단지 전세(田稅) 쌀 2백 6석(石)과 콩 2백 96석, 그리고 공전(公田)에 귀속된 반역자 집안의 땅에서 거두는 잡곡 2백여 석이 있을 뿐인데, 이것은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의 제수(祭需)와 본부 관원의 녹봉과 오가는 관리들의 지공(支供), 그리고 객사(客使)가 올 때 허다한 접대비용으로 쓰여 항상 부족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애처로운 우리 백성들이 죽음이 가까이 닥쳤으니,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침에 마음은 물론 뼈속까지 서늘합니다.

신이 삼가 생각해 보니, 곡식을 옮겨 백성을 살리는 것은 기근에 대처하는 정사 가운데 먼저 힘쓸 바입니다. 황해도와 바닷가 여러 고을은 창고의 곡식이 매우 많으니, 이제 만약 3백, 4백 석의 쌀을 본부로 옮겨준다면, 그것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휼하겠습니다. 조정에서 만약 댓가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을을 기다렸다가 도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일의 형세상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여 살리는 인정(仁政)에도 어긋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해조로 하여금 상계 아뢰어 시행케 하소서. 또 지난 날 객사(客使)가 왔을 때, 속오군의 수미(收米) 5백여 석을 빌려 썼는데 도감에서 공문(公文)을 보냄으로 인하여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징수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근을 구제하는 때를 당해 한결같이 징수를 독촉한다면, 일의 이치에만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은 비록 살갓을 벗기고 뼈를 부순다 해도 징수할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조정의 은혜로 특별히 감면해서 덕의(德意)를 보여준다면, 백성들이 실제적인 은혜를 입음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似無麩之不托。今者聖旨如此，饑民等聞來感激之餘，繼之以淚。本府非如各道州郡之比，既無官廳設立之規，又無府倉留儲之穀。一年所收，只有田稅米二百六石，豆二百九十六石，逆家屬公田地所收雜穀二百餘石，而此則用於齊、厚陵祭需，本府官員祿俸及往來使命支供與客使時許多饋餉之費，而每患不足。哀我生民，大命近止，言念及此，心骨俱寒。臣竊念移粟活民，荒政之先務，海西水邊列邑，倉穀甚多，今若以三四百石之米，移給本府，使之分賑飢民。朝廷若不許直給，而使之待秋還徵，則非但事勢之極難，有乖於救活飢民之仁政，請令該曹稟旨施行。且前日客使時，貸用東伍軍收米五百餘石，而因都監文移，不計凶年，嚴加徵責。當此賑飢之日，一邊督徵，則非但事理未妥，今雖剝膚椎髓，萬無收徵之路。若蒙朝家特爲蠲免，以示德意，則民蒙實惠，無過於此矣。”戶曹回啓曰：“本府元無留儲之穀，他無賑活之策。請以海西所儲之穀四百石，移本府，分給種子，待秋除耗還徵，一以爲卽今賑飢之政，一以爲

	<p>하니, 호조에서 회계하기를, “본부(本府)는 원래 비축한 곡식이 없어 달리 기근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컨대 황해도의 비축한 곡식 4백 석을 본부에 옮겨 종자곡으로 나누어 주고, 가을이 되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돌려받아, 한편으로는 당장의 기근을 구제하는 정치를 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훗날 비축의 밀천거리로 삼게 하소서. 그러면 공사(公私)에 두루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훈련 도감에서는 회계하기를, “본부에서 빌려간 군미(軍米) 가운데 지난 해 값은 단지 2백 50여 석 뿐인데, 본부에서 아된 대로 감면해주소서.” 하니, 따랐다.</p>	<p>後日留儲之資，則公私兩便矣。” 訓練都監回啓曰：“本府所貸軍米，上年所償者，只二百五十餘石，請依啓聞蠲減。” 從之。</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2월 14일(정해) 1번째기사 임금이 인평 대군을 후히 예우하는 일에 대해 사관이 기술했다</p>	<p>상은 천성이 우애스러워 인평 대군(麟坪大君)이 궁궐을 출입할 때는 마치 집안 사람처럼 예우하여, 일찍 들어가 늦게 나오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었다. 상이 일찍이 함께 자전을 뽑고는 이어 시절(時節)에 희귀한 물건으로 내기를 걸고 승부를 겨루곤 하였다. 예를 들어 생과(生瓜)나 생조(生棗) 같은 것도 구해오지 못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 줄거리와 잎이 신선하기가 마치 갓 동산에서 따온 것 같았다. 궁궐의 하인들이 사사롭게 서로 다투어 민간에서 얻으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사실을 알았다.</p>	<p>丁亥/上天性友愛，麟坪大君出入禁中，如家人禮，早入晚出，日以爲常。上嘗共詣慈殿，仍以時節稀貴之物，置注較勝負。如生菘生棗之類，莫不求得，其莖葉之新鮮，有若纔摘於園圃者。掖庭下人，私相求得於閭閻，故人多有知之。</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3월 4일(정미) 3번째기사 전남 영광군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 50인이 익사하다</p>	<p>전남도 영광군(靈光郡)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다가, 50인이 익사하였다. 도신(道臣)이 아뢰니, 구휼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명하였다.</p>	<p>全南道 靈光郡沿海居民，以漁採入海，溺死者五十人。道臣以聞，命施恤典。</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p>	<p>상이 한재(旱災)로 특별히 어공(御供)의 술을 줄였다.</p>	<p>上以旱災，特減御供之酒。</p>

<p>14년) 4월 19일(신묘) 4번째기사 한재로 인해 어공(御 供)의 술을 줄이게 하 다</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4월 30일(임인) 3번째기사 한재의 대책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하다</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한재가 매우 참혹하여 민생이 장차 보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절박한 근심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어떻게 해야 비를 오게 할 수 있겠는가? 경들을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자 한다.” 하니,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한재가 이와 같으니, 과연 어떤 계책을 써야만 비를 오게 할지 모르겠습니 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변을 부른 원인은 모두 민원(民怨)에서 왔 고, 민원이 생겨난 것은 추쇄(推刷)하는 것에 있다.’ 합니다. 그러나 추쇄를 지금 어찌 혁파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군정(軍政)에서 생겨난 것이 다.’ 합니다. 그러나 영장(營將)을 어찌 갑자기 혁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 떤 사람은 말하기를 ‘전하께서 공구 수성하시는 도리가 점차 처음만 못하다.’ 고 합니다. 만약 성상께서 더욱 수성하신다면, 혹 감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우의정 원두표는 아뢰기를, “추쇄는 백 년 이래 시행하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시행한 것이며, 군정도 국가 에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민원 때문에 팔짱만 끼고 앉아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재상의 자리에서 책임을 맡아 서관(庶官) 과는 다르니, 어찌 근심하고 걱정하는 뜻이 없겠습니까만, 어떤 계책을 써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군덕(君德)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 두,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점차 전만 못하여 대관의 예사로운</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上曰：“近來 旱災孔慘，民生將不得保存，切迫之 憂，莫甚於此，何以則可致雨澤乎？欲 見卿等而相議矣。 領議政鄭太和曰： “旱災如此，未知果用何策而致雨。言 者以爲：‘致災之由，皆由於民怨，民怨 之所由生，在於推刷之舉云’，而推刷 今何以罷之。亦云由於軍政，而營將 又何以猝罷乎？或以爲殿下恐懼修省 之道，漸不如初云。若聖上益加修省， 則或致感應之效矣。” 右議政元斗杓 曰：“推刷則百年來所不行者，而一朝 行之，軍政亦有國之不可廢，豈可以民 怨，而只自拱手而坐，無所施措乎？臣 等待罪台席，異於庶官，豈無憂遑之 意，而不知所以爲計矣。以君德言之， 群議皆以爲殿下納諫。漸不如前，尋 常臺啓，尙不允從，人之云云，必以此 也。” 上曰：“大臣則既陳所懷，諸宰 之意如何？” 完南君 李厚源曰：</p>

	<p>아름에 대해서도 오히려 따르지 않으신다고 하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은 이미 생각을 말하였으니, 여러 재상들의 뜻은 어떠한가?”</p> <p>하자, 완남군(完南君)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대신들이 이미 진달했습니다만, 오늘날 민원이 한량 없으니, 어찌 재이가 오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떤 일 때문에 민원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p> <p>하자, 후원이 아뢰기를, “대개 군정과 추쇄가 모두 민원이 생겨나게 된 이유이니, 인심이 자연 원망하고 괴로워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p> <p>하였다. 호조 판서 정유성(鄭維城)은 아뢰기를, “이제는 비록 비가 오더라도 종자를 뿌릴 시기를 놓쳐 흉년을 면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미리 절약할 계책을 세운 뒤에야 민생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사람이 천한(天旱)·지한(地旱)·인한(人旱)이란 말을 했는데, 오늘의 한재는 곧 인한이니, 반드시 인화(人和)를 이룬 뒤에야 감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연성군(延城君) 이시방(李時昉)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서로(西路)에 가서 직접 백성의 일을 보니, 물력(物力)이 북사(北使)를 접대하는 데 고갈되어 농민들이 농사 지을 겨를이 없으니, 어떻게 지탱하여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두표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비록 널리 여러 재상에게 물으신들, 민원 때문이라 말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끝내 폐단을 바로잡을 계책은 없을 것입니다. 신이 빈청에 있으면</p>	<p>“大臣既已陳達，而目今民怨，罔有紀極，寧無災異之來乎？”上曰：“以何事，而民怨至此乎？”厚源曰：“大概軍政推刷，無非民怨之所由生，而人心自然怨苦，以至於此矣。”戶曹判書鄭維城曰：“今雖得雨，已失耕種之時，恐未免凶歉。必須預講節損之策，然後可保民生矣。古人有天旱地旱人旱之說，今之旱災，乃是人旱，必得人和，然後可致感應之效矣。”延城君李時昉曰：“臣頃往西路，目見民事，物力盡於接待北使，農民不遑耕作，其何以支保乎。”斗杓曰：“聖上雖廣詢諸宰，不過曰民怨而已，終無救弊之策。臣在賓廳，亦與諸人相議，只如斯而已。群下皆以爲殿下納諫不弘，發怒太急云，此則在於聖上，而氣質之病，恐難容易改之也。”上曰：“雖如此，必集衆思，然後可以相議處之，諸人如有所懷，畢陳可矣。”時昉曰：“西路管餉之穀，息利漸廣，其弊無窮矣。”上曰：“限今年減其耗，則民可蒙惠乎？”太和曰：“減之似便。”刑曹判書鄭致和曰：“日氣漸熱，卽今滯獄者，幾至五十餘人。非重罪及啓下罪</p>
--	--	--

	<p>서 여러 사람과 상의해 보았지만, 역시 이와 같았을 따름입니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심이 넓지 못하고 노여움을 드러냄이 너무 급하다 하니, 이것은 성상께 달린 일이지만 기질(氣質)의 병통이라 쉽게 고치 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록 그렇더라도 반드시 여러 생각을 모은 뒤에야 서로 의논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 사람들은 만약 품은 생각이 있으면 모두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p> <p>하였다. 이에 시방이 아뢰기를, “서로(西路)의 관향곡이 이자가 점차 불어나, 그 폐단이 한이 없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올해로 한하여 그 이자를 감해주면, 백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p> <p>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감해주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p> <p>하였다. 형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일기가 점차 무더워지는데, 지금 옥에 계류된 자가 거의 50여 인에 이릅니다. 중죄(重罪)나 계하(啓下)한 죄인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석방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이미 분부하여 속히 처리하도록 하였다.”</p> <p>하였다. 예조 판서 채유후가 아뢰기를, “신은 달리 아될 일은 없으니, 잠시 옛날 일을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송 인종(宋仁宗)이 보신(輔臣)들에게 말하기를 ‘짐은 감선 철약(減膳徹樂)은 말절(末節)이라 여긴다. 단지 한 마음을 보존하려 할 뿐이다.’ 하니, 다음날 비가 내렸는데 당시의 신하들이 모두 ‘마음으로 비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전하의 마음 공부(修省)가 반드시 그 수성(修省)을 다한 뒤에야 감응의 효과를 얻을</p>	<p>人，則請皆疏釋。” 上曰：“昨已分付，使之速爲疏決矣。” 禮曹判書蔡裕後曰：“臣無他陳白之事，姑以古事仰達。宋 仁宗言于輔臣曰：‘朕以爲減膳徹樂，乃是末節。只操存一心而已云。’而翌日雨下。一時諸臣皆以爲：‘心上得雨。’臣則以爲殿下心上功夫，必盡其修省，然後可致感應之效矣。此實陳談，而所懷如此，故敢達。” 上曰：“此非陳談，實足切實之言矣。” 厚源曰：“匹夫含冤，尙且致災。申濡所失，則有之，而聞其母年今七十餘。去歲喪一子，今又遠別一子於塞外，晝夜號哭，病勢極重云，此亦足以感傷和氣。聞其母子相離之狀，令人惻然矣。” 上曰：“申濡事，今不必提起，而既已發端，故說破矣。孔子誅少正卯，是何意歟？正卯無顯著之罪，而只惡其心術而誅之。申濡用心可惡，斷不可容恕，而諸臣每當如此之時，乃發此言，若如卿等之言，則必如梁武帝之爲政，然後可乎？” 厚源曰：“一自申濡等被罪之後，諸宮家奴僕，氣勢益張，其弊罔有紀極矣。” 上曰：“此則刑判在此，申飭禁斷。” 太和曰。</p>
--	---	---

	<p>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이는 비록 진부한 말이지만, 생각이 이와 같아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진부한 말이 아니라, 실로 절실한 말이다.”</p> <p>하였다. 후원이 아뢰기를, “필부가 원한을 품어도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유의 경우 잘못된 바는 있지만, 들으니 그 어머니의 나이가 이제 70여 세인데 지난해 한 자식을 잃었고 지금 또 한 자식을 멀리 변방으로 이별하여, 밤낮으로 통곡하여 병세가 위중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화기(和氣)를 손상시킬 만한 것입니다. 그 모자(母子)가 서로 이별해 있는 상황을 들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유의 일은 지금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미 말을 꺼냈으니 설명을 해야겠다. 공자(孔子)가 소정묘(少正卯)를 죽인 것은 이 무슨 의도였겠는가? 소정묘는 뚜렷이 드러난 죄가 없었지만, 단지 그 마음씀을 미워하여 죽인 것이다. 신유는 마음씀이 매우 가증스러워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데, 여러 신하들이 매번 이런 시간이면 이 말을 꺼낸다. 만약 경들의 말과 같이 한다면, 반드시 양 무제(梁武帝)가 정치를 하는 것처럼 한 뒤에야 가하겠는가?”</p> <p>하였다. 후원이 아뢰기를, “신유 등이 죄를 받은 뒤로부터 여러 궁노(宮奴)들의 기세가 더욱 커지고 있으니, 그 폐단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형조 판서가 여기 있으니, 거둬 타일러 막도록 하라.”</p> <p>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오늘 신들을 소견(召見)하신 것은 단지 재변을 해소할 계책을 마련하기 위해</p>	<p>今日召見臣等。 只爲講究消弭之策。 而別無所達。 終歸於閑說話。 “四方聽聞，其將如何?” 上曰：“今日應天之責，宜在於寡躬，而推刷時被罪徒配者及其他罪人中，罪雖重，而情有可恕者，卿等相議抄啓，則可以從輕重疏釋矣。” 校理李萬雄曰：“外方民弊，令道臣隨聞馳啓，乃是常例，今宜分付外方，凡民間疾苦，使之一一啓聞，以示朝廷軫恤民隱之意。” 上曰：“此言是矣。 承旨下諭于各道監司。”</p>
--	---	--

	<p>서였는데, 별로 진달한 바가 없어 끝내는 한가한 말놀음이 되었으니, 사방에서 그 내용을 듣는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하늘에 감응하는 책임은 실로 내 한 몸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추쇄할 때 죄를 입어 유배된 자와 그외의 죄인 가운데 죄는 비록 무거워도 실정에 용서할 만한 점이 있는 자를 경들이 서로 의논하여 뽑아 아뢰면, 경중에 따라 석방할 수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교리 이만옹이 아뢰기를, “외방의 민폐를 감사로 하여금 들은 대로 치계하게 하는 것은 상례(常例)이니, 지금 마땅히 외방에 분부하여 모든 민간의 고통을 하나하나 아뢰도록 하여, 조정이 백성의 고통을 염려하여 구원하려 한다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승지는 각도 감사에게 하유하라.”</p> <p>하였다.</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5월 1일(계묘) 4번째기사</p> <p>한재를 염려하여 반성하고 백성을 위로하며 직언을 구하는 교서를 내리게 하다</p>	<p>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아, 과인이 왕위에 오른 이래로 수해·한해·재이가 달마다 거의 거르지 않고 발생하였다. 두렵고 근심스런 마음이 깊은 연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을 때보다도 더 하니, 옛 사람이 말한 ‘내게는 임금된 즐거움이 없도다.’는 것은 진실로 오늘을 두고 말한 것이다. 밤낮으로 감히 편안할 겨를이 없이 조종께서 물려주신 중책을 실추시킬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진 한발이 해마다 흉년이 든 뒤에 발생하였다. 이렇게 된 연유는 과인의 덕과 재주가 부족하여 일처리를 마땅하게 하지 못하므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여 위로 하늘을 거스렀기 때문이다. 그 허물이 과인에게 있으니 마땅히 견책과 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대신받게 하였으니 과인의 마</p>	<p>上下教于政院曰：“嗚呼！自寡昧忝位以來，水旱災異，式月斯生，殆無虛時，恐懼憂虞之心，不趨若臨淵履水。古人所謂‘吾無樂乎爲君者，’誠今日之謂也。夙夜不敢違寧，恐墜祖宗付畀之重，茲者旱魃之虐，發於連歲失稔之餘。致此之由，無非寡昧之德薄才疎，不能處事得宜，使人心不悅，而上干于天也。其在寡躬，宜受譴罰，而使吾民替受之，顧寡昧之心，當何如哉？只</p>

음이 어떠하겠는가. 다만 애태우며 자책만 할 뿐이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오늘부터는 정침(正寢)을 피하여 더욱 허물을 반성하고 선행을 하고 잘못을 고치고자 한다.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敎書)를 써서 널리 직언(直言)을 구하여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을 보충할 것이며,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등의 일은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또 흉년과 심한 가뭄에 외로운 사람들이 더욱 불쌍하니, 해조로 하여금 의지할 데 없는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독신에게 특별히 죽거리를 지급케 하여 나의 동정하는 마음을 보여주라. 또 안팎에 명하여 여러 옥사를 너그럽게 처결하여 나의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여주라. 또 이조로 하여금 인재를 발탁하도록 하여 덕있는 선비가 하급 관리에 묻혀 있지 않도록 하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성상의 분부를 받아 보건대 구구절절이 뜻이 간절하고 애닦아서 다 읽기도 전에 자신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죄주는 정녕스러운 하교가 말에 넘쳐 흐르고, 백성을 걱정하는 사무치게 간절한 생각이 성상의 일신을 염려하는 정도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로써 재난을 막으면 무슨 재난인들 막지 못하겠으며, 이로써 원한을 풀다면 무슨 원한인들 풀지 못하겠습니까. 깊은 산 속 오두막집에 사는 백성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면 아무리 버려지 같이 무지한 자라도 반드시 감동할 것이며, 내직과 외직의 신하에게 교유하시면 비록 무위도식하는 자라도 반드시 마음을 고칠 것입니다. 비록 성탕(成湯)의 여섯 가지 자책(自責)과 송 경공(宋景公)의 한 마디 말 도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교서를 지을 게 아니라 이 성상의 분부로써 안팎에 유지하여 모두 들어서 알게 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란 작심(作心)과 방심(放心)이 무상하여 태만과 소홀함이 끼어들기도 하는 것이니, 진실로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오늘부터 하루하루 이 말을 성실히 실천하여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의 백성들이 보고

自焚灼于中，徒切刻責，夫復何言。自今日避正殿，益加省愆，欲遷善改過，承旨代予草教，廣求直言，以補不逮。減膳等事，令該曹舉行。且念飢歲旱燬之日，哀此熒獨，令該曹，饘寡孤獨之無依者，特給糜粥之資，以示予顧恤之意。且令中外疏決庶獄，以示予欽恤之意。且令天官，甄拔人才，無使有德之人，沈于下僚。” 政院啓曰：“臣等伏承聖教，一札十行，辭旨懇惻，奉讀未了，感涕無從。丁寧罪己之教，溢於言表，痛切寡民之念，不啻在身。以之弭災，何災不弭，以之紓怨，何怨不紓。播於深山蔀屋之民，雖甚頑蠢無知者，亦必感動，諭諸在朝在外之臣，雖甚關曠不職者，亦必改心。雖成湯六責，宋景一言，無以加焉。不須別爲草教，以此聖旨，傳諭中外，咸使聞知，不勝幸甚。但念人心。操舍無常，怠忽或間，誠願聖上，繼今以往，日復一日，允蹈斯言。毋使終爲應文之歸，則視聽自我之天，安有不格之理。臣等俱以無狀，待罪近密，今當責躬之日，叨承恫關之旨，區區所懷，惶恐敢啓。” 答曰：“所陳之

	<p>들을을 통하여 보고 듣는 하늘이 어찌 감동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신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책망하는 날을 당하여 외람되게도 백성을 몹시 걱정하시는 분부를 받고 구구한 생각을 황공스럽게도 감히 아뢰입니다.”</p> <p>하자, 답하기를, “말한 내용은 내 명심하겠지만, 하교한 말은 거칠고 졸렬하여 본의를 잘 나타내지 못하였으니 승지가 대신 초안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p>	<p>事，予當體念，而下教之言，荒拙無以導達本意，承旨代草宜矣。”</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5월 6일(무신) 1번째기사 각도의 방물 진상을 정지하도록 하교하다</p>	<p>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p> <p>“한재의 참담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금년 농사는 알 만하다. 어찌 차마 여러 도에서 바친 물품을 편안히 누리면서 백성의 힘을 더욱 고달프게 할 수 있겠는가. 각도의 방물(方物) 가격을 명년 가을까지 정지하라.”</p>	<p>戊申/上下教于政院曰：“旱災之慘至此，今年農事，已可知矣，豈忍安享諸道進獻之物，重困民力哉？”各道方物之價，限明秋停罷。”</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5월 13일(을묘) 2번째기사 전 영돈녕부사 이경석이 조목별 건의 사항을 아뢰다</p>	<p>전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이 하교에 응하여 상차하기를, “하늘이 진노하시어 큰 이변이 빈발하고 한발이 더욱 참혹하게 들어 들관이 황량합니다. 어인 일로 쇠퇴의 징조가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는 시대에 모여 든단 말입니까. 연이어 내린 애통해 하시는 하교를 보니 걱정하고 애쓰시는 뜻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공(御供)은 이미 감하였고 방물(方物)도 정지하였으니, 본말을 모두 갖추었으며 성의와 문채도 겸비하였습니다. 크게 덕음(德音)을 발하여 장기수를 모두 석방하시니 어두운 가운데 귀신의 감응이 메아리처럼 빨리 단비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고 만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상의 이 마음은 요(堯) 순(舜)이 될 수 있고, 성상의 이 조처는 당우(唐虞)의 시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역(聖域)의 좋은 시대를 한 걸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마음을 확충하고 이 조처를 계속해</p>	<p>前領敦寧府事李景奭應旨上筭曰： 皇天憚怒，大異頻仍，魃虐又慘，田野索然。是何衰亂之徵，乃萃於勵精之代也。及觀哀痛之教，繼下憂勤之意益切，御供既減，方物亦停，本末俱修，誠文兼備。誕發德音，盡放久囚，冥應響捷，甘澍霑然，輿情咸悅，萬民其蘇，聖上此心，可以爲堯、舜，聖上此舉，可以回唐、虞。非謂聖域熙辰，一蹴可到，果能自今，擴此心而充之，繼此舉而勉之，則以 殿下之特達仁明，</p>

서 힘쓰신다면 전하의 출중하신 어짐과 지혜로써 어찌 덕(德)이 지극하지 않고 정치가 옛날과 같지 못할까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하늘이 인자하여 아끼기 때문에 경계를 보이는 것이고 많은 걱정을 하면 슬기가 열린다는 고인의 말이 진실로 빈말이 아닙니다.

신은 아직도 기축년 겨울에 탑전에서 아뢰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장법(贓法)과 군율이 엄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곧 신의 말이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장기수를 다 감옥에서 내보낸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신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온 백성의 기쁨을 기쁨으로 삼은 것입니다. 대저 온 백성이 모두 어찌 몇 사람에게 개인적인 애정을 가져서 그러하겠습니까. 인정은 대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상의 마음은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공정한데 처음에는 어렵게 여기시다가 나중에는 석방하신 것은 실로 상천(上天)의 노여움을 공경하고 만민의 목숨을 구제하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 한 때의 사의를 헤아려 대사면의 은전을 베푼 것입니다. 우리 성상께서 하늘을 섬기기를 마치 효자가 아버이를 섬길 때 삼가고 두려워하며 부드러운 말소리와 온화한 얼굴빛으로 여러모로 정성을 다 쓰는 것처럼 하시므로 하늘의 감응 역시 마치 지성으로 하는 자식에게 노여움을 푸는 것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 일관된 이치가 이처럼 명백하니 어찌 더욱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쇠약한 기운이 갑자기 솟아올라 곧 교지에 응하고자 하였습시다만 연달아 상(喪)을 만나 노환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치통이 더욱 괴롭습니다. 불 안팎에서부터 턱밑까지 크게 부어서 밤낮으로 신음하며 식음을 폐하다시피 한 지 여러 날입니다. 이제 겨우 조금 나아섰습시다만 아직 완치되지는 않았습시다. 때문에 품은 생각을 쓰려다 도로 그만두어 지연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또 성상께서 조처하신 일이 이미 잘 되었다 하고, 두세 통의 차자를 보니 역시 모두 상세한데 신이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만 구구한 생각을 아뢰

何憂乎德不至，而治不古也？仁愛示警，殷憂啓聖，古人之言，信非虛語也。臣尙記己丑冬間榻前啓達之辭。贓法軍律不嚴，則無以爲國，卽臣之言也。到今以久囚盡出，牢狴爲喜者，非臣之喜，乃以國人之喜爲喜也。夫國人於數人，豈皆有私愛而然哉？可見人情之所大同也。況聖上之心，至仁至公，始難而終放之者，實出於敬上天之怒，救萬民之命，權一時之宜，而施曠蕩之典。我聖上之事天也，正如孝子之事親，夔夔慄慄，柔聲和色，靡極不用，惟天之應之也，亦如回怒於至誠之子。其一理之昭昭如此，豈不益可畏也哉？臣衰懦之氣，倏覺躍如，卽欲應旨，而連遭喪患，老病轉劇，齒痛尤苦，牙頰內外，連及頷下，浮大突起，日夜呻痛，飲啖殆廢者累日，今僅少歇，尙未全愈。用是含意連辭。將就還止，未免淹延。且聖上之所以處之者，已云盡矣，得見數三進筭之辭，亦皆詳矣，臣何言哉？第區區之懷，不可不達，迺拙之言，未必適用，惟聖明財擇焉。嗚呼！殿下之心，卽堯、舜之心，行堯、舜之政，則是亦爲堯、舜。

	<p>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활한 말이라서 반드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니 성명께서 헤아려 택하소서.</p> <p>아, 전하의 마음은 곧 요순의 마음이니, 요순의 정치를 행하시면 이 또한 요순의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요순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효도와 공손일 뿐이며, 요순의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의(仁義)일 뿐입니다. 효도하고 공손한 행실을 미루어 만민을 가르쳐서 효도와 공손함을 일으키고, 인의의 정치를 닦아서 만민을 인술하여 인의를 일으키면, 백성이 된 자는 평상시에는 안도하여 배개를 높이 벨 수 있고 난리를 당해서는 윗사람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상사(上司)를 위해 죽을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이치를 어기고 윤리를 어지럽히는 일이나 윗사람을 원망하며 질시하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인의(仁義)의 말이 세상에 행해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반드시 오활하다고 여기니 누가 이를 따라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제 환공(齊桓公)과 진 문공(晉文公)은 이를 빌려서 제후 중에 패자가 되었고, 당 태종(唐太宗)은 이를 힘써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임금이 행하지 않는 것이 걱정이지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고 안하고는 오직 전하께 달려 있습니다.</p> <p>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눈 앞에 보이는 이익만 탐내시거나 일정한 범규에만 구애받지 마시고, 큰일을 해야겠다는 뜻을 분발해 계속 쉬지 않고 해나가 되 요순의 마음을 본받고 요순의 정치를 행하시며, 강론한 《시전(詩傳)》·《서전(書傳)》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서 성스런 황제와 지혜로운 임금이 현인에게 위임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한 까닭을 체득하여 반드시 몸소 힘써 실천하고, 쇠퇴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화를 불러 망하게 된 까닭을 체득하여 반드시 애써 징계하여 고치소서. 그리고 진대(珍臺)·한관(閑館)에서나 혼자 있어 홀으러지기 쉬운 곳에서도 항상 잊지 않고, 계속 힘쓰고 힘써서 반드시 당우(唐虞)와 삼대(三代)의 정치처럼 해야겠다고 다짐하소서.</p>	<p>堯、舜之道無他，孝悌而已，堯、舜之政無他，仁義而已，推孝悌之行，教萬民而興於孝悌，修仁義之政，率萬民而興於仁義，則爲民者平居，可以按堵而奠枕，臨亂可以親上而死長，夫豈有逆理亂常之事，愁怨疾視之民哉。仁義之說，不行於世久矣。人有談仁義者，則聽之者必以爲迂焉，孰能從而行之。然桓、文假之而伯諸侯，唐太宗勉之而致太平。特患人君者不行耳，行之則必有其効，爲之與不爲之是在殿下。伏願殿下，勿規規於近利，勿拘拘於常規，奮發大有爲之志，繼之以無倦，心堯、舜之心，政堯、舜之政，就所講之《詩》、《書》，體認其最緊切處，聖帝明王之所以任賢安民，必務躬行，衰世亂代之所以基禍致亡，必務懲改。至於珍臺閑館之中，幽獨得肆之地，念念常存，勉勉不已，必以唐、虞三代之治爲期焉。所謂心者，只是一箇誠而已，所謂政者，亦豈有他，誠之根於心者，發於事而爲政，以是誠行是政，政豈有不立？治豈有不成？此誠難悉於造次之間，亦難以一二遽數，而試言其概，則典謨雅頌之所稱，罔非是心是</p>
--	---	---

이른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하나의 정성일 뿐입니다. 이른바 정치라는 것 역시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뿌리를 둔 정성이 일에 나타나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성으로 이런 정치를 한다면, 정치가 어찌 바로서지 않겠으며, 다스림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창졸간에 모두 말하기 어렵고 또한 한두 가지로 세기도 어려운 것입니다만 시험삼아 그 대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경》 전모(典謨)와 《시경》의 아송(雅頌)에서 일컬은 것은 이런 마음과 이런 정치가 아닌 것이 없으나 어진이에게 위임하며 백성을 편안히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인에게 성의로써 위임하지 않으면 현인을 쓸 수 없고, 현인을 전일하게 쓰지 않으면 백성이 편안할 수 없으며, 백성이 편안하지 않으면 나라가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인을 의심하지 않고 위임하며 백성을 편안히 하면 바로 이게 인애(仁愛)이므로 정치가 이로 인해 거행되어 나라의 근본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오늘날에 찾아볼 때 과연 모두 다 발탁되어 재야에 버려진 현인은 없으며 과연 어루만지고 보호하여 그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쳤습니까.

아, 임금을 만나 도를 행하는 것은 군자의 소원입니다. 초야와 산림에서 늙어 죽는 것이 어찌 어진이의 뜻이겠습니까. 다만 당시의 임금이 성의를 다하지 않고 그의 말을 쓰지 않으면 걸치레로는 붙들어들 수 없으니, 이것이 흰말을 잡아 매어 두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욱 편리하지 못한 형편이 있고 또 몹시 추운 때나 매우 더운 때에 예복을 갖춰 입고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은 한가로이 지내던 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현인을 존중하여 그를 위해 특별히 집을 지은 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특별히 새로 짓지는 못하더라도 창경궁 권문 밖의 이조의 직방(直房) 중 빈 곳을 수리하고 청소한 다음 춘하 추동 중 매우 춥거나 덥지 않은 때에 부름을 받고 와서 여기에 거처를 정하게 하고 창림의 고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는 공사의 모임에는 출입하지 않게 하고 경연이나 서연에서 시강하게 하거나

政, 而任賢安民最其大要也。 任賢不以誠, 則賢不可以用, 用賢不能專, 則民不可以安, 民不安, 則邦無以寧矣。 是以任賢勿貳, 安民則惠, 政以之舉, 而邦本固矣。 以此求諸今日, 果能明揚, 而野無遺賢耶? 果能懷保, 而惠澤下究耶? 噫! 得君行道, 君子所願, 枯槁於草野山林, 豈賢者之志哉? 但時君不盡其誠, 不用其言, 則不可以虛禮拘之, 此白駒之所以難繫也。 今之時, 則又有難便之勢, 且祈寒盛熱, 束帶奔走, 非習於閑靜者之所可堪也。 古者尊賢, 爲之別設堂宇者有之。 今縱不能別創, 有若昌慶闕門外, 吏曹直房空廡之處, 修掃潔淨, 許以春夏秋冬未甚寒熱之時, 承召而至, 舍館於斯, 繼之以廩肉。 不與公會出入, 侍講於經幄書筵間, 或與多士, 討論於泮宮。 廣加旁招, 拔茅連茹, 大開衆正之門, 則無復難便之勢, 而國有用賢之實矣。 噫! 民安則國安, 民不安則國不安, 民實可哀, 亦可畏也。 今民之力盡矣, 汔可少愒, 凡所以安之者, 宜汲汲然不可緩也。 茲者萬壽之殿已成, 誠孝之志伸矣, 自今土事木功, 一切停罷。

혹 여러 선비들과 반궁(泮宮)에서 토론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널리 초청하여 무리지어 올라 오게 하여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면 다시금 불편한 형세가 없을 것이며 나라에 현인을 쓴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도 편안하고, 백성이 불안하면 나라도 불안한 법이니, 백성은 실로 불쌍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 백성의 힘이 쇠진하였으므로 조금 쉬게 해주어야 할 것이니 무릇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서둘러서 해주어야지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만수전(萬壽殿)이 이미 완공되어 정성스런 효심을 폈으니 이제부터는 토목 공사를 일체 중지하십시오. 백성을 부역시키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군사를 모집하는 것은 재물을 축내는 것이 아닙니까. 재물을 축내고 백성을 해쳐서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군과 읍의 병기는 거의 모두 정예로우니 수리하는 일과 월과(月果)에 대비하는 일과 세초(歲抄)하는 일은 잠시 기한을 정해 정지해야겠습니다. 염초를 굽는 일이 크게 민력을 허비한다는 것에 대해 전일 신의 견해를 대략 말씀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까지 계속한다면 감당할 만한 큰 읍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쇠진한 작은 읍은 매우 큰 곤욕이 될 것이니, 다만 편의에 따라 준비하게 해야지 강제로 굽게 해서 안될 것입니다. 폐지할 수 없는 것은 농한기를 이용한 군사훈련입니다만, 훈련을 하지 않는 기간에 영장(營將)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는 살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이 일찍이 영의정으로 있을 때, 받을 길도 없는데 백성의 원망만 쌓이게 하는 적곡(糶穀)을 탕감해 주자고 청해 윤휴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그 후에 들으니 각 읍의 관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지 혜택을 입지 못했다고 하니 진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유들을 상세히 조사하여 탕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독신으로

母曰不役民。募軍獨不爲傷財乎? 傷財害民, 涉於侈大者, 恒以爲戒。郡邑之軍器, 殆盡精利, 修補之事, 月課之備, 歲抄之舉, 姑宜限年停止。煮爇之役, 大費民力, 前日略陳淺見, 而未蒙省納, 未知今尙爾耶? 如或踵而爲之, 則大邑可辦之處, 猶之嗇矣, 殘少之邑, 適爲重困, 只使隨便備辦, 不宜勒令煮取。所不可廢者, 農隙之鍊習, 而第停鍊之時, 營將當住何處, 此不可不審處也。臣曾忝首揆時, 以無路可捧, 徒積民怨之糶穀, 請皆蕩滌啓達蒙允, 而厥後聞之, 各邑官吏, 以未捧爲已捧, 故民未蒙實惠, 良可痛心, 如此之類, 詳查蕩滌, 所不可已。鰥寡孤獨, 衆所共知, 無所依賴者, 亦令監司, 一一查出, 竝皆勿徵, 則此亦三代仁政之一端也。且國用未裕, 賜田租, 雖不得如古之爲, 曾聞太倉之豆, 猶有餘儲, 當此嶺湖二南連年失稔之時, 量減其所捧之豆, 以施一分之惠, 似合於荒政, 而未知此事可行乎哉?

	<p>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자는 역시 감사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하여 모두 세금을 받지 않게 하면 이것도 삼대의 어진 정치 중의 하나입니다. 또 나라의 경비가 넉넉치 못하므로 전지의 세금을 감해 주는 것을 비록 옛날과 같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태창(太倉)에 남은 콩이 있다고 하니 영남과 호남에 해마다 흉년이 든 이 때를 당하여 받아들일 콩을 경감시켜 조그만 혜택을 베푸는 것이 기근을 구제하는 정책에 합당한 듯합니다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5월 16일(무오) 3번째기사 예조 참관 민응형이 백성을 화합케 하는 방법에 대해 아뢰다</p>	<p>예조 참관 민응형(閔應亨)이 면대를 청하니, 상이 불러 보았다. 응형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소공(召公)이 성왕(成王)을 경계하는 말에 ‘백성들을 화합케 하는 것으로 하늘에 영원한 운명을 비는 근본을 삼는다.’고 하였는데, 신이 백성을 화합케 하는 데 대한 말을 성상을 위해서 진달하겠습니다. 신이 경기 고을들의 형세를 미루어 멀리 삼남(三南)의 농사를 짐작해 보건대 지금 비록 비가 오더라도 필시 모두 흡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이 오직 삼남에 있는데, 삼남에 흉년이 들면 국가의 경비를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실지로써 하늘에 응하는 도리는 본래 백성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것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서(書)》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세 번이나 잘못하였는데 원망이 어찌 큰 잘못이 드러나야만 있겠는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방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원망이 이미 드러나면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방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폐단의 조목이 셋인데, 형정(刑政)과 군정(軍政)과 추쇄(推刷)입니다. 나라 안에 한 사람도 편안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 원망이 이미 드러나서 위로 하늘을 거스렀습니다. 수년 이래로 재이가 거듭 발생하였으나, 이번 가뭄의 절박한 근심은 다른 재난보다 더욱 심합니다. 다행히 조종(祖宗)의 도우심에 힘입어 성명께서 깨달으셔서 감옥의</p>	<p>禮曹參判閔應亨請對，上召見之。 應亨曰：“臣伏見召公戒成王之言曰：‘以誠小民爲祈天永命之本。’ 臣請以誠小民之說，爲聖上陳達焉。 臣以畿邑形勢，遙想三南農事，則今雖得雨，必未盡洽。 國之根本，唯在三南，三南失稔，則國家經費，於何取辦乎？ 應天以實之道。 本不外於懷保小民。 《書》曰：‘一人三失，怨豈在明？ 不見是圖。’ 此言其怨已著， 則難可及救， 宜趁其未著而圖之。 今日之弊，其目有三， 刑政也、軍政也、推刷也， 邦域之內，無一民之得安，無一人之不怨， 其怨已著， 上干于天， 數年以來，災異疊出，而今茲之旱，切迫之憂，尤有甚於他災。 幸賴祖宗默祐， 聖明覺悟， 刑獄久囚，一時疏釋，是乃大禹泣辜之心，而 成湯六責之意也。 伏見殿</p>

	<p>장기수를 일시에 석방하셨으니, 이는 우(禹)임금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며 성탕(成湯)이 여섯 가지로 자책(自責)하는 뜻입니다.</p> <p>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요(堯) 순(舜) 같은 최상의 지혜로운 자질을 가지고 국가의 어려운 때를 당해서 무릇 시행하시는 일이 진실로 무언가 해 보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다스려지기를 구함이 너무 예리하고 빠른 효과를 보고자 하여 선왕의 정치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는 뜻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을 충성으로 여기고, 말을 듣는 데 있어서는 겸손하고 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직언으로 여기고 계시며, 기강을 세우고자 하면 한갓 각박만 숭상하고 군려(軍旅)를 다스리고자 하면 오로지 위력만 사용해 백성의 원성은 돌아보지 않아서 변괴가 날로 이르렀습니다.</p> <p>그런데 한번 크게 은혜를 베푼 후부터는 화기가 조정에 가득하고 교지에 응하는 말이 매일 이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마음을 지속하여 태만히 하지 않고 더욱 힘써서 끝까지 한결같이 하신다면, 하늘과 사람이 감응하는 이치에 있어 어찌 전환의 계기가 없겠습니까. 성상께서 과연 진작시킬 뜻이 있다면 더욱 인심을 얻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심을 잃고도 나라를 다스린 자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수신과 성찰하는 도리를 다 하소서.”</p> <p>하고, 아울러 영장(營將)의 폐단과 성지(城池)의 폐해에 대해 반복하여 진달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경의 정성이 지극하다.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집에 있으면서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허물하겠는가. 그런데 경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금하지 못한 끝에 어렵게 와서 면대를 청해 이처럼 간곡히 말하는데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릇 일은 충분히 강구해야 하므로 묘당과 상의하여 처리하겠다.”</p> <p>하였다. 응형이 사례하고 물러가자 술을 주라고 명하였다.</p>	<p>下, 以堯、舜上智之資, 當國家艱難之日, 凡所設施, 固出有爲之志, 而求治太銳, 欲見速效, 不遵先王之政。至於用人, 以作事順旨爲忠, 聽言以遜志悅耳爲直, 欲立紀綱, 則徒尙深文, 欲治軍旅, 則專用威力, 不顧民怨, 變異日臻。一自大霈之後, 和氣滿朝, 應旨之言日至, 若以此心, 繼而勿怠, 益加勉勵, 終始如一, 則天人感應之理, 豈無轉移之機乎? 聖上若果有志於振作, 則尤當以得人心爲務。自古及今, 未聞失人心, 而能爲國者矣。惟願殿下, 毋忘此心, 克盡修省之方。”仍以營將之弊, 城池之害, 反覆陳達, 上曰: “卿之憂國愛君之誠至矣。老病之人, 雖在家不言, 誰以爲咎, 而卿不勝由中之憊, 委來請對, 歉懇如此, 可不體念。凡事不厭熟講, 當與廟堂相議處之。”應亨辭退, 命饋酒。</p>
--	---	---

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6월 7일(무인) 1번째기사
고쳐야 할 폐단과 임금의 실정들을 아뢰는 대사헌 민응형의 상소문

대사헌 민응형(閔應亨)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타고난 자품이 뛰어나시나 도를 보는 것은 통쾌하지 못하며, 경연에 매일 거둥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한갓 말단적인 구두(口讀)만 일삼은 채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라.’는 교훈을 연구하지 않으셨으므로 본원이 맑지 못하여 여러 폐단이 모였습니다. 신은 이 점에 대해 다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목수가 집을 짓는 데도 규범이 있는데 전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도리어 규범이 없고, 소리(小吏)가 관직을 맡아도 아랫사람의 사정을 아는데 전하께서는 임금인데도 아랫사람의 사정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우치게 분노하는 것을 교훈에서 경계하였는데 전하께서는 굳이 스스로 가지시며, 이기기를 좋아하는 병통은 필부도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오래도록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에 실효가 없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회로(喜怒)가 알맞지 못하고 일에 임해서는 치우쳐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성상께서 평소 학문에 강명(講明)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의정부에 의연한 기풍이 없고 한갓 성상의 뜻만 따르려는 습관만 있어서 위로는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고 아래로는 민생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떼지어 나오고 떼지어 물러가는 것만 일삼아서 한가로운 여느 관원들이 하는 것처럼 하니, 기둥이 약하면 집이 기우는 것이 진실로 그런가 봅니다.
아, 옷자락을 당기며 항의하는 풍도와 촛불로 조서를 불사르는 미풍은 진실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뜻을 헤아리려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따라 주는 것을 좋아하여 군신 간에 구차하게 거스리는 일이 없기만을 구하고 있으니, 신은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정착할 곳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래 조정의 기색이 더욱 심히 아름답지 못하여,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청관(淸官)의 후보자로 선

戊寅/大司憲閔應亨上疏。其略曰：
伏觀殿下，天姿超邁，而見道未快，非不日御經席，而徒事句讀之末，不究精一之傳，本源未澄，衆弊叢萃。臣請極言之。梓人治屋，尙有規模，而殿下之經國，反沒規模，小吏當官，猶通下情，而殿下之爲君，未聞下情。忿懣之辟，古訓攸戒，而殿下固自有之，好勝之病，匹夫所羞，而殿下久未祛焉。是以治無實效，人未自盡。發言而喜怒失中，臨事而偏係難回，此無非聖學無素所講明而然也。臣竊見巖廊之上，頓乏毅然之風，徒存將順之習，上不能格君心之非，下不能濟民生之艱。唯以旅進旅退爲事，有若閑漫百執事之爲者，柱弱屋傾，亶其然乎。嗚呼！牽裾抗言之風，引燭焚詔之美，固已難見，而下揣上意，上喜下合，君臣之間，苟求無拂，臣見其國事日非，而稅駕無所也。近來朝著氣色，尤甚不佳，事雖微細，輒生立幟之計，誠可痛也。通淸屬耳，而賢愚未著，則何至指擬於儉邪，發論異司，而分疏有嫌，則何必強避而紛紜。至於敍命之爭，論避各異，此何等事業耶？噫嘻！

	<p>정된 지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현명함과 우매함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간사하다고 지적할 것까지 뭐가 있겠으며, 다른 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변명하는 데 혐의가 있는 것인데 반드시 억지로 피험하면서 시끄럽게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용하라는 어명을 간쟁함에 이르러서는 인피한 내용이 각각 다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괴이합니다. 오래 가무는 때에 상하가 근심하고 경황이 없는데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술에 취해 부축을 받으며 하산(下山)하고, 임금을 면대할 즈음에 여러 재상은 분주하고 있는데 법을 맡은 관원은 마음대로 강가에 나가 놀고 있으니 이다지도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p> <p>지난번에 왕자를 더 두라고 청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는 너무나 생각해 보지 않고 한 말입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왕비께서 왕자를 낳는 경사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자궁이 창성한 시기는 바로 경사가 넘치는 것으로서 신민의 바라는 바가 다만 여기에 있으니, 일을 모르는 젊은이의 말은 성상께서 유념할 것이 못됩니다. 옛날 유향(劉向)이 성제(成帝)의 후사가 없음을 걱정하여 세자를 두라고 청하였던 일을 끌어다 오늘의 일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p> <p>재물을 모으면 백성이 흩어진다는 것은 옛날부터 항상 그러한 것입니다. 이번 추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끝에 나왔으니 문권(文券)을 가지고도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양적(良籍)이 있어도 면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추쇄하는 일을 이미 완료하여 얻은 인구가 매우 많으니 재물은 모아졌습지만 백성은 흩어질 것입니다. 살 곳을 잃고 유랑하다가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산 속에 모여 도둑질을 하는 것은 사세상 이르고야 말 것이므로 신은 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공물을 징수하지 말고 서서히 풍년이 드는 해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공물 징수를 의논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p>	<p>異哉。久旱之日，上下憂遑，而奉璧之人，扶醉下山，賜對之際，諸宰駿奔，而執法之官，任意出江，若是乎人不知警畏也。乃者有請廣儲嗣之說，而此乃不思之甚者也。臣伏觀長秋載誕之慶，今猶未斷。何況甲觀昌期，正宜衍慶，臣民所望，只在於此，則年少未解事之言，未足以留聖念也。昔者劉向，悶成帝之無嗣，有廣儲嗣之請，不可援喻於今日也。財聚民散，自古常然。今茲刷政，出於久廢，持文券而莫伸，有良籍而不免者何限？即今刷事已了，得口甚多，財則聚矣。而民且散矣。失所流離，無所衣食，綠林嘯聚，潢池盜弄，勢所必至，臣竊憂之。莫如姑勿徵貢，徐待年歲豐登，始議徵貢，似乎得宜。內需司之設，甚非宮府一體之意，而壽進、明禮等宮號，又與內需爲一體，其爲弊端，罔有紀極。臣願亟罷內需司之衙門，輸其財賄於地部。凡干輸用，一切取給於地部，則舉一國，而將拭目於王者無私之政也。王子公主與夫卿士大夫第宅間架，自有定制，苟或僭踰，即宜毀撤。國綱如在，初何敢踰制，有司有人，又豈可任</p>
--	--	---

내수사를 설치하는 것은 심히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 어긋나며, 수진궁(壽進宮)·명례궁(明禮宮) 등은 또한 내수사와 일체인데 그 폐단이 끝이 없습니다. 신은 원컨대 빨리 내수사를 폐지하고 그 재물을 호조로 옮기소서. 그리하여 무릇 쓸 물건을 모두 호조에서 취급하게 하면 온 나라의 백성이 사욕이 없는 왕자(王者)의 정치를 눈을 씻고 볼 것입니다. 왕자와 공주 그리고 공경과 사대부의 저택의 칸수는 본디 정해진 규정이 있으므로 진실로 혹 참람하게 규정보다 지나친 것이 있다면 곧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나라에 기강이 있다면 애당초 어찌 감히 규정을 어기겠으며, 유사다운 사람이 있다면 또한 어찌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지금 낙현(駱峴)에 커다란 집이 가득 차 있으며, 그 동네의 두 사람이 나락산(羅絡山) 아래에 새로 집을 짓고 있는데도 한성부는 보고만 있고 법부(法部)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염의 사이에 집짓는 일이 한창 일어나서 모두 규정을 넘게 지으면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니, 신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래 각 아문의 차관(差官)들과 여러 궁가(宮家)의 차지(次知) 등이 모두 남의 물건을 빼앗아 차지하는 것을 능사로 삼고 있는데도 직업을 잃은 양민은 입이 있어도 간쟁하지 못하며, 현관(縣官)은 두려워하고 꺼려서 감히 사실을 조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전(漁箭)이나 시장(柴場)에도 모두 손을 댈 수 있는 곳이 없어 민생이 장차 날로 초췌해져 끝내 살아갈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사치의 피해는 천재보다도 심한데 지금 담장을 옷처럼 꾸미고 신발에 선을 두른다는 조롱과 술을 간장처럼 고기를 콩나물처럼 흔하게 여긴다는 풍자가 불행히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국혼(國婚)을 하는 사람이 예로써 스스로 절약하지 못하고 앞을 다투어 성대하게 해 궐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하려는 듯하니 낭비가 많음을 들으면 놀랄 만합니다. 공사(公私)와 빈부는 본래 다르고 더구나 존귀와 비천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감히 맞먹으려는 꾀를 갖

他而已乎? 今也駱峴, 宏宇彌滿, 洞中二主, 新構羅絡山下, 而京兆坐視, 法府縮舌, 職此之故。閭巷之間, 木妖方興, 率皆踰制, 而莫或越趨焉, 臣不勝慨然也。近來各衙門差官之輩, 諸宮家次知之類, 皆以冒占廣拓爲能事, 良民失業, 有口莫爭, 縣官畏忌, 不敢覈實。至於漁箭柴場, 皆無下手之地, 民生將日瘁, 而終無懷保之望也, 伏願殿下留念焉。奢侈之害, 甚於天災, 今也被牆緣履之譏, 槩酒藿肉之刺, 不幸近之。國婚之人, 不能以禮自約, 競爲浮張, 有若務勝於闕內之爲者然, 糜費之多, 聽聞可駭。公私貧富, 本來不同, 何況尊卑天淵, 而敢生當敵之計, 何其迷而不悟之甚也。臣竊聞國舅張維, 當國婚時, 不爲求請於各官, 自爾經過云, 豈非今日數三人之所可師者乎? 臣又聞成廟寢疾, 大臣入問候, 則臥內茶褐楮衾, 將弊而不改, 宣廟昇遐之後, 木綿之服居多云, 祖宗儉約之風, 正好取法。刑杖爲輔治之具, 而囹圄爲遷善之地, 則是固有國之慎重, 而卽今京外, 箠楚恣意, 或有無招而訊案者, 或有不承而照斷者, 當答者刑

	<p>고 있으니 어찌 그리도 미혹하여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신은 듣건대 국구(國舅) 장유(張維)는 국혼 때에 각 관아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조용히 보냈다고 하니, 어찌 오늘날 두세 사람이 본받을 만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신은 또 듣건대, 성종(成宗)이 병들어 누웠을 때 대신들이 들어가 병문안을 하였는데 침실의 다갈색 이불이 다 헤졌으나 바꾸지 않았으며, 선조(宣祖)가 승하한 후에 무명옷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니, 조종조의 검소한 기풍을 본받는 것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p> <p>형장(刑杖)은 정치를 돕는 도구이며 감옥은 착해지도록 교정하는 곳이고 보편이 는 진실로 나라를 가진 자가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 나 지방에서나 매질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며 혹 공초도 없이 신문한 기록이 있고, 혹 어명을 받지 않고 처벌하기도 하며, 태형(笞刑)에만 해당하는 자를 형벌을 주며, 추고에만 해당하는 자를 구속하며, 판결해야 할 자를 지체하며, 과연 해야 할 자를 유배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통해 하는 것이 이보다 막중한 것이 없으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임금의 한 순간의 생각이 공(公)인가 사(私)인가에 따라 치란(治亂)이 달렸으므로 옛날의 명철한 임금은 여기에 조금도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왕손(王孫)이 소송에서 패하자 갑자기 호되게 꾸짖는 교지를 내리셨으며, 공주(公主)의 노비가 살인을 하였으나 법대로 처벌하지 못하니 신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p> <p>지난날 김홍욱(金弘郁)의 망언을 용납하지 않자 감히 아무도 용기를 내어 말하지 못하였고, 김육(金堉)의 충간을 받아들이지 않자 모두 입을 다물고 제 몸을 지킬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사담을 나눌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한탄하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전하의 조정에서 꺼리지 않고 다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만다면 굶주린 까마귀가 날이 갈수록 입을 더욱 다물 것이며 직간하는 신하가 직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무엇 때문에 확 바뀌서 과거의 허물을 통렬히 누</p>	<p>焉, 當推者拿焉, 當決者滯焉, 當罷者配焉人情冤鬱, 莫重於斯, 伏願殿下留念焉。 人君一念之公私, 治亂係焉, 古之明君, 未嘗少忽於此矣。 今也王孫之訟見屈, 而遽下峻旨, 公主之奴殺人, 而莫伸王法, 臣不勝慨然也。 乃者不容金弘郁之妄言, 而莫敢出氣而言事, 不諒金堉之忠憫, 而皆思結舌而自守。 卽今屋下私談之際, 扼腕傷時者何限, 而無一人極言不諱於殿下之庭。 如是而止, 則飢烏之噤, 去去愈甚, 朝陽之鳳, 無日可鳴矣。 今殿下何不翻然改圖, 痛悔前愆。 凡以妄言而冤死者, 伸理之, 凡以妄言而斥黜者, 收斂之, 夫霽風霆之怒, 繼以陽春之煦, 則臣見王門如市, 而更無可諫之事矣, 伏願殿下留念焉。 近觀殿下之處事, 無非文具, 頓無實德, 臣不勝慨然也。 試言之。 陰虹貫日, 則殿下恐懼, 而罷修理之役矣。 災異既過, 土木繼作, 則是殿下之事天, 文具也。 韋布知名, 則殿下嘉悅, 而有羅致之志矣, 病狀纒至, 職名例遞, 則是殿下之待賢, 文具也。 罪己之餘, 例多所進之言, 而率爲備局之休紙, 則是殿下之求言, 文具</p>
--	---	---

	<p>우치지 않으십니까. 무릇 망언하다가 원통하게 죽은 자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무릇 망언으로 인하여 내쫓긴 자는 거두어 등용하시며, 태풍과 우레 같은 분노를 흔쾌히 거두시고 따뜻한 온정을 이어 베푸시면, 신이 보건대 대궐 앞에 시장처럼 사람이 몰려들어 다시는 간쟁할 만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p> <p>근래 전하께서 처리하시는 일을 보건대 말치레가 아닌 것이 없어 전혀 실질적인 덕행이 없으니 신은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시험삼아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무지개가 해를 가리면 전하께서는 두려워하여 수리하는 일을 중지하십니까만 재이가 지나가면 토목 공사를 다시 계속하니 이는 전하께서 하늘을 섬기는 것이 말치레뿐인 것이며, 재야에 이름난 자가 있으면 전하께서 기뻐하며 초치할 뜻을 두었다가 병이 있어 못 나오겠다는 상소가 이르자마자 직명을 으레 교체하고 마니, 이는 전하께서 현인을 우대하는 것이 말치레뿐인 것이며, 스스로 자책한 후에 으레 진언한 것이 많으나 모두 비국(備局)의 휴지가 되고 마니 이는 전하께서 직언을 구하는 것이 말치레뿐인 것이며, 오두막집의 백성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였는데 부질없이 하전(夏氈)에 들러 걱정만 하고 계시니 이는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말치레뿐인 것입니다.</p> <p>절의(節義)가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므로 비록 태평한 때라도 포상하기에 겨를이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 어려운 때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고신 김상헌(金尙憲)·정온(鄭蘊)·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 등은 의리를 굳게 지키고 굽히지 않아 충절이 넘쳐나서 우리 조정의 기강이 이들 때문에 부지되었으니 마땅히 정려(旌閭)를 세워 주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은전을 내리지 않았습시다. 또한 조헌(趙憲)·이순신(李舜臣)·김계갑(金悌甲)·김응하(金應河)·김준(金浚) 등의 자손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모두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데 녹용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장차 어</p>	<p>也。 葑屋之下， 未見實惠之究， 而謾勞廈氈之憂勤， 則是殿下之愛民， 文具也。 節義之所以維持國家者甚大， 雖當治平之時， 固宜褒嘉之不暇， 矧茲艱虞之日乎？ 故臣金尙憲、鄭蘊、洪翼漢、尹集、吳達濟等， 抗義不屈， 忠節凜然， 我朝綱常， 此焉扶持， 合有旌閭之舉， 而恩典尙今不加。 至於趙憲、李舜臣、金悌甲、金應河、金浚等子孫， 俱宜見恤， 而未聞有錄用之人， 將何以激勸後人哉？ 且宣廟朝相臣之有勳業於國家者， 李浚慶、柳成龍、李元翼、李德馨、李恒福等子孫， 亦宜一體收錄， 以酬其乃祖之勤勞， 伏願殿下留念焉。 今者外方山城之弊， 雖不暇縷陳， 而試以江都之弊言之。 汨於營造等役， 長立官門， 在家日少， 則不能治業， 坐可知也。 又況一結之內， 受出十餘斛之糶， 年久陳腐之米， 太半糜粉， 而秋來收糶， 加備剩數， 償糶之後， 便無礮石之餘， 島民安得不爲之愁怨乎？ 臣意江都舊積， 移用於百官之頒祿， 三南稅米， 每年輸入江都， 以爲用舊蓄新之地， 則似是得計， 伏願殿下留念焉。 殿下卽阼之初， 臣自外入來，</p>
--	---	---

똥게 뒷사람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조(宣祖) 때 국가에 공훈이 있었던 재상인 이준경(李浚慶)·유성룡(柳成龍)·이원익(李元翼)·이덕형(李德馨)·이항복(李恒福) 등의 자손도 마땅히 일체로 등용하여 그들 조부의 노고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지금 지방 산성(山城)의 폐단은 비록 일일이 말할 겨를이 없으나 강도(江都)의 폐단으로 시험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조 등의 부역에 골몰하여 오랫동안 관아에 있게 되어 집에 있는 날이 적으니 자기 일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알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1결(一結)에 대해서 받은 10여 휘[斛]의 환곡은 오래되어 묵고 썩은 쌀로서 태반은 싸라기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 갇아야 할 환곡은 그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하므로 환곡을 갇은 후에는 한두 섬의 여분도 없으니, 섬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강도에 이미 쌓아 두었던 것은 백관에게 주는 녹봉으로 전용하고 삼남(三南)의 세미(稅米)를 매년 강도로 실어 들여 옛 것을 쓰고 새 것을 저축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으니,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전하께서 즉위한 처음에 신이 밖에서 들어와 연석에 입시했을 때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언급이 되면 전하께서는 매번 삼대의 정치를 스스로 기약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행위가 한결같이 사의(私意)로써 만들어낸 것에서 나와서 대부분 선대 성왕의 규범을 어기며, 인재를 씬에는 일을 할 때 뜻에 순종하는 것을 유능하다고 여기며, 말을 들음에는 귀에 부드럽고 겸손한 것을 충성으로 여기며, 기강을 세우고자 함에 가혹한 처리를 하는 데 힘쓰며, 군사를 독려하고자 함에 침해하여 소요를 일으킬 폐해를 생각하지 않으며, 은혜가 궁가(宮家)에 치우치며, 폐해가 재물과 이익에서 고질화되어, 아래로는 백성의 원성과 위로는 하늘의 분노를 사서 국사가 장차 어찌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를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무엇 때문에 처음의 의지와 이렇게 어긋

忝侍筵席，言及治道，則殿下每以三代之治自期，豈意厥後凡百施措，一出於私意之自創，而率違先聖王之規模，用人而以作事順旨爲能，聽言而以悅耳遜志爲忠，欲立紀綱，而務爲深刻之舉，欲詰戎兵，而不思侵撓之害，恩偏於宮家，弊痼於財利，以致民怨於下，天怒於上，而國事將歸於無可奈何之地？殿下初年之志，一何刺謬也。向者趙綱養心之說，正中殿下之病，不審殿下，泛聞而已乎？伏願殿下，留神猛省焉。上嘉納之。

	<p>나게 하십니까. 과거 조경(趙綱)이 말씀드린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 전하의 병에 꼭 맞을 것인데, 전하께서는 범연히 듣고만 말으셨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정신을 집중하여 맹렬히 반성하소서.”</p> <p>하니, 상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p>	
<p>효종 18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6월 21일(임진) 3번째기사 충청 감사 서필원이 서원·향사(鄉祠)의 폐단에 대해 아뢰니 예조의 의논을 따르다</p>	<p>충청 감사 서필원(徐必遠)이 치계하기를, “서원(書院)의 사체는 향교에 버금잡니다. 그런데 근래 조정에 금하는 규칙이 없고 선비들에게 정론(定論)이 없는 것을 틈타서 욕심대로 하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서원으로 짓기에 부족한 것을 향현사(鄉賢祠)라고 부르면서 서로 모방하여 날로 조금씩 변성하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말한다면 그 폐단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p> <p>향교와 서원은 그 비중이 다릅니다. 그런데 시골에 사는 선비 중에 사족으로 불리우는 자는 조금만 재주와 식견이 있으면 서원에 적을 두고 원유(院儒)라고 부르면서, 향교를 마치 주막같이 보며 향교생을 노예처럼 대우하여 선성(先聖)에게 석전을 드리는 곳을 잡초가 무성하게 하며 국가의 문(文)을 숭상하는 뜻을 헛되게 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첫째 폐단입니다.</p> <p>양민과 천민을 막론하고 한가한 백성을 모집해서 보노(保奴)라고 부르면서 마음대로 부리는데, 그 얻은 수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해 얻은 후에는 계속해서 서원의 물건으로 삼아서, 만일 빼앗아 군역(軍役)으로 이관하려는 일이 있으면 떼지어 일어나서 떠들어대며 반드시 그들의 의향대로 하고야 마니, 이것이 둘째 폐단입니다.</p> <p>그들이 높이어 받드는 사람은 한결같이 공론을 따르지 못해 혹은 그 자손이 자기 선조를 사적으로 위하거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 아부하여 지나치게 추존하기 때문에 창립할 즈음에 논의가 일치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싸우다가 선대의 누나 숨겨져 있는 허물을 모두 들추어 내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아침에는 취향이 같다가 저녁에는 원수가 되곤 하니, 풍속을 해치는 것이</p>	<p>忠淸監司徐必遠馳啓曰：“書院事體，亞於鄉校，而近緣朝無禁制，士無定論，唯意所欲，不復顧憚。不足於書院者。稱爲鄉賢祠，轉相慕效，日以寢盛，概以言之，其弊有四。鄉校、書院，輕重有間。鄉居士子之名爲士族，稍有才識者，則籍名書院，稱以院儒，視鄉校如店舍，待校生如奴隸，使先聖釋菜之所，鞠爲茂草，使國家右文之意，歸於虛地，此一弊也。毋論良賤，募得閑民，稱以保奴，任意使喚，隨其所得，多少不齊。而募得之後，則執爲院物，如有奪定軍役之舉，則群起呶呶，必得所欲而後已，此二弊也。其所尊奉之人，不能一循公議，或爲其子孫，而私其祖先，或阿其所好，而過爲推許，故創立之際，論議不一，始焉鬪鬪，世累隱隱，無不暴揚。朝同臭味，暮成仇敵，傷風敗俗，莫此爲甚，此三弊也。書院鄉祀，春秋祭物，自本官備給之際，所費甚廣，而事係學</p>

	<p>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셋째 폐단입니다.</p> <p>서원과 향사(鄉祀)의 춘추 제물을 본관에서 준비하여 지급할 때에 그 비용이 심히 많으나 학궁(學宮)에 관계된 일이므로 수령된 자는 힘을 다해 마련하여 보내면서도 오히려 부족할까 염려합니다. 그 중에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은 그래도 지장이 없겠으나 돼지나 염소 등과 같은 것은 회부(會付)에 기록된 것으로서 예사 물건이 아닌데 쓰는 데 절제가 없어서 점점 더 소모되어 가고 있으니, 이것이 넷째 폐단입니다.</p> <p>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만일 제때에 억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변성해지도록 방치한다면 오월(吳越)의 참람함을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선성의 사당을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뒤에 기록한 서원과 향사 중에서 서원으로 짓기 부족한 것은 향사로 강등하고, 향사로 짓기 부족한 것은 즉시 철거케 하십시오.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자는 구별하여 위패를 떼내게 하고, 비록 그 도학(道學)이 서원에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한 도 안에 서원을 중복하여 건립하지 못하게 하며, 액호를 하사받은 서원 외의 서원에 드는 춘추향사(享祀)의 제수는 관가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지 말게 하십시오.</p> <p>오늘 이후로 서원이나 향현사를 세우려고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행적을 갖추어 입궐하여 아뢰게 한 다음 이를 묘당에 하문하여 여러 의견이 일치해야만 허락하며, 조정에 품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창립한 자에 있어서는 음사(淫祀)로서 논죄하여 앞장선 유생을 죄주십시오. 이른바 보노는 액호를 하사한 서원이나 향현사를 막론하고 모두 혁파하여 본관에 돌려 보내 군대에 소속케 하십시오. 입교한 유생으로 과거를 보려는 유에 대해서는 서울의 사학(四學)의 규례에 따라 10일간 입번(立番)하여 본관의 공문을 받은 연후에 경향시(京鄉試)에 가는 것을 허락하여, 한편으로는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고 한편으로는 선성을 높여 받드는 터전을 삼으소서.”</p> <p>하였다. 예조가 회계하기를,</p>	<p>宮，故爲守令者，極力備送，猶恐不及。其中易辦之物，容或無傷，而如猪羔等物，係是會付所錄，不是等閑之物，用之無節，漸就耗損，此四弊也。臣愚以爲，若不及時裁抑，恣之令盛，則吳越之僭，不可勝言，先聖廟庭，無以保護。就後錄書院鄉祀中，其不足於書院者，降以鄉祀，不足於鄉祀者，卽令毀撤。其中不合享祀者，區別拔去，雖其道學合爲書院者，一道之內，使不得疊立院宇，賜額書院外，未賜額書院，春秋享祀祭需，勿令官家備給。今後欲立書院鄉賢祠者，許令具其行蹟，詣闕陳列，下廟堂僉議歸一，然後許之，其不稟朝廷，私自創立者，則論以淫祀，罪其首倡儒生。所謂保奴，毋論已賜額書院鄉賢祠，一體革罷，歸之本官，以屬軍兵。入校儒生赴學之類，依京中四學例，立番十日，受出本官公文，然後許赴京鄉試，一以爲救正士習，一以爲尊奉先聖之地。”</p> <p>禮曹回啓曰：“書院之設，昉於宋儒，鄉先生祭社，見於唐時，此實出於景慕儒賢興起之意，固不可容易論之。今觀忠清監司徐必遠狀本，則初非輕忽於</p>
--	---	---

“서원의 설립은 송유(宋儒)에게서 비롯되었고, 향 선생(鄉先生)을 제사하는 것은 당나라 때에도 있었으니, 이것은 사실 유현(儒賢)을 흠모하고 분발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므로 진실로 쉽게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충청 감사 서필원의 장계를 보니, 이 일을 처음부터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익은 없고 해로움만 있는 것을 미워한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서원과 향사를 등급을 매겨 강등하자 한 것은 가볍게 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배와 후생이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아 인품의 고하를 상세히 알기 어려우며, 오랜 시일이 지난 후라서 그 행적을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향사에 모시기 부족한 자를 구별하여 위패를 떼어내자는 것은 그 형세가 더욱 어렵습니다. 도학과 절의가 일세에 높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위해 곳곳에 사당을 세우는 것은 과연 너무 번잡하니 한 도 안에 서원을 중첩하여 세우는 것은 마땅히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서원과 향현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미 아름다운 뜻입니다. 후세에 본보기가 될 만한 현인과 의사(義士)의 신위(神位)를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고을 사람과 유림이 흠모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다른 음사(淫祀)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이처럼 많이 사우(祀宇)를 헐고 위판(位版)을 묻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어 피차에 다름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말대로 한다면 반드시 팔도를 똑같이 해야 할 것이니 어찌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서원과 향현사의 보노가 비록 너무나 많기는 하나, 다만 서원은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 많아서 지키는 사람이 없을 수 없으니, 액호를 하사받은 서원은 보노 7명, 그 외의 서원은 보노 5명을 정해 주고, 향현사의 사체는 서원보다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읍내와 마을에 있는 것이 많으므로 보노 2명만 주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두 제도로 하여금 길이 규정으로 삼게 하되 그 외의 군역을 모면하려는 양정(良丁) 및 속오(束伍)를 면하려는 공사(公私)의 천인으로서 서원과 향현사에 들어간 자는 모두 색출하여

此事，蓋惡其無益而有害。第念書院鄉祠之次第降等云者，非但不可輕論，先後之人，生不並世，人品之高下，有難詳知，久遠之後，亦難撮其行跡。不足於鄉祠者，區別拔去云者，其勢尤難。道學節義，雖隆於一時，以一人，而處處立廟，果爲太煩，一道之內，疊立院宇者，宜令禁止。大概書院鄉賢祠之設，既是美意。賢人義士之觀感於後世者，設其位，而俎豆之，出於鄉人儒士之景慕，則非他淫祀之比，亦不當撤毀祠宇，埋置位版，若是之多也。國家定制，宜無異同於彼此。若依此言，則必將舉八道而同之，豈不重哉？臣等愚意，書院鄉賢祠保奴，雖極濫觴，而但書院多在山谷中，不可無守直之人，賜額書院，則保奴七名，未賜額書院，則保奴五名定給，鄉賢祠，則非但事體輕於書院，多在於邑內村間，只給保奴二名。皆令諸道，永爲恒式。其餘良丁之謀免軍役及公私賤之謀免束伍，投屬書院鄉賢祠者，並皆查出定軍。今後書院鄉賢祠，欲爲建立者，必具其行跡，陳疏下廟堂，許令建立云者，其意甚是，依此行之，至於私自創

	<p>군에 편입시키게 하소서.</p> <p>앞으로 서원과 향현사를 건립코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행적을 갖추어 아뢰게 하여 묘당에 하문한 다음 건립을 허가하라는 것은 그 생각이 심히 옳으므로 이대로 시행하시고, 사사로이 창립한 자에 있어서는 본관이 즉시 금지하고 앞장선 자는 논죄토록 하십시오. 액호를 하사받은 서원 외의 서원과 향현사의 제수를 관에서 지급하는 일은 일절 폐지하며, 입교한 유생이 과거를 보는 것 등은 서울 사학의 예에 따라 입번(立番)하게 하며, 각읍에서 입교한 유생의 수를 통계하여 차례대로 입직하게 하되 만일 10일이 차지 않으면 공문을 내주지 말게 하고 공문이 없이 경향시에 응시한 자는 1년간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여 선비의 풍습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따랐다.</p>	<p>立者，則自本官使之趁卽禁斷，首倡者論罪。 賜額書院外，未賜額書院鄉賢祠，官給祭需等事，一切革罷，入校儒生赴學之類，依京中四學例立番，著令各邑，通計入校儒生之數，輪次入直，而如未滿十日，則不許出公文，無公文，而冒赴京鄉試者，限一年停學，以正士習爲當矣。” 從之。</p>
<p>효종 19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7월 2일(계묘) 3번째기사</p> <p>사용원에 각 제사에 필요한 제기를 만들게 하다</p>	<p>봉상시가 아뢰기를,</p> <p>“나라의 큰일은 제사이므로 제물을 담은 제기(祭器)를 만들어서 가져오게 하는 법규가 의당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정해진 격식이 없었기 때문에 영녕전(永寧殿)·종묘·사직과 여러 곳의 산천 대제(山川大祭) 및 각 능전(陵殿)의 절일(節日)에 제물을 담은 그릇들을 매년 사삿집의 그릇으로 쓰고 있으니 불결한 뿐만 아니라 매우 구차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용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쓰일 제기 숫자를 파악해서 만들어 보내게 하되 3년에 한 번씩 바꾸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p> <p>하니, 따랐다.</p>	<p>奉常寺啓曰：“國之大事在祀，祭物所盛之器，宜有造進之規，而曾無定式。故永寧殿、宗廟、社稷、諸山川大祭及各陵殿節日祭物所盛之器，輒用私器，不但不潔，亦甚苟且。請自今，令司饗院計其器數，造成以送，三年一改爲當。” 從之。</p>
<p>효종 19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7월 11일(임자) 3번째기사</p> <p>영돈녕부사 김육이 차</p>	<p>영돈녕부사 김육(金堉)이 차자를 올리기를,</p> <p>“올해는 반은 장마가 지고 반은 가뭄이 들어서 풍흉을 예측할 수 없으나, 밀이나 보리가 이삭만 썩 채 여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수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뭄 끝에 비를 만나 많이 상한 곡식이 조금 되살아났으나 마치 병이 든 사람이 약 기운으로 부지하여 겨우 죽음이나 면할 뿐 끝내 완전한</p>	<p>領敦寧府事金堉上筮曰： 今年水旱相半，豐歉未定，而以傘麥之秀而不實，觀之，則秋成之事，亦可知矣。旱餘得雨，多傷小蘇之穀，如病者賴藥扶持，堇免於死，而終不得爲全</p>

자를 올려 대동법 시행을 건의하다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서(湖西)와 양서(兩西)에 이미 흉년이 들어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도라고 어떻게 잘 익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구제할 방안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전에 호남 사람들이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전후 연달아 청하였으나 조정이 허락하지 않고 정원에서 그 상소를 올려보내지 않았는데 신은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신이 끝까지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반드시 비웃을 것입니다만 신이 이 일에 급급해 하는 것은, 대체로 호남은 나라의 근본인데 재해를 매우 많이 입었으므로 민심이 쉽게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을 안에 이를 시행해야만 혜택을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누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백성들이 소망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따라주는데 임금의 하늘의 뜻을 본받는 도리에 있어서 어떻게 백성의 뜻에 순응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에 모두가 했으면 하는데 수령들이 안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의 백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수령은 불과 50여 명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50여 명이 안하고자 한다고 하여 수많은 백성이 크게 바라고 있는 바를 시행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본도에서 1결(結)에 대한 세금으로 거두는 쌀이 거의 60여 말에 이른다 합니다. 열 말을 거두어들인다면 백성들에게서 적게 거두는 것으로서 다섯 배나 감소됩니다만 그래도 국가의 쓰임에는 부족한 바가 없는데 무엇을 꺼려 이를 시행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지난번 호서의 수령들도 모두 이를 시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시행한 지 두어해 동안에 시골 백성들이 전리에서 고무하고 개들은 관리를 보고 짓지 않았으므로 인접해 있는 도에게 큰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행해 본 분명한 효과로서 서울이나 지방 모두가 편리하고 위아래가 서로 편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0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백성들 자신이 먹는 식량입니다.

人。湖西兩西，已有失稔之憂，他道又何望其成熟哉？賑救之策，所宜熟計，而先思也。向來湖南之人，請行大同者，前後相續，而朝廷不許，至於政院，又壅其疏，臣實未曉也。臣終始爲此言，人必笑之，臣之汲汲於此者，蓋以湖南，國之根本，而災害甚多，民心易離，行之必及於秋前，可施一分之惠，故冒死而屢陳。嗚呼！民之所欲，天必從之，人君體天之道，豈可不先於順民之志乎？或曰民情皆欲，而守令不欲，故不可行。湖民未知幾百萬，而守令不過五十餘人，何可以五十餘人之所不欲，不行百萬人之所大欲乎？當今本道一結之價米，幾至六十餘斗云，以十斗收之，則寡取於民，所減五倍矣，而公家之用，無所不足，何憚而不爲此乎？前者湖西守令，亦皆不欲，而行之數年，村巷之民，鼓舞於田里，厯不吠吏，大爲隣道之所羨，此已然之明效也。京外皆便，上下相安，十斗之外，皆民自食之米，賑救之策，孰有善於此者哉？不待發倉傾困，而國無損瘠矣。臣於前日請行之時，竝兩湖而量之，結卜米布之數，籍記而藏之本廳，

	<p>구휼하는 방안이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고의 곡식을 풀고 있는 대로 털어내지 않고도 나라 안에 죽거나 야윈 백성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전일 시행하자고 청할 때에 양호(兩湖)를 모두 셈해 결복(結卜)과 미포(米布)의 숫자들을 문서에 올려 본청에 간직해 두었으므로 관료들이 모두 이 대동법에 대해 익숙해져 있으니 단지 약간의 조목들만 미루어 변통해 계품하여 내린다면 시일을 별로 허비하지 않고도 일이 잘 시행될 것입니다. 이 일은 신이 평소에 해오던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말했었고 오늘날에도 또 이를 말하고 있으니 삼월(三刑)의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금 은혜를 갚거나 정성을 바칠 길이 없으므로 비록 위로는 임금께 죄를 짓고 아래로는 조정에 조소를 산다 할지라도 신으로서는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p> <p>신은 우러러 살펴보고 굽어 살펴보면서 밤낮으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진 것은 이미 망측한 변고이며 태백(太白)이 대낮에 나타나 1년 내내 사라지지 않다가 동정성(東井星)을 침범해 들어가고 유성(流星)은 확확 날아 밤마다 사람 마음을 놀라게 하며 천군성(天困星)과 천창성(天倉星)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는 크게 걱정할 일입니다. 누가 신이 기(杞)를 근심하고 전유(顛輿)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신은 간절한 마음을 금하지 못해 목숨을 다 바칠 따름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겠다.”</p> <p>하였다.</p>	<p>僚員皆慣習於此。只推移變通若干條，啓稟而下，不費了時日，事便行矣。此事臣之所雅言也，上年又言之，今日又言之，難免三刑之罪，而死亡無日，更無報效之路。雖上以得罪於君父，下以取笑於朝廷，臣不暇恤也。臣仰觀俯察，晝愁夜戚，地裂山崩，已爲罔測之變，太白經天，終歲不滅，而橫犯於井東，流星飛走，夜夜驚心，而輒出於困倉。此可憂之大者，孰知臣之憂杞，而不憂顛輿哉？臣不勝惓惓，盡死節而已。”</p> <p>答曰：“當令廟堂議處焉。”</p>
<p>효종 19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8월 16일(병술) 18번째기사</p>	<p>신은 듣건대, 주자가 말하기를 ‘옛날 성왕(聖王)은 음식과 주장(酒醬) 그 어느 것도 총재(冢宰)에게 관장시키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과 밖이나 은미한 곳과 드러난 곳에 이르기까지 정수(精粹)하고 순백(純白)하여 후세의 본보기가 될 만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듣건대 금년 봄에 영남의 한 장수</p>	<p>臣聞朱子曰，‘古先聖王，飲食酒漿，無不領於冢宰，故由內及外，自微至著，精粹純白，可以爲後世法程也。’臣竊聞今年春間，有一嶺帥，徵督蔚鯁甚急</p>

<p>송시열이 상소문에 첨부한 책에서 음식을 탐하지 말 것에 대해 아뢰다</p>	<p>가 울산의 전복을 매우 급히 내라고 독촉하면서 말하기를 ‘상께서 훈척 대신(勳戚大臣)을 통해 요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훈척이 사복을 채우려고 성상의 분부라고 빙자한 것이 아닙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음식을 탐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제왕의 존귀한 신분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래에 끼친 수모거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은 몹시 놀라고 괴이하게 여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아 그런 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노력하소서.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이 감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항간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수근거리고 있는데 영남의 해변쪽이 더욱 심합니다. 성덕에 끼친 누가 적지 않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p>	<p>曰: ‘自上因勳戚大臣, 而索之也。’ 未知果有此事否? 無乃勳戚, 自爲己私, 而憑藉聖教乎? 孟子曰, ‘飲食之人, 卽人賤之。’ 凡人尙然, 況以帝王之尊, 而有此, 則其貽侮於下也, 爲如何哉? 臣不勝驚怪焉。 伏乞殿下, 反求諸己, 有則改之, 無則加勉焉。 此事有無, 臣不敢知, 然聞巷竊言, 不勝藉藉, 而嶺海尤甚, 其累聖德不少, 故冒死敢陳焉。</p>
<p>효종 19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8월 18일(무자) 3번째기사 사헌부가 대동법 규정을 위반한 관원을 엄격히 처벌할 것을 청하다</p>	<p>헌부가 아뢰기를, “호서에 대동법을 실시한 뒤로는 규정 밖의 요역은 털끝만큼이라도 백성에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법을 벗어난 일들이 차츰 많아지고 있으니 발견되는 대로 무겁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더욱 심하게 드러난 일은 병영에서 장사들을 호궤한답시고 생선이 잡히는 연해안의 여러 고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징수해 다시 관 물건들이 본 가격에 비교하면 6~7배나 더 비쌀 뿐만이 아닙니다. 또 파견된 사람의 포악한 침해는 끝이 없어 포구에 머물면서 마음대로 징수하고서는 지급할 값에 대해서는 운반하는 데 들 돈이라고 핑계대고 도로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해마다 봄가을로 관례처럼 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 일을 겪고 나면 피폐하고 잔약한 어민들이 지탱해 내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수가 반이 넘는데 병영에서 잘못된 관습을 답습하여 약탈을 자행하는 것이 참으로 더없이 놀랍습니다.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파견나간 사람 중에서도 더욱 심히 난잡하게 군 자들을 분명히 조사해 내 무겁게 치죄하여 장사하</p>	<p>憲府啓曰: “湖西大同設行以來, 不當以規外之役, 一毫煩民, 而近來稍多不法之事, 不可不隨現重治。 其中尤甚表著者, 兵營稱以將士犒饋, 貿販魚產於沿海列邑, 所徵之物, 較其本價, 不啻六七倍, 而差人之侵虐, 罔有紀極, 留連浦邊, 恣意徵捧之後, 所給之價, 誘以轉輸之債, 還奪而去。 每年春秋, 以爲恒式, 其實白徵也。 一經此役, 則疲殘漁戶, 無以支持, 離散者過半, 兵營之循襲繆規, 恣行漁奪, 誠極可駭。 請令本道監司, 明查差人之尤甚濫雜者, 從重治罪, 痛革貿販之弊。” 上從之。</p>

	<p>는 폐단을 통렬히 혁파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효종 19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8월 19일(기축) 2번째기사 찬선 송준길을 인견하 고 송준길의 건의를 듣다</p>	<p>상이 찬선 송준길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몇해 전에 내려간 뒤로 마음에 늘 그리워하였으나 연이어 국가에 일이 많아 겨를을 낼 수 없었는데 오늘 다행히 올라오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구나.” 하니, 준길이 대답하기를, “신은 보잘것없는데다 고질병까지 몸에 깊이 들어 있으니 전리에 폐기되어 있어야 분수에 맞습니다. 그런데 성은이 망극하여 전고에도 없는 특별한 은혜 를 주셨으니 옛날이나 지금의 신하들 중 신처럼 깊고 두터운 은혜를 받은 자 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초야에 묻혀 지내지만 대궐을 그리워하는 일념이야 어찌 없었겠습니까마는 미천한 신이 나이가 들어가자 급격히 쇠잔해지고 있 는데다가 올해는 거듭 특별한 은혜를 내리셨으므로 감히 태연히 앉아만 있을 수 없어서 직접 대궐 아래 나와 실정을 말씀드린 다음 물러나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도성의 문에 미처 당도하기도 전에 또 새로 벼슬에 제수 하시니 더더욱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사직소를 올리게 되니 항공함 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토록 사양하는 뜻이 굳으니 내 마음에도 느껴지는 것이 있었고 이조의 벼 슬을 끝내 불안하게 여기고 있었으므로 또한 억지로 권할 수 없기 때문에 운 허했던 것이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전후로 내린 전하의 비답이 여느 때보다 특별하였으므로 신 같은 자로서는 더욱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왔기 때문에 그런</p>	<p>上引見贊善宋浚吉。 上曰：“自頃年下 去後，心常思戀，而連值國家多事，有 所未遑，今幸上來，不勝欣悅。” 浚吉 對曰：“小臣無狀，加以疾病沈痼，廢 伏田野，分所當然，而聖恩罔極，異數 無前，古今人臣，豈有如臣之受恩深厚 者乎？雖在山野，一念寧無向闕之心， 而只以犬馬之齒，衰邁甚矣，今年則異 數稠疊，不敢晏然，切欲躬詣闕下，陳 情而退矣。未及國門，又有新命，尤 不敢當。屢陳辭疏，不勝惶恐。” 上 曰：“辭意至此，有感於予心，吏曹之 任，終以爲不安，亦不可強迫，故允許 矣。” 浚吉曰：“前後聖批，迥出尋常， 如臣者尤不敢當。” 上曰：“此非修飾 之言，出於中心故耳。不見已過六七 年，贊善容貌，亦不如前日上來時 矣。” 浚吉曰：“臣之衰病，一至於此， 抑有所感慨者。昔朱子告孝宗之言曰： ‘不惟臣之蒼顏白髮，已迫遲暮，竊仰 天顏，亦非復昔時矣。’ 臣之今日心 情，正亦如此矣。” 上曰：“寡昧無才 薄德，國事無成，年來災異疊見，外虞</p>

	<p>것이다. 보지 못한 지 6, 7년이 지나고 보니 찬선의 모습도 그전에 올라왔을 때와 같지 않구나.”</p> <p>하니, 준길이 아뢰기를,</p> <p>“신이 이처럼 한결같이 병에 시달리고 보니 마음에 감개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 주자(朱子)가 효종(孝宗)에게 아뢴 말 중에 ‘오직 신의 창안 백발이 이미 사양길에 박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가 천안(天顏)을 우러러 보니 또한 옛날과 다릅니다.’란 말이 있는데 신의 오늘날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과인이 재주가 없는데다가 덕도 박하여 국사가 이루어진 것은 없고 근년으로 들어서는 재앙과 이변이 거듭 나타나 안팎의 걱정거리들이 이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 찬선이 지금 이미 올라왔으니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정에 머물러 준다면 사림들이 본받지 않겠는가.”</p> <p>하니, 준길이 아뢰기를,</p> <p>“전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 신의 죄가 더욱 큼니다. 신 같은 자가 무슨 재주와 식견이 있겠으며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찬선이 옛 사람의 책을 읽어 마음 씀이 공정하니, 만일 조정에 머물러 있으면 어찌 두려워 조심하는 자가 없겠느냐는 것이다.”</p> <p>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p> <p>“신이 젊었을 때에는 참으로 글을 읽어 뜻을 찾아보겠다는 뜻이 있어서 스승과 벗들을 따라 노닐었습니다만 본바탕이 혼탁하고 졸렬한데다 질병까지 깊이 들어 끝내는 이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전후로 받은 은혜로 말한다면 신이 비록 몸을 바치고 결초보은(結草報恩)한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몸으로 말한다면 물러가는 것만이 은혜를 갚는 길이 될</p>	<p>內憂，以至如此。贊善今既上來，勿生歸意，留在朝廷，則士林豈不矜式乎?” 浚吉曰：“聖教至此，臣之罪戾尤重。如臣者，有何才識，有何補益乎?” 上曰：“予之此言非他。贊善讀古人書，秉心公正，若留朝廷，則寧無忌憚者乎?” 浚吉曰：“臣於少時，固有讀書求志之意，亦嘗從遊於師友間，而本質昏劣，疾病沈痼，終於此矣。以前後受恩言之，則臣雖隕首結草，亦不足報，而以臣身言之，則只是退去，為報恩之地耳。” 上曰：“庚寅年退歸之日，不得相見，至今悔歎。當時之事，何可盡言?” 浚吉曰：“臣實狂妄，既不能報答國恩，反使朝廷不靖，國事多虞，皆臣之罪也。” 上曰：“何為發此言也。當初公論，終有驗矣。今者鄭賊既廢，逆輩已誅，有何可憂之事乎?” 上又曰：“東宮正當講學之日。必須法家拂士，為之輔導，然後可以成就。與贊善朝夕講論，則豈無補益之效乎?” 浚吉曰：“自古進言於其君者，必以輔養東宮，為急先務，誠以國家根本，實在於此，豈不然乎? 如臣無似，何敢當此任，而況官聯有制，為臣增置</p>
--	--	---

	<p>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인년에 물러나 돌아갈 때 서로 만나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까지 후회하며 탄식하고 있다. 당시의 일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은 사실 거칠고 망령스러워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조 정만 불안정하게 하였으니 국사에 걱정거리가 많은 것은 모두 신의 죄입니 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당초의 공론이 끝내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지금 정 적(鄭賊)이 이미 쫓겨났고 역적 무리들도 이미 목이 베어졌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p> <p>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동궁이 바로 학문을 강론해야 할 시기를 당했다. 반드시 법도 있는 세신(世 臣)이나 바른 말을 하는 선비가 도와주고 인도해 주어야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찬선과 아침 저녁으로 학문을 강론한다면 어찌 도움의 효과가 없겠는 가.”</p> <p>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임금에게 건의하는 자들은 반드시 동궁을 보필하여 기르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았었습니다. 물론 국가의 근본이 실은 동궁에게 달려 있으니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 같이 불초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벼슬은 제도와도 관계가 있으 니 신을 위해 더 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더더욱 미안합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p>	<p>此職，尤極未安耳。” 上曰：“此何妨 乎？” 浚吉曰：“臣聞諸長老，宣祖大王 禮遇儒臣成渾，非不至矣，周給則有 之，未聞有繼粟繼肉之舉，古之經傳， 雖有是語，此禮宜用於何如人乎？如臣 者，決不敢當之。” 上曰：“禮出於 情。業已招延，而不恤其窮可乎？我 國經用不敷，待士大夫甚薄，以些少祿 俸，何能自給乎？” 又曰：“來時見宋時 烈乎？喪後病患非輕云，甚可憂念 矣。” 浚吉曰：“來時不得相見，而相 見亦不久矣。衰年草土，傷敗甚矣。 前後異數稠疊，豈不欲上來謝恩，而惟 以不能粒食，勢難登途爲悶矣。” 上 曰：“然。” 浚吉曰：“臣退歸鄉曲，已 近十年，意以爲國事漸進，而憂虞如 此，實未知其故。臣於己丑年入侍時， 進啓曰：癸亥反正初，百爲皆好，臣願 聖上，以此爲法云。則上教以爲：‘反 正初，豈不可法，而予則欲以三代爲 法。’ 臣常感誦此教，殿下必能嘉靖邦 國，如殷高，興衰撥亂，如周宣矣，而 到今國事，乃至於此，天災時變、民愁 兵怨，不一其端，臣未知何故，而致此 也。” 上曰：“此由寡昧無才之致，豈</p>
--	--	---

	<p>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노인들에게 들었는데 선조 대왕께서 유신 성혼(成渾)에 대한 예우가 아주 지극하였지만 어려울 때 돌보아 주는 일은 있어도 식량이나 고기를 계속 대주는 일은 없었다고 하였으며, 옛날 경전(經傳)에 비록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예를 어떤 사람에게 써야 하겠습니까? 신 같은 사람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예란 인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초빙해 놓고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우리 나라는 재정이 넉넉치 못해 사대부에 대한 대우가 매우 박하다. 조그마한 녹봉으로 어떻게 자급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또 이르기를, “올 때 송시열을 보았는가? 삼년상을 치르고 나서 병환이 가볍지 않다 하니 매우 걱정스럽다.”</p> <p>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올 때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만난 지는 별로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쇠약한 나이에 복을 입다 보니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전후로 특별한 은혜를 거둬 받았는데 올라와 은혜에 사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만 지금도 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사세상 길을 나서기 어렵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러하겠다.”</p> <p>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물러나 향리로 돌아간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으므로 마음에 국사가 점점 진전되었으리라고 여겼었는데 걱정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신이 기축년에 입시했을 때 말씀드리기를 ‘계해 반정 초기에 하였던 온갖 일들이 모두 좋았으니 신은 성상께서 이로써 법삼기를 원합니다.’</p>	<p>有他哉?” 浚吉曰：“歷觀古史，勵精求治如殿下者，誠所罕見，而國事如此，可勝惜哉。” 上曰：“今聞此言，予甚慙愧，如有所懷，可以盡言矣。” 浚吉曰：“公私是非義利王霸之辨，聖上豈不講論而知之，臣之妄意以爲：其所知之者，恐非眞知矣。殿下之有大志，臣亦知之，而第恐聖心，有未能純一者。句踐，小國之君也，固不足道，然握火抱冰、臥薪嘗膽，十年如一日，其勤苦何如也？恐聖心不及於此矣。” 上曰：“予亦豈不知之。此是大旨，願聞其詳。” 浚吉曰：“臣始聞近故相臣李敬輿遺疏之大概。其言固好，而臣意猶以爲不及於上面根本地矣。人君必致力於學問心術之間，工程縝密，然後凡事可綱舉而目張。臣愚竊以爲：殿下於精一執中工夫，猶有踈漏處矣。上曰：“此言至矣。惟其如此，故贊善若留，則豈但朝廷有所忌憚？予亦必不敢放肆。且於講讀之際，亦豈無開導之益乎？” 浚吉曰：“放肆二字，臣不勝感激。人君常不放肆，戒慎恐懼，則百事豈不可做？堯、舜以天下相傳，而其所傳授之語，則惟曰‘允執厥中。’</p>
--	---	--

	<p>하였더니 상께서 전교하기를 ‘반정의 초기가 본받을 만하지 않겠느냐만 나는 삼대(三代)를 본받으려 한다.’ 하시기에 신은 늘 이 말씀에 감격되어 되뇌이며 전하께서 은(殷)나라의 고종(高宗)처럼 나라를 안정시키고, 주(周)나라의 선왕(宣王)과 같이 쇠잔을 일으키고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사가 이 지경에 빠져 천재와 시변이 일어나고 백성과 군사들이 시름하고 원망하는 등 그 단서가 한두 가지 뿐만 아니니, 신으로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과인이 재주가 없는 소치이다.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p> <p>하였다. 준길(準吉)이 아뢰기를, “옛날 역사책들을 두루 보아도 전하처럼 정신을 가다듬고 치세를 구현해 보려는 분은 참으로 보기가 드뭅니다. 그런데도 국사가 이와 같이 되었으니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 이 말을 들으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 만일 소회가 있으면 말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준길(準吉)이 아뢰기를, “공(公)과 사(私), 시(是)와 비(非), 의(義)와 이(利), 왕(王)과 패(霸)에 대한 분별을 성상께서 어찌 강론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만 신의 망녕된 생각에는 알고 계시는 것이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전하께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신도 알고 있습니다만 전하의 마음이 순일(純一)하지 못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구천(句踐)은 작은 나라의 군주이므로 말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이면 불을 움켜쥐고 겨울이면 얼음을 가슴에 껴안고서 썰위에 누워 쓸개를 맛보면서 10년을 하루같이 지냈으니 그의 노력과 고달픔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마도 전하의 마음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p>	<p>至舜授禹，乃曰‘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千古心法，更無餘蘊。若於此果能着力，則凡事豈有不能整頓之理乎？”上曰：“此皆近日經筵官之所未言者。古人云：‘不見時月，鄙吝之心，復萌乎中矣。’若常得相見，聞此戒誨之言，則必無間斷之憂矣。”浚吉曰：“古之事君者，必先正其身心，然後可出而事君。如臣本無所得，而爲感聖恩，只將陳編之言，仰達於前，豈有感動之理乎？但聖意至此，實非偶然。臣當以死馬骨自當，若以此招延四方賢俊，豈有不來者乎。”及罷，命饋酒。</p>
--	--	--

	<p>집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또한 어찌 그것을 모르겠는가. 이것은 대강의 뜻만 말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한다.”</p> <p>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요 근래에 죽은 상신 이경여(李敬輿)의 유소(遺疏) 내용을 이제야 대충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참으로 좋습니다만 신의 뜻에는 여전히 상면(上面)의 근본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임금이 반드시 학문과 심술의 사이에 힘을 기울여 공부의 과정이 치밀해야만 모든 일이 마치 그물의 큰 줄을 들면 작은 줄이 펼쳐지듯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전하께서 정일집중(精一執中)의 공부에 여전히 소루한 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지극하구나. 오직 이러하기 때문에 찬선이 만일 머물러 준다면 어찌 조정만 두려워하여 조심할 뿐이겠는가. 나도 반드시 감히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독할 즈음에도 어찌 깨우쳐 인도해 주는 도움이 없겠는가.”</p> <p>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신은 감격스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늘 흐트러지지 않고 조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온갖 일을 어찌 해낼 수 없겠습니까. 요와 순이 천하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도 전수한 말은 ‘중도를 성심껏 지켜야 한다.’고 하였고 순이 우에게 전수한 말은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오직 정밀하고 한결같이 해야 진실로 그 중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천고의 마음 공부에 대한 법이 미진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기에다 과연 힘을 쓰게 된다면 모든 일들을 어찌 정돈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들은 모두 요사이 경연관들이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한참 동안 못 보았더니 비루하고 인색한 마음이 다시 싹튼다.’고 했었다. 만일 늘 서로 만나 이런 경계와 가르침의 말을 들었더라면 반드시 공부가 중간에 끊기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p> <p>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옛날 임금을 섬겼던 자들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루고 난 다음에 나와서 임금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 같은 사람은 본디 깨우친 바도 없으나 성상의 은혜에 감동하여 옛날에 있는 말을 가지고 전하 앞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어찌 감동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전하의 뜻이 여기에까지 미치시니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신과 같이 하찮은 자도 이런 대우를 받았으니, 만일 이 일로 사방의 어진 선비와 뛰어난 인사를 초빙한다면 어찌 오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인견이 끝나자 술을 주라고 명하였다.</p>	
<p>효종 19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9월 9일(무신) 2번째기사 비를 맞은 병사들에게 술을 내리도록 이르다</p>	<p>상이 일렀다. “서울에 남아 지킬 병사들이 비를 맞고 들어 왔으니 반드시 옷이 젖었을 것이다. 즉시 해조로 하여금 술을 먹이게 해서 진흙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p>	<p>上曰：“留都之兵，冒雨入來，必致沾濕，卽令該曹饋酒，以示軫恤之意。”</p>
<p>효종 19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9월 10일(기유) 2번째기사 소현 세자 묘에 치제</p>	<p>상이 하교하였다. “지난번에 소현 세자의 묘소에 치제(致祭)하라고 명을 내리고 그날 밤 꿈에 소현 세자를 뵈었는데 매우 기쁘고 즐거운 빛을 띠고 살았을 때처럼 기뻐하였다. 내 마음에 기쁘고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우연한 일이라고 여기었는데 오늘 밤에 이르러 또 꿈을 꾸면서 내가 소현 세자에게 말하기를 ‘곧 효릉(孝</p>	<p>上下教曰：“頃者命致祭於昭顯墓，其夕夢見昭顯世子，色甚欣悅，歡如平生，予心喜幸，而意或偶然也，及至今夕，又夢焉，予曰：‘今將有事於孝陵，而兄之所在不遠，故遣官致祭，而予不</p>

<p>하는 일에 대해 의논 해 아뢰게 하다</p>	<p>陵)에 갈 일이 있는데 형이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관원을 보내 치제토록 하겠으나 내가 친히 전을 드리지 못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니 소현 세자가 왈각 내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어찌 한단 말인가. 어찌 한단 말인가.’ 하였다. 꿈을 깨고 나니 꼭 평소와 같아서 꿈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슬픈 감회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구나. 아니 이것은 동기의 지극한 정이 서로 감응되어 묘소 아래로 오게 하여 친근히 해보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극한 정을 억제하기 어렵구나. 해가 비록 짧지만 효릉에서 제사를 마친 뒤에 내 간단히 시종들을 거느리고 홀로 묘소에 찾아가 이 회포를 펴보고 싶다. 바로 예관으로 하여금 절차를 의논해 정하게 하라. 또 해조로 하여금 소현의 자녀들에게 쌀과 베를 넉넉히 지급하여 나의 뜻을 표하도록 하라.”</p>	<p>得親奠，以此爲感云爾。’ 則昭顯遽執予手曰：‘奈何奈何。’ 覺來恍若平昔，不知爲夢也，涕淚無從，悲懷難狀。無乃同氣之至情，有所相感，而抑亦引至墓下，而有所親近之意耶？ 至情難抑，日晷雖短，孝陵祭畢後，予欲簡率陪從，獨往墓下，以舒此懷。 卽今禮官，講定節目。 又令該曹，優給米布於昭顯子女，以表予意。”</p>
<p>효종 19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9월 26일(을축) 1번째기사 주강에서 술마시는 폐단에 대해 말하고 찬선·진선의 좌차를 정하게 하다</p>	<p>상이 주장에 나가 《시전》 빈지초연장(賓之初筵章)을 강하였다. 지경연 허적이 아뢰기를, “이 시는 위 무공(衛武公)이 지난 과오를 뉘우쳐 지은 시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술로 인한 잘못이 있을 지라도 뉘우치고 경계할 줄을 아는 자들이 드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사대부들이 술마시기를 숭상하는 버릇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라 도사 장건(張鍵)의 주장이며 싸우는 짓은 또한 놀랄 만한 일이다. 전에 심양(瀋陽)에 있을 때 보니 한형길(漢亨吉)은 소주를 실컷 마시고서도 만족하지 않아 반드시 천초(川椒)로 술맛을 돋구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이른바 이름난 벼슬아치란 자들은 저마다 술마시는 것으로 높은 풍류인 양 여기며 국사에 생각을 두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잔단 무리로 지목하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시장관 민정중이 아뢰기를,</p>	<p>乙丑/上御晝講，講《詩傳》 《賓之初筵》。 知經筵許積曰：“此衛武公悔過之作也。 今人雖有酒過，悔而知戒者鮮矣。” 上曰：“近來士夫之崇飲尤甚。 如全羅都事張鍵之酗酒鬪(狼) [狼]，亦可駭矣。 往在瀋中，見韓亨吉痛飲燒酒， 猶未快足， 必以川椒， 佐其酒味， 如是而能保其生乎？ 今之所謂名官， 自以杯酒爲高致， 苟有留意國事者， 反以齷齪輩目之， 豈不寒心哉？” 侍講官閔鼎重曰：“昨有進善權認亦令入侍之教， 故使人傳諭， 則認有疾不能趁命云。” 上遣內醫看病。 鼎重曰：“贊善進善， 新設之官也。 外議以</p>

	<p>“어제 진선 권시(權誣)에게 입시하라는 전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분부를 전했더니 권시가 병이 나서 명에 따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p> <p>하니, 상이 내의를 보내 병을 진찰하게 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찬선과 진선은 새로 둔 벼슬입니다. 외간의 의견들은 찬선 벼슬이 비록 빈객과는 차등이 있으나 직질이 당상에 해당하니 궁료(宮僚)의 대열에 뒤섞여 있어서 안됩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자리를 품정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爲贊善之職，雖與賓客有差，秩是堂上，則不宜混齒宮僚之列。請令禮官，稟定其坐次。”上從之。</p>
<p>효종 19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10월 22일(신묘) 1번째기사</p> <p>당진 감관 이정(李挺)이 역모를 고변하여 국문했으나 거짓임이 밝혀지다</p>	<p>충청 감사 이경억(李慶億)이 당진 현감(唐津縣監) 윤지미(尹趾美)가 보고한 것에 의해서 치계하기를, “이정(李挺) 등이 상변(上變)하였는데, 이정은 바로 당진 감관(唐津監官)입니다. 자기 서출 동생인 이경(李璟)과 함께 본현에 와서 보고하기를 ‘집안 사람 유영(柳瑛)을 통해 들으니, 서울에 사는 진사 정세중(鄭世重)이 자기 어머니 상을 당해 바야흐로 내포(內浦)에 우거하고 있는데, 도당들을 많이 결합하여 모반을 꾀하려 한다고 한다. 또 세종이 거처하는 곳에 항상 상스러운 기운이 있는데, 세종의 처가 요사스러운 말로 대중들을 현혹시켜 말하기를 「천녀(天女) 열 명이 반드시 와서 길흉을 말해 준다.」 하였다고 한다.’ 하였습니다.”</p> <p>하였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국문해 보니, 사실 무근이었다. 그래서 모두 풀어주라고 명하고, 무고한 사람 이정(李挺)은 안핵하여 복주(伏誅)시켰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무고하게 체포된 사람으로서 이 추운 달을 만나 반드시 얼거나 굶주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호조로 하여금 의복과 식량을 마련해 지급토록 하라.”</p> <p>하였다.</p>	<p>辛卯/忠清監司李慶億因唐津縣監尹趾美所報，馳啓曰：“李挺等上變書，李挺卽唐津監官也。與其庶弟璟，來告本縣曰：‘因族人柳瑛聞之，則京居進士鄭世重遭其母喪，方寓居內浦，而多結徒黨，將謀不軌。且世重所居處，常有瑞氣，世重之妻，以妖言惑衆曰：「天女十輩，必來告吉凶」云。拿來鞫問之，事竟無實。命皆釋之，按誅誣告人李挺，仍下教曰。“無辜被逮之人，當此寒月，必有凍餓者，令戶曹備給衣糧。”</p>
<p>효종 19권, 8년(1657 정유 / 청 순치(順治) 14년) 11월 6일(갑진)</p>	<p>간원 등이 【대사간 김수항(金壽恒), 사간 이은상(李殷相), 헌납 이성항(李性恒), 정언 조윤석(趙胤錫).】 아뢰기를, “근래 여러 궁가의 하인들이 날마다 시장에 가서 어물(魚物)을 빼앗는데, 마</p>	<p>甲辰/諫院【大司諫金壽恒、司諫李殷相、獻納李性恒、正言趙胤錫。】等啓曰：“近來諸宮家下輩，日往市上，</p>

<p>1번째기사 대사간 김수항 등이 궁가(宮家) 하인들의 폐단을 엄히 금지할 것을 청하다</p>	<p>치 응당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받듯이 합니다. 침탈하여 소란을 피우는 단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장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서 아우성치고 원망하는 모 양이 대부분 눈으로 보고 전하여 말하는 듯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실로 전에 없던 놀랄 만한 일입니다. 만약 별도의 조치를 내려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여 향의 백성들은 장차 생활할 터전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법부에 명하여 규찰 해 통렬히 금지시켜서 여러 궁가의 하인들이 멋대로 빼앗아가는 폐단을 막으 소서.” 하였는데, 따랐다.</p>	<p>攘奪魚物，若取應收之稅，侵擾之端， 不一而足。市民失利呼冤之狀，多有 目見而傳說者，此實無前可駭之事。 若別樣禁斷，則閭井小民，將無以資 其生業。請命法府，糾察痛禁，以杜 諸宮家下輩橫挈之弊。”從之。</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1월 1일(무술) 1번째기사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 으로 관돈녕 민형남 등에게 쌀과 고기를 내려주다</p>	<p>관돈녕 민형남(閔馨男), 지돈녕 윤경(尹綱), 전 대사헌 민응형(閔應亨), 전 참 판 한필원(韓必遠) 등에게 쌀과 고기를 내려주었는데, 이는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이다.</p>	<p>戊戌/命賜判敦寧閔馨男、知敦寧尹 綱、前大司憲閔應亨、前參判韓必遠 等米肉。蓋優老之典也。</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2월 9일(병자) 1번째기사 대신 및 비변사의 신 하들과 호남 지방의 대동미에 대해 의논하 다</p>	<p>상이 대신 및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호남 지방의 대동(大同)을 이제는 품정해야 합니다. 당초 받아들일 쌀을 가 지고 경비에 쓸 수량을 산출하여 보니 모자라는 숫자가 5천여 석이었으나, 추후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남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 입법할 때에 반드시 잘 헤아려서 정해야 된다. 여유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백성을 구제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부족해서 더 부과하게 될 때 는 민원이 생기지나 않을까 두렵다. 13두(斗)로 작정하더라도 안 될 것은 없 을 듯하다.”</p>	<p>丙子/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領議 政鄭太和曰：“湖南大同，今當稟定。 初以應收之米，計出經用之數，則不足 者五千餘石，而追後磨鍊，則餘數尙多 云矣。”上曰：“設法之初，必須量 定。如有餘數，亦可以救民，或不足 而加賦，則恐有民怨。雖以十三斗酌 定，似無不可矣。”戶曹判書鄭維城 曰：“旣徵之後，舡運甚難。臣意則不</p>

	<p>하였다. 호조 판서 정유성(鄭維城)이 아뢰기를, “징수하고 나서도 배로 운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연해 여러 고을에 유치하고 공물 주인(貢物主人)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다가 사사로이 운반하게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자 연성군(延城君) 이시방(李時昉)이 아뢰기를, “호서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쌀을 경창(京倉)으로 운반하여 쌓아 두고 서울의 시세에 따라 공물 주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공물을 이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호조 판서의 말대로 한다면 일에 장애가 많이 따르므로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드디어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물었는데, 좌참찬 홍명하(洪命夏)는 그 불편함을 극력 말하였고, 다른 여러 신하들은 두 견해로 갈라져서 논의가 일치되지 않았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왕자(王者)의 정치란 균평(均平)을 귀하게 여긴다. 산협의 고을은 너무 험하고 연해의 고을은 너무 고되다면 변통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호서 지방의 규정에 따라 절목을 강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정유년 치의 차폐 목면(次幣木綿)은 감면해 주고 각사(各司)의 노비 공포(奴婢貢布)를 호조로 이송하여 대신 쓰도록 하라고 명하였다.</p>	<p>若留置沿海諸邑，使貢物主人受出，而私運之爲便也。” 延城君李時昉曰：“湖西收米，輸置京倉，從京中市直，以給貢物主人，故可能繼用。若如戶判之言，則事多掣肘，決不可從也。” 上遂徧問於諸臣，左參贊洪命夏極言其不便，諸臣皆持兩端，論議不一。上曰：“王者之政，貴在均平。山郡偏歇，沿海偏苦，不可不變而通之，倣湖西已行之規，講定節目可也。” 命減丁酉次幣木綿，以各司奴婢貢布，移送地部，使之代用。</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2월 20일(정해) 1번째기사 찬선 송준길이 하직하고 돌아가다</p>	<p>찬선 송준길이 하직하고 돌아가니, 상이 불러 보았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양조(兩朝)의 은총을 너무 많이 입었는데도 이처럼 늙고 잔약하다 보니 보답할 길은 없고 사정은 박절하여 감히 귀향을 빌었는데, 성명께서 이 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특별히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신은 참으로 감격에 넘쳐서 눈물이 쏟아질 뿐입니다. 신이 아침에 김익렴(金益廉)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니 ‘물고기와 물처럼 관계가 밀접하다.’는 등의 말씀이 있었는데, 신이 어찌 감히 그러한 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의 현명한 제왕은 한 번의 찌푸림과 한 번의 웃음도 아꼈다고 하니, 오늘날의 말씀은 아무래</p>	<p>丁亥/贊善宋浚吉辭歸，上召見之。浚吉曰：“臣偏蒙兩朝恩遇，而癯孱如此，圖報無路，私情切迫，敢乞還鄉，聖明曲諒，特副情願，臣誠感隕，只有涕淚。臣於朝者，伏見金益廉疏批，有‘魚水契合’等語，臣何敢當之。古之明王，尙愛嘖笑，今日王言，竊恐太過也。臣衰邁已極，未死之前，恐不復</p>

	<p>도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신은 이미 극도로 노쇠하여 죽기 전에 성상의 용안을 다시 뵈지 못하게 될 듯하니, 저승에서의 결초 보은이나 다짐할 따름입니다. 신이 비록 초야에 물러나 있기로서니 어찌 감히 하루인들 국가를 잇을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할 말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진술하라.”</p> <p>하였는데 준길이 아뢰기를, “현재 국세는 진작되지 않고 민생은 피폐하여 위망에 이를 지경인데도 이를 구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신은 삼가 마음 아쁩니다. 한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고 지성으로 치도를 구한다면 어찌 그 효과가 없겠습니까. 외침을 막으려면 먼저 내정을 닦아야 하고 군병을 다스리려면 먼저 백성을 길러야 하는 법으로, 내정을 다스리지 않은 채 외침이 막아지고 백성을 기르지 않은 채 군병이 다스려진 일은 없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한 말은 참으로 우연히 한 말이 아닌데,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동궁께서는 천품이 고매하여 학문이 진취되고 있는데다 근래에 다시 독실한 공부를 가하므로 온 조정이 모두 기뻐하며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무상한 것이어서 태만해지거나 소홀해지기가 쉬우므로, 성상께서 반드시 애써 교도하셔야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내가 찬선을 떠나보내기 안타까워하는 이유이다.”</p> <p>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은 정신이 혼미하여 기억을 잘 못하나, 오늘날의 강관으로는 유계(兪桀)를 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의 소지(召旨)만 내리셔도 당장 올라올 것이고,</p>	<p>見天顏，結草酬恩，只期他生而已。臣雖退在田野，何敢一日忘國家哉?”</p> <p>上曰：“如有可言者，一一以陳。” 浚吉曰：“目今國勢不振，民生困悴，將至於危亡，而莫之救，臣竊痛之。若一心不懈，至誠求治，則豈無其效？欲外攘，則先內修，欲治兵，則先養民，未有內不修而外攘，民不養而兵治者也。” 上曰：“所言固非偶然，可不佩服焉。” 浚吉曰：“春宮天資高邁，學問將進，近來更加篤實，舉朝莫不喜幸。然人心無常，怠忽易間，聖上必須勤勤教導，可以有終矣。” 上曰：“此予所以惜贊善之去耳。” 浚吉曰：“臣則神精昏耗，不能記誦，當今講官，莫如兪桀。不過降一召旨，自當卽來，非如臣輩乍來乍去之比也。” 上不答。乃曰：“宋時烈人或疑其不來，而予則以爲必來。前日下諭，已布予意，而國事至此，任用之心，益切于中。但客使將至，恐有退托之言，以是爲慮。” 浚吉曰：“臣當以聖教，一一傳諭。” 上曰：“爲予致意。” 浚吉曰：“時烈則非如臣之閑往閑來而已。若以誠意勸勉，則必將赴召，展其所蘊</p>
--	---	--

<p>또 신들처럼 금방 왔다가 금방 가버리지도 않을 사람입니다.”</p> <p>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이어서 상이 이르기를, “송시열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남들은 더러 의아해 하고 있으나, 나는 꼭 오리라고 여긴다. 전일의 하유에서 이미 나의 뜻을 피력하였으나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그를 임용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그러나 청나라 사신이 곧 도착하게 되었으므로 이 일로 핑계를 대지나 않을까 염려된다.”</p> <p>하니 준길이 답하기를, “신이 성상의 하교를 일일이 전달하겠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이 뜻을 전달하라.”</p> <p>하니 준길이 답하기를, “시열의 경우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신과는 다릅니다. 만약 성의를 다하여 권면한다면 반드시 부름에 응하고 나와서 제 포부를 펼 것입니다.”</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일 연석(筵席)에서 《심경》을 강론할 적에 소신도 참석하여 그 대강만이나마 개진하였습시다만, 성학(聖學)이 그만큼 고명하신데, 어찌 강관을 기다려서만 알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정밀하게 관찰하고 힘써 행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p> <p>하니 상이 답하기를, “성경(聖經)·현전(賢傳)은 그 어느 하나도 모범될 만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그 중에서도 《심경》 한 책이 가장 정밀하고 절실하여 내가 참으로 좋아한다. 그러나 일이 눈앞에 닥치면 다시 잊어버리기가 일쑤이니, 이것이 바로 공부의 미진한 까닭이다.”</p> <p>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멀리 떠나게 된 자리이기에 품고 있던 생각을 다 진술하겠습니다. 가만</p>	<p>矣。” 又曰：“近於筵席，講論《心經》，小臣備員，只陳梗概，然聖學高明，豈待講官而知之？唯在聖上精察，而力行之耳。” 上曰：“聖經賢傳，無非可法，而《心經》一書，最爲精切，心誠好之。然事到面前，輒復忘了，此是工夫未盡之故也。” 浚吉曰：“臣當遠離，請畢陳所懷。竊觀聖明，有英豪自處之意，無禮法拘檢之節，故朝廷之上，少以禮法自檢，恐非表率之道也。古人有以‘不遠復’三字，爲符以自警。亦願聖明，以‘純粹精’三字爲符焉。此卽《易經》之辭也。”</p> <p>又曰：“用刑必以愼恤爲戒者，聖人之意可見。頃日平壤亂民之變，雖云可駭，至於一門就夷，則豈不矜慘哉？凡人之意可見，頃日平壤亂民之變，雖云可駭，至於一門就夷，則豈不矜慘哉？凡刑獄，勿以果決爲快，常存欽恤之念。” 上曰：“雖未久上來，此別亦甚缺然。暫欲行酒，安坐可也。” 中官舉杯而進，上曰：“此所以慰遠行之杯也，須盡此杯。” 浚吉曰：“臣固知聖上酒量甚寬，而剛制不御，群下孰不欽仰。” 上曰：“不爲崇欽，是予家法，</p>
---	--

	<p>히 보면 성상께서는 영웅 호걸로 자처하는 뜻은 있으나 예법으로 검속하는 절도가 없기 때문에 조정에 예법으로 자신을 검속하는 풍속이 적으니, 본보기를 보여 따르게 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옛사람(1085)은 ‘머지않아 회복된다.[不遠復]’의 세 글자를 부적으로 삼아 자신을 경계한 일도 있습니다만, 성명께서는 ‘순수정(純粹精)’ 세 글자를 부적으로 삼으소서. 이는 곧 《역경》의 말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형벌을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신중히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경계한 데서 성인의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 평양 난민의 변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 었다지만 한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어찌 불쌍하고 참혹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형옥(刑獄)을 과단성있는 결단에 쾌감을 느끼지 말고 늘 신중히 하고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두소서.”</p> <p>하였다. 상이 답하기를,</p> <p>“오래지 않아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이 작별 역시 매우 섭섭하다. 잠시 술잔을 나누고자 하니 편히 앉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중관(中官)이 술잔을 들어 올리자 상이 이르기를,</p> <p>“이것은 멀리 떠나가는 사람을 위로하자는 술잔이니, 이 잔을 다 비우도록 하라.”</p> <p>하였다. 이에 준길이 아뢰기를,</p> <p>“신이 성상의 주량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본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단히 억제하고 마시지 않으시니 신하들이 그 누가 흠양하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상이 답하기를,</p> <p>“많이 마시지 않는 것은 곧 나의 가법이지, 이것이 단단히 억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p> <p>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p>	<p>此非剛制而然也。” 浚吉曰：“臣見御寢帷帳，皆用黑布，聖上昭儉，推此可知。” 上曰：“闕內別無侈靡之習，而外間則必稱宮樣，爭尙奢華，是未可知也。” 浚吉曰：“臣聞穆陵遷改時，開見梓宮，則不用錦繡，多用綿布衣服，此概是宣祖大王平日所嘗御者云，先王儉德，可謂至矣，臣非不知聖上崇儉，而駙馬之家，宏侈太甚，臣之所望，唯在聖上之裁制耳。” 又曰：“成宗大王奉三大妃，每於宮中，頻設小宴，自是聖孝，而燕山之荒淫，實由於此云。今日世子，如鑑未塵，如水未波，教導之術，在於聖上躬行耳。” 酒罷，又賜貂裘一領，上曰：“此予所服者。春寒尙緊，以是驢行，須趁日氣未熱而上來。” 浚吉曰：“恩禮至此，此生難報矣。”</p>
--	---	---

	<p>“신이 어침(御寢)의 휘장을 본바 모두 검은 천을 썼으니, 성상의 검소하신 생활을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p> <p>하니 상이 답하기를,</p> <p>“궐내는 사치하는 버릇이 별로 없는데도 외간에서는 반드시 궁중의 모양이라 일컬으며 앞다투어 사치를 숭상하고 있으니, 알 수 없는 노릇이다.”</p> <p>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p> <p>“신이 듣건대 목릉(穆陵)을 친장할 적에 재궁(粹宮)을 열어 본즉 비단을 쓰지 않고 무명옷을 많이 썼는데, 이는 대개가 선조 대왕께서 평소에 쓰시던 것들이었다고 하니, 선왕의 검소한 미덕은 지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성상의 검소한 미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마의 집이 너무 크고 사치스럽습니다. 신의 바람은 오직 성상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성종 대왕께서 세 대비를 받들고 매번 궁중에서 작은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성효(聖孝)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연산군의 황음 무도한 행위가 실로 여기에서 싹텄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자께서는 마치 티없는 거울과도 같고 물결 없는 물과도 같으므로, 교도하는 방법은 오직 성상의 행신에 달려 있습니다.”</p> <p>하였다. 술자리를 끝내고 나서 상이 또 초피 갖옷 한 벌을 주며 이르기를,</p> <p>“이것은 내가 입던 것이다. 봄 날씨가 펍 추우니, 이것으로 행자를 삼고 부디 날씨가 덥기 전에 올라오라.”</p> <p>하니 준길이 답하기를,</p> <p>“은례가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이승에서는 다 보답하기 어렵습니다.”</p> <p>하였다.</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2월 23일(경인)</p>	<p>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태묘에 친제하는 일을 오랫동안 행하지 못하여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지금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고 있으나, 내 근력을 돌아보건대 예전에 비해 둔감해졌</p>	<p>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태묘에 친제하는 일을 오랫동안 행</p>

<p>1번째기사 태묘에 친제하는 일에 대해 신하들과 의논하다</p>	<p>다. 전폐(奠幣)와 헌작(獻爵)만으로는 예를 이루기가 어려울 듯하다. 비록 대제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길일을 택하여 조금이나마 정례를 펴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좌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 “경솔히 단정할 수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품정하게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원임 대신에게도 물으라.” 하였다.</p>	<p>하지 못하여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지금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고 있으나, 내 근력을 돌아보건대 예전에 비해 둔감해졌다. 전폐(奠幣)와 헌작(獻爵)만으로는 예를 이루기가 어려울 듯하다. 비록 대제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길일을 택하여 조금이나마 정례를 펴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좌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 “경솔히 단정할 수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품정하게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원임 대신에게도 물으라.” 하였다.</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4월 19일(을유) 2번째기사 인평 대군의 집에 거동하여 문병을 하고 주포와 미두를 내려 주다</p>	<p>상이 인평 대군의 집에 거동하여 문병을 했는데, 대군이 근시·대신·육경 이하의 1백여 사람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이 마을은 바로 내가 잠저(潛邸) 때 살던 곳이다. 해조로 하여금 잡역을 건감해 주도록 하라.” 하고, 주포(紬布)와 미두(米豆)를 대군의 집에 특별히 내려 주었다.</p>	<p>上幸麟坪大君第問疾。大君以酒饌饋近侍大臣六卿以下百餘人。上下教曰：“此洞，乃潛邸時所居之地，其令該曹，蠲減雜役。” 特賜紬布米豆於大君家。</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p>	<p>상이 하교하였다. “요사이 모든 도의 노인들에게 주식(酒食)을 하사할 계본을 본즉 1백 세된</p>	<p>上下教曰：“近觀諸道老人等賜酒食啓本，則百歲之人，間或有之，此乃上壽，</p>

<p>15년) 4월 21일(정해) 2번째기사 모든 도의 1백 세된 노인들에게 편히 살 수 있도록 물품을 내려주게 하다</p>	<p>사람도 간혹 있는데, 이는 곧 상수(上壽)로서 세간에 드물게 있는 일이다. 이들은 명주옷과 고기가 아니고는 배부르고 따뜻할 수가 없는데, 가난한 시골 오두막집에서는 필시 이를 마련하지 못하여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할 것이니, 이는 바로 나의 죄이다. 어찌 불쌍하고 절박하지 않겠는가. 나의 마음도 오히려 이러한데, 자손된 자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너무도 측은하여 나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해조로 하여금 해당 각도에 분부하여 노인의 집에는 그가 생존하는 동안 잡역을 감면하고, 명주옷·솜옷·베·쌀·고기 등의 물건들을 특별히 더 많이 내려 주도록 할 것이며, 또 이조로 하여금 남자의 경우 옥관자의 자급을 특가(特加)하여 그 여생을 위로해 주되, 99세도 1백 세나 같으니 시행하도록 하라. 유사를 계척하여 되도록 너그럽고 후한 쪽을 따라서 나의 지극한 뜻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라.”</p>	<p>世間之所罕有者也。非帛非肉，無以飽暖，而窮鄉鄙屋，必不辦此，不免饑寒，則是寡昧之罪也。豈不矜愍乎。予心猶如此，其爲子孫之心，爲如何哉？深用惻然，不寧我懷。其令該曹，分付各該道老人之家，限其生存之時，蠲免雜役，特加賜綿紬衣、絮、絲、布、米、肉、等物。又令吏曹，男子則特加頂玉之資，以慰其餘年，而九十九歲，亦非百歲乎，使之一體施行。戒飭有司，務從優厚，以體寡昧之至意。”</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5월 16일(임자) 1번째기사 인평 대군 상가에 쓸 미포를 별도로 수송하라고 하교하다</p>	<p>상이 하교하였다. “인평 대군 상가에 쓸 미포(米布)를 능원 대군(綾原大君) 초상 때의 예에 따라 별도로 수송하라.”</p>	<p>壬子/上下教曰：“麟坪大君喪家所用米布，依綾原大君喪例，別爲輸送。”</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5월 20일(병진) 2번째기사 정태화 등이 인평 대군의 초상에 대하여</p>	<p>상이 대신 및 비변사 제신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대군의 초상에 누차 임상하시느라 병환이나 나지 않으셨는지요?”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나밖에 없던 아우가 이제 영원히 가버렸으니, 나의 슬픈 마음 어찌 끝이 있겠는가.” 하고, 이어 눈물을 흘리니 좌우가 모두 감동하여 울었다. 좌의정 원두표가 아</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領議政鄭太和曰：“大君之喪，累次哀臨，不暇有傷。”上曰：“只有一弟，而今又長逝，予懷之悲，曷其有極。”仍流涕，左右無不感泣。左議政元斗杓曰：“臣等伏聞聖上猶御素膳云，聖上友于之情雖</p>

<p>신하들의 의견을 따를 것을 청하다</p>	<p>뢰기를, “신들이 삼가 듣기로는 성상께서도 소선(素膳)을 드신다고 합니다만, 성상의 우애로운 정리가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종묘에는 어떻게 하며 자전께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광평 대군(廣平大君)의 초상에 세종 대왕께서 소선을 시행하려다가 여러 신하들의 간청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복선(復膳)을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절문(節文)을 참작하여 슬픔을 억누르고 억지로라도 따라주소서. 신들이 옥색(玉色)을 쳐다보니 평일과 너무 달라져서, 걱정스럽고 절박함을 가누지 못한 나머지 감히 이같이 앙달하는 바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무도 슬픈 나머지 저절로 이 모양이 된 것이다.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p>	<p>切，其奈宗廟慈殿何？廣平大君之喪，世宗欲行素，而迫於群下之請，不得不復膳。伏願參以節文，抑哀勉從焉。臣等仰瞻玉色，大異平昔，不勝憂悶之至，敢此仰達。”上曰：“哀傷之極，自至於此，卿等勿以爲慮。”</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6월 8일(갑술) 1번째기사 광주의 여인이 한 번에 세 명의 사내 아이를 낳아 전례에 따라 쌀을 주다</p>	<p>광주(廣州) 민가의 여인이 한 번에 세 명의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전례에 따라 쌀을 주었다.</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8월 3일(무진) 2번째기사 술을 금하도록 하다</p>	<p>술을 금하도록 하였다.</p>	<p>禁酒。</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p>	<p>예조가 모든 도의 방물(方物)을 다시 진상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상이 하교하였다.</p>	<p>禮曹請復諸道方物，上下教曰：“此何時也，竝停之。”</p>

<p>15년) 8월 7일(임신) 2번째기사 예조가 모든 도의 방물을 다시 진상하게 할 것을 청하니 정지하라고 명하다</p>	<p>“지금이야 어느 때인가. 모두 정지하게 하라.”</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10월 23일(병술) 2번째기사 영의정 심지원 등이 우레의 변괴로 인해 면직하기를 청하다</p>	<p>상이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심지원 등이 우레의 변괴로 인해 면직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 재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신들을 면직시킨 것은 본래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마땅히 미치지 못한 점을 서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경들만 책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심지원이 아뢰기를, “부안현의 굶주린 백성들이 초가을에 흩어진 수가 벌써 2백여 호나 된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흩어져 없어진 사람이 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호조 판서 정유성(鄭維城)이 아뢰기를, “전남 감영의 곡식이 거의 10만 석이나 됩니다. 이 곡식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고 심지원이 아뢰기를, “통영의 곡식 2만여 석을 명년 봄에 한강으로 운반해다가 은과 베를 사면 도성의 백성들이 힘입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沈之源等，以雷變請免其職。 上曰：“古之策免大臣，本非美事。 惟當交修不逮耳。 豈可專責於卿等耶？” 之源曰：“扶安縣飢民， 初秋流散者， 已至二百餘戶云， 厥後流亡， 又未知其幾何也。” 戶曹判書鄭維城曰：“全南監營之穀， 幾至十萬石。 請以此穀， 賑救餓民。” 之源曰：“統營之穀二萬餘石， 趁明春運致京江， 以買銀布， 則都下之民， 庶有賴矣。” 上皆從之。</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11월 13일(병오) 1번째기사</p>	<p>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오랫동안 편찮으시다가 다시 회복되었으니, 종사와 신민들의 경사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종묘에 고하고 진하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p>	<p>丙午/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曰：“聖候違豫， 久而復常， 宗社臣民之慶， 無踰於此。 告廟陳賀， 烏可已乎？” 上曰，“予既不愼， 而有斯</p>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고 오
가 작통법의 시행에
대해 의논하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병에 걸렸으니 후회 막급이다. 무슨 마음으로 진
하를 받겠는가.”
하였다. 우의정 원두표(元斗杓), 예조 판서 홍명하(洪命夏) 등도 힘껏 청하였
으나 상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오가 작통법(五家作統法)을 일찍이 강구했었는데 흉년을 만나 시행하지 못하
였습니다.”
하고 원두표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김익렴(金益廉)의 상소로 인하여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는데
대신 중에 【바로 이시백(李時白)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불가하다고 하는 자
까지 있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조 판서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조 판서 송시열이 아뢰기를,
“오가 작통법은 삼대(三代) 때의 법으로, 상양(商鞅)이 가혹한 정치를 펴 원망
을 샀던 것이지 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명도도 일찍이 시행할 만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두 대신의 뜻은 나와 같으니 내년엔 크게 흉년 들지 않으면 단연코 시행하
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백성들은 많이 불어났는데도 군사는 늘어나지 않고 들판은 모두 개간되었는
데도 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기강이 서지 않은 탓입
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疾，慙悔莫及。何心受賀？”右議政元
斗杓、禮曹判書洪命夏等亦力請之，上
終不許。太和曰：“五家統之法，曾已
講定，而連值凶歉，未果行矣。”斗杓
曰：“頃因金益廉之疏，命議于大臣，
而大臣【即李時白也。】至有涕泣而
不可者矣。”上曰：“吏判之意如何？”
吏曹判書宋時烈曰：“五家之制，三代
遺法，而商鞅特以虐政取怨，法非不良
也。明道亦嘗言其可行耳。”上曰：
“兩大臣之意，既與予同，明年若不
至大無，則當斷然行之。”時烈曰：“
生齒極繁，而兵不增，田野盡闢，而
稅漸縮，此無他，紀綱不立故也。”上
曰：“國家之削弱，實由於不知田結
之贏縮、民丁之多寡也。轉眄之間，
已過十年，而無一人擔當國事者，良
可慨然。號牌則雖不可卒然行之，而
五家統，則不可不先行也。”太和曰：
“今年凶荒，八路同然，而濟州亦一
樣云，未知將何以賑救耶？”時烈曰：
“唐太宗值連歲之凶，撫而恤之，民未
嘗嗟怨。今若猶己之飢，盡心於民，
則彼至愚而神者，豈不知國家之惠
乎？”時烈又曰：“曾聞大臣言，吳
挺緯所爲，多不法云，

	<p>“국가가 쇠약해지는 것은 실로 전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과 백성들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을 모르는 데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눈감잡할 사이에 이미 10년이 지나갔는데 한 사람도 국사를 담당하는 자가 없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호패법(號牌法)은 갑자기 시행할 수 없으나 오가 작통법은 먼저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올해 흉년이 든 것은 팔도가 모두 똑같아 제주도 마찬가지로 하니, 앞으로 어떻게 진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p> <p>하고 송시열이 아뢰기를, “당 태종이 잇달아 흉년을 만났으나 백성들을 어루만져 보살피주자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약 자신이 굶주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보살핀다면 아주 어리석으면서도 신령한 저 백성들이 어찌 나라의 은혜를 모르겠습니까.”</p> <p>하였다. 송시열이 또 아뢰기를, “일찍이 대신이 오정위(吳挺緯)가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고 말하였으므로 승지에 의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유성(鄭維城)의 말을 들으니 본래 명백하게 드러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신들이 모두 입시하였으니 그들에게 물어서 시비를 정하소서.”</p> <p>하니 원두표가 아뢰기를, “이른바 대신은 바로 신입니다. 지난번에 들건대 대군(大君)이 호조에 보관해 둔 물품을 제수(祭需)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정위가 호조 참의로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런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p> <p>하자 정유성이 아뢰기를, “어제 송시열이 신에게 오정위가 공물을 방납(防納)했다는 등의 말로 물었는데, 공물은 주인(主人)이 있어서 본디 방납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른바 꿀을</p>	<p>故不擬於承旨望矣。 及聞鄭維城之言，則本無明白之事云。 今者大臣皆入侍，請問之以定是非。” 斗杓曰：“所謂大臣，卽臣也。 頃聞大君祭需，用戶曹所儲云，而其時挺緯爲參議，故因此而有是說也。” 維城曰：“昨日時烈，問臣以挺緯防納貢物等語，而貢物自有主人，本無防納之事。 其所謂納蜜云者，大君祭需，蜂蜜不足，而禮賓所儲陳久者頗多，故因本寺所報，而許貸矣。” 時烈曰：“臣竊有慨然者。 大臣若見臣僚之失，則坐於朝堂，進退之可也。 豈可以暗昧之言，歸責於人乎？” 上曰：“此言是矣。” 時烈曰：“朝廷之上，是非爲重。 是非若不明，何以立紀綱乎？”</p>
--	---	---

	<p>바쳤다고 하는 것은, 대군의 제수 중에 꼴이 부족하였는데 예빈시에 보관해 둔 것 중 오래 묵은 것이 꽤 많았으므로 본사에서 보고함을 인하여 빌려주도록 허락한 것입니다.”</p> <p>하자 송시열이 아뢰기를, “신은 개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대신은 신료들의 잘못을 보면 조당(朝堂)에 앉아서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어찌 분명치 않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그 말이 옳다.”</p> <p>하자 송시열이 아뢰기를, “조정에서는 시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비가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기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11월 17일(경술) 3번째기사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고 시사에 대해 의논하다</p>	<p>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서의 스물 일곱 고을이 가장 심하게 재변을 입었다고 하니, 오늘 경들과 마주 대하여 역을 줄이고 구황하는 정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여러 신하들은 각자 소견을 말하라.”</p> <p>하니 이조 판서 송시열이 아뢰기를, “내년 봄에 거두는 쌀을 전부 견감하고서 강도와 남한 산성의 곡식을 가져다가 국가의 용도에 충당하면 호서의 백성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p> <p>하였는데 못 의견이 모두 전부 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다른 도도 실농한 곳이 많으니 호서 한 도에 대해서만 오로지 힘을 쓰는 것은 마땅치 않다. 호남의 예에 의거해서 1결당 거두는 대동미 10두에서 먼저 3두를 감해주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영의정 심지원이 아뢰기를,</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上曰：“聞湖西二十七邑，被災最酷，今日欲與諸卿，面講蠲役救荒之策矣。諸臣各陳所見。”吏曹判書宋時烈曰：“明春收米，盡數蠲減，而取江都、南漢之穀，以充國用，則湖西之民，可蒙實惠矣。”群議皆以全減爲難，上曰：“他道亦多失稔之處，不宜專力於湖西一道。依湖南之例，就大同一結十斗米，先減三斗可也。”領議政沈之源曰：“東萊府使閔鼎重狀本，有‘譯輩漏通我國事情’之語，極可驚駭矣。”上</p>

	<p>“동래 부사 민정중(閔鼎重)의 장계에 ‘역관들이 우리 나라의 사정을 누설한다.’는 말이 있으니 몹시 놀랍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왜역(倭譯)들이 저들과 계속 왕래하면서 심지어는 사서(私書)를 서로 통하기까지 하면서 우리 나라의 일을 모두 누설하는데 저들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p> <p>하자 심지원이 아뢰기를,</p> <p>“이러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먼저 우두머리 역관 한두 사람을 제거한 다음에야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사대부들이 왜역의 이름을 아는 것만도 부끄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p> <p>하자 송시열이 아뢰기를,</p> <p>“옛말에 이르기를 ‘천금을 가진 자는 살인해도 죽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왜역들은 어찌 천금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주자가, 오랑캐의 위세를 끼고 임금을 협박한다고 말하였는데, 오늘날의 일이 불행히도 그와 가깝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그는 청역(淸譯) 이형장(李馨長)과 같은 자의 경우가 그것이다. 지난날 홍희남(洪喜男)이 죄가 있어서 유배보내려고 하였는데 구원해 주는 자가 아주 많았었다. 지금 죽이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죽이지 못할 것이다. 홍희남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일찍이 법을 어긴 서리(書吏)를 사형하려고 하였는데 대신 이하가 모두 그를 구원해 주었다.”</p> <p>하고 상이 또 영상과 좌상에게 이르기를,</p> <p>“이번에 당상관 중에서 추천에 뽑힌 자가 아주 적으며 또 제대로 되지 않은</p>	<p>曰：“倭譯輩絡繹彼中，至以私書相通，我國之事，無不漏洩，彼中之事，全然不知，豈不痛哉？”之源曰：“如此之輩，置之死律，則可無此弊矣。”上曰：“先除首譯一二人，然後此弊可杜矣。古之士大夫，知倭譯姓名，則皆以爲恥，今時則不然矣。”時烈曰：“古語云：‘千金之子，殺人不死’，今日之倭譯，豈特千金乎？朱子有挾虜勢，以要君之說，今日之事，不幸近之矣。”上曰：“此則如淸譯李馨長者是也。頃日洪喜男有罪，欲施流竄之典，而伸救者甚多，今雖欲殺之，必不可得也。洪喜男不湏言。予嘗欲誅書吏之犯法者，而大臣以下皆救之矣。”上又謂領左相曰：“今者堂上中抄薦人太少，且欠着實。如尹文舉、愼天翊，今雖陞秩，豈肯來仕乎？”斗杓曰：“以一時名望而選擇，故如此也。”上曰：“如柳慶昌，亦合於擢用乎？”時烈曰：“雖不知其才局之如何，而律已淸白，爲可尙矣。”上曰：“淸白則可尙，而但慶昌在藩時，稱病蹢躅，一不隨行於艱危之地。還京之後，其病卽差。以此觀之，則不必合於擢用矣。”大臣以</p>
--	--	--

	<p>듯하다. 윤문거나 신천익 같은 자는 지금 비록 승진시키더라도 어찌 와서 벼슬살이하러 하겠는가.”</p> <p>하니 원두표가 아뢰기를, “한때의 명망을 가지고 선택하였으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유경창(柳慶昌)과 같은 경우도 발탁하여 등용하는 데 합당한가?”</p> <p>하니 송시열이 아뢰기를, “그의 재주가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청백(淸白)으로 자신을 단속하는 점은 가상합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청백한 것은 가상하다만 경창은 심양(瀋陽)에 있을 때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핑계로 한번도 위태로운 곳에 수행하지 않았는데 서울로 돌아온 뒤에는 그 병이 즉시 나았다. 이것으로 보면 발탁하여 등용하기에 반드시 합당치는 않다.”</p> <p>하였다. 대신 이하가 나아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성상의 몸이 편찮으실 때 신하들의 걱정이 어찌 한이 있었겠습니까. 다행히도 조종들께서 말없이 도와주시어서 이제 회복되었으니 국가의 경사치고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신들이 고묘(告廟)하고 진하(陳賀)하기를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성상께서는 고묘만 허락하시고 진하는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사람들이 모두 실망하고 있습니다. 고묘하는 예를 행한다면 진하하는 일을 차례대로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본뜻은 고묘하는 예도 하고 싶지 않았으나 경들이 계속해서 청하기에 부득이 따른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진하는 하지 않고 고묘만 하는 것은 경중이 뒤바뀐 것으로 일의 체모에 있어서 마땅치 않다. 고묘하는 일도 거행</p>	<p>下進曰：“頃於玉候違豫之時，臣子憂遑，曷有其極。幸賴祖宗之默祐，到今平復，國家之慶，莫大於此。臣等以告廟陳賀，建請非一，而聖明只許告廟，不許陳賀，輿情無不缺然。既行告廟之禮，則陳賀之舉，不可不次第舉行矣。”上曰：“予之本意，竝與告廟之禮，不欲行之，而卿等累請不已，故不得已勉從矣。到今更思，則既不陳賀，而只行告廟，輕重倒錯，事體不當。告廟一事，亦不舉行可也。”之源曰：“陳賀之不許，群下皆以爲缺然，而又下亦勿告廟之教，舉國顛望，歸於落莫。伏願聖明，更思之。”禮曹判書洪命夏曰：“只告太廟，不行陳賀之禮，事體固不當，而至於竝闕之，則尤極未安矣。”上曰：“予言不再。勿令告廟之意，承旨分付可也。”</p>
--	---	---

	<p>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자 심지원이 아뢰기를, “진하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아서 신하들이 모두 실망하고 있는데 또 고묘하는 일도 거행하지 말라고 전교를 내리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낙망할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다시 생각해 주소서.” 하고 예조 판서 홍명하가 아뢰기를, “고묘만 하고 진하하는 예를 거행하지 않는 것이 일의 체모에 있어서 참으로 마땅치 않으나 두 가지 다 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다시 말하지 않겠다. 고묘하지 말라는 뜻으로 승지가 분부하라.” 하였다.</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11월 21일(갑 인) 1번째기사 옥당과 강관 및 송시 열·송준길을 소대하여 강독하고 시사에 대해 의논하다</p>	<p>상이 옥당과 강관 및 이조 판서 송시열, 찬선 송준길을 소대하여 《심경》을 강독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이 ‘술 마시는 데에는 양이 없었다.[惟酒無量]’의 양(量) 자는 정해진 양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찍이 들건대 성상께서는 세자가 되신 후로는 절대로 술을 가까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세자가 된 뒤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아서 지금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자 송시열이 아뢰기를, “그러나 그 마음은 순식간에 방종해지기 쉬운 것이니 시종 경계하여 삼가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좋다. 술을 잘 마시는 사대부들이 모두 나와 같이 술을 끊는다면 다행이겠다.”</p>	<p>甲寅/上召對玉堂講官及吏曹判書宋時烈、贊善宋浚吉，講《心經》。時烈曰：“惟酒無量之量字，乃無定量之意也。曾聞聖明入升儲位之後，切不近酒云，今亦然乎？”上曰：“予自升儲，絕不進酒，今則便爲不能飲之人矣。”時烈曰：“雖然，此心易縱於毫忽之間，伏願終始戒慎焉。”上曰：“卿言善矣。士大夫崇飲者，若皆如予斷飲則幸矣。”浚吉曰：“慈愛之心，人皆有之，而近聞北道之民，有棄子不育者云，誠可駭矣。”上曰：“頃見本道狀本，則鍾城府使任有後以爲：‘無此事云矣。’”檢討官閔維重曰：“有後之</p>

	<p>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있는 것인데 요즈음 북도(北道)의 백성들 가운데 자식을 키우지 않고 내다버리는 자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본도의 장계를 보니, 종성 부사(鍾城府使) 임유후(任有後)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다.” 하자 검토했던 민유중이 아뢰기를, “임유후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이 북도에 있으면서 길가에 버려진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다버리는 것이 어찌 다른 이유에서겠습니까. 대개 한정(閑丁)을 수괄하여 귀액(闕額)을 보충하면서 포대기에 싸인 어린 아이도 모두 끼워넣고는 그들의 부모에게 군포(軍布)를 내도록 책임지우므로 부득이 해서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하고 송준길이 아뢰기를, “임유후는 식견있는 문사이면서 조사해 보고한 것이 이와 같이 부실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본도의 감사와 임유후를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수령들에 대해 서경(署經)하는 규정이 있어서 정조(政曹)가 전례에 따라 지채(紙債)를 징수하는데, 그것이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와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처음 수령에 제수된 자는 서경하고 다시 제수되거나 시종신으로 있다가 수령이 된 자는 서경하지 말아 폐단을 제거하소서.” 하니, 따랐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오정위(吳挺緯)의 일에 대해서 성상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시지만 오정위는</p>	<p>言，不實也。 臣在北道，目見路傍有棄兒，其所以棄之者，豈有他哉？ 蓋緣搜括閑丁，充補闕額，在襁褓者，皆不得免焉，責辦軍布於厥父母，故不得已棄之也。” 浚吉曰：“任有後以有識文士，查報如是不實，豈不寒心乎？” 上曰：“本道監司及任有後並推考。” 時烈曰：“守令有署經之規，而政曹前例，徵其紙債，皆出於民，其弊不費。 請自今守令之初授者爲署經，再授者及侍從出宰者勿署，以除其弊。” 從之。 時烈曰：“吳挺緯事， 聖上既已洞燭，而挺緯私囑戶判， 貸用公儲， 殊甚未妥。 請略施補外之罰。” 上曰然。 浚吉曰：“吳挺緯、鄭維城均有所失，而挺緯被罰，則維城亦必不安，而引入矣。” 上曰：“當此饑歲， 度支之長，若引入則不可矣。” 浚吉曰：“挺緯既以此事，見塞於清望，至於補外，則恐有紛紜之舉矣。” 時烈曰：“臣意如是處之， 然後挺緯事完了矣。” 上曰：“姑從贊善之言可矣。”</p>
--	---	---

	<p>사사로이 호조 판서에게 부탁해 공물(貢物)을 빌려 썼으니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대강 외임(外任)에 보임하는 벌을 내리소서.”</p> <p>하니, 상이 그러라고 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오정위와 정유성(鄭維城)이 똑같이 잘못하였으니 오정위가 벌을 받으면 정유성도 반드시 불안하여 인피하고 들어갈 것입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런 흉년을 당하여 탁지(度支)의 장이 인피해 들어간다면, 그것은 안 된다.”</p> <p>하니 송준길이 아뢰기를, “오정위는 이미 이 일로 청망(淸望)에 막혔는데 외직에 보임되기까지 한다면 아마도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듯합니다.”</p> <p>하고 송시열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처리한 다음에야 오정위에 대한 일이 마무리될 듯합니다.”</p> <p>하자 상이 “우선은 찬선의 말대로 하라.” 하였다.</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12월 6일(무진) 2번째기사</p> <p>전남 감사 서필원이 치계하여 차원을 접견하고 삭선을 줄일 것을 청하다</p>	<p>전남 감사 서필원(徐必遠)이 치계하기를, “부안 현감(扶安縣監) 유경(柳旻)을 차원(差員)으로 상경케 하였으니 만약 불러서 접견하시면 해읍(海邑) 백성들의 굶주리는 실상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대비전의 삭선(朔膳)도 줄이도록 명하시어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정원이 아뢰기를, “차원(差員)을 접견토록 청한 것과 삭선을 줄이도록 청한 것은 모두 번신(藩臣)의 체례를 잃은 것이니, 서필원을 추고하소서.”</p>	<p>全南監司徐必遠馳啓，以爲：“扶安縣監柳旻，以差員上京，若賜召見，則可知海邑生民餓孳之狀。且王大妃殿朔膳，亦請命減除，以爲飢民一分之惠。”政院以“請見差員，請減朔膳，俱失藩臣之體，請徐必遠推考。”從之。</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12월 6일(무진) 3번째기사</p> <p>이조 판서 송시열이 상소하여 호서 7개 읍의 백성을 진휼할 것을 청하다</p>	<p>하니, 따랐다.</p> <p>이조 판서 송시열(宋時烈)이 상소하기를, “신이 어제 삼가 성상의 하교를 보건대 호서 7개 읍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걱정하시어 호남 9개 읍의 경우와 똑같이 부세(賦稅)를 견감해 주도록 하셨는데, 이는 하늘의 도량과 같은 후한 덕의(德意)로서 떠돌며 굶어죽는 백성들이 이로 인해 장차 소생할 기대를 갖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신이 경비를 염려한 나머지 제대로 분부를 받들어 따라 성상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지를 못했으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p> <p>신이 삼가 살피건대 송 효종(宋孝宗) 때 일찍이 흉년을 만나 내탕(內帑)에 보관된 물량을 꺼내고 대농(大農)의 곡식을 옮겨다 진휼했는데, 주자(朱子)는 그래도 부족하게 여겨 다시 민전(緡錢)을 내려주도록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또 굶주리는 백성의 입에 들어 있는 곡식까지 쪼개서 나눠주는 것을 한탄하면서 다시 말하기를 ‘백성과 재물 중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볍습니까. 재물은 흩어져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민심은 한번 잃으면 다시 거두기 어렵습니다. 백성이 흩어져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대도(大盜)를 위해 쌓아놓은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는데, 이 말이야말로 명백하고 통절하여 꼭 지혜로운 자가 아니더라도 이치로 보나 형세로 보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p> <p>그런데 오늘날의 일에 있어서는 그저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견감하자는 것인데도 이렇듯 애석해 하고 어렵다며 물리치고 있으니, 대농의 곡식을 옮긴다거나 내탕의 물품을 꺼내어놓는 일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경비가 부족하다고 합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곡식을 계산하면 내년 가을까지 지탱할 수 있는데 포목은 그 속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양서(兩西)의 대·소미(大小米) 3만 석과 노비 공미(貢米) 1만여 석이 있으니</p>	<p>吏曹判書宋時烈上疏曰： 臣昨伏見聖教，則軫念湖西七邑之飢民，俾與湖南九邑，均其蠲賦之數，德意之厚，與天同量，流殍之民，庶將骨肉而毛鬣矣。不料大臣，恤其經費，不能奉順以布聖恩，甚可惜也。臣謹按宋孝宗朝，嘗遇凶歉，發內帑之藏，轉大農之粟以賑之，而朱子猶以為未足，復請給降緡錢而不得。則又恨其計較毫末於飢民口吻之中，又以為：“民之與財，孰重孰輕？財散猶可復聚，民心一失，則不可以復收。至於民散國危，則其所聚，有不為大盜積者耶？”此言明白痛切，不待智者，而知其理勢之必然也。至於今日之事，則只將蠲其所輸之賦矣，猶且愛惜，却難如此，況望其轉大農，而發內帑乎？今日經費，雖曰不足，然計今見存之穀，可支來秋，而布猶不在其中矣。又有兩西大小米三萬石，奴婢貢米萬餘石，以此補用，可以支過矣，借有不時支發，則江都、南漢之米，又可以貸用矣，何必預慮日後之經費，而不恤目前之餓殍乎？臣竊聞龍安之飢民，聞聖上盡減租</p>
---	---	--

이것을 보충해 쓰면 지탱해 넘길 수 있을 것이며, 또 가령 불시에 지불해 써야 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강도(江都)와 남한 산성의 미곡을 대출해 쓰면 될 것인데, 하필 뒷날의 경비를 미리 걱정한 나머지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단 말입니까.

신이 삼가 듣건대 용안(龍安)의 굶주리는 백성들이 성상께서 조세를 완전히 감면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주상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떠나지 말아 주상의 뜻에 부응해야 하겠다.’고 했다 하니, 《대학》의 이른바 ‘재물을 모으면 백성이 흩어진다.’는 말을 오늘날에 징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이 제대로 어진 정사를 행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먼 지방에서 보고 듣는 이들 모두가 기꺼이 복종할텐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에 주자가 병든 몸으로 시골에 누워 있다가 조정에서 진흙하여 구제하는 일을 크게 행한다는 말을 듣고는 분주(奔走)하는 수고를 꺼리지 않고 일어나 조명(朝命)에 응함으로써 절동(浙東) 지방의 백성들을 살려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령 성상의 은혜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흡족하게 베풀어지면 꼭 그 몸에까지 두루 가해지지 않더라도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고무되고 감격하여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득실을 논한다면 10만 석의 곡식으로도 이것과 바꿀 수 없을 것인데, 더구나 수천 석의 미곡쯤이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하께서 자나깨나 영웅 호걸을 생각하시면서도 아직 얻지 못하고 계시는데, 만약 어진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어진 정사를 행하신다면 주자와 같은 마음을 지닌 자가 일어나 전하를 위해 쓰여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국용(國用)의 허실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호남의 9개 읍처럼 7개 읍의 부세를 완전 감면해 주신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까.

신이 또 삼가 보건대 전남 감사 서필원이 부안 현감 유경을 차송하면서 접견

稅，相與涕泣而言曰，“主上之恩如此，吾輩當忍死勿去，以副主上之意”，《大學》所謂：‘財聚民散’之言，可驗於今矣。而況人君能行仁政，則不惟被其澤者知感，而遠方聞瞻，莫不悅服，故昔朱子病臥田間，聞朝廷大行賑濟，不憚奔走之勞，起膺朝命，以活浙東之生民。今使聖恩，浹於飢民，則不必遍加乎其身，而一國之民，無不鼓舞感戴矣。若論其得失，則雖十萬之穀，不與易此也，況數千之米乎？且今殿下，寤寐豪英，而未有所得，若能以仁心，實行仁政，則安知有朱子之心者不起，而為殿下之用哉？伏願殿下，勿拘於國用之虛實，而全減七邑之賦入，如湖南之九邑，不勝幸甚。臣又伏見全南監司徐必遠，差送扶安縣監柳旻，而請賜宣對，政院以非藩臣之體，而請推。夫必遠之請，語意樸直，太無曲折，政院之請推是也。然究其本心，則不害其為獻忠之誠也。臣聞《大學》曰：“如保赤子。”孟子曰：“為民父母。”夫赤子在外，人有言之者曰：“顛連飢困，將不可活”，為父母者，必將惻隱在心，頃刻不置，人有自彼來

해 주시기를 청했는데, 정원이 번신(藩臣)의 체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고를 청하였습니다. 대저 필원이 청한 것은, 말 뜻은 꾸밈이 없고 솔직하지만 정원이 추고를 청한 것도 옳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을 캐보면 충성을 바치려는 그의 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대학》에서 ‘어린 자식을 보호하듯 해야 한다.’ 하였고 《맹자》에서 ‘백성의 부모가 된 것이다.’고 하였는데, 대저 작자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낭패스러운 상황에 처해 굶는 등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고 한다면 부모된 자는 반드시 마음 아파하며 잠시도 그냥두지 않을 것이며, 그쪽에서 온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운을 다해 맞아들이고 물으며 한 순간도 지체할 겨를이 없이 할 것입니다. 또 《주역》에 이르기를 ‘글로는 말만큼 표현을 다하지 못하고 말로는 생각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 한다.’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옛날의 충신 가운데에는 유민(流民)들의 굶어죽는 참상을 차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림을 그려 바친 자도 있었고 오매초(烏昧草)를 올린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저 필원의 생각으로는 장소(章疏)나 서장(書狀)만으로는 천리 밖의 실정을 다 표현할 수 없겠기에, 차원(差員)을 접견하시어 친히 고통받는 상황을 하문해 주실 것을 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실로 매우 드문 격외(格外)의 일이었기 때문에 정원이 피치 못해 관례에 따라 추고를 청하였습니다만,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진 성상의 입장에서는 그의 청을 따라주지 않아면 외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돌아보며 낙심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자식이 병으로 괴로워하며 빈사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의 부모에게서 온 자가 말하기를 ‘네 부모가 네 생사도 물어보지 않더라.’고 한다면, 그 어린 자식에게 원망하고 사모하며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어제 성상의 하교를 보건대 장차 유경(柳旻)이란 자를 인견하실 것 같이

者, 則必將盡氣迎問, 不暇一息之少緩矣。 《易》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故古之忠臣, 不忍流殍之狀, 有作圖以獻者, 有進烏昧草者。 夫必遠之意, 以章疏書狀, 不能悉達其千里之情實, 故請其宣對差員, 親問疾苦之狀。 此實格外希闊之事, 故政院不免循例請推, 而在聖明憂恤之心, 則不可不準其請, 使遠外物情, 相顧落莫也。 夫赤子或疾痛瀕死, 而人有自父母來者, 曰: “爾父母不問爾死生”, 其赤子得無怨慕號泣之心耶? 臣昨見聖教, 若將引見柳旻者, 而終不果焉者。 得無以聖候不安, 未能出御而然也。 然臣竊以爲: 殿下真有恤民之誠, 則引入臥內, 問以疾苦, 無所不可也。 如是則遠方疲癯之民, 聞聖上之如此, 其感戴之心, 將不萬倍乎? 夫柳旻之事甚小, 而揆事觀理, 則區區之心, 不勝其憂悶焉。 臣謹考光廟朝, 嘗念罪囚凍死, 夜五鼓, 召承旨入寢廡, 問罪囚幾許, 承旨尹弼商對之甚悉, 光廟拓窓, 命入寢內。 光廟回顧向內曰, “此吾寶臣也”, 蓋王后御座密邇也。 臣又竊考皇朝故事, 十三省府國官員, 有進表而來

보였는데 끝내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성상의 건강이 불편하여 나아오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참으로 백성을 돌보는 정성을 갖고 계신다면 와내(臥內)에 끌어들여 그 고통과 괴로움을 물어보신다 해도 안 될 것이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면 파리하게 쇠해진 원방의 백성들이 성상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장차 만 배나 감격하여 떠받드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저 유경에 대한 일이 매우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사리로 헤아려 살펴보면 구구한 마음에 걱정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이 삼사 광묘(光廟)의 일을 상고하건대 일찍이 죄수가 얼어죽을까 염려한 나머지 밤 5고(鼓)에 승지를 침전으로 불러들여 죄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문하셨는데, 승지 윤필상(尹弼商)이 매우 자세하게 대답하자 광묘께서 창을 열고는 침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광묘께서 머리를 돌려 안을 향해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나의 보배로운 신하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왕후의 어좌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또 삼가 명나라의 고사(故事)를 상고하건대 십삼성(十三省)의 부(府)와 국(國)의 관원이 표문(表文)을 받들고 올 경우에는 대동한 이졸(吏卒)까지 모두 계하(階下)에 끌어들여 꿇어앉게 한 뒤 황제가 친히 ‘알았다.’고 옥음을 전하였으므로 이졸처럼 친한 자들도 모두 천광을 우러러 볼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까지 규모가 광대하고 성의가 간절하고 보면 치화(治化)가 어떻게 융성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임금과 신하는 하늘과 땅이니, 임금의 형세가 높아지지 않을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무도 엄하고 두렵게 대해 상하가 막힐까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므로 이에 따라 건과 곤의 상(象)이 정해지고, 사물이 높고 낮게 배열된 것에 따라 상하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다.[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上下位矣]’라고 하였는데 이는 군신(君臣)의 나뉘이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천지(天地)와 같다

者，竝其所帶吏卒，而引跪于階下，皇帝親傳玉音曰：“知道”，吏卒之賤，咸得仰觀天光。其規模光大，誠意懇惻，至於如此，則治化安得不隆哉？夫君臣天地也，其勢不患不尊，而惟患嚴畏之太甚，以致阻隔也。故《易》曰“天尊地卑，乾坤定矣，卑高以陳，上下位矣”，此言君臣之分，如天地之不可踰越。至論其變化之妙，則以天上而地下者爲否，地上而天下者爲泰，蓋以天地不交，則萬物不生，君臣不交，則事功不成也。故朱子當南渡之日，汲汲於天下之事，而其爲說不過曰“乾剛不亢，君道下濟，忠讜競勸，臣道上行，則天下幸甚。”伏願殿下，上法皇朝，內承祖武，玩《大易》之象，味朱子之訓，勇去因循之習，亟收暝眩之效，不勝幸甚。

上優批答之，仍命備局，更議以處。備局覆啓曰：“湖西七邑之被災，不至於湖南九邑之尤甚，且前頭經費，決無可支之勢，故纔以不得全減之意覆啓矣。伏見吏曹判書宋時烈之劄，恤隱之意，若是其懇惻，前頭經費，何暇顧念乎？舒川等七邑田稅全減之意，請分

	<p>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 그 묘한 변화의 이치를 논해 보건대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땅이 있으면 비괘(否卦)가 되고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으면 태괘(泰卦)가 되는데, 이는 대체로 천지가 교류하지 않으면 만물이 나오지를 못하고, 군신이 교류하지 않으면 공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남도(南渡)하던 날을 당해 천하의 일 때문에 쉴 틈이 없었던 때에도 주장한 말을 보면 ‘건(乾)이 강(剛)하되 오만하지 않아 군도(君道)가 아래로 이루어지고, 충직한 말로 다투어 권하여 신도(臣道)가 위로 행해진다면, 천하에 그런 다행이 없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위로 황조(皇朝)를 본받고 안으로 조종(祖宗)의 발자취를 이어받으시면서 대역(大易)의 상(象)을 완상하고 주자의 가르침을 음미하시어 용감하게 인순 고식적 습성을 제거하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는 독한 약의 효력을 거두신다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너그럽게 비답을 내리고 이어 비국에 명하여 다시 의논해 처리토록 하였다. 비국이 복계(覆啓)하기를, “호서 7읍의 재해 상황이 호남 9개 읍처럼 심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 쓸 경비도 지탱할 형편이 결코 못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감면해 줄 수는 없다는 뜻으로 조금 전에 복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이조 판서 송시열의 차자를 보건대 측은하게 여기며 보살피주려는 뜻이 이처럼 간절하니, 앞으로 쓸 경비를 돌아보며 생각할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천(舒川) 등 7개 읍의 전세(田稅)를 전액 감면하라는 뜻을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付該曹及本道。”上從之。</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12월 18일(경</p>	<p>선혜청이 아뢰기를, “지난번 호남 연해(沿海)의 대동미(大同米)는 1결당 13두씩 거두어들이기로 이미 강정하여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p>	<p>宣惠廳啓曰：“頃以湖南沿海大同，每結收捧十三斗，既已講定行文，而適值今年失稔，龍安等九邑，則減八斗，錦</p>

<p>진) 2번째기사 선혜청이 해남 등 9읍의 미곡 중에서 2두씩 감할 것을 아뢰다</p>	<p>용안(龍安) 등 9읍은 8두를 감하고 금산(錦山) 등 9읍은 3두를 감해주기로 했는데, 해남(海南) 등 9읍은 재해 상황이 약간 가벼우니 원래 기준대로 13두를 거두어들여야 할 것입니다.</p> <p>다만 생각건대 조정에서 백성의 일을 걱정하여 어공(御供)하는 방물(方物) 및 세폐 상차목(歲幣上次木).과 군기시와 교서관의 공물(貢物) 정포(正布)를 작미(作米)한 것, 월과(月課) 군기(軍器)의 군량 등을 모두 임시로 감해 주었는데, 감해 준 수를 계산해 보면 해남 등 9읍에서 감해 줄 수 있는 수량이 4천여 석쯤 됩니다. 이런데도 거두어들일 미곡 중에서 이 숫자만큼 감해 주지 않는다면 9읍의 백성들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니, 백성을 편케해 주는 정사에 있어 역시 매우 불균등하다고 할 것입니다.</p> <p>정밀하게 계산해 보건대 1결당 2두씩 감해주면 각종 민역(民役)을 감해 주는 숫자에 맞출 수 있는데 그러고도 8천여 석이나 미곡이 남게 됩니다. 이를 금성(錦城) 등에서 남은 미곡과 합산하면 1만 4천여 석이나 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추이(推移)하여 1년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니, 해남 등 9읍에서 거두어들일 미곡 중에서 2두씩 감해 줌으로써 조정에서 진휼하는 뜻을 보여주소서.”</p> <p>하니, 따랐다.</p>	<p>山等九邑，則減三斗，海南等九邑，被災差輕，所當準捧十三斗。而第念朝家軫念民事，御供方物及歲幣上次木、軍器寺·校書館貢物正布作米、月課軍器軍糧，竝皆權減，以其所減之數計之，則海南等九邑所減者，四千餘石。而收米中，不減此數，則九邑之民，獨未蒙實惠，其在便民之政，亦甚不均。叩算計之，則每結若減二斗，可準各種民役所減之數，而餘米尙有八千餘石。竝與錦城等餘米通計，則至於一萬四千餘石，以此猶可推移支用於一年之需。請減海南等九邑收米二斗，以示朝家軫恤之意。”從之。</p>
<p>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12월 30일(임진) 2번째기사 헌부가 홀아비·과부·고아 등에게 관심을 기울여 돌볼 것을 아뢰다</p>	<p>헌부가 【대사헌 송준길(宋浚吉), 지평 이합(李栻).】 아뢰기를,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천하의 궁한 백성으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周)나라 문왕과 무왕이 정사를 펼치며 인(仁)을 베풀 때 반드시 이들 네 부류를 먼저 구제해 준 그 뜻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p> <p>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백성을 애달프게 여겨 혜택을 베푸셨는데, 지난해에도 이미 노인 대접을 하는 전범(典範)을 확대 적용하여 궁벽한 시골의 잔약한 백성들까지도 모두 은총을 입게 하였으니, 그 덕이 지극히 돈후하였다고</p>	<p>憲府【大司憲宋浚吉、持平李栻。】 啓曰：“鰥寡孤獨，天下之窮民，而無告者也。文、武發政施仁，必先斯四者，其意豈偶然哉？聖上臨御，愍惠黎元，前歲既推老老之典，使窮村殘隸，舉霑湛渥，德至厚也。今茲歲首，又以斯四者，廣加詢訪，別施恩恤，恐是仁政之不容已者，況今諸路飢荒，民生</p>

	<p>할 것입니다. 이번 세수(歲首)에도 또 이 네 부류(類)를 널리 순방(巡訪)하여 특별히 은혜를 베풀며 보살펴 주는 일(事)이야말로 인정(仁政)에 있어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한데, 더구나 지금은 제로(諸路)에 기근(飢)이 들어 백성들이 장차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네 부류의 백성들에 대해 더욱 먼저 관심을 기울여 애달프게 여기는 마음으로 길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도의 감사로 하여금 명심하고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將不免填壑，斯四者，尤不可不先軫念矜養。請令諸道監司，惕念舉行。”上從之。</p>
<p>효종 21권, 10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1월 7일 (기해) 2번째기사 채유후·이천기를 명소하여 성균관 유생들에게 제술을 시험보이게 하다</p>	<p>대제학 채유후와 승지 이천기(李天基)를 명소하여 성균관에서 유생들에게 제술(製述)을 시험보이게 하고 이어 황감(黃柑)을 내려 주었다. 참봉 이익상(李翊相)이 장원을 하였는데 진시(殿試)에 직부하도록 명하고 나머지는 급분(給分)하였다.</p>	<p>命召大提學蔡裕後與承旨李天基，試製儒生于成均館，仍賜黃柑。參奉李翊相居首，命直赴殿試，餘給分。</p>
<p>효종 21권, 10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2월 3일 (갑자) 2번째기사 대신 및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 인견하고 가뭄에 대해 의논하다</p>	<p>상이 대신 및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심지원이 아뢰기를, “지방의 굶주리는 참상은 근고에 일찍이 없었던 바인데, 지난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 비나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아 내와 못에 물이 죄다 말랐으니, 금년 농사 지을 일도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호남과 영남의 관찰사가 보낸 장계(狀啓)를 잇따라 살펴보니 ‘굶주린 백성들이 모두 농사에 부리는 소를 팔아 먹어 경작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여러 곳의 목장에서 치는 소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하자 좌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 “만일 이 소들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잡아 먹게 한다면</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領議政沈之源曰：“外方飢饉之慘，近古所無，而自冬至春，全無雨雪，川澤枯渴，今年農事，亦甚可慮矣。”上曰：“非但此也。連見兩南道臣狀本，則‘飢民皆賣食農牛，耕作甚難。’云。予欲以諸處牧場之牛，分給農民矣。”左議政元斗杓曰：“若給此牛，使民椎食，則亦或救飢，而牧場之牛，不合於耕作之用矣。”上曰：“頃聞湖南御史之言，</p>

	<p>혹 굶주림은 구제할 수도 있겠지만, 목장 소는 농사에 부리기에는 맞지 않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자에 호남 어사의 말을 듣건대 ‘설천 뒤의 주린 백성의 수효가 필시 세전보다 갑절이나 많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생각이 날 때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다.”</p> <p>하니 심지원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덕망을 잃은 적이 별로 없는데 하늘의 마음이 즐겁지 않아 재해가 이렇게까지 극심하니, 이것은 신 같은 무리가 무릅쓰고 높은 지위에 있는 탓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일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을 새로 재상으로 삼는다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재앙이 자연히 건힐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늘 부끄럽게 여긴다.”</p> <p>하였다. 심지원이 아뢰기를, “양호 지방의 연해 고을이 더욱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비국이 외방에 분부하여 농삿일을 권장하게 했는데, 전하의 뜻으로 하유하신다면 더욱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말을 만들어 하유하는 것이 좋겠다.”</p> <p>하고 또 이르기를, “유계(兪棨)에게 이미 비국의 직임을 맡긴 것은 의도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후로는 모두 크고 작은 공사(公事)를 오로지 그로 하여금 맡아 관리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歲後飢民之多，必倍於歲前。’云，每一念至，食不甘味矣。”之源曰：“聖上別無失德，而天心之不豫，至於此極，無非如臣等冒居之致。今若改卜賢德，則陰陽可以調，災沴可以祛矣。”上曰：“每聞此言，予心覿然。”之源曰：“兩湖沿海之邑，尤甚凶荒。頃日自備局分付外方，使之勸課農作，而以聖旨下諭，則尤可聳動矣。”上曰：“承旨措辭下諭可也。”又曰：“兪棨既差備局之任，意非偶然。此後凡大小公事，使之專管。”</p>
<p>효종 21권, 10년</p>	<p>상이 하교하였다.</p>	<p>上下教曰：“湖南賑救，一日爲急，而</p>

<p>(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2월 7일 (무진) 3번째기사 기민 구휼에 관한 공사는 반드시 그날 안에 회계할 것을 각사에 명하다</p>	<p>“호남 지방의 기민을 구휼하는 일이 하루가 다급한데도 본도의 장계를 상평청에 계하한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나서야 비로소 회계하니 해당 당상을 아울러 무겁게 추고하라. 앞으로 기민 구휼에 관한 공사는 반드시 그날 안에 회계해야 한다는 뜻을 각사에 분부하라.”</p>	<p>本道狀本，啓下常平廳，已過累日，今始回啓，當該堂上，竝從重推考。今後賑救公事，則必於即日內回啓之意，分付各司。”</p>
<p>효종 21권, 10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3월 4일 (을미) 1번째기사 제주도가 흉년으로 굶주리게 되어 전세의 절반을 감해 주고 구휼하다</p>	<p>제주도(濟州島)가 흉년으로 굶주리게 되어 전세의 절반을 감해 주고 금성현(錦城縣)의 쌀 1천 석과 통영(統營)의 조(租) 2천 석을 옮겨 보내서 구휼하였다.</p>	<p>乙未/濟州饑，減田租之半，移送錦城縣米一千石、統營租二千石，以賑之。</p>
<p>효종 21권, 10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3월 11일(임인) 3번째기사 이조 판서 송시열을 불러 보고 시사에 대해 의논하다</p>	<p>상이 이조 판서 송시열을 불러 보고 이르기를, “봄비가 지루하게 그치지 않으니 농사가 걱정된다. 오직 바라는 것은 금년 농사가 풍년 드는 일인데, 징조가 또 이러하니 근심과 번민이 끝이 있겠는가.” 하니 송시열이 아뢰기를, “때아닌 장마가 열흘 동안 계속 저 개지 않는데다 양의 화기가 어그러져 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으니, 백성의 일을 생각할 적에 실로 매우 딱하고 염려됩니다. 신이 듣건대 어떤 선비집 종이 고향에서 올라올 때에 어느 시골집에 들어가니 사대부집이었는데 슬하에 두 자식을 거느리고 여러 날을 굶고 앉았다가 길가는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고 난 다음 이윽고 통곡소리가 들렸는데 그 아이들이 이미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대개는 오래 굶은 나머지 갑자기 밥</p>	<p>上召見吏曹判書宋時烈謂曰：“春雨支離，農事可慮。所望者在於今年，而徵兆又如此，憂悶曷極。”時烈對曰：“非時潦雨，連旬不霽，陽和乖氣，風雪又作，言念民事，誠極悶慮。臣聞有一士子家奴，自鄉上來時，入一村舍，則乃士夫家也，率其二子，飢坐累日，乞食於行人，俄聞哭聲，其兒已死云。蓋久飢之餘，猝然得食則死矣。古語曰：‘春澇則夏旱’，必然之理也。</p>

	<p>을 먹게 되면 죽습니다.</p> <p>옛말에 ‘봄에 큰물이 지면 여름에 가문다.’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이른 봄인데도 벌써 굶어 죽는 걱정거리가 생겼으니 앞으로 백성들의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요사이 주상께서 백성을 가없이 여겨 슬퍼하시고 애써 구제하시는 정성이 지극하지만, 지금 하늘의 뜻이 편안치 않아 재앙이 거듭 생기고 큰 흉년까지 만나 백성이 이처럼 원망하고 있으니 몹시 민망합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백성의 부모된 자로서 굶어 죽은 백성을 구원해 주지 못하였으니 듣기에 측은하기만 하다.”</p> <p>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p> <p>“지난번 유계(俞棨)가 아뢴 군포를 변통시켜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논의가 모순되어 궤히시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그 중에 죽은 자와 어린 아이에게 번포(番布)를 감해 주었으니 그 혜택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정(田政)과 호적은 바꾸어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대로 방치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역이 균등하지 못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전정은 갑술년 이후로 여전히 수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구의 숫자도 몹시 문란해졌다. 모두가 지금 당장 시급히 해야 될 일이지만 다만 두 가지 일을 사실 아울러 시행하기는 곤란하다. 금년에 이미 죽은 자와 어린 아이의 부역을 감해 주었으니 내년에는 불가불 그 대리자를 채워 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섯 집을 1통으로 하는 제도부터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다.”</p> <p>하자 송시열이 아뢰기를,</p> <p>“모름지기 진실로써 하늘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념(一念) 사이에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는 생각이 끼이지 않으면, 하늘과 사람은 사이가 없으므로 감응하기</p>	<p>今年尙早，已有餓死之患，前頭民事，其將奈何？近來聖上憂勤惻怛，軫念拯救，非不至矣，而日今天心未豫，災異荐臻，歲值凶荒，民怨如此，極可悶也。”上曰：“爲民父母，不能救赤子之餓死，聞來惻然。”時烈曰：“頃日俞棨所陳軍布變通，論議矛盾，雖未得快施，而其中物故兒弱蠲減番布，其惠亦不少也。且田政戶籍，不可不釐正，而置之已久，是以賦役不均矣。”上曰：“田政，甲戌以後，尙不修舉，戶口之數，紊亂甚矣。皆是卽今急務，而第二者，實難並舉。今年旣滅物故兒弱之役，則明年不可不充定其代，五家作統，亦可先行也。”時烈曰：“必須應天以實。一念之間，毋或怠忽，則天人無間，感應不難矣。古語云：‘奢侈之害，甚於天災。’卽今上下無章，至於僕隸下賤，皆欲美其衣食，若是而安得不凶荒乎？”上曰：“萬頃等地，此習尤甚，年凶則先被飢饉之患云矣。”時烈曰：“萬頃土地沃厚，歲值稍稔，則豐其酒食，不惜空費，故致有此患。以《毛詩》見之，則魏國儉嗇，蓋堯時尙儉，故遺風猶有存者，我國安東亦如</p>
--	---	---

	<p>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말에 ‘사치의 해가 자연의 재앙보다 심하다.’ 했습니다. 오늘날 위아래가 구별할 수 없어 심지어 노예와 하천한 무리 까지도 모두 잘 입고 잘 먹으려고 하니 이르고서도 어찌 흉년이 들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경(萬頃) 등의 지방에 이런 사치 풍습이 더욱 심해서 흉년이 들 경우엔 기근의 피해를 먼저 입는다고 한다.”</p> <p>하자 송시열이 아뢰기를, “만경은 토지가 기름지므로 조금 풍년이 든 해를 만나면 술과 음식물을 푸짐하게 차리어 헛된 낭비로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모시(毛詩)》에 보면 ‘위(魏)나라는 지나치게 검소하였다.’ 했는데, 대체로 요임금 때에 검소함을 숭상했기 때문에 전해 오는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니, 우리 나라 안동(安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나라 조종조의 제도와 법은 삼대(三代)와 같은 훌륭한 규식은 아닐지라도 당초에 이미 절목을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미 예전의 법전까지 폐지되고 다시 새로 만든 법이 없기 때문에 정령(政令)이 어긋나 어지럽고 기강이 정연하지 못합니다. 만일 요순을 본받고 싶다면 마땅히 조종을 본받아야 하므로 예전 법전을 다시 닦아 갖추는 것이 지금 당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잠업은 백성이 해야 할 분수 내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반드시 농업과 잠업을 장려하고 책임지운다.’ 하였는데 그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이미 모든 도에 분부하여 장려하고 책임지워 그 업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만일 암행 어사를 파견해서 수령의 기민 구체 정책 및 농업과 잠업을 애써 장려했는지 태만히 했는지를 아울러 살펴보면 일이 필시 착실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대전》 권농조(勸農條)에 보면 ‘농사에 힘쓰는 사람이 있으면 권장하라.’는 규정이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거행</p>	<p>是矣。我國祖宗朝制法，雖非三代之良規，初既詳定節目，而近來既廢舊典，更無新創之法，政令乖亂，綱紀未整。欲法堯、舜，當法祖宗，修舉舊典，乃爲即今先務也。且農桑者，乃民之分內事，而自古必曰勸課農桑，其意非偶然也。頃日既已分付諸道，使之勸課，毋失其業矣。今若發遣繡衣，守令賑政及農業勤慢，竝令廉察，則事必着實矣。《大典》勸農條，有力業者獎勵之規，令廟堂修舉，則似好矣。”上從之。時烈曰：“宋孝宗初有大有爲之志，召見張南軒時，若於殿上見之，則恐有竊聽者，設帳於庭中而見之，左右皆空。君臣之際如此，然後可以謨猷大事也。”上曰：“近以卿之有疾，久未相見，常切鬱鬱。今日頗似從容，卿勿出去。”上謂承旨李慶億曰：“今日則承旨先出。”上又命史官及宦寺竝退去，而時烈獨入侍，外廷之臣，不知所達何事。</p>
--	---	--

	<p>하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 송시열이 또 아뢰기를, “송 효종(宋孝宗)이 당초에 큰일을 하려는 뜻을 품고 장남헌(張南軒)을 불 때 에, 만일 전상(殿上)에서 만나 보면 혹시 엇듣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뜰 가운데다 장막을 설치하고 그를 보았는데 좌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가 이와 같아야만 큰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경의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서로 만나 보지 못해 늘 매우 답답하였다. 오늘은 자못 조용한 듯하니 경은 나가지 말라.”</p> <p>하였다. 상이 승지 이경억(李慶億)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승지가 먼저 물러가라.”</p> <p>하고, 또 사관(史官)과 환관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분부했다. 그리고 나서 송시열 혼자 입시하였는데, 외조(外朝)에 있는 신하들은 송시열이 어떤 일을 말쑥드렸는지 몰랐다.</p>	
<p>효종 21권, 10년 (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3월 19일(경술) 2번째기사 공천에게 소를 바치고 양민이 되는 것을 허락하다</p>	<p>공천(公賤)에게 소를 바치고 양민(良民)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전남도에 심한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이 농사에 부리는 소를 죄다 팔아 먹었기 때문에 정작 농사짓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농민들이 모두 속수 무책으로 있었다. 이에 해당 감사 서필원(徐必遠)이 공천으로 하여금 소를 바치고 양민이 되는 길을 허락해 주기를 청원하였으므로 따른 것이다.</p>	<p>許令公賤，納牛贖身。全南道凶荒，飢民盡賣農牛而食之，及其農節，民皆束手。監司徐必遠請令公賤納牛許贖。從之。</p>
<p>효종 21권, 10년 (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3월 23일(갑인) 4번째기사</p>	<p>효종 21권, 10년(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3월 23일(갑인) 4번째기사 전남도에 명하여 대동미 5천 석을 농민들에게 나눠 주게 하다</p>	<p>命以全南道大同餘米五千石，分給農民，換質種子。</p>

<p>전남도에 명하여 대동미 5천 석을 농민들에게 나눠 주게 하다</p>		
<p>효종 21권, 10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윤3월 4일(갑자) 4번째기사 정언 이익이 유지에 응하여 상소하여 시사에 대해 아뢰다</p>	<p>정언 이익(李翊)이 유지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려 온 지가 이제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재, 한재, 목요(木妖), 석요(石妖), 일식(日蝕), 월식(月蝕)과 시기(時氣)가 절서(節序)를 어기는 변고가 없는 해가 없었고, 따라서 전하께서 자신을 자책하는 하교와 구언하는 유지가 전후 잇따랐습니다만, 아무 재이(災異)를 인하여 하나의 가언(嘉言)을 받아들이고 아무의 말을 인하여 하나의 폐정(弊政)을 개혁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면서 진취되는 것이 없으니, 신은 전하께서 수성(修省)한다는 것이 법문에 따라 형식만 갖추는 데에 불과할 뿐 볼 만한 실효가 없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우선 전하께서 이미 행한 것을 가지고 반복하여 추론해 보면서 성실[誠]이라는 한 글자에 대해 전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매사에 성실히 하면 곧 편하고 실하게 되는 반면 성실히 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고 작위가 되니, 성실이야말로 안팎을 합치시키고 동정을 한결같이 하는 방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깊숙한 궁궐에서 한가히 있을 때나 아무도 보지 않아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엄숙하고 정제(整齊)된 자세로 상제(上帝)를 대하는 듯한 정성이 과연 신하들을 인접(引接)하고 경의(經義)를 강론할 때와 같으십니까. 이는 신이 엿보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만, 밖으로 드러나는 사령(辭令)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삼가 함양하는 방도에 아직도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고 계속하여 밝혀 나가는 공부에 아직도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왕년에 유철(兪徹)이 유도삼(柳道三)의 파출을 청했던 것은 예에 따라 책임만</p>	<p>正言李翊應旨上疏曰： 臣竊念殿下，臨御圖治，今幾年矣。水旱之爲災，木石之騁妖，日月之薄蝕，時氣之失序，無歲不然，而殿下所以責己之教，求言之旨，前後相續，而未聞因某災，而納一嘉言，因某言，而革一弊政。玩愒度日，無所進就，臣恐殿下所以修省者，不過應文備數，而無實效之可見也。姑以殿下之所已行者，反復推論，而以誠之一字，爲殿下獻焉。臣聞誠則便實，不誠則僞故，誠者所以合內外、一動靜也。臣未知殿下，於深宮燕閑之中、幽獨得肆之地，所以嚴肅整齊對越上帝之誠，果如引接臣隣，講論經義之時乎？臣所未得以窺者，然以辭令之見於外者觀之，則竊恐涵養之道，猶有所未充，而緝熙之功，猶有所未至，何哉？往年俞徹之請罷柳道三，不過循例塞責，而至於嚴刑竄謫，則無乃或出於殿下之意，億逆之太深耶？當其怒時，遽忘其怒，而觀理之是非，則必無此失，平居着功之踈</p>

매꾸는 데에 불과했던 것인데, 엄한 형신을 하여 귀양보내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혹 전하의 의도가 넘겨짚은 것이 너무 심했던 데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노여움을 잊고서 사리의 시비를 살폈다면 반드시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상시 공부하는 것이 소략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험할 수 있습니다. 일이 지난 뒤에는 전하께서도 반드시 후회하셨을 것인데, 한 해가 지나도록 폐치시킨 채 아직도 거두어 서용하는 거조가 없으니, 어찌 탕척(蕩滌)시키는 은전에 손상됨이 없겠습니까.

태복시(太僕寺)가 업무를 태만히 하여 폐기한 것 등은 하급 관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으로 돌려도 될 것인데, 대신을 노예처럼 꾸짖으셨습니다. 전하의 생각에는 필시 ‘그는 본디 이런 사람이니 어떻게 감히 욕스럽게 여기겠는가.’ 하시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대저 염치의 도리야말로 세상을 면려시키는 도구입니다. 서관(庶官)의 반열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대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의 뜻이 다그쳐 부리는 데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차스럽게 용납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는 실로 전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니, 신은 삼가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신은 이 일에 대해서 추론(推論)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전하께서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보건대 득실(得失)의 빈도가 잦아서 앞에서 잘못된 것을 뒤에 고치지 않고 아침에는 그렇게 행한 것을 뉘우쳤다가도 저녁에는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뒷날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진실로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것을 인하여 저것을 알고 옛것을 미루어 새것을 앎으로써 장래의 경계로 삼으소서. 근일 옥당에 내린 비답은 화평스러움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기왕의 일에 견주어 보면 그래도 실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히 자세하게 진달하지 않겠습니다.

아, 하늘과 사람은 한 가지 이치라서 즉각 감응하게 마련입니다. 더워서

는 안
 密, 於此可驗矣。 事過之後, 殿下亦必悔之, 而經年廢置, 尙無收斂之舉, 豈不有傷於曠蕩之典乎? 至如太僕之怠棄厥事, 可歸於下官之不職, 而詆罵大臣, 有同僕隸。 殿下之意, 必以爲: “渠本此等人, 安敢以爲辱乎?” 而其實則有不然者。 夫廉恥之道, 所以礪世之具。 雖於庶官之列, 不可以是待之, 況於大臣之位乎? 爲上者, 志在驅使, 則爲下者, 不得不苟容, 此實由於殿下之使然也, 臣竊恥之。 臣於此事, 不欲追論, 而殿下變化氣質之功, 頻得頻失, 過於前者, 不改於後, 朝悔其行, 夕已復然。 若此不已, 安知異日, 可保其又無是事耶? 誠願殿下, 因此而識彼, 推舊而知新, 以爲將來之戒也。 近日下玉堂之批, 雖欠和平, 而方諸既往, 猶爲小失, 茲不敢觀縷焉。 嗚呼! 天人一理, 感應無間。 不當慍而慍, 不當寒而寒, 亦猶殿下之不當喜而喜, 不當怒而怒, 則亦無怪乎三月之雪、臘月之雷也。 殿下試以此理, 驗之於身, 隨事省察, 純一無雜。 然而天道不應者, 臣不信也。 至於時弊之可言者, 亦不可忽也。 姑舉一二焉。 夫恤民

되는데 더운 것과 추워서 안 되는데 추운 것은 또한 전하께서 기뻐해서는 안 되는데 기뻐하는 것과 노여워해서는 안 되는데 노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3월에 눈이 내리고 12월에 천둥이 치는 것을 역시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시험삼아 이 이치를 가지고 자신에다 증험해 일에 따라 성찰함으로써 잡된 것이 없이 순일하게 해 보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고서도 천도(天道)의 감응이 없다는 것을 신은 믿지 않습니다.

시폐(時弊) 가운데 말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 말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을 구휼하는 실상은 민력(民力)이 퍼지게 하고 생활이 넉넉하도록 해 주는 데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근본은 또 절검(節儉)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윗사람이 몸소 행하지 않는데도 아랫사람이 따르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항(閭巷)의 사치스런 풍습을 아무리 금해도 금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삼가이는 몸소 행하는 효험에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때 아닌 때에 공주의 집을 짓는 역사(役事)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계(臺啓)를 인하여 곧바로 정파(停罷)하기는 했으나 동량(棟樑)의 제도와 간가(間架)의 숫자가 같은 모르겠습니다만 삼척법에 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제왕의 궁실은 장려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堯)임금의 흙으로 만든 계단과 우(禹)임금의 낮은 궁실이 너무 누추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경사(經史)에 기재되어 그 덕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공주의 집은 곧 사사로이 거처하는 곳인데, 또 어떻게 지나치게 크고도 사치스럽게 하면서 중지할 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자가(自家)의 입장으로 말하더라도 한 번 지나 두 번 전하여 간 뒤에는 곧 포의(布衣)와 같게 되는 법인데 높고도 큰 집을 어떻게 장구히 보존하여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또 들건대 궁가에서 설치한 전장(田庄)이 모든 도에 두루 널리 있는데

之實，在於寬其力、厚其生，而二者之本，又在於節儉。然下之從上，猶影之隨形，未有上不躬行，而下從之者也。今以閭閻間侈靡之習，雖禁而不行者觀之，竊恐躬行之效，有所未至而然也。至於主第非時之役，雖因臺啓，旋即停罷，其棟樑之制，間架之數，未知果合於三尺之典乎？嗚呼！帝王宮室，不貴壯麗。堯之土階，禹之卑宮，似若太陋，而載之經史，其德益彰。況如主第，即爲私居，又豈可過於宏侈，而不知止乎？雖以自家利害言之，一再傳後，便是布衣，高大之居，安能保有而長久乎？臣且聞宮家設庄，遍於諸道，托以空地，侵及民田，無文籍者，束手被奪，怨聲頗多。且免稅入，公賦日縮，揆以國制，必有限節，豈有不論多少，一齊蠲免之理乎？曾以此事，言之者非一，而道臣查覈，不得明正，良由殿下稍涉宮家，則不能平心之故也。如使國泰民安，宗祏鞏固，則豈有王子駙馬，而飢寒是恤者乎？生民怨苦，亂亡隨至，則未聞王子駙馬，獨享富貴者也。不獨宮家爲然也，雖士夫之家，稍有形勢，則亦多冒占者，民生

공지(空地)임을 가탁하여 백성들의 전지까지 침탈하며 문적(文籍)이 없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빼앗기기 때문에 원성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입(稅入)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公賦)가 날로 감축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제로 헤아려 보건대 반드시 제한하는 절문(節文)이 있을 것인데 어찌 다소 막론하고 일제히 면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이 일 때문에 말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는데도 도신(道臣)이 사핵(査覈)하여 분명히 바로잡을 수가 없었던 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조금만 궁가에 관계되는 것이면 마음을 화평하게 가질 수 없었던 데에 연유된 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며 종방(宗祊)이 공고하다면 어찌 왕자와 부마가 좁고 배고픔을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백성이 고통에 시달려 원망하게 되면 난망(亂亡)이 따라서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 왕자와 부마가 홀로 부귀를 누렸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궁가만 그럴 뿐이 아니라 사부(士夫)의 집에서도 형세가 조금만 있으면 또한 법을 무시하고 점유하는 경우가 허다한 지경이니 백성들이 살 곳을 잃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분명히 조사하여 지난날처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신은 또 생각건대 국가에서 군대를 설치한 뜻은 단지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는 데에 있는 것인데, 평소 그들이 침략당하는 고통이 평민들보다 만 배나 더하니 전란에 임하여 무너져 흩어지는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건장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규피(規避)하려는 계책을 시도하는 단서가 한둘이 아니어서 호강(豪強)에게 빌붙기도 하고 승도(僧徒)를 가탁하기도 하고 각 아문의 생도(生徒)에 예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양정(良丁)이라는 것은 조금 있을 뿐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도 한 사람의 몸에 항상 몇 가지의 신역(身役)을 겸하고 있습니다. 군포(軍布)를 징수하는 명령이 이미 썩어버린 백골(白骨)에게 미치고 대역(代役)을 정한

之失所，固其宜矣。請令諸道道臣，從實明查，無如往日之爲，幸甚。臣又念國家設兵之意，只在於禦侮，而其在平日，侵虐之苦，萬倍於平民，臨亂潰散，不足怪也。且其壯健多財者，則規避之計，不一其端，或附於豪強，或托於僧徒，或屬於各衙門生徒，故所謂良丁者，絕無而僅有，一人之身，而常兼數役。徵布之令，及於已朽之白骨；代定之役，加於新產之赤子，逃故之充，難於挾山而超海。爲守令者，雖欲盡心竭力，亦無奈何。而加以近有砲保分定之舉，如火益熟，怨氣徹天，召災而致異者，亦安知不在於此也。爲今之計，莫若詳覈民數，而大均節之，使苦歇之勢，不至於甚相懸，則豈非便民之大者乎？頃日陞戶之舉，殿下之意，蓋在於陰雨之備，然必量其兵食而後，兵可添也。而竊聞國家經費之數，一年之入，不足以供一年之用。臣意以爲輦下之兵，只備宿衛而已，不必添也。雖京外之卒，擇之精而養之厚，則足爲緩急之用，何必聚之於都內，使人懷離土之憂，而國有廩料之費乎？凡此數者，誠爲今日切急之

	<p>것이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에게 가해지고 있으므로 도망하거나 죽은 자리를 충당시키기가 태산을 옆에 끼고 북해를 건너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령이 된 자가 마음과 힘을 다하려고 해도 또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근래 포보(砲保)를 분정(分定)하는 거조가 있었으므로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은 원기(怨氣)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으니, 재이를 불러오게 된 것이 또한 여기에 있지 않은 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백성의 숫자를 상세히 조사하여 대체로 고르게 하도록 절제하여 고향(苦歎)의 형세가 서로 너무 현격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찌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것 가운데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p> <p>지난번 승호(陞戶)시킨 것은 전하의 의도가 일이 닳치기 전에 미리 대비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긴 하였으나 반드시 군량을 헤아린 뒤에 군대를 첨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삼가 국가의 재정 상태를 듣건대 1년의 세입(稅入)이 1년의 지출을 공급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의견에는 서울의 군대는 단지 숙위(宿衛)에만 대비할 뿐이니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경외(京外)의 군졸이라도 정하게 가리고 후하게 배양한다면 유사시에 쓰기에 충분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도성에 모아놓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는 걱정을 품게 하고 나라에서는 늘료를 허비하는 일이 있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p> <p>이 몇 가지는 참으로 오늘날의 절실하고도 급박한 폐해인데도 조정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아 근본이 되는 곳이 이미 이러한 지경에 있으니, 돌아보건대 잘못을 보충하고 폐단을 고쳐주기를 어디에서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근래 청의(淸議)가 조금 확산되고 공도(公道)가 조금 신장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일이 고위 인사에 관계된 경우에는 아직도 비호하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p> <p>지난번 산릉(山陵)을 봉심(奉審)한 신하가 복명(復命)할 즈음에, 잔뜩 취한 탓</p>	<p>害，而朝廷之上，紀綱不振，根本之地既如此，則顧何望於補闕失，而革弊瘼乎？近雖淸議稍張，公道少伸，而事在高位，則尙有容護，而不言者。向者山陵奉審之臣，復命之際，扶醉入闕，昏倒禁庭，不能拜跪，欲起還仆，乃至傷面云。朝著之不肅，未必不由於此，而尙今寂然，未有所聞，臣竊訝焉。大官如此，則小官何責。噫！國事之可言者，不止於此，必本源正而後，乃可爲也。唯在殿下之誠不誠如何耳。</p> <p>答曰：“爾之進言之誠、愛君之忠，迥出尋常，予用嘉尙。再三觀覽不已也。俞撤當令該曹絃用焉。其他等事，亦令廟堂議處。所謂醉不成禮者，不知誰某，而士夫崇飲之弊，一至於此，薇垣柏府，囚舌久矣。殿上之一鶚，安可復見。爾之忠直，予甚嘉悅矣。”</p>
--	--	---

	<p>으로 부족하여 입궐했고, 금정(禁庭)에서 정신이 아뜩하여 넘어졌으므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없는 정도였으며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상처를 입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정이 엄숙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서 연유되지 않았다고 기필할 수 없는데, 아직도 조용하기만 한 채 조처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신은 삼가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관(大官)이 이러니 소관(小官)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아, 국사 가운데 말할 만한 것이 이뿐만이 아닙니다만, 반드시 본원이 바르게 된 뒤에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전하께서 성실히 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그대가 진언(進言)한 정성과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은 월등히 뛰어난 것이어서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재삼 열람하여 마지 않았다. 유철은 해조로 하여금 서용하게 하겠다. 기타 등등의 일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겠다. 이른바 술에 취하여 배례(拜禮)를 하지 못했다는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대부들이 술 마시기를 숭상하는 폐단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미원(薇垣)과 백부(柏府)는 오래도록 입을 다물고만 있다. 전상(殿上)에서 한번 바른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볼 수 있겠는가. 그대의 충직함을 매우 아름답고 기쁘게 여기고 있다.”</p> <p>하였다.</p>	
<p>효종 21권, 10년 (1659 기해 / 청 순치(順治) 16년) 윤3월 10일(경오) 2번째기사 지평 김만기가 후원에 건축하는 일에 옳지</p>	<p>상이 옥당의 강관(講官)들을 소대(召對)하여 《심경(心經)》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지평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p> <p>“신이 듣건대 근래 후원에 건축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맹랑한 말과 같다면 이는 군상이 아랫사람에게 미더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과연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上召對玉堂講官，講《心經》。講訖，持平金萬基曰：“臣聞近間後苑有營造之舉云，若是孟浪之說，則是君上不見信於下也，果有之，則此非營造之時矣。”上曰：“久則自然知之，不必盡言。彼數間屋，爲世子讀書之所耳。</p>

않다고 아뢰다

“오래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 모두 말할 필요가 없다. 저 몇 칸의 옥사(屋舍)는 세자가 독서하기 위한 장소인 것이다. 당초에 해사(該司)로 하여금 법에 의거하여 짓게 하려 했으나 경비를 쓰고 싶지 않아서 대내(大內)에서 짓고 있다.”

하였다. 검토관 이은상(李殷相)이 아뢰기를,
“전일 남구만(南九萬)이 진달할 적에 신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면 해사에 분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내에서 건축하여 사람들의 말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이 아뢰기를,
“은상이 진달한 말이 옳습니다. 《춘추(春秋)》에 반궁(泮宮)을 지은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응당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자에게 강서(講書)하는 곳을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사(外司)로 하여금 하게 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임금이 재이(災異)를 만난 것은 아들이 부모의 노여움을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노하였는데 처자를 꾸짖으면 되겠습니까. 근래 천재(天災)가 이러하니 함께 힘을 합쳐 화협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채유후(蔡裕後)가 술에 취하여 위의를(威儀)을 그르친 것은 잘못입니다만, 청백(清白)한 마음으로 자신을 단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허적(許積)이 언근(言根)을 진달하지 않은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만, 잡아다가 추문해야 된다는 의논은 지나친 것도 같은데, 재신(宰臣)을 끝까지 힐문하는 것은 사체만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이 두 신하가 일시에

初欲令該司依法造成，而不欲用經費，自內營之矣。” 檢討官李殷相曰：“前日南九萬陳達時，臣亦聞之。若是不可已之事，則分付該司可也。何必自內經營，以致人言乎？” 上曰：“然。” 時烈曰：“殷相所達是矣。《春秋》不書泮宮，爲其應行之事也。世子講書之地，何可已也？” 上曰：“恨不令外司爲之矣。” 時烈曰：“人君遇災，如人子遇父母之怒。父母怒則詆罵妻子可乎？近來天災如此，同寅協恭似當矣。蔡裕後醉酒失儀非矣，清白律身，人所共知。許積不達言根，亦某非矣，但拿推之論，似或過當，窮詰宰臣，徒傷事體。此兩臣一時被罪，景象不佳矣。” 上曰：“蔡裕後已成酒病，且近來飲酒成風，欲使因此警惕，乃從臺論矣。許積之事，恐有妨於言路，初不欲罪之，臺論重發，故勉從之矣。”

	<p>죄를 받는 것은 보기에 좋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채유후는 이미 술병이 생겼고 또 근래 술마시는 것이 풍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 경계시키기 위해 대론(臺論)을 따른 것이다. 허적의 일은 언로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처음에는 죄주려고 하지 않았으나 대론이 거듭 발론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른 것이다.” 하였다.</p>	
<p>효종 21권, 10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윤3월 16일(병자) 3번째기사 한춘일의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함경 감사 정지화가 파직되다</p>	<p>함경 감사 정지화(鄭知和)가 파직되었다. 당시 관군(館軍) 엄대봉(嚴大奉)이라는 자가 국경을 넘어가 삼(蔘)을 캔 죄 때문에 갑산부(甲山府)에 갇혀 있다가 탈옥하여 도주했었다가 정평부(定平府)에 체포되었는데, 족인(族人) 한춘일(韓春一)에게 뇌물을 주고 대신 갇혀 있게 하였다. 사형을 집행하려 하니 춘일이 크게 외치기를, “나는 당초에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뇌물을 받고 대신 갇혀 있었 습니다.” 하였으나, 감형관(監刑官)이 묻지 않고 참형에 처하였다. 그 뒤 춘일의 처자가 관에 호소함에 따라 대봉을 찾아서 체포하였고, 감사 정지화가 이를 조정 에 장문(狀聞)하였다. 비국(備局)이 정지화는 파직시키고 감형관은 잡아다가 신문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p>	<p>咸鏡監司鄭知和罷。 時有館軍嚴大奉者， 以越境采蔘之罪， 被囚於甲山府， 越獄逃走， 見捉於定平府。 賂其族人韓春一， 使之代囚。 及將刑， 春一大呼曰：“我初不知罪至於死， 受賂而代之云。” 監刑官不問而斬之。 其後春一之妻子， 訴于官， 尋捕大奉， 監司鄭知和聞于朝， 備局請罷鄭知和， 拿問監刑官， 從之。</p>